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44호

2026. 4. 23.(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제2026-1283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4

◈ 고 시

제2026-212호 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제2026-216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8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
제2026-217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 61
제2026-218호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64
제2026-219호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82
제2026-220호 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0
제2026-221호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29
제2026-222호 도시관리계획(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8
제2026-223호 도시관리계획(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8
제2026-224호 도시관리계획(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76
제2026-225호 도시관리계획(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87
제2026-22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39
제2026-227호 도시관리계획(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12
제2026-228호 남현동 538-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 560

제2026-229호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61

◈ 공 고

제2026-124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 등록변경 · 등록말소 사항 공고 ····· 584
제2026-125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588
제2026-1266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590
제2026-127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605
제2026-1271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 606
제2026-129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607
제2026-1295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608
제2026-130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611
제2026-1321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 612
제2026-1323호 202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 614
제2026-133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615
제2026-1338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616
제2026-1340호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 631
제2026-1347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723
제2026-1352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725
제2026-135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 744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6-1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745

◈ 구 고 시

제2026-6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대문구) ····· 751
제2026-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마포구) ····· 753
제2026-4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양천구) ····· 754
제2026-5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서구) ····· 756
제2026-104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서초구) ····· 758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송파구) ····· 759
제2026-5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 ····· 761

◈ 구 공 고

제2026-594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종로구) ····· 763
제2026-4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명동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구) ····· 766
제2026-6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성동구) ····· 772
제2026-574호 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 공고(광진구) ····· 774
제2026-640호 도시계획시설(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중랑구) ····· 775
제2026-735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성북구) ····· 802
제2026-69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강북구) ····· 804
제2026-7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노원구) ····· 806
제2026-890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관악구) ····· 807
제2026-893호 서리풀근린공원(반포미도1차재건축정비사업)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초구) ····· 811
제2026-894호 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서초구) ····· 830
제2026-1081호 독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 840

◈ 사업소고시

제2026-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851
제2026-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851
제2026-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852
제2026-1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852

◈ 사업소공고

제2026-17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853

◈ 기 타

제2026-12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859
제2026-126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860
제2026-12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861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83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활동기준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대한 구체화 · 명확화 (안 제25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7, 팩스: 02-768-8846, 이메일: 201210312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이 훈령안은 확정된 훈령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심사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조례제27조”를 “조례 제27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단, 1년 단위는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1. 감사·조사·감시·참관 연 2회 이하 참여한 경우
2. 위원회 주관 간담회·연수회 등 연 2회 이하 참석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1년 단위 참석대상 위원회 주관 간담회·연수회 등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2.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참관) ① ~ ③ (생 략)	제18조(참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조례제27조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관자로 지정할 경우, 전문분야와 관심분야, 참여 빈도 등을 고려한다.	④ ------ 조례 제27조------ ---------- ---------- ----------.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 ① ---------- --- 제27조제3항----------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단, 1년 단위는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1. 감사 · 조사 · 감시 · 참관 연 2회 이하 참여한 경우 2. 위원회 주관 간담회 · 연수회 등 연 2회 이하 참석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1년 단

	위 참석대상 위원회 주관 간담회·연수회 등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2.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2호

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89호(2016.7.7)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도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전시장(도서관 · 기념관 · 주차장)을 건립하여 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9-9
3. 면 적 : 29,816.5㎡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4)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산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9,816.50	7,670.82	1	1,085.50	4,451.46	122	29,816.50	7,214.57	2	856.25	8,205.02	90	시설면적 감소 감 456.25㎡
기반시설	소 계	4,367.04	4,367.04	-	-	-	-	4,350.36	4,350.36	-	-	-	-	감 16.68㎡
	도 로	2,934.27	2,934.27	-	-	-	-	3,355.46	3,355.46	-	-	-	-	증 421.19㎡
	광 장	1,432.77	1,432.77	-	-	-	-	994.90	994.90	-	-	-	-	감 437.87㎡
조경시설		169.57	169.57	-	-	-	36	175.36	175.36	-	-	-	4	증 5.79㎡
휴양시설		855.18	855.18	-	-	-	39	183.97	183.97	-	-	-	39	감 671.21㎡
유희시설		-	-	-	-	-	-	-	-	-	-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255.22	255.22	-	-	-	9	255.22	255.22	-	-	-	9	
교양시설	1,212.54	1,212.54	1	1,085.50	4,451.46	1	1,283.84	1,283.84	1	828.62	8,177.39	1	증 71.30㎡
편익시설	36.7	36.7	-	-	-	4	191.25	191.25	1	27.63	27.63	4	증 154.55㎡
관리시설	774.57	774.57	-	-	-	33	774.57	774.57	-	-	-	33	
녹지 및 기타	22,145.68	-	-	-	-		22,601.93	-	-	-	-	-	증 456.25㎡
시설율 (법정 40%)	(7,670.82 / 29,816.50) × 100 = 25.73%						(7,214.57 / 29,816.50) × 100 = 24.20%						
건폐율 (법정 20%)	(1,085.5 / 29,816.50) × 100 = 3.64%						(856.25 / 29,816.50) × 100 = 2.87%						

2.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	-	29,816.50	7,670.82	-	1동	1,085.50	4,451.46	122	-	-	29,816.50	7,214.57	-	2동	856.25	8,205.02	90	
기반시설	소계	-	-	4,367.04	4,367.04	-	-	-	-	-	-	-	4,350.36	4,350.36	-	-	-	-	-	감 16.68㎡
	도로	소로	-	2,934.27	2,934.27	-	-	-	-	-	소로	-	3,355.46	3,355.46	-	-	-	-	-	신설 421.19㎡
	광장	가	신사649-9	1,432.77	1,432.77	-	-	-	-	-	가	신사649-9	994.90	994.90	-	-	-	-	-	감 437.87㎡
	진입광장	가-1	신사649-9	(684.79)	(684.79)	-	-	-	-	-	-	-	-	-	-	-	-	-	-	폐지
	광장	가-2	신사649-9	(136.03)	(136.03)	-	-	-	-	-	가-2	신사649-9	(136.03)	(136.03)	-	-	-	-	-	
	광장	가-3	신사649-9	(534.98)	(534.98)	-	-	-	-	-	가-3	신사649-9	(534.98)	(534.98)	-	-	-	-	-	
	광장	-	-	-	-	-	-	-	-	-	가-4	신사649-9	(117.97)	(117.97)	-	-	-	-	-	신설 117.97㎡
	광장	가-5	신사649-9	(76.97)	(76.97)	-	-	-	-	-	가-5	신사649-9	(87.61)	(87.61)	-	-	-	-	-	신설 10.64㎡
	광장	가-6	-	-	-	-	-	-	-	-	가-6	신사649-9	(118.31)	(118.31)	-	-	-	-	-	신설 118.3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	-	169.57	169.57	-	-	-	-	36	-	-	175.36	175.36	-	-	-	-	4	증 5.79㎡
	파고라	①	신사649-9	157.71	157.71	-	-	-	-	3	①	신사649-9	172.32	172.32	-	-	-	-	3	증 14.61㎡
	평의자	⑨	신사649-9	-	-	-	-	-	-	6	-	-	-	-	-	-	-	-	-	폐지
	조형열주	⑩	신사649-9	-	-	-	-	-	-	10	-	-	-	-	-	-	-	-	-	폐지
	수경시설	⑪	신사649-9	-	-	-	-	-	-	1	-	-	-	-	-	-	-	-	-	폐지
	앉음벽	⑫	신사649-9	11.86	11.86	-	-	-	-	2	-	-	-	-	-	-	-	-	-	폐지
	플랜터	⑬	신사649-9	(61.8)	(61.8)	-	-	-	-	12	-	-	-	-	-	-	-	-	-	폐지
	연식의자	⑭	신사649-9	(17.4)	(17.4)	-	-	-	-	1	-	-	-	-	-	-	-	-	-	폐지
	조형플랜터	⑮	신사649-9	(35.93)	(35.93)	-	-	-	-	1	-	-	-	-	-	-	-	-	-	폐지
	전통담장	-	-	-	-	-	-	-	-	-	⑰	신사649-9	3.04	3.04	-	-	-	-	1	신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소계	-	-	855.18	855.18	-	-	-	-	39	-	-	183.97	183.97	-	-	-	-	39	감 671.21㎡
장의자	⑯	신사649-9	(57.27)	(57.27)	-	-	-	-	39	⑯	신사649-9	(57.27)	(57.27)	-	-	-	-	39	
휴게공간	바	신사649-9	855.18	855.18	-	-	-	-	-	바	신사649-9	183.97	183.97	-	-	-	-	-	감 671.21㎡
휴게공간	바-1	신사649-9	(127.66)	(127.66)	-	-	-	-	-	바-1	신사649-9	(127.66)	(127.66)	-	-	-	-	-	
휴게공간	바-2	신사649-9	(22.21)	(22.21)	-	-	-	-	-	바-2	신사649-9	(22.21)	(22.21)	-	-	-	-	-	
휴게공간	바-3	신사649-9	(34.10)	(34.10)	-	-	-	-	-	바-3	신사649-9	(34.10)	(34.10)	-	-	-	-	-	
휴게공간	바-4	신사649-9	(57.73)	(57.73)	-	-	-	-	-	-	-	-	-	-	-	-	-	-	폐지
휴게공간	바-5	신사649-9	(180.37)	(180.37)	-	-	-	-	-	-	-	-	-	-	-	-	-	-	폐지
휴게공간	바-6	신사649-9	(433.11)	(433.11)	-	-	-	-	-	-	-	-	-	-	-	-	-	-	폐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내시설	소계	-	-	255.22	255.22	-	-	-	-	9	-	-	255.22	255.22	-	-	-	-	9	
	체력단련장	나	신사649-9	255.22	255.22	-	-	-	-	9	나	신사649-9	255.22	255.22	-	-	-	-	9	
편의시설	소계	-	-	1,212.54	1,212.54	-	1동	1,085.50	4,451.46	1	-	-	1,283.84	1,283.84	-	1동	828.62	8,177.39	1	지하 71.30㎡
	전시장	1	신사649-9	1,186.16	1,186.16	-	1동	1,085.50	4,451.46	-	1	신사649-9	1,257.46	1,257.46	-	1동	828.62	8,177.39	-	지하 71.30㎡
	동상	다	신사649-9	26.38	26.38	-	-	-	-	1	다	신사649-9	26.38	26.38	-	-	-	-	1	
	소계	-	-	36.70	36.70	-	-	-	-	4	-	-	191.25	191.25	-	1동	27.63	27.63	4	지하 154.55㎡
	화장실	-	-	-	-	-	-	-	-	-	2	신사649-9	154.55	154.55	-	1동	27.63	27.63	-	지하 154.55㎡
	음수전	③	신사649-9	36.70	36.70	-	-	-	-	3	③	신사649-9	36.70	36.70	-	-	-	-	3	
	시계탑	④	신사649-9	-	-	-	-	-	-	1	④	신사649-9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	774.57	774.57	-	-	-	-	33	-	-	774.57	774.57	-	-	-	-	33	
	묘소	마	신사649-9	757.23	757.23	-	-	-	-	1	마	신사649-9	757.23	757.23	-	-	-	-	1	
	안내판	⑤	신사649-9	-	-	-	-	-	-	4	⑤	신사649-9	-	-	-	-	-	-	4	
	가로등	-	신사649-9	-	-	-	-	-	-	20	-	신사649-9	-	-	-	-	-	-	20	
	휴지통	-	신사649-9	-	-	-	-	-	-	1	-	신사649-9	-	-	-	-	-	-	1	
	기념비	⑥	신사649-9	-	-	-	-	-	-	2	⑥	신사649-9	-	-	-	-	-	-	2	
	석 등	⑦	신사649-9	-	-	-	-	-	-	4	⑦	신사649-9	-	-	-	-	-	-	4	
	계양대	⑧	신사649-9	17.34	17.34	-	-	-	-	1	⑧	신사649-9	17.34	17.34	-	-	-	-	1	
	담장	-	신사649-9	-	-	-	9.77M	-	-	-	-	-	-	-	-	-	-	-	-	폐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 계	-	-	22,145.68	-	-	-	-	-	-		-	22,601.93	-	-	-	-	-	-	지상 456.25㎡
	녹지 및 기타	-	신사649-9	22,145.68	-	-	-	-	-	-		신사649-9	22,601.93	-	-	-	-	-	-	지상 456.25㎡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20.65	2,934.27				
변경					953.09	3,355.46				
당초	소로	소 계			920.65	2,934.27				
변경					953.09	3,355.46				
당초		3	1	6	59.9	373.77	부진입로	광장 가-1	가-2	
변경		3	1	6.3	96.13	613.50	부진입로	가-6	가-2	
당초		3	2	6.5	26.59	172.84	산책로	소로 3-1	가-3	
당초		3	3	3.5	140.51	487.68	산책로	소로 10-3	가-2	
변경		3	3	3.5	154.19	553.51	산책로	소로 3-10	가-3	
당초		3	4	3.2	21.5	74.8	산책로	전시장	가-3	
변경		3	4	3.5	34.45	120.33	산책로	소로 3-10	가-3	
당초		3	6	3.5	62.18	217.62	산책로	소로 3-7	소로 3-7	
변경		3	6	3.5	58.00	191.74	산책로	소로 3-7	소로 3-7	
당초		3	7	3.5	167.91	554.14	산책로	가-1	소로 3-1	
변경		3	7	3.5	168.44	565.41	산책로	소로3-1	소로3-1	
당초		3	8	2.5	152.00	380.00	산책로	①	소로 3-3	
당초		3	9	3	13.06	39.17	산책로	소로 3-7	대로	
당초		3	10	3.5	74.17	226.43	산책로	가-1	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3	10	3.8	79.30	323.63	산책로	소로 3-1	가-4	
당초		3	11	3	24.5	79.44	산책로	소로-10	바-6	
폐지		3	11	-	-	-	-	-	-	
당초		3	12	2.35	32.9	77.32	산책로	소로-11	가-5	
폐지		3	12	-	-	-	-	-	-	
당초		3	13	3.0	22.7	68.15	산책로	소로-3	대로	
당초		3	14	3.0	8.5	26.86	산책로	대로	바-6	
폐지		3	14	-	-	-	-	-	-	
당초		3	15	1.3	114.23	156.05	산책로	소로-7	①	
변경		3	15	1.5	81.25	136.98	산책로	소로3-18	소로3-1	
신설		3	16	2.0	12.06	24.11	산책로	대로	소로3-15	
신설		3	17	2.0	13.30	26.60	산책로	소로3-15	소로3-7	
신설		3	18	3.0	41.62	139.49	산책로	가-5	소로3-7	

조성계획도(변경전)

도산근린공원

■ 토지이용계획 범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반시설	4,367.04	14.64	
조경시설	169.57	0.57	
휴양시설	855.18	2.88	
운동시설	255.22	0.86	
교양시설	1,212.54	4.06	
편의시설	36.7	0.12	
관리시설	774.57	2.6	
녹지 및 기타	22,145.68	74.27	
계	29,816.50	100.00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29,816.50	시설율 25.73%	
기반시설		소 계	4,367.04		
	가-1	진입광장1	684.79	-	
	가-2	광장1	136.03	-	
	가-3	광장2	534.98	-	
	가-5	광장3	76.97	-	
		도로	2,934.27	-	
조경시설		소 계	169.57	3개소	
	①	파고라	157.71	3개소	
	②	평의자	-	6개소	
	③	조형열주	-	1개소	
	④	수경시설	-	1개소	
	⑫	앉음벽	11.86	2개소	
	⑬	플랜터	(61.8)	1개소	
	⑭	연식의자	(17.4)	1개소	
	⑮	조형플랜터	(35.93)	1개소	
휴양시설		소 계	855.18	39개소	
	⑬	장의자	(57.27)	39개소	
	바-1	휴게공간1	127.66	-	
	바-2	휴게공간2	22.21	-	
	바-3	휴게공간3	34.10	-	
	바-4	휴게공간4	57.73	-	
	바-5	휴게공간5	180.37	-	
	바-6	휴게공간6	433.11	-	
운동시설		소 계	255.22	9개소	
	나	체력단련장	255.22	9개소	
교양시설		소 계	1,212.54	1개소	
	1	전시장	1,186.16	-	
	다	동상	26.38	1개소	
편의시설		소 계	36.70	4개소	
	⑨	음수전, 수도	36.70	3개소	
	⑩	시계탑	-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774.57	33개소	
	마	묘소	757.23	1개소	
	⑤	안내판	-	4개소	
		가로등	-	20개소	
		휴지통	-	1개소	
	⑥	기념비	-	2개소	
	⑦	석등	-	4개소	
	⑧	계양대	17.34	1개소	
		담장	-	9.77M	
녹지 및 기타			22,145.68	녹지율 74.27%	
		녹지	22,145.68	-	

조성계획도(변경후)

도 산 근 린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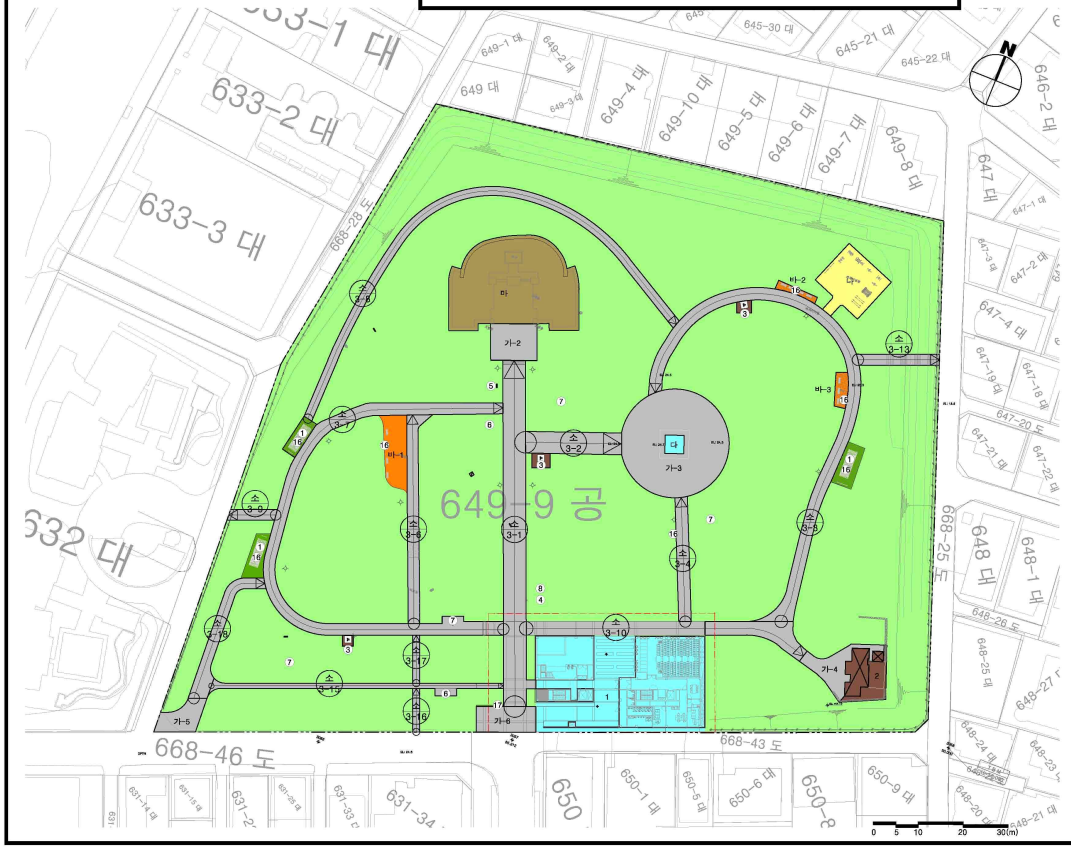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범례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반 시 설	4,350.36	14.59	
조 경 시 설	175.36	0.59	
휴 양 시 설	183.97	0.62	
운 동 시 설	255.22	0.86	
교 양 시 설	1,283.84	4.30	
편 익 시 설	191.25	0.64	
관 리 시 설	774.57	2.60	
녹지 및 기타	22,601.93	75.80	
계	29,816.50	100.00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29,816.50	시설율 24.20%	
기반시설		소 계	4,350.36		
	가-2	광장1	136.03	-	
	가-3	광장2	534.98	-	
	가-4	광장3	117.97	-	
	가-5	광장4	87.61	-	
	가-6	광장5	118.31	-	
		도로	3,355.46	-	
조경시설		소 계	175.36	4개소	
	①	파고라	172.32	3개소	
	⑰	전통담장	3.04	1개소	
휴양시설		소 계	183.97	3개소	
	⑱	장의자	(57.27)	3개소	
	바-1	휴게공간1	127.66	-	
	바-2	휴게공간2	22.21	-	
	바-3	휴게공간3	34.10	-	
운동시설		소 계	255.22	2개소	
	나	체력단련장	255.22	2개소	
교양시설		소 계	1,283.84	1개소	
	1	전시장	1,257.46		
	다	동상	26.38	1개소	
편익시설		소 계	191.25	4개소	
	2	화장실	154.55		
	⑭	음수전 수도	36.70	2개소	
	⑮	시계탑	-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774.57	3개소	
	마	묘소	757.23	1개소	
	⑨	안내판	-	4개소	
		가로등	-	2개소	
		휴지통	-	1개소	
	⑯	기념비	-	2개소	
	⑦	석등	-	4개소	
	⑧	게양대	17.34	1개소	
녹지 및 기타		소 계	22,601.93	녹지율 75.80%	
		녹지	22,601.93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6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8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19.)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2011. 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2호(2011. 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 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 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호(2017. 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8호(2017. 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4호(2017. 8.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0호(2018.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 3.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9호(2020.12.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2호(2021. 8.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2021.11.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5호(2022.1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호(2023. 1.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2호(2024. 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호(2025. 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3호(2025. 3.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2호(2025.10. 2.)로 변경 결정 고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정 목적
			기 정	증감	변 경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519.9	-	275,519.9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31년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목표연도 2029년 → 2031년으로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 변경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5,519.9	-	275,519.9	100.0	-
업무	소 계	45,529.8	-	45,529.8	16.5	-
	일반업무	17,335.1	-	17,335.1	6.3	-
	업무복합	28,194.7	-	28,194.7	10.2	-
상업	소 계	130,362.8	-	130,362.8	47.3	-
	판 매	15,451.1	-	15,451.1	5.6	-
	일반상업	50,604.5	-	50,604.5	18.4	-
	근린상업	24,168.8	-	24,168.8	8.8	-
	주상복합	40,138.4	-	40,138.4	14.6	-
주 거		36,923.1	-	36,923.1	13.4	-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62,704.2	-	62,704.2	22.8	-
	공 원	2,333.1	-	2,333.1	0.8	-
	공공공지	222.6	-	222.6	0.1	-
	도 로	59,668.2	-	59,668.2	21.7	-
	경 로 당	171.3	-	171.3	0.1	-
	사회복지시설	309.0	-	309.0	0.1	-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합 계		기정	2,851	3,976	1,349	408	2,219	9,943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4	기정	360	670	499	171	-	1,675
	천호8	기정	196	520	363	157	-	1,300
	소 계	기정	556	1,190	862	328	-	2,975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존치관리구역	기정	2,295	2,786	487	80	2,219	6,968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66,083.30	증) 1.05	66,084.35	-
도로		59,668.20	-	59,668.20	-
공원·광장·공공공지·녹지		2,555.7	-	2,555.7	-
공공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676.60	감) 10.68	1,665.92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청사	1,277.40	-	1,277.40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905.40	증) 11.73	917.13	대지지분: 기부채납 / 건물: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 공공시설(공공청사) 연면적 5,665.2㎡ 설치 및 조성(기부채납)
※ 공공시설(공공청사)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0.)」의 공사비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2021. 7. 5.) 기준 적용
※ 천호8구역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4.)」의 공사비 기준 변경 적용(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서울특별시, 2025. 1.)」의 대지지분 산정방식 적용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 기정 1,676.6㎡(대지지분 355.9㎡, 환산부지면적 1,320.7㎡) → 변경 1,665.92㎡(대지지분 329.96㎡, 환산부지면적 1,335.96㎡)
  - 공공임대주택 : 기정 905.4.㎡(대지지분) → 변경 917.13㎡(대지지분)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사회복지시설 면적(대지지분 면적, 환산부지 면적) 변경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면적 변경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 증가 및 대지지분면적, 환산부지면적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 •공공임대주택 규모, 세대수 변경 없이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변경)

구분			면적(㎡)	획지면적(㎡)	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비고
					계	도로	공원·광장·공공공지·녹지	공공시설(대지지분+건축물)	공공임대주택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기반시설 내			
민간부문	천호4촉진	기정	17,484.4	13,756.7	3,727.7	2,593.7	1,134.0	-	-	19.3	-	3,708.4	21.2	
	천호8촉진	기정	7,613.0	6,305.0	3,890.0	1,308.0	-	1,676.6	905.4	355.0	447.0	3,088.0	40.6	
		변경	7,613.0	6,305.0	3,891.1	1,308.0		1,665.9	917.1	355.0	447.0	3,089.1	40.6	
	계	기정	25,097.4	20,061.7	7,617.7	3,901.7	1,134.0	1,676.6	905.4	374.3	447.0	6,796.4	27.1	존치관리구역제외
		변경	25,097.4	20,061.7	7,618.8	3,901.7	1,134.0	1,665.9	917.1	374.3	447.0	6,797.5	27.1	
공공부문	존치관리	기정	204,108.9	196,247.6	4,009.5	4,009.5	-	-	-	-	-	-	-	존치관리구역 통합(국공유지 제외)
	구역 외	기정	2,843.0	-	2,843.0	2,843.0	-	-	-	-	-	-	-	
	계	기정	206,951.9	196,247.6	6,852.5	6,852.5								

※ 천호8구역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및 조성(기부채납)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4.)」의 공사비 기준 변경 적용(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서울특별시, 2025. 1.)」의 대지지분 산정방식 적용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기정 1,676.6㎡(대지지분 355.9㎡, 환산부지면적 1,320.7㎡) → 변경 1,665.9㎡(대지지분 329.96㎡, 환산부지면적 1,335.96㎡)
  - 공공임대주택: 기정 905.4.㎡(대지지분) → 변경 917.1㎡(대지지분)

※ 공공부문 기반시설 면적은 존치지역 내 기반시설 중 확보가 필요한 면적(사유지)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사회복지시설 면적(대지지분면적, 환산부지면적) 변경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변경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 증가 및 대지지분 및 환산부지면적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 •공공임대주택 규모, 세대수 변경 없이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 변경

나) 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해당구역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 인가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해당구역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 인가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천호1구역	2017년	2018년	2020년	천호1구역	2017년	2018년	2020년	-
2단계	천호4구역 성내5구역 성내3구역	2017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24년 2025년 2024년	천호4구역 성내5구역 성내3구역	2017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24년 2025년 2024년	-
3단계	천호8구역	2024년	2027년	2029년	천호8구역	2024년	2027년	2031년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입주시기 2029년 → 2031년으로 변경	사업 추진계획(일정) 조정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천호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천호8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천호동 166-4 일대	7,613	-	7,613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7,613.0	-	7,613.0	100.0	
택 지 (획 지)	소 계	6,305.0	-	6,305.0	82.8	
	획 지	6,305.0	-	6,305.0	82.8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08.0	-	1,308.0	17.2	
	도 로	1,308.0	-	1,308.0	17.2	

3)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613	-	7,613	100.0	
일반상업지역	7,613	-	7,613	100.0	

○ 용도지구(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 점		
기정	중로	1	천호2	8~ 20	보조간선	1,065 (101)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서울시고시 제2021-611호. (' 21.11. 4.)	
기정	중로	1	천호3	20	보조간선	195 (131)	광로 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서울시고시 제2021-611호. (' 21.11. 4.)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 점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4 (54)	천호동 450-23	천호동 566-10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 연장 내 ( )는 천호8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임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 복지 시설	천호동 166-4 일대	1,695.37	감) 49.99	1,645.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 ('21.11.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 결정)

※ 1,645.38㎡는 수평투영면적임
※ 사회복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지하1층, 지상 1·2·3층의 전용면적과 설비공간을 투영한 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만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및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은 제외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에 표기된 기정 면적(연면적)은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검토 업무 매뉴얼(서울시 도시계획국. 2022.8.)」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 복지 시설	천호동 166-4 일대	층	지상3층: 475.70 지상2층: 1,772.50 지상1층: 959.30 지하1층: 851.50	증) 58.22 증) 6.14 증) 128.41 증) 24.77	지상3층: 533.92 지상2층: 1,778.64 지상1층: 1,087.71 지하1층: 87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 ('21.11.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1,695.37	감) 49.99	1,645.3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층별(지하1층, 지상1·2·3층) 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위치 및 규모 변경 – 위 치 : 지하1층~지상3층 일부 – 수평투영면적 : 1,695.37㎡ → 1,645.38㎡ (감 45.99㎡, 기계실 · 전기실 · 지하주차장 및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은 제외) – 연면적 : 4,059.00㎡ → 4,276.54㎡(증 217.54㎡,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협의부서 의견 반영으로 용도별 위치 조정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으로 주차장 동선 및 면적 변경 •소방성능위주설계 의견 반영으로 지상층 기계실(소방 제연 휀룸 설치) 면적 증가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083.40	감) 246.16	1,837.24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천호8재정비 촉진구역 내	330.30	증) 4.81	335.11	
	어린이놀이터		800.00	–	800.00	
	어린이집		330.00	증) 1.38	331.38	
	주민운동시설		100.00	–	100.00	
	작은도서관		160.00	증) 0.59	160.59	
	다함께돌봄센터		330.00	감) 255.54	74.46	
	맘스카페		33.10	증)2.60	35.70	

※ 주민휴게시설 → 다함께돌봄센터, 커뮤니티시설 → 맘스카페로시설 변경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건축계획 변경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호8 재정비 촉진구역	7,613	–	6,305	천호동 450-25일대	2	–	–	2	–	–

※ 기정표기 단순 오기 정정(철거후 신축 : 3 → 2)

○ 용적률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7,613㎡	6,305㎡	3,890.0㎡	355㎡	447㎡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890.0㎡ – 355㎡ – 447㎡ = 3,088.0㎡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3,890.0㎡) ▸ 도로 무상귀속 면적: 1,308㎡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면적: 1,676.6㎡(대지지분 355.9㎡+환산부지면적 1,320.7㎡) ▸ 공원 대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905.4㎡(건물: 표준건축비 매입)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520%				
최대용적률	○ 최대용적률=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토지+0.7×α 현금·건축물) ▸ 대상지 · 기준용적률 520% / 최대용적률 800% · α 토지 = 1,767.3㎡ ÷ 5,043.7㎡ = 0.3504 · α 현금·건축물 = 1,320.7㎡ ÷ 5,043.7㎡ = 0.2619 ▸ 최대용적률 = 520.0% × (1+(1.3×(1×0.3504)+(0.7×0.2619)) = 852.19% ≥ 건축계획 799.67%				
	○ α 토지 = $\frac{\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text{국공유지면적}}{\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 현금·건축물 = $\frac{\text{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지분과 공원 대체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적용(서울특별시, 2025. 1.)

– 사회복지시설 대지지분 = (비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 (사회복지시설전용면적 ÷ 비주거전체전용면적) × 대지면적
= (8,137.750㎡ ÷ 77,076.553㎡) × (2,570.910㎡ ÷ 4,808.690㎡) × 6,305㎡ = 355.9㎡

– 공원대체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주거시설연면적 ÷ 전체연면적)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 주거시설전용면적) × 대지면적
= (68,938.808㎡ ÷ 77,076.553㎡) × (4,980.500㎡ ÷ 31,020.000㎡) × 6,305㎡ = 905.4㎡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 면적은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24년) 노인복지센터(3,000㎡ ~ 5,000㎡) 공사비를 적용하였으며, 부지가액은 공시지가의 2배 적용. 공시지가는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내 평균 공시지가(2024. 1. 기준) 적용함.

– 환산부지면적(㎡) = 공사비(원/㎡) × 공공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4,390,000원/㎡ × 4,059.0㎡ ÷ 13,492,000원/㎡ = 1,320.7㎡

– 부지가액(공시지가의 2배 적용) : 평균공시지가(2024.01. 기준) × 2배 = 6,746000원/㎡ × 2 = 13,492,000원/㎡

– 평균공시지가 =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총공시지가 ÷ 촉진구역 면적 = 51,356,844,000원 ÷ 7,613㎡ = 6,746,000원/㎡

–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7,613㎡	6,305㎡	3,891.05㎡	355㎡	447㎡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891.05㎡ – 355㎡ – 447㎡ = 3,089.05㎡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3,891.05㎡) ▸ 도로 무상귀속 면적: 1,308㎡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면적: 1,665.92㎡(대지지분 329.96㎡+환산부지면적 1,335.96㎡) ▸ 공원 대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917.13㎡(건물: 표준건축비 매입)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520%				
최대용적률	○ 최대용적률=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토지+0.7×α 현금·건축물) ▸ 대상지 · 기준용적률 520% / 최대용적률 800% · α 토지 = 1,753.09㎡ ÷ 5,057.91㎡ = 0.3466 · α 현금·건축물 = 1,335.96㎡ ÷ 5,057.91㎡ = 0.2641 ▸ 최대용적률 = 520.0% × (1+(1.3×(1×0.3466)+(0.7×0.2641)) = 850.44% ≥ 건축계획 799.52%				
	○ α 토지 = $\frac{\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text{국공유지면적}}{\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 현금·건축물 = $\frac{\text{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사회복지시설 대지지분과 공원 대체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적용(서울특별시, 2025.01.)
– 사회복지시설 대지지분 = (비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 (사회복지시설전용면적 ÷ 비주거전체전용면적) × 대지면적
= (8,352.82㎡ ÷ 83,431.996㎡) × (2,247.03㎡ ÷ 4,298.7㎡) × 6,305㎡ = 329.96㎡
– 공원대체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주거시설연면적 ÷ 전체연면적)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 주거시설전용면적) × 대지면적
= (75,079.174㎡ ÷ 83,431.996㎡) × (4,973.632㎡ ÷ 30,769.233㎡) × 6,305㎡ = 917.13㎡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 면적은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24년) 노인복지센터(3,000㎡ ~ 5,000㎡) 공사비를 적용하였으며, 부지가액은 공시지가의 2배 적용. 공시지가는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내 평균 공시지가(2025. 1. 기준) 적용함.
– 환산부지면적(㎡) = 공사비(원/㎡) × 공공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4,390,000원/㎡ × 4,276.54㎡ ÷ 14,052,818원/㎡ = 1,335.96㎡
– 부지가액(공시지가의 2배 적용) : 평균공시지가(2025.01. 기준) × 2배 = 7,026,409원/㎡ × 2 = 14,052,818원/㎡
– 평균공시지가 =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총공시지가 ÷ 촉진구역 면적 = 53,492,052,000원 ÷ 7,613㎡ = 7,026,409원/㎡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7,613	-	6,305	천호동 166-4 일대	주거, 근린생활, 사회복지	60이하	기준520 /최대800	14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일반분양) : 121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공공임대) : 35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일반분양) : 122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공공임대) : 34세대 - 전용면적 45㎡ 이하(일반분양) : 120세대 - 전용면적 45㎡ 이하(공공임대) : 88세대 ◦ 건설비율(세대수) - 일반분양 : 69.8% - 임대분양: 30.2% ◦ 건립예정세대수 : 520세대
	변경	◦ 건립규모 - 전용면적 115㎡이하(일반분양) : 4세대(증 4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일반분양) : 113세대(감 8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공공임대) : 35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일반분양) : 114세대(감 8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공공임대) : 34세대 - 전용면적 45㎡ 이하(일반분양) : 132세대(증 12세대) - 전용면적 45㎡ 이하(공공임대) : 88세대 ◦ 건설비율(세대수) - 일반분양 : 69.8% - 임대분양 : 30.2% ◦ 건립예정세대수: 52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건축한계선 : 중로1-천호3 3m(보도) - 전면공지 : 중로1-천호3 3m(보도) ◦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기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 중로1-천호3 일부구간, 소로2-6 일부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구간 ◦ 진황도로변 공개공지(900㎡ 이상) 조성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은 보도형 공개공지로 조성하고 연결공지는 공개공지1, 공개공지2와 일체형으로 조성 ◦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필로티구조 : 폭원6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로 지정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일반분양주택 주택 규모별 세대수 변경 (전체 세대수 변경 없음)	건축계획 변경

○ 건축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7,613		
대지면적(㎡)		6,30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0,419.0		
건축면적(㎡)		3,648.9		
용적률(%)		799.67	800%이하	
건폐율(%)		57.87	60%이하	
주차대수	지상	–	– 법정 주차대수(490대) ·공공시설 : 8.77대 ·근린생활시설 : 13.35대 ·공동주택 : 466.96대	– 계획 주차대수(544대) ·공공시설 : 8대 ·근린생활시설 : 12대 ·공동주택 : 524대
	지하	544		
	계	544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7,613	
대지면적(㎡)	6,30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0,409.91(감 9.09)	
건축면적(㎡)	3,648.85	
용적률(%)	799.52(감 0.15)	800%이하
건폐율(%)	57.87	60%이하

구 분		내 용	비 고	
주차대수	지상	-	- 법정 주차대수(490대) ·공공시설 : 8.77대 ·근린생활시설 : 13.35대 ·공동주택 : 466.96대	- 계획 주차대수(707대) ·복지시설 : 9대 ·근린생활시설 : 13대 ·공동주택 : 685대
	지하	707(증 163)		
	계	707(증 163)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용적률산정연면적 변경(50,419.0㎡ → 50,409.91	건축계획 변경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계획기준	· 공공임대주택 건설 ▶ 공원(소공원, 872㎡) 폐지: 공공임대주택 대체, 전용면적 59㎡~85㎡이하 ▶ 주거복합비율 변경(주거: 60% 이하 → 90% 이하):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전용면적 45㎡ 이하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520세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157세대 ※ 공원 대체(69세대) + 주거복합비율 변경(88세대) - 전체 연면적 77,076.553㎡의 24.7%에 해당하는 연면적 19,026.076㎡ 공급		
건립규모(전용면적)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 계	157	30.2	100.0
40㎡ 이하	69	13.3	43.9
45㎡ 이하	19	3.7	12.1
60㎡ 이하	34	6.5	21.7
85㎡ 이하	35	6.7	22.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임대 선추첨, 후분양)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 변경

계획기준	· 공공임대주택 건설 ▶ 공원(소공원, 872㎡) 폐지: 공공임대주택 대체, 전용면적 59㎡~85㎡이하 ▶ 주거복합비율 변경(주거: 60% 이하 → 90% 이하):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전용면적 45㎡ 이하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520세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157세대 ※ 공원 대체(69세대) + 주거복합비율 변경(88세대) - 전체 연면적 75,079.174㎡의 27.8%에 해당하는 연면적 20,837.280㎡ 공급		
건립규모(전용면적)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 계	157	30.2	100.0
40㎡ 이하	69	13.3	43.9
45㎡ 이하	19	3.7	12.1
60㎡ 이하	34	6.5	21.7
85㎡ 이하	35	6.7	22.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임대 선추첨, 후분양)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임대주택 연면적 변경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 및 주택 규모별 세대수 변경없음)	건축계획 변경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생태 면적률(관련규정에 따름)
13)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방재계획(변경없음)
20. 정보화계획(변경없음)
21. 에너지 순환계획(변경없음)
22.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변경없음)

2) 지하공공보도시설(변경없음)

3) 공원(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5)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①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426-2일대	128	-	128	서울시고시 제2012-139제 (12.05.31.)	-
기 정	②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426-6일대	181	-	181	서울시고시 제2012-139호 (12.05.31.)	-
변 경	-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166-4 일대	(1,676.6)	(-10.68)	(1,665.92)	서울시고시 제2021-611호 (21.11.4.)	-

※ ( )는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1,665.92㎡)은 공공시설 기부채납(대지지분 329.96㎡+환산부지면적 1,335.96㎡) 면적임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사회복지시설 면적(대지지분면적, 환산부지면적) 변경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 증가 및 대지지분 및 환산부지면적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변경

6)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 복지 시설	천호동 166-4 일대	층	지상3층: 475.70 지상2층: 1,772.50 지상1층: 959.30 지하1층: 851.50	증) 58.22 증) 6.14 증) 128.41 증) 24.77	지상3층: 533.92 지상2층: 1,778.64 지상1층: 1,087.71 지하1층: 87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 (' 21.11.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1,695.37	감) 49.99	1,645.3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층별(지하1층, 지상1·2·3층) 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위치 및 규모 변경 - 위 치 : 지하1층~지상3층 일부 - 수평투영면적 : 1,695.37㎡ → 1,645.38㎡ (감 45.99㎡, 기계실 · 전기실 · 지하주차장 및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은 제외) - 연면적 : 4,059.00㎡ → 4,276.54㎡(증 217.54㎡,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협의부서 의견 반영으로 용도별 위치 조정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으로 주차장 동선 및 면적 변경 •소방성능위주설계 의견 반영으로 지상층 기계실(소방 제연 휀룸 설치) 면적 증가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천호8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 정	-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동 166-4 일대	7,613	-	7,613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소 계	7,613	-	7,613	100.0	-
일반상업지역	7,613	-	7,613	100.0	-

○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없음)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 점		
기정	중로	1	천호2	8~ 20	보조간선	1,065 (101)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서울시고시 제2021-611호.(21.11.4.)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 점		
기정	중로	1	천호3	20	보조간선	195 (131)	광로 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서울시고시 제2021-611호.(21.11.4.)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4 (54)	천호동 450-23	천호동 566-10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 연장 내 ( )는 천호8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임

○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166-4 일대	층	지상3층: 475.70 지상2층: 1,772.50 지상1층: 959.30 지하1층: 851.50	증) 58.22 증) 6.14 증) 128.41 증) 24.77	지상3층: 533.92 지상2층: 1,778.64 지상1층: 1,087.71 지하1층: 87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 ('21.11.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1,695.37	감) 49.99	1,645.3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층별(지하1층, 지상1·2·3층) 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위치 및 규모 변경 - 위 치 : 지하1층~지상3층 일부 - 수평투영면적 : 1,695.37㎡ → 1,645.38㎡ (감 45.99㎡, 기계실 · 전기실 · 지하주차장 및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은 제외) - 연면적 : 4,059.00㎡ → 4,276.54㎡(증 217.54㎡,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협의부서 의견 반영으로 용도별 위치 조정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으로 주차장 동선 및 면적 변경 •소방성능위주설계 의견 반영으로 지상층 기계실(소방 제연 휀룸 설치) 면적 증가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	7,613	-	천호동 166-4 일대	6,305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가구	용 도	비 고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제109조 사회복지시설	-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공동주택 등	60% 이하	-

·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최대용적률	
공동주택 등	520%이하	-	800%이하	-

· 용적률 완화사항(변경없음)

- 최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 · 건축물)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공동주택 등	280.0%	-	도로+공공시설(대지지분+건축물)

·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 분		높 이	비 고
공동주택 등	기정	140m 이하(최고층수 44층 이하)	-

·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 용 도 로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중로1-천호3 (천호대로163길)	3m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마) 경관계획(변경없음)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방향성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 되도록 배치 ·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배치 권장	
건물 진출입구	·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 전체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저층부 외관	구역 전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구역 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개방감	· 인접 건축물(강동 팰리스)과의 통경축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
조명계획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의 야간 조명설치 계획 ·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한 야간조명 계획
스카이라인	· 주변지역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중로1-천호2 (진황도로변)	· 900㎡ 이상 조성 - 결정도 상 연결공지는 공개공지①, 공개공지②와 일체형으로 조성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 보도형 공개공지	
전면공지	중로1-천호3 (천호대로163길)	· 3m(보도형)	

○ 대지내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 필로티구조: 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천호2 (진황도로변)	·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중로1-천호3 (천호대로163길)	· 대상지 진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소로 2-6	· 대상지 진출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통행체계	대상지 연접도로	· 양방통행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건립규모(전용면적)	전체세대수	전체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 계	520	100.0	157	30.2	100.0
40㎡ 이하	140	26.9	69	13.3	43.9
45㎡ 이하	68	13.1	19	3.7	12.1
60㎡ 이하	156	30.0	34	6.5	21.7
85㎡ 이하	156	30.0	35	6.7	22.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임대 선추첨, 후분양)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변경없음)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중로1-천호3(천호대로163길) :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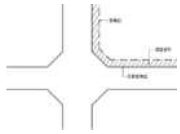
보도형전면공지	· '전면공지' 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중로1-천호3(천호대로163길) : 보도형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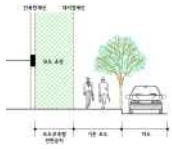
공개공지	· '공개공지' 는 대지 안에 시민의 보행 · 휴식 · 녹지공간의 연속적 조성 등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 진황도로변 공개공지(900㎡ 이상) 조성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은 보도형 공개공지로 조성하고 연결공지는 공개공지1, 공개공지2와 일체형으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 대상지와 연접한 구립어린이집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필로티 구조: 최소 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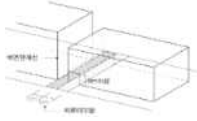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라. 기타사항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따름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27)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 02-3425-605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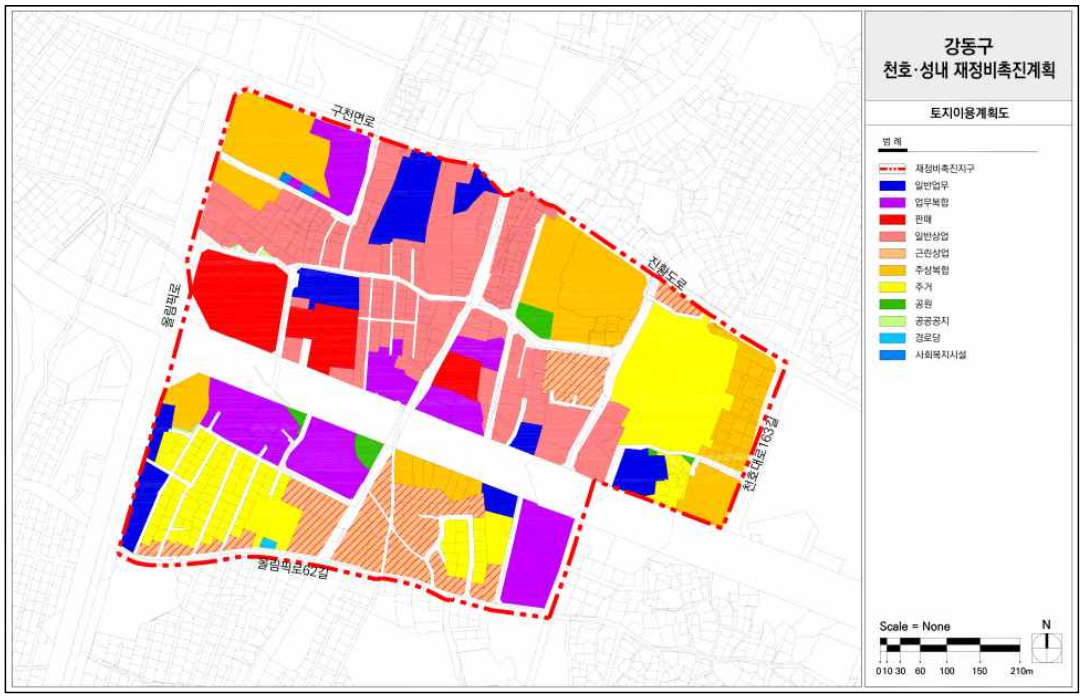

■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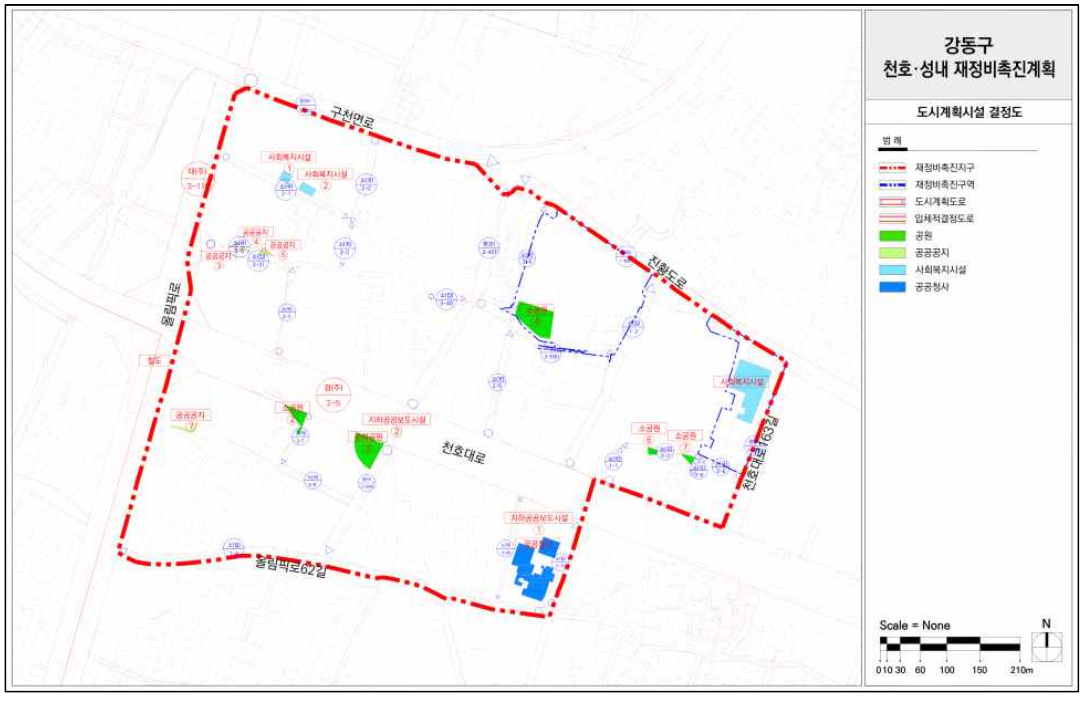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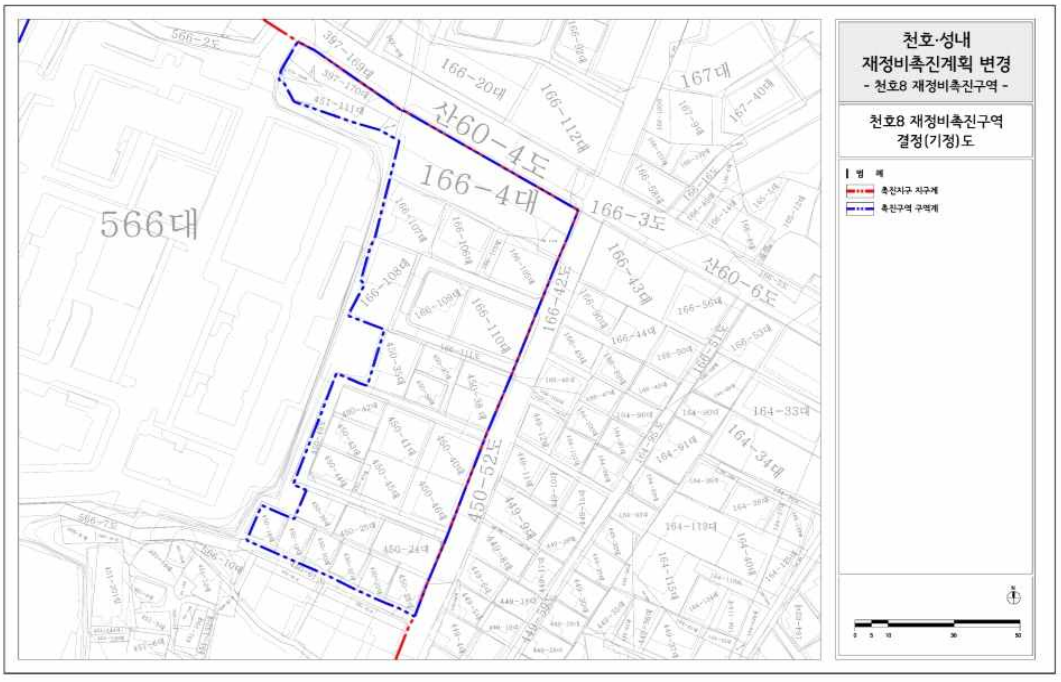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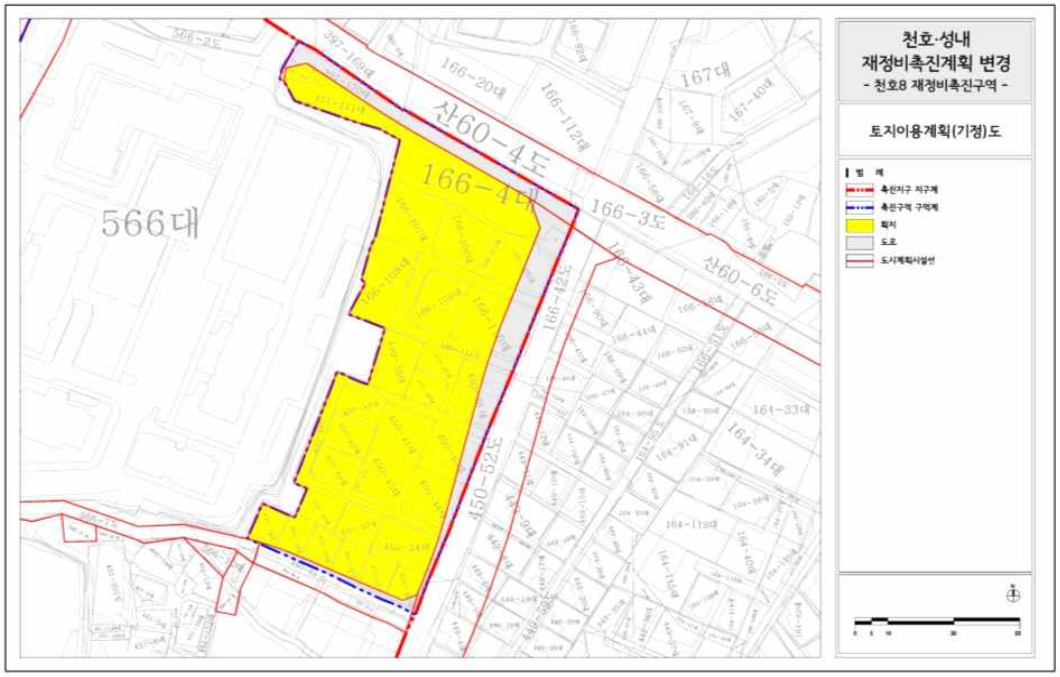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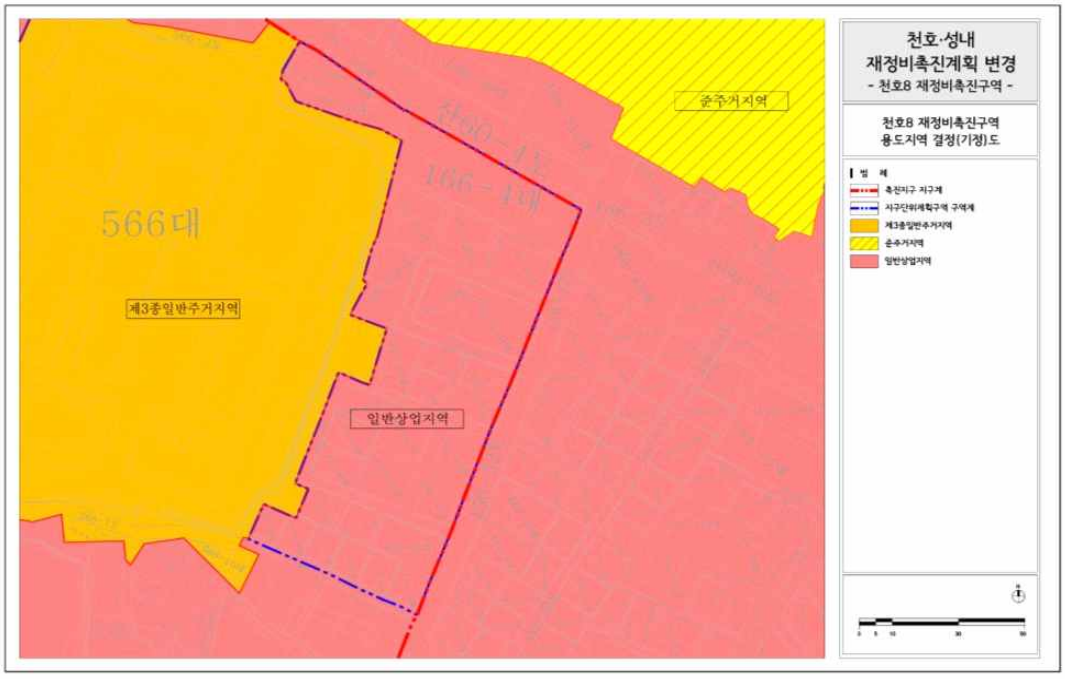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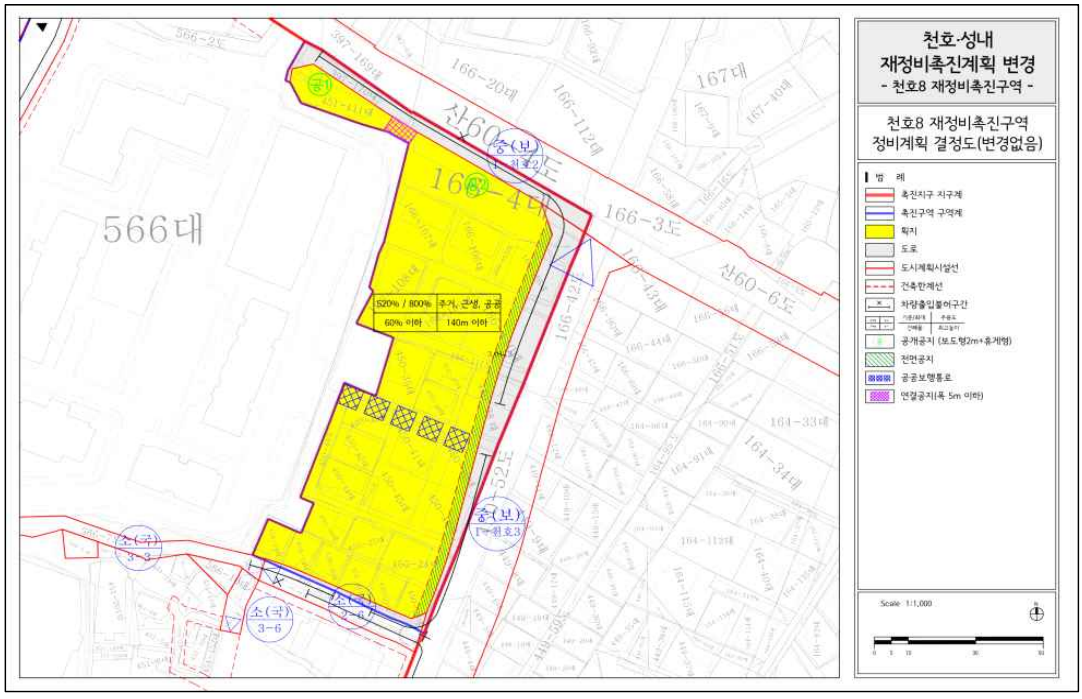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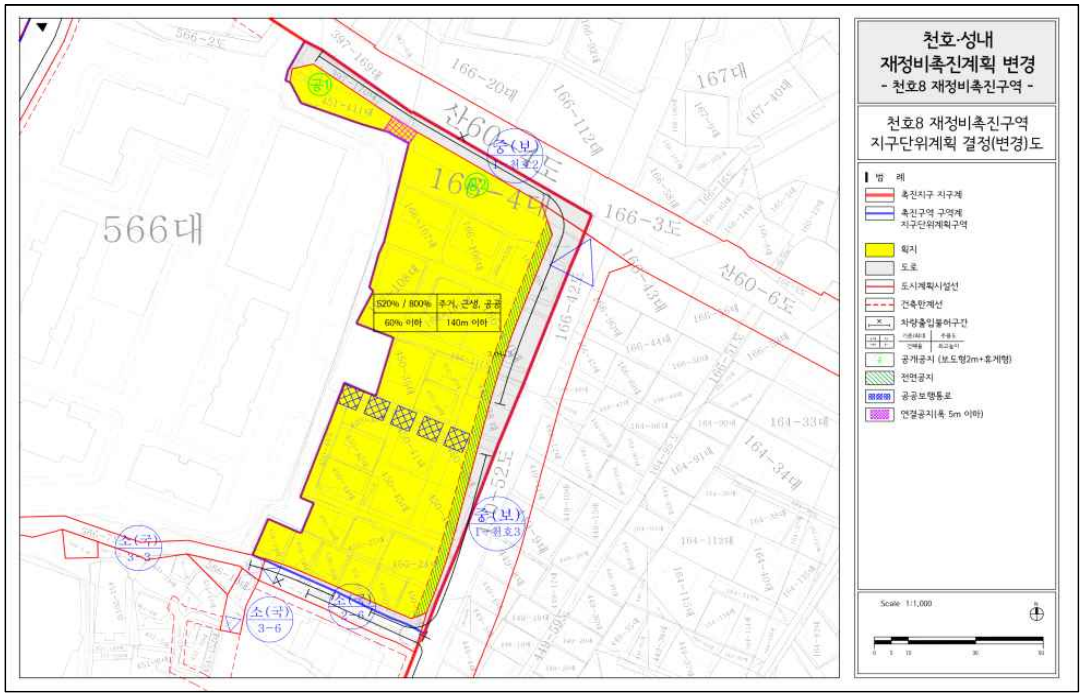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대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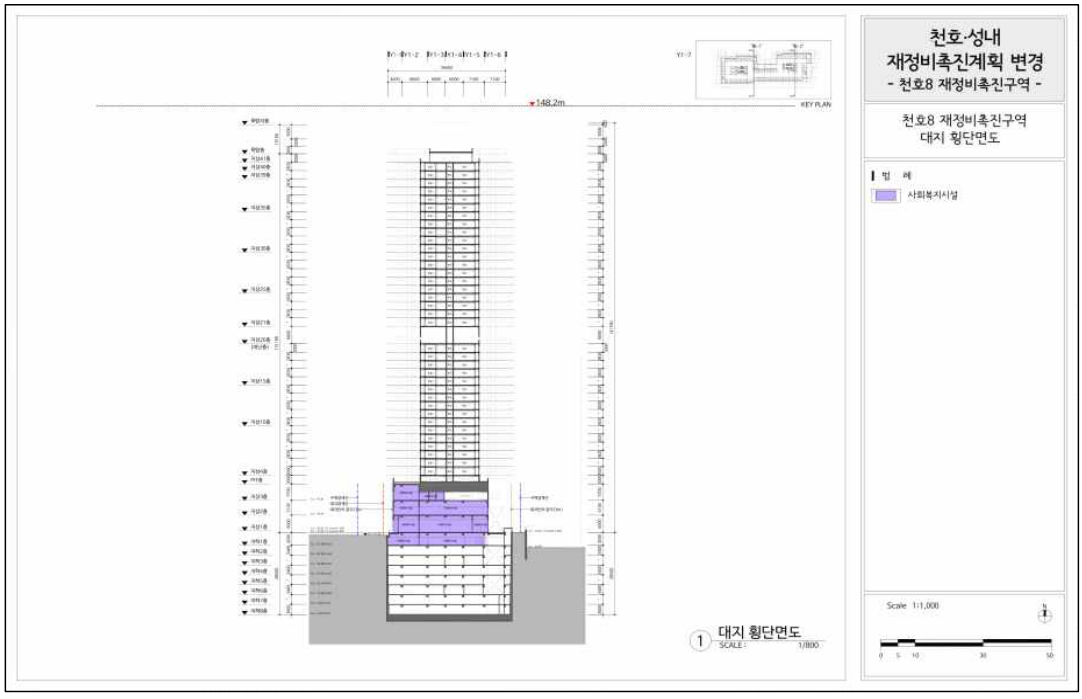

– 대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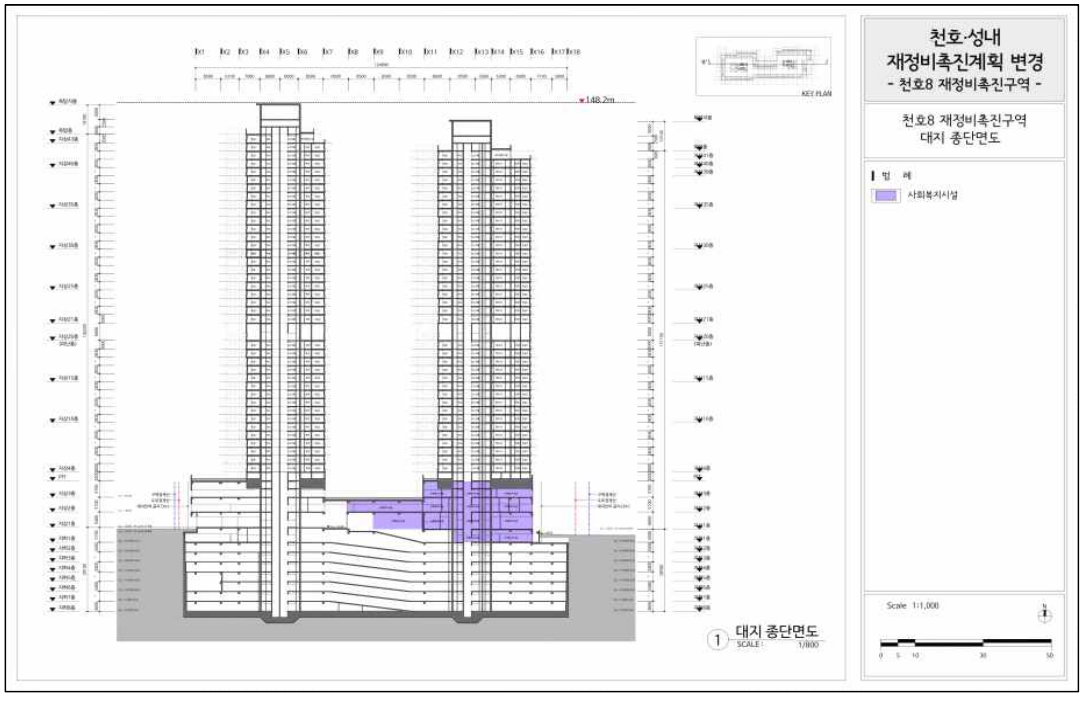

– 층별 평면도

• 지하1층(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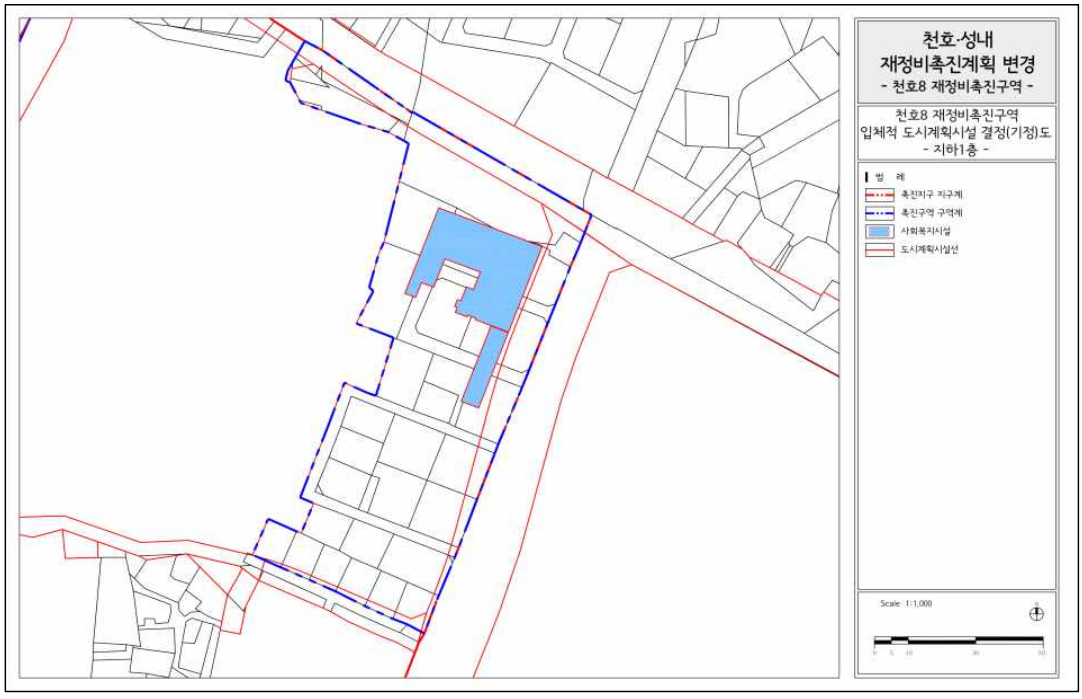

• 지하1층(변경)

• 지상1층(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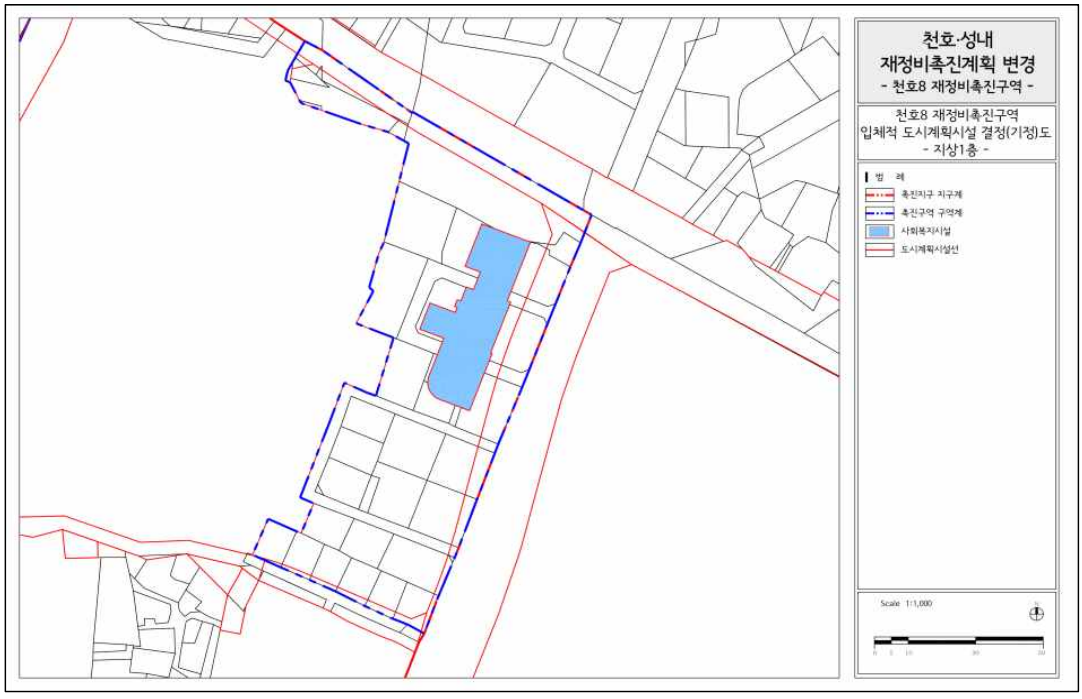

• 지상1층(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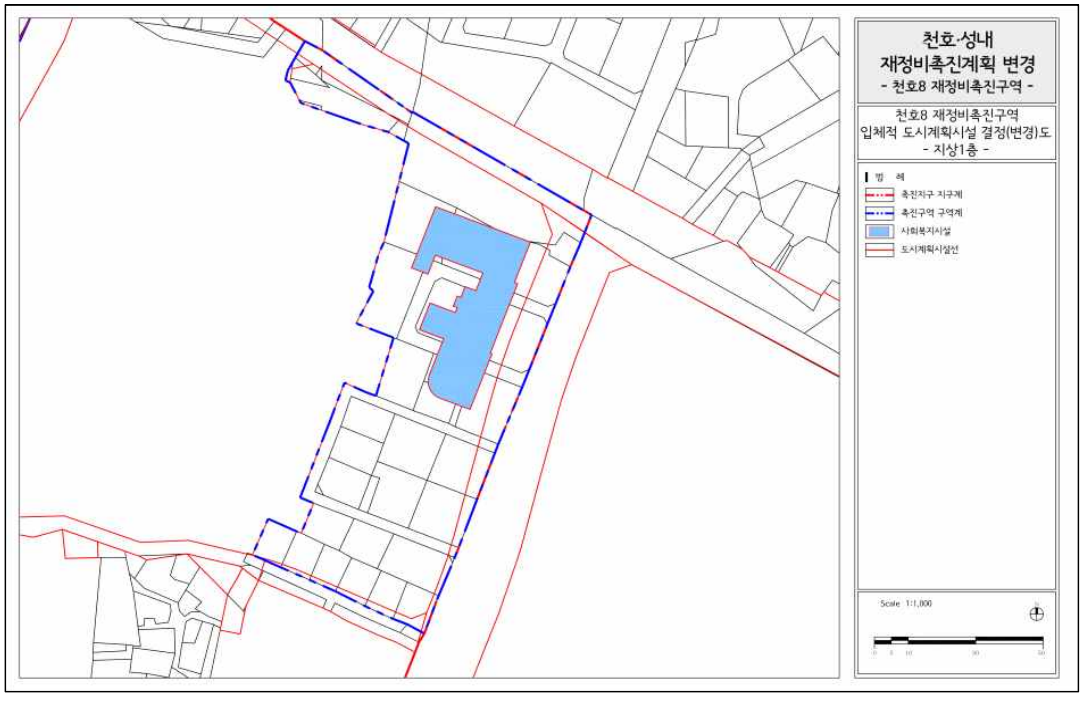

• 지상2층(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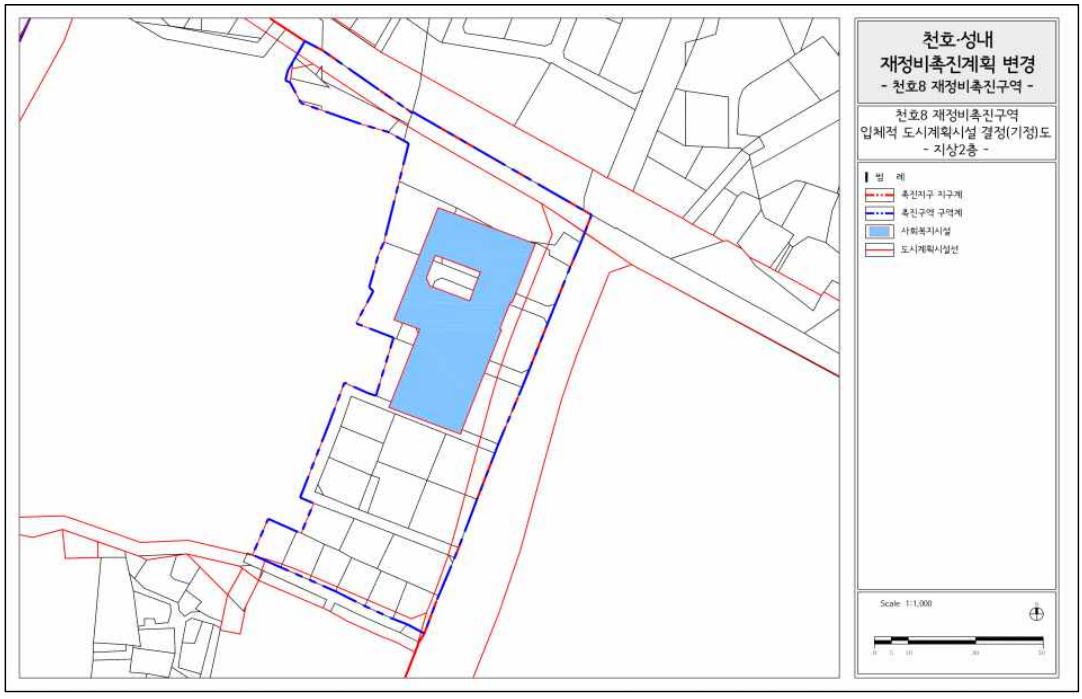

• 지상2층(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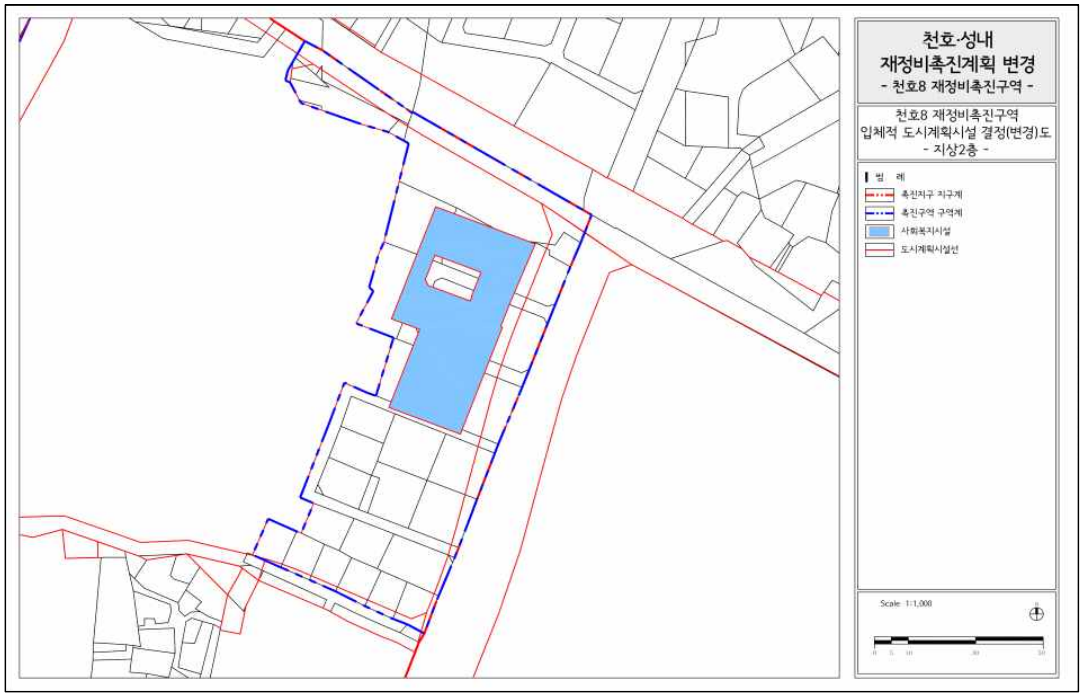

• 지상3층(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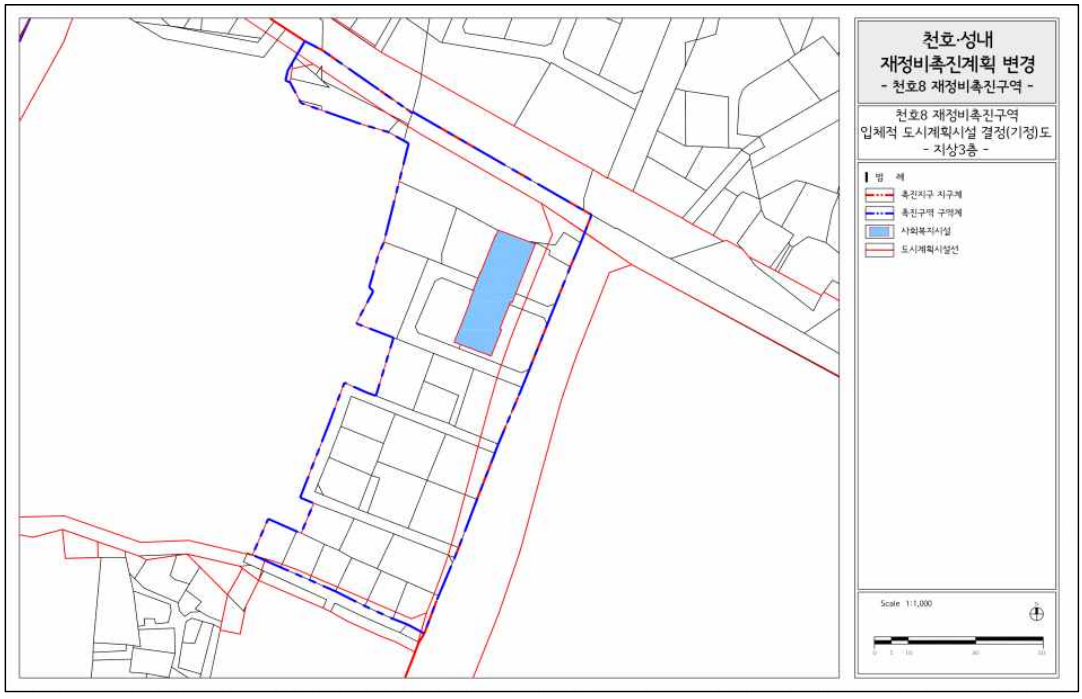

• 지상3층(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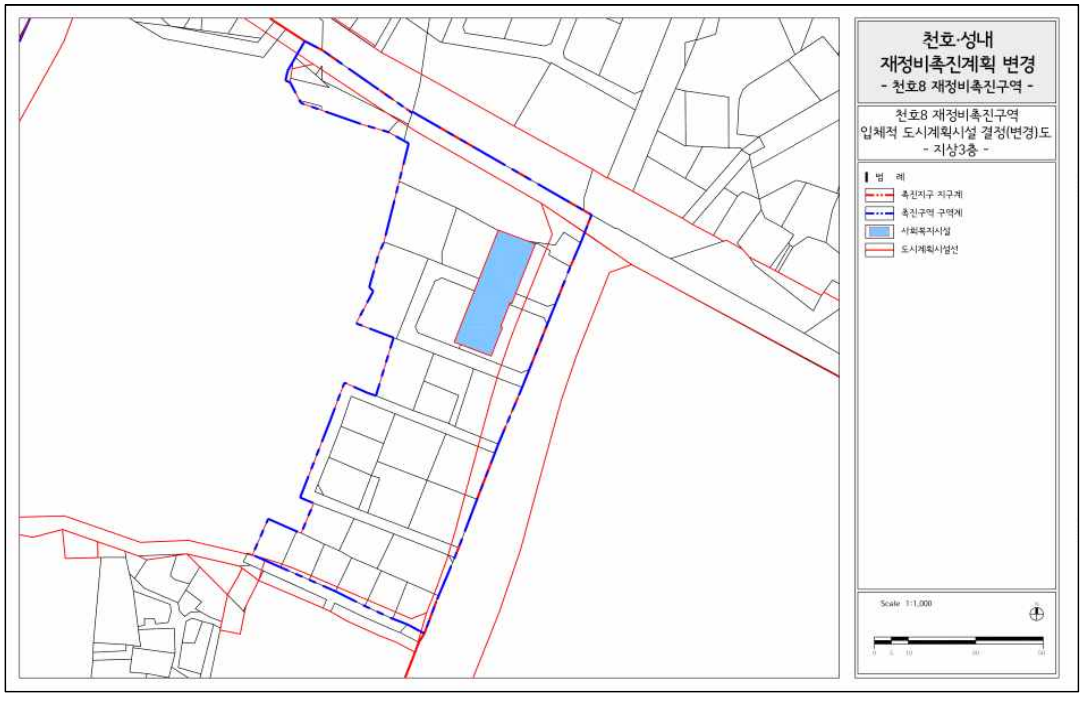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산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9,816.50	7,670.82	1	1,085.50	4,451.46	122	29,816.50	7,214.57	2	856.25	8,205.02	90	시설면적 감소 감 456.25㎡
기반시설	소 계	4,367.04	4,367.04	-	-	-	-	4,350.36	4,350.36	-	-	-	-	감 16.68㎡
	도 로	2,934.27	2,934.27	-	-	-	-	3,355.46	3,355.46	-	-	-	-	증 421.19㎡
	광 장	1,432.77	1,432.77	-	-	-	-	994.90	994.90	-	-	-	-	감 437.87㎡
조경시설		169.57	169.57	-	-	-	36	175.36	175.36	-	-	-	4	증 5.79㎡
휴양시설		855.18	855.18	-	-	-	39	183.97	183.97	-	-	-	39	감 671.21㎡
유희시설		-	-	-	-	-	-	-	-	-	-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255.22	255.22	-	-	-	9	255.22	255.22	-	-	-	9	
교양시설	1,212.54	1,212.54	1	1,085.50	4,451.46	1	1,283.84	1,283.84	1	828.62	8,177.39	1	증 71.30㎡
편익시설	36.7	36.7	-	-	-	4	191.25	191.25	1	27.63	27.63	4	증 154.55㎡
관리시설	774.57	774.57	-	-	-	33	774.57	774.57	-	-	-	33	
녹지 및 기타	22,145.68	-	-	-	-		22,601.93	-	-	-	-	-	증 456.25㎡
시설율 (법정 40%)	(7,670.82 / 29,816.50) × 100 = 25.73%						(7,214.57 / 29,816.50) × 100 = 24.20%						
건폐율 (법정 20%)	(1,085.5 / 29,816.50) × 100 = 3.64%						(856.25 / 29,816.50) × 100 = 2.87%						

2.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	-	29,816.50	7,670.82	-	1동	1,085.50	4,451.46	122	-	-	29,816.50	7,214.57	-	2동	856.25	8,205.02	90	
기반시설	소계	-	-	4,367.04	4,367.04	-	-	-	-	-	-	-	4,350.36	4,350.36	-	-	-	-	-	감 16.68㎡
	도로	소로	-	2,934.27	2,934.27	-	-	-	-	-	소로	-	3,355.46	3,355.46	-	-	-	-	-	증 421.19㎡
	광장	가	신사649-9	1,432.77	1,432.77	-	-	-	-	-	가	신사649-9	994.90	994.90	-	-	-	-	-	감 437.87㎡
	진입광장	가-1	신사649-9	(684.79)	(684.79)	-	-	-	-	-	-	-	-	-	-	-	-	-	-	폐지
	광장	가-2	신사649-9	(136.03)	(136.03)	-	-	-	-	-	가-2	신사649-9	(136.03)	(136.03)	-	-	-	-	-	
	광장	가-3	신사649-9	(534.98)	(534.98)	-	-	-	-	-	가-3	신사649-9	(534.98)	(534.98)	-	-	-	-	-	
	광장	-	-	-	-	-	-	-	-	-	가-4	신사649-9	(117.97)	(117.97)	-	-	-	-	-	증 117.97㎡
	광장	가-5	신사649-9	(76.97)	(76.97)	-	-	-	-	-	가-5	신사649-9	(87.61)	(87.61)	-	-	-	-	-	증 10.64㎡
	광장	가-6	-	-	-	-	-	-	-	-	가-6	신사649-9	(118.31)	(118.31)	-	-	-	-	-	증 118.3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	-	169.57	169.57	-	-	-	-	36	-	-	175.36	175.36	-	-	-	-	4	지5.79㎡
	파고라	①	신사649-9	157.71	157.71	-	-	-	-	3	①	신사649-9	172.32	172.32	-	-	-	-	3	지14.61㎡
	평의자	⑨	신사649-9	-	-	-	-	-	-	6	-	-	-	-	-	-	-	-	-	폐지
	조형열주	⑩	신사649-9	-	-	-	-	-	-	10	-	-	-	-	-	-	-	-	-	폐지
	수경시설	⑪	신사649-9	-	-	-	-	-	-	1	-	-	-	-	-	-	-	-	-	폐지
	앉음벽	⑫	신사649-9	11.86	11.86	-	-	-	-	2	-	-	-	-	-	-	-	-	-	폐지
	플랜터	⑬	신사649-9	(61.8)	(61.8)	-	-	-	-	12	-	-	-	-	-	-	-	-	-	폐지
	연식의자	⑭	신사649-9	(17.4)	(17.4)	-	-	-	-	1	-	-	-	-	-	-	-	-	-	폐지
	조형플랜터	⑮	신사649-9	(35.93)	(35.93)	-	-	-	-	1	-	-	-	-	-	-	-	-	-	폐지
	전통담장	-	-	-	-	-	-	-	-	-	⑰	신사649-9	3.04	3.04	-	-	-	-	1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철거시 영향	소계	-	-	855.18	855.18	-	-	-	-	39	-	-	183.97	183.97	-	-	-	-	39	감 671.21㎡
	정의자	⑯	신사649-9	(57.27)	(57.27)	-	-	-	-	39	⑯	신사649-9	(57.27)	(57.27)	-	-	-	-	39	
	휴게공간	바	신사649-9	855.18	855.18	-	-	-	-	-	바	신사649-9	183.97	183.97	-	-	-	-	-	감 671.21㎡
	휴게공간	바-1	신사649-9	(127.66)	(127.66)	-	-	-	-	-	바-1	신사649-9	(127.66)	(127.66)	-	-	-	-	-	
	휴게공간	바-2	신사649-9	(22.21)	(22.21)	-	-	-	-	-	바-2	신사649-9	(22.21)	(22.21)	-	-	-	-	-	
	휴게공간	바-3	신사649-9	(34.10)	(34.10)	-	-	-	-	-	바-3	신사649-9	(34.10)	(34.10)	-	-	-	-	-	
	휴게공간	바-4	신사649-9	(57.73)	(57.73)	-	-	-	-	-	-	-	-	-	-	-	-	-	-	폐지
	휴게공간	바-5	신사649-9	(180.37)	(180.37)	-	-	-	-	-	-	-	-	-	-	-	-	-	-	폐지
	휴게공간	바-6	신사649-9	(433.11)	(433.11)	-	-	-	-	-	-	-	-	-	-	-	-	-	-	폐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	-	255.22	255.22	-	-	-	-	9	-	-	255.22	255.22	-	-	-	-	9	
	체력단련장	나	신사649-9	255.22	255.22	-	-	-	-	9	나	신사649-9	255.22	255.22	-	-	-	-	9	
교육시설	소계	-	-	1,212.54	1,212.54	-	1동	1,085.50	4,451.46	1	-	-	1,283.84	1,283.84	-	1동	828.62	8,177.39	1	지하 71.30㎡
	전시장	1	신사649-9	1,186.16	1,186.16	-	1동	1,085.50	4,451.46	-	1	신사649-9	1,257.46	1,257.46	-	1동	828.62	8,177.39	-	지하 71.30㎡
	동상	다	신사649-9	26.38	26.38	-	-	-	-	1	다	신사649-9	26.38	26.38	-	-	-	-	1	
편의시설	소계	-	-	36.70	36.70	-	-	-	-	4	-	-	191.25	191.25	-	1동	27.63	27.63	4	지하 154.55㎡
	화장실	-	-	-	-	-	-	-	-	-	2	신사649-9	154.55	154.55	-	1동	27.63	27.63	-	지하 154.55㎡
	음수전	③	신사649-9	36.70	36.70	-	-	-	-	3	③	신사649-9	36.70	36.70	-	-	-	-	3	
	시계탑	④	신사649-9	-	-	-	-	-	-	1	④	신사649-9	-	-	-	-	-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	774.57	774.57	-	-	-	-	33	-	-	774.57	774.57	-	-	-	-	33	
	묘소	마	신사649-9	757.23	757.23	-	-	-	-	1	마	신사649-9	757.23	757.23	-	-	-	-	1	
	안내판	⑤	신사649-9	-	-	-	-	-	-	4	⑤	신사649-9	-	-	-	-	-	-	4	
	가로등	-	신사649-9	-	-	-	-	-	-	20	-	신사649-9	-	-	-	-	-	-	20	
	휴지통	-	신사649-9	-	-	-	-	-	-	1	-	신사649-9	-	-	-	-	-	-	1	
	기념비	⑥	신사649-9	-	-	-	-	-	-	2	⑥	신사649-9	-	-	-	-	-	-	2	
	석 등	⑦	신사649-9	-	-	-	-	-	-	4	⑦	신사649-9	-	-	-	-	-	-	4	
	계양대	⑧	신사649-9	17.34	17.34	-	-	-	-	1	⑧	신사649-9	17.34	17.34	-	-	-	-	1	
	담장	-	신사649-9	-	-	-	9.77M	-	-	-	-	-	-	-	-	-	-	-	-	폐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	-	22,145.68	-	-	-	-	-	-		-	22,601.93	-	-	-	-	-	-	폭 456.25㎡
	녹지 및 기타	-	신사649-9	22,145.68	-	-	-	-	-	-		신사649-9	22,601.93	-	-	-	-	-	-	폭 456.25㎡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20.65	2,934.27				
변경					953.09	3,355.46				
당초	소로	소 계			920.65	2,934.27				
변경					953.09	3,355.46				
당초		3	1	6	59.9	373.77	부진입로	광장 가-1	가-2	
변경		3	1	6.3	96.13	613.50	부진입로	가-6	가-2	
당초		3	2	6.5	26.59	172.84	산책로	소로 3-1	가-3	
당초		3	3	3.5	140.51	487.68	산책로	소로 10-3	가-2	
변경		3	3	3.5	154.19	553.51	산책로	소로 3-10	가-3	
당초		3	4	3.2	21.5	74.8	산책로	전시장	가-3	
변경		3	4	3.5	34.45	120.33	산책로	소로 3-10	가-3	
당초		3	6	3.5	62.18	217.62	산책로	소로 3-7	소로 3-7	
변경		3	6	3.5	58.00	191.74	산책로	소로 3-7	소로 3-7	
당초		3	7	3.5	167.91	554.14	산책로	가-1	소로 3-1	
변경		3	7	3.5	168.44	565.41	산책로	소로3-1	소로3-1	
당초		3	8	2.5	152.00	380.00	산책로	①	소로 3-3	
당초		3	9	3	13.06	39.17	산책로	소로 3-7	대로	
당초		3	10	3.5	74.17	226.43	산책로	가-1	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3	10	3.8	79.30	323.63	산책로	소로 3-1	가-4	
당초		3	11	3	24.5	79.44	산책로	소로-10	바-6	
폐지		3	11	-	-	-	-	-	-	
당초		3	12	2.35	32.9	77.32	산책로	소로-11	가-5	
폐지		3	12	-	-	-	-	-	-	
당초		3	13	3.0	22.7	68.15	산책로	소로-3	대로	
당초		3	14	3.0	8.5	26.86	산책로	대로	바-6	
폐지		3	14	-	-	-	-	-	-	
당초		3	15	1.3	114.23	156.05	산책로	소로-7	①	
변경		3	15	1.5	81.25	136.98	산책로	소로3-18	소로3-1	
신설		3	16	2.0	12.06	24.11	산책로	대로	소로3-15	
신설		3	17	2.0	13.30	26.60	산책로	소로3-15	소로3-7	
신설		3	18	3.0	41.62	139.49	산책로	가-5	소로3-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7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 변경(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변경(안) : 아래 표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① 면적 변경 : ’ 24년 제3·4차(6·8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치	기 제한 면적(㎡)	금회 제한 면적(㎡)			제한기간	현재 후보지 선정 여부
					합계	확대	제척		
1	용산구	동후암1	후암동 30-2 일대	103,900.1	2,688.9	2,688.9	-	변경 없음 (2024.07.31.~2026.07.30.)	선정
2	용산구	동후암3	후암동 264-11 일대	82,172.5	4,847.9	4,847.9	-	변경 없음 (2024.09.26.~2026.09.25.)	선정

※ 용산구 후암동 30-2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82호, 제2025-96호

용산구 후암동 264-11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4호 참고

2.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4.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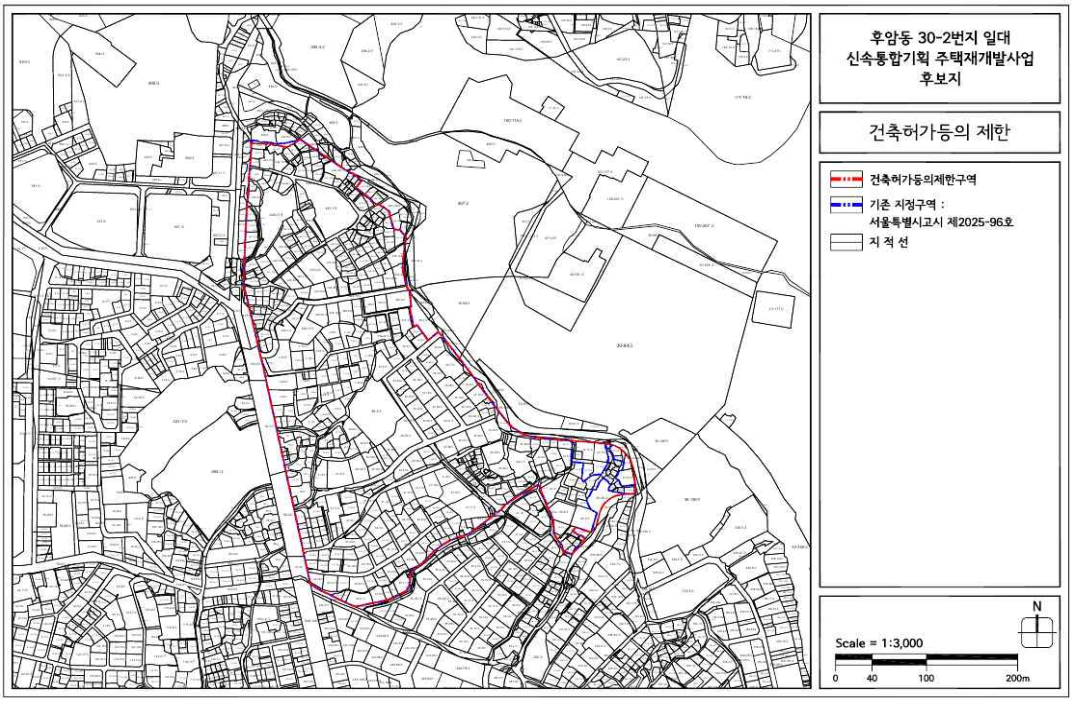

○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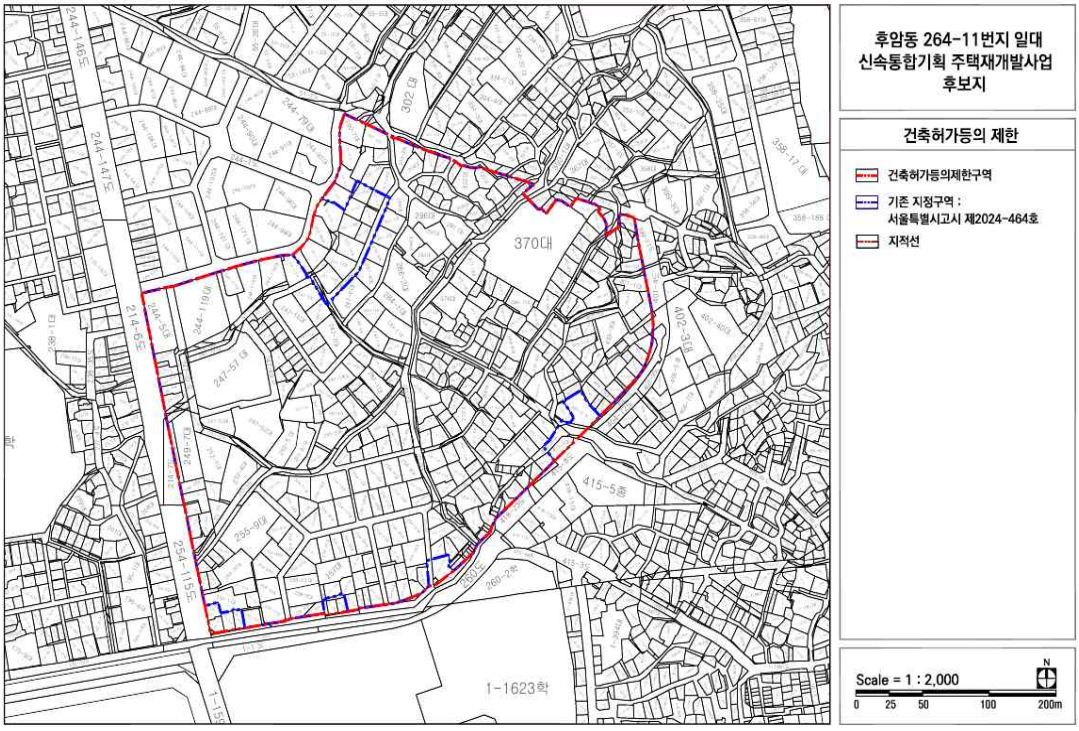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8호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은천 1구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비고
기준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충족
현황		91,988㎡	전체 : 411동 노후·불량 : 305동(74.2%)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	증)91,988㎡	91,988㎡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91,988㎡	•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1,988	100.0	-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75,441	82.0	-
		1-1	사업가능 1-1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904	18.4	-
		1-2	사업가능 1-2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813	21.5	-
		1-3	사업가능 1-3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394	14.6	-
		1-4	사업가능 1-4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167	12.1	-
		1-5	사업가능 1-5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163	15.4	-
	정비기반시설	소계		15,693	17.1	-
		-	도로	8,576	9.3	-
		B-1	공공공지	3,500	3.8	-
		B-2	공원	2,000	2.2	-
		B-3	공원	1,617	1.8	-
	공공시설	소계		297	0.3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C-1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297	0.3	-
사업가능 구역 외			도로	557	0.6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계획(안)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	12	-	-	봉천동 982-6	봉천동 635-7	-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변경	중로	1	1	15~20	국지 도로	663 (550)	봉천동 982-6 (636-121)	봉천동 635-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기정	소로	3	-	6	-	-	봉천동 635-292	봉천동 635-497	-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419	봉천동 635-292	봉천동 645-4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기정	소로	3	-	6	-	-	봉천동 636-17	봉천동 645-171	-	-	-	-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29	봉천동 636-17	봉천동 645-17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6	-	-	봉천동 645-171	봉천동 645-133	-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47	봉천동 645-171	봉천동 645-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

※ ( )는 은천1구역에 해당하는 사항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1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12m→15~20m)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	소로1-1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6m→10m)	
-	소로1-2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6m→10m)	
-	소로3-1	• 노선번호 부여 • 노선 연장 및 일부 도로 신설(6m)	

2) 공원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상도 근린공원	근린공원	봉천동 산103-3번지 일원	432,518.8 (2,711)	감) 2,711	429,807.8 (-)	-	-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봉천동 635-692일원	-	증)2,000	2,000	-	-
신설	②	공원	어린이 공원	봉천동 645-67일원	-	증)1,617	1,617	-	-

※ ( )안의 면적은 관리지역 내 포함 면적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근린공원	• 면적 감소	• 모아타운 내 편입되는 상도근린공원 일부 폐지하고 확장된 규모의 어린이공원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①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②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3)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봉천동 635-385일원	-	증) 3,500	3,500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결정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이주대책 지원 필요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건설부지 등으로 우선 검토

4) 사회복지시설(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 시설	봉천동 635-68 외 1필지	281	-	-	구고시 제2009-28호 (09.05.28)	구립 국지 경로당
변경	①	사회복지 시설	봉천동 635-145 외 3필지	-	증) 16	297	구고시 제2009-28호 (09.05.28)	노인 복지 센터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전 재조성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 경로당시설 대토하여 이전 재조성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비 고
사업가능 1-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08세대	1,587.5㎡ 이상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사업가능 1-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630세대	1,968.8㎡ 이상	
사업가능 1-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40세대	1,687.5㎡ 이상	
사업가능 1-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346세대	1,081.3㎡ 이상	
사업가능 1-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11세대	1,596.9㎡ 이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국회단지길	- 원활한 교통흐름과 도로변 보행 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차량진출입구간	불허구간 제외 전구역	- 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 진출입 허용	-
보차혼용통로	1-1,1-2구역 사이 1-3,1-5구역 사이	- 대지내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여 사업시행시기에 따라 맹지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의 진출입로 확보 - 사업시기 차이에 따라 막다른 도로가 생기는 경우 회차공간을 확보토록 함	
기타사항	은천초 · 서울관광고 인근	- 학교와 인접한 도로 계획 수립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등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 을 수립할 것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 용지	기반 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91,431	75,441	15,990	1,578	2,239	-	-	-	-
사업가능 1-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1,490	16,904	4,586.0	305	507	-	-	-	-
사업가능 1-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3,285	19,813	3,472.0	407	593	-	-	-	-
사업가능 1-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075	13,394	2,681.0	377	403	-	-	-	-
사업가능 1-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685	11,167	2,518.0	219	315	-	-	-	-
사업가능 1-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896	14,163	2,733.0	270	421	-	-	-	-

※ 합계 면적인 91,431㎡는 관리지역 총면적(91,988㎡)에서 사업가능구역의 면적(557㎡)을 제외한 면적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비고
		통합적용	완화적용	
사업가능 1-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1,490	대지의 조경(제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4조), 지하층의 설치(제53조), 건폐율(제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
사업가능 1-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3,285			
사업가능 1-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075			

구분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비고
		통합적용	완화적용	
사업가능 1-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685			
사업가능 1-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896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분	내용					적용구역
사업가능구역 내	건폐율	50% 이하				1-5
		60% 이하				1-1, 1-2, 1-3, 1-4, B-1, B-2, B-3, C-1
	용적률1)	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1-1, 1-2, 1-3, 1-4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1-5
		150% 이하				B-1,B-2,C-1
		200%이하				B-3
	높이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에 따름				전 구역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리지역전체	- 공동주택용지 : 3m - 보차혼용통로구간 : 6m - 공공공지, 공원(도로변), 사회복지시설(도로변) : 3m	- 가로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국회단지길변	- 국회단지길변 가로의 1/2 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춰 건축물 저층부(1층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 설치	- 주가로인 국회단지길(20m)변으로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유도
공동이용시설	1-4	- 인접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	- 주변지역과 인접한 구역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주민공동시설	1-1, 1-2, 1-3, 1-5	- 단지 내 커뮤니티마당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배치권장	- 단지 조성시 발생하는 단차 활용 및 커뮤니티 마당과 연계하여 공동이용시설 배치 권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

구분	내용			비고
1-1 1-2 1-3 1-4 1-5	유형		• 공동주택용지	-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2)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용도지역 상향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 × 100분의 50[1],[2] ÷ 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임대주택 건설 특례)

용적률 상한 = a + (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 100(%) × α × β) + b + c

- α(적용계수) = 2.5(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계수 적용 가능

○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기존 토지 등 소유자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비율)
합계			1,578	2,535	445	-	17.6%
1-1	사업가능 1-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68일대	305	508	10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7%
1-2	사업가능 1-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463일대	407	630	126		20.0%
1-3	사업가능 1-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514일대	377	540	102		18.9%
1-4	사업가능 1-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45-87일대	219	346	15		4.3%
1-5	사업가능 1-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6-50일대	270	511	97		19.0%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26년 4차 통합심의 소위원회('26.03.26.)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

자.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안)	변경후		
합 계	91,988	-	91,988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71,116	감) 59,359	11,757	12.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872	감) 16,082	4,790	5.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1,278	61,278	66.6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4,163	14,163	15.4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차.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분		위치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1-1	사업가능 1-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68일대	건축법	- 인접한 사업구역간 통합적, 효율적 건축 계획 도모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유도	-
1-2	사업가능 1-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463일대			
1-3	사업가능 1-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514일대			
1-4	사업가능 1-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45-87일대			
1-5	사업가능 1-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6-50일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안) : 해당없음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81) 및 관악구청 주택과(☎02-879-645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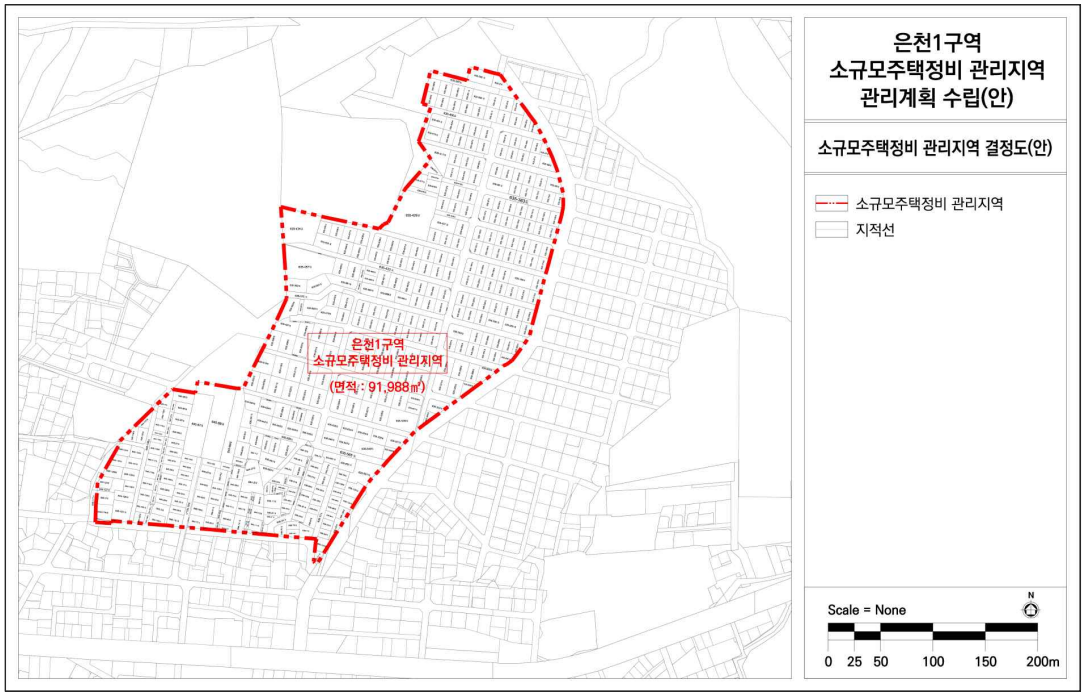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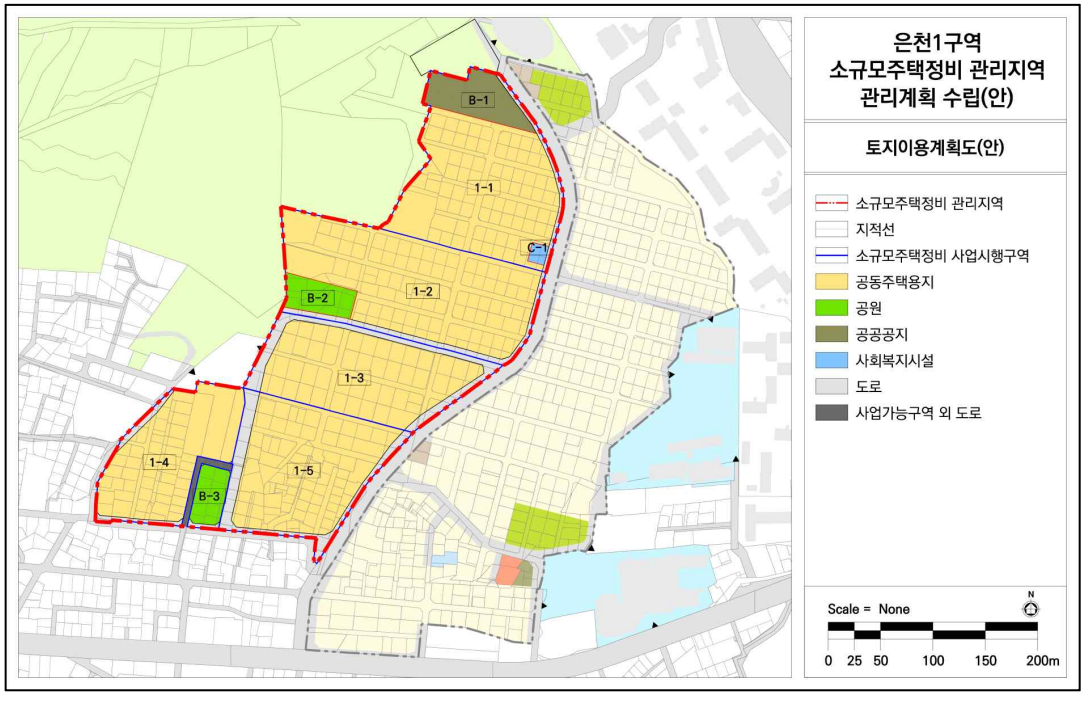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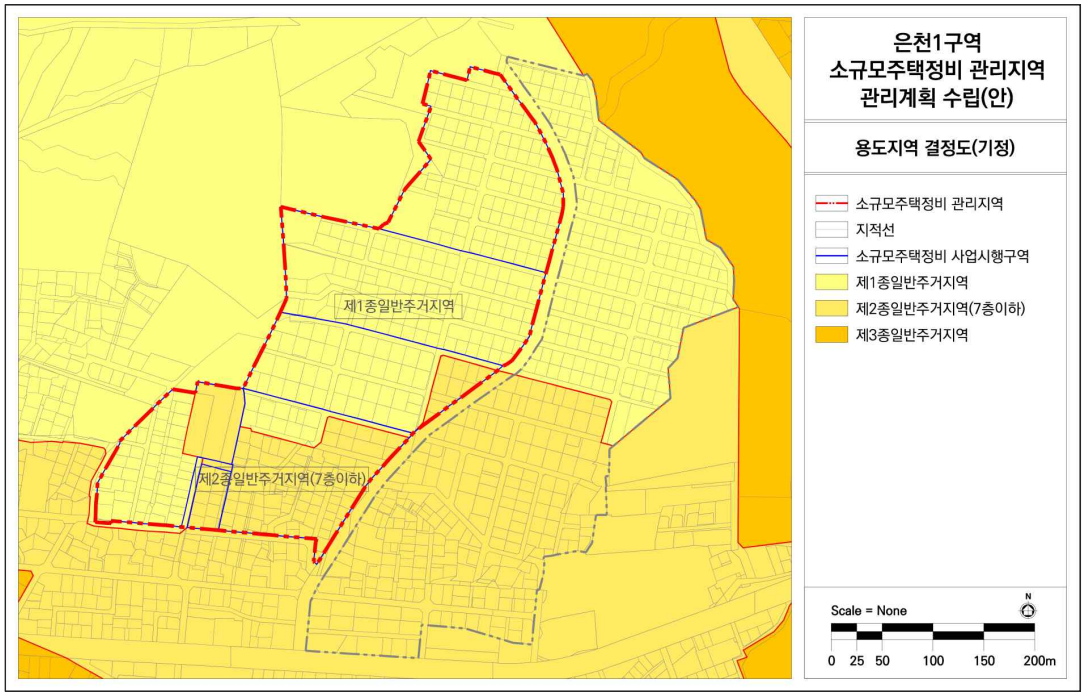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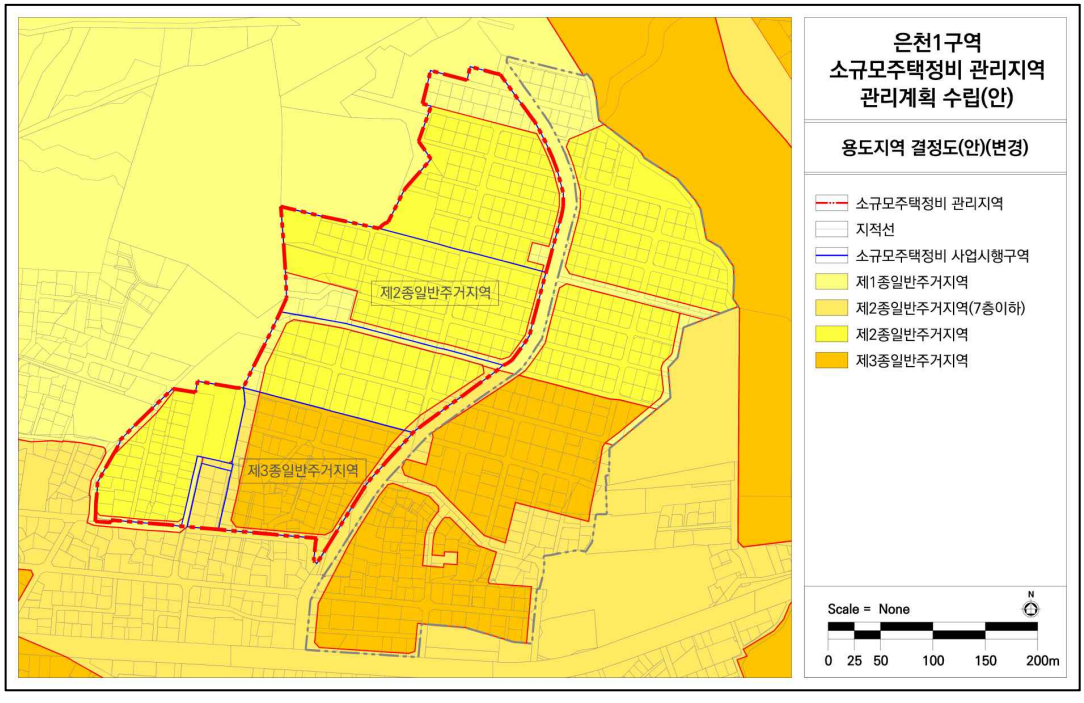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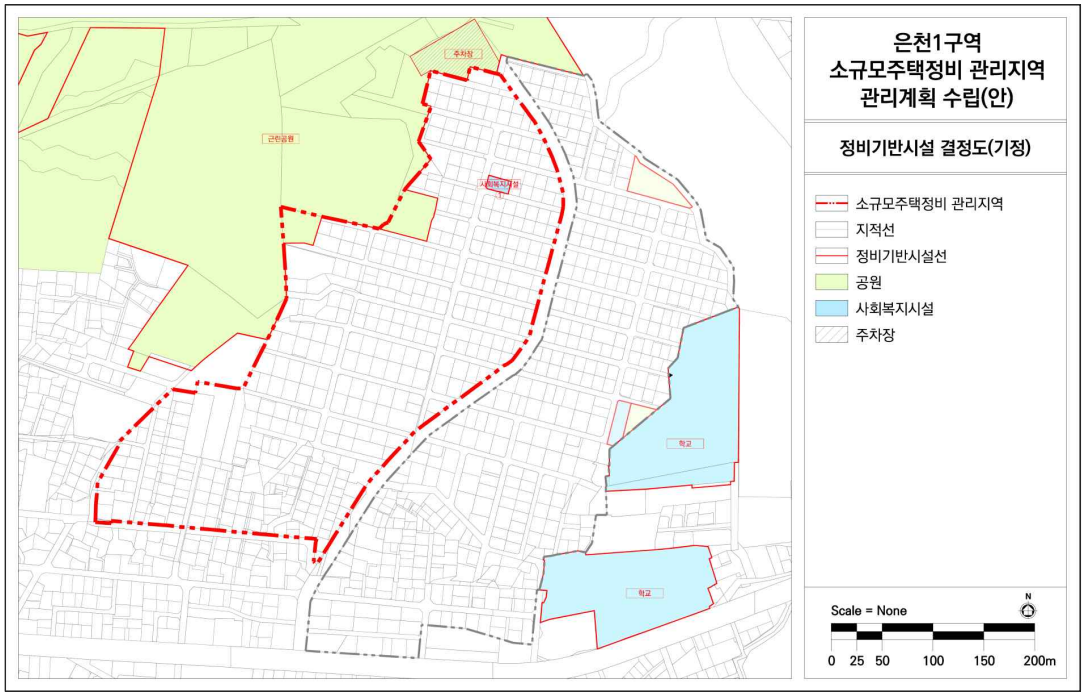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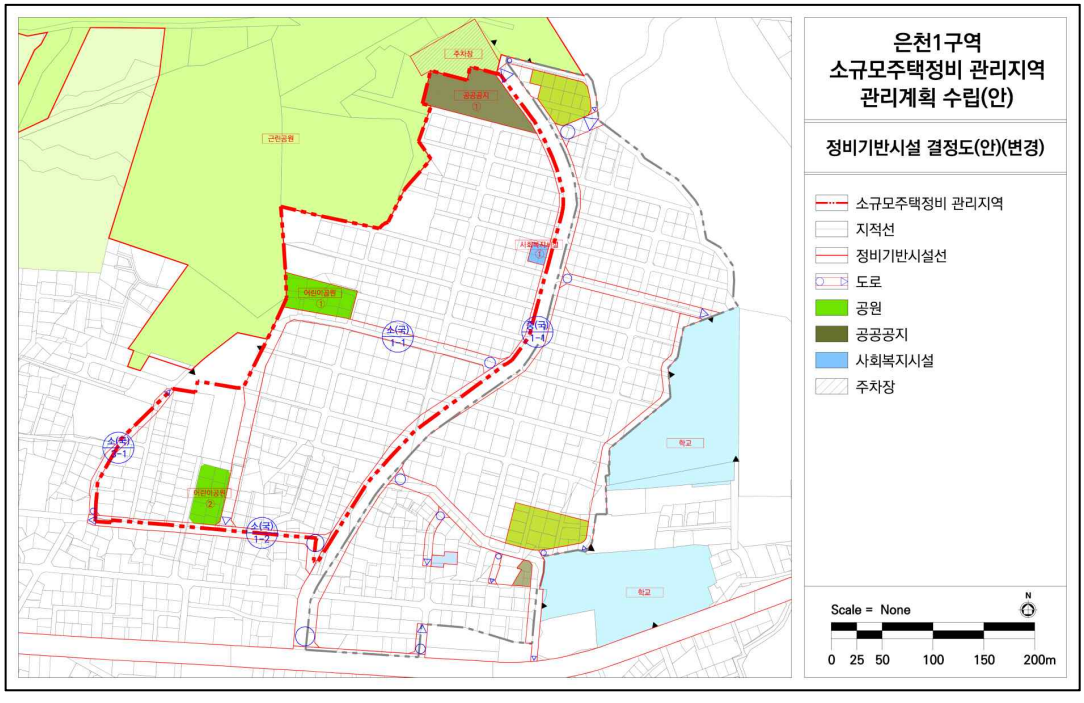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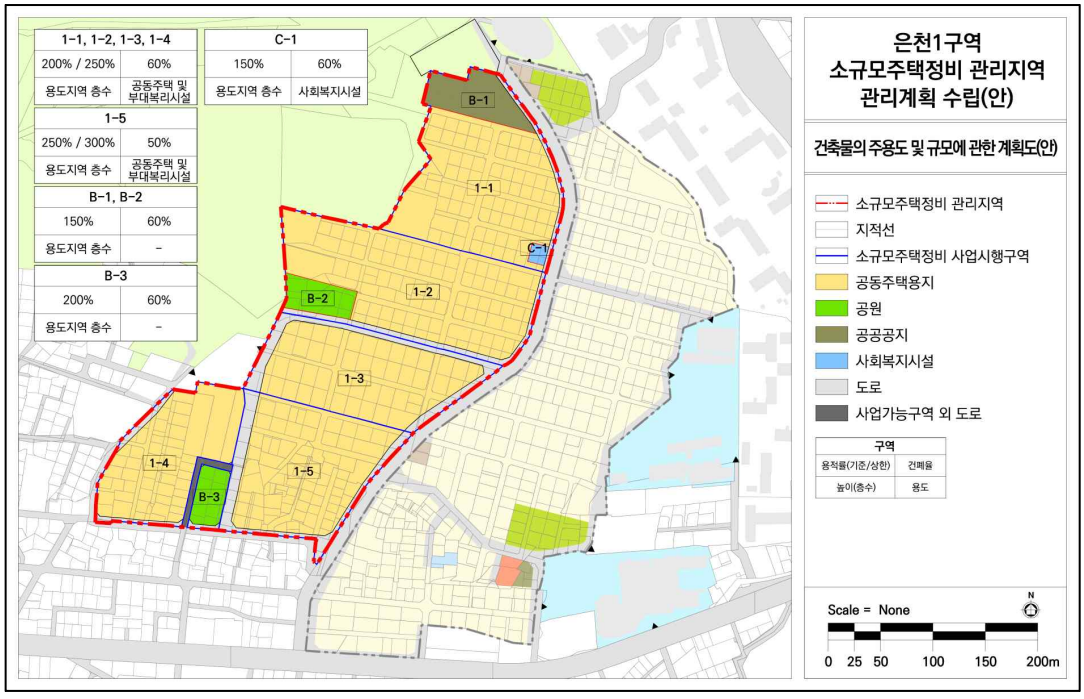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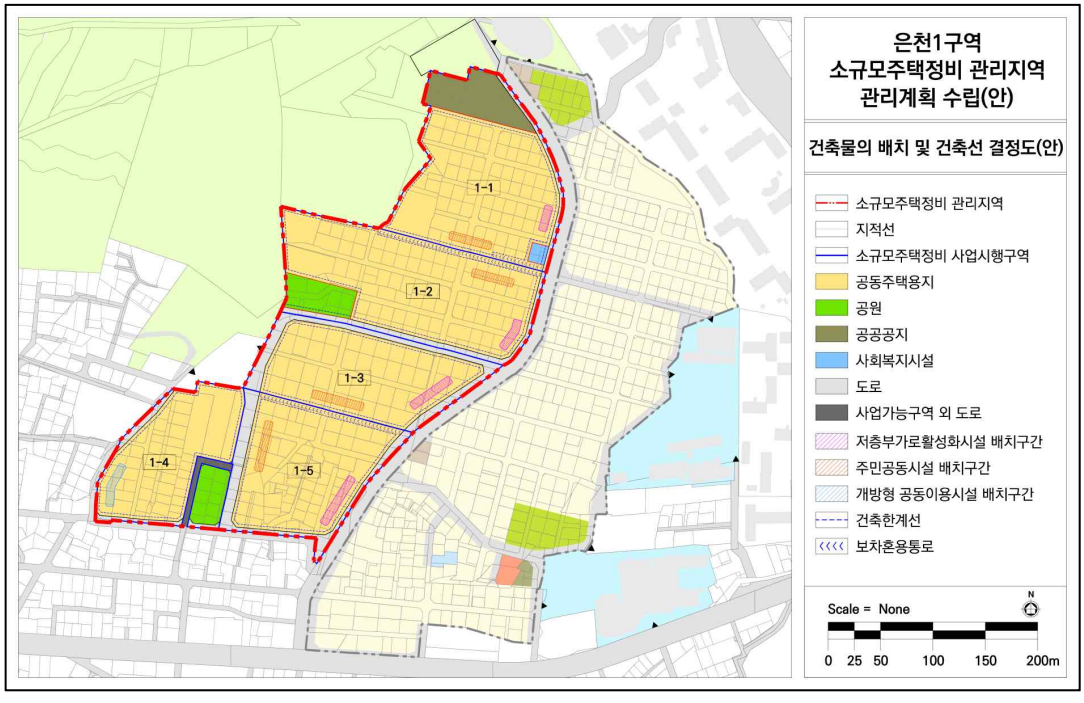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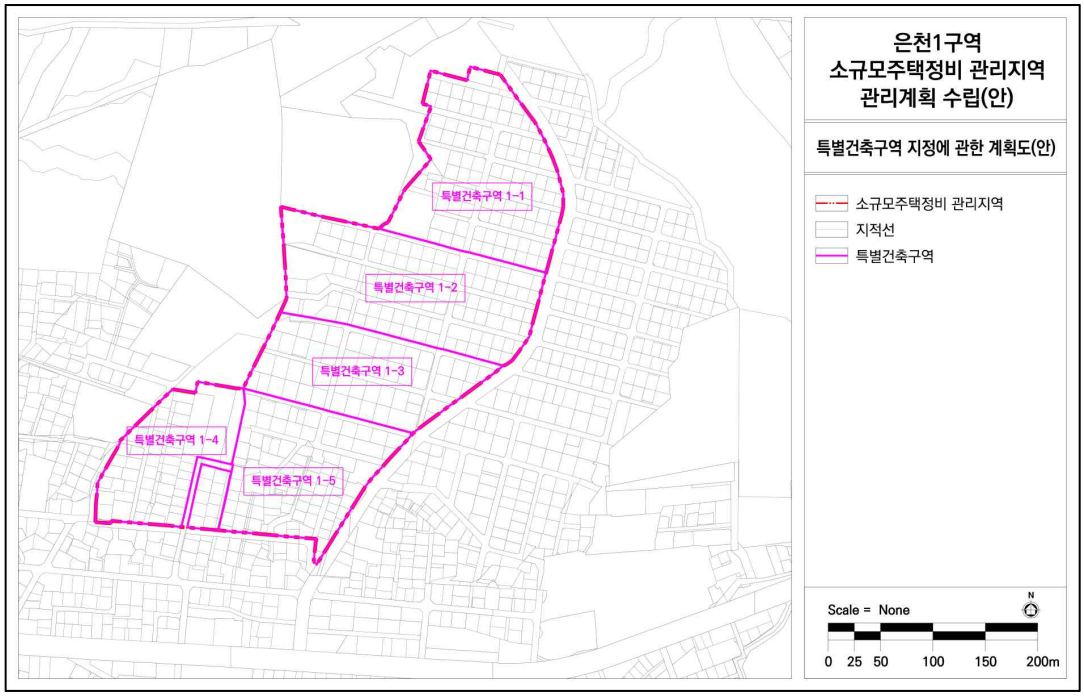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9호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비고
기준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충족
현황		86,070㎡	전체 : 367동 노후·불량 : 261동(71.1%)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	증)86,070㎡	86,070㎡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86,070㎡	•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6,070	100.0	-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68,684	79.8	-
		2-1	사업가능 2-1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729	20.6	-
		2-2	사업가능 2-2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440	13.3	-
		2-3	사업가능 2-3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823	23.0	-
		2-4	사업가능 2-4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700	22.9	-
	정비기반시설	소계		15,845	18.4	-
		-	도로	11,062	12.9	-
		B-1	공원	1,979	2.3	-
		B-2	공원	2,490	2.9	-
		B-3	공공공지	314	0.4	-
	공공시설	소계		792	0.9	-
		C-1	키즈센터&공영주차장	516	0.6	존치
		C-2	주민공동이용시설(은천마루)	276	0.3	존치
사업가능 구역 외		소계		741	0.9	-
		D-1	봉천동 635-7 일대	402	0.5	-
		D-2	봉천동 635-343 일대	302	0.4	
		-	도로	37	0.0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계획(안)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	20	-	960	봉천동 982-1	봉천동 982-5	-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은천로
변경	중로	1	-	20 ~23	보조 간선 도로	960 (213)	봉천동 982-1 (833-2)	봉천동 982-5 (940-1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은천로
기정	중로	3	-	12	-	-	봉천동 982-6	봉천동 635-7	-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변경	중로	1	1	15~20	국지 도로	663	봉천동 982-6	봉천동 635-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신설	중로	3	1	14	국지 도로	39	봉천동 635-19	봉천동 1718-1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6	-	-	봉천동 635-174	봉천동 635-161	-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8	봉천동 635-174	봉천동 635-16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기정	소로	3	-	6	-	-	봉천동 635-597	봉천동 833-2	-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변경	소로	1	4	11	국지 도로	259	봉천동 635-597	봉천동 833-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기정	소로	3	-	6	-	-	봉천동 940-5	봉천동 937-13	-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29	봉천동 940-5	봉천동 937-1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56	봉천동 634-110	봉천동 634-48	일반 도로	-	-	-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4	-	-	봉천동 635-7	봉천동 635-14	-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0	봉천동 635-7	봉천동 635-14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30	봉천동 635-377	봉천동 938-18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297	봉천동 635-202	봉천동 633-7	일반 도로	-	-	-

※ ( )는 은천2구역에 해당하는 사항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1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12m→15~20m)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	중로3-1	• 도로신설(14m)	
-	소로1-3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6m→10m)	
-	소로1-4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6m→11m)	
-	소로1-5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6m→10m)	
-	소로2-2	• 도로신설(8m)	
-	소로3-2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4m→6m)	
-	소로3-3	• 도로신설(6m)	
-	소로3-4	• 도로신설(6m)	

2) 공원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국회단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봉천동 635-37	1,200	감)1,200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폐지	-	은천 어린이공원	소공원	봉천동 635-309	443	감) 443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신설	③	공원	어린이 공원	봉천동 635-6일대	-	증)1,979	1,979	-	-
신설	④	공원	어린이 공원	봉천동 635-582일대	-	증)2,490	2,490	-	

※ ( )안의 면적은 관리지역 내 포함 면적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국회단지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모아타운 내 기존 공원 시설 폐지하고 국사봉 체육관 및 은천초변 확장된 규모의 어린이공원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	은천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①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②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3)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공공공지	봉천동 633-9	-	증) 314	314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존치되는 키즈센터 ·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공공공지를 계획하고 소규모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

4) 사회복지시설(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사회 복지시설	봉천동 635-308	525	감) 525	-	구고시 제2005-62호 (05.08.25)	은천 어린이집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폐지	• 관련부서협의 의견에 따라 기존 시설 폐지 • 신설되는 공동주택 내 보육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확보 예정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비 고
사업가능 2-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32세대	1,662.5㎡ 이상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사업가능 2-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04세대	1,262.5㎡ 이상	
사업가능 2-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16세대	2,237.5㎡ 이상	
사업가능 2-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11세대	2,221.9㎡ 이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국회단지길	- 원활한 교통흐름과 도로변 보행 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차량진출입구간	불허구간 제외 전구역	- 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 진출입 허용	-
보차혼용통로	2-2,2-3구역 사이	- 대지내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여 사업시행시기에 따라 맹지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의 진출입로 확보	-
기타사항	은천초 · 서울관광고 인근	- 학교와 인접한 도로 계획 수립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등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 용지	기반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85,329	68,684	16,645	1,307	1,724	-	-	-	-
사업가능 2-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2,382	17,729	4,653	281	434	-	-	-	-
사업가능 2-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410	11,432	1,978	247	321	-	-	-	-
사업가능 2-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4,718	19,823	4,895	478	573	-	-	-	-
사업가능 2-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4,819	19,700	5,119	301	396	-	-	-	-

※ 합계 면적인 85,329㎡는 관리지역 총면적(86,070㎡)에서 사업가능구역외 면적(741㎡)을 제외한 면적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비고
		통합적용	완화적용	
사업가능 2-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2,382	대지의 조경(제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4조), 지하층의 설치(제53조), 건폐율(제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
사업가능 2-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410			
사업가능 2-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4,718			
사업가능 2-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4,81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분	내용					적용구역
사업가능구역 내	건폐율	50% 이하				2-3, 2-4
		60% 이하				2-1, 2-2, B-1, B-2, B-3, C-1, C-2, D-1, D-2
	용적률1)	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2-1, 2-2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2-3, 2-4
		150% 이하				B-1, D-1

구분	내용		적용구역
		200% 이하	B-2, B-3, C-1, C-2, D-2
	높이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에 따름	전 구역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리지역전체	- 공동주택용지 : 3m - 보차혼용통로구간 : 6m - 공원(도로변),공공공지(도로변) : 3m	- 가로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국회단지길변	- 국회단지길변 가로의 1/2 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춰 건축물 저층부(1층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 설치	- 주가로인 국회단지길(20m)변으로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유도
공동이용시설	2-3, 2-4	- 인접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	- 주변지역과 인접한 구역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주민공동시설	2-1, 2-2	- 단지 내 커뮤니티마당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배치권장	- 단지 조성시 발생하는 단차 활용 및 커뮤니티 마당과 연계하여 공동이용시설 배치 권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

구분	내용			비고
2-1 2-2 2-3 2-4	유형		• 공동주택용지	-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2)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용도지역 상향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 × 100분의 501),2) ÷ 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임대주택 건설 특례)

용적률 상한 = a + (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 100(%) × α × β) + b + c

- α(적용계수) = 2.5(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계수 적용 가능

○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기존 토지 등 소유자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비율)
합계			1,307	2,363	415	-	17.6%
2-1	사업가능 2-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108일대	281	532	10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1%
2-2	사업가능 2-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235일대	247	404	81		20.0%
2-3	사업가능 2-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356일대	478	716	115		16.1%
2-4	사업가능 2-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940-19일대	301	711	112		15.8%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26년 4차 통합심의 소위원회('26.03.26.)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

자.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안)	변경후		
합 계	86,070	-	86,07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37,437	감) 30,814	6,623	7.7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8,633	감) 37,878	10,755	12.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9,169	29,169	3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9,523	39,523	45.9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차.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분		위치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2-1	사업가능 2-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108일대	건축법	- 인접한 사업구역간 통합적, 효율적 건축 계획 도모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유도	-
2-2	사업가능 2-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235일대			
2-3	사업가능 2-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635-356일대			
2-4	사업가능 2-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봉천동 940-19일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안) : 해당없음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81) 및 관악구청 주택과(☎02-879-645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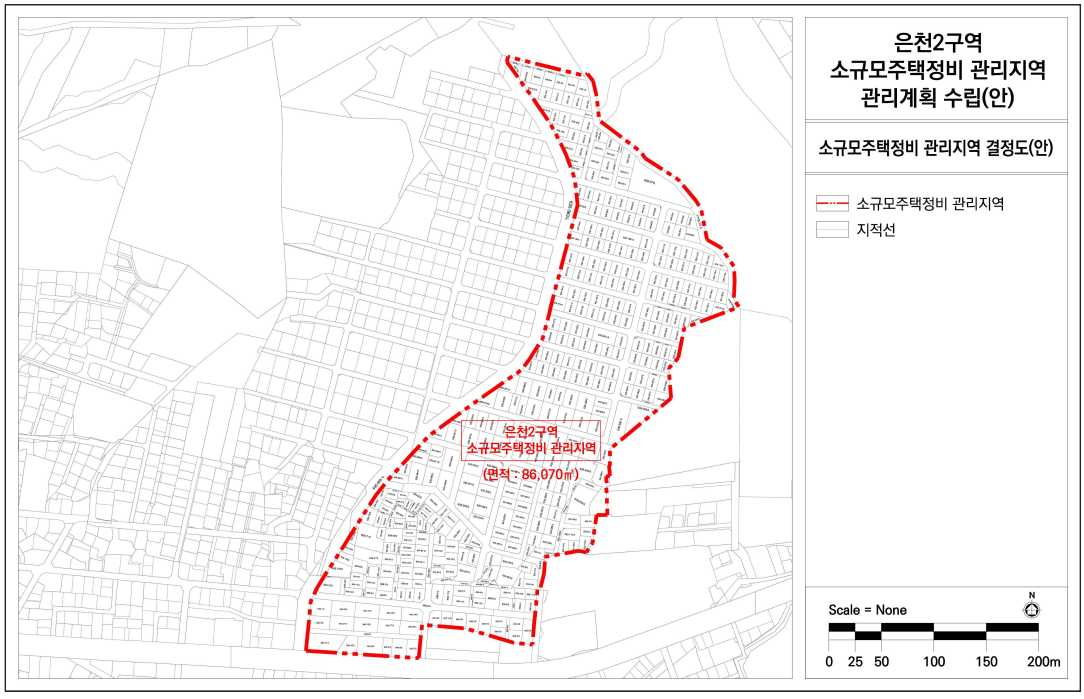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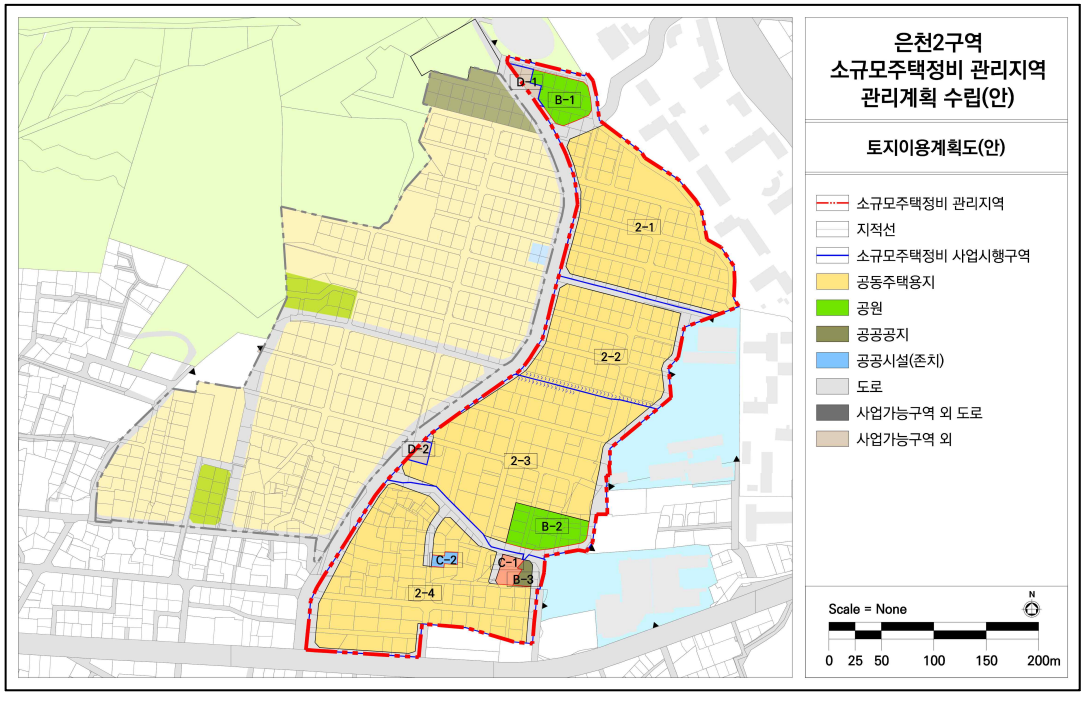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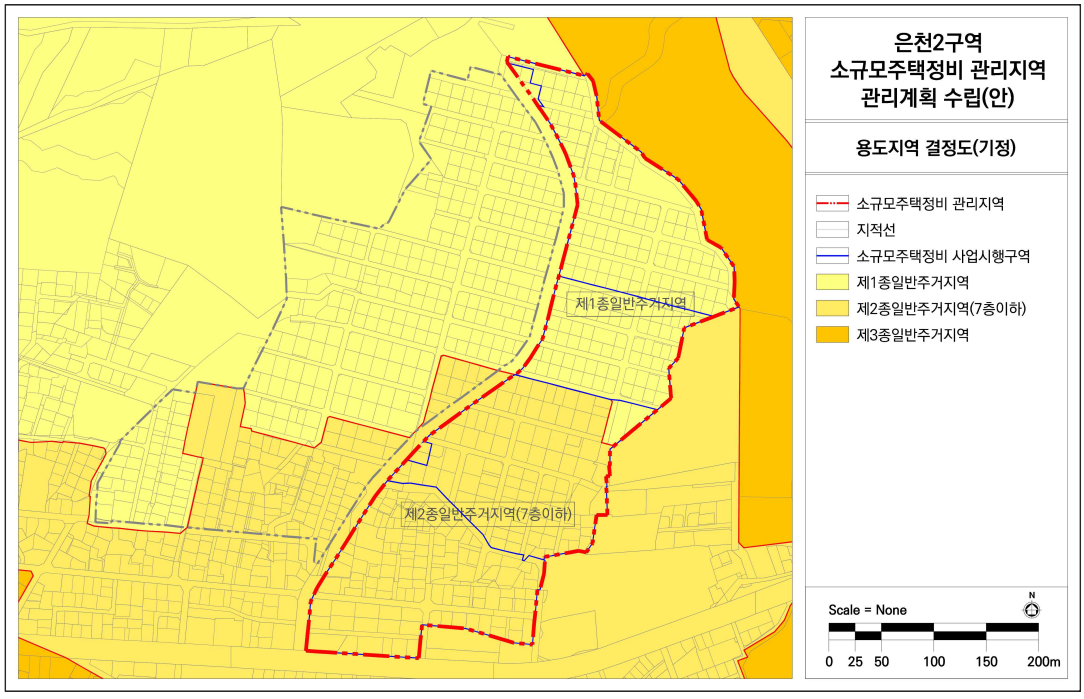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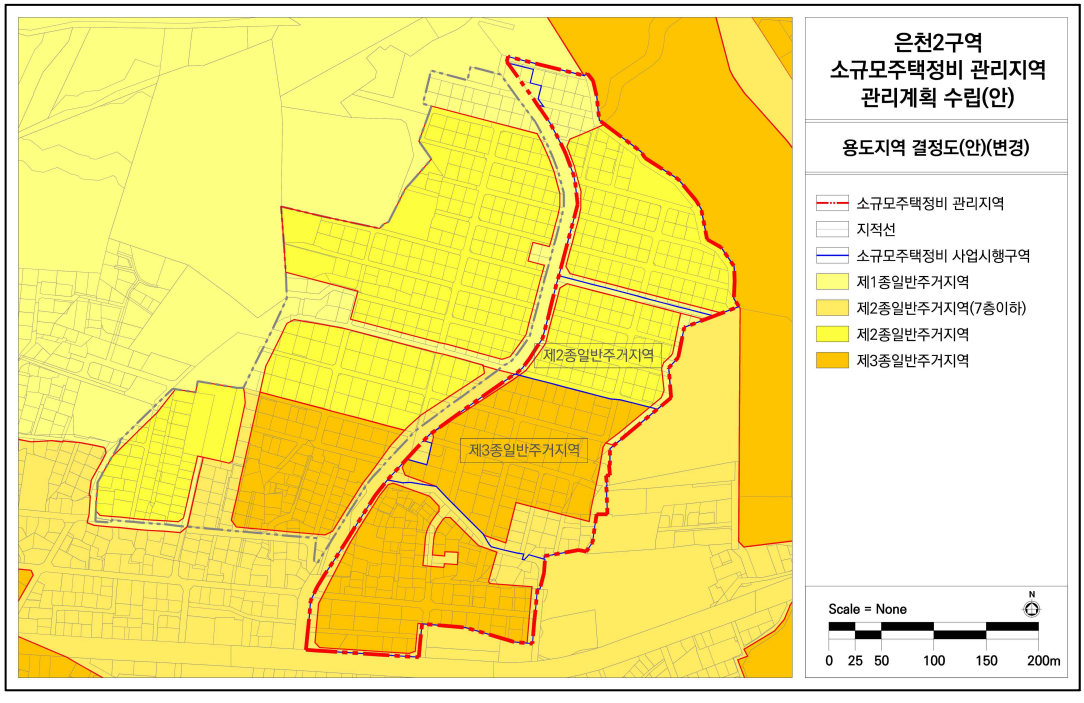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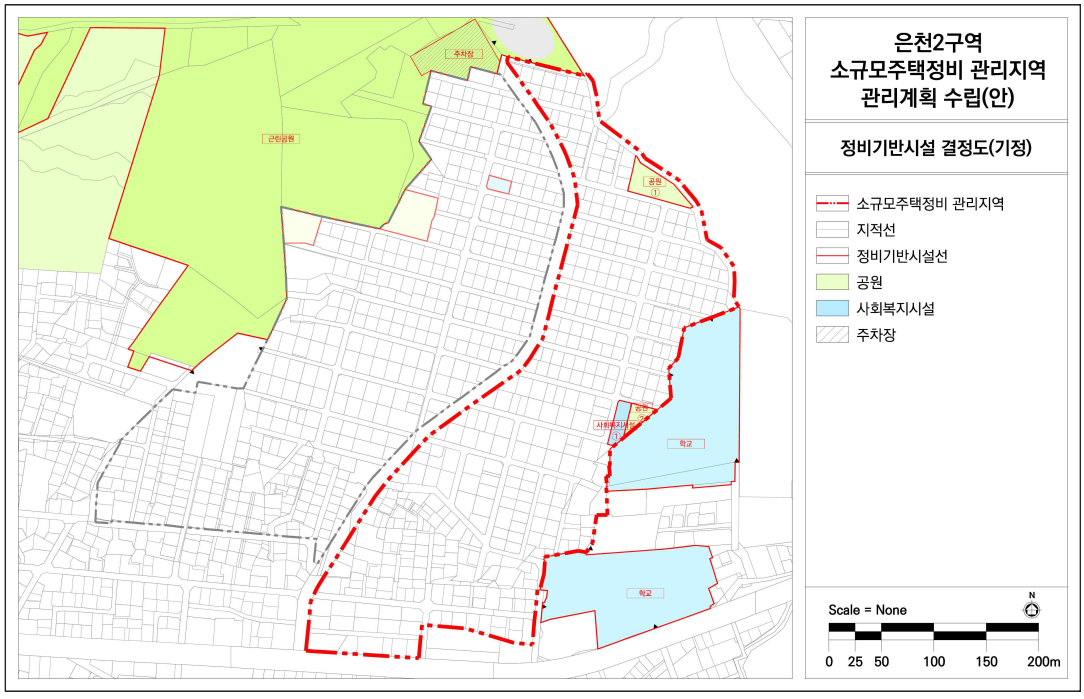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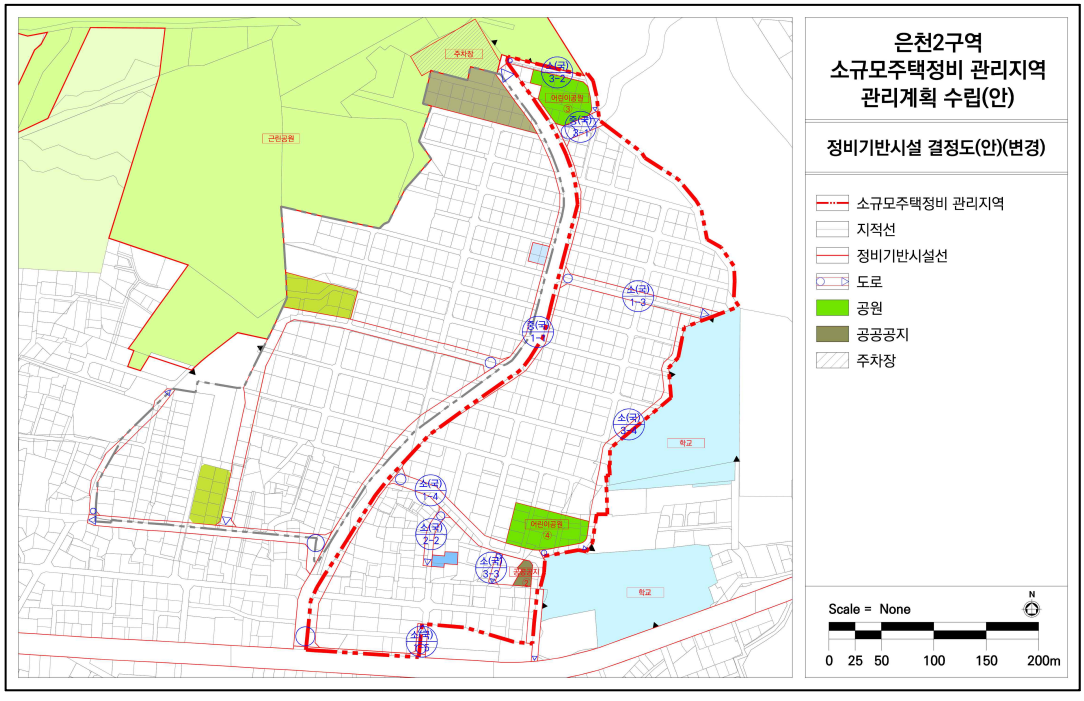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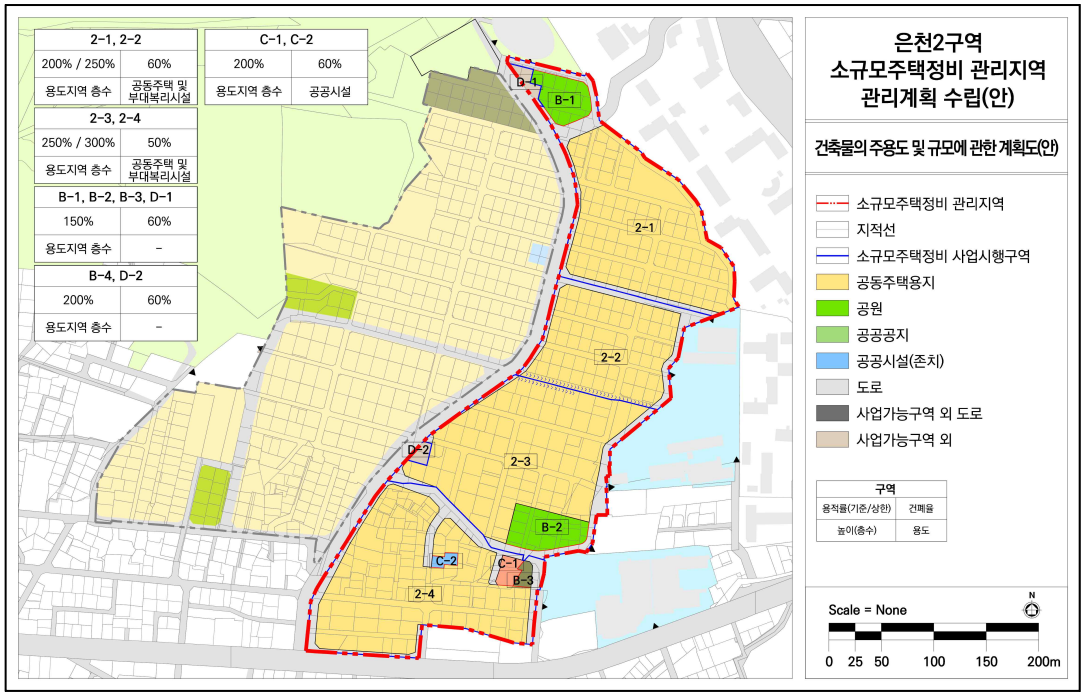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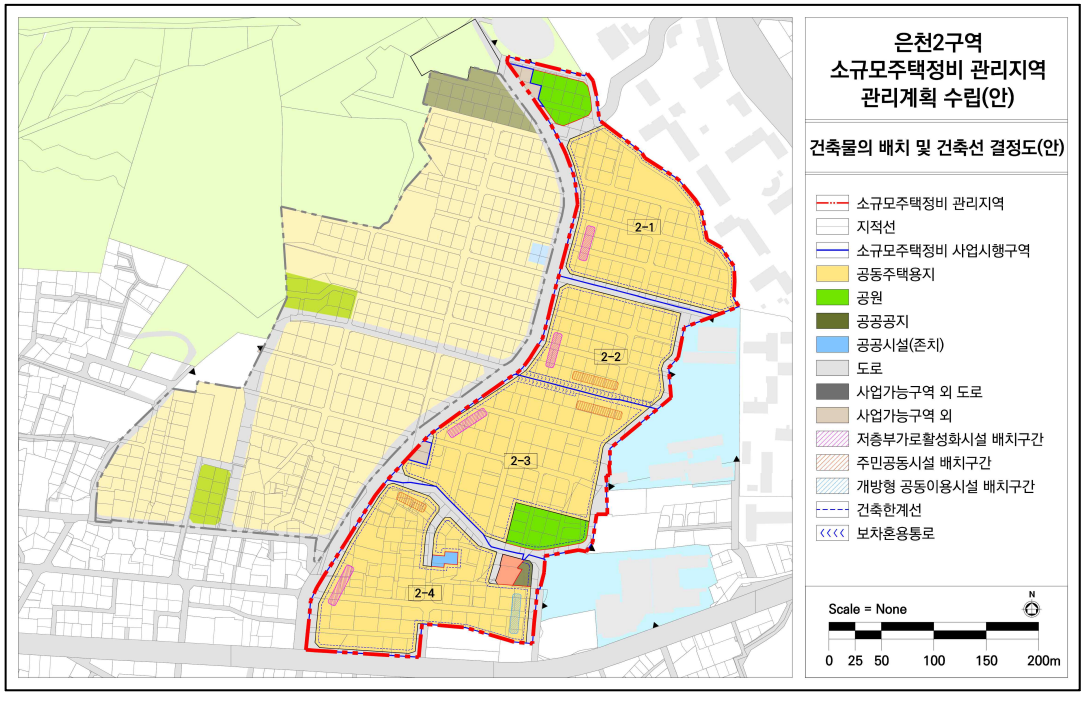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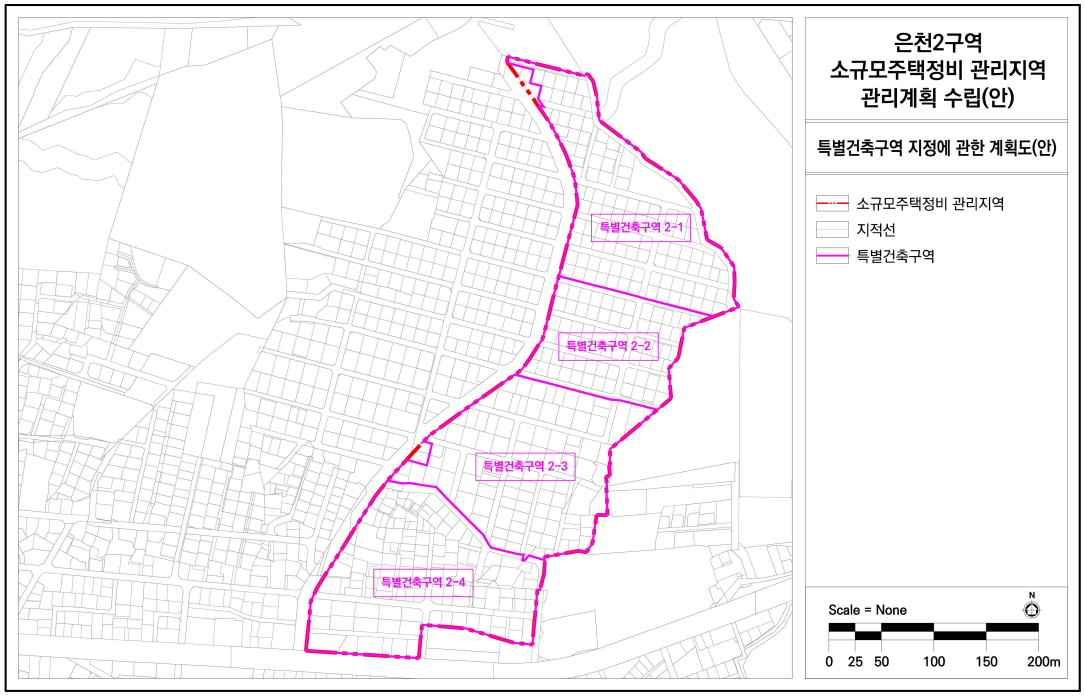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0호

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 8.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 6. 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2호(2023. 6. 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공원 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완화를 위해 봉화산근린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80-6번지 일대(봉화산근린공원)
3.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5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신내동 780-6번지 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556,451.30	69,069.0	8	5,236.64	7,538.00	79	556,451.30	69,246.0	10	5,307.44	7,708.80	95	
기반시설	소 계	48,185	42,798					48,362	42,975					증 177㎡
	도 로	37,417	32.030 (5,387)					37,594	32,207 (5,387)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10,768	10,768					10,768	10,768					
조경시설		4,368	4,368				6	4,368	4,368				6	
휴양시설		5,103	5,103	2	1,003.00	3,296.41		5,103	5,103	2	1,003.00	3,296.41		
유희시설		2,099	2,099				7	2,099	2,099				7	
운동시설		7,804	7,804	2	3,615.00	3,615.00		7,804	7,804	2	3,615.00	3,615.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4,989	4,611	4	658.64	766.59	66	4,989	4,611	4	658.64	766.59	66	
편익시설	2,248	2,248					2,248	2,248					
관리시설	38	38					38	38					
도시농업시설	1,619.0						1,619.0						
그밖의시설							736.0		2	30.8	30.8	16	증 736㎡
녹지 및 기타	479,998.3						479,085.3						감 913㎡
시설률 (법정40%)	(69,069.0 / 556,451.30) × 100 = 12.41%						(69,246 / 556,451.30) × 100 = 12.44%						
건폐율 (법정10%)	(5,236.64 / 556,451.30) × 100 = 0.948%						(5,307.44 / 556,451.30) × 100 = 0.954%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556,451.3	69,069.0		8동	5,236.64	7,538.00	79			556,451.3	69,246.0		10동	5,307.44	7,708.80	95	
기반시설	소계			48,185	42,798								48,362.0	42,975.0						증 177.0㎡
	도로			37,417	32,030 (5,387)								37,594	32,207 (5,387)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소계			10,768	10,768								10,768	10,768						
	진입광장	가	12개소	3,642	3,642						가	12개소	3,642	3,642						
		가-1	묵동 23-4공	(299)	(299)						가-1	묵동 23-4공	(299)	(299)						
		가-2	신내동 산123-6구	(234)	(234)						가-2	신내동 산123-6구	(234)	(234)						
		가-3	신내동 655-2공	(147)	(147)						가-3	신내동 655-2공	(147)	(147)						
		가-4	신내동 771-1공	(799)	(799)						가-4	신내동 771-1공	(799)	(799)						
		가-5	신내동 780공	(83)	(83)						가-5	신내동 780공	(83)	(8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가-6	신내동 780공	(514)	(514)						가-6	신내동 780공	(514)	(514)						
	가-7	중화동 산1임	(288)	(288)						가-7	중화동 산1임	(288)	(288)						
	가-8	중화동 산7-1임	(632)	(632)						가-8	중화동 산7-1임	(632)	(632)						
	가-9	신내동 655-2공	(204)	(204)						가-9	신내동 655-2공	(204)	(204)						
	가-10	신내동 655-2공	(96)	(96)						가-10	신내동 655-2공	(96)	(96)						
	가-11	신내동 779-3임	(269)	(269)						가-11	신내동 779-3임	(269)	(269)						
	가-12	신내동 779-8전	(77)	(77)						가-12	신내동 779-8전	(77)	(77)						
중심 광장	다	7개소	7,126	7,126						다	7개소	7,126	7,126						
	다-1	신내동 655-2공	(596)	(596)						다-1	신내동 655-2공	(596)	(59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조경시설 파고라	다-2	신내동 777공	(618)	(618)						다-2	신내동 777공	(618)	(618)						
	다-4	신내동 산138-6임	(235)	(235)			2			다-4	신내동 산138-6임	(235)	(235)			2			
	다-5	신내동 652공	(813)	(813)			1			다-5	신내동 652공	(813)	(813)			1			
	다-7	신내동 653공	(1,330)	(1,330)			1			다-7	신내동 653공	(1,330)	(1,330)			1			
	다-8	신내동 652공	(2,944)	(2,944)						다-8	신내동 652공	(2,944)	(2,944)						
	다-9	신내동 779-6과	(590)	(590)						다-9	신내동 779-6과	(590)	(590)						
소계			4,368	4,368					5			4,368	4,368					5	
파고라	①	5개소			목재				5	①	5개소			목재				5	
	①-1	묵동 23-4공			〃				1	①-1	묵동 23-4공			〃				1	
	①-2	묵동 산46-27임			〃				1	①-2	묵동 산46-27임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①-3	묵동 산46-19공			〃				1	①-3	묵동 산46-19공			〃				1	
	①-5	신내동 751-3공			〃				1	①-5	신내동 751-3공			〃				1	
	①-6	신내동 751-3공			〃				1	①-6	신내동 751-3공			〃				1	
계류	라	2개소	706	706	자연석					라	2개소	706	706	자연석					
	라-1	신내동 산124공	(443)	(443)	자연석					라-1	신내동 산124공	(443)	(443)	자연석					
	라-2	신내동 779-1구	(263)	(263)	자연석					라-2	신내동 779-1구	(263)	(263)	자연석					
다목적 잔디 광장	마	신내동 산124공	2,306	2,306						마	신내동 산124공	2,306	2,306						
연못	바	신내동 산136-11공	517	517						바	신내동 산136-11공	517	517						
석교	샤	신내동 779-5과	14	14						샤	신내동 779-5과	14	14						
화계	쟈	중화동 19-19공	35	35						쟈	중화동 19-19공	35	3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목교	타	6개소	54	54						타	6개소	54	54						
	타-1	신내동 779-1구	(10)	(10)						타-1	신내동 779-1구	(10)	(10)						
	타-3	신내동 779-1구	(16)	(16)						타-3	신내동 779-1구	(16)	(16)						
	타-4	신내동 산136-11공	(5)	(5)						타-4	신내동 산136-11공	(5)	(5)						
	타-5	신내동 산124공	(12)	(12)						타-5	신내동 산124공	(12)	(12)						
	타-6	신내동 산123-6구	(5)	(5)						타-6	신내동 산123-6구	(5)	(5)						
	타-7	신내동 산123-6구	(6)	(6)						타-7	신내동 산123-6구	(6)	(6)						
바닥분수	어	신내동 652공	81	81						어	신내동 652공	81	81						
테마정원	냐		655	655						냐		655	65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계					2동	1,003	3,296.41							2동	1,003	3,296.41		
휴게소	사	21개소	2,968	2,968						사	21개소	2,968	2,968						
	사-1	신내동 산124공	(43)	(43)						사-1	신내동 산124공	(43)	(43)						
	사-2	신내동 779-4과	82	82						사-2	신내동 779-4과	82	82						
	사-7	신내동 산124공	(145)	(145)						사-7	신내동 산124공	(145)	(145)						
	사-8	신내동 산124공	(108)	(108)						사-8	신내동 산124공	(108)	(108)						
	사-9	신내동 602-1공	(564)	(564)						사-9	신내동 602-1공	(564)	(564)						
	냐-1	신내동 779-5과	(42)	(42)						냐-1	신내동 779-5과	(42)	(42)						
	냐-2	신내동 779-5과	(174)	(174)						냐-2	신내동 779-5과	(174)	(174)						
	냐-3	신내동 779-4과	(191)	(191)						냐-3	신내동 779-4과	(191)	(191)						
	냐-4	신내동 779-6과	(70)	(70)						냐-4	신내동 779-6과	(70)	(70)						
	냐-5	신내동 779-6과	(178)	(178)						냐-5	신내동 779-6과	(178)	(17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17	신내동 산136-11공	(47)	(47)						사-17	신내동 산136-11공	(47)	(47)						
	사-20	신내동 780공	(57)	(57)						사-20	신내동 780공	(57)	(57)						
	사-23	신내동 777공	(124)	(124)						사-23	신내동 777공	(124)	(124)						
	사-25	중화동 19-19공	(71)	(71)						사-25	중화동 19-19공	(71)	(71)						
	사-26	신내동 산136-11공	(45)	(45)						사-26	신내동 산136-11공	(45)	(45)						
	사-27	중화동 274-71대	(153)	(153)						사-27	중화동 274-71대	(153)	(153)						
	사-28	묵동 산41-1공	(36)	(36)						사-28	묵동 산41-1공	(36)	(36)						
	사-29	묵동 122-12공	(155)	(155)						사-29	묵동 122-12공	(155)	(155)						
	사-30	묵동 122-12공	(12)	(12)						사-30	묵동 122-12공	(12)	(12)						
	사-31	묵동 122-12공	(39)	(39)						사-31	묵동 122-12공	(39)	(39)						
	사-32	신내동 산127-2공	(94)	(94)						사-32	신내동 산127-2공	(94)	(94)						
	사-33	상봉동 산4-1공	(430)	(430)						사-33	상봉동 산4-1공	(430)	(430)						
	사-34	신내동 산123-6구	(41)	(41)						사-34	신내동 산123-6구	(41)	(4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유희시설		사-35	신내동 산123-6구	(33)	(33)						사-35	신내동 산123-6구	(33)	(33)						
		사-36	신내동 751-3공	(57)	(57)						사-36	신내동 751-3공	(57)	(57)						
		사-37	묵동 산41-1공	(632)	(632)						사-37	묵동 산41-1공	(632)	(632)						
	노인복지회관	1	2개소	2,135.00	2,135.00	철근콘크리트	2동	1,003	3,296.41		1	2개소	2,135	2,135	철근콘크리트	2동	1,003	3,296.41		
		1-1	신내동 771-1전	(1,285.00)	(1,285.00)	철근콘크리트	(1동)	(749)	(2,574)		1-1	신내동 771-1전	(1,285)	(1,285)	철근콘크리트	(1동)	(749)	(2,574)		
		1-2	상봉동 산31-6	(850.00)	(850.00)	철근콘크리트	(1동)	(254)	(722.41)		1-2	상봉동 산31-6	(850)	(850)	철근콘크리트	(1동)	(254)	(722.41)		
	소계			2,099	2,099					7			2,099	2,099					7	
	어린이놀이터	아	8개소	2,099	2,099					7	아	8개소	2,099	2,099					7	
		아-1	신내동 산124공	(189)	(189)					1	아-1	신내동 산124공	(189)	(189)					1	
		아-2	신내동 780공	(258)	(258)					1	아-2	신내동 780공	(258)	(258)					1	
		아-3	중화동 19-19공	(632)	(632)					1	아-3	중화동 19-19공	(632)	(632)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운동시설	소계			7,804	7,804		2동	3,615	3,615				7,804	7,804		2동	3,615	3,615		
다목적 체육관	자	아-4	신내동 751-3공	(540)	(540)					1	아-4	신내동 751-3공	(540)	(540)					1	
		아-5	묵동 산41-1공	(111)	(111)					1	아-5	묵동 산41-1공	(111)	(111)					1	
		아-6	묵동 122-12공	(132)	(132)					1	아-6	묵동 122-12공	(132)	(132)					1	
		아-7	묵동 122-12공	(31)	(31)					1	아-7	묵동 122-12공	(31)	(31)					1	
		아-8	신내동 653공	(206)	(206)						아-8	신내동 653공	(206)	(206)						
	자		2개소	3,615	3,615	철근콘크리트	2동	3,615	3,615		자	2개소	3,615	3,615	철근콘크리트	2동	3,615	3,615		
	자-1	자-1	신내동 산144-2임	(1,815)	(1,815)	〃	(1동)	(1,815)	(1,815)		자-1	신내동 산144-2임	(1,815)	(1,815)	〃	(1동)	(1,815)	(1,815)		
	자-2	자-2	묵동 산41-7임	(1,800)	(1,800)	〃	(1동)	(1,800)	(1,800)		자-2	묵동 산41-7임	(1,800)	(1,800)	〃	(1동)	(1,800)	(1,8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농구장	차	2개소	919	919						차	2개소	919	919						
		차-1	신내동 751-3공	(581)	(581)						차-1	신내동 751-3공	(581)	(581)						
		차-2	신내동 653공	(338)	(338)						차-2	신내동 653공	(338)	(338)						
	다목적 운동장	카	신내동 780공	450	450						카	신내동 780공	450	450						
	체력단련장	카	9개소	2,011	2,011						카	9개소	2,011	2,011						
		카-3	묵동 산46-27임	(656)	(656)						카-3	묵동 산46-27임	(656)	(656)						
		카-4	신내동 산138-5임	(198)	(198)						카-4	신내동 산138-5임	(198)	(198)						
		카-5	신내동 602-1공	(155)	(155)						카-5	신내동 602-1공	(155)	(155)						
		카-7	중화동 19-19공	(75)	(75)						카-7	중화동 19-19공	(75)	(75)						
		카-8	신내동 산136-11공	(80)	(80)						카-8	신내동 산136-11공	(80)	(80)						
		카-9	신내동 산136-11공	(48)	(48)						카-9	신내동 산136-11공	(48)	(48)						
		카-10	묵동 산46-27임	(381)	(381)						카-10	묵동 산46-27임	(381)	(38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카-11	묵동 20-6공	(91)	(91)						카-11	묵동 20-6공	(91)	(91)						
		카-12	신내동 산139공	(327)	(327)						카-12	신내동 산139공	(327)	(327)						
게이트볼장		버	신내동 751-3공	346	346						버	신내동 751-3공	346	346						
족구장		서	신내동 751-3공	463	463						서	신내동 751-3공	463	463						
소계				4,989	4,611		4동	658.64	766.59	66			4,989	4,611		4동	658.64	766.59	66	
봉수대지(문화재)	교양시설	파	묵동 산46-19공	2,306	2,306						파	묵동 산46-19공	2,306	2,306						
자연학습장		하	신내동 751-3공	116	116						하	신내동 751-3공	116	116						
야외무대		갸	신내동 602-1공	235	235						갸	신내동 602-1공	235	235						
숲멀티관		먀	신내동 777공	477	477	철근콘크리트	1동	95.41	151.94		먀	신내동 777공	477	477	철근콘크리트	1동	95.41	151.94		
기마체험장		퍄	신내동 777공	175	175						퍄	신내동 777공	175	175						
온기체험장		하	신내동 777공	136	136	철근콘크리트	1동	35.47	35.47		하	신내동 777공	136	136	철근콘크리트	1동	35.47	35.47		
유아숲체험원		너	묵동 3-4공	596	218					66	너	묵동 3-4공	596	218					6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험마당	하-2	신내동 779-6과	300	300						하-2	신내동 779-6과	300	300						
	숲문화관-2	마-2	신내동 779-6과	458	458	철근콘크리트	1동	347.76	299.18		마-2	신내동 779-6과	458	458	철근콘크리트	1동	347.76	299.18		
	가마체험장-2	파-2	신내동 779-6과	190	190	철근콘크리트	1동	140	140		파-2	신내동 779-6과	190	190	철근콘크리트	1동	140	140		
편익시설	소계			2,248	2,248					6			2,248	2,248						
	약수터	다	2개소	159	159						다	2개소	159	159						
		다-2	묵동 산46-22공	(140)	(140)						다-2	묵동 산46-22공	(140)	(140)						
		다-5	중화동 산12-2임	(19)	(19)						다-5	중화동 산12-2임	(19)	(19)						
	주차장	라	4개소	1,942	1,942						라	4개소	1,942	1,942						
		라-1	상봉동 12-2공	(766)	(766)						라-1	상봉동 12-2공	(766)	(766)						
		라-2	신내동 771-1공	(396)	(396)						라-2	신내동 771-1공	(396)	(396)						
		라-3	신내동 652공	713	713						라-3	신내동 652공	713	713						
		라-4	신내동 779전	67	67						라-4	신내동 779전	67	67						
	전망대	거	신내동 777공	104	104						거	신내동 777공	104	10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화장실		머	3개소	43	43						머	3개소	43	43						
		머-1	묵동 23-4공	(18)	(18)						머-1	묵동 23-4공	(18)	(18)						
		머-2	묵동 122-12공	(11)	(11)						머-2	묵동 122-12공	(11)	(11)						
		머-3	신내동 655-2공	(14)	(14)						머-3	신내동 655-2공	(14)	(14)						
관리시설	소계			38	38								38	38						
	관리사무소	2	상봉동 12-2공	38	38						2	상봉동 12-2공	38	38						
도시농업시설	소계			1,619									1,619							
	도시농업시설	러	2개소	1,619							러	2개소	1,619							
		러-1	신내동 779-5과	328							러-1	신내동 779-5과	328							
		러-2	신내동 779-4과	453							러-2	신내동 779-4과	453							
		러-3	신내동 779-4과	838							러-3	신내동 779-4과	838							
그밖의 시설	소계												736			2동	30.8	30.8	16	신설 736㎡
	번개전기놀이터										저	신내동 751-3공	736			2동	30.8	30.8	16	신설 73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479,998.3									479,085.3							감 913㎡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5,621	32,030 (5,387)				
변경					15,719	32,207 (5,387)				
당초	중 로	소계			288	(5,013)				
당초		2	1	20	125	(2,500)	도시 계획 도로	묵동, 산37-1임	묵동, 산41-2임	
당초		2	2	15	163	(2,513)		신내동 652-1도	중심광장 가-8	
당초	소 로	소계			105	399 (374)				
당초		3	1	7	48	(374)	도시 계획 도로	상봉동, 산31-6임	중화동, 산12임	도자구역 부분편입
당초		3	3	7	57	399		공릉로2길	묵동 122-1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율에 미포함.								
당초	산책로	소계			15,564	31,631				
변경					15,662	31,808				
당초			1	2.0	161	322	연결로	산책로157	도시계획도로	
당초			2	1.5	70	104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57	도자구역 부분편입
당초			3	1.5	68	102	산책로	산책로79	산책로15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	1.5	284	425	산책로	산책로157	산책로9	
당초			6	1.5	55	83	산책로	산46-22임	산책로7	
당초			7	1.5	88	132	연결로	소로3-3	산책로157	
당초	산책로		9	1.5	317	475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57	
당초			10	1.5	471	706	산책로	산책로130	산책로22	
당초			20	1.5	84	126	산책로	동일로148길	도자구역	
당초			21	1.5	9	13	연결로	산책로10	도자구역	
당초			22	3	206	618	산책로	봉수대지 파	산책로10	
당초			24	1.5	230	345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25	
당초			25	1.5	465	697	산책로	중화1동 274-63	산책로151	
당초			26	1.5	70	105	산책로	산책로25	중화동 42	
당초			27	1.5	187	281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157	
당초			30	1.5	124	185	산책로	산책로126	도자구역	
당초			31	5	142	711	산책로	상봉동, 481-2공	공원내녹지	
당초			33	1.5	43	65	산책로	산책로123	산책로34	
당초			34	1.5	48	74	산책로	야외무대, 가1	산책로40	
당초			35	1.5	246	370	산책로	휴게소 사-33	산책로47	
당초			36	2	309	618	연결로	진입광장 가-2	진입광장 가-10	
당초			37	2	5	11	연결로	목교 타-6	산책로36	
당초			38	2	271	541	연결로	산책로36	중심광장 다-4	
당초			39	1.5	125	187	연결로	산책로40	산책로41	
당초			40	1.5	50	75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1	다목적 잔디광장, 마	
당초			41	1.5	71	109	연결로	산책로34	휴게소, 사-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2	1.5	31	47	연결로	산책로43	산책로36	
당초			43	1.5	54	86	연결로	산책로41	산책로39	
당초			44	1.5	19	30	연결로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5	1.5	18	29	연결로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6	3.5	382	1,335	연결로	중심광장 다-4	산책로114	
당초			47	3	529	1,520	연결로	중심광장 다-4	체력단련장 카-3	
당초			48	1.5	312	467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22	
당초			50	2	136	273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52	
당초			52	2	262	523	연결로	산책로48	도자구역	
당초			54	2	305	609	연결로	중심광장 다-4	산책로71	
당초	산책로		68	1.8	95	172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너	산책로158	
당초			69	2	165	329	연결로	묵동 산41-1공	산책로1	
당초			70	2	13	25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22	
당초			71	2	232	464	연결로	신내동, 655-2공	신내동, 655-2공	
당초			72	3.5	164	460	연결로	중심광장 다-8	진입광장 가-6	
당초			73	3	66	198	연결로	중로 2-2	산책로84	
당초			74	2	32	65	연결로	진입광장 가-5	산책로73	
당초			75	4	70	280	연결로	중심광장 다-7	도자구역 산책로75	
당초			79	2	166	332	진입로	묵동 산43-1	야외무대 갸-1	
당초			81	2	80	179	연결로	중심광장 다-2	도자구역 산책로 81	
당초			82	2	100	200	연결로	산책로83	산책로83	
당초			83	2	165	329	연결로	전망대 거	산책로81	
당초			84	3	55	164	연결로	옹기체험장 햐	산책로73	
당초			85	1.5	66	99	연결로	목공체험장 더	산책로8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86	1.5	80	120	연결로	휴게소 사-23	산책로84	
당초			91	2.5	71	178	연결로	산책로73	산책로93	
당초			92	2	47	94	연결로	산책로73	산책로91	
당초			93	2	7	14	연결로	산책로97	다목적운동장 카	
당초			94	1.2	7	8	연결로	산책로73	산책로95	
당초			95	1.2	80	96	연결로	신내공원	목교, 타-3	
당초			97	3	38	112	연결로	진입광장 가-6	산책로72	
당초			99	2	252	505	산책로	중화동 19-6	산책로126	
당초			100	1.8	21	37	연결로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1	1.8	26	48	연결로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2	2	101	204	산책로	산책로99	산책로99	
당초			103	4.3	5	22	연결로	산책로99	어린이놀이터,아-3	
당초			104	1.4	7	10	연결로	산책로102	산책로105	
당초			105	2	138	279	산책로	중화동 19-6	산책로99	
당초			106	2	5	11	연결로	산책로102	산책로105	
당초	산책로		107	2	5	9	연결로	산책로105	439-1공	
당초			108	1.8	30	54	연결로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9	1.8	25	45	연결로	산책로105	산책로105	
당초			110	2	6	13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3	휴게소, 사-25	
당초			111	2.3	7	15	연결로	산책로112	신내동 655-2	
당초			112	2	32	65	연결로	체력단련장 카-8	체력단련장 카-9	
당초			113	2	72	143	연결로	신내동 655-2	체력단련장 카-8	
당초			114	1.8	76	137	연결로	산책로113	신내동 655-2	
당초			115	1.8	2	4	연결로	산책로114	휴게소 사-1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16	2	13	27	연결로	산책로113	산책로114	
당초			117	4	24	67	연결로	중로 2-2	중심광장 다-5	
당초			118	2	263	527	연결로	진입광장 가-9	진입광장 가-9	
당초			119	1.5	56	84	연결로	산책로118	산책로118	
당초			120	1.5	31	47	연결로	산책로118	산책로118	
당초			121	2	64	127	연결로	산책로122	산책로118	
당초			122	1.5	81	121	연결로	산책로44	산책로157	
당초			123	2	23	46	연결로	휴게소 사-7	야외무대 가-1	
당초			124	1.5	216	324	연결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당초			125	1.5	52	78	연결로	산책로31	산책로124	
당초			126	2	83	165	진입로	도자구역	봉화산로33길	
당초			127	3.5	44	154	연결로	동일로144길	동일로144길	
당초			128	1.5	99	149	연결로	산책로127	도자구역	
당초			129	1	70	70	연결로	산책로20	산책로10	
당초			130	1.5	121	182	연결로	산책로13	동일로152길	
당초			131	1.5	65	97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6	산책로10	
당초			132	1.5	31	46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6	산책로130	
당초			133	1.5	12	18	연결로	동일로154길	산책로130	
당초			134	1.5	44	66	연결로	휴게소 사-29	산책로131	
당초			135	2	8	21	연결로	화장실 머-4	산책로136	
당초	산책로		136	1.5	34	52	연결로	휴게소 사-29	산책로10	
당초			137	1	26	26	연결로	산책로10	산책로10	
당초			138	2	11	20	연결로	동일로154길	산책로13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39	1	7	7	연결로	산책로129	산책로130	
당초			140	1.5	114	170	진입로	중로 2-1	휴게소 사-28	
당초			141	1.5	5	8	연결로	산책로140	산책로158	
당초			142	1.5	4	7	연결로	산책로140	산책로158	
당초			143	1.5	3	4	연결로	산책로140	산책로158	
당초			144	1.8	72	130	연결로	산책로 178	산책로1	
당초			145	1.5	57	85	연결로	산책로157	도자구역	
당초			146	1.5	13	20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산책로160	
당초			147	1.5	11	16	연결로	휴게소 사-23	산책로82	
당초			148	1.5	51	77	연결로	산책로84	산책로161	
당초			149	1.5	7	10	연결로	산책로46	도자구역 산책로149	
당초			150	2	27	55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52	
당초			151	3	105	316	연결로	진입광장 가-7	산책로48	
당초			152	1.2	14	17	연결로	봉수대지 파	체력단련장 카-12	
당초			153	1.8	20	36	연결로	산책로151	산책로162	
당초			154	1.2	13	15	연결로	산책로155	휴게소 사-35	
당초			155	2	12	24	연결로	화장실 랴-1	산책로36	
당초			156	2	6	12	연결로	목교 탸-6	휴게소 사-33	
당초			157	1.5	1,681	2,522	둘레길	산책로35	산책로35	
당초			158	1.5	129	193	연결로	산책로 178	산책로157	
당초			159	2	109	218	연결로	묵동 산41-1공	산책로7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60	1.5	81	121	진입로	산책로 178	도시계획도로	
당초			161	1.4	30	42	연결로	중심광장 다-2	산책로84	
당초			162	1.5	35	52	연결로	산책로48	산책로151	
당초			163	1.5	11	16	연결로	목공체험장 더	산책로 86	
당초			165	2.5	63	143	연결로	산책로 117	산책로 181	
당초			166	2~3	113	350	연결로	산책로 167	산책로 169	
당초			167	4	28	123	연결로	산책로 165	산책로 165	
당초			168	3.5	20	77	연결로	중심광장 다-5	산책로 167	
당초			169	2~6	46	196	연결로	중심광장 다-5	산책로 117	
당초	산책로		171	2.5	23	60	연결로	산책로 166	신내동 655-1도	
당초			172	3~8	14	89	연결로	농구장 차-2	산책로 173	
당초			173	3	117	390	연결로	중심광장 다-7	농구장 차-2	
당초			174	4	44	188	연결로	광장 다-8	산책로 81	
당초			175	3~4	68	293	연결로	산책로 174	중심광장 다-2	
당초			176	3~8	9	58	연결로	중심광장 다-5	산책로 166	
당초			177	4	33	133	연결로	중심광장 다-7	농구장 차-2	
당초			178	1.8	595	1,070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너	중심광장 다-7	
당초			179	2	161	321	연결로	산책로 114	산책로 4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80	2.5	29	98	연결로	산책로 166	산책로 181	
당초			181	4	68	282	연결로	중로 2-2	산책로 182	
당초			182	4	127	543	연결로	테마정원 나-5	신내동 655-1도	
당초			183	3	9	32	연결로	산책로 166	산책로 182	
당초			184	1.5	184	314	연결로	산책로 189	산책로 182	
당초	산책로		185	2	77	160	연결로	산책로 184	산책로 182	
당초			186	0.8~1.5	15	15	연결로	산책로 184	산책로 185	
당초			187	2	47	108	연결로	산책로 185	테마정원 나-5	
당초			188	2	12	25	연결로	산책로 185	산책로 184	
당초			189	2	84	189	연결로	산책로 184	관리시설 4	
당초			190	2	39	86	연결로	관리시설 4	산책로 182	
당초			191	6~20	32	280	진입로	중심광장 다-8	산책로 191	
당초			192	1.8	45	89	진입로	산책로 189	산책로 72	
신설			193	1.8	69	133	연결로	산책로 178	저 반려견놀이터	
신설			194	1.5	29	44	연결로	다-7 중심광장	산책로 178	

세부계획결정도[변경전]

봉화산근린공원

SCALE=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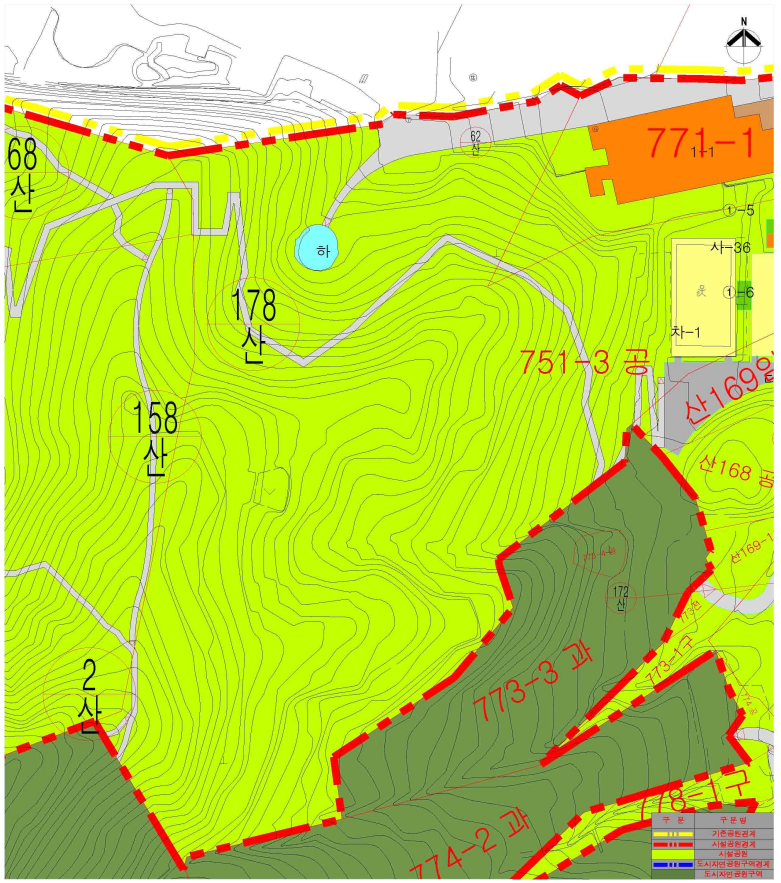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소계		556,451.3	69,969.0	79	
기반시설	소계		46,185	42,798		
	도로	㉮	37,417	32,030 (5,387)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제외함
	진입광장	가	3,642	3,642		
		가-1	299	299		
		가-2	234	234		
		가-3	147	147		
		가-4	799	799		
		가-5	83	83		
		가-6	514	514		
		가-7	289	289		
		가-8	632	632		
		가-9	204	204		
		가-10	96	96		
		가-11	269	269		
		가-12	77	77		
	중심광장	다	7,126	7,126		
		다-1	598	598		
		다-2	818	818		
		다-4	235	235		
		다-6	813	813		
		다-7	1,330	1,330		
		다-8	2,944	2,944		
		다-9	590	590		
도입시설	소계		4,388	4,388	5	
	파고라	⑮			5	
		⑮-1			1	
		⑮-2			1	
		⑮-3			1	운동형파고라
		⑮-5			1	
		⑮-6			1	
	지류	라	708	708		
		라-1	443	443		
		라-2	263	263		
	다목적전다광장	마	2,306	2,306		
	연못	바	517	517		
	석교	사	14	14		
	휘거	자	35	35		
	목교	타	54	54		
		타-1	10	10		
		타-3	16	16		
		타-4	5	5		
		타-5	12	12		
		타-6	5	5		
		타-7	6	6		
	바닥분수대	어	81	81		
	야외공원	나	855	855		
		나-1	42	42		
		나-2	174	174		
		나-3	191	191		
		나-4	70	70		
		나-5	178	178		
휴양시설	소계		5,103	5,103		
	휴게소	사	2,988	2,068		
		사-1	43	43		
		사-2	82	82		
		사-7	145	145		
		사-8	108	108		
		사-9	564	564		
		사-17	47	47		
		사-20	57	57		
		사-23	124	124		
		사-25	71	71		
		사-26	45	45		
		사-27	153	153		
		사-28	36	36		
		사-29	155	155		봉화한휴게소
		사-30	12	12		
		사-31	39	39		
		사-32	84	94		
		사-33	430	430		
		사-34	41	41		
		사-35	33	33		
		사-36	57	57		
		사-37	832	832		
	노인복지회관	1	2,135	2,135		
		1-1	1,285	1,285		
		1-2	850	85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유희시설	소계		2,099	2,099	7	
	어린이놀이터	아	2,099	2,099	7	
		아-1	189	189	1	
		아-2	258	258	1	
		아-3	632	632	1	
		아-4	540	540	1	
		아-5	111	111	1	
		아-6	132	132	1	
		아-7	31	31	1	
		아-8	206	206		
운동시설	소계		7,604	7,604		
	다목적체육관	자	3,615	3,615		
		자-1	1,815	1,815		
		자-2	1,800	1,800		
	놀구장	차	919	919		
		차-1	581	581		
		차-2	338	338		
	다목적운동장	카	460	460		
	체력단련장	카	2,011	2,011		
		카-3	655	655		
		카-4	198	198		
		카-5	155	155		
		카-7	75	75		
		카-8	80	80		
		카-9	48	48		
		카-10	381	381		
		카-11	91	91		
		카-12	327	327		
	게이트볼장	버	346	346		
	축구장	서	463	463		
교양시설	소계		4,989	4,811	66	
	동주대지	파	2,306	2,306		
	자연학습장	하	116	116		
	야외무대	가	235	235		
	솔문화관	마	477	477		
	가마체험장	바	175	175		
	옹기체험장	하	136	135		
	유아놀체험원	너	596	218	66	
	청원마당	마-2	300	300		
	솔문화관-2	마-2	458	458		
	가마체험장-2	바-2	190	190		
편익시설	소계		2,248	2,248		
	약수터	다	159	159		
		다-2	140	140		
		다-5	19	19		
	주차장	라	1,942	1,942		
		라-1	766	766		
		라-2	395	395		
		라-3	713	713		
		라-4	67	67		
	전망대	거	104	104		
	화장실	머	43	43		
		머-1	16	16		
		머-2	11	11		
		머-3	14	14		
관리시설	소계		38	38		
	관리사무소	2	38	38		
도시농업시설	소계		1,619			
	도시농업시설	러	1,619			
		러-1	328			
		러-2	453			
		러-3	838			
도지및기타	소계		476,998.3			
	녹지		476,998.3			

구분	구분명
	기준공원경계
	시설관리경계
	시설경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경원구역

Scale : 1/500(A1)

0 50 100 200

세부계획결정도[변경후]

봉화산근린공원

SCALE=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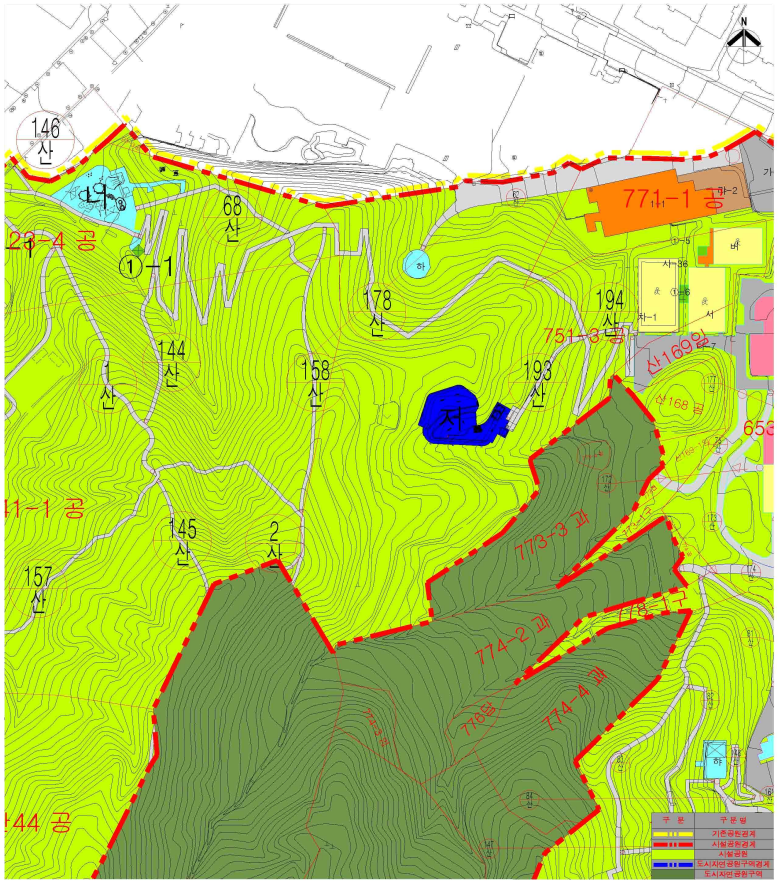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556,451.3	69,245.0	95	
기반시설	소계		48,352.0	42,975.0		
	도로	(합)	37,594.0	32,207.0 (5,387)		도시계획도로 시설현적색표
	진입광장	가	3,642	3,642		
		가-1	299	299		
		가-2	234	234		
		가-3	147	147		
		가-4	799	799		
		가-5	83	83		
		가-6	514	514		
		가-7	288	288		
		가-8	632	632		
		가-9	204	204		
		가-10	96	96		
		가-11	269	269		
		가-12	77	77		
	중심광장	다	7,126	7,126		
		다-1	596	596		
		다-2	818	818		
		다-4	235	235		
		다-5	813	813		
		다-7	1,330	1,330		
		다-8	2,944	2,944		
		다-9	590	590		
조경시설	소계		4,368	4,368	5	
	피고리	ⓓ			5	
		ⓓ-1			1	
		ⓓ-2			1	
		ⓓ-3			1	문종형피고리
		ⓓ-5			1	
		ⓓ-6			1	
	계류	라	706	706		
		라-1	443	443		
		라-2	263	263		
	다목적잔디광장	마	2,306	2,306		
	연못	바	517	517		
	석고	사	14	14		
	원계	자	35	35		
	약고	타	54	54		
		타-1	10	10		
		타-2	16	16		
		타-4	5	5		
		타-5	12	12		
		타-6	5	5		
		타-7	6	6		
	바닥분수	아	81	81		
	태극정원	나	655	655		
		나-1	42	42		
		나-2	174	174		
		나-3	191	191		
		나-4	70	70		
		나-5	178	178		
휴양시설	소계		5,103	5,103		
	휴게소	사	2,868	2,868		
		사-1	43	43		
		사-2	82	82		
		사-7	145	145		
		사-8	108	108		
		사-8	564	564		
		사-17	47	47		
		사-20	57	57		
		사-23	124	124		
		사-25	71	71		
		사-26	45	45		
		사-27	153	153		
		사-28	36	36		
		사-29	155	155		봉화한휴게소
		사-30	12	12		
		사-31	39	39		
		사-32	84	84		
		사-33	430	430		
		사-34	41	41		
		사-35	33	33		
		사-36	57	57		
		사-37	632	632		
	노인복지회관	1	2,135	2,135		
		1-1	1,285	1,285		
		1-2	850	85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유희시설	소계		2,099	2,099	7	
	어린이놀이터	아	2,099	2,099	7	
		아-1	189	189	1	
		아-2	258	258	1	
		아-3	632	632	1	
		아-4	540	540	1	
		아-5	111	111	1	
		아-6	132	132	1	
		아-7	31	31	1	
		아-8	206	206		
운동시설	소계		7,804	7,804		
	다목적체육관	지	3,615	3,615		
		지-1	1,815	1,815		
		지-2	1,800	1,800		
	농구장	차	919	919		
		차-1	581	581		
		차-2	338	338		
	다목적운동장	카	450	450		
	체력단련장	카	2,011	2,011		
		카-3	656	656		
		카-4	198	198		
		카-5	155	155		
		카-7	75	75		
		카-8	80	80		
		카-9	46	46		
		카-10	381	381		
		카-11	91	91		
		카-12	327	327		
	게이트볼장	버	346	346		
	축구장	서	463	463		
교양시설	소계		4,389	4,611	66	
	물주머지	파	2,306	2,306		
	지반학습장	하	116	116		
	야외무대	가	235	235		
	숲문화관	마	477	477		
	기마체험장	배	175	175		
	종기체험장	배	135	135		
	팬이숲회원원	너	596	218	66	
	체험마당	바-2	300	300		
	숲문화관-2	마-2	458	458		
	기마체험장-2	배-2	190	190		
편익시설	소계		2,248	2,248		
	약수터	다	159	159		
		다-2	140	140		
		다-5	19	19		
	주차장	과	1,942	1,942		
		과-1	766	766		
		과-2	396	396		
		과-3	713	713		
		과-4	67	67		
	진입대	거	104	104		
	화장실	머	43	43		
		머-1	18	18		
		머-2	11	11		
		머-3	14	14		
관리시설	소계		38	38		
	관리사무소	2	38	38		
도시농업시설	소계		1,818			
	도시농업시설	러	1,818			
		러-1	329			
		러-2	453			
		러-2	836			
	소계		736		16	
	인라인놀이터	퍼	736		16	
녹지등기타	소계		479,085.3			
	녹지		479,085.3			

Scale : 1/500(A1)

0 50 100 200

서울특별시
2026. 4. 23. (목)

조성계획도[변경전]

봉화산근린공원

SCALE=1/3,000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계			556,451.3	69,969.0	79	
기반시설	소 계		45,185	42,799		
	도 로	㉮	37,417	32,03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제외함
	진 입 광 장	가	3,642	3,642		
		가-1	299	299		
		가-2	234	234		
		가-3	147	147		
		가-4	799	799		
		가-5	83	83		
		가-6	514	514		
		가-7	289	289		
		가-8	632	632		
		가-9	204	204		
		가-10	96	96		
		가-11	269	269		
		가-12	77	77		
	중 심 광 장	다	7,126	7,126		
		다-1	598	598		
		다-2	818	818		
		다-4	235	235		
		다-6	813	813		
		다-7	1,330	1,330		
		다-8	2,944	2,944		
		다-9	590	590		
조경시설	소 계		4,368	4,368	5	
	파 고 라	㉯			5	
		㉯-1			1	
		㉯-2			1	
		㉯-3			1	운동형파고라
		㉯-5			1	
		㉯-6			1	
	계 류	라	706	706		
		라-1	443	443		
		라-2	263	263		
	다목적잔디광장	마	2,306	2,306		
	연 못	바	517	517		
	석 교	사	14	14		
	휘 거	자	35	35		
	목 교	타	54	54		
		타-1	10	10		
		타-2	16	16		
		타-4	5	5		
		타-5	12	12		
		타-6	5	5		
		타-7	6	6		
	바닥분수대 미끄럼방지	어	81	81		
		나	555	555		
		나-1	42	42		
		나-2	174	174		
		나-3	191	191		
		나-4	70	70		
		나-5	178	178		
휴양시설	소 계		5,103	5,103		
	휴 게 소	사	2,988	2,068		
		사-1	43	43		
		사-2	82	82		
		사-7	145	145		
		사-8	108	108		
		사-9	564	564		
		사-17	47	47		
		사-20	57	57		
		사-23	124	124		
		사-25	71	71		
		사-26	45	45		
		사-27	153	153		
		사-28	36	36		
		사-29	155	155		문화원휴게소
		사-30	12	12		
		사-31	39	39		
		사-32	84	84		
		사-33	430	430		
		사-34	41	41		
		사-35	33	33		
		사-36	57	57		
		사-37	832	832		
	노인복지회관	1	2,135	2,135		
		1-1	1,285	1,285		
		1-2	850	85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유희시설	소 계		2,099	2,099	7	
	어린이놀이터	아	2,099	2,099	7	
		아-1	189	189	1	
		아-2	258	258	1	
		아-3	632	632	1	
		아-4	540	540	1	
		아-5	111	111	1	
		아-6	132	132	1	
		아-7	31	31	1	
		아-8	206	206		
운동시설	소 계		7,604	7,604		
	다목적체육관	지	3,615	3,615		
		지-1	1,815	1,815		
		지-2	1,800	1,800		
	놈구장	지	919	919		
		지-1	581	581		
		지-2	338	338		
	다목적운동장	키	460	460		
	체력단련장	카	2,011	2,011		
		카-3	658	656		
		카-4	198	198		
		카-5	155	155		
		카-7	75	75		
		카-8	80	80		
		카-9	48	48		
		카-10	381	381		
		카-11	91	91		
		카-12	327	327		
	게이트볼장	버	346	346		
	축구장	서	463	463		
교양시설	소 계		4,889	4,811	66	
	동문대지	파	2,306	2,306		
	자연학습장	하	116	116		
	어린이무대	가	235	235		
	솔문화관	마	477	477		
	가마세림장	바	175	175		
	중기세림장	하	126	135		
	유아숲체험원	너	596	218	66	
	청원마당	하-2	300	300		
	솔문화관-2	마-2	458	458		
	기마체험장-2	바-2	190	190		
편익시설	소 계		2,248	2,248		
	약 수 터	다	159	159		
		다-2	140	140		
		다-5	19	19		
	주 차 장	라	1,942	1,942		
		라-1	766	766		
		라-2	396	396		
		라-3	713	713		
		라-4	67	67		
	전 망 대	가	104	104		
	화 장 실	머	43	43		
		머-1	18	18		
		머-2	11	11		
		머-3	14	14		
관리시설	소 계		38	38		
	관리사무소	2	38	38		
도시농업시설	소 계		1,618			
	도시농림시설	리	1,618			
		리-1	328			
		리-2	453			
		리-3	839			
도지않기 타	소 계		476,998.3			
	녹 지		476,998.3			

Scale : 1/3,000(A1)

0 25 50 100

조성계획도[변경후]

봉화산근린공원

SCALE=1/3,000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합계			556,451.3	69,245.0	95	
기반시설	소 계		48,352.0	42,975.0		
	도 로	㉮	37,594.0	32,207.0 (5,387)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제외함
	진 입 광 장	기	3,642	3,642		
		가-1	299	299		
		가-2	234	234		
		가-3	147	147		
		가-4	799	799		
		가-5	83	83		
		가-6	514	514		
		가-7	289	289		
		가-8	632	632		
		가-9	204	204		
		가-10	96	96		
		가-11	269	269		
		가-12	77	77		
	중 심 광 장	다	7,126	7,126		
		다-1	598	598		
		다-2	818	818		
		다-4	235	235		
		다-5	813	813		
		다-7	1,330	1,330		
		다-8	2,944	2,944		
		다-9	590	590		
조경시설	소 계		4,368	4,368	5	
	파 고 라	㉯			5	
		㉯-1			1	
		㉯-2			1	
		㉯-3			1	운동형파고라
		㉯-5			1	
		㉯-6			1	
	계 류	라	706	706		
		라-1	443	443		
		라-2	263	263		
	디목적전다광장	마	2,306	2,306		
	연 못	바	517	517		
	석 교	사	14	14		
	휘 지	자	35	35		
	목 교	타	54	54		
		타-1	10	10		
		타-3	16	16		
		타-4	5	5		
		타-5	12	12		
		타-6	5	5		
		타-7	6	6		
	바 닥 분 수	아	81	81		
	대 피 정 원	나	855	855		
		나-1	42	42		
		나-2	174	174		
		나-3	191	191		
		나-4	70	70		
		나-5	178	178		
휴양시설	소 계		5,103	5,103		
	휴 게 소	사	2,988	2,068		
		사-1	43	43		
		사-2	82	82		
		사-7	145	145		
		사-8	108	108		
		사-9	564	564		
		사-17	47	47		
		사-20	57	57		
		사-23	124	124		
		사-25	71	71		
		사-26	45	45		
		사-27	153	153		
		사-28	36	36		
		사-29	155	155		문화원휴게소
		사-30	12	12		
		사-31	39	39		
		사-32	84	84		
		사-33	430	430		
		사-34	41	41		
		사-35	33	33		
		사-36	57	57		
		사-37	632	632		
	노인복지회관	1	2,135	2,135		
		1-1	1,285	1,285		
		1-2	850	85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 고
편의시설	소 계		2,099	2,099	7	
	어린이놀이터	아	2,099	2,099	7	
		아-1	189	189	1	
		아-2	258	258	1	
		아-3	632	632	1	
		아-4	540	540	1	
		아-5	111	111	1	
		아-6	132	132	1	
		아-7	31	31	1	
		아-8	206	206		
운동시설	소 계		7,604	7,604		
	다목적체육관	지	3,615	3,615		
		지-1	1,815	1,815		
		지-2	1,800	1,800		
	놀구장	지	919	919		
		지-1	581	581		
		지-2	338	338		
	다목적운동장	키	460	460		
	체력단련장	카	2,011	2,011		
		카-3	658	656		
		카-4	198	198		
		카-5	155	155		
		카-7	75	75		
		카-8	80	80		
		카-9	48	48		
		카-10	381	381		
		카-11	91	91		
		카-12	327	327		
	게 이 트 볼 장	버	346	346		
	축 구 장	서	463	463		
교양시설	소 계		4,889	4,811	66	
	동 주 대 지	파	2,306	2,306		
	자 연 학 습 장	하	116	116		
	이 동 무 대	거	235	235		
	음 문 화 관	머	477	477		
	기 마 체 험 장	배	175	175		
	음 기 체 험 장	하	136	135		
	유 아 숲 체 험 원	너	596	218	66	
	청원마당	머-2	300	300		
	숲문화관-2	머-2	458	458		
	기마체험장-2	배-2	190	190		
업적시설	소 계		2,248	2,248		
	박 수 터	더	159	159		
		더-2	140	140		
		더-5	19	19		
	추 지 장	러	1,942	1,942		
		러-1	766	766		
		러-2	396	396		
		러-3	713	713		
		러-4	67	67		
	전 망 대	커	104	104		
	화 장 실	머	43	43		
		머-1	16	16		
		머-2	11	11		
		머-3	14	14		
관리시설	소 계		38	38		
	관리사무소	2	38	38		
도시농업시설	소 계		1,618			
	도시농업시설	러	1,618			
		러-1	328			
		러-2	453			
		러-3	838			
기타	소 계		736		16	
	안전건널이터	저	736		16	
	소 계		479,085.3			
	녹 지		479,085.3			

Scale : 1/3,000(A1)

0 25 50 1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1호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03. 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	-	증) 45,566.4	45,566.4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45,566.4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6,114.0	13.4	-
	도로	514.0	1.1	-
	공원	3,850.0	8.5	-
	사회복지시설	1,750.0	3.8	연면적 3,500㎡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연면적 2,938.5㎡(72면))
획지	소 계	39,452.4	86.6	-
	공동주택	39,452.4	86.6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5,566.4	-	45,566.4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94.2	감) 994.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1,410.4	감) 35,296.4	6,114.0	13.4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61.8	감) 3,161.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9,452.4	39,452.4	86.6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중화동 332-48번지 일대	제1종일반	제3종일반	994.2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32-33번지 일대	제2종일반(7층이하)	제3종일반	35,990.95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08-8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3종일반	2,467.21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08-30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2종일반(7층이하)	694.67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09-39번지 일대	제2종일반(7층이하)	제2종일반(7층이하)	5,419.35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table>
<tr><td rowspan="5">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td></tr>
<tr><td>• 추정비례율 : (1,066,374,658천원-673,973,296천원)÷385,615,432천원=101.76%</td></tr>
<tr><td>• 총수입 추정가액 : 1,066,374,658천원</td></tr>
<tr><td>• 총지출 추정가액 : 673,973,296천원</td></tr>
<tr><td>• 종전자산 총액 추정가액 : 385,615,432천원</td></tr>
<tr><td rowspan="2">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일반부동산 소유자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및 유사부동산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등을 참작하였음.
- 건물 : 재조달원가에 사용승인에 따른 감가수정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잔가율을 고려하였음.</td></tr>
<tr><td>•집합건물 소유자(공동주택 및 집합상가 소유자) : 대상과 유사한 집합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전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자산 추정액에 토지평가액 포함</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a) (천원)</th><th>추정권리가액
(b)</th><th>추정분담금
(a-b)</th></tr>
<tr><td>전용 39㎡ 형</td><td>511,000천원</td><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1.76%)</td><td rowspan="4">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 49㎡ 형</td><td>647,000천원</td></tr>
<tr><td>전용 59㎡ 형</td><td>799,000천원</td></tr>
<tr><td>전용 84㎡ 형</td><td>1,060,000천원</td></tr>
</table></td></tr>
</table>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	-	-	-	-	-	중화동 일대	중화동 일대	-	-	건고1967-11 (67.01.21.)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6	중화동 65-9	중화동 65-9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34	중화동 332-125	중화동 332-12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A	4	국지도로	10	중화동 332-146	중화동 332-146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A	•도로 신설 - B = 12m, L = 34m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A	•도로 신설 - B = 4m, L = 10m	•정비구역 경계부 기존 건축물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A	•도로 선형 변경 - B = 8m, L = 6m	•정비구역 경계부 기존 건축물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	주차장	중랑구 중화동 332-119번지 일대	-	증) 1,750.0	1,750.0	-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 = 1,750.0㎡	•대상지 인근 도로 거주자우선주차 삭선에 따른 주차장시설 대체 확보 및 토지자원의 복합·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차장 계획 -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다.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중랑구 중화동 308-69번지 일대	-	증) 3,850.0	3,850.0	-	-
폐지	㉮	배꽃공원	어린이공원	중랑구 중화동 332-48번지 일대	991.0	감) 991.0	-	서고1955-141 (95.5.2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공원 신설	•이용객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	배꽃공원	•공원 폐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폐지

라.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	사회복지시설	중랑구 중화동 332-119번지 일대	-	증)1,750.0	1,750.0	-	주차장 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A = 1,750.0㎡	• 중화동 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데이케이센터 등) 공급 및 토지자원의 복합·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계획 -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 건축범위 결정 조서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지상4층(18.0m)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	건축물 기부채납	비고
건축물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신설 - 연면적 : 2,938.5㎡ - 토지환산면적 : 1,194.5㎡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공영주차장 1,000~3,000㎡ 미만 신축 기준 산정 - ㎡당 공사비 : 3,021천원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연면적 : 3,500.0㎡ - 토지환산면적 : 1,956.4㎡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노인요양시설 2,000~5,000㎡ 미만 신축 기준 산정 - ㎡당 공사비 : 4,157천원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계획면적(㎡)	비고
			법 정			
			기 준	면 적(㎡)		
합계		-	-	-	5,855	-
주민공동시설	소계	-	-	-	5,625	-
	경로당	획지	1,000~1,500세대 미만 580㎡ 이상	580	580	-
	어린이집	획지	1,000~1,500세대 미만 580㎡ 이상	580	580	-
	작은도서관	획지	1,000~1,500세대 미만 203㎡ 이상	203	203	-
	주민운동시설	획지	-	-	1,000	-
	어린이놀이터	획지	500㎡+세대수*0.7㎡	1,396	1,400	-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66㎡ 이상	66	100	-
	돌봄시설	획지	최소설치면적 : 66㎡ 이상	66	881	-
	고령서비스시설	획지	최소설치면적 : 10명이상(1명당 15.9㎡확보)	-	881	-
부대시설	소계	-	-	-	230	-
	관리사무소	획지	10㎡+50세대 초과 세대수 마다 500㎡ =(100㎡초과 시 100㎡ 적용)	100	230	경비실, MDF, 방재실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이상 확보
= {500㎡ + (1,280세대 x 2㎡)} x 1.25 = 3,825㎡ 이상 < 5,625㎡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45,566.4	획지	39,452.4	중랑구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	233	-	-	233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45,566.4	획지	39,452.4	중랑구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66.57 이하	300 이하	115 이하 (35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80%이상 건립(100.0%)

구분	세대수	
	세대수(세대)	비율(%)
계	1,280	100.0
60㎡이하	812	63.4
60~85㎡이하	468	36.6
85㎡초과	-	-

구분	건립규모	임대주택		
		소계	40㎡이하	40㎡초과
초과용적률 전 세대수	1,144	175	68	107
구성비(%)	100.0	15.3	5.9	9.4
임대주택 구성비(%)	-	100.0	38.9	61.1

- 85㎡이하 규모의 주택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 계획 100.0%
-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계획 세대수의 15.3%
- 전용면적 40㎡이하 비율※ [기준 : 임대 30% 이상 또는 전체 5% 이상]▶계획 38.9%, 5.9%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136대) 제외
- 국민주택규모(85㎡이하) 건설 [기준 : 초과용적률의 50%이상]▶계획 52.4%

상한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 50%	임대주택공급계획 (의무공급면적)
266.57%	299.63%	33.06%	16.53%	6,840.95㎡ (6,521.48㎡)

심의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완화 20.0% (소형주택확보 20.0%)
•허용용적률(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공공보행통로 6.36%, 돌봄시설 4.45%, 고령서비스시설 3.95%, 친환경건축물 1.50%, 방재안전 5.00%
→ 총 21.26%(최대 20.0% 적용)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63%(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동일로143길 변(대상지 북측 장미제일시장 경계부) : 6m
•동일로139길 변 : 6m
•중랑역로 변(대상지 동측 경계부) : 5m
•공공보행통로 변 : 4m
•그 외(중랑천로변 등) :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중화역, 신묵초등학교, 장미제일시장 등에 접근 가능한 남-북 방향의 폭원 8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상세위치 도면 참고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6">산 정 내 용</td></tr>
<tr><td colspan="2"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
(공동주택)</td><td colspan="2">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td><td rowspan="2">신설 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 ·공유지</td></tr>
<tr><td>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지분포함)</td><td>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td></tr>
<tr><td colspan="2"></td><td>45,566.4㎡</td><td>39,452.4㎡</td><td>6,114.0㎡</td><td>3,150.9㎡</td><td>376.8㎡</td><td>4,496.4㎡</td></tr>
<tr><td rowspan="5">공동주택</td><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6,114.0㎡ + 3,150.9㎡ - 376.8㎡ - 4,496.4㎡ = 4,391.7㎡
□ ※ 용도지역 상향면적 대비(11.13%)</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209.0% = 189.0%(용도지역 혼재 가중평균) + 20.00%(기준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완화 : 20%(소형주택 확보 2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 243.0%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x 사업성보정계수) = 209.0% + (20% x 1.7)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총 20%) : 공공보행통로 6.36%, 돌봄시설 4.45%,
고령서비스시설 3.95%, 친환경건축물 1.50%, 방재안전 5.00%
→ 총 21.26% (최대 20.0% 적용)
※ 사업성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 5,969,319 ÷ 3,513,793 = 1.7</td></tr>
<tr><td row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6">• 266.57%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x 사업성보정계수)
+ (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x α (토지)) + (허용용적률 x 0.7 x α (건축물1)
+ (허용용적률 x 1.0 x α (건축물2))
= (189.0% + 20% + (20% x 1.7)) + (209.0% x 1.3 x 1.23 x 0.0315)
+ (209.0% x 0.7 x 0.0586) + (209.0% x 1.0 x 0.0213)</td></tr>
<tr><td colspan="6">• a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 토지 : 0.0315 = (6,114.0-4,873.2) / 39,452.36
- α 건축물1 : 0.0586 = (1,117.93+1,194.50) / 39,452.36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2,000㎡) 설치비용
환산부지 + 공영주차장 설치비용 환산부지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α 건축물2 : 0.0213 = (838.44 / 39,452.36)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1,500㎡)
설치비용 환산부지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6">•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td></tr>
</table>

1) 허용용적률 세부내용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총계	21.26% (최대 20% 적용)		-
공공 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폭원 8m)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α = 0.1이하 - 적용 = 209% × (1,200/39,452.4) × 1 = 6.36%	10%p 이내	6.36%p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 α ※α = 0.1이하 - 적용 : 209% × (881-66/3825) × 0.1 = 4.45%	5%p 이내	4.45%p
고령 서비스시설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α ※α = 0.1이하 - 적용 : 209% × (881-159/3825) × 0.1 = 3.95%	5%p 이내	3.95%p
친환경 건축물	① 녹색건축 인증 : 우수 등급 1.5% 적용 - 허용용적률 × 1.0 ×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기준 : 최우수 등급 6%, 우수 등급 3% ②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허용용적률 × 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기준 : 1등급 및 플러스 15%, 2등급 14%, 3등급 13%, 4등급 12%, 5등급 11%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0.5 × 지능형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기준 :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5등급 0% ※ 1), 2)는 별도 적용이 가능하며, 3)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녹색건축물 초과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1)+2)+3)은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 친환경 상한용적률은 구역 부담률 충족 및 필수 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 시 적용	15%p 이내	1.50%p
방재안전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안전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이내	5.00%p

2) 공공시설 부담기준(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구 분	종상향 면적(㎡)	공공시설 부담기준	공공시설 확보면적(㎡)
제1종 → 제3종	994.2	2단계 상향시(20% 이상)	994.2 × 0.20 = 198.84
제2종(7층) → 제3종	35,991.0	1단계 상향시(10% 이상)	35,991.0 × 0.10 = 3,599.10
제2종 → 제3종	2,467.2	1단계 상향시(10% 이상)	2,467.2 × 0.10 = 246.72
합 계	39,452.4	-	4,044.66㎡ 이상 공공시설을 확보해야함 종상향 면적(39,452.4㎡) 대비

3)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구 분		공공시설 확보면적	비 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514.0㎡	순부담 면적 (도로 514.0㎡, 어린이공원 3,850.0㎡, 토지지분 1,750.0㎡, 건축물 환산부지 3,150.87㎡) 중 국공유지면적 4,873.2㎡ 제외
	어린이공원	3,850.0㎡	
토지	사회복지시설	1,750.0㎡	
건축물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환산부지면적	1,117.93㎡	
	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환산부지면적	838.44㎡	
	주차장	1,194.5㎡	
합계		4,391.7㎡	4,044.7㎡ 이상 확보

4) 가중치 산출근거

■ 사업부지(획지)

구분	1종 → 3종	2종(7층) → 3종	2종 → 3종	합계
허용용적률 (소형주택 확보)	170%	210%	210%	-
면적	994.2	35,991	2,467.2	39,452.4(A)
허용용적률 x 면적	1,690.14	75,581.1	5,181.12	82,452.36(B)
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B / A = 209.0%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구분	1종	2종(7층)	2종	합 계
허용용적률	150%	210%	210%	-
계획기반시설	-	5419.4	694.6	6,114.0
국공유지면적	994.2	3879.0	-	4,873.2
계획기반시설 - 국공유지면적 (순부담면적)	-994.2	1,540.4	694.6	1,240.8(A)
허용용적률 x 면적	1,491.3	3,234.84	1,458.87	3,202.41(B)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B / A = 258.08%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획지)의 허용용적률
= 258.08% / 209.00% = 1.23

다. 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1)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 기준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 -재개발임대주택 :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전용면적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전용면적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 제외)의 40% 이하

구 분		세대수 (세대)	비율 (%)	비 고
총 세대수		1,280	-	전체 세대수(1,280세대)에서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수(136세대) 제외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세대수	175	100.0	전체 세대수(법제54조적용제외)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법제54조적용제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1,144세대 × 15% = 171.6세대 ≤ 175세대
	40㎡ 이하	68	38.9	임대주택의 30% 이상 (175×30%= 52.5 ≤ 68세대) 총 세대수의 5% 이상 (1,280×5%= 64.0 ≤ 68세대)
	40㎡ ~ 50㎡	52	29.7	-
	40㎡ 초과	55	31.4	-

※공공주택 및 소형 · 국민주택 규모 · 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5">계 획</td></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td></tr>
<tr><td colspan="2">부지면적</td><td colspan="5">39,452.4㎡</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299.63% 이하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66.57%</td></tr>
<tr><td rowspan="3">확보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99.63% - 266.57% = 33.06%</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33.06% × 50% = 16.53%</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39,452.4㎡ × 16.53% = 6,521.5㎡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4">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면적</td><td>전용</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50㎡</td><td>81.396㎡</td><td>30세대</td><td>2,441.88㎡</td><td>-</td></tr>
<tr><td>84.50㎡</td><td>115.765㎡</td><td>38세대</td><td>4,399.07㎡</td><td>-</td></tr>
<tr><td colspan="2">계</td><td>68세대</td><td>6,840.95㎡</td><td>〉6,521.5㎡</td></tr>
</table>

※공공주택 및 소형·국민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소형주택 건설계획

<table>
<tr><td>규모</td><td>상향 전</td><td>상향 후</td><td colspan="6">비고(60㎡ 이하 주택건설 규모)</td></tr>
<tr><td>기준용적률</td><td>189.00%</td><td>209.00%</td><td colspan="6" rowspan="2">- 계획 782세대
<table><tr><td>규모</td><td>공급면적
(㎡)</td><td>세대수
(세대)</td><td>연면적
(㎡)</td><td>연면적
증가분(㎡)</td><td>완화량
(%)</td></tr><tr><td colspan="2">합계</td><td>782</td><td>62,034.2</td><td>7,890.5</td><td>20.0% 적용</td></tr><tr><td>39타입</td><td>57.73</td><td>120</td><td>6,927.6</td><td>-</td><td>최대 10%</td></tr><tr><td>49타입</td><td>67.82</td><td>90</td><td>6,103.8</td><td>-</td><td>최대 15%</td></tr><tr><td>59타입</td><td>81.40</td><td>602</td><td>49,002.8</td><td>-</td><td>최대 10%</td></tr></table></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246.57%</td><td>266.57%</td></tr>
<tr><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2">20.0%
(266.57%-246.57%)</td></tr>
<tr><td>연면적
증가분</td><td colspan="2">7,890.5㎡
(획지면적 39,452.4㎡ x 20.0%)</td></tr>
</table>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소형(분양)주택 공급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기준 및 완화량 적용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 · 성토의 균형 고려, 현재 지형을 고려한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법정 녹지면적의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강화 및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환경	•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고효율 조명기기 및 절수기기 적용 등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하고 우수집중구간 발생시 저류조 설치 등 우수로 인한 피해방지 검토	-
	산사태	•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 · 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이 하 여 백 –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수립 시 반영사항
5.1 비오톱	비오톱 보전등급 유지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개별비오톱평가 : 평가제외	○법정 녹지면적 확보 및 도시생태 기능 강화
5.2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남측 중랑천 및 중화체육공원 위치	○계획대상지 내·외부 녹지연결성 확보
5.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현존식생 : 시가화지역 ○생태·자연도 : 3등급권역	○저소음·저진동장비 투입 ○야간공사 지양
6.1 토지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주택의 노후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표고 : 10~19m 100% ○경사 : 대부분 5°미만(98.5%)	○현 지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6.2 물환경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기준 : 30% ○빗물분담량 : 5.5㎜/hr	○생태면적률 30% 이상 ○필요대책량 : 45,564.1㎥/hr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우수유출량 : 1.900㎥/sec ○토사유출량 : 114.870g/sec ○가중농도 : 60.46㎎/L ○공사시 오수발생 예상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공사시 발생오수는 시설 이용 ○운영시 발생오수는 중랑물재생센터 연계처리
6.3 기후대기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주풍향:서(W)풍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불투수포장 높은 비율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난방(취사),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청정연료 사용, 녹지 계획 수립
6.4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 42.16㎏/일 -분표 : 53.32L/일 ○운영시 폐기물 발생	○재활용 및 위탁처리 ○중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6.5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에너지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
6.6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운영시 도로교통에 의한 소음 발생	○야간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 ○가설방음판넬 설치 ○경관녹지 및 공원 조성
6.7 경관	주변경관 조화	◎	○고층건물 신축 시 계획대상지 주변 경관변화 예상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경관디자인 (색채 등) 적용
6.8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기존 자연자원 및 녹지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질 높은 휴식 및 여가공간 이용 예상	○계획대상지 내 녹지 조성으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6.9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장해 예상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가칭)	현황) 1,060세대 계획) 1,280세대	증) 220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신목초	공사시 소음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를 시행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필요시 공종별 장비 분산투입 및 작업시간 제한	-
	일조	• 일조시간 관련 법령에 의거한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동선을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환경 보호 대책 마련 예정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설계 방법	적용 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CPTED 설계 적용	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분명한 시야선 확보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 •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
	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적합한 조명등 사용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 가로등은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와 함께 비추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	-
	고립지역 및 사각지대 개선	• 단지내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 • 안전사각지대에 비상벨 스위치 설치 및 CCTV설치	-
	동 주출입구 쾌적한 설계	• 출입구는 전면 유리 설치 및 CCTV를 설치하여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	-
	지하주차장 설계	• 여성우선 주차구획 설치 • CCTV설치를 통한 안전한 공간 조성 • 조명의 적정조도 확보	-
	보행자 도로	• 경사로에 미끄럼방지재 설치 • 통행편의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도턱을 낮게 시공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	-	증) 45,566.4	45,566.4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5,566.4	-	45,566.4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94.2	감) 994.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1,410.4	감) 35,296.4	6,114.0	13.4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61.8	감) 3,161.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9,452.4	39,452.4	86.6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중화동 332-48번지 일대	제1종일반	제3종일반	994.2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32-33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이하)	제3종일반	35,990.95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08-8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3종일반	2,467.21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08-30번지 일대	제2종일반	제2종일반 (7층이하)	694.67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중화동 309-39번지 일대	제2종일반 (7층이하)	제2종일반 (7층이하)	5,419.35	•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34	중화동 332-125	중화동 332-12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A	4	국지도로	10	중화동 332-146	중화동 332-146	일반도로	-	-	-
기정	-	-	-	-	-	-	중화동 일대	중화동 일대	-	-	건고1967-11 (67.01.21.)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6	중화동 65-9	중화동 65-9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A	•도로 신설 - B = 12m, L = 34m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A	•도로 신설 - B = 4m, L = 10m	•정비구역 경계부 기존 건축물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A	•도로 선형 변경 - B = 8m, L = 6m	•정비구역 경계부 기존 건축물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	주차장	중랑구 중화동 332-119번지 일대	-	증) 1,750.0	1,750.0	-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 = 1,750.0㎡	•대상지 인근 도로 거주자우선주차 삭선에 따른 주차장시설 대체 확보 및 토지자원의 복합·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차장 계획 -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3)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중랑구 중화동 308-69번지 일대	-	증) 3,850.0	3,850.0	-	-
폐지	㉮	배꽃공원	어린이공원	중랑구 중화동 332-48번지 일대	991.0	감) 991.0	-	서고1955-141 (95.5.2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공원 신설	•이용객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	배꽃공원	•공원 폐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폐지

4)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	사회 복지시설	중랑구 중화동 332-119번지 일대	-	증)1,750.0	1,750.0	-	주차장 중복결정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사회복지시설)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지상4층(18.0m)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A = 1,750.0㎡	• 중화동 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데이케이센터 등) 공급 및 토지자원의 복합·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계획 -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나)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	건축물 기부채납	비고
건축물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신설 - 연면적 : 2,938.5㎡ - 토지환산면적 : 1,194.5㎡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공영주차장 1,000~3,000㎡ 미만 신축 기준 산정 - ㎡당 공사비 : 3,021천원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연면적 : 3,500.0㎡ - 토지환산면적 : 1,956.4㎡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노인요양시설 2,000~5,000㎡ 미만 신축 기준 산정 - ㎡당 공사비 : 4,157천원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소계	39,452.4	-	39,452.4	-
	획지	39,452.4	중화동 309-20번지 일원	39,45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	용 도	비 고
신설	획지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설	획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9.0% 이하	243.0% 이하	266.57% 이하	300.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준용적률 완화(소형주택 확보)

항 목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
소형주택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함 - 54.7㎡(40㎡전용)×52세대/39,452.4㎡(대지)=7.2%	최대10%
	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50㎡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67.8㎡(50㎡전용)×38세대/39,452.4㎡(대지)=6.5%	최대15%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81.4㎡(59㎡전용)×517세대/39,452.4㎡(대지)=106.7%	최대10%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황용적률이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범위(기존 기준용적률+20%)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완화 범위까지 기준용적률 완화 적용가능함

※ 소형주택 확보 최대 기준인 20% 기준용적률 완화받는 사항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공공 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폭원 8m)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α = 0.1이하 - 적용 = 209% × (1,200/39,452.4) × 1 = 6.36%	6.36%p	-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 α ※α = 0.1이하 - 적용 : 209% × (881-66/3825) × 0.1 = 4.45%	4.45%p	-
고령 서비스시설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 α ※α = 0.1이하 - 적용 : 209% × (881-159/3825) × 0.1 = 3.95%	3.95%p	-
친환경 건축물	① 녹색건축 인증 : 우수 등급 1.5% 적용 - 허용용적률 × 1.0 ×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기준 : 최우수 등급 6%, 우수 등급 3% ②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허용용적률 × 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기준 : 1등급 및 플러스 15%, 2등급 14%, 3등급 13%, 4등급 12%, 5등급 11%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0.5 × 지능형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기준 : 1등급 15%,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5등급 0% ※ 1), 2)는 별도 적용이 가능하며, 3)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녹색건축물 초과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1)+2)+3)은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 친환경 상한용적률은 구역 부담률 충족 및 필수 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 시 적용	1.50%p	-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안전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00%p	-

다) 높이계획

구 분	획 지	용도지역	높 이	비 고
신설	획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m 이하 (35층 이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층수 35층 내외로 적용 가능 ※ 수변부 건축물디자인 특화구간은 18층 내외로 중저층 배치

다. 건축물의 배치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	•동일로143길변(대상지 북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6m •동일로139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중랑역로 이면도로변(대상지 동측 경계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그 외(중랑천로변, 사회복지시설 등)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사회복지시설	•각 도로변으로부터 3m

2)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	•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한 남-북 방향의 보행동선 연결, 지역 내 주요시설 (중화역, 신묵초, 장미제일시장 등) 접근 동선 확보 및 보행일상권 형성
전면공지	사업부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 중 도로와 연접한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도로와 연접한 보행공간은 공공도로의 재질과 패턴을 유사하게 조성하여 공공의 사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함

라. 경관계획

1)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배치	공동주택	•주변과의 조화, 주민의 거주성을 향상하는 배치 •중랑천변 수변특화경관 형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랜드마크형, 수변경관 특화형, 장미시장 연계형, 도시가로 연계형 등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동형태 및 입면특화 계획 수립 - 랜드마크형 : 단지 상징성을 고려한 단지 중심부 타워형(35내외) 랜드마크 주동 - 수변경관특화형 : 중랑천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스텝형 주동 배치 및 저층부 테라스 특화 - 장미시장 연계형 : 장미시장 연계부 주동 이격배치 - 도시가로연계형 : 입면분절 등을 통해 중랑역로 변 도시가로 경관을 형성 - 공원 연계영역 : 어린이공원과 조화되는 입체적 녹화주동 및 그린 테라스 형성

2)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공동주택	•중랑천에서 도시로 열린 경관 창출을 위한 동서 통경축(24m) 설정 - 중랑천에서 봉화산자락 방면으로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해 중랑천 직각방향 통경축을 설정하고, 단지 내 바람길 형성을 통한 쾌적한 주거지 형성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중랑천, 봉화산 등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중랑천 및 주요 가로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 계획 및 다채로운 수변경관 창출 - 중랑천 변은 보행자 시점에서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수변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중저층 계획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수립 시 반영사항
5.1 비오톱	비오톱 보전등급 유지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개별비오톱평가 : 평가제외	○법정 녹지면적 확보 및 도시생태 기능 강화
5.2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남측 중랑천 및 중화체육공원 위치	○계획대상지 내·외부 녹지연결성 확보
5.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현존식생 : 시가화지역 ○생태·자연도 : 3등급권역	○저소음·저진동장비 투입 ○야간공사 지양
6.1 토지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주택의 노후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표고 : 10~19m 100% ○경사 : 대부분 5°미만(98.5%)	○현 지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6.2 물환경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기준 : 30% ○빗물분담량 : 5.5㎜/hr	○생태면적률 30% 이상 ○필요대책량 : 45,564.1㎥/hr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우수유출량 : 1.900㎥/sec ○토사유출량 : 114.870g/sec ○가중농도 : 60.46㎎/L ○공사시 오수발생 예상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공사시 발생오수는 시설 이용 ○운영시 발생오수는 중랑물재생센터 연계처리
6.3 기후대기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주풍향:서(W)풍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불투수포장 높은 비율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난방(취사),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청정연료 사용, 녹지 계획 수립
6.4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 42.16㎏/일 -분표 : 53.32L/일 ○운영시 폐기물 발생	○재활용 및 위탁처리 ○중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6.5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에너지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
6.6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운영시 도로교통에 의한 소음 발생	○야간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 ○가설방음판넬 설치 ○경관녹지 및 공원 조성
6.7 경관	주변경관 조화	◎	○고층건물 신축 시 계획대상지 주변 경관변화 예상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경관디자인 (색채 등) 적용
6.8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기존 자연자원 및 녹지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질 높은 휴식 및 여가공간 이용 예상	○계획대상지 내 녹지 조성으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6.9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장해 예상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Ⅲ. 2026년 제3차(‘26. 03. 11.)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 결과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수정 가결	[수정사항] ○ 정비구역 명칭은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으로 변경	○ 정비구역 명칭은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에서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으로 변경하였음	반영
	○ 건축한계선 계획은 공람·상정(안)을 유지할 것	○ 건축한계선에 대한 계획은 공람·상정(안)을 유지 하였음	반영
	[조건사항]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해당 의견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별도의 협의 및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이 하 여 백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4),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02-2094-6893)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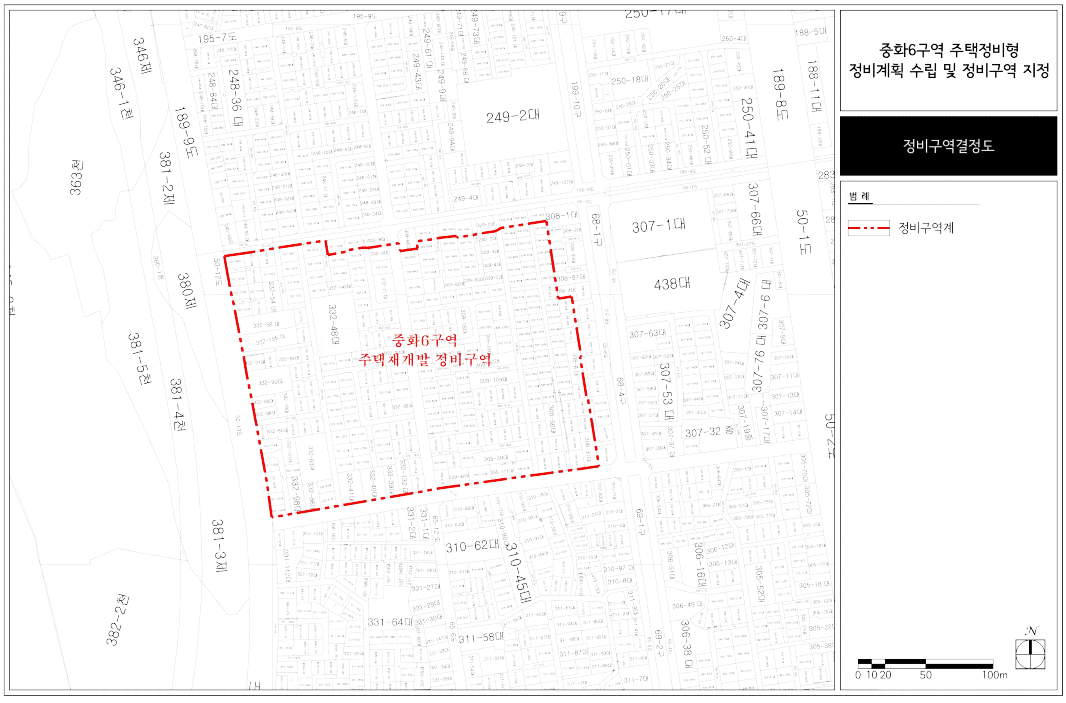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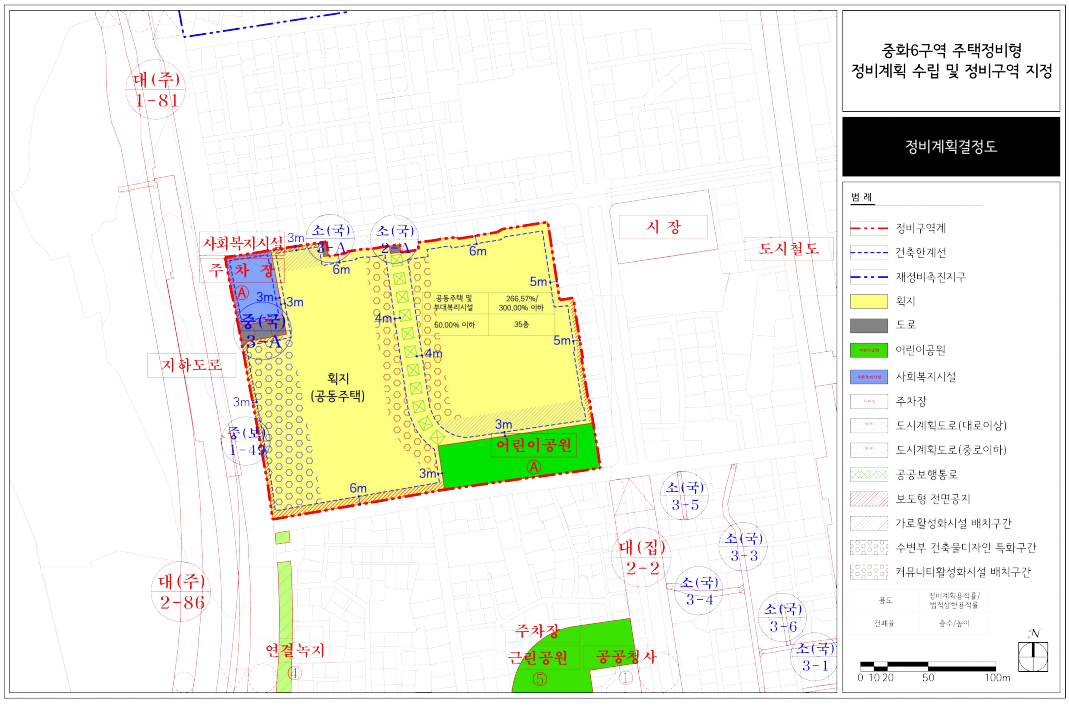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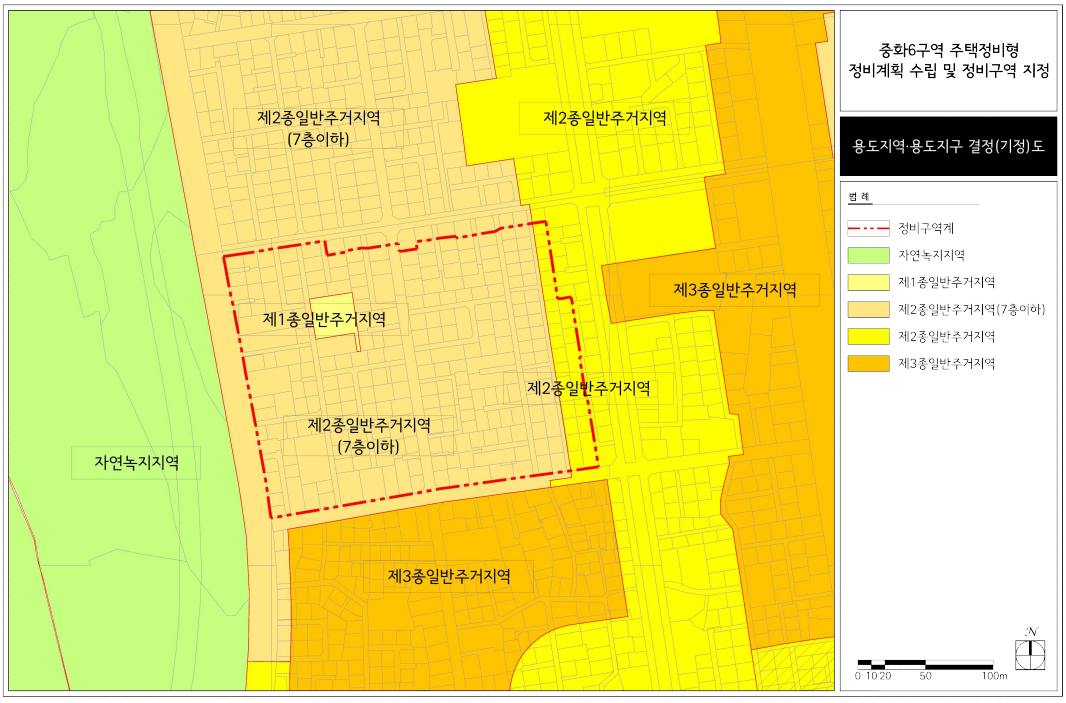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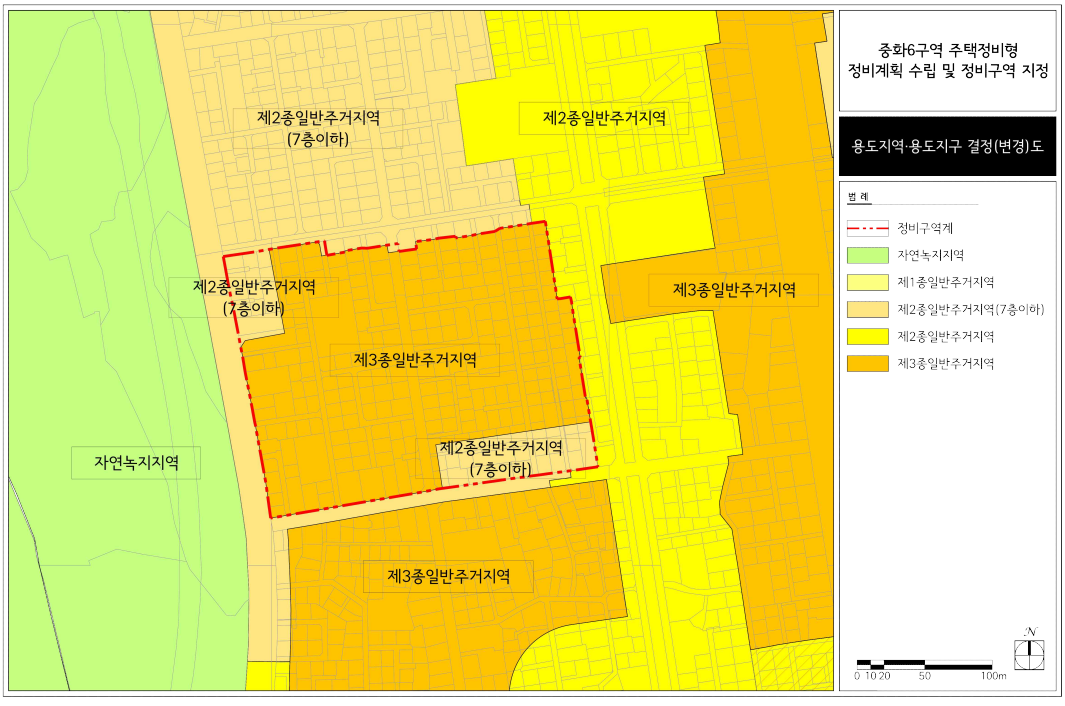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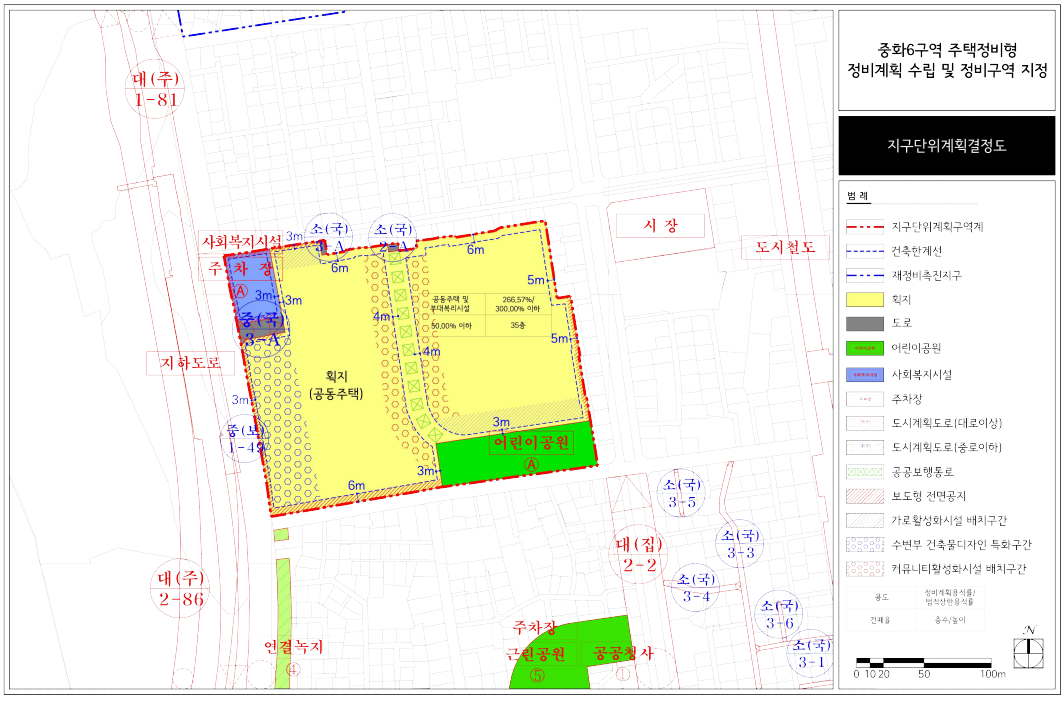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2호

도시관리계획(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3.1.)에서 국가상징거점으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용산일대에 대해 미래신도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립하고 재정비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59,349.1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변경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710,541.62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 백범로 일대	358,536.69		-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백범로 일대 ~ 새창로 일대	725,899.93		-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새창로 일대 ~ 한강로 일대	1,024,943.99		-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119,703.10		-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대로 ~ 용산동 5가 일대	424,022.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11,118.9㎡) •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9,378.9㎡)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나진 19·20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6,335.2㎡)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구역내 편입 (증 60,395.79㎡)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의 한강 연결성 강화 고려 강변북로 및 하천 일부 구역 편입 (증 17,069.72㎡) • 과도한 면적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합리성, 실현성 증진과 유연하며,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 분할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59,349.1	감) 2,548,807.48	710,541.62	100.0	-
주거지역	소 계	1,934,426.96	감) 1,363,088.07	571,338.89	80.41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673.00	감) 24,893.10	5,779.9	0.81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474.05	감) 425,994.51	67,479.54	9.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687.80	감) 229,803.20	277,884.60	39.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4,755.01	감) 504,560.16	220,194.85	30.99	-
	준주거지역	177,837.10	감) 177,837.10	-	-	-
상업지역	소계	1,324,507.94	감) 1,185,305.21	139,202.73	19.59	-
	일반상업지역	1,222,376.94	감) 1,083,174.21	139,202.73	19.59	-
	중심상업지역	102,131.00	감) 102,131.00	-	-	-
자연녹지지역		414.20	감) 414.20	-	-	-

▌용도지역 결정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24,893.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25,994.5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감) 229,803.20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504,560.16	
	준주거지역	감) 177,837.10	
일반상업지역		감) 1,083,174.21	
중심상업지역		감) 102,131.00	
자연녹지지역		감) 414.2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 변경없음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후암동 103-6외 44필지	15,635	건고 제727호 (1963.12.13.)	후암시장

(이 하 여 백)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9	40~46	주간선 도로	4,000 (3,870)	서울역광장	한강제1 인도교북단	일반도로	총고 제757호 (1939.9.18.)	철도 중복결정 (면적 : 83㎡)
기정	중로	1	37	20~30 (30)	보조간선 도로	552 (104)	후암동 194-25	갈월동 (광3-9)	일반도로	총고 제757호 (1939.9.18.)	-
기정	중로	1	210	10~20	집산도로	450	후암동 시장앞	동자동 40-4	일반도로	내고 제23호 (1952.3.25.)	충효당길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40	후암동 10-1	후암동 423-1	일반도로	서고 제437호 (1979.10.15.)	-
기정	중로	2	197	15	집산도로	362	동자동 2-1	동자동5-82	일반도로	건고 제347호 (1979.9.28.)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98	15	집산도로	106	동자동17-4	동자동14-85	일반도로	건고 제347호 (1979.9.28.)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99	15	집산도로	74	동자동 36-42	동자동 14-126	일반도로	건고 제347호 (1979.9.24.)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435	15	집산도로	51	동자동 37-1	동자동 36-42	일반도로	서고 제126호 (2007.5.10.)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148	12	집산도로	90	동자동 37-66	동자동 37-2	일반도로	건고 제347호 (1979.9.28.)	-
기정	소로	3	-	6	특수도로	69.7	동자동 50	동자동 14-220	지하도로 (지하층 연결로)	서고 제254호 (2011.9.1.)	철도 중복결정 광로3-9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92	동자동 8-5	동자동 19-116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도동공원 주변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7	동자동 24-20	동자동 41-11	일반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00	동자동 42-9	동자동 30-14	일반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85	후암동 103-17	후암동 134-2	일반도로	건고 제560호 (1963.9.19.)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200	후암동 105-66	후암동 128-9	일반도로	건고 제560호 (1963.9.19.)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233	갈월동 7-62	갈월동 59-2	일반도로	건고 제560호 (1963.9.19.)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75	갈월동 11-16	갈월동 11-24	일반도로	건고 제560호 (1963.9.19.)	-

※ 도로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2)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928.90	-	1,928.90	-	-
기정	①	주차장	후암동 65-4	925.8	-	925.8	서고 제32호 (2007.2.8.)	-
기정	②	주차장	갈월동 51-5일대	1,003.1	-	1,003.1	구고 제60호 (2003.11.25.)	-

▌ 건축물의 범위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①	60%이하	200%이하	5층(20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기정	②	60%이하	200%이하	5층(20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건축물의 범위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만 적용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3,650 (20,793.85)	-	53,650 (20,793.85)	-	-
기정	①	광장	교통광장	봉래동2가 125번지 일대 (서울역 광장)	53,650 (20,793.85)	-	53,650 (20,793.85)	건고 제571호 (1969.9.29.)	-

2)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60.7	-	160.7	-	-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갈월동 69-31일대	160.7	-	160.7	서고제52호 (1995.3.8.)	한강로 및 갈월지하차도 주변경관보호

3)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8,217.1	-	8,217.1	-	-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동자동 8-5일대	2,542.0	-	2,542.0	건고 제299호 (1963.4.26.)	새꿈어린이공원
기정	②	공원	어린이공원	동자동 8-32일대	2,623.1	-	2,623.1	건고 제347호 (1979.9.24.)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기정	③	공원	어린이공원	동자동 24-11일대	712.0	-	712.0	건고 제299호 (1963.4.26.)	-
기정	④	공원	어린이공원	후암동 190-1일대	2,340.0	-	2,340.0	건고 제299호 (1963.4.26.)	새나라공원 (변경결정)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시장 : 변경없음

▌ 시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 장	정기시장	후암동 103-9일대	742.8	-	742.8	서고 제41호 (1975.4.3.)	후암시장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4,353.2	-	14,353.2	-	-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후암동 190-2일대	14,353.2	-	14,353.2	교위 고5호 (1987.2.17.)	삼광초교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고
① (삼광초교)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050.6	-	13,050.6	-	-
기정	①	공공 청사	-	후암동 168일대	13,050.6	-	13,050.6	용고 제23호 (2026.2.20.)	서울시 교육청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①	60%이하	190%이하	12층(52m)이하 - 두텁바위로변 폭 30m 이내 :10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갈월동 51-19	1,652.5	-	1,652.5	용고 제9호 (1998.3.5.)	갈월복지관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①	60%이하	200%이하	5층(20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 문화시설 : 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문화시설	공연장	동자동 14-25일대	414.02	-	414.02	서고 제126호 (2007.5.10.)	동자동 제4구역 특별계획구역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친환경 계획 :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에 인센티브 항목 적용

<table>
<tr><th colspan="2">인센티브 항목</th><th>세부항목</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탄소 중립</td><td>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td><td>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td><td>기준용적률 × 0.05</td><td rowspan="3">허용 용적률</td></tr>
<tr><td>저영향개발</td><td>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td><td>기준용적률 × 0.05</td></tr>
<tr><td>디자인 혁신</td><td>유니버셜 디자인 도입</td><td>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td><td>기준용적률 × 0.03 ~ 0.05</td></tr>
<tr><td colspan="2">친환경 건축물</td><td>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구분 / ZEB1 에너지효율 1+ / ZEB2 / ZEB3 / ZEB4 / ZEB5
완화비율 / 15% / 14% / 13% / 12% / 11%
② 녹색건축 인증
완화조건 /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완화비율 / 5% / 10% / 15%
④ 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 최우수 / 우수
완화비율 / 15% / 10%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td><td>상한 용적률</td></tr>
</table>

나. 방재안전계획 : 신설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지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방재지구,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의 7가지 계획 중 1가지에 해당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계획 내용</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적용위치</th><th>적용기준</th></tr>
<tr><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td><td>방화지구 (화재관련)</td><td>후암시장 (도면참조)</td><td>[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td><td>-</td></tr>
</table>

4.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 신설

- 지역(역사)자산 조사는 문화재, 근대 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등 8가지로 구분됨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및 기타 지역자산(매장문화재)에 해당되며,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2013)의 관리지침을 따름

- 현재에는 원형의 모습·형태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자료상 또는 "터"의 형태로 전해져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구 서울역사 (봉래동 122-28 일대)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 • 보전방법 및 범위 등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사적 제284호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 따라 적용위치 확인
※ 지표조사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이 하 여 백)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간선부 이면부	• 3,000㎡ 이하	적용범위 변경

※ 기존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단일 필지의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 기 공동개발 된 필지
- 획지 및 모든 공동개발 필지면적 합계가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나.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한강대로)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대지분할기준, 현황 대지규모 등을 통해 적정 개발규모 유도 • 획지 내 필지는 개별건축 불가능 -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변경	• 소유자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과도한 지정 지양 • 획지계획 전면해제 → 공동개발 또는 자율적 개발 - 계획 실현성 제고	-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기준
공동개발(지정)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해제지역 일대 (도면참조)	• 간선가로변에서 이면도로 진입유도(차량출입 불허구간 등)가 필요한 필지 • 맹지형 또는 세장형, 부정형 필지 •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 35㎡ 미만 필지
공동개발(권장)	도면참조	• 공동개발(권장) 최소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참조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 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1. 부정형 필지가 형성되는 경우 2.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 등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개발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필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 대지 형태의 정형화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지 분할을 권장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 - 필지 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 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제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기정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1	7,779.60	동자동	43-9대	132.2	-	-	-
			43-10대	132.2	-	-	-
			43-11대	120	-	-	-
			43-13대	99.2	-	-	-
			43-14대	132.2	-	-	-
			43-15대	66.1	-	-	-
			43-16대	92.6	-	-	-
			43-17대	66.1	-	-	-
			43-18대	132.2	-	-	-
			43-19대	132.2	-	-	-
			43-20대	132.2	-	-	-
			43-21대	132.2	-	-	-
			43-22대	132.2	-	-	-
			43-23대	132.2	-	-	-
			43-24대	54.5	-	-	-
			43-25대	134.2	-	-	-
			43-26대	132.2	-	-	-
			43-27대	132.2	-	-	-
			43-28대	66.1	-	-	-
			43-29대	132.2	-	-	-
			43-30대	96.9	-	-	-
			43-32대	74.7	-	-	-
			43-33대	99.2	-	-	-
			43-34대	106.8	-	-	-
			43-35대	43	-	-	-
			43-36대	49.6	-	-	-
			43-37대	125.6	-	-	-
			43-38대	59.2	-	-	-
			43-39대	20.5	-	-	-
			43-41대	132.2	-	-	-
			43-42대	132.2	-	-	-
			43-43대	114	-	-	-
			43-50대	126.7	-	-	-
			43-51대	39	-	-	-
			43-52대	209.9	-	-	-
			43-53대	232.4	-	-	-
			43-54대	143.1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1	7,779.60	동자동	43-55대	143.1	-	-	-
			43-56대	427.4	-	-	-
			43-59대	661.2	-	-	-
			43-60대	132.2	-	-	-
			43-61대	82.6	-	-	-
			43-62대	181.8	-	-	-
			43-63대	33	-	-	-
			43-64대	66.1	-	-	-
			43-66철	15.4	-	-	-
			43-71대	119.7	-	-	-
			43-73대	102.5	-	-	-
			43-74대	105.8	-	-	-
			43-77대	52.9	-	-	-
			43-80대	11.6	-	-	-
			43-82대	52.9	-	-	-
			43-112대	16.5	-	-	-
			43-117대	39.7	-	-	-
			43-118대	66.1	-	-	-
			43-119대	16.5	-	-	-
			43-120대	77.2	-	-	-
			43-121대	66.1	-	-	-
			43-137대	54.5	-	-	-
			43-138대	33	-	-	-
			43-139대	66.1	-	-	-
			43-143대	35.3	-	-	-
			43-144대	32.1	-	-	-
			43-145대	44.3	-	-	-
			43-146대	82.6	-	-	-
			43-147대	66.1	-	-	-
			43-153대	43.6	-	-	-
			43-155대	33.4	-	-	-
			43-157대	8.3	-	-	-
			43-158대	3.3	-	-	-
			43-160대	108.4	-	-	-
			43-161대	23.8	-	-	-
			43-167대	66.1	-	-	-
			43-168대	19.2	-	-	-
			43-169대	19.2	-	-	-
			43-170대	19.2	-	-	-
			43-172대	114.7	-	-	-
			43-174대	11.6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1	7,779.60	동자동	43-183대	158.7	-	-	-
			43-198대	96.5	-	-	-
			43-200철	70.2	-	-	-
			43-201철	8.9	-	-	-
선2	6,036.40	갈월동	69-23대	143.8	-	-	-
			69-25대	180.2	-	-	-
			69-26대	162	-	-	-
			69-27대	450.3	-	-	-
			69-48대	125.6	-	-	-
			69-49대	59.5	-	-	-
			69-65대	261.1	-	-	-
			69-75대	304.8	-	-	-
			69-108대	258.8	-	-	-
			69-109대	350.9	-	-	-
			70-3대	241.3	-	-	-
			70-4대	99.5	-	-	-
			70-9대	606.7	-	-	-
			70-10대	339.8	-	-	-
			70-17대	40.7	-	-	-
			70-18대	19.2	-	-	-
			70-19대	9.9	-	-	-
			70-20대	3.7	-	-	-
			70-29대	413.5	-	-	-
			71-2대	69.4	-	-	-
			71-3대	159.7	-	-	-
			71-5대	117.4	-	-	-
			71-6대	81.3	-	-	-
			71-7대	210.6	-	-	-
			71-9대	134.9	-	-	-
			71-12대	89.6	-	-	-
			71-13대	91.9	-	-	-
			71-14대	92.9	-	-	-
			71-15대	122	-	-	-
			71-16철	12.6	-	-	-
			71-17철	4.6	-	-	-
			71-19대	64.5	-	-	-
			71-20대	196.7	-	-	-
			71-21대	41.6	-	-	-
			71-26대	5	-	-	-
			71-30대	73.7	-	-	-
			71-31대	45.3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2	6,036.40	갈월동	71-32대	45.3	-	-	-
			71-34대	132.9	-	-	-
			71-35대	173.2	-	-	-
선3	2,970.90	청파동 1가	154-3대	43	129	지정	-
			154-4대	86			-
			154-10대	340.5	396.7	권장	-
			154-14대	56.2			-
			154-13대	69.4	222.8	지정	-
			154-15대	153.4			-
			154-16대	49.6	199.8	지정	-
			154-21대	29.8			-
			154-23대	28.8			-
			154-27대	28.8			-
			154-29대	29.8			-
			154-36대	33			-
			154-46대	46.3	91.9	지정	-
			154-47대	45.6			-
			154-32대	197.9	320.2	권장	-
			154-43대	59.5			-
			154-44대	62.8			-
			154-42대	33	165.7	권장	-
			154-41대	43			-
			154-31대	26			-
			154-40대	50.1			-
			154-39도	13.6			-
			154-11대	36.4	284.3	지정	-
			154-12대	92.6			-
			154-19대	97.8			-
			154-18대	57.5			-
			154-8대	109.1	148.8	권장	-
			154-9대	39.7			-
			154-17대	38.7	142.3	지정	-
			154-22대	26.4			-
			154-24대	25.4			-
			154-28대	25.4			-
			154-30대	26.4			-
			154-26대	37.4	171.9	권장	-
			154-25대	108.8			-
			154-33대	23.1			-
			154-34대	2.6			-
			154-5대	33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3	2,970.90	청파동 1가	154-6대	79.3	-	-	-
			154-7대	86	-	-	-
			154-20철	19.8	-	-	-
			154-35대	198.3	-	-	-
			154-48대	91.6	-	-	-
		동자동	43-205철	189.5	-	-	-
선4	13,148.80	청파동 1가	180-11대	106.8	203.6	권장	-
			180-19대	96.8			-
			180-14대	156.3	279.6	지정	-
			180-23대	123.3			-
			180-18철	358.7	5,206.4	지정	-
			180-20철	66.1			
			180-26대	7.9			
			180-27대	56.2			
			180-28도	29.4			
			180-29대	40.3			
			180-30대	37			
			180-31대	20.8			
			180-24대	4,590			
			180-8대	254.1	-	-	-
			180-9철	197.7	-	-	-
			180-10철	22.8	-	-	-
			180-12철	26.8	-	-	-
			180-13대	289.9	-	-	-
			180-21대	147.4	-	-	-
			180-22대	306.1	-	-	-
			180-34철	17.2	-	-	-
			180-36대	2,730.9	2,895.3	지정	-
			180-38철	41			-
		청파동 2가	119-1대	123.4			-
			120-1대	257.5	-	-	-
			120-7대	14.5	1,131.8	지정	-
			120-8대	54.5			
			120-9대	46			
			120-10대	34.4			
			120-11대	9.6			
			120-12대	27.8			
			120-13대	4.3			
			120-14대	37			
			120-15대	6			
			120-16철	819.2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4	13,148.80	청파동 2가	120-17대	10.2			
			120-18대	4.3			
			120-66대	60.8			
			120-67대	3.2			
			123-1대	41	158.2	지정	-
			123-5천	16.4			
			120-19대	8.3			
			120-20대	24.8			
			120-22대	19.2			
			120-21대	31.4			
			123-2대	2.3			
			123-3대	9.9			
			130-8천	4.9			
			120-23대	25.8	75.5	지정	-
			120-24대	30.4			-
			120-25대	3.8			-
			130-9천	15.5			-
			120-26대	92.6	166.1	지정	-
			120-27대	19.2			-
			120-28천	37.7			-
			120-29천	14.3			-
			130-10천	2.3			-
			120-30천	45.4	110.7	지정	-
			120-31천	0.8			-
			120-33대	64.5			-
			120-34철	732.6	-	-	-
			120-36철	390.1	-	-	-
			120-37철	175.2	-	-	-
			120-40철	99.9	-	-	-
			123-4도	4.3	-	-	-

(이 하 여 백)

▌후암동 주거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후1	9,989.0	후암동	458	9,989.0	9,989	획지		기존 획지
후2	10,629.3	후암동	423-1	8531.6	9,083	획지 신설	공동개발 권장	미주아파트 일대 계획적 관리유도 (필지분할 가능선 100-3)
			426	534.8				
			426-1	16.6				
			91	171.8	171.8	-		
			92-2	48.5	48.5	-		
			92-4	1.9	1.9	-		
			93	0.7	0.7	-		
			93-1	5.6	5.6	-		
			93-2	16.5	16.5	-		
			93-5	112.7	116	공동개발 지정		
			94-4	3.3				
			93-6	159.3	159.3	-		
			93-7	6.3	6.3	-		
			94-1	246.6	246.6	-		
			94-2	0.7	0.7	-		
			95-3	17.5	51.1	공동개발 지정		
			95-5	33.6				
			96	113.7	113.7	-		
			99-1	43	43	-		
			99-4	136.8	136.8	-		
			100-1	151.4	151.4	-		
			100-3	6.1	6.1	-		
			101-64	36.4	36.4	-		
			101-65	8.8	8.8	-		
			101-68	11.4	11.4	-		
			422	213.7	213.7	-		
후3	1,567.2	후암동	67	43	106.8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67-1	6.6				
			67-2	4.3				
			67-3	52.9				
			75-1	59.1	61.8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5-5	2.7				
			76-1	126.8	165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6-2	12.9				
			76-10	25.3				
			76-4	75.9	89.9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6-9	14				
			78	142.1	169.5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8-1	27.4	169.5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후3	1,567.2	후암동	79	154.8	205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9-3	50.2			
			101-3	7.9	140.1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11	132.2			
			101-4	26.4	166.2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12	139.8			
			101-5	46.3	137.2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13	90.9			
			102-1	75.6	106.1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426-3	30.5			
			102-28	103.5	129.7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39	22.1			
			102-65	4.1			
			102-64	75.5	89.9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426-4	14.4			
후4	3,102.1	동자동	14-34	4.6	144.4	공동개발 지정	소유자 중복
			14-132	139.8			
			14-141	23.1	440.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적정개발유도
			14-142	47.6			
			42-9	370.2			-
			38-3	421.5	425.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8-13	0.3			
			38-15	3.5			
			39-7	184.8	3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1-4	132.2			
			41-5	211.6	2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1-9	36.4			
		갈월동	1-5	345.7	354.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6	8.4			
			2-2	24.1	367.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맹지해소, 소유자 중복
			5-58	16.5			
			5-59	13.2			
			5-17	314			-
			3-3	70.7	176.8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 필지
			3-9	105.1			
			4-1	0.7			
			4-2	0.3			
			5-43	76.7	627.8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소유자중복
			5-44	313.4			
			5-45	237.7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후5	2,281.7	갈월동	7-83	160.7	18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7	20.8						
			7-84	76	1137.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32	948.8						
			11-60	112.6						
			7-136	113	119.9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 필지
			7-137	6.9						
			8-3	48.6	174.2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필지
			11-1	125.6						
			8-13	131.2	349.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30	218.2						
			8-42	34	14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43	115.7						
			10	86	169.6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필지
			10-3	83.6						
후6	2,928.1	갈월동	14-60	638.7	891.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67	19.5						
			14-106	233.4						
			16	233	847.9	1,036.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6-2	373.6						
			16-3	241.3						
			17-1	148.8	18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3	35.4						
			17-4	4.6						
			17-5	58.2	453.6	999.8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8	211.6						
			63-1	121						
			63-2	62.8						
			66	182.8	276.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4-1	93.6						
			66-2	35.4	26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8	234.4						

(이 하 여 백)

2) 변경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1	7,779.6	동자동	43-9대	132.2	-	-	-
			43-10대	132.2	-	-	-
			43-11대	120.0	-	-	-
			43-13대	99.2	-	-	-
			43-14대	132.2	-	-	-
			43-15대	66.1	-	-	-
			43-16대	92.6	-	-	-
			43-17대	66.1	-	-	-
			43-18대	132.2	-	-	-
			43-19대	132.2	-	-	-
			43-20대	132.2	-	-	-
			43-21대	132.2	-	-	-
			43-22대	132.2	-	-	-
			43-23대	132.2	-	-	-
			43-24대	54.5	-	-	-
			43-25대	134.2	-	-	-
			43-26대	132.2	-	-	-
			43-27대	132.2	-	-	-
			43-28대	66.1	-	-	-
			43-29대	132.2	-	-	-
			43-30대	96.9	-	-	-
			43-32대	74.7	-	-	-
			43-33대	99.2	-	-	-
			43-34대	106.8	-	-	-
			43-35대	43.0	-	-	-
			43-36대	49.6	-	-	-
			43-37대	125.6	-	-	-
			43-38대	59.2	-	-	-
			43-39대	20.5	-	-	-
			43-41대	132.2	-	-	-
			43-42대	132.2	-	-	-
			43-43대	114.0	-	-	-
			43-50대	126.7	-	-	-
			43-51대	39.0	-	-	-
			43-52대	209.9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1	7,779.6	동자동	43-53대	232.4	-	-	-
			43-54대	143.1	-	-	-
			43-55대	143.1	-	-	-
			43-56대	427.4	-	-	-
			43-59대	661.2	-	-	-
			43-60대	132.2	-	-	-
			43-61대	82.6	-	-	-
			43-62대	181.8	-	-	-
			43-63대	33	-	-	-
			43-64대	66.1	-	-	-
			43-66철	15.4	-	-	-
			43-71대	119.7	-	-	-
			43-73대	102.5	-	-	-
			43-74대	105.8	-	-	-
			43-77대	52.9	-	-	-
			43-80대	11.6	-	-	-
			43-82대	52.9	-	-	-
			43-112대	16.5	-	-	-
			43-117대	39.7	-	-	-
			43-118대	66.1	-	-	-
			43-119대	16.5	-	-	-
			43-120대	77.2	-	-	-
			43-121대	66.1	-	-	-
			43-137대	54.5	-	-	-
			43-138대	33	-	-	-
			43-139대	66.1	-	-	-
			43-143대	35.3	-	-	-
			43-144대	32.1	-	-	-
			43-145대	44.3	-	-	-
			43-146대	82.6	-	-	-
			43-147대	66.1	-	-	-
			43-153대	43.6	-	-	-
			43-155대	33.4	-	-	-
			43-157대	8.3	-	-	-
			43-158대	3.3	-	-	-
			43-160대	108.4	-	-	-
			43-161대	23.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1	7,779.6	동자동	43-167대	66.1	-	-	-
			43-168대	19.2	-	-	-
			43-169대	19.2	-	-	-
			43-170대	19.2	-	-	-
			43-172대	114.7	-	-	-
			43-174대	11.6	-	-	-
			43-183대	158.7	-	-	-
			43-198대	96.5	-	-	-
			43-200철	70.2	-	-	-
			43-201철	8.9	-	-	-
선2	6,036.4	갈월동	69-23대	143.8	-	-	-
			69-25대	180.2	-	-	-
			69-26대	162	-	-	-
			69-27대	450.3	-	-	-
			69-48대	125.6	-	-	-
			69-49대	59.5	-	-	-
			69-65대	261.1	-	-	-
			69-75대	304.8	-	-	-
			69-108대	258.8	-	-	-
			69-109대	350.9	-	-	-
			70-3대	241.3	-	-	-
			70-4대	99.5	-	-	-
			70-9대	606.7	-	-	-
			70-10대	339.8	-	-	-
			70-17대	40.7	-	-	-
			70-18대	19.2	-	-	-
			70-19대	9.9	-	-	-
			70-20대	3.7	-	-	-
			70-29대	413.5	-	-	-
			71-2대	69.4	-	-	-
			71-3대	159.7	-	-	-
			71-5대	117.4	-	-	-
			71-6대	81.3	-	-	-
			71-7대	210.6	-	-	-
			71-9대	134.9	-	-	-
			71-12대	89.6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2	6,036.4	갈월동	71-13대	91.9	-	-	-
			71-14대	92.9	-	-	-
			71-15대	122	-	-	-
			71-16철	12.6	-	-	-
			71-17철	4.6	-	-	-
			71-19대	64.5	-	-	-
			71-20대	196.7	-	-	-
			71-21대	41.6	-	-	-
			71-26대	5	-	-	-
			71-30대	73.7	-	-	-
			71-31대	45.3	-	-	-
			71-32대	45.3	-	-	-
			71-34대	132.9	-	-	-
			71-35대	173.2	-	-	-
선3	2,970.9	청파동 1가	154-5대	33	112.3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154-5) 해소
			154-6대	79.3			
			154-11대	36.4	284.3	권장	맹지 해소 (154-121,819)
			154-12대	92.6			
			154-18대	57.5			
			154-19대	97.8			
			154-13대	69.4	222.8	권장	맹지 해소 (154-13)
			154-15대	153.4			
			154-16대	49.6	199.8	권장	맹지 해소 (154-21,23,27,29,36)
			154-21대	29.8			
			154-23대	28.8			
			154-27대	28.8			
			154-29대	29.8			
			154-36대	33			
			154-17대	38.7	142.3	권장	맹지 해소 (154-22,24,28,30)
			154-22대	26.4			
			154-24대	25.4			
			154-28대	25.4			
			154-30대	26.4			
			154-26대	37.4	171.9	권장	맹지 해소(154-26)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해소 (154-33,34)
			154-25대	108.8			
			154-33대	23.1			
			154-34대	2.6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3	2,970.9	청파동 1가	154-31대	26	152.1	권장	맹지 해소(154-31)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해소 (154-40,41,42)
			154-40대	50.1			
			154-41대	43			
			154-42대	33			
			154-3대	43	-	-	-
			154-4대	86	-	-	-
			154-7대	86	-	-	-
			154-8대	109.1	-	-	-
			154-9대	39.7	-	-	-
			154-10대	340.5	-	-	-
			154-14대	56.2	-	-	-
			154-20철	19.8	-	-	-
			154-32대	197.9	-	-	-
			154-35대	198.3	-	-	-
			154-39도	13.6	-	-	-
			154-43대	59.5	-	-	-
			154-44대	62.8	-	-	-
			154-46대	46.3	-	-	-
			154-47대	45.6	-	-	-
			154-48대	91.6	-	-	-
		동자동	43-205철	189.5	-	-	-
선4	13,148.8	청파동 1가	180-8대	254.1	451.8	권장	맹지 해소(180-8)
			180-9철	197.7			
			180-14대	156.3	279.6	권장	맹지 해소(180-23)
			180-23대	123.3			
			180-18철	358.7	5,206.4	권장	맹지 해소 (180-18,26,27,28,29,30 ,31)
			180-20철	66.1			
			180-24대	4,590			
			180-26대	7.9			
			180-27대	56.2			
			180-28도	29.4			
			180-29대	40.3			
			180-30대	37			
			180-31대	20.8			
			180-21대	147.4	453.5	권장	맹지 해소(180-22)
			180-22대	306.1			
			180-10철	22.8	-	-	-
			180-11대	106.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4	13,148.8	청파동 1가	180-12철	26.8	-	-	-
			180-13대	289.9	-	-	-
			180-19대	96.8	-	-	-
			180-34철	17.2	-	-	-
			180-36대	2,730.9	2,895.3	권장	맹지 해소(180-36,38)
			180-38철	41			
		청파동 2가	119-1대	123.4			
			120-1대	257.5	1,389.3	권장	맹지 해소 (120-7,8,9,10,11,12,13, 14,15,16,17,18,66,67)
			120-7대	14.5			
			120-8대	54.5			
			120-9대	46			
			120-10대	34.4			
			120-11대	9.6			
			120-12대	27.8			
			120-13대	4.3			
			120-14대	37			
			120-15대	6			
			120-16철	819.2			
			120-17대	10.2			
			120-18대	4.3			
			120-66대	60.8			
			120-67대	3.2			
			120-19대	8.3	158.2	권장	맹지(120-19,20,21,22, 123-1,2,3,5) 해소를 위한 공동 개발 지정 유지 (구적면적:123-5,130-8)
			120-20대	24.8			
			120-21대	31.4			
			120-22대	19.2			
			123-1대	41			
			123-2대	2.3			
			123-3대	9.9			
			123-5천	16.4			
			130-8천	4.9			
			120-23대	25.8	75.5	권장	맹지(120-23,24,25) 해소를 위한 공동 개발 지정 유지 (구적면적:130-9)
			120-24대	30.4			
			120-25대	3.8			
			130-9천	15.5			
			120-26대	92.6	166.1	권장	맹지(120-26,27,29, 130-10) 해소를 위한 공동 개발 지정 유지 (구적면적:120-28,130-10)
			120-27대	19.2			
			120-28천	37.7			
			120-29천	14.3			
			130-10천	2.3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4	13,148.8	청파동 2가	120-30천	45.4	110.7	권장	맹지(120-30,33) 해소를 위한 공동 개발 지정 유지 (구적면적:120-30,31)
			120-31천	0.8			
			120-33대	64.5			
			120-34철	732.6	-	-	-
			120-36철	390.1	-	-	-
			120-37철	175.2	-	-	-
			120-40철	99.9	-	-	-
			123-4도	4.3	-	-	-

▌후암동 주거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후1	9,989.0	후암동	458	9,989	9,989	획지		기존 획지
후2	10,629.3	후암동	423-1	8531.6	9,083	획지 신설	공동개발 권장	미주아파트 일대 계획적 관리유도 (필지분할 가능선 100-3)
			426	534.8				
			426-1	16.6				
			91	171.8	171.8	-		
			92-2	48.5	48.5	-		
			92-4	1.9	1.9	-		
			93	0.7	0.7	-		
			93-1	5.6	5.6	-		
			93-2	16.5	16.5	-		
			93-5	112.7	116	공동개발 지정		
			94-4	3.3				
			93-6	159.3	159.3	-		
			93-7	6.3	6.3	-		
			94-1	246.6	246.6	-		
			94-2	0.7	0.7	-		
			95-3	17.5	51.1	공동개발 지정		
			95-5	33.6				
			96	113.7	113.7	-		
			99-1	43	43	-		
			99-4	136.8	136.8	-		
			100-1	151.4	151.4	-		
			100-3	6.1	6.1	-		
			101-64	36.4	36.4	-		
			101-65	8.8	8.8	-		
			101-68	11.4	11.4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후2	10,629.3	후암동	422	213.7	213.7	-		
후3	1,567.2	후암동	67	43	106.8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67-1	6.6				
			67-2	4.3				
			67-3	52.9				
			75-1	59.1	61.8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5-5	2.7				
			76-1	126.8	165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6-2	12.9				
			76-10	25.3				
			76-4	75.9	89.9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6-9	14				
		후암동	78	142.1	169.5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8-1	27.4				
			79	154.8	205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79-3	50.2				
			101-3	7.9	140.1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11	132.2				
			101-4	26.4	166.2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12	139.8				
			101-5	46.3	137.2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13	90.9				
			102-1	75.6	106.1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426-3	30.5				
			102-28	103.5	129.7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102-39	22.1				
			102-65	4.1				
			102-64	75.5	89.9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동일소유자	
			426-4	14.4				
후4	3,102.1	동자동	14-34	4.6	144.4	공동개발 지정	소유자 중복	
			14-132	139.8				
			14-141	23.1	440.9	공동개발 지정	동일 소유자	적정 개발 유도
			14-142	47.6				
			42-9	370.2			-	
			38-3	421.5	425.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8-13	0.3				
			38-15	3.5				
			39-7	184.8	3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1-4	132.2				
			41-5	211.6	2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1-9	36.4				
		갈월동	1-5	345.7	354.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6	8.4				
		갈월동	2-2	24.1	367.8	공동개발 지정	동일 소유자	맹지 해소, 소유자 중복
			5-58	16.5				
			5-59	13.2				
			5-17	314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후4	3,102.1	갈월동	3-3	70.7	176.8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 필지
			3-9	105.1				
			4-1	0.7				
			4-2	0.3				
			5-43	76.7	627.8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소유자중복
			5-44	313.4				
			5-45	237.7				
후5	2,281.7	갈월동	7-83	160.7	18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7	20.8				
			7-84	76	1,137.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32	948.8				
			11-60	112.6				
			7-136	113	119.9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 필지
			7-137	6.9				
			8-3	48.6	174.2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필지
			11-1	125.6				
			8-13	131.2	349.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30	218.2				
			8-42	34	14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43	115.7				
			10	86	169.6	공동개발 지정		기 개발필지
			10-3	83.6				
후6	2,928.1	갈월동	14-60	638.7	891.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67	19.5				
			14-106	233.4				
			16	233	847.9	1,036.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6-2	373.6					
			16-3	241.3					
			17-1	148.8	18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3	35.4					
			17-4	4.6					
			17-5	58.2	453.6	999.8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8	211.6					
			63-1	121					
			63-2	62.8					
			66	182.8	276.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4-1	93.6					
			66-2	35.4	26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8	234.4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권장용도 : 변경없음

▌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1	후암동 주거지구 및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2	한강대로변 필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 (용적률 완화 세부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참조)

(이 하 여 백)

2) 불허용도 : 변경

▌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일반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도시계획조례」및「서울시 자구단위계획수립기준」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2)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후암동주거지구		1종	150%	16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2종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한강대로변 필지		2종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3종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300%	400%	800%	-
	청파로변	2종	170%	200%	250%	-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변경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후암동주거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16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한강대로변 필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지역	400%	44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정계획 유지
	청파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한시적 용적률 완화(50%p 이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8.)에 따른 허용용적률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하는 시행령 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단, 본 내용은 서울시 관련 심의 및 고시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한다.)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일반상업지역	• 70m 이하	-
후암동 주거지구	이면부	• 28m 이하	공동주택 건립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완화 가능
한강대로변 필지		• 70m 이하	

※ 특별계획구역 높이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획지선의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최고높이가 적용될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0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 제1,2종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는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제한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132m를 초과하는 건축물(옥탑높이 포함)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선(변경)

▌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후암로변	후암로 동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격	• 후2획지 외 21개 필지 공동개발 시 건축한계선 후암로 동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격 • 후2 획지 추가(미주아파트 일대)
벽면한계선 (저층부)	필지폭이 좁은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3m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 (고층부)	특별계획구역	8 ~ 10m 벽면한계선	-

▌변경

구분	적용위치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후암로변	후암로 동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격	• 후2획지 외 21개 필지 공동 개발 시 건축한계선 후암로 동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격 • 후2 획지 추가(미주아파트 일대)
벽면한계선 (저층부)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3m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 (고층부)	특별계획구역	6 ~ 10m 벽면한계선	-
건축지정선	서울역선형필지지구 (경부선 철도변)	경부선 철도변 건축지정선 1m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지정선	건축지정선 1m	•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원 조성 고려하여 보행공간 확보
벽면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6m	• 이촌로변 6m 확보

2) 대지안의 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 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서울역, 후암동, 동자동④-1,⑧, 특별계획구역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보차혼용통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기정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
	1층 바닥높이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 (경사지의 경우 보도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 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측면공지 차폐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
	조명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 · 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권장
		한강대로변/ 용산공원 연접부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권장
	1층 바닥높이	전구역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보도/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권장
		용산공원 연접부	• 원색, 고채도 색상 사용 지양, 자연색 또는 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채색, 투명재료 활용 권장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공원변으로 전선, 옥상설비 등 부속 시설의 직접적 외부 노출을 지양,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디자인, 식재 등으로 차폐 권장 • 단순 페인트 마감 지양, 재료 고유의 특징을 활용한 입면디자인 권장	권장
	측면공지 차폐	전구역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 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권장
기타	옥외광고물	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권장
	조명	전구역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이상신축 또는 증 · 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재료/색채 권장사항 변경	• 용산공원 인접지역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권장 추가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계획내용 변경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환경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준수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

다.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강대로의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확보를 통해 남산 조망과 광역통경축 확보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한양도성~한강~여의도를 잇는 신도심으로서 매력있는 경관 형성	전구역	• 매력있고 상징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대로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상징성 부여	-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경관자원과 지역자산을 배려하는 경관관리	용산공원 연접부	• 경의선 숲길, 한강, 용산공원 연계 광역 보행녹지축 조성	-
	용산공원 연접부	• 용산공원, 남산의 조망확보를 위한 높이관리 및 통경축 확보	-
	경부선 연접부	•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경부선 녹지축변 경관관리	-
걸을수록 매력있고,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전구역	• 한강~용산공원~남산 연계 보행네트워크 조성	-
		• 보행자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 옛길, 지역자산을 고려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전구역	• 한강대로변, 한강변 건물의 야간조명 설치 유도 - 벽면을 비추는 상향식 야간조명 • 옥상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준수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34,502.71	-	534,502.71	-
기정	①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217,041.91	-	217,041.91	미시행
기정	②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44,449.1	-	44,449.1	계획결정
기정	③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273,011.7	-	273,011.7	계획결정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표시 조정

(이 하 여 백)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서울역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2가 122 및 용산구 동자동 43-205 일대	217,041.91	-	217,041.91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미시행

▌계획지침(변경)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밀도 및 개발규모	• 기존시설 • 신규시설 - 역무시설 15,000㎡내외(지하층 별도) - 상업시설 및 주차시설의 확장은 가급적 억제하되, 서울시와 협의결과에 따름		-
높이	기정	변경	-
	• 문화재보호법 준수 및 (구)서울역사 돔 하단부 높이 이하	•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 문화재보호법 준수	
토지이용	• 기존 역사시설 및 고속철도 역무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
건축선	• 칠패길, 한강로, 청파로변 : 건축한계선 3m • 신규시설은 (구)서울역사 이면부와 건축선 일치		-
공공보행통로	• 서울역 광장과 서부역 광장을 연결하는 보행통로(폭 10m 이상, 실내 설치 권장) 확보 및 24시간 개방		-
공공시설 계획	• 별도검토		-
기타	• 칠패로변 선형필지 정비 후 도로 확폭 • 교통영향평가 별도시행 • 서울역 광장 내 기존 주차장은 철도부지 내로 이전후 시민을 위한 녹화 휴게공간으로 조성 • 서울역 광장 내 기존시설은 신규 민자역사 내부로 수용 • 한강로변 차량 진출입 규제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및 지하철 4호선 서울역과 보행동선 연계(24시간 개방)		-

2) 동자동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동자동 45 일대	44,449.1	-	44,449.1	건설부고시 제1978-380호 (1978.11.30.)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및 정비계획에 따름

3)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후암동 143-16 일대	273,011.7	-	273,011.7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 (1) 특별계획구역 1

구분	계획지침	비고
면적	• 47,217.5㎡	-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용적률	• 추후 국토교통부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계획 결정 반영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추후 국토교통부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계획 결정 반영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추후 국토교통부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계획 결정 반영	-

※ 타 법령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해당 법령에 따름

• (2) 특별계획구역 2

구분		계획지침	비고
면적		• 2,985.5㎡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50%/350%/4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0%/800%/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2에 따름	-
높이		• 한강대로변 : 최고 100m 이하	-
용도	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 • 한강대로변 지하층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 제13호 운동시설 • 한강대로변 고층부(3층 이상)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한강대로변 1~2층)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 성인 전용 전화방, 성인 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감화원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축선		• 한강대로변 : 5m • 내부 신설도로(12m)변 : 3m	-
차량출입 불허구간		• 한강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순부담율		• 15.0% 이상(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가능) • 건축물 공공기여 시 시설의 종류는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계획	-

• (3) 특별계획구역 4(4-1, 4-2, 4-3)

구분		계획지침			비고
		특별계획구역4-1	특별계획구역4-2	특별계획구역4-3	
면적		• 118,840.9㎡	• 28,579.5㎡	• 38,776.8㎡	-
용도지역		• 제1종, 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4구역 특별계획구역 통합개발 시 적용(구역별 개발 시 용도지역 유지)			-
건폐율		• 60%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170%/200% 이하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0%/200%/250% 이하 ※ 용도지역 유지 시 용적률 체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150%/200% 이하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70%/190%/250%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에 따름			-
높이		• 통합개발 시 평균 23층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 단독개발 시, 평균 13층 이하, 최고층수 18층 이하 ※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남산 7부능선을 고려하여 계획 • 두텁바위로변 폭 30m, 후암로변 폭 20m : 40m 이하			-
용도	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 • 후암로변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사무소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일반업무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 성인 전용 전화방, 성인 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축선		• 후암로변 / 두텁바위로변 / 한강대로104길변 : 10m / 5m / 3m • 내부 신설도로(12m)변 : 3m, 5m			-
공공보행통로		• 서측 공공공지 ~ 동측 녹지 연결 공공보행통로 지정 : 폭 20m • 한강대로104길 ~ 교육청 연결 공공보행통로 지정 : 폭 10m			-
전면공지		• 차도부속형(3m), 보도부속형(2m)으로 조성			-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차혼용통로		• 삼광초 출입구(정문,후문)와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차혼용통로 지정 : 폭 6m			-

차량출입 불허구간		• 한강대로 104길 및 이면도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후암로, 두텁바위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기반시설	도로	• 후암로 2m 확폭(18m→20m) • 한강대로 연결도로 개설(12m), 한강대로104길 개설(20m) • 특별계획구역 2 연접부 도로 개설(12m)	-
	공원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치 지정(주요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기반시설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	-
	학교	• 삼광초등학교 정형화 검토	-
	공공공지	• 서측 공공공지 배치로 동서방향 녹지축 연계 • 특별계획구역 4 도로 개설 시 조성	-
	기타	• 후암 주민자치센터 건립 후 기부채납(1,750㎡ 이상) • 이면부 삼광초 진출입구 신설(서측)	-
순부담율		• 15% 이상(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가능)	-

※ 4-1, 4-2, 4-3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개발 허용

※ 용도지역, 높이계획 시 통합개발이란 특별계획구역 4-1, 4-2, 4-3 중 2개구역 이상 통합개발

※ 사업방식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 4-1구역 내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추진

(이 하 여 백)

• (4) 특별계획구역 5

구분		계획지침	비고
면적		• 36,611.5㎡	-
용도지역		• (획지1)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건폐율		• 60%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90%/221%/418%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름	-
높이		• 최고높이 120m 이하(40층 이하) • 두텁바위로변 폭 30m : 40m 이하	-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선		• 두텁바위로변 : 5m • 내부 신설도로(8m,12m)변 : 3m • 내부 신설도로(15m)변 : 10m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두텁바위로 및 이면도로변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기반 시설	도로	• 북측 경계부 한강대로 연결도로 개설 (12m) • 동측 도로 확폭(10m → 15m) • 서측 연결도로 개설(8m)	-
	공공 공지	• 도로 개설 시 조성	-
	기타	• 사회복지시설 신설(2개소)	
순부담율		• 15.0% 이상(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가능)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계획 수립 중으로 향후 정비계획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6.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역특성, 계획여건에 따라서 크게 공통사항, 중점 인센티브, 계획유도 인센티브 등 으로 구분함
-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중점 인센티브는 획지 별 가급적 1~2개의 항목이 해당하도록 계획함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② 경우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40을 의무적으로 계획,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점 인센티브를 계획하지 않을 수 있음
-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주거지역의 경우 인센티브 계획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전체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적용가능
- 인센티브 항목은 구역현황, 입지여건, 용도지역, 접도 조건 등에 따라 차별화하고,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차등하여 계획할 수 있음

(이 하 여 백)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공통사항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기준용적률×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 생태도심	입체녹지조성	기준용적률×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시
	공공보행통로설치	기준용적률×0.03	• 공공보행통로에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적용 불가

※ 계획기준 준수 시 적용 가능한 다음의 항목은 해당 인증기관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지열 등 신재생 세부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을 결정해야하는 다음의 항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서면동의를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결정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인센티브에 에너지 설치, 저영향개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입체녹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 적용 가능)
- UAM시설,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특색있는 건축설계,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역사문화 특성 보전,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절차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가능 (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주거지역(후1, 후암시장 일대) 및 한강대로변 필지

유형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녹지생태도시	개방형 공간 조성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3	•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 시
지역맞춤형	전선지중화	기준용적률×0.05	-

※ 개방형 공간 조성 :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공공간(공공보행통로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거지역(후2 미주아파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④-1, ④-2, ④-3

유형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녹지생태도시 지역맞춤형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 20% 이상 시 준수시 인정 • 기타 권장용도 : a=0.2 • 노유자시설 : a=0.4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건축·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0.3	-
	역사보전	역사적, 문화적 건축물	기준용적률×0.02	-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a	• 필로티구조 : a=0.3, • 개방형구조 : a=0.5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a	-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0.01	-

※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 시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에 따름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최대 20%p 이내)

구분	인센티브량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α=1 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10%p 이내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준공 후에도 유지)	5%p 이내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α ※ α=1 이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 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 등	5%p 이내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결정	5%p 이내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α ※ α=1 이하 * 정비 비용/사업 대지가액(「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지역특화 인센티브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맞춤형 항목 신설 기능 - 기준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0%p 이내 (합산)
합계	최대 20%p 이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②

유형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계획 유도 (60%)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6	-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0.6	-
		자연지반보존/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6	-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6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6	-
중점 (40%)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바닥면적/ 전체바닥면적)×0.6	바닥면적 20% 이상 설치 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름

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공시설등 제공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 '권역별생활서비스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 적용) ②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임대주택 건립 시	• 관련법률 및 조례,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용적률계획 일괄재정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13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	-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출입구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 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 완화량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시	• 적용대상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 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되,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공개공지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
친환경항목 적용시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다만,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table>
<tr><th>구 분</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친환경항목
적용 시</td><td>-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
<tr><th>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h>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
<table>
<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
<tr><td>완화
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td><td>
<table>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d></tr>
<tr><th>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h>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d><td>
<table>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td></tr>
</table>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td></tr>
<tr><td>특별건축구역
도입시</td><td>•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 건축물에 대해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을 적용</td><td>-</td></tr>
<tr><td>지능형건축물
인증 시</td><td>• 적용대상 : 「건축법」 제65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인증 기준이 고시된 건축물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지능형건축물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관 :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인증등급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 colspan="2">심사기준</td><td>90%
이상 득점</td><td>85% 이상
90% 미만</td><td>80% 이상
85% 미만</td><td>75% 이상
80% 미만</td><td>70% 이상
75% 미만</td></tr>
<tr><td colspan="2">각 분야별
과락점수</td><td>85% 미만</td><td>80% 미만</td><td>75% 미만</td><td>70% 미만</td><td>65% 미만</td></tr>
<tr><td rowspan="3">심사총평</td><td>비주거</td><td colspan="5">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6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주거</td><td colspan="5">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복합건축물</td><td colspan="5">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td></tr>
</table>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table>
<tr><th>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건축기준
완화 비율</td><td>15%</td><td>12%</td><td>9%</td><td>6%</td><td>0%</td></tr>
</table>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td><td>-</td></tr>
</table>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등 설치·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규정은 허용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을 더하여 상한용적률로 산정
※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적정성 등 검토
※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세부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및 서울시 관련지침의 내용을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1) 차량동선(변경)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전구역(도면참조)	• 간선도로 및 모퉁이변에 지정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필지[차량진출입 불허구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행동선(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 옛 도시조직(옛 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피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
보차혼용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이 하 여 백)

2.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기준

1. 특별계획구역 내 개별 신축은 불허
2.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5조를 준용함.
3.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7.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8.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9.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③ 지구단위계획 내 경미한 사항의 처리는 자치구청장이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이 하 여 백)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 여 백)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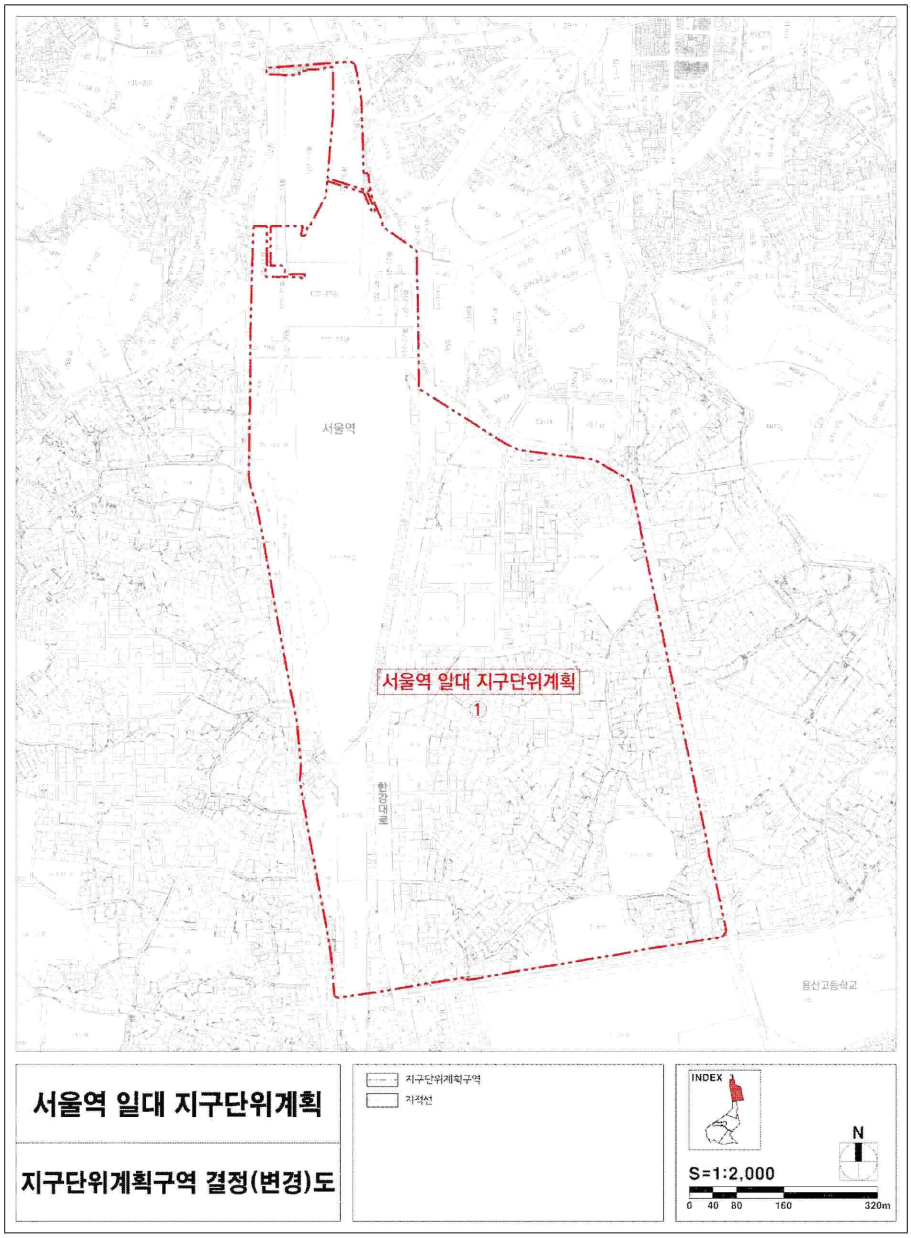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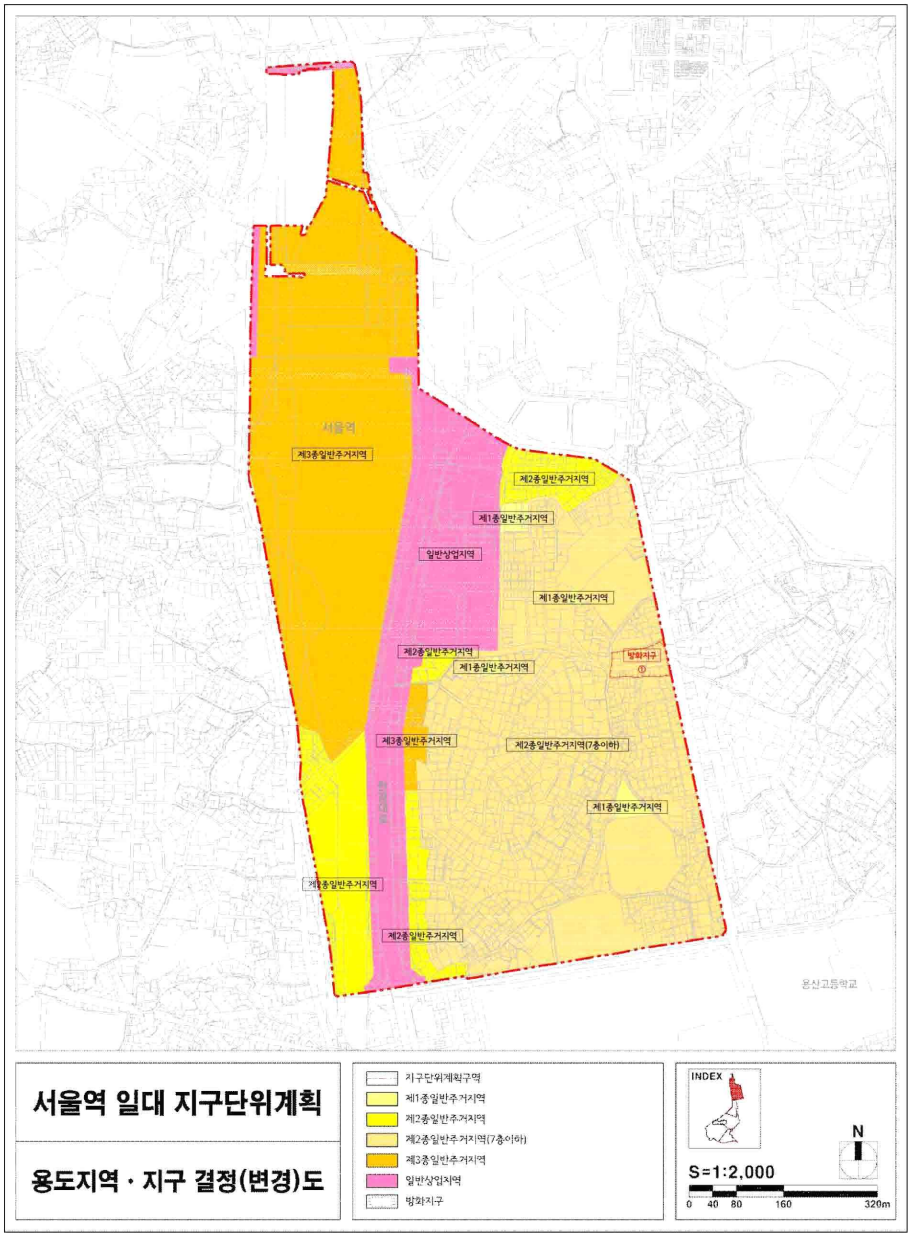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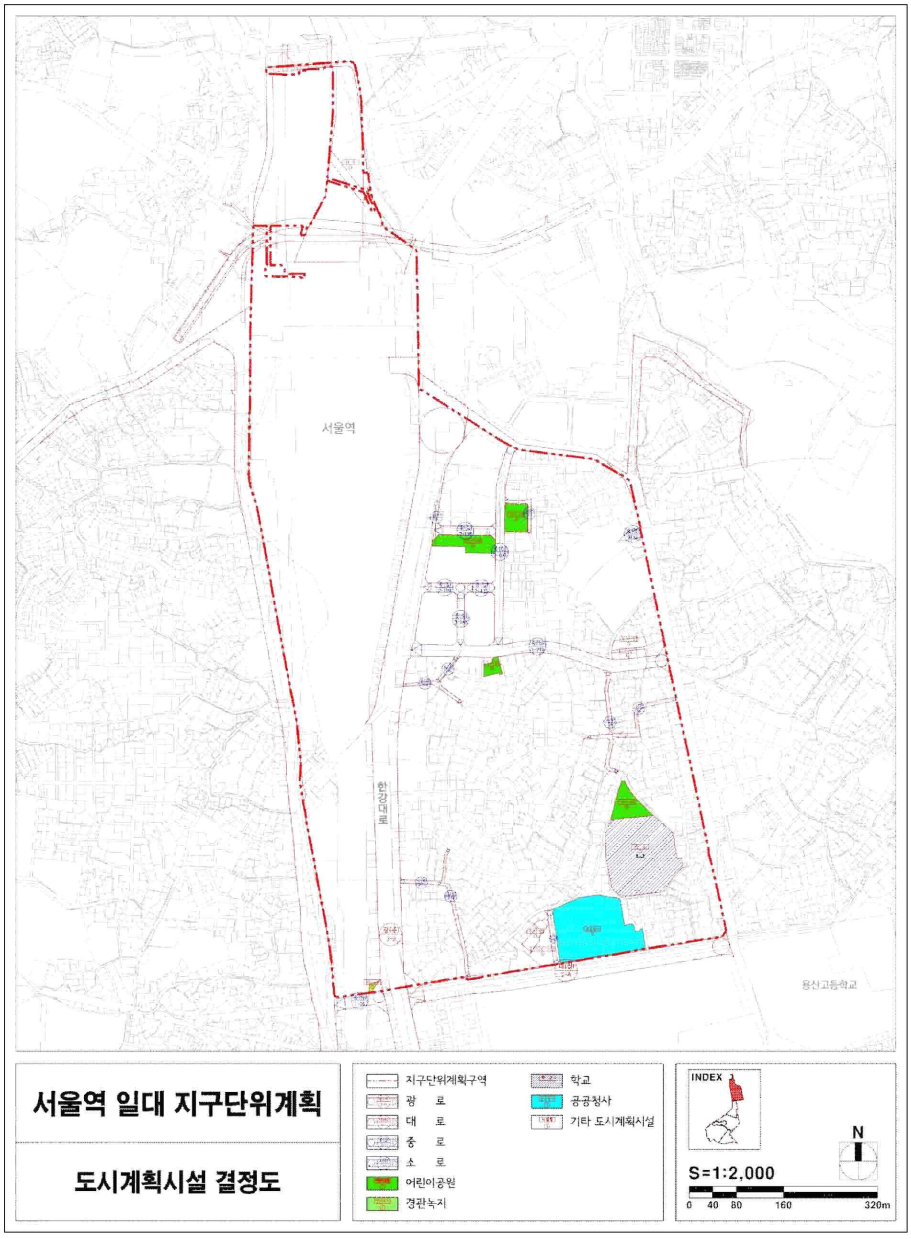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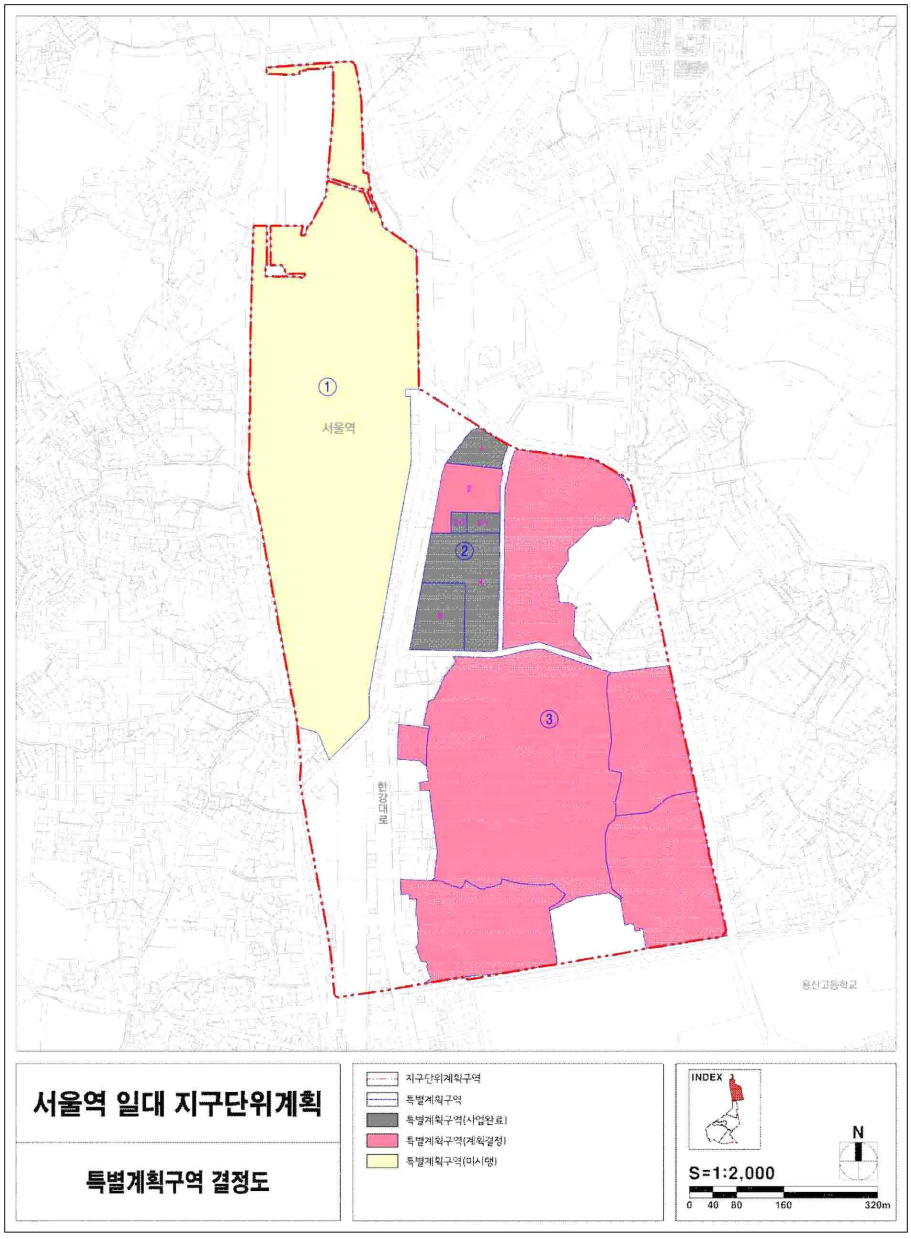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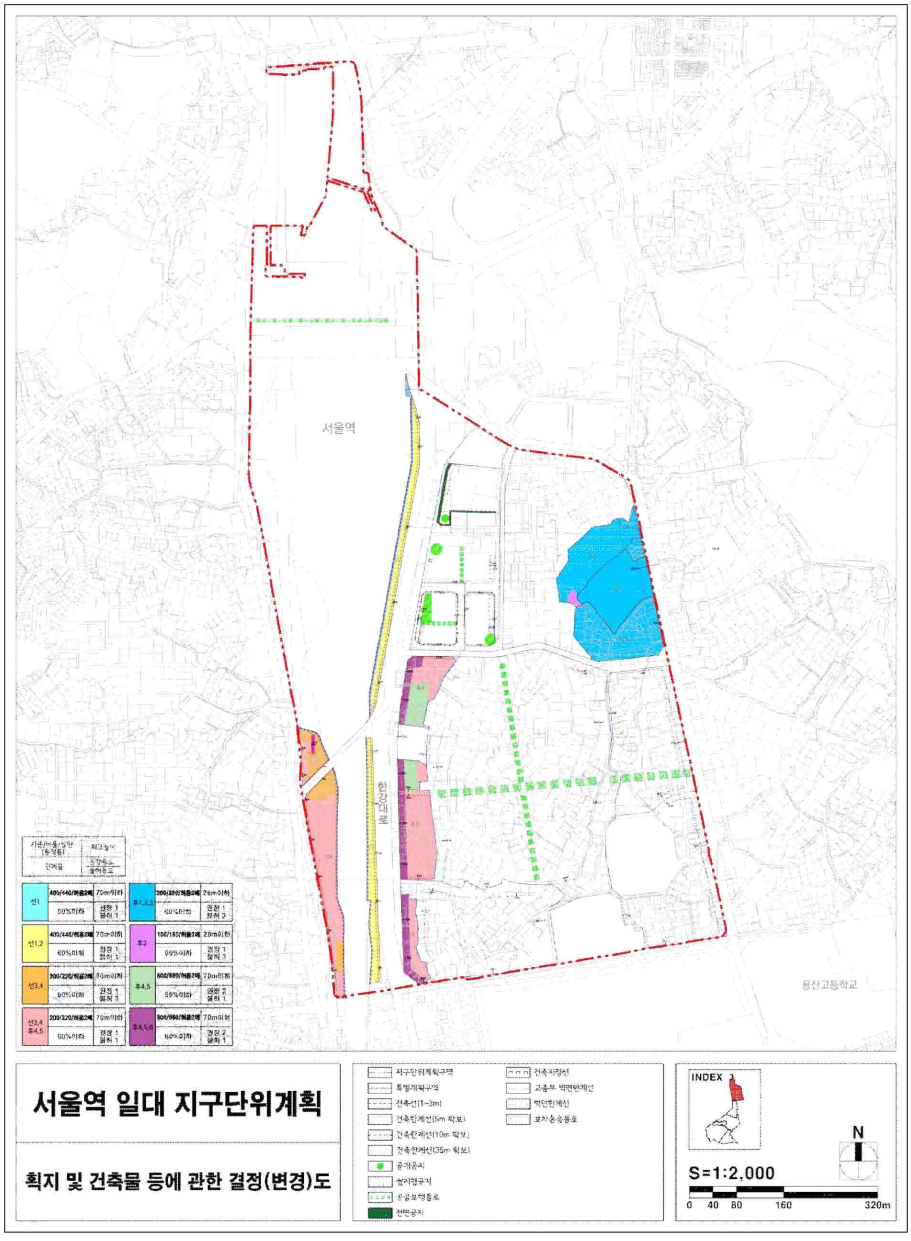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3호

도시관리계획(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3.1.)에서 국가상징거점으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용산일대에 대해 미래신도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립하고 재정비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59,349.1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변경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710,541.62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 백범로 일대	358,536.69		-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백범로 일대 ~ 새창로 일대	725,899.93		-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새창로 일대 ~ 한강로 일대	1,024,943.99		-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119,703.10		-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대로 ~ 용산동 5가 일대	424,022.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11,118.9㎡) •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9,378.9㎡)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나진 19·20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6,335.2㎡)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구역내 편입 (증 60,395.79㎡)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의 한강 연결성 강화 고려 강변북로 및 하천 일부 구역 편입 (증 17,069.72㎡) • 과도한 면적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합리성, 실현성 증진과 유연하며,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 분할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 계		3,259,349.1	감) 2,900,812.41	358,536.69	100.0	-
주거지역	소 계	1,934,426.96	감) 1,868,299.46	66,127.50	18.44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673.00	감) 30,673.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474.05	감) 427,346.55	66,127.50	18.4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687.80	감) 507,687.8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4,755.01	감) 724,755.01	-	-	-
	준주거지역	177,837.10	감) 177,837.10	-	-	-
상업지역	소계	1,324,507.94	감) 1,067,368.52	257,139.42	71.72	-
	일반상업지역	1,222,376.94	감) 965,237.52	257,139.42	71.72	-
	중심상업지역	102,131.00	감) 102,131.00	-	-	-
자연녹지지역		414.20	증) 34,855.56	35,269.76	9.84	-

▌용도지역 결정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30,673.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27,346.5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감) 507,687.80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724,755.01	
	준주거지역	감) 177,837.10	
일반상업지역		감) 965,237.52	
중심상업지역		감) 102,131.00	
자연녹지지역		증) 34,855.56	

가.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 변경없음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방화지구	남영동 28-11외 8필지	816	건고 제727호 (1963.12.13.)	남영시장

(이 하 여 백)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9	40~46	주간선 도로	4,000 (3,870)	서울역광장	한강제1 인도교북단	일반도로	총고 제757호 (1939.9.18.)	철도중복결정 (면적: 83㎡)
기정	대로	2	12	30	보조간선 도로	750 (147)	남영동	원효로1가	일반도로	내고 제23호 (1952.3.25.)	-
기정	대로	3	13	25	주간선 도로	2,300 (513)	만리동광장	문배동	일반도로	총고 제722호 (1936.12.26.)	청파로
기정	중로	3	1	7.5~ 13.5	국지도로	484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40-697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80	한강로1가 (백범로)	한강로1가 73-2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193	한강로1가 (광로3-9)	한강로1가 73-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32	20	집산도로	550	남영동 (광3-9)	용산동1가 2-11	일반도로	내고 제23호 (1952.3.25.)	용산공원 미군부대입구
기정	중로	1	37	20~30 (20)	보조간선 도로	552 (103)	후암동 194-25	갈월동 (광3-9)	일반도로	총고 제757호 (1939.9.18.)	-
기정	중로	1	38	20	집산도로	87	갈월동 (광3-9)	청파동 120-35	일반도로	총고 제757호 (1939.9.18.)	-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183	원효로1가 45-1앞	문배동 2-4	일반도로	서고 제184호 (2009.5.7.)	-
기정	중로	3	가1	8~12	국지도로	204	원효로1가 43-12	문배동 40-74	일반도로	서고 제274호 (2021.6.17.)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0	청파동2가 120-65	갈월동 69-62	일반도로	서고 제344호 (2022.8.18.)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300	한강로1가 (중1-1)	갈월동 103-23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51	문배동 (백범로)	문배동 40-30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소로	2	나1	7.5~9.5	국지도로	84	한강로3가 (광로3-9)	대로2-57	일반도로	서고 제488호 (2021.9.9.)	용산철도 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86	문배동 40-5	문배동 7-31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46	문배동9-1 (용호로)	원효로1가 120-29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문배동이안 아파트부지
기정	소로	2	3	8~11	국지도로	75	문배동 11-6	문배동 11-13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문배동이안 아파트부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6	문배동 11-20	문배동 7-39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소로	2	5	8~9	국지도로	110	원효로1가 129-59	원효로1가 40-30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180	갈월동 (대2-12)	갈월동 98-57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63	갈월동 (광3-9)	갈월동 (소3-14)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36	갈월동 (광3-9)	갈월동 103-23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23	원효로1가 112-4	원효로1가 112-15	일반도로	서고 제184호 (2009.5.7.)	-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60	문배동 11-13	문배동 11-27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문배동이안 아파트부지
기정	소로	3	20	6~8	국지도로	21	문배동 10-3	문배동 11-31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 도로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 변경없음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5,699.6	-	5,699.6	-	-
기정	⑤	공원	소공원	원효로1가 119-2일대	1,264.4	-	1,264.4	서고 제184호 (2009.5.7.)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기정	⑥	공원	소공원	문배동 7-32일대	2,345.2	-	2,345.2	서고 제184호 (2009.5.7.)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③
기정	⑦	공원	어린이공원	한강로1가 47-1일대	2,090.0	-	2,090.0	서고 제229호 (2001.7.10.)	(구)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내

2) 공공공지 : 폐지

▌공공공지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537.0	감)537.0	-	-	-
폐지	①	공공공지	문배동 10-16 일대	537.0	감)537.0	-	서고 제438호 (2010.12.2.)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2 실효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537.0㎡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2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911.2	-	2,911.2	-	-
기정	②	공공청사	-	갈월동 92일대	2,493.2	-	2,493.2	서고 제344호 (2022.8.18.)	별도부지 (서울특별시장)
기정	③	공공청사	-	갈월동 92일대	418.0 (토지지분)	-	418.0 (토지지분)	서고 제344호 (2022.8.18.)	복합설치 (용산구청장)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②	60%이하	800%이하	-	일반상업지역
③	-	-	지상 1~3층	연면적 : 5,000㎡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친환경 계획 :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에 인센티브 항목 적용

<table>
<tr><th colspan="2">인센티브 항목</th><th>세부항목</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탄소 중립</td><td>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td><td>•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td><td>기준용적률 × 0.05</td><td rowspan="3">허용 용적률</td></tr>
<tr><td>저영향개발</td><td>•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td><td>기준용적률 × 0.05</td></tr>
<tr><td>디자인 혁신</td><td>유니버셜 디자인 도입</td><t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td><td>기준용적률 × 0.03 ~ 0.05</td></tr>
<tr><td colspan="2">친환경 건축물</td><td>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table><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② 녹색건축 인증
<table><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table>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table>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td><td>상한 용적률</td></tr>
</table>

나. 방재안전계획 : 신설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지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방재지구,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의 7가지 계획 중 1가지에 해당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지도 (침수관련)	원효로1가 43-8,121-48 일대 및 원효로변 일대 (도면참조)	• 침수예상구역에 대해서는 저영향개발 빗물분담량 확보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하여 침수방지 저감대책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화지구 (화재관련)	남영시장 (도면참조)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

4.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 신설

• 지역(역사)자산 조사는 문화재, 근대 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등 8가지로 구분됨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및 기타 지역자산(매장문화재)에 해당되며,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2013)의 관리지침을 따름

- 현재에는 원형의 모습·형태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자료상 또는 "터"의 형태로 전해져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도시조직/경관	남영동 일대 (남영동 70 일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조직인 옛 길, 옛 물길, 도시평면 등 장소, 옛 조직 등 흔적남기기 검토	-
	옛 인쇄소 골목 (원효로 84길 일대)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 따라 적용위치 확인

※ 지표조사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이 하 여 백)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간선부 이면부	• 3,000㎡ 이하	적용범위 변경

※ 기존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단일 필지의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 기 공동개발 된 필지
- 획지 및 모든 공동개발 필지면적 합계가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나.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한강대로, 원효로)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대지분할기준, 현황 대지규모 등을 통해 적정 개발규모 유도 • 획지 내 필지는 개별건축 불가능 -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변경	• 소유자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과도한 지정 지양 • 획지계획 전면해제 → 공동개발 또는 자율적 개발 - 계획 실현성 제고	-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기준
공동개발(권장)	도면참조	• 공동개발(권장) 최소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참조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 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1. 부정형 필지가 형성되는 경우 2.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 등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개발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필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 대지 형태의 정형화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지 분할을 권장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 - 필지 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 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제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기정

▌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5	1,039.7	청파동 2가	120-35천	60.9	-	-	-
			120-41철	149.8	-	-	-
			120-42대	177.2	-	-	-
			120-45철	51.6	-	-	-
			120-47대	92.9	-	-	-
			120-49대	6	-	-	-
			120-50대	44	-	-	-
			120-51대	16.5	-	-	-
			120-52대	38.3	-	-	-
			120-53대	26.1	-	-	-
			120-55대	85	-	-	-
			120-56대	91.2	-	-	-
			120-57대	97.1	-	-	-
		청파동 3가	9-1대	35.4	-	-	-
			9-2대	16.5	-	-	-
			9-4천	43.3	-	-	-
			56-5도	7.9	-	-	-
선6	3,502.9	청파동 3가	10-2대	3.3	-	-	-
			10-5천	52.2	-	-	-
			10-7대	101	-	-	-
			10-11천	7.2	-	-	-
			10-14천	7.2	-	-	-
			10-19천	16.5	-	-	-
			10-20대	4.3	-	-	-
			11-2철	105.1	-	-	-
			11-3천	43.3	-	-	-
			11-6대	0.7	-	-	-
			11-8대	10.6	-	-	-
			11-9대	8.6	-	-	-
			12-1철	12.9	-	-	-
			12-2대	122.6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6	3,502.9	청파동 3가	12-4대	1,695.9	-	-	-
			12-6철	241.7	-	-	-
			12-7대	1.7	-	-	-
			12-8대	8.9	-	-	-
			12-9대	42.6	-	-	-
			12-10대	78	-	-	-
			12-13대	43.6	-	-	-
			12-14대	104.5	-	-	-
			56-4도	25.2	-	-	-
			56-7도	3.3	-	-	-
			62-1천	6.3	-	-	-
			64-1도	77.2	-	-	-
			64-2도	15.7	-	-	-
			65-3도	4.4	-	-	-
			65-4도	24.4	-	-	-
			67-1대	3	-	-	-
			67-11천	6.8	-	-	-
			67-12천	3.5	-	-	-
			67-13천	2.5	-	-	-
			67-14천	1.7	-	-	-
			67-17천	17.2	-	-	-
			67-18천	14.2	-	-	-
			67-19천	11.6	-	-	-
			67-20천	20.2	-	-	-
			67-21천	17.6	-	-	-
			67-22천	10.9	-	-	-
			67-23대	10.6	-	-	-
			67-24대	11.2	-	-	-
			67-25대	13.9	-	-	-
			67-26대	15.2	-	-	-
			67-27대	18.5	-	-	-
			67-28대	25.1	-	-	-
			67-29대	18.5	-	-	-
			67-30대	20.5	-	-	-
			67-31대	23.8	-	-	-
			67-32대	20.5	-	-	-
			67-33대	18.5	-	-	-
			67-34대	20.5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6	3,502.9	청파동 3가	67-35대	11.2	-	-	-
			68-3천	5.4	-	-	-
			69-1대	1.3	-	-	-
			69-3천	10.4	-	-	-
			69-4대	17.9	-	-	-
			69-5대	13.6	-	-	-
			70-1도	5.3	-	-	-
			72-1대	143.8	-	-	-
			72-3천	12.3	-	-	-
			73-3천	10.3	-	-	-
			75-4천	6.8	-	-	-
			76-3천	4.6	-	-	-
			77-3천	2.8	-	-	-
			78-1천	15.8	-	-	-
			78-3대	2.3	-	-	-
			78-4대	2.3	-	-	-
			79-1천	0.2	-	-	-
			79-4도	41.7	-	-	-

(이 하 여 백)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남1	5,467.8	갈월동	98-1대	341.8	697.2	지정	-
			98-35대	141.2			-
			98-36대	33			-
			98-52대	141.8			-
			101-14대	39.4			-
			98-2대	460.4	-	-	-
			98-38대	2,134.1	-	-	-
			101-41대	124.6	-	-	-
			101-45대	729.2	-	-	-
			101-49대	1,317.4	-	-	-
			101-60대	4.9	-	-	-
남2	5,930.1	갈월동	101-29대	167.6	471.7	지정	-
			103-15대	304.1			-
			98-37대	56.2	192.7	지정	-
			98-48대	36.4			-
			98-58대	86.9			-
			98-61대	13.2			-
			98-11대	1,419.9	-	-	-
			98-13대	197.2	-	-	-
			98-14대	171.8	-	-	-
			98-15대	265.1	-	-	-
			98-59대	48.4	-	-	-
			101-5대	529.6	-	-	-
			103-17대	2,633.7	-	-	-
남3	8,961.2	갈월동	98-31대	131.2	251.2	지정	-
			98-47대	99.2			-
			98-53대	20.8			-
			98-5대	413.6	-	-	-
			98-6대	1,892.2	-	-	-
			98-62도	4.4	-	-	-
			98-63도	8.8	-	-	-
			98-8대	6,391	-	-	-

▌문배동 업무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문업1	1,818.6	원효로1가	112-10대	72.7	436.4	획지		-
			112-11대	136.6				-
			112-12대	131.4				-
			112-13대	70.3				-
			112-14대	25.4				-
			112-4대	495.9	-	-		-
			112-9대	171.2	-	-		-
			112-15대	578.7	-	-		-
			113-3대	136.4	-	-		-
문업2	968.4	원효로1가	45-1대	968.4	-	-		-
문업3	5,008.2	원효로1가	129-60도	28.6	-	-		-
			129-61잡	1.0	-	-		-
			133-3대	4,528.7	-	-		-
		문배동	41대	449.9	-	-		-
문업4	3,106	원효로1가	130-4대	292.2	-	-		-
		문배동	40-31	2,813.8	-	-		-
문업5	767.7	문배동	40-28대	135.5	433.8	지정	권장	-
			40-48대	145.4				-
			40-21대	152.9		-		-
			40-20대	333.9	-	-		-
문업6	2,216.1	원효로1가	120-15대	233.0	-	-		-
			128-1대	36.7	-	-		-
		문배동	40-19대	1,235.7	-	-		-
			40-27대	710.7	-	-		-
문업7	2,138.6	원효로1가	119-13대	74.7	228.4	지정		-
			119-14대	139.2				-
		문배동	40-43대	9.9				-
			40-44대	4.6				-
		원효로1가	120-20대	325.0	357.3	지정		-
		문배동	40-62대	32.3				-
		원효로1가	120-22대	202.6	226.2	지정		-
		문배동	40-80대	23.6				-
			40-39대	1,326.7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문업8	5,674.2	문배동	5-7도	43.5	671.3	지정	-
			7-26대	86.4			-
			8-5대	461.0			-
			8-7대	7.2			-
			8-8대	53.5			-
			8-9대	13.0			-
			8-10대	6.7			-
			2-9대	267.1	-	-	-
			3-3대	4,735.8	-	-	-
문업9	2,649.3	문배동	7-6대	2,258.6	-	-	-
			11-13대	390.7	-	-	-
문업10	1,951.4	문배동	11-29대	1,951.4	-	-	-
문업11	3,790	문배동	11-14대	2,034.6	-	-	-
			11-15종	1,251.9	-	-	-
			11-17대	99.2	-	-	-
			11-34대	404.3	-	-	-

(이 하 여 백)

2) 변경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5	1,039.7	청파동2가	120-35천	60.9	-	-	-
			120-41철	149.8	-	-	-
			120-42대	177.2	-	-	-
			120-45철	51.6	-	-	-
			120-47대	92.9	-	-	-
			120-49대	6	-	-	-
			120-50대	44	-	-	-
			120-51대	16.5	-	-	-
			120-52대	38.3	-	-	-
			120-53대	26.1	-	-	-
			120-55대	85	-	-	-
			120-56대	91.2	-	-	-
			120-57대	97.1	-	-	-
		청파동3가	9-1대	35.4	-	-	-
			9-2대	16.5	-	-	-
			9-4천	43.3	-	-	-
			56-5도	7.9	-	-	-
선6	3,502.9	청파동3가	10-2대	3.3	-	-	-
			10-5천	52.2	-	-	-
			10-7대	101	-	-	-
			10-11천	7.2	-	-	-
			10-14천	7.2	-	-	-
			10-19천	16.5	-	-	-
			10-20대	4.3	-	-	-
			11-2철	105.1	-	-	-
			11-3천	43.3	-	-	-
			11-6대	0.7	-	-	-
			11-8대	10.6	-	-	-
			11-9대	8.6	-	-	-
			12-1철	12.9	-	-	-
			12-2대	122.6	-	-	-
			12-4대	1,695.9	-	-	-
			12-6철	241.7	-	-	-
			12-7대	1.7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6	3,502.9	청파동3가	12-8대	8.9	-	-	-
			12-9대	42.6	-	-	-
			12-10대	78	-	-	-
			12-13대	43.6	-	-	-
			12-14대	104.5	-	-	-
			56-4도	25.2	-	-	-
			56-7도	3.3	-	-	-
			62-1천	6.3	-	-	-
			64-1도	77.2	-	-	-
			64-2도	15.7	-	-	-
			65-3도	4.4	-	-	-
			65-4도	24.4	-	-	-
			67-1대	3	-	-	-
			67-11천	6.8	-	-	-
			67-12천	3.5	-	-	-
			67-13천	2.5	-	-	-
			67-14천	1.7	-	-	-
			67-17천	17.2	-	-	-
			67-18천	14.2	-	-	-
			67-19천	11.6	-	-	-
			67-20천	20.2	-	-	-
			67-21천	17.6	-	-	-
			67-22천	10.9	-	-	-
			67-23대	10.6	-	-	-
			67-24대	11.2	-	-	-
			67-25대	13.9	-	-	-
			67-26대	15.2	-	-	-
			67-27대	18.5	-	-	-
			67-28대	25.1	-	-	-
			67-29대	18.5	-	-	-
			67-30대	20.5	-	-	-
			67-31대	23.8	-	-	-
			67-32대	20.5	-	-	-
			67-33대	18.5	-	-	-
			67-34대	20.5	-	-	-
			67-35대	11.2	-	-	-
			68-3천	5.4	-	-	-
			69-1대	1.3	-	-	-
			69-3천	10.4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선6	3,502.9	청파동3가	69-4대	17.9	-	-	-
			69-5대	13.6	-	-	-
			70-1도	5.3	-	-	-
			72-1대	143.8	-	-	-
			72-3천	12.3	-	-	-
			73-3천	10.3	-	-	-
			75-4천	6.8	-	-	-
			76-3천	4.6	-	-	-
			77-3천	2.8	-	-	-
			78-1천	15.8	-	-	-
			78-3대	2.3	-	-	-
			78-4대	2.3	-	-	-
			79-1천	0.2	-	-	-
			79-4도	41.7	-	-	-

※ 선형필지 내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라 처리토록 함

(이 하 여 백)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남1	5,467.8	갈월동	98-1대	341.8	697.2	권장	맹지 해소 (98-1, 101-14) 세장형 필지 해소 (98-36,101-14)
			98-35대	141.2			
			98-36대	33			
			98-52대	141.8			
			101-14대	39.4			
			98-2대	460.4	-	-	-
			98-38대	2,134.1	-	-	-
			101-41대	124.6	-	-	-
			101-45대	729.2	-	-	-
			101-49대	1,317.4	-	-	-
			101-60대	4.9	-	-	-
남2	5,930.1	갈월동	101-29대	167.6	471.7	권장	맹지 해소(101-29)
			103-15대	304.1			
			98-48대	36.4	136.5	권장	맹지(98-48) 해소 부정형필지(98-58)해소 건축가능면적35㎡미 만필지(98-61) 해소
			98-58대	86.9			
			98-61대	13.2			
			98-11대	1,419.9	-	-	-
			98-13대	197.2	-	-	-
			98-14대	171.8	-	-	-
			98-15대	265.1	-	-	-
			98-37대	56.2	-	-	-
			98-59대	48.4	-	-	-
			101-5대	529.6	-	-	-
			103-17대	2,633.7	-	-	-
남3	8,961.2	갈월동	98-31대	131.2	251.2	권장	맹지(98-31,47,53) 이나 『주차장법』시행령8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로 공동 개발 지정
			98-47대	99.2			
			98-53대	20.8			
			98-5대	413.6	-	-	-
			98-6대	1,892.2	-	-	-
			98-62도	4.4	-	-	-
			98-63도	8.8	-	-	-
			98-8대	6,391	-	-	-

▌문배동 업무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문업1	1,818.6	원효로1가	112-10대	72.7	411	권장	획지계획 해제 후 맹지(112-11,12,13) 해소를 위한 공동 개발 지정 (획지 → 지정)
			112-11대	136.6			
			112-12대	131.4			
			112-13대	70.3			
			112-4대	495.9	-	-	-
			112-9대	171.2	-	-	-
			112-14대	25.4	-	-	-
			112-15대	578.7	-	-	-
			113-3대	136.4	-	-	-
문업2	968.4	원효로1가	45-1대	968.4	-	-	-
문업3	5,008.2	원효로1가	129-60도	28.6	-	-	-
			129-61잡	1.0	-	-	-
			133-3대	4,528.7	-	-	-
		문배동	41대	449.9	-	-	-
문업4	3,106.0	원효로1가	130-4대	292.2	-	-	-
		문배동	40-31	2,813.8	-	-	-
문업5	767.7	문배동	40-20대	333.9	-	-	-
			40-21대	152.9	-	-	구적면적
			40-28대	135.5	-	-	-
			40-48대	145.4	-	-	-
문업6	2,216.1	원효로1가	120-15대	233.0	-	-	-
			128-1대	36.7	-	-	-
		문배동	40-19대	1,235.7	-	-	-
			40-27대	710.7	-	-	-
문업7	2,138.6	원효로1가	119-13대	74.7	228.4	권장	맹지 해소(40-43,44)
			119-14대	139.2			
		문배동	40-43대	9.9			
			40-44대	4.6			
		원효로1가	120-20대	325	-	-	-
			120-22대	202.6	-	-	-
		문배동	40-39대	1,326.70	-	-	-
			40-62대	32.3	-	-	-
			40-80대	23.6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문업8	5,674.2	문배동	5-7도	43.5	671.3	권장	맹지 해소 (8-7,8,9,10) 세장형 필지 해소(5-7)
			7-26대	86.4			
			8-5대	461			
			8-7대	7.2			
			8-8대	53.5			
			8-9대	13.0			
			8-10대	6.7			
			2-9대	267.1	-	-	구적면적
			3-3대	4,735.8	-	-	-
문업9	2,649.3	문배동	7-6대	2,258.6	-	-	-
			11-13대	390.7	-	-	-
문업10	1,951.4	문배동	11-29대	1,951.4	-	-	-
문업11	3,790.0	문배동	11-14대	2,034.6	-	-	-
			11-15종	1,251.9	-	-	-
			11-17대	99.2	-	-	-
			11-34대	404.3	-	-	-
문업12	4,040.6	문배동	10-15도	67.4	-	권장	-
			10-16대	408.1	-		백범로변 필지분할가능선
			10-17대	40.2	-		-
			11-21대	2,214.9	-		백범로변 필지분할가능선 이면부 필지분할가능선 (소로2-4호, 3-20호 연결도로)
			11-22대	661.1	-		백범로변 필지분할가능선
			11-23대	418.5	-		백범로변 필지분할가능선
			11-24대	125.4	-		-
			11-31도	7.6	-		이면부 필지분할가능선 (3-20호 연결도로)
			11-32도	97.4	-		백범로변 필지분할가능선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권장용도 : 변경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1	후암동 주거지구 및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3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4	문배동 업무지구 및 문배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이 하 여 백)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1	후암동 주거지구 및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3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4	문배동 업무지구 및 문배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적용범위 변경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 (용적률 완화 세부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참조)

(이 하 여 백)

2) 불허용도 : 변경

▌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일반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폐율 계획(변경)

▌기정

구분	건폐율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일반상업지역	60%이하	

▌변경

구분	건폐율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적용범위 변경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도시계획조례」 및「서울시 자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2)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청파로변	2종	170%	200%	250%	-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한강로~원효로 교차부분	일반상업 (이면부/간선부)	400 / 600%	600 / 800%	1,000%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문배동 업무지구	문배동일대	일반상업 (이면부/간선부)	400 / 600%	600 / 800%	1,000%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변경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청파로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한강로~원효로 교차부분	일반상업지역 (이면부/간선부)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문배동 업무지구	문배동일대	일반상업지역 (이면부/간선부)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한시적 용적률 완화(50%p 이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8.)에 따른 허용용적률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하는 시행령 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단, 본 내용은 서울시 관련 심의 및 고시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한다.)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기정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일반상업지역	• 70m 이하	-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일반상업지역	• 100m 이하	-
문배동 업무지구	간선도로변	• 80~130m 이하	-
	이면부	• 40, 60m 이하	-
	간선도로 교차점	• 5층(20m)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높이계획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높이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조 적용(단, 옥상광고물 설치 불가)

▌변경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일반상업지역	• 70m 이하	-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일반상업지역	• 100m 이하	-
문배동 업무지구	간선도로변	• 80~130m 이하	적용범위 변경
	이면부	• 40, 60m 이하	-
	간선도로 교차점	• 5층(2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높이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획지선의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최고높이가 적용될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 제1,2종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는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제한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132m를 초과하는 건축물(옥탑높이 포함)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선(변경)

▌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벽면한계선 (고층부)	특별계획구역	8 ~ 10m 벽면한계선	-

▌변경

구분	적용위치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벽면한계선 (고층부)	특별계획구역	6 ~ 10m 벽면한계선	-
건축지정선	서울역선형필지지구 (경부선 철도변)	경부선 철도변 건축지정선 1m	-
벽면지정선 (저층부)	남영동 ④ ~ ⑧ 특별계획구역	용산공원 변 벽면지정선 3m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지정선	건축지정선 1m	•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원 조성 고려하여 보행공간 확보
벽면지정선 (저층부)	벽면지정선 3m	• 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공원 조성을 고려하여 경계부 보행공간 확보

2) 대지안의 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동자동, 남영동 업무지구⑦, 문배업무지구①~④ 특별계획구역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침상형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①,④, (구)상명여고 북측,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으로 접근 가능하며 24시간 개방구조 • 필로티 구조 시 유효높이 지상 6m 이상 확보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후암동, 동자동④-1,⑧, 남영동 업무지구②,④~⑧, 특별계획구역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보차혼용통로		후암동, 남영동 업무지구②, 특별계획구역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기정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
	1층 바닥높이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 (경사지의 경우 보도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 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측면공지 차폐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
	조명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 · 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권장
		한강대로변/ 용산공원 연접부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권장
	1층 바닥높이	전구역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보도/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건축물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권장
		용산공원 연접부	• 원색, 고채도 색상 사용 지양, 자연색 또는 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채색, 투명재료 활용 권장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공원변으로 전선, 옥상설비 등 부속 시설의 직접적 외부 노출을 지양,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디자인, 식재 등으로 차폐 권장 • 단순 페인트 마감 지양, 재료 고유의 특징을 활용한 입면디자인 권장	권장
	측면공지 차폐	전구역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 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권장
기타	옥외광고물	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권장
	조명	전구역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이상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재료/색채 권장사항 변경	• 용산공원 인접지역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권장 추가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계획내용 변경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환경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준수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

다.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강대로의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확보를 통해 남산 조망과 광역통경축 확보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한양도성~한강~여의도를 잇는 신도심으로서 매력있는경관 형성	전구역	• 매력있고 상징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상징성 부여	-
	한강변	• 한강중심의 열린경관 형성	-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경관자원과 지역자산을 배려하는 경관관리	경부선, 한강, 용산공원 연접부	• 경의선 숲길, 한강, 용산공원 연계 광역 보행녹지축 조성	-
	용산공원 연접부	• 용산공원, 남산의 조망확보를 위한 높이관리 및 통경축 확보	-
	경부선 연접부	•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경부선 녹지축변 경관관리	-
걸을수록 매력있고,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전구역	• 한강~용산공원~남산 연계 보행네트워크 조성	-
		• 보행자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 옛길, 지역자산을 고려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전구역	• 한강대로변, 한강변 건물의 야간조명 설치 유도 - 벽면을 비추는 상향식 야간조명 •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0,195	증) 54,647.1	264,842.5	-
기정	④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3,235	-	3,235	미시행
	⑤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	7,381	-	7,381	계획결정
	⑥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3	10,240	-	10,240	미시행
변경	④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3,235	-	3,235	미시행
	⑤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	7,381	증)10,277.8	17,658.8	계획결정
기정	⑦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	16,373	-	16,373	계획수립중
	⑧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5	16,616	-	16,616	미시행
	⑨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19,178	-	19,178	
변경	⑥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16,373	감) 9,016	7,357	계획수립중
	⑦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16,616	김) 7,046	9,570	
	⑧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19,178	감) 7,194	11,984	미시행
	⑨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7	-	증) 11,843	11,843	
	⑩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8	-	증) 11,413	11,413	
기정	⑩→⑪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17,143.3	-	17,143.3	사업완료
기정	⑪→⑫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1	16,663	-	16,663	계획결정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2	3,274	-	3,274	미시행
기정	⑫→⑬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3	6,752.1	-	6,752.1	사업완료
기정	⑬→⑭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793.4	-	793.4	사업완료
해제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3,991.6	감) 3,991.6	-	해제
기정	⑭→⑮	(구)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	15,638.6	-	15,638.6	사업완료
기정	⑮→⑯	(구)상명여고 북측 특별계획구역	10,133.4	-	10,133.4	사업완료
신설	㊽	캠프킴부지 특별계획구역	-	증) 48,398.7	48,398.7	미시행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표시 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⑤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	17,658.8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주민제안에 따른 2, 3구역 통합 • 용산 광역중심 기능 강화 및 상업·업무 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한 2, 3구역 통합
	⑥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7,357	• 옛 도시조직(가로망)의 보존과 용산공원 연접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방안 필요 • 현황도로(옛 도시조직)를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 변경 (3개 → 5개) ※ 단, 4구역은 두텁바위로 확장(B=20m→30m)에 따른 도로 확폭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유지
	⑦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9,570	
	⑧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11,984	
	⑨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7	11,843	
	⑩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8	11,413	
해제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	• 장기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지역 노후화 및 안전 우려, 개별 건축을 희망하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해제
신설	㊽	캠프킴부지 특별계획구역	48,398.7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단계 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하 여 백)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2(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용산구 갈월동 85-3 일대	3,235	-	3,235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미시행
	⑤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	용산구 갈월동 87-1 일대	7,381	증)10,277.8	17,658.8		계획 결정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용도 지역·지구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추후협의) • 방화지구	• 1구역 : 변경없음 • 2구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
용적률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1구역 : 변경없음 • 2구역 : 60% 이하	-
높이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1구역 :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 2구역 :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
용도	불허 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공장, 장례식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좌동	-
	권장 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좌동	-

건축선	• 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3m, 5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1 ~ 2m	• 한강로대변 : 건축한계선 5m, 고층부(지상6층 이상) 벽면한계선 8m • 한강대로87길변 : 건축한계선 3m • 한강대로77길변 : 건축한계선 3m • 서측 보차혼용통로 경계 : 저층부(지상2층 이하) 벽면한계선 3m	-
공개공지	• 숙대입구역 인근 침상형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하철과 연계 검토) • 한강로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1구역 : 변경없음 • 2구역 : 총 2개소 (한강대로 간선부, 한강대로 77길 간선부)	-
보차혼용통로	• 특계 ②의 남~북측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6m 이상의 보차혼용통로 개설	• 2구역 : 경부선변 남~북간 연계될 수 있도록 8 ~ 10m 보차혼용통로 개설	24시간 개방
공공보행통로	-	• 2구역 : 통경축 6m 개설	
지하보행통로	-	• 2구역 : 숙대입구역 ~ 공공청사 연결 5~6m 개설	
통경축	-	• 2구역 : 용산공원 ~ 경부선 연결 20m 확보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특계 ① : 순부담율 13.0% 이상 - 내부도로 신설(B : 12m) • 특계 ② : 순부담율 15.0% 이상 • 특계 ③ : 순부담율 16.0% 이상 - 내부도로 신설(B : 12m)	• 특계 ① : 변경없음 • 특계 ② : 순부담률 29.1% 이상 - 내부도로 신설 (B : 12m)	-
기타	• Shift 등 주택사업 추진시에도 지침도상의 기반시설 및 순부담율 이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 • 용산공원 및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주변계획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협의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추진할 것 • '서고 제2016-247호(2016.8.11.)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추가	좌동	-

2)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 5, 6(변경) (효력기간 내)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⑦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	용산구 남영동 31-1 일대	16,373	-	16,373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계획 수립중
	⑧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5	용산구 남영동 83-1 일대	16,616	-	16,616		미시행
	⑨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용산구 남영동 89-1 일대	19,178	-	19,178		
변경	⑥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용산구 남영동 17-1 일대	16,373	감)9,016	7,357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계획 수립중
	⑦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용산구 남영동 31-1 일대	16,616	감)7,046	9,570		
	⑧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용산구 남영동 79 일대	19,178	감)7,194	11,984		미시행
	⑨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7	용산구 남영동 87 일대	-	증)11,843	11,843		
	⑩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8	용산구 남영동 131-1 일대	-	증)11,413	11,413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⑥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7,357	• 옛 도시조직(가로망)의 보존과 용산공원 연접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방안 필요 • 현황도로(옛 도시조직)를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 변경 (3개 → 5개) ※ 단, 4구역은 두텁바위로 확장(B = 20m → 30m)에 따른 도로 확폭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유지
	⑦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9,570	
	⑧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	11,984	
	⑨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7	11,843	
	⑩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8	11,413	

▌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용도지역·지구		• 현재 : 제2종일반주거 및 일반상업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추후협의) • 방화지구	좌동	-
건폐율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좌동	-
용적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좌동	-
높이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 용산공원변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공장, 장례식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좌동	-
	권장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좌동 • 저층부 지역특성 유지를 위한 용도 - 카페,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문화관련시설 등 보행활성화 용도 ※ 한강대로변에 연접해 있는 건축물 대상	-
건축선		• 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10m • 후암동길변 : 건축한계선 3m • 용산공원변 : 건축한계선 2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1 ~ 2m	• 한강대로변 : 건축한계선 5m • 두텁바위로변 : 건축한계선 3m • 용산공원변 : 건축한계선 2m, 벽면지정선 3m(1층부)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2m, 5m	-
공개공지		• 숙대입구역 인근 침상형 공개공지 위치지정 (지하철과 연계 검토) • 한강로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좌동 • 장래 용산공원 진입부에 열린 공간을 고려하여 ⑦구역에 공개공지 위치지정 (B = 10m)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배치 등 여건에 따라 위치조정 가능	-
공공보행통로		-	• 4-1, 4-2, 6, 7, 8구역 - 옛 가로망 보존을 위한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조성(B = 6m, L = 510m)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특별계획구역 ④ : 순부담율 18.0% 이상 - 장래 후암동길 한강로 → 용산고 방향의 편도 2차로 확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소 1m 도로 확폭(B = 20m → 21m) • 특별계획구역 ⑤ : 순부담율 18.0% 이상 - 내부도로 확폭(B = 11m →20m), 공원 신설(B = 20m) • 특별계획구역 ⑥ : 순부담율 18.0% 이상 - 대상지 남측 가각확보(10m이상), 공원 신설(B=35m)	• 각 구역 순부담율 : 18% 이상 - 4-1구역 : 두텁바위로 확폭(B = 20m → 30m) 계획에 따라 북측 내부도로 확폭 (B=10m) - 4-2, 6, 7, 8구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별도 기부채납 산정	-
기타	• Shift 등 주택사업 추진시에도 지침도상의 기반시설 및 순부담율 이상으로 도로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 • 용산공원 및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주변계획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협의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추진할 것	• 좌동 • 용산공원 및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주변계획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협의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추진할 것. • 남영동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6,7,8의 경우, 주민동의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기존 구역경계(대안 예시도)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단, 기존경계로 사업추진 시 기반시설 등 세부지침은 종전 계획지침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옛 가로조직을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 상권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마련 - 옛 가로조직 상권기능 유지를 위해 임대상인과 협의를 통해 사업지 내 우선임차권 부여 - 기존 가로조직의 보존, 상권 유지 등을 통한 가로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변 저층부(지상1~2층)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 - 옛 가로조직에 따라 연도형 상가배치 및 상가 입면길이를 고려한 상가 입면분절을 통해 현재 가로 특성 유지	-

3)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3, 4(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⑩→⑪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1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17,143.3	-	17,143.3	서울시고시 제2009-184호 (2009.5.7.)	사업 완료
기정	⑫→⑬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3	용산구 문배동 11-10 일대	6,752.1	-	6,752.1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사업 완료
기정	⑬→⑭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1	용산구 문배동 10-3 일대	793.4	-	793.4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없음)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용도지역 ·지구</td><td colspan="4">• 현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td><td>-</td></tr>
<tr><td>건폐율</td><td colspan="4">• 6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4">• 기준 용적률 : 600% 이하
• 허용 용적률 : 800% 이하
• 상한 용적률 : 1,000% 이하
※ 주거복합 건립 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따름</td><td>-</td></tr>
<tr><td rowspan="4">높이</td><td colspan="2">1구역</td><td colspan="2">• 최고높이 110m 이하
※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 시 최고높이 130m 이하로 완화 적용</td><td rowspan="4">-</td></tr>
<tr><td colspan="2">3구역</td><td colspan="2">• 순부담율 10% 이상 시 : 최고높이 80m 이하
• 순부담율 20% 이상 시 : 최고높이 110m 이하(우수디자인 인정시 130m 이하)</td></tr>
<tr><td rowspan="2">4구역</td><td>구분</td><td>순부담율 15% 이상 시</td><td>순부담율 20% 이상 시</td></tr>
<tr><td>4-1</td><td>• 최고높이 50m 이하</td><td>• 최고높이 5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 시 60m 이하)</td></tr>
</table>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장례식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권장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1구역만 적용)	-
건축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집산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1m, 2m • 1구역 대상지 북측 경계부 : 벽면한계선 6m(필로티 계획 시 높이 6m이상 확보)	-
공개공지		• 1구역 : 원효로, 용호로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 3구역 : 공원 및 백범로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		• 1구역 - 원효로 ~ 용호로를 연결하는 동서 간 공공보행통로 조성(폭 6m)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1구역	• 순부담율 : 10.0% 이상 - 중로 2-14호선 개설(B : 15m, L : 183m) - 대상지내 소공원(1,264㎡) 조성 후 기부채납 • 특별계획구역 외 소공원② 설치 및 조성하여 기부채납	-
	3구역	• 순부담율 : 10.0% 이상(순부담율 20% 이상시 높이계획 별도지침 적용) - 대상지 서측 도로확폭(B : 6m ⇒ 10m) - 소로 2-3, 3-19호선 조성 후 기부채납 • 대상지 북측 공원 조성	
	4구역	• 통합개발 시 순부담율 : 10.0% 이상 • 분리개발 시 순부담율 : 15.0% 이상(순부담율 20% 이상시 높이계획 별도지침 적용)	
기타		• 3, 4구역은 백범로 확장계획에 따라 지침도 상의 도로확장 저촉부분은 조성 후 기부채납 할 것 • 1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용산구 고시 제2009-61호(2009.12.17.) 결정사항 준용	-

(4)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⑪→⑫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1	용산구 원효로1가 44-7일대	16,663	-	16,663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계획 결정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2	용산구 원효로1가 43-8일대	3,274	-	3,274		미시행

▌계획지침(변경없음)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용도지역
·지구</td><td>• 현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td><td>-</td></tr>
<tr><td>건폐율</td><td>• 6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 기준 용적률 : 600% 이하
• 허용 용적률 : 800% 이하
• 상한 용적률 : 1,000% 이하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건축물)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별표3]에 따름
- 주거외 용도 비율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으로 적용함
-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라 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적용함(서울시고시 제2019-312호, 2019.9.19.)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배분방법
<table>
<tr><td>기준 용적률</td><td>허용 용적률</td><td colspan="2">상한용적률 배분</td></tr>
<tr><td colspan="2">구분</td><td>주거건립가능</td><td>비주거건립</td></tr>
<tr><td colspan="2" rowspan="3">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x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x$(\beta-\alpha)/\beta$</td></tr>
<tr><td colspan="2">α : 주거용 용적률, β : 허용용적률</td></tr>
<tr><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 시 도시계획조리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td></tr>
</table></td><td>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20.5.26.)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계획 기준 반영</td></tr>
<tr><td>높이</td><td>
<table>
<tr><td>구분</td><td>순부담율 15% 이상</td><td>순부담율 20% 이상</td><td>순부담율 23% 이상</td></tr>
<tr><td>2-1구역</td><td>-</td><td>-</td><td>최고높이 110m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130m)</td></tr>
<tr><td>2-2구역</td><td>최고높이 40m 이하</td><td>최고높이 4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50m)</td><td>-</td></tr>
<tr><td>통합 개발시</td><td colspan="3">• 최고높이 110m 이하(우수디자인 인정시 130m)</td></tr>
</table></td><td>-</td></tr>
</table>

용도	불허 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공장, 장례식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권장 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집산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1m, 2m	-
공개공지		• 원효로변 및 원효로80길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
보차혼용 및 공공보행 통로		• 대상지 동서 간으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폐지 • 원효로, 청파로의 보행동선확보 및 기존 가로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폭원 8m 이상)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효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통합개발시	• 순부담율 : 10.0%이상 - 대상지 내부도로 폐지 - 대상지 남측 공원확보 (B : 27m 이상) - 대상지 동측 도로 확폭 (B : 8m → 12m)	-
	특별계획구역 2-1구역	• 순부담율 : 23.0%이상 - 대상지 동측 내부도로 조성(B : 8m) - 대상지 동측 도로 확폭(B : 8m → 12m) - 대상지 남측 내부도로 확폭(B : 4m → 8m) - 건축물 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특별계획구역 2-2구역	• 순부담율 : 15.0%이상(순부담율 20% 이상시 높이계획 별도지침 적용) - 대상지 동측 도로 확폭(B : 8m → 10m)	-
공간환경 (열정도)		• 공간환경(열정도)를 공공보행통로 조성하고 현 상권기능 유지	-

(5) (구)상명여고 및 (구)상명여고 북측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⑭→⑮	(구)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일대	15,638.6	-	15,638.6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기정	⑮→⑯	(구)상명여고 북측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1가 30-3 일대	10,133.4	-	10,133.4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 계획지침((구)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지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600% 이하 • 허용 용적률 : 800% 이하 • 상한 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의 규정에 의함	-
높이		• 최고높이 135m 이하	-
용도	불허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권장 용도	• 한강로변 : 주거 및 업무시설군 중 업무시설, 복합용도, 영업 및 판매시설군 중 숙박시설 (관광호텔) • 백범로변 : 주거 및 업무시설군, 복합용도, 영업 및 판매시설 군	-
건축선		• 한강로, 백범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권장)	-
보차혼용 및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개방(기존 폐도구간 유지) - 폭 12m, 지붕이 있는 구조로 조성 시 높이 6m 이상, 중로 도로개설 완료 시 공공보행통로로 전환	-
공개공지		• 공개공지 위치지정(2개소) - 인접 어린이공원과 일체되는 형태로 조성 (담장설치 금지, 보행동선 연계) - 부분적 침상형태를 도입하여 지하철 6호선 역사와 연계 (대지 내 선큰 광장까지는 24시간 개방)	-
공공시설 계획		• 공공용지율 13%내외 - 백범로, 중로1류, 중로3류 노선 중 자기소유 토지 설치조성후 공용화 조치	-
기타		•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함(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2개 대지로 분할시행 가능) • (구)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44호(2002.4.30.) 결정사항 준용	-

▌계획지침((구)상명여고 북측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지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600% 이하 • 허용 용적률 : 700% 이하 • 상한 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의 규정에 의함	-
높이		• 최고높이 132m 이하(40층이하)	-
용도	불허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주거 대 비주거 비율 = 5 : 5	-
	권장용도	• 주거 및 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제외) • 영업 및 판매시설군(관광호텔 외의 숙박시설 제외) • 복합용도	-
건축선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	-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권장)	-
공공보행통로		• 한강로에서 구역내 통과도로를 잇는 통로(폭 6m) 설치 • 연장 14m	-
차량출입 불허구간		• 한강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공공시설 계획		• 공공용지율 : 45% 내외(공공시설은 설치 · 조성 후 공용화 조치 제공) - 도로 2개노선(중로1류 노선중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 중로3류 1개노선) - 공원 1개소(1,625.7㎡)	-
기타		• (구)상명여고 북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02호(2004.4.10.) 결정사항 준용	-

(6) 캠프킴부지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㊽	캠프킴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1가 1-1 일대	-	증)48,398.7	48,398.7	-	미시행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신설	㊽	캠프킴부지 특별계획구역	48,398.7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계획지침(신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개발사업 예정이나, 계획방향 제시
- 특별계획구역 계획방향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향 (현재 자연녹지지역)
  - 기반시설 : 한강대로변 오픈스페이스, 주민지원시설(공공청사) 설치
  - 높이 : 120m 이하(건축 위원회 심의 : 150m까지 완화)(용산공원 및 민주인권기념관 연접부 90m)
    ※ 주변과의 조화와 지역특성, 민주인권기념관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용도 : 상업·업무(오피스), 문화 등 전략 용도(한강대로변 상업·업무시설 배치), 한강대로 및 주요 보행동선에 면한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이 하 여 백)

6.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공통사항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기준용적률×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시장의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 생태도심	입체녹지조성	기준용적률×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상 인정 한도 이상 설치시
	공공보행통로설치	기준용적률×0.03	• 공공보행통로에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적용 불가

※ 계획기준 준수 시 적용 가능한 다음의 항목은 해당 인증기관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지열 등 신재생 세부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을 결정해야하는 다음의 항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서면동의를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결정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인센티브에 에너지 설치, 저영향개발,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입체녹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 적용 가능)
- UAM시설,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특색있는 건축설계,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역사문화 특성 보전,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절차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가능 (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공시설등 제공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 '권역별생활서비스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 적용) ②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임대주택 건립 시	• 관련법률 및 조례,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용적률계획 일괄재정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13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	-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출입구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 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 완화량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시	• 적용대상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 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되,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공개공지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
친환경항목 적용시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다만,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table>
<tr><th>구 분</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친환경항목
적용 시</td><td>-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
<tr><th>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h>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
<table>
<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
<tr><td>완화
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td><td>
<table>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d></tr>
<tr><th>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h>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d><td>
<table>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td></tr>
</table>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td></tr>
<tr><td>특별건축구역
도입시</td><td>•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 건축물에 대해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을 적용</td><td>-</td></tr>
<tr><td>지능형건축물
인증 시</td><td>• 적용대상 : 「건축법」 제65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인증 기준이 고시된 건축물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지능형건축물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관 :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인증등급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 colspan="2">심사기준</td><td>90%
이상 득점</td><td>85% 이상
90% 미만</td><td>80% 이상
85% 미만</td><td>75% 이상
80% 미만</td><td>70% 이상
75% 미만</td></tr>
<tr><td colspan="2">각 분야별
과락점수</td><td>85% 미만</td><td>80% 미만</td><td>75% 미만</td><td>70% 미만</td><td>65% 미만</td></tr>
<tr><td rowspan="3">심사총평</td><td>비주거</td><td colspan="5">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6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주거</td><td colspan="5">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복합건축물</td><td colspan="5">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td></tr>
</table>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table>
<tr><th>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건축기준
완화 비율</td><td>15%</td><td>12%</td><td>9%</td><td>6%</td><td>0%</td></tr>
</table>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td><td>-</td></tr>
</table>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등 설치·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규정은 허용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을 더하여 상한용적률로 산정
※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적정성 등 검토
※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세부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및 서울시 관련지침의 내용을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1) 차량동선(변경)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전구역(도면참조)	• 간선도로 및 모퉁이변에 지정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필지[차량진출입 불허구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행동선(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 옛 도시조직(옛 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피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
보차혼용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이 하 여 백)

2.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기준

1.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7조를 준용함.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내 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7.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8.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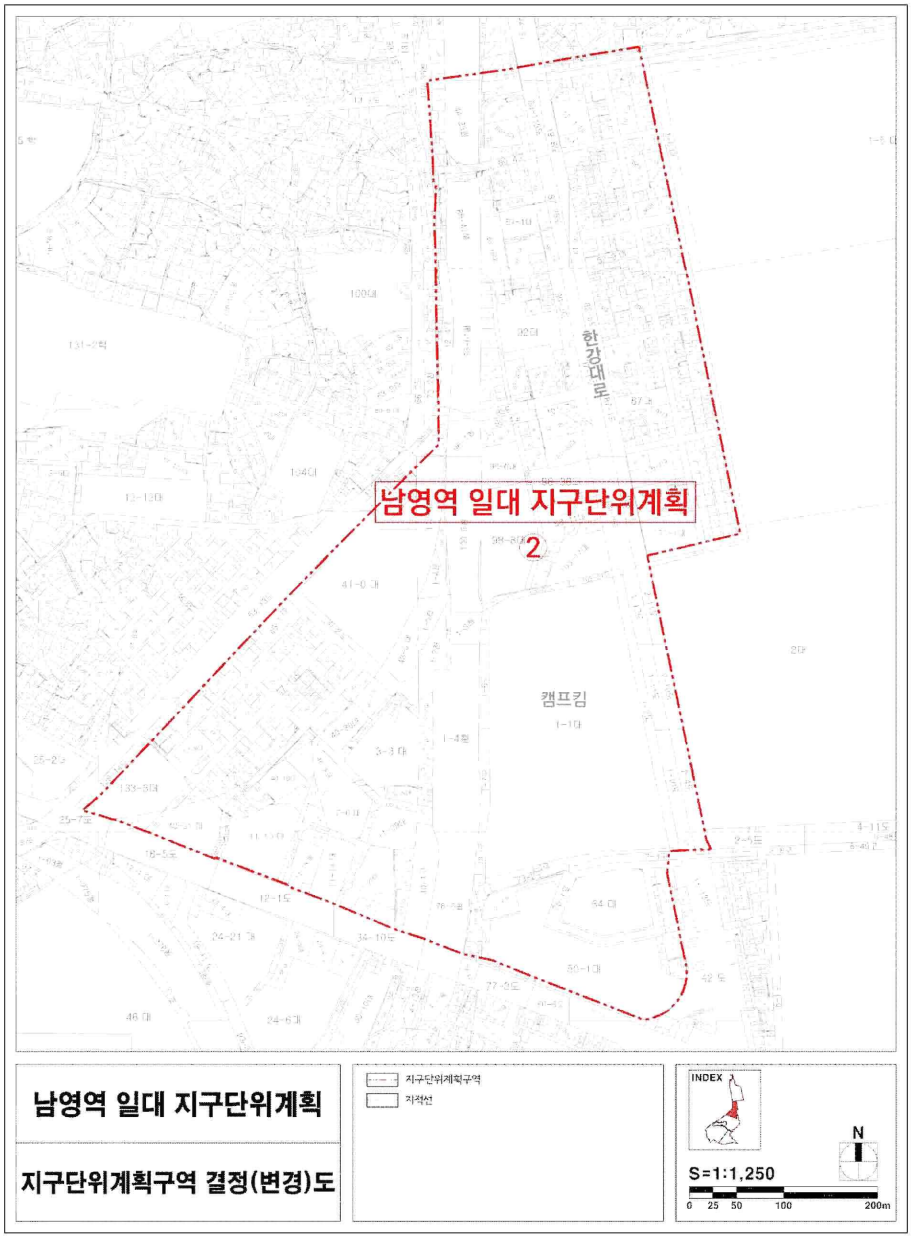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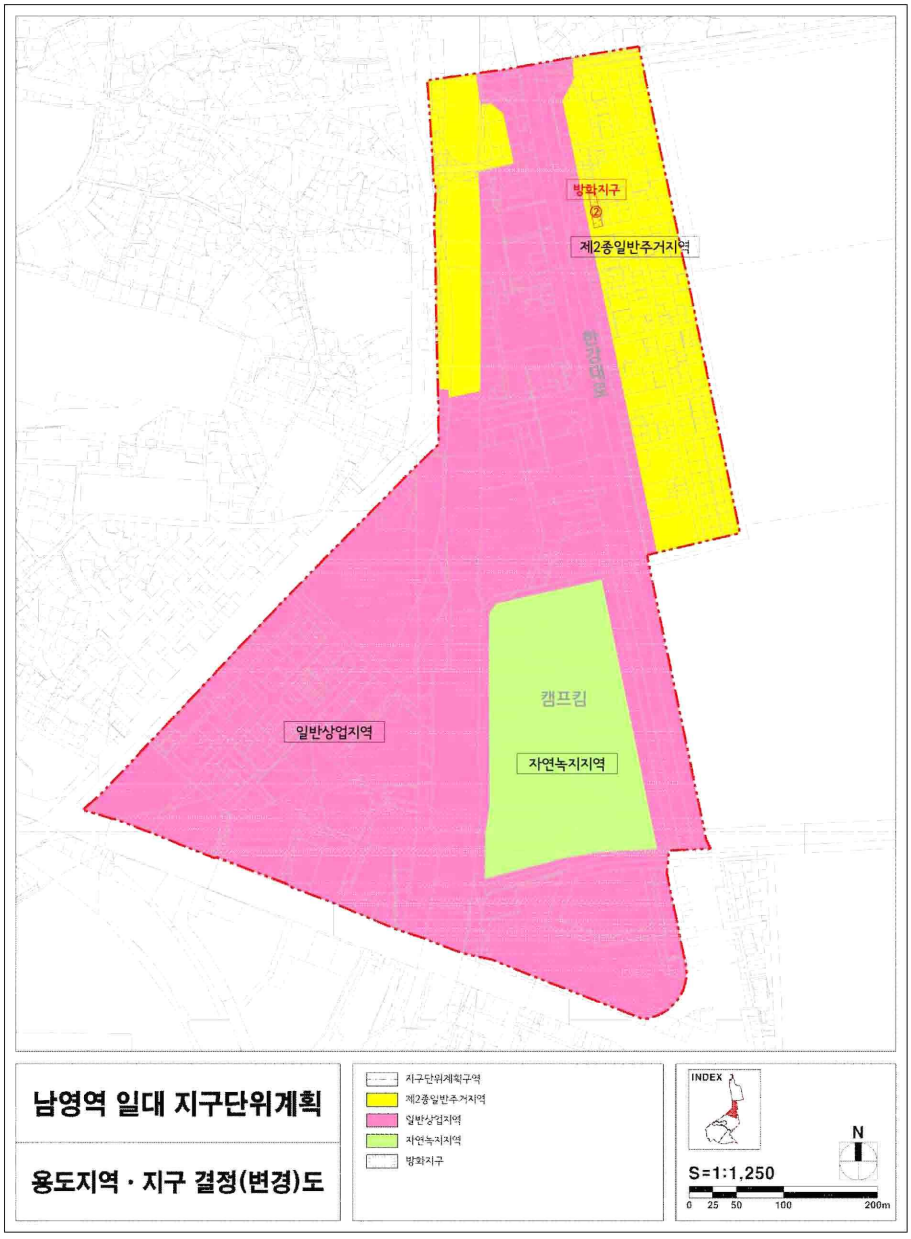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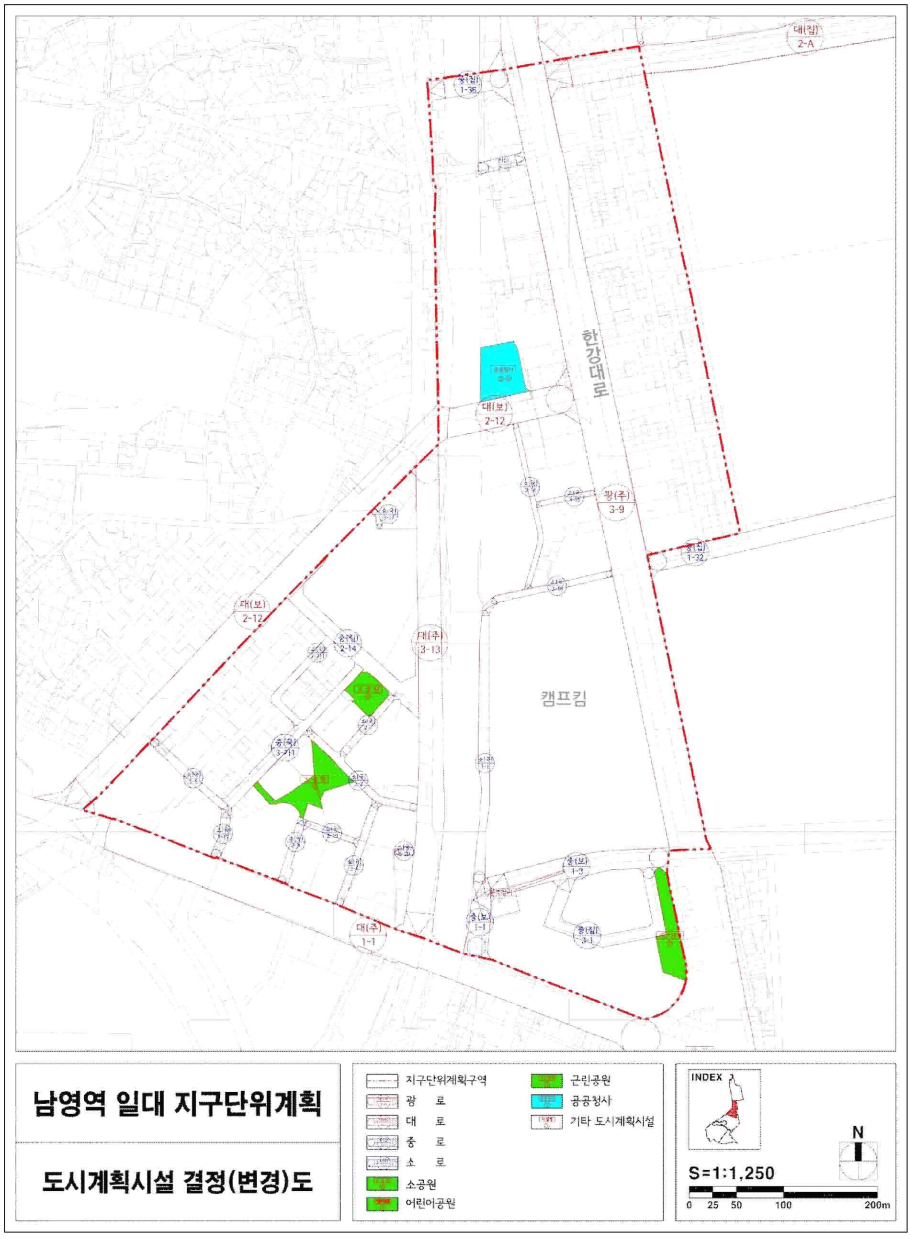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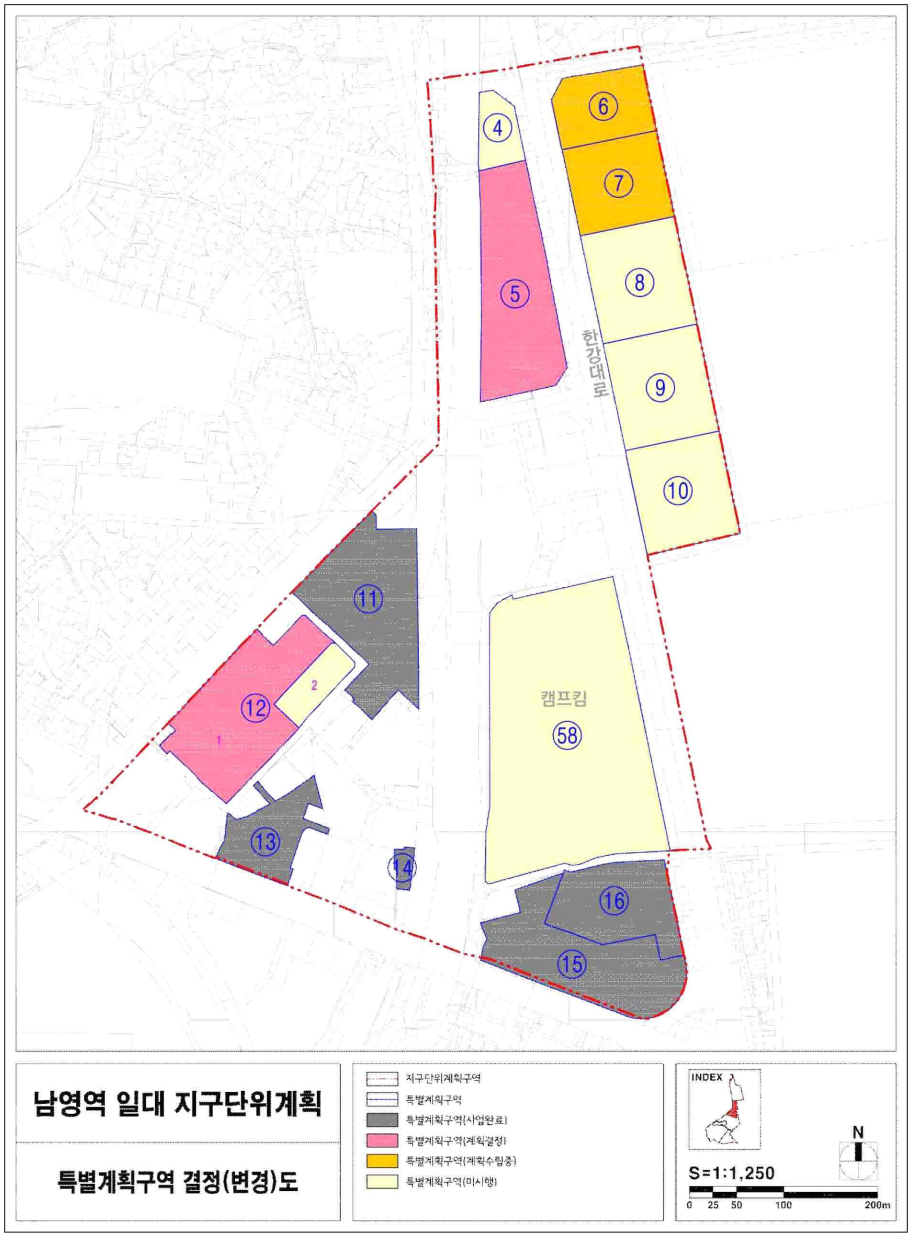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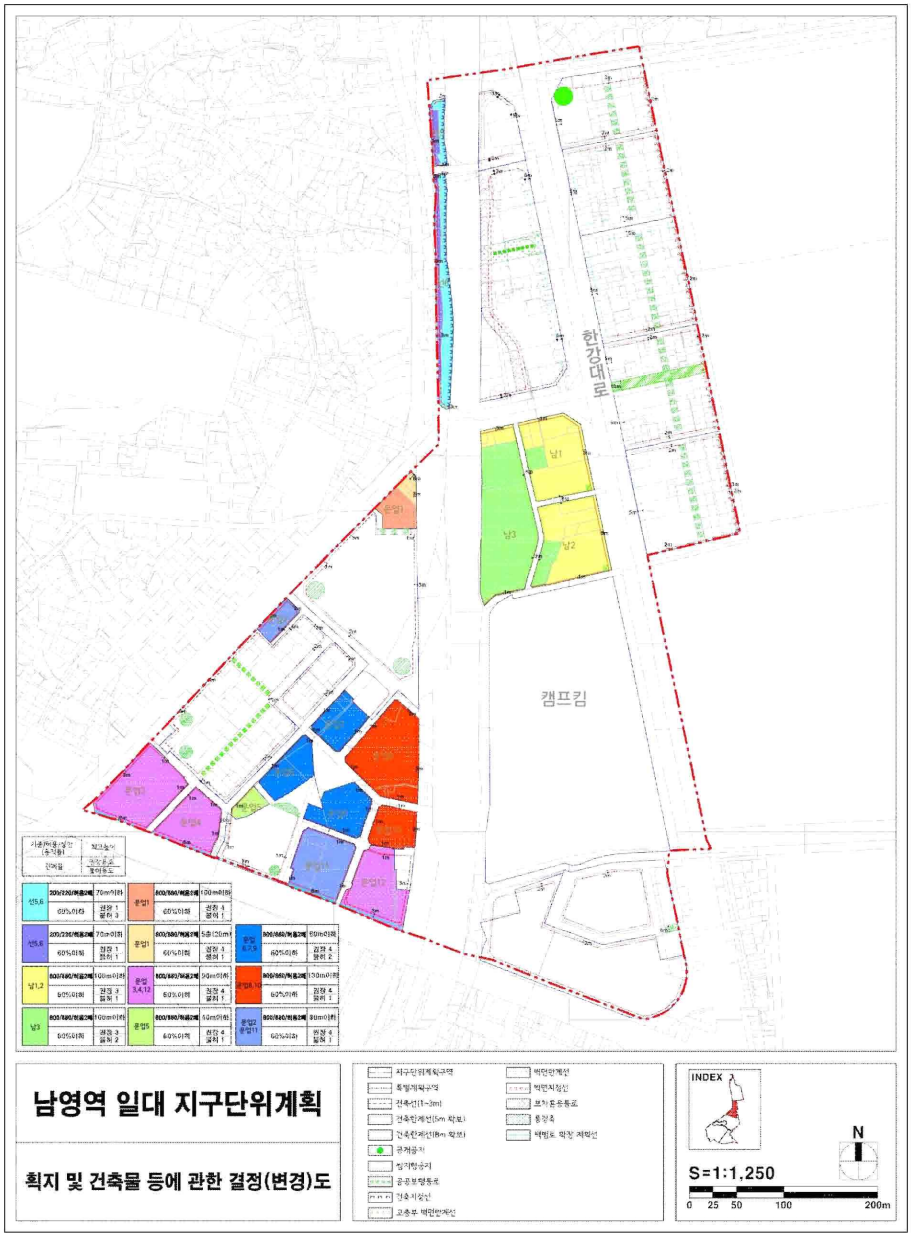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4호

도시관리계획(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3.1.)에서 국가상징거점으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용산일대에 대해 미래신도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립하고 재정비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59,349.1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변경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710,541.62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 백범로 일대	358,536.69		-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백범로 일대 ~ 새창로 일대	725,899.93		-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새창로 일대 ~ 한강로 일대	1,024,943.99		-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119,703.10		-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대로 ~ 용산동 5가 일대	424,022.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11,118.9㎡) •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9,378.9㎡)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나진 19·20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6,335.2㎡)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구역내 편입 (증 60,395.79㎡)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의 한강 연결성 강화 고려 강변북로 및 하천 일부 구역 편입 (증 17,069.72㎡) • 과도한 면적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합리성, 실현성 증진과 유연하며,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 분할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 계		3,259,349.1	감) 2,533,449.17	725,899.93	100.0	-
주거지역	소 계	1,934,426.96	감) 1,384,513.20	549,913.76	75.76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673.00	감) 11,293.92	19,379.08	2.67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474.05	감) 342,241.31	151,232.74	20.8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687.80	감) 347,817.41	159,870.39	22.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4,755.01	감) 568,105.15	156,649.86	21.58	-
	준주거지역	177,837.10	감) 115,055.41	62,781.69	8.65	-
상업지역	소계	1,324,507.94	감) 1,154,026.23	170,481.71	23.49	-
	일반상업지역	1,222,376.94	감) 1,051,895.23	170,481.71	23.49	-
	중심상업지역	102,131.00	감) 102,131.0	-	-	-
자연녹지지역		414.20	증) 5,090.25	5,504.45	0.76	-

▌용도지역 결정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11,293.92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342,241.3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감) 347,817.41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568,105.15	
	준주거지역	감) 115,055.41	
일반상업지역		감) 1,051,895.23	
중심상업지역		감) 102,131.0	
자연녹지지역		증) 5,090.25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9	40~46	주간선도로	4,000 (3,870)	서울역광장	한강제1 인도교북단	일반도로	총고 제757호 (1939.9.18.)	철도 중복결정 (면적:83㎡)
기정	대로	1	1	35~37	주간선도로	750 (669)	삼각지광장	원효로1가	일반도로	내고 제23호 (1952.3.25.)	백범로
기정	대로	3	4	25	집산도로	200	한강로2가 (광3-9)	용산동5가 2-4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중로	1	14	20~40	보조간선도로	2,800 (230)	용산시장 (입구)	마포구 대흥동	일반도로	총고 제722호 (1936.12.26.)	-
기정	중로	1	15	20	집산도로	189	용산동3가 1-6	한강로1가 167-2	일반도로	서고 제299호 (2011.10.13.)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2	7~12	집산도로	310	한강로2가 76-2	한강로2가 18-1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132	한강로1가 (광3-9)	한강로1가 199-5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도로	448	한강로2가 (중3-12)	한강로2가 (대2-73)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신용산역북측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	12	국지도로	132	문배동 30-17	문배동 30-20	-	-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4	원효로2가 2-11	신계동 1-290	일반도로	서고 제235호 (2004.7.15.)	-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258	문배동 20-1	문배동 30-3	일반도로	서고 제184호 (2003.6.30.)	-
기정	중로	3	4	10~12	국지도로	177	문배동 31-2	문배동 29-2	일반도로	서고 제184호 (2003.6.30.)	-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37	한강로2가 2-188	소로3-A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144	신계동 3-1	신계동 6-25	일반도로	서고 제235호 (2004.7.15.)	-
기정	중로	3	7	9~12	집산도로	155	한강로2가 (대3-1)	신계동 6-25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95	신계동 47	신계동 33-3	일반도로	서고 제638호 (1987.9.16.)	-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125	한강로1가 (광3-9)	한강로2가 (중1-4)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155	한강로1가 180-1	한강로1가 199-5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71	한강로1가 167-2	한강로1가 216-13	일반도로	서고 제299호 (2011.10.13.)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180	한강로1가 (백범로)	한강로1가 (중3-5)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02)	-
기정	소로	1	3	11	국지도로	268	한강로1가 199-5	한강로1가 221-8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84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107-10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36	한강로2가 82-2	한강로2가 81-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1	6	11	국지도로	266	한강로2가 (광3-9)	용산동3가 6-5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32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2가 (소3-42)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28	한강로2가 (대2-73)	한강로2가 (중1-4)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66	신계동 2-8	신계동 1-8	일반도로	서고 제235호 (2004.7.15.)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95	신계동 (중1-14)	신계동 (중3-6)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82	한강로3가 (대2-42)	한강로3가 (중3-8)	일반도로	서고 제638호 (1987.9.16.)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9	신계동 (중1-14)	신계동 39-3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00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중1-4)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62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1가 217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2	17	9	국지도로	84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44-1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2	18	9	국지도로	36	한강로2가 24-5	한강로2가 48-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2	19	9	국지도로	97	용산동3가 5-12	한강로2가 49-1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A	6	국지도로	178	한강로1가 (백범로)	한강로2가 (중3-5)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용산초교 주변
기정	소로	3	22	6	특수도로	111	문배동 24-2	문배동 24-6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184호 (2003.6.30.)	-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84	신계동 7-25	신계동 7-6	일반도로	서고 제235호 (2004.7.15.)	-
기정	소로	3	25	7	국지도로	153	원효로2가 24	원효로2가 55-1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26	7	국지도로	24	신계동 18-18	신계동 19-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45	원효로2가 53-4	원효로2가 54-1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28	7	국지도로	42	원효로2가 55-3	원효로2가 55-5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29	7	국지도로	73	원효로2가 57-1	원효로2가 57-13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74	원효로2가 57-15	원효로2가 57-1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1	5	국지도로	123	원효로2가 59-13	신계동 1-266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2	7	국지도로	169	원효로2가 34	신계동 (소2-9)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3	4	국지도로	47	신계동 26-1	신계동 26-6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4	4	국지도로	138	원효로2가 70-2	신계동 26-14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5	7	국지도로	127	원효로2가 69-2	신계동 33-3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6	5	국지도로	73	원효로2가 85-3	원효로2가 34-1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37	4	국지도로	100	신계동 (중1-14)	신계동 33-3	일반도로	서고 제881호 (1987.12.14.)	-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153	원효로2가 92-8	신계동 40-1	일반도로	서고 제881호 (1987.12.14.)	-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53	원효로3가 53-5	원효로3가 51-32	일반도로	서고 제881호 (1987.12.14.)	-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45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소1-7)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3	44	7	국지도로	84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소3-53)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45	7	국지도로	36	한강로2가 (소3-53)	한강로2가 (중2-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46	7	국지도로	70	용산동3가 6-20	한강로2가 53-7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7	7	국지도로	84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97-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48	7	국지도로	36	한강로2가 87-8	한강로2가 85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49	7	국지도로	84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98-3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50	7	국지도로	36	한강로2가 84-7	한강로2가 83-4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51	7	국지도로	84	한강로2가 (광3-9)	한강로2가 112-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52	7	국지도로	47	한강로2가 (소1-6)	한강로2가 (소3-51)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53	7	국지도로	318	한강로2가 (소1-6)	한강로2가 27-2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54	6	국지도로	77	한강로2가 (소1-6)	한강로2가 153-10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55	6	국지도로	37	한강로2가 (중2-6)	한강로2가 (소3-54)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3	63	4	국지도로	119	한강로2가 (소1-7)	한강로2가 (소2-14)	일반도로	서고 제201호 (2015.7.9.)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3	63	6	국지도로	20	한강로1가 (중로1-15)	용산동3가 6-40	일반도로	서고 제299호 (2011.10.13.)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3	64	7.2	특수도로	145.1 (31)	한강대로 40-999	한강로3가 40-969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 639호 (2025.11.20.)	-

※ 도로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2) 주차장 : 변경없음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075	-	5,075	-	-
기정	③	주차장	한강로2가 11-19일대	5,075	-	5,075	서고 제229호 (2001.7.10.)	-

▌건축물의 범위

구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③	60%이하	200%이하	40m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범위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만 적용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광장 : 변경없음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7,860	-	37,860	-	-
기정	②	광장	교통광장	한강로1가 97일대 (삼각지 광장)	37,860	-	37,860	건고 제177호 (1962.12.8.)	-

2) 녹지 : 변경없음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351.1	-	2,351.1	-	-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신계동 1-319일대	2,351.1	-	2,351.1	서고 제235호 (2004.7.15)	신계주택 재개발

3) 공원 : 변경없음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1,187.6	-	31,187.6	-	-
기정	⑧	공원	소공원	한강로1가 20-1일대	5,580.5	-	5,580.5	서고 제229호 (2001.7.10.)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⑨	공원	어린이공원	한강로1가 187-4일대	1,820.0	-	1,820.0	서고 제299호 (2011.10.13.)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⑩	공원	어린이공원	문배동 24-1일대	842.5	-	842.5	서고 제184호 (2003.6.30.)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⑪	공원	근린공원	원효로2가 1-73 ~신계동 1-276	7,944.6	-	7,944.6	서고 제401호 (2011.12.29.)	철도중복 (3,556.1㎡)
기정	⑫	공원	역사공원	신계동 1-318일대	15,000.0	-	15,000.0	건고 제138호 (1977.7.9.)	신계주택 재개발구역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842	-	842	-	-
기정	②	공공공지	원효로2가 65-25일대	842	-	842	서고 제14호 (2008.1.17.)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8,802.4	-	28,802.4	-	-
기정	②	학교	초등학교	원효로2가 54-1일대	15,483.0	-	15,483.0	교위 고5호 (1987.2.17.)	남정초교
기정	③-1	학교	초등학교	한강로2가 1일대	7,182.5	-	7,182.5	교위 고5호 (1987.2.17.)	용산초교
기정	③-2	학교	특수학교	한강로2가 1일대	6,136.9	-	6,136.9	교위 고5호 (1987.2.17.)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고
② (남정초교)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③-1 (용산초교)	35%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③-2 (서울맹학교)	45%이하	125%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사회복지시설	한강로2가 2-226일대	185.3	-	185.3	서고 제201호 (2015.7.9.)	-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②	50%이하	250%이하	80m이하	-

라.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전기공급설비	용산구 한남동 685-2 ~한강로1가 231-22	변전시설 : 8,968.6㎡ 송전시설 : B=3.5~5m L=2,330m	서고 제91호 (1996.4.15.)	154㎸ 한남변전소 지하전력구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방수설비 : 변경없음

▌ 방수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방수설비	문배동 33일대	1,311.52	-	1,311.52	용고 제31호 (1999.6.15.)	문배 빗물펌프장 지하공간적 범위결정

■ 공간적 범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공간적 범위 결정	비고
①	방수설비	• 면적 : 146㎡ • 연장 : 84m • 폭 : 1 ~ 2m • 깊이 : 해발고도 13.3m이하	•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축소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친환경 계획 :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에 인센티브 항목 적용

<table>
<tr><th colspan="2">인센티브 항목</th><th>세부항목</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탄소 중립</td><td>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td><td>•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td><td>기준용적률 × 0.05</td><td rowspan="3">허용 용적률</td></tr>
<tr><td>저영향개발</td><td>•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td><td>기준용적률 × 0.05</td></tr>
<tr><td>디자인 혁신</td><td>유니버셜 디자인 도입</td><t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td><td>기준용적률 × 0.03 ~ 0.05</td></tr>
<tr><td colspan="2">친환경 건축물</td><td>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table><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② 녹색건축 인증
<table><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table>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table>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td><td>상한 용적률</td></tr>
</table>

나. 방재안전계획 : 신설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지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방재지구,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의 7가지 계획 중 1가지에 해당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지도 (침수관련)	원효로변 일대, 한강로2가 한강대로변 일대, 한강로3가 신용산 지하차도 일대 (도면참조)	• 침수예상구역에 대해서는 저영향개발 빗물분담량 확보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하여 침수방지 저감대책 마련	-

4.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 신설

- 지역(역사)자산 조사는 문화재, 근대 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등 8가지로 구분됨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및 기타 지역자산(매장문화재)에 해당되며,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2013)의 관리지침을 따름
  - 현재에는 원형의 모습·형태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자료상 또는 "터"의 형태로 전해져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근대 문화유산	당고개순교지 (신계동 55 일대)	• 역사적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 건축물 외관 보전 및 활용 검토	-
도시조직/경관	삼각맨션 일대 (한강로2가 412 일대)	•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조직인 옛 길, 옛 물길, 도시평면 등 • 장소, 옛 조직 등 흔적남기기 검토	-
건축자산	구 하자마 경성지점 (한강로2가 112-2 일대)	• 근·현대 건축물 중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등 고려하여 건축물 외관 보전 검토 • 멸실에 따른 표석 설치 시 「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기타지역자산	은행나무 (한강로2가 55-1 일대)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름	지정번호: 서3-17~19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 따라 적용위치 확인
※ 지표조사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간선부 이면부	• 3,000㎡ 이하	적용범위 변경

※ 기존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단일 필지의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 기 공동개발 된 필지
- 획지 및 모든 공동개발 필지면적 합계가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나.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한강대로, 원효로)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대지분할기준, 현황 대지규모 등을 통해 적정 개발규모 유도 • 획지 내 필지는 개별건축 불가능 -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변경	• 소유자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과도한 지정 지양 • 획지계획 전면해제 → 공동개발 또는 자율적 개발 - 계획 실현성 제고	-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기준
공동개발(권장)	도면참조	• 공동개발(권장) 최소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참조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 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1. 부정형 필지가 형성되는 경우 2.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 등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개발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필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 대지 형태의 정형화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지 분할을 권장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 - 필지 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 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제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기정

▌문배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문배1	4,210.6	원효로2가	1-37대	138.3	190.4	지정	-
			1-155대	52.1			-
		원효로1가	25-10도	1.9	195.0	지정	-
		원효로2가	1-35대	168.7			-
		신계동	1-67대	24.4			-
			1-66대	208.6	309.8	지정	-
		원효로1가	133-51대	20.7			-
		원효로2가	1-34대	55.9			-
		문배동	16-6대	24.6			-
			16-1대	9.0	273.8	지정	-
			16-4대	48.0			-
			16-7대	6.7			-
		신계동	1-252대	114.0			-
			1-259대	96.1			-
		원효로 2가	1-36대	243.2	-	-	-
			1-38대	179.9	-	-	-
		신계동	1-172대	499.0	-	-	-
			1-261대	3.0	-	-	-
			1-280대	203.7	-	-	-
		문배동	17-1대	1,081.2	-	-	-
			19-2대	1,031.6	-	-	-
문배2	1,258.4	문배동	20-3대	467.7	-	-	-
			24-4대	790.7	-	-	-
문배3	1,808.9	문배동	24-5대	931.2	-	-	-
			24-8대	877.7	-	-	-
문배4	8,327.8	문배동	30-10대	8,327.8	-	-	-

▌신계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	1,187.0	원효로 2가	2-3대	122.6	270.8	획지		-
			2-35대	0.7				-
			3-15대	147.5				-
			2-20대	86.3	201.3	지정		-
			3-32대	58.8				-
			3-33대	56.2				-
			2-10대	72.8	232.2	권장		-
			2-12대	59.2				-
			2-19대	100.2				-
			2-15대	6.0	162.3	지정		-
			3-2대	156.3				-
			2-13대	197.7	197.7	-		-
			2-18대	122.7	-	-		-
신2	6,621.4	원효로 2가	3-9대	111.5	754.6	지정	권장	-
			3-16대	21.7				-
			3-30대	76.9				-
			3-12대	544.5		-		-
			3-20대	53.3	454.2	지정		-
			3-22대	352.2				-
			15-2대	48.7				-
			16-2대	176.7	259.1	지정		-
			16-4대	82.4				-
			16-5대	43.9	378.9	지정	권장	-
			16-9대	60.7				-
			16-10대	39.5				-
			16-11대	4.4				-
			16-3대	230.4		-		-
			23-3대	70.0	569.2	획지		-
			23-4대	31.3				-
			23-5대	35.5				-
			23-16대	39.7				-
			23-25대	4.6				-
			23-30대	36.4				-
			23-31대	277.7				-
			23-32대	74.0				-
			23-7대	115.7	307.4	지정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	6,621.4	원효로 2가	23-8대	191.7			-
			23-17대	121.5	316.5	지정	-
			23-18대	195.0			-
			3-4대	290.0	-	-	-
			3-5대	110.7	-	-	-
			3-6대	234.6	-	-	-
			3-8대	135.5	-	-	-
			3-19대	201.2	-	-	-
			3-28대	110.7	-	-	-
			16-6대	184.1	-	-	-
			16-7대	206.0	-	-	-
			16-8대	46.8	-	-	-
			23-6대	191.7	-	-	-
			23-9대	162.0	-	-	-
			23-10대	129.6	-	-	-
			23-11대	191.7	-	-	-
			23-12대	146.3	-	-	-
			23-14도	299.1	-	-	-
			23-15대	101.8	-	-	-
			23-20대	95.9	-	-	-
			23-21대	208.2	-	-	-
			23-23대	92.6	-	-	-
			23-24대	79.3	-	-	-
			23-27대	95.9	-	-	-
			23-28대	129.6	-	-	-
			23-29대	138.2	-	-	-
신3	883.1	원효로 2가	53-2대	162.4	-	-	-
			53-4대	134.2	-	-	-
			53-5대	412.6	-	-	-
			53-6대	173.9	-	-	-
신4	2,266.7	원효로 2가	55-1대	2,266.7	-	-	-
신5	4,729.1	원효로 2가	24대	1.5	268.5	획지	-
			27-2대	34.2			-
			27-3대	26.4			-
			27-5대	3.3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5	4,729.1	원효로 2가	27-9대	28.4	268.5	획지	-
			27-10대	94.0			-
			27-11도	7.4			-
			27-13대	41.7			-
			27-15대	1.3			-
			27-21대	0.9			-
			28-3대	4.3			-
			28-4대	25.1			-
			36대	452.9	720.9	권장	-
			51-1대	102.8			-
			51-3대	165.2			-
			52-9대	48.3	125.0	지정	-
			52-10대	76.7			-
			52-18대	79.0	149.1	지정	-
			52-19대	70.1			-
			52-3대	244.3	300.2	지정	-
			52-28대	55.9			-
			27-4대	105.8	-	-	-
			27-14대	56.8	-	-	-
			37-1대	297.8	-	-	-
			37-3대	344.6	-	-	-
			39대	238.0	-	-	-
			50대	348.1	-	-	-
			51-2대	5.0	-	-	-
			52-1대	102.8	-	-	-
			52-2대	451.6	-	-	-
			52-4대	131.6	-	-	-
			52-5대	137.2	-	-	-
			52-6대	144.9	-	-	-
			52-8대	78.0	-	-	-
			52-13도	173.2	-	-	-
			52-14대	105.1	-	-	-
			52-16대	214.9	-	-	-
			52-23대	133.9	-	-	-
			52-27대	30.7	-	-	-
			52-31대	65.4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6	1,697.4	원효로2가	57-1대	88.6	-	-	-
신6	1,697.4	원효로 2가	57-2대	96.2	-	-	-
			57-3대	91.9	-	-	-
			57-4대	105.1	-	-	-
			57-5대	100.5	-	-	-
			57-6대	165.3	-	-	-
			57-7대	165.8	-	-	-
			57-8대	43.0	-	-	-
			57-9대	43.0	-	-	-
			57-10대	98.5	-	-	-
			57-11대	163.0	-	-	-
			57-12대	163.0	-	-	-
			57-13대	165.3	-	-	-
			57-14대	208.2	-	-	-
신7	1,804.9	원효로 2가	58-1대	148.4	204.9	지정	-
			58-10대	56.5			-
			58-5대	62.5	197.7	지정	-
			58-6대	79.3			-
			58-7대	55.9			-
			58-2대	110.7	-	-	-
			58-3대	110.4	-	-	-
			58-4대	9.9	-	-	-
			58-11대	137.5	-	-	-
			59-2대	138.9	-	-	-
			59-5대	93.9	-	-	-
			59-6대	151.7	-	-	-
			59-7대	100.2	-	-	-
			59-8대	108.1	-	-	-
			59-9대	100.5	-	-	-
			59-11대	68.1	-	-	-
			59-13대	165.6	-	-	-
			59-14대	90.0	-	-	-
			59-16대	10.2	-	-	-
			59-17대	6.6	-	-	-
신8	5,007.8	원효로 2가	35-2대	66.4	259.2	지정	-
			40대	192.8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8	5,007.8	원효로 2가	43대	63.4	296.2	지정	권장	-
			43-4대	123.0				-
			44-6대	1.0				-
			43-8대	108.8		-		-
			44-2대	108.6	454.4	지정		-
			44-7대	345.8				-
			49대	59.5	100.2	지정		-
			45-3대	7.0				-
			49-1도	33.7				-
			61-12대	427.8	427.8	지정		-
			61-3대	104.4	160.9	지정		-
			61-4대	56.5				-
			61-9대	163.0	182.1	지정		-
			61-34대	19.1				-
			61-1대	169.6	-	-		-
			61-2대	111.7	-	-		-
			61-5대	96.5	-	-		-
			61-6대	202.6	-	-		-
			61-7대	282.7	-	-		-
			61-8대	130.2	-	-		-
			61-11대	207.9	-	-		-
			61-14대	275.7	-	-		-
			61-15대	332.2	-	-		-
			61-19대	324.6	-	-		-
			61-21대	191.4	-	-		-
			61-22대	181.2	-	-		-
			61-25대	123.3	-	-		-
			61-32대	125.6	-	-		-
			47대	178.5	-	-		-
			48대	193.3	-	-		-
신9	3,263.5	원효로 2가	65-18대	188.4	242.6	지정		-
			66-3대	24.8				-
			66-5대	29.4				-
			65-3대	64.1	-	-		-
			65-6대	108.4	-	-		-
			65-7대	757.1	-	-		-
			65-8대	62.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9	3,263.5	원효로 2가	65-10대	423.1	-	-	-
			65-16대	57.2	-	-	-
			65-17대	179.5	-	-	-
			65-19도	56.2	-	-	-
			65-20대	98.2	-	-	-
			66-4대	99.5	-	-	-
			70-2대	490.7	-	-	-
			70-3대	624.1	-	-	-
신10	1,832.2	원효로 2가	68-1대	97.8	223.1	획지	-
			69-2대	74.4			-
			69-5대	50.9			-
			67-5대	78.7	133.6	지정	-
			67-9대	54.9			-
			67-1대	61.2	263.1	지정	-
			67-12대	2.3			-
			67-4대	77.0			-
			67-6대	122.6			-
			67-3대	191.7	-	-	-
			67-10대	110.1	-	-	-
			67-2대	2.3	-	-	-
			68-3대	544.8	-	-	-
			69-3대	261.3	-	-	-
		신계동	34-1대	102.2	-	-	-
신11	795.5	원효로 2가	85-3대	200.3	348.8	획지	-
			85-13대	66.8			-
			85-14대	2.6			-
			85-17대	46.2			-
			86-5대	5.1			-
			86-27대	27.8			-
			86-3대	168.6	353.5	지정	-
			86-11대	23.1			-
			86-12도	1.2			-
			86-13대	7.3			-
			86-28대	99.2			-
			86-30대	22.6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1	795.5	원효로 2가	86-31대	31.5			-
			86-8대	91.9	-	-	-
			86-9대	1.3	-	-	-
신12	7,635.8	원효로 2가	93-11대	135.5	208.2	지정	-
			93-14대	72.7			-
			94-6대	116.4	297.6	지정	-
			94-7대	148.8			-
			94-10대	32.4			-
			94-4차	83.0	164.4	권장	-
			94-5대	81.4			-
			95-5대	179.0	286.4	지정	-
			95-7대	107.4			-
			96-1대	171.2	253.2	지정	-
			96-5대	67.1			-
			96-19대	3.8			-
			96-21대	11.1			-
			92-2대	760.3	-	-	-
			92-3대	429.8	-	-	-
			92-5대	338.3	-	-	-
			92-8대	332.2	-	-	-
			92-9대	92.6	-	-	-
			92-10대	181.5	-	-	-
			92-11대	146.4	-	-	-
			93-2대	76.0	-	-	-
			93-3대	63.8	-	-	-
			93-5대	122.3	-	-	-
			93-6대	61.8	-	-	-
			93-7대	52.9	-	-	-
			93-8도	123.3	-	-	-
			93-9대	154.4	-	-	-
			93-13대	25.6	-	-	-
			93-15대	10.8	-	-	-
			94-2대	522.6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2	7,635.8	원효로 2가	94-3대	456.8	-	-		-
			94-8대	52.9	-	-		-
			95-1대	312.7	-	-		-
			95-3대	706.5	-	-		-
			95-4대	131.4	-	-		-
			95-10대	200.1	-	-		-
			96-2대	92.9	-	-		-
			96-4대	21.8	-	-		-
			96-6대	168.6	-	-		-
			96-7대	118.0	-	-		-
			96-8대	254.2	-	-		-
			96-9대	208.3	-	-		-
			96-10대	78.3	-	-		-
			96-11대	119.3	-	-		-
			96-13대	9.6	-	-		-
신13	5,570.8	원효로 3가	48-2대	2.3	-	-		-
			49-5대	1,008.3	-	-		-
			49-6대	843.0	-	-		-
			49-7대	644.5	-	-		-
			49-8대	400.6	-	-		-
			49-10대	439.7	-	-		-
			51-7대	836.4	-	-		-
			51-9대	677.7	-	-		-
			52-5대	718.3	-	-		-
신14	5,120.3	신계동	7-12대	72.7	254.5	권장		-
			7-13대	181.8				-
			7-37대	79.3	373.3	지정	권장	-
			7-38대	36.0				-
			7-39대	44.3				-
			7-14대	198.4		-		-
			7-44도	15.3		-		-
			8-4대	46.3	109.1	지정		-
			8-16대	62.8				-
			8-5대	15.2	254.2	지정		-
			8-8대	239.0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4	5,120.3	신계동	8-9도	16.2	183.0	지정	-
			8-12대	73.0			-
			8-18대	66.4			-
			52도	7.8			-
			54대	19.6			-
			8-14대	6.6	335.0	지정	-
			8-15대	328.4			-
			9-6대	32.4	352.1	지정	-
			9-12대	2.3			-
			11-3대	262.8			-
			14-1대	48.0			-
			14-3대	6.6			-
			9-15대	11.6	132.9	지정	-
			9-16대	11.2			-
			11-12대	57.2			-
			11-13대	52.9			-
			11-1대	80.6	222.8	지정	-
			11-4대	69.4			-
			11-5대	72.8			-
			11-8대	89.2	190.1	지정	-
			11-11대	100.9			-
			15대	76.0	88.6	지정	-
			16-7대	12.6			-
			7-2대	277.0	-	-	-
			7-3대	529.0	-	-	-
			8-2대	176.2	-	-	-
			8-3대	417.9	-	-	-
			8-6대	229.1	-	-	-
			9-2도	51.6	-	-	-
			9-3도	51.6	-	-	-
			9-4도	29.1	-	-	-
			9-8도	62.8	-	-	-
			11-6도	23.1	-	-	-
			11-7대	217.8	-	-	-
			11-10대	155.3	-	-	-
			16-1도	84.4	-	-	-
			16-2구	66.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4	5,120.3	신계동	16-3도	10.5	-	-	-
			17대	126.9	-	-	-
			52도	25.2	-	-	-
			53대	90.4	-	-	-
신15	1,759.4	신계동	12-5대	10.2	128.8	지정	-
			12-20대	43.6			-
			12-23대	26.4			-
			12-25대	36.0			-
			12-31대	9.6			-
			12-32대	3.0			-
			12-6대	97.5	227.4	지정	-
			12-18대	63.5			-
			12-26대	61.8			-
			12-27대	4.6			-
			12-2대	147.2	-	-	-
			12-7창	213.3	-	-	-
			12-10대	213.0	-	-	-
			12-16대	40.7	-	-	-
			12-17대	247.9	-	-	-
			12-21대	353.7	-	-	-
			12-22대	184.1	-	-	-
			12-28대	3.3	-	-	-
신16	1,934.3	신계동	6-4대	81.5	212.7	지정	-
			6-18대	2.0			-
			6-21대	129.2			-
			6-7대	51.9	646.6	지정	-
			6-31대	198.3			-
			6-32대	396.4			-
			6-22대	222.2	257.2	지정	-
		한강로2가	12-3대	35.0			-
		신계동	6-1대	598.7	-	-	-
			6-3대	56.8	-	-	-
			6-6대	16.5	-	-	-
			6-13대	6.0	-	-	-
			12-1대	39.0	-	-	-
			12-12대	34.7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6	1,934.3	신계동	12-13대	56.9	-	-	-
			12-14대	9.2	-	-	-
신17	2,369.2	한강로2가	11-14천	26.9	169.8	지정	-
			11-16대	20.0			-
		신계동	4-7대	61.5			-
			4-11대	8.1			-
			5-16대	22.6			-
			5-24대	30.7			-
			4-2제	15.6	155.5	지정	-
			5-6대	25.3			-
			5-17대	114.6			-
			4-8대	1.3	140.1	지정	-
			5-12대	138.8			-
			5-13대	123.9	145.2	지정	-
			5-18대	21.3			-
			5-15대	18.2	123.9	지정	-
			5-26대	42.3			-
			5-29대	22.5			-
			5-30대	30.3			-
			5-36도	0.2			-
			5-37대	2.0			-
			5-38대	8.4			-
			5-1대	809.9	-	-	-
			5-7대	157.8	-	-	-
			5-9대	170.2	-	-	-
			5-10대	132.2	-	-	-
			5-11대	138.8	-	-	-
			5-21대	85.3	-	-	-
			5-22대	92.9	-	-	-
			5-32제	40.3	-	-	-
			5-45대	7.3	-	-	-
신18	3,739.9	한강로2가	2-185대	2,905.9	-	-	-
			2-186대	74.0	-	-	-
			2-187대	214.9	-	-	-
			2-193철	12.6	-	-	-
			2-363대	186.9	-	-	-
			2-364대	345.6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9	2,259.8	신계동	18-4대	95.9	117.3	지정	-
			19-18대	21.4			-
			18-6대	27.1	91.5	지정	-
			18-8대	28.4			-
			18-9대	36.0			-
			18-11대	135.9	144.6	지정	-
			19-19대	8.7			-
			1-271대	27.4	234.6	지정	-
			18-14대	37.0			-
			18-15대	2.6			-
			19-3대	33.0			-
			19-9대	33.0			-
			19-13대	101.6			-
			19-2대	85.6	150.6	지정	-
			19-4대	65.0			-
			19-1대	42.3	145.2	지정	-
			19-12대	36.4			-
			19-14대	66.5			-
			1-9대	292.9	-	-	-
			1-15대	208.3	-	-	-
			1-216대	400.0	-	-	-
			1-218대	195.0	-	-	-
			1-325도	11.1	-	-	-
			18-1도	3.0	-	-	-
			18-7대	0.3	-	-	-
			18-10도	19.8	-	-	-
			18-12대	0.3	-	-	-
			18-13대	0.3	-	-	-
			18-17도	6.3	-	-	-
			18-18대	93.8	-	-	-
			19-5대	105.6	-	-	-
			19-16도	18.5	-	-	-
			19-17도	20.8	-	-	-
신20	749.4	신계동	22-6대	228.1	263.5	지정	-
			22-10대	35.4			-
			22-1대	112.4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0	749.4	신계동	22-3대	145.4	-	-	-
			22-4대	67.1	-	-	-
			22-8대	99.2	-	-	-
			22-9대	61.8	-	-	-
신21	1,791.8	신계동	25-2대	59.5	178.5	지정	-
			25-9대	119.0			-
			25-4대	191.7	328.3	지정	-
			25-5대	37.4			-
			25-6대	92.6			-
			25-16대	5.0			-
			25-20대	1.6			-
			25-8대	206.3	247.0	지정	-
			25-17대	40.7			-
			25-1대	576.2	-	-	-
			25-3대	182.8	-	-	-
			25-10대	175.2	-	-	-
			25-12대	92.6	-	-	-
			25-14대	11.2	-	-	-
신22	1,926.8	신계동	23-13대	49.9	201.7	지정	-
			24-2대	39.7			-
			24-12대	112.1			-
			23-14도	7.9	134.6	지정	-
			23-15대	9.6			-
			33-3천	117.1			-
			24-1대	106.1	179.5	권장	-
			24-13대	73.4			-
			24-4대	44.0	170.2	지정	-
			24-16대	59.8			-
			24-17대	66.4			-
			24-6대	120.3	207.9	권장	-
			24-14대	87.6			-
			24-10대	69.8	141.6	지정	-
			24-11대	35.4			-
			24-15대	36.4			-
			24-5대	153.7	-	-	-
			24-7대	223.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2	1,926.8	신계동	24-8대	230.4	-	-	-
			24-9대	283.4	-	-	-
신23	1,107.4	신계동	26-5대	47.3	155.4	지정	-
			26-6대	64.1			-
			26-12대	44.0			-
			26-7대	70.7	168.9	지정	-
			26-13대	0.7			-
			26-14대	97.5			-
			26-1대	134.5	-	-	-
			26-2대	144.8	-	-	-
			26-3대	171.6	-	-	-
			26-10대	218.8	-	-	-
			26-11대	113.4	-	-	-
신24	1,113.8	신계동	27-1대	85.9	149.0	지정	-
			27-18대	63.1			-
			27-4대	40.0	103.8	지정	-
			27-5대	3.3			-
			27-13대	54.2			-
			27-14대	6.3			-
			27-7대	66.1	162.9	지정	-
			27-11대	96.8			-
			27-8대	66.1	184.1	지정	-
			27-9대	118.0			-
			27-16대	88.3	161.3	권장	-
			27-17대	73.0			-
			27-6대	92.6	-	-	-
			27-10대	260.1	-	-	-
신25	1,025.4	신계동	32-1대	34.7	65.1	지정	-
			32-17대	30.4			-
			32-3대	127.2	-	-	-
			32-4대	156.7	-	-	-
			32-5대	45.3	-	-	-
			32-7대	251.2	-	-	-
			32-15대	62.5	-	-	-
			33대	317.4	-	-	-
신26	1,417.2	신계동	30-11대	69.1	243.6	지정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6	1,417.2	신계동	30-13대	174.5			-
			30-1대	154.4	-	-	-
			30-2대	122.4	-	-	-
			30-3대	110.1	-	-	-
			30-4대	144.5	-	-	-
			30-5대	202.6	-	-	-
			30-6대	202.6	-	-	-
			30-10대	237.0	-	-	-
신27	1,532.2	신계동	27-21대	50.0	99.8	지정	-
			27-22대	49.8			-
			27-24대	46.6	121.3	권장	-
			27-25대	74.7			-
			28-23대	39.7	133.5	지정	-
			28-24대	64.6			-
			29-17대	4.3			-
			29-18대	4.3			-
			29-21대	4.6			-
			29-22대	5.6			-
			29-31대	10.4			-
			29-4대	46.3	207.0	지정	-
			29-9대	100.5			-
			29-13대	60.2			-
			29-25대	25.8	66.8	지정	-
			29-26대	22.5			-
			29-28대	7.5			-
			29-29대	9.3			-
			29-30대	1.7			-
			27-20대	119.0	-	-	-
			27-23대	80.3	-	-	-
			29-1대	490.0	-	-	-
			29-5대	112.7	-	-	-
			29-10대	52.6	-	-	-
			29-11대	49.2	-	-	-
신28	382.3	신계동	35-6대	50.4	145.8	지정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8	382.3	신계동	35-7대	16.0				-
			36-1대	79.4				-
			36-7대	59.4	-	-		-
			36-10대	74.9	-	-		-
			36-11대	102.2	-	-		-
신29	3,577.9	신계동	40-2대	63.7	842.7	지정	권장	-
			40-5대	673.2				-
			40-6대	105.8		-		-
			40-10대	48.6	111.4	지정		-
			40-11대	62.8				-
			41-3대	30.7	96.4	지정		-
			41-4대	32.7				-
			41-5대	33.0				-
			41-7대	51.6	100.8	지정		-
			41-13대	49.2				-
			40-1대	2,130.5	-	-		-
			40-9대	6.9	-	-		-
			41-6대	39.3	-	-		-
			40-12도	36.4	-	-		-
			41-8도	53.6	-	-		-
			41-10대	1.3	-	-		-
			41-11대	49.2	-	-		-
			41-15대	109.4	-	-		-
신30	2,304.1	신계동	35-18대	216.8	295.9	지정		-
			36-14대	79.1				-
			39-12대	6.6	172.8	지정		-
			39-14대	34.4				-
			39-15대	89.2				-
			39-23대	42.6				-
			39-16대	73.7	136.2	권장		-
			39-24대	62.5				-
			39-17대	87.9	194.0	지정		-
			39-20대	73.7				-
			39-30대	32.4				-
			39-21대	63.5	196.5	지정		-
			39-22대	77.0				-
			39-31대	17.7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30	2,304.1	신계동	39-32대	38.3			-
			35-5대	7.7	-	-	-
			35-8대	3.0	-	-	-
			35-10도	5.0	-	-	-
			35-11대	548.2	-	-	-
			36-19대	28.6	-	-	-
			38-7대	156.8	-	-	-
			39-8대	133.7	-	-	-
			39-9대	131.3	-	-	-
			39-11대	105.8	-	-	-
			39-18대	138.2	-	-	-
			39-19대	26.8	-	-	-
			39-28대	23.6	-	-	-

▌전자상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1	4,787.0 (3,577.1)	한강로2가	15-37대	144.3	3,577.1	-	-
		한강로2가	413대	3,432.8		-	-
전3	2,433.4 (939.9)	한강로3가	82대	939.9	-	-	-
전9	15,032.8 (178.0)	원효로3가	52-2대	178.0	-	-	-
전10	3,892.1	원효로3가	53-5대	2,001.1	-	-	-
			53-14내	3.7	-	-	-
			56-4대	1,883.9	-	-	-
			57-2도	3.4	-	-	-

※ 면적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해당 가구면적임

▌한강로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	2,055.2	한강로2가	2-199대	34.0	148.1	지정	-
			2-200대	35.4			-
		한강로1가	250-2대	38.0			-
			250-4대	40.7			-
			250-1대	62.5	185.8	지정	-
			250-2대	38.0			-
			250-3대	38.7			-
			250-5대	46.6			-
			251-2대	29.8	152.4	지정	-
			252-2대	23.5			-
			252-3대	50.9			-
			252-4대	44.6			-
			252-5대	3.6			-
			254-1대	86.9	181.4	지정	-
			254-4대	94.5			-
			254-3대	16.8	165.6	지정	-
			255대	148.8			-
			257-5대	53.9	167.5	지정	-
			257-6대	52.2			-
			257-7대	35.0			-
			257-8대	26.4			-
			257-11대	41.2	44.1	지정	-
			257-13도	1.0			-
			97도	1.9			-
			257-12대	32.1	54.0	지정	-
			257-18대	4.3			-
			257-25대	17.6			-
			251-1대	56.2	-	-	-
			252-1대	29.8	-	-	-
			253대	314.0	-	-	-
			256대	165.3	-	-	-
			257-3대	52.9	-	-	-
			257-9대	253.2	-	-	-
			258-3철	71.7	-	-	-
		한강로2가	2-198철	13.2	-	-	-
한2	1,057.2	한강로1가	273-2대	122.1	333.3	지정	-
			274-1대	125.6			-
			274-2대	85.6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	1,057.2	한강로1가	276-3대	110.1	252.5	지정	-
			276-4대	33.0			-
			276-5대	79.3			-
			276-8대	30.1			-
			276-9대	205.6	273.4	지정	-
			277-3대	67.8			-
			275대	198.0	-	-	-
한3	1,860.0	한강로1가	286대	181.8	373.2	지정	-
			287대	127.6			-
			288대	63.8			-
			289-1대	115.0	354.7	지정	-
			289-2대	45.0			-
			289-3대	83.0			-
			289-4대	51.2			-
			289-5대	60.5			-
			290-1대	72.1	165.3	지정	-
			290-2대	93.2			-
			290-3대	86.6	206.6	지정	-
			290-4대	120.0			-
			292-1대	196.0	380.1	권장	-
			292-3대	184.1			-
			291-1대	196.0	-	-	-
			291-3대	184.1	-	-	-
한4	14,972.8	한강로2가	2-1대	133.9	305.8	지정	-
			2-2대	84.3			-
			2-57대	87.6			-
			2-244철	2.6	656.8	지정	-
			2-245철	2.6			-
			2-307철	5.8			-
			2-308철	156.8			-
			2-311철	161.9			-
			2-420철	198.3			-
			2-421철	128.8			-
		한강로2가	2-351대	31.7	186.9	지정	-
			2-352대	46.3			-
			2-389철	108.9			-
		한강로1가	301-2대	38.2	203.2	획지	-
			302-2대	37.4			-
			303-2대	127.6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4	14,972.8	한강로1가	293-4도	297.6	-	-	-
			299-1도	13.0	-	-	-
			300-2도	28.0	-	-	-
			304-4대	36.8	-	-	-
			305-1대	107.2	-	-	-
			305-6대	178.8	-	-	-
			305-7대	164.1	-	-	-
			305-8대	198.3	-	-	-
			305-9대	177.2	-	-	-
			305-10대	430.1	-	-	-
			305-11대	319.3	-	-	-
			305-12대	306.1	-	-	-
		한강로2가	2-25대	72.7	-	-	-
			2-26대	475.1	-	-	-
			2-29대	53.6	-	-	-
			2-30대	5.0	-	-	-
			2-57대	87.6	-	-	-
			2-89대	3,666.4	-	-	-
			2-90대	20.2	-	-	-
			2-221철	109.3	-	-	-
			2-391철	41.9	-	-	-
			417대	6,794.9	-	-	-
			417-1도	34.7	-	-	-
			417-3도	2.2	-	-	-
한5	9,240.3	한강로2가	2-8대	9,240.3	-	-	-
한6	2,795.0	한강로2가	2-11대	1,902.1	-	-	-
			2-131대	451.9	-	-	-
			2-132창	376.8	-	-	-
			2-378대	53.9	-	-	-
			2-392대	10.3	-	-	-
한7	2,888.4	한강로2가	2-36대	1,410.6	-	-	-
			2-37대	1,477.8	-	-	-
한8	2,075.9	한강로2가	312-4대	1,035.6	-	-	-
			314-1대	1,040.3	-	-	-
한9	1,794.8	한강로2가	36-1대	105.1	802.4	지정	-
			36-3대	2.5			-
			41대	453.5			-
			42대	241.3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9	1,794.8	한강로2가	36-4대	3.1	389.8	지정	-
			37-2대	360.3			-
			38-2도	26.4			-
			38-1대	86.0	346.1	지정	-
			38-3대	82.6			-
			43-2대	177.5			-
			43-3대	256.5	-	-	-
한10	2,445.9	한강로2가	29-1대	296.8	298.8	지정	-
			29-2대	2.0			-
			35-1대	155.4	162.3	지정	-
			35-6대	6.9			-
			35-2대	38.0	106.8	지정	-
			35-3대	68.8			-
			28-1대	129.9	-	-	-
			28-2대	172.2	-	-	-
			30-1대	321.3	-	-	-
			30-3대	83.6	-	-	-
			31대	404.3	-	-	-
			32대	342.1	-	-	-
			33대	228.3	-	-	-
			35-4대	196.3	-	-	-
한11	2,852.8	한강로2가	24-2대	74.4	110.4	지정	-
			25-4대	36.0			-
			27-1대	81.3	205.0	지정	-
			27-4도	27.1			-
			27-5대	91.6			-
			27-6도	5.0			-
			18-1대	266.1	-	-	-
			19대	232.4	-	-	-
			21대	339.2	-	-	-
			22대	334.2	-	-	-
			23대	327.3	-	-	-
			24-3도	25.8	-	-	-
			24-4대	51.9	-	-	-
			24-5대	118.7	-	-	-
			24-6대	86.9	-	-	-
			25-1대	111.3	-	-	-
			25-6도	6.5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1	2,852.8	한강로2가	25-7대	139.8	-	-	-
			25-8대	6.4	-	-	-
			26대	165.3	-	-	-
			26-1대	165.3	-	-	-
			27-2대	78.0	-	-	-
			27-3대	82.3	-	-	-
한12	4,444.7	한강로1가	221-3대	14.5	95.4	지정	-
			222-2대	33.0			-
			222-3대	34.7			-
			221-4대	13.2			-
			225-2대	46.9	115.7	지정	-
			225-3대	68.8			-
			217대	483.3	-	-	-
			218-1대	506.4	-	-	-
			218-2대	416.5	-	-	-
			219대	168.9	-	-	-
			220대	136.8	-	-	-
			221-1도	62.1	-	-	-
			221-2대	119.0	-	-	-
			221-5대	88.9	-	-	-
			221-6대	108.1	-	-	-
			221-7대	129.2	-	-	-
			221-8대	105.8	-	-	-
			222-1도	8.9	-	-	-
			223-1대	138.5	-	-	-
			223-2대	105.4	-	-	-
			224-1대	410.9	-	-	-
			224-2도	59.5	-	-	-
			224-3대	95.9	-	-	-
			224-4대	66.1	-	-	-
			224-5대	29.7	-	-	-
			224-6대	92.6	-	-	-
			224-7대	19.8	-	-	-
			225-1대	172.6	-	-	-
			227대	116.8	-	-	-
			228대	282.0	-	-	-
			229대	180.0	-	-	-
			230-1대	125.3	-	-	-
			230-2대	4.6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3	13,159.5	용산동3가	5-19대	151.7	237.0	권장	-
			5-40대	85.3			-
		한강로1가	208-1대	250.6	326.0	지정	-
			208-3대	75.4			-
			209대	70.4	-	-	-
			210대	182.8	-	-	-
			211-1대	174.5	-	-	-
			212대	297.5	-	-	-
			214대	119.0	-	-	-
			215-1도	25.8	-	-	-
			215-2도	28.8	-	-	-
			215-3대	190.4	-	-	-
			215-5대	126.0	-	-	-
			215-6대	7.9	-	-	-
			216-1대	466.1	-	-	-
			216-2대	253.2	-	-	-
			216-3대	185.8	-	-	-
			216-4도	568.3	-	-	-
			216-5대	232.4	-	-	-
			216-6대	196.7	-	-	-
			216-7대	148.1	-	-	-
			216-8대	157.0	-	-	-
			216-9대	146.1	-	-	-
		용산동3가	216-10대	169.2	-	-	-
			216-11대	368.6	-	-	-
			216-12대	377.2	-	-	-
			216-13대	1,024.8	-	-	-
			216-14대	248.9	-	-	-
			216-15대	210.2	-	-	-
			216-16대	191.6	-	-	-
			216-17대	259.8	-	-	-
			216-18대	419.5	-	-	-
			216-19대	411.7	-	-	-
			216-20대	472.7	-	-	-
			216-21대	532.2	-	-	-
			216-22대	28.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3	13,159.5	한강로1가	5-1대	1,322.9	-	-	-
			5-2대	82.6	-	-	-
			5-3대	72.7	-	-	-
			5-4대	82.6	-	-	-
			5-5대	80.3	-	-	-
			5-6도	144.8	-	-	-
			5-7대	536.1	-	-	-
			5-8대	677.7	-	-	-
			5-10대	116.7	-	-	-
			5-11대	136.1	-	-	-
			5-15대	238.0	-	-	-
			5-16대	131.9	-	-	-
			5-23대	151.1	-	-	-
			5-24대	15.5	-	-	-
			5-29대	13.2	-	-	-
			5-30대	8.3	-	-	-
			5-31대	8.9	-	-	-
			5-32대	13.9	-	-	-
			5-33대	12.6	-	-	-
			5-35대	107.1	-	-	-
			5-38대	108.1	-	-	-
			5-41도	72.1	-	-	-
			5-42대	94.2	-	-	-
			5-44도	77.1	-	-	-
한14	3,041.2	한강로2가	44-1대	298.1	-	-	-
			44-2대	364.3	-	-	-
			44-3대	2,378.8	-	-	-
한15	1,320.3	한강로2가	47-2대	17.6	151.2	권장	-
			47-3대	133.6			-
			45-1대	246.0	-	-	-
			46-1대	163.9	-	-	-
			46-2대	174.1	-	-	-
			47-1대	173.2	-	-	-
			48-1대	217.2	-	-	-
			48-2대	194.7	-	-	-
한16	4,573.1	한강로2가	49-1대	284.0	350.8	지정	-
			49-2대	9.6			-
			49-4대	57.2			-
			53-4대	42.0	152.7	지정	-
			53-7대	98.5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6	4,573.1	한강로2가	53-8대	12.2			-
		용산동3가	6-17대	123.0	196.4	지정	-
			6-18대	73.4			-
			6-23대	84.6	135.6	지정	-
			6-24대	51.0			-
		한강로2가	49-3대	60.5	-	-	-
			49-5대	249.2	-	-	-
			50-1대	200.0	-	-	-
			50-2대	136.2	-	-	-
			50-3대	1.3	-	-	-
			51-1대	285.6	-	-	-
			51-2대	5.0	-	-	-
			51-3대	15.5	-	-	-
			51-4대	126.9	-	-	-
			52-1대	361.3	-	-	-
			52-2대	73.4	-	-	-
			52-3대	43.3	-	-	-
			52-4도	331.2	-	-	-
			52-8대	101.2	-	-	-
			53-1대	188.1	-	-	-
			412도	1.2	-	-	-
		용산동3가	5-1대	9.7	-	-	-
			5-13대	162.6	-	-	-
			5-14대	21.2	-	-	-
			5-36대	101.8	-	-	-
			6대	44.9	-	-	-
			6-2대	237.4	-	-	-
			6-9도	2.6	-	-	-
			6-10대	194.2	-	-	-
			6-12대	58.2	-	-	-
			6-13도	55.2	-	-	-
			6-15대	9.9	-	-	-
			6-16대	405.6	-	-	-
			6-19대	44.0	-	-	-
			6-20대	18.8	-	-	-
			6-21도	59.3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6	4,573.1	용산동3가	6-22대	130.9	-	-		-
			6-25대	1.4	-	-		-
한17	3,120.6	한강로2가	93-3대	192.1	374.6	-		-
			93-4대	100.5		지정	권장	-
			93-5대	82.0				-
한17	3,120.6	한강로2가	96-2대	96.8	175.5	권장		-
			96-3대	78.7				-
			88대	214.9	-	-		-
			89대	306.4	-	-		-
			90대	298.9	-	-		-
			92-1대	342.1	-	-		-
			93-1대	159.6	-	-		-
			93-2대	163.0	-	-		-
			94-1대	335.2	-	-		-
			95-1대	191.4	-	-		-
			95-2대	61.8	-	-		-
			95-3대	128.9	-	-		-
			96-1대	163.0	-	-		-
			97-1대	95.9	-	-		-
			97-2대	109.4	-	-		-
한18	1,322.3	한강로2가	86-1대	126.9	146.7	지정		-
			86-2대	19.8				-
			87-2대	112.4	192.1	지정		-
			87-8대	79.7				-
			87-3대	171.6	255.2	지정		-
			87-4대	83.6				-
			85대	298.5	-	-		-
			86-3대	146.8	-	-		-
			87-1대	283.0	-	-		-
한19	3,071.0	한강로2가	98-1대	72.1	140.9	지정		-
			98-4대	68.8				-
			99-1대	51.2	141.1	지정		-
			99-2대	89.9				-
			99-3대	60.5	165.6	지정		-
			99-5대	49.6				-
			99-7대	55.5				-
			100-3대	46.3	174.9	지정		-
			100-4대	67.1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9	3,071.0	한강로2가	100-5대	61.5				-
			105-2대	73.7	262.8	지정		-
			105-3대	189.1				-
			98-2대	134.2	-	-		-
			98-3대	250.3	-	-		-
			99-4도	28.4	-	-		-
			100-2도	46.3	-	-		-
			101대	1,580.8	-	-		-
			106-1대	113.0	-	-		-
			106-5도	32.7	-	-		-
한20	1,322.4	한강로2가	84-1대	73.4	148.1	지정		-
			84-6대	74.7				-
			83-1대	453.5	669.1	지정	권장	-
			83-2대	85.0				-
			84-5대	130.6		-		-
			83-3도	8.3	-	-		-
			83-4대	224.8	-	-		-
			84-2도	48.3	-	-		-
			84-7대	223.8	-	-		-
한21	3,041.2	한강로2가	109-1대	102.5	335.8	지정		-
			109-2대	106.4				-
			109-3대	96.8				-
			109-7대	30.1				-
			109-4대	318.3	323.6	지정		-
			109-8대	5.3				-
			107-1대	114.4	-	-		-
			107-2대	193.1	-	-		-
			107-3대	225.1	-	-		-
			107-5대	126.6	-	-		-
			107-7대	196.2	-	-		-
			107-9대	34.7	-	-		-
			107-10대	147.5	-	-		-
			107-12대	68.4	-	-		-
			107-13대	57.2	-	-		-
			107-14도	2.6	-	-		-
			107-15도	0.9	-	-		-
			108-1대	290.9	-	-		-
			108-2대	39.0	-	-		-
				140.5	-	-		-
			108-3대	189.4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1	3,041.2	한강로2가	110대	467.0	-	-		-
			111-1대	88.3	-	-		-
한22	1,322.4	한강로2가	81-1대	157.7	-	-		-
			81-2대	223.5	-	-		-
			81-3대	176.6	-	-		-
한22	1,322.4	한강로2가	81-5대	102.8	-	-		-
			81-6대	100.8	-	-		-
			82-1대	384.1	-	-		-
			82-2대	176.9	-	-		-
한23	3,071.0	한강로2가	114-3대	117.4	180.5	지정		-
			114-5도	17.5				-
			114-7대	45.6				-
			115-1대	247.9	333.9	지정		-
			115-2대	86.0				-
			112-1대	175.5	-	-		-
한23	3,071.0	한강로2가	112-2대	617.5	-	-		-
			112-3대	254.8	-	-		-
			113-1대	145.1	-	-		-
			113-2대	177.3	-	-		-
			114-2대	144.5	-	-		-
			116-1대	44.0	-	-		-
			116-2대	51.6	-	-		-
			116-3대	48.3	-	-		-
			116-4대	58.2	-	-		-
			116-5대	138.5	-	-		-
			117-1대	102.5	-	-		-
			117-2대	119.0	-	-		-
			117-3대	56.2	-	-		-
			117-4대	43.0	-	-		-
			117-5도	13.2	-	-		-
			119대	367.4	-	-		-
한24	1,811.5	한강로2가	77-1대	494.8	-	-		-
			77-2대	328.3	-	-		-
			78-1대	352.4	-	-		-
			79-1대	163.0	-	-		-
			79-2대	142.8	-	-		-
			80-2대	330.2	-	-		-
한25	2,145.7	한강로2가	123-1대	157.4	367.9	-	권장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5	2,145.7	한강로2가	132대	42.6		지정	-
			133대	167.9			-
			123-2대	78.0	170.6	지정	-
			123-4대	92.6			-
			134-1대	81.0	387.9	지정	-
			135-3대	9.6			-
			135-1대	69.8			-
			136-1대	178.9			-
			131대	48.6			-
			123-3대	100.2	-	-	-
			124-1대	64.8	-	-	-
			124-2대	64.8	-	-	-
			124-3대	198.0	-	-	-
한25	2,145.7	한강로2가	126대	17.5	-	-	-
			127-1대	172.6	-	-	-
			127-2대	51.6	-	-	-
			127-3대	36.4	-	-	-
			137-1대	126.9	-	-	-
			137-3대	73.7	-	-	-
			138대	80.7	-	-	-
			139-2대	31.7	-	-	-
			140대	199.7	-	-	-
			141대	0.7	-	-	-
한26	1,305.8	한강로2가	121-5대	105.8	347.8	지정	-
			121-6대	241.0			-
			122-1대	1.0			-
			121-1대	113.4	-	-	-
			121-3대	128.9	-	-	-
			121-4대	132.6	-	-	-
			122-5대	428.7	-	-	-
			122-6대	56.2	-	-	-
			122-7대	98.2	-	-	-
한27	9,876.8	한강로2가	60대	20.7	125.0	지정	-
			62-1대	99.2			-
			61-1대	5.1			-
			60대	42.9	747.2	지정	-
			61대	704.3			-
			73-1대	298.5	324.6	지정	-
			73-9대	12.6			-
			75-2도	5.6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7	9,876.8	한강로2가	75-5대	3.6	324.6	지정	-
			75-7도	4.3			-
			73-4대	82.0	360.4	지정	-
			73-6대	122.3			-
			73-8대	107.1			-
			73-10도	5.0			-
			73-11대	44.0			-
			74-3대	149.1	162.0	지정	-
			73-5대	12.9			-
			6-34대	108.8	594.1	지정	-
			66-1대	377.2			-
			68대	108.1			-
			65대	494.5	535.5	지정	-
		용산동3가	6-33대	41.0			-
			6-7대	101.8	151.0	지정	-
			6-8대	49.2			-
			6-26대	46.3	109.5	지정	-
			6-27대	63.2			-
			6-28대	114.4	194.4	지정	-
			6-29대	80.0			-
			6-30대	99.6	185.2	지정	-
			6-31대	85.6			-
			6-3대	230.4	-	-	-
			6-5대	93.2	-	-	-
			6-6대	96.5	-	-	-
			6-21도	70.3	-	-	-
			6-32대	55.2	-	-	-
			6-36대	75.7	-	-	-
		한강로2가	55종	3,335.1	-	-	-
			61-2대	275.1	-	-	-
			62-2대	99.2	-	-	-
			63대	247.9	-	-	-
			64대	623.5	-	-	-
			69대	28.6	-	-	-
			70대	227.8	-	-	-
			71대	502.3	-	-	-
			73-3대	194.1	-	-	-
			74-2대	157.0	-	-	-
			76-2대	76.0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8	2,128.9	한강로2가	142대	2,128.9	-	-	-
한29	5,643.9	용산동5가	2-2대	3,871.4	-	-	-
			2-6대	121.0	-	-	-
			2-28대	1,085.3	-	-	-
			2-29대	202.3	-	-	-
			2-30대	363.9	-	-	-

2) 변경

▌문배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문배1	4,210.6	원효로2가	1-37대	138.3	190.4	권장	맹지 해소 (1-155) (구적면적 : 1-37)
			1-155대	52.1			
			1-35대	168.7	193.1	권장	맹지 해소(1-67) (구적면적 : 1-35)
		신계동	1-67대	24.4			
			1-66대	208.6	309.8	권장	맹지 해소 (1-34, 1-66, 16-6) (구적면적 : 16-6, 133-51)
		원효로1가	133-51대	20.7			
		원효로2가	1-34대	55.9			
		문배동	16-6대	24.6			
			16-1대	9.0	273.8	권장	맹지(16-41-252)이나 『주차장법』시행령 8조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로 공동 개발 지정 (구적면적 : 16-14) ※국민권익위원회 (2AA-1904-656116) 의결에 의거 해당부지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면제
			16-4대	48.0			
			16-7대	6.7			
		신계동	1-252대	114.0			
			1-259대	96.1			
		원효로1가	25-10도	1.9	-	-	-
		원효로2가	1-36대	243.2	-	-	-
			1-38대	179.9	-	-	-
		신계동	1-172대	499.0	-	-	-
			1-261대	3.0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문배1	4,210.6	신계동	1-280대	203.7	-	-	-
		문배동	17-1대	1,081.2	-	-	-
			19-2대	1,031.6	-	-	-
문배2	1,258.4	문배동	20-3대	467.7	-	-	-
			24-4대	790.7	-	-	-
문배3	1,808.9	문배동	24-5대	931.2	-	-	-
			24-8대	877.7	-	-	-
문배4	8,327.8	문배동	30-10대	8,327.8	-	-	-

▌ 신계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	1,187.0	원효로2가	2-3대	122.6	270.1	권장	획지 계획 해제 후 맹지 해소(2-3)
			3-15대	147.5			
			2-20대	86.3	201.3	권장	맹지 해소(2-20) 부정형 필지(3-32)해소
			3-32대	58.8			
			3-33대	56.2			
			2-10대	72.8	-	-	-
			2-12대	59.2	-	-	-
			2-13대	197.7	-	-	-
			2-15대	6.0	-	-	-
			2-18대	122.7	-	-	-
			2-19대	100.2	-	-	-
			2-35대	0.7	-	-	-
			3-2대	156.3	-	-	-
신2	6,621.4	원효로2가	3-9대	111.5	210.1	권장	맹지 해소(3-9) 세장형 필지 해소(3-16)
			3-16대	21.7			
			3-30대	76.9			
			3-20대	53.3	454.2	권장	맹지 해소(3-22,15-2)
			3-22대	352.2			
			15-2대	48.7			
			16-2대	176.7	259.1	권장	맹지 해소(16-2)
			16-4대	82.4			
			16-5대	43.9	148.5	권장	맹지 해소(16-5,10,11)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	6,621.4	원효로2가	16-9대	60.7	148.5	권장	맹지 해소(16-5,10,11)
			16-10대	39.5			
			16-11대	4.4			
			23-3대	70.0	569.2	권장	획지계획 해제 후 맹지 해소 (23-3,4,5,25,31,32)
			23-4대	31.3			
			23-5대	35.5			
			23-16대	39.7			
			23-25대	4.6			
			23-30대	36.4			
			23-31대	277.7			
			23-32대	74.0			
			23-27대	95.9	234.1	권장	맹지 해소(23-27)
			23-29대	138.2			
			3-4대	290.0	-	-	-
			3-5대	110.7	-	-	-
			3-6대	234.6	-	-	-
			3-8대	135.5	-	-	-
			3-12대	544.5	-	-	-
			3-19대	201.2	-	-	-
			3-28대	110.7	-	-	-
			16-3대	230.4	-	-	-
			16-6대	184.1	-	-	-
			16-7대	206.0	-	-	-
			16-8대	46.8	-	-	-
			23-6대	191.7	-	-	-
			23-7대	115.7	-	-	-
			23-8대	191.7	-	-	-
			23-9대	162.0	-	-	-
			23-10대	129.6	-	-	-
			23-11대	191.7	-	-	-
			23-12대	146.3	-	-	-
			23-14도	299.1	-	-	-
			23-15대	101.8	-	-	-
			23-17대	121.5	-	-	-
			23-18대	195.0	-	-	-
			23-20대	95.9	-	-	-
			23-21대	208.2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	6,621.4	원효로2가	23-23대	92.6	-	-	-
			23-24대	79.3	-	-	-
			23-28대	129.6	-	-	-
신3	883.1	원효로2가	53-2대	162.4	-	-	-
			53-4대	134.2	-	-	-
			53-5대	412.6	-	-	-
			53-6대	173.9	-	-	-
신4	2,266.7	원효로2가	55-1대	2,266.7	-	-	-
신5	4,729.1	원효로2가	27-2대	34.2	261.4	권장	획지계획 해제 후 맹지 해소 (27-3,5,9,13,21,28-4) 세장형 필지 해소(27-11)
			27-3대	26.4			
			27-5대	3.3			
			27-9대	28.4			
			27-10대	94.0	261.4	권장	
			27-11도	7.4			
			27-13대	41.7			
			27-21대	0.9			
			28-4대	25.1			
			27-4대	105.8	163.9	권장	맹지 해소(27-15) 부정형 필지 해소(27-4)
			27-14대	56.8			
			27-15대	1.3			
			37-1대	297.8	570.8	권장	맹지 해소(37-1,51-1) 세장형 필지 해소(51-2)
			51-1대	102.8			
			51-2대	5.0			
			51-3대	165.2			
			24대	1.5	-	-	-
			28-3대	4.3	-	-	-
			36대	452.9	-	-	-
			37-3대	344.6	-	-	-
			39대	238.0	-	-	-
			50대	348.1	-	-	-
			52-1대	102.8	-	-	-
			52-2대	451.6	-	-	-
			52-3대	244.3	-	-	-
			52-4대	131.6	-	-	-
			52-5대	137.2	-	-	-
			52-6대	144.9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5	4,729.1	원효로2가	52-8대	78.0	-	-	-
			52-9대	48.3	-	-	-
			52-10대	76.7	-	-	-
			52-13도	173.2	-	-	-
			52-14대	105.1	-	-	-
			52-16대	214.9	-	-	-
			52-18대	79.0	-	-	-
			52-19대	70.1	-	-	-
			52-23대	133.9	-	-	-
			52-27대	30.7	-	-	-
			52-28대	55.9	-	-	-
			52-31대	65.4	-	-	-
신6	1,697.4	원효로2가	57-1대	88.6	-	-	-
			57-2대	96.2	-	-	-
			57-3대	91.9	-	-	-
			57-4대	105.1	-	-	-
			57-5대	100.5	-	-	-
			57-6대	165.3	-	-	-
			57-7대	165.8	-	-	-
			57-8대	43.0	-	-	-
			57-9대	43.0	-	-	-
			57-10대	98.5	-	-	-
			57-11대	163.0	-	-	-
			57-12대	163.0	-	-	-
			57-13대	165.3	-	-	-
			57-14대	208.2	-	-	-
신7	1,804.9	원효로2가	58-5대	62.5	118.4	권장	맹지 해소(58-7)
			58-7대	55.9			
			59-9대	100.5	107.1	권장	맹지 해소(59-17)
			59-17대	6.6			
			58-1대	148.4	-	-	-
			58-2대	110.7	-	-	-
			58-3대	110.4	-	-	-
			58-4대	9.9	-	-	-
			58-6대	79.3	-	-	-
			58-10대	56.5	-	-	-
			58-11대	137.5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7	1,804.9	원효로2가	59-2대	138.9	-	-	-
			59-5대	93.9	-	-	-
			59-6대	151.7	-	-	-
			59-7대	100.2	-	-	-
			59-8대	108.1	-	-	-
			59-11대	68.1	-	-	-
			59-13대	165.6	-	-	-
			59-14대	90.0	-	-	-
			59-16대	10.2	-	-	-
신8	5,007.8	원효로2가	35-2대	66.4	259.2	권장	부정형 필지 해소(35-2)
			40대	192.8			
			43-4대	123.0	124.0	권장	맹지 해소(44-6)
			44-6대	1.0			
			44-2대	108.6	454.4	권장	맹지 해소(44-7)
			44-7대	345.8			
			45-3대	7.0	100.2	권장	맹지 해소(45-3, 49-1)
			49대	59.5			
			49-1도	33.7			
			61-12대	427.8	427.8	-	-
			61-9대	163.0	182.1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61-34)
			61-34대	19.1			
			43대	63.4	-	-	-
			43-8대	108.8	-	-	-
			47대	178.5	-	-	-
			48대	193.3	-	-	-
			61-1대	169.6	-	-	-
			61-2대	111.7	-	-	-
			61-3대	104.4	-	-	-
			61-4대	56.5	-	-	-
			61-5대	96.5	-	-	-
			61-6대	202.6	-	-	-
			61-7대	282.7	-	-	-
			61-8대	130.2	-	-	-
			61-11대	207.9	-	-	-
			61-14대	275.7	-	-	-
			61-15대	332.2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8	5,007.8	원효로2가	61-19대	324.6	-	-	-
			61-21대	191.4	-	-	-
			61-22대	181.2	-	-	-
			61-25대	123.3	-	-	-
			61-32대	125.6	-	-	-
신9	3,263.5	원효로2가	66-3대	24.8	54.2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66-3,5)
			66-5대	29.4			
			65-3대	64.1	-	-	-
			65-6대	108.4	-	-	-
			65-7대	757.1	-	-	-
			65-8대	62.8	-	-	-
			65-10대	423.1	-	-	-
			65-16대	57.2	-	-	-
			65-17대	179.5	-	-	-
			65-18대	188.4	-	-	-
			65-19도	56.2	-	-	-
			65-20대	98.2	-	-	-
			66-4대	99.5	-	-	-
			70-2대	490.7	-	-	-
			70-3대	624.1	-	-	-
신10	1,832.2	원효로2가	67-2대	2.3	81.6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67-2,12)
			67-4대	77.0			
			67-12대	2.3			
			69-2대	74.4	223.1	권장	획지계획 해제 후 맹지 해소(69-5)
			69-5대	50.9			
			68-1대	97.8			
			67-1대	61.2	-	-	-
			67-3대	191.7	-	-	-
			67-5대	78.7	-	-	-
			67-6대	122.6	-	-	-
			67-9대	54.9	-	-	-
			67-10대	110.1	-	-	-
			68-3대	544.8	-	-	-
			69-3대	261.3	-	-	-
		신계동	34-1대	102.2	-	-	-
신11	795.5	원효로2가	85-3대	200.3	341.1	권장	획지계획 해제 후 맹지 해소(85-13,17,86-27)
			85-13대	66.8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1	795.5	원효로2가	85-17대	46.2			
			86-27대	27.8			
			86-3대	168.6	353.5	권장	맹지 해소 (86-11,12,13,30,31) (구적면적 : 86-12)
			86-11대	23.1			
			86-12도	1.2			
			86-13대	7.3			
			86-28대	99.2			
			86-30대	22.6			
			86-31대	31.5			
			85-14대	2.6	-	-	-
			86-5대	5.1	-	-	-
			86-8대	91.9	-	-	-
			86-9대	1.3	-	-	-
신12	7,708.2	원효로2가	92-10대	181.5	327.9	권장	맹지 해소(92-11)
			92-11대	146.4			
			93-6대	61.8	114.7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93-7)
			93-7대	52.9			
			93-15대	10.8	232.6	권장	맹지 해소(93-15,96-2) 세장형필지 해소(96-13)
			96-2대	92.9			
			96-11대	119.3			
			96-13대	9.6			
			94-2대	522.6	1,064.7	권장	맹지 해소(94-2, 94-8)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94-10)
			94-3대	456.8			
			94-8대	52.9			
			94-10대	32.4			
			94-4차	83.0	164.4	권장	맹지 해소(94-4)
			94-5대	81.4			
			95-1대	312.7	1,291.7	권장	맹지 해소(95-1)
			95-3대	778.9			
			95-10대	200.1			
			96-1대	171.2	182.3	권장	맹지 해소(96-21)
			96-21대	11.1			
			96-5대	67.1	70.9	권장	맹지 해소(96-19)
			96-19대	3.8			
			96-4대	21.8	268.7	권장	맹지 해소(96-4)
			96-6대	168.6			
			96-10대	78.3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2	7,708.2	원효로2가	92-2대	760.3	-	-	-
			92-3대	429.8	-	-	-
			92-5대	338.3	-	-	-
			92-8대	332.2	-	-	-
			92-9대	92.6	-	-	-
			93-2대	76.0	-	-	-
			93-3대	63.8	-	-	-
			93-5대	122.3	-	-	-
			93-8도	123.3	-	-	-
			93-9대	154.4	-	-	-
			93-11대	135.5	-	-	-
			93-13대	25.6	-	-	-
			93-14대	72.7	-	-	-
			94-6대	116.4	-	-	-
			94-7대	148.8	-	-	-
			95-4대	131.4	-	-	-
			95-5대	179.0	-	-	-
			95-7대	107.4	-	-	-
			96-7대	118.0	-	-	-
			96-8대	254.2	-	-	-
			96-9대	208.3	-	-	-
신13	5,570.8	원효로3가	48-2대	2.3	-	-	-
			49-5대	1,008.3	-	-	-
			49-6대	843.0	-	-	-
			49-7대	644.5	-	-	-
			49-8대	400.6	-	-	-
			49-10대	439.7	-	-	-
			51-7대	836.4	-	-	-
			51-9대	677.7	-	-	-
			52-5대	718.3	-	-	-
신14	5,120.3	신계동	7-38대	36.0	80.3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7-38,39)
			7-39대	44.3			
			8-18대	66.4	86.0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54)
			54대	19.6			
			9-6대	32.4	304.1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9-6,12,14-3)
			9-12대	2.3			
			11-3대	262.8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4	5,120.3	신계동	14-3대	6.6			
			9-15대	11.6	68.8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9-15)
			11-12대	57.2			
			9-16대	11.2	64.1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9-16)
			11-13대	52.9			
			15대	76.0	88.6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16-7) (구적면적 : 16-7)
			16-7대	12.6			
			7-2대	277.0	-	-	-
			7-3대	529.0	-	-	-
			7-12대	72.7	-	-	-
			7-13대	181.8	-	-	-
			7-14대	198.4	-	-	-
			7-37대	79.3	-	-	-
			7-44도	15.3	-	-	-
			8-2대	176.2	-	-	-
			8-3대	417.9	-	-	-
			8-4대	46.3	-	-	-
			8-5대	15.2	-	-	-
			8-6대	229.1	-	-	-
			8-8대	239.0	-	-	-
			8-9도	16.2	-	-	-
			8-12대	73.0	-	-	-
			8-14대	6.6	-	-	-
			8-15대	328.4	-	-	-
			8-16대	62.8	-	-	-
			9-2도	51.6	-	-	-
			9-3도	51.6	-	-	-
			9-4도	29.1	-	-	-
			9-8도	62.8	-	-	-
			11-1대	80.6	-	-	-
			11-4대	69.4	-	-	-
			11-5대	72.8	-	-	-
			11-6도	23.1	-	-	-
			11-7대	217.8	-	-	-
			11-8대	89.2	-	-	-
			11-10대	155.3	-	-	-
			11-11대	100.9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4	5,120.3	신계동	14-1대	48.0	-	-	-
			16-1도	84.4	-	-	-
			16-2구	66.8	-	-	-
			16-3도	10.5	-	-	-
			17대	126.9	-	-	-
			52도	33.0	-	-	-
			53대	90.4	-	-	-
신15	1,759.4	신계동	12-5대	10.2	128.8	권장	맹지 해소(12-20,25,31)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12-5,23,32)
			12-20대	43.6			
			12-23대	26.4			
			12-25대	36.0			
			12-31대	9.6			
			12-32대	3.0			
			12-18대	63.5	129.9	권장	맹지 해소(12-26) 세장형 필지 해소(12-27)
			12-26대	61.8			
			12-27대	4.6			
			12-2대	147.2	-	-	-
			12-6대	97.5	-	-	-
			12-7창	213.3	-	-	-
			12-10대	213.0	-	-	-
			12-16대	40.7	-	-	-
			12-17대	247.9	-	-	-
			12-21대	353.7	-	-	-
			12-22대	184.1	-	-	-
			12-28대	3.3	-	-	-
신16	1,934.3	신계동	6-3대	56.8	66.0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12-14)
			12-14대	9.2			
			6-4대	81.5	83.5	권장	맹지 해소(6-18)
			6-18대	2.0			
			6-7대	51.9	448.3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6-7)
			6-32대	396.4			
			6-13대	6.0	79.7	권장	맹지 해소(6-13)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12-1,12)
			12-1대	39.0			
			12-12대	34.7	257.2	권장	맹지 해소(12-3)
			6-22대	222.2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6	1,934.3	한강로2가	12-3대	35.0	257.2	권장	맹지 해소(12-3)
		신계동	6-1대	598.7	-	-	-
			6-6대	16.5	-	-	-
			6-21대	129.2	-	-	-
			6-31대	198.3	-	-	-
			12-13대	56.9	-	-	-
신17	2,369.2	한강로2가	11-16대	20.0	142.9	권장	맹지 해소(4-7,11, 5-24) 부정형필지 해소(5-16,11-16)
		신계동	4-7대	61.5			
			4-11대	8.1			
			5-16대	22.6			
			5-24대	30.7			
			5-13대	123.9	145.2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5-18)
			5-18대	21.3			
			5-15대	18.2	131.0	권장	맹지 해소 (5-15,26,30,37,38)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5-2,945) (국유지 : 5-30, 공유지 : 5-29)
			5-26대	42.3			
			5-29대	22.5			
			5-30대	30.3			
			5-37대	2.0			
			5-38대	8.4			
			5-45대	7.3			
			5-6대	25.3	139.9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5-6) (구적면적 : 5-17)
			5-17대	114.6			
			4-2제	15.6	-	-	-
			4-8대	1.3	-	-	-
			5-1대	809.9	-	-	-
			5-7대	157.8	-	-	-
			5-9대	170.2	-	-	-
			5-10대	132.2	-	-	-
			5-11대	138.8	-	-	-
			5-12대	138.8	-	-	-
			5-21대	85.3	-	-	-
			5-22대	92.9	-	-	-
			5-32제	40.3	-	-	-
			5-36도	0.2	-	-	-
		한강로2가	11-14천	26.9	-	-	-
신18	3,657.80	한강로2가	2-185대	2,905.9	-	-	-
			2-186대	74.0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18	3,657.80	한강로2가	2-187대	214.9	-	-	-
			2-193철	12.6	-	-	-
			2-363대	186.9	-	-	-
			2-364대	263.5	-	-	-
신19	2,259.8	신계동	18-4대	95.9	117.3	권장	맹지 해소(19-18)
			19-18대	21.4			
신19	2,259.8	신계동	18-6대	27.1	91.5	권장	맹지 해소(18-6) 세장형 필지 해소(18-8)
			18-8대	28.4			
			18-9대	36.0			
			19-3대	33.0	134.6	권장	맹지 해소(19-3) (구적면적 : 19-13)
			19-13대	101.6			
			1-271대	27.4	63.0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1-271) 부정형필지 해소(18-15)
			18-15대	2.6			
			19-9대	33.0			
			1-9대	292.9	-	-	-
			1-15대	208.3	-	-	-
			1-216대	400.0	-	-	-
			1-218대	195.0	-	-	-
			1-325도	11.1	-	-	-
			18-1도	3.0	-	-	-
			18-7대	0.3	-	-	-
			18-10도	19.8	-	-	-
			18-11대	135.9	-	-	-
			18-12대	0.3	-	-	-
			18-13대	0.3	-	-	-
			18-14대	37.0	-	-	-
			18-17도	6.3	-	-	-
			18-18대	93.8	-	-	-
			19-1대	42.3	-	-	-
			19-2대	85.6	-	-	-
			19-4대	65.0	-	-	-
			19-5대	105.6	-	-	-
			19-12대	36.4	-	-	-
			19-14대	66.5	-	-	-
			19-16도	18.5	-	-	-
			19-17도	20.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19-19대	8.7	-	-	-
신20	749.4	신계동	22-6대	228.1	263.5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22-10)
			22-10대	35.4			
			22-1대	112.4	-	-	-
			22-3대	145.4	-	-	-
신20	749.4	신계동	22-4대	67.1	-	-	-
			22-8대	99.2	-	-	-
			22-9대	61.8	-	-	-
신21	1,791.8	신계동	25-5대	37.4	44.0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5-5) 세장형필지 해소(25-16,20) (국유지 : 25-16,20)
			25-16대	5.0			
			25-20대	1.6			
			25-8대	206.3	247.0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5-17)
			25-17대	40.7			
			25-1대	576.2	-	-	-
			25-2대	59.5	-	-	-
			25-3대	182.8	-	-	-
			25-4대	191.7	-	-	-
			25-6대	92.6	-	-	-
			25-9대	119.0	-	-	-
			25-10대	175.2	-	-	-
			25-12대	92.6	-	-	-
			25-14대	11.2	-	-	-
신22	2,697.9	신계동	23-8대	51.4	281.7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23-8) (필지분할 가능선 : 23-8,16) (구적면적 : 23-8,16)
			23-16천	230.3			
			23-8대	12.6	138.8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23-8,9) (필지분할 가능선 : 23-8,16) (구적면적 : 23-8,16)
			23-9대	13.2			
			23-16천	113.0			
			23-10대	43.3	274.8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 (23-10,19,24-3) (필지분할가능선 : 23-16) (구적면적 : 23-16)
			23-16천	130.7			
			23-19대	15.2			
			24-3대	85.6			
			23-13대	49.9	89.6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 (23-13, 24-2)
			24-2대	39.7			
			23-14도	7.9	134.6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 (23-14,15) (구적면적 : 33-3)
			23-15대	9.6			
			33-3천	117.1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2	2,697.9	신계동	24-11대	35.4	71.8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 (24-11,15)
			24-15대	36.4			
			23-4도	59.9	-	-	-
			23-18대	8.1	-	-	-
			24-1대	106.1	-	-	-
			24-4대	44.0	-	-	-
			24-5대	153.7	-	-	-
			24-6대	120.3	-	-	-
			24-7대	223.8	-	-	-
			24-8대	230.4	-	-	-
			24-9대	283.4	-	-	-
			24-10대	69.8	-	-	-
			24-12대	112.1	-	-	-
			24-13대	73.4	-	-	-
			24-14대	87.6	-	-	-
			24-16대	59.8	-	-	-
			24-17대	66.4	-	-	-
			24-21대	7.8	-	-	-
신23	1,107.4	신계동	26-7대	70.7	71.4	권장	맹지 해소(26-13)
			26-13대	0.7			
			26-1대	134.5	-	-	-
			26-2대	144.8	-	-	-
			26-3대	171.6	-	-	-
			26-5대	47.3	-	-	-
			26-6대	64.1	-	-	-
			26-10대	218.8	-	-	-
			26-11대	113.4	-	-	-
			26-12대	44.0	-	-	-
			26-14대	97.5	-	-	-
신24	1,113.8	신계동	27-4대	40.0	43.3	권장	맹지 해소(27-5)
			27-5대	3.3			
			27-13대	54.2	60.5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23-14)
			27-14대	6.3			
			27-1대	85.9	-	-	-
			27-6대	92.6	-	-	-
			27-7대	66.1	-	-	-
			27-8대	66.1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4	1,113.8	신계동	27-9대	118.0	-	-	-
			27-10대	260.1	-	-	-
			27-11대	96.8	-	-	-
			27-16대	88.3	-	-	-
			27-17대	73.0	-	-	-
			27-18대	63.1	-	-	-
신25	1,025.4	신계동	32-1대	34.7	65.1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32-1,17)
			32-17대	30.4			
			32-5대	45.3	107.8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32-5,15)
			32-15대	62.5			
			32-3대	127.2	-	-	-
			32-4대	156.7	-	-	-
			32-7대	251.2	-	-	-
			33대	317.4	-	-	-
신26	1,417.2	신계동	30-1대	154.4	-	-	-
			30-2대	122.4	-	-	-
			30-3대	110.1	-	-	-
			30-4대	144.5	-	-	-
			30-5대	202.6	-	-	-
			30-6대	202.6	-	-	-
			30-10대	237.0	-	-	-
			30-11대	69.1	-	-	-
			30-13대	174.5	-	-	-
신27	1,532.2	신계동	29-10대	52.6	101.8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9-11)
			29-11대	49.2			
			29-25대	25.8	66.8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 (29-25,26,28,29,30)
			29-26대	22.5			
			29-28대	7.5			
			29-29대	9.3			
			29-30대	1.7			
			28-24대	64.6	93.8	권장	맹지 해소(29-17,18,21)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9-22,31)
			29-17대	4.3			
			29-18대	4.3			
			29-21대	4.6			
			29-22대	5.6			
			29-31대	10.4			
			27-20대	119.0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27	1,532.2	신계동	27-21대	50.0	-	-	-
			27-22대	49.8	-	-	-
			27-23대	80.3	-	-	-
			27-24대	46.6	-	-	-
			27-25대	74.7	-	-	-
			28-23대	39.7	-	-	-
			29-1대	490.0	-	-	-
			29-4대	46.3	-	-	-
			29-5대	112.7	-	-	-
			29-9대	100.5	-	-	-
			29-13대	60.2	-	-	-
신28	382.3	신계동	35-6대	50.4	66.4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35-7)
			35-7대	16.0			
			36-1대	79.4	-	-	-
			36-7대	59.4	-	-	-
			36-10대	74.9	-	-	-
			36-11대	102.2	-	-	-
신29	3,530.3	신계동	40-2대	63.7	736.9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40-2)
			40-5대	673.2			
			40-10대	48.6	111.4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40-11)
			40-11대	62.8			
			41-3대	30.7	63.4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41-34)
			41-4대	32.7			
			41-5대	33.0	72.3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41-5)
			41-6대	39.3			
			40-1대	2,130.5	-	-	-
			40-6대	105.8	-	-	-
			40-9대	6.9	-	-	-
			40-12도	36.4	-	-	-
			41-7대	51.6	-	-	-
			41-8도	53.6	-	-	-
			41-13대	49.2	-	-	-
			41-10대	1.3	-	-	-
			41-11대	1.6	-	-	-
			41-15대	109.4	-	-	-
신30	2,304.4	신계동	39-12대	6.6	130.2	권장	맹지 해소(39-15)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신30	2,304.4	신계동	39-14대	34.4			세장형필지 해소(39-12)
			39-15대	89.2			
			35-5대	7.7	-	-	-
			35-8대	3.0	-	-	-
			35-10도	5.0	-	-	-
			35-11대	548.2	-	-	-
			35-18대	216.8	-	-	-
			35-21대	0.3	-	-	-
			36-14대	79.1	-	-	-
			36-19대	28.6	-	-	-
			38-7대	156.8	-	-	-
			39-8대	133.7	-	-	-
			39-9대	131.3	-	-	-
			39-11대	105.8	-	-	-
			39-16대	73.7	-	-	-
			39-17대	87.9	-	-	-
			39-18대	138.2	-	-	-
			39-19대	26.8	-	-	-
			39-20대	73.7	-	-	-
			39-21대	63.5	-	-	-
			39-22대	77.0	-	-	-
			39-23대	42.6	-	-	-
			39-24대	62.5	-	-	-
			39-28대	23.6	-	-	-
			39-30대	32.4	-	-	-
			39-31대	17.7	-	-	-
			39-32대	38.3	-	-	-
신31	289.9	신계동	3-3대	147.5	185.1	권장	맹지(3-3) 해소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3-5,13)
			3-5대	14.2			
			3-13도	23.4			
			3-4대	104.8	-	-	-

▌전자상가 주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1	4,787.0 (3,577.1)	한강로2가	15-37대	144.3	3,577.1	-	-
		한강로2가	413대	3,432.8		-	-
전3	2,433.4 (939.9)	한강로3가	82대	939.9	-	-	-
전10	3,892.1	원효로3가	53-5대	2,001.1	-	-	-
			53-14내	3.7	-	-	-
			56-4대	1,883.9	-	-	-
			57-2도	3.4	-	-	-

※ 면적에서 ( )는 자구단위계획 구역 내 해당 가구면적임

▌한강로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	2,055.2	한강로1가	250-1대	62.5	172.5	권장	맹지 해소(250-12)
			250-2대	76.0			
		한강로2가	2-199대	34.0			
			2-200대	35.4	76.1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200)
		한강로1가	250-4대	40.7			
			250-3대	38.7	85.3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50-3)
			250-5대	46.6			
			251-1대	56.2	86.0	권장	맹지 해소(251-1)
			252-1대	29.8			
			251-2대	29.8	152.4	권장	맹지 해소 (251-2,5) (국유지 : 252-5)
			252-2대	23.5			
			252-3대	50.9			
			252-4대	44.6			
			252-5대	3.6			
			257-5대	53.9	88.9	권장	맹지 해소(257-5)
			257-7대	35.0			
			257-6대	52.2	78.6	권장	맹지 해소(257-6)
			257-8대	26.4			
			257-11대	41.2	44.1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257-13도	1.0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	2,055.2	한강로1가	97도	1.9			해소(257-13,97)
			257-12대	32.1	54.0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57-12,18,25)
			257-18대	4.3			
			257-25대	17.6			
			253대	314.0	-	-	-
			254-1대	86.9	-	-	-
			254-3대	16.8	-	-	-
			254-4대	94.5	-	-	-
			255대	148.8	-	-	-
			256대	165.3	-	-	-
			257-3대	52.9	-	-	-
			257-9대	253.2	-	-	-
			258-3철	71.7	-	-	-
		한강로2가	2-198철	13.2	-	-	-
한2	1,057.2	한강로1가	274-1대	125.6	211.2	권장	맹지 해소(274-2)
			274-2대	85.6			
			276-3대	110.1	252.5	권장	맹지 해소(276-4,5,8)
			276-4대	33.0			
			276-5대	79.3			
			276-8대	30.1			
			276-9대	205.6	273.4	권장	세장형필지 해소(277-3)
			277-3대	67.8			
			273-2대	122.1	-	-	-
			275대	198.0	-	-	-
한3	1,860.0	한강로1가	289-1대	115.0	211.2	권장	맹지 해소(289-24)
			289-2대	45.0			
			289-4대	51.2			
			289-3대	83.0	143.5	권장	맹지 해소(289-5)
			289-5대	60.5			
			286대	181.8	-	-	-
			287대	127.6	-	-	-
			288대	63.8	-	-	-
			290-1대	72.1	-	-	맹지이나 『주차장법 시행령』 8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290-2대	93.2	-	-	맹지이나 『주차장법 시행령』 8조 부설 주차장 설치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3	1,860.0	한강로1가					의무면제
			290-3대	86.6	-	-	맹지이나 『주차장법 시행령』 8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290-4대	120.0	-	-	맹지이나 『주차장법 시행령』 8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291-1대	196.0	-	-	-
			291-3대	184.1	-	-	-
			292-1대	196.0	-	-	-
			292-3대	184.1	-	-	-
한4	15,449.0	한강로2가	2-244철	2.6	651.0	권장	맹지 해소 (2-244,245,308,311) 세장형 필지 해소(2-421)
			2-245철	2.6			
			2-308철	178.2			
			2-311철	181.5			
			2-420철	198.3			
			2-421철	128.8			
		한강로1가	304-4대	36.8	356.1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304-4)
			305-11대	319.3			
			293-4도	297.6	-	-	구적면적
			299-1도	13.0	-	-	-
			300-2도	28.0	-	-	-
			301-2대	38.2	-	-	-
			302-2대	37.4	-	-	-
			303-2대	127.6	-	-	-
			305-1대	107.2	-	-	-
			305-6대	178.8	-	-	-
			305-7대	164.1	-	-	-
			305-8대	198.3	-	-	-
			305-9대	177.2	-	-	-
			305-10대	430.1	-	-	-
			305-12대	306.1	-	-	구적면적
		한강로2가	2-1대	133.9	-	-	-
			2-2대	84.3	-	-	-
			2-25대	72.7	-	-	-
			2-26대	475.1	-	-	-
			2-29대	53.6	-	-	-
			2-30대	5.0	-	-	-
			2-57대	87.6	-	-	-
			2-89대	3,666.4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4	15,449.0	한강로2가	2-90대	20.2	-	-	-
			2-221철	109.3	-	-	구적면적
			2-288대	116.4	-	-	구적면적
			2-307철	5.8	-	-	구적면적
			2-351대	129.6	-	-	-
			2-352대	116.4	-	-	-
			2-353대	118.3	-	-	-
			2-354대	118.3	-	-	-
			2-389철	151.7	-	-	구적면적
			2-391철	41.9	-	-	구적면적
			417대	6,794.9	-	-	-
			417-1도	34.7	-	-	-
			417-3도	2.2	-	-	-
한5	9,240.3	한강로2가	2-8대	9,240.3	-	-	-
한6	2,795.0	한강로2가	2-11대	1,902.1	-	-	-
			2-131대	451.9	-	-	-
			2-132창	376.8	-	-	-
			2-378대	53.9	-	-	-
			2-392대	10.3	-	-	구적면적
한7	2,888.4	한강로2가	2-36대	1,410.6	-	-	-
			2-37대	1,477.8	-	-	-
한8	2,075.9	한강로2가	312-4대	1,035.6	-	-	구적면적
			314-1대	1,040.3	-	-	-
한9	1,538.3	한강로2가	36-3대	2.5	1,689.7	권장	소유자간 합의
			42대	241.3			
			36-4대	3.1			
			37-2대	360.3			
			38-1대	86.0			
			38-3대	82.6			
			43-2대	177.5			
			38-2도	26.4			
			41대	453.5			
			43-3대	256.5			
			36-1대	105.1	-	-	-
한10	2,445.9	한강로2가	29-1대	296.8	298.8	권장	맹지 해소(29-2)
			29-2대	2.0			
			30-3대	83.6	487.9	권장	세장형필지 해소(30-3)
			31대	404.3			
			35-1대	155.4	162.3	권장	세장형필지 해소(35-6)
			35-6대	6.9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0	2,445.9	한강로2가	35-2대	38.0	106.8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35-2)
			35-3대	68.8			
			28-1대	129.9	-	-	-
			28-2대	172.2	-	-	-
			30-1대	321.3	-	-	-
			32대	342.1	-	-	-
			33대	228.3	-	-	-
			35-4대	196.3	-	-	-
한11	2,852.8	한강로2가	24-2대	74.4	110.4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25-4)
			25-4대	36.0			
			24-4대	51.9	191.7	권장	맹지 해소(25-7)
			25-7대	139.8			
			25-1대	111.3	117.7	권장	맹지 해소(25-8)
			25-8대	6.4			
			18-1대	266.1	-	-	-
			19대	232.4	-	-	-
			21대	339.2	-	-	-
			22대	334.2	-	-	-
			23대	327.3	-	-	-
			24-3도	25.8	-	-	-
			24-5대	118.7	-	-	-
			24-6대	86.9	-	-	-
			25-6도	6.5	-	-	-
			26대	165.3	-	-	-
			26-1대	165.3	-	-	-
			27-1대	81.3	-	-	-
			27-2대	78.0	-	-	-
			27-3대	82.3	-	-	-
			27-4도	27.1	-	-	-
			27-5대	91.6	-	-	-
			27-6도	5.0	-	-	-
한12	4,444.7	한강로1가	221-3대	14.5	47.5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221-3)
			222-2대	33.0			
			221-4대	13.2	67.7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 (221-4,224-7)
			222-3대	34.7			
			224-7대	19.8			
			224-5대	29.7	122.3	권장	건축 가능 면적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2	4,444.7	한강로1가	224-6대	92.6			35㎡미만 필지 해소(224-5)
			225-1대	172.6	-	-	-
			217대	483.3	-	-	-
			218-1대	506.4	-	-	-
			218-2대	416.5	-	-	-
			219대	168.9	-	-	-
			220대	136.8	-	-	-
			221-1도	62.1	-	-	-
			221-2대	119.0	-	-	-
			221-5대	88.9	-	-	-
			221-6대	108.1	-	-	-
			221-7대	129.2	-	-	-
			221-8대	105.8	-	-	-
			222-1도	8.9	-	-	-
			223-1대	138.5	-	-	-
			223-2대	105.4	-	-	-
			224-1대	410.9	-	-	-
			224-2도	59.5	-	-	-
			224-3대	95.9	-	-	-
			224-4대	66.1	-	-	-
			225-2대	46.9	-	-	-
			225-3대	68.8	-	-	-
			227대	116.8	-	-	-
			228대	282.0	-	-	-
			229대	180.0	-	-	-
			230-1대	125.3	-	-	-
			230-2대	4.6	-	-	-
한13	13,159.5	한강로1가	208-1대	250.6	326.0	권장	부정형필지 해소(208-3)
			208-3대	75.4			
			216-12대	377.2	406.0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미만 필지 해소(216-22)
			216-22대	28.8			
			209대	70.4	-	-	-
			210대	182.8	-	-	-
			211-1대	174.5	-	-	-
			212대	297.5	-	-	-
			214대	119.0	-	-	-
			215-1도	25.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3	13,159.5	한강로1가	215-2도	28.8	-	-	-
			215-3대	190.4	-	-	-
			215-5대	126.0	-	-	-
			215-6대	7.9	-	-	-
			216-1대	466.1	-	-	-
			216-2대	253.2	-	-	-
			216-3대	185.8	-	-	-
			216-4도	568.3	-	-	-
			216-5대	232.4	-	-	-
			216-6대	196.7	-	-	-
			216-7대	148.1	-	-	-
			216-8대	157.0	-	-	-
			216-9대	146.1	-	-	-
			216-10대	169.2	-	-	-
			216-11대	368.6	-	-	-
			216-13대	1,024.8	-	-	-
			216-14대	248.9	-	-	-
			216-15대	210.2	-	-	-
			216-16대	191.6	-	-	-
			216-17대	259.8	-	-	-
			216-18대	419.5	-	-	-
			216-19대	411.7	-	-	-
			216-20대	472.7	-	-	-
			216-21대	532.2	-	-	-
		용산동3가	5-1대	1,322.9	-	-	구적면적
			5-2대	82.6	-	-	-
			5-3대	72.7	-	-	-
			5-4대	82.6	-	-	-
			5-5대	80.3	-	-	-
			5-6도	144.8	-	-	-
			5-7대	536.1	-	-	-
			5-8대	677.7	-	-	-
			5-10대	116.7	-	-	-
			5-11대	136.1	-	-	-
			5-15대	238.0	-	-	-
			5-16대	131.9	-	-	-
			5-19대	151.7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3	13,159.5	용산동3가	5-23대	151.1	-	-	-
			5-24대	15.5	-	-	-
			5-29대	13.2	-	-	-
			5-30대	8.3	-	-	-
			5-31대	8.9	-	-	-
			5-32대	13.9	-	-	-
			5-33대	12.6	-	-	-
			5-35대	107.1	-	-	-
			5-38대	108.1	-	-	-
			5-40대	85.3	-	-	-
			5-41도	72.1	-	-	-
			5-42대	94.2	-	-	-
			5-44도	77.1	-	-	-
한14	3,041.2	한강로2가	44-1대	298.1	-	-	-
			44-2대	364.3	-	-	-
			44-3대	2,378.8	-	-	-
한15	1,320.3	한강로2가	45-1대	246.0	-	-	-
			46-1대	163.9	-	-	-
			46-2대	174.1	-	-	-
			47-1대	173.2	-	-	-
			47-2대	17.6	-	-	-
			47-3대	133.6	-	-	-
			48-1대	217.2	-	-	-
			48-2대	194.7	-	-	-
한16	4,573.1	용산동3가	5-14대	21.2	79.4	권장	맹지 해소(5-14)
			6-12대	58.2			
		한강로2가	49-1대	284.0	350.8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49-2) 맹지 해소(49-4)
			49-2대	9.6			
			49-4대	57.2			
			50-2대	136.2	137.5	권장	맹지 해소(50-3)
			50-3대	1.3			
			49-3대	60.5	-	-	-
			49-5대	249.2	-	-	-
			50-1대	200.0	-	-	-
			51-1대	285.6	-	-	-
			51-2대	5.0	-	-	-
			51-3대	15.5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6	4,573.1	한강로2가	51-4대	126.9	-	-	-
			52-1대	361.3	-	-	-
			52-2대	73.4	-	-	-
			52-3대	43.3	-	-	-
			52-4도	331.2	-	-	-
			52-8대	101.2	-	-	-
			53-1대	188.1	-	-	-
			53-4대	42.0	-	-	-
			53-7대	98.5	-	-	-
			53-8대	12.2	-	-	-
			412도	1.2	-	-	구적면적
		용산동3가	5-1대	9.7	-	-	구적면적
			5-13대	162.6	-	-	-
			5-36대	101.8	-	-	-
			6대	44.9	-	-	구적면적
			6-2대	237.4	-	-	-
			6-9도	2.6	-	-	-
			6-10대	194.2	-	-	-
			6-13도	55.2	-	-	-
			6-15대	9.9	-	-	-
			6-16대	405.6	-	-	-
			6-17대	123.0	-	-	-
			6-18대	73.4	-	-	-
			6-19대	44.0	-	-	-
			6-20대	18.8	-	-	-
			6-21도	59.3	-	-	구적면적
			6-22대	130.9	-	-	-
			6-23대	84.6	-	-	-
			6-24대	51.0	-	-	구적면적
			6-25대	1.4	-	-	구적면적
한17	3,120.6	한강로2가	93-1대	159.6	322.6	권장	맹지 해소(93-2)
			93-2대	163.0			
			93-3대	192.1	374.6	권장	맹지 해소(93-3)
			93-4대	100.5			
			93-5대	82.0			
			95-2대	61.8	190.7	권장	세장형 필지 해소(95-3)
			95-3대	128.9			
			96-2대	96.8	175.5	권장	맹지 해소(96-2)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7	3,120.6	한강로2가	96-3대	78.7			
			88대	214.9	-	-	-
			89대	306.4	-	-	-
			90대	298.9	-	-	-
			92-1대	342.1	-	-	-
			94-1대	335.2	-	-	-
			95-1대	191.4	-	-	-
			96-1대	163.0	-	-	-
			97-1대	95.9	-	-	-
			97-2대	109.4	-	-	-
한18	1,322.3	한강로2가	85대	298.5	-	-	-
			86-1대	126.9	-	-	-
			86-2대	19.8	-	-	-
			86-3대	146.8	-	-	-
			87-1대	283.0	-	-	-
			87-2대	112.4	-	-	-
			87-3대	171.6	-	-	-
			87-4대	83.6	-	-	-
			87-8대	79.7	-	-	-
한19	3,071.0	한강로2가	98-1대	72.1	-	-	-
			98-2대	134.2	-	-	-
			98-3대	250.3	-	-	-
			98-4대	68.8	-	-	-
			99-1대	51.2	-	-	-
			99-2대	89.9	-	-	-
			99-3대	60.5	-	-	-
			99-4도	28.4	-	-	-
			99-5대	49.6	-	-	-
			99-7대	55.5	-	-	-
			100-2도	46.3	-	-	-
			100-3대	46.3	-	-	-
			100-4대	67.1	-	-	-
			100-5대	61.5	-	-	-
			101대	1,580.8	-	-	-
			105-2대	73.7	-	-	-
			105-3대	189.1	-	-	-
			106-1대	113.0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19	3,071.0	한강로2가	106-5도	32.7	-	-	-
한20	1,322.4	한강로2가	83-2대	85.0	215.6	권장	맹지 해소(83-2)
			84-5대	130.6			
			83-1대	453.5	-	-	-
			83-3도	8.3	-	-	-
			83-4대	224.8	-	-	-
			84-1대	73.4	-	-	-
			84-2도	48.3	-	-	-
			84-6대	74.7	-	-	-
			84-7대	223.8	-	-	-
한21	3,041.2	한강로2가	109-1대	102.5	335.8	권장	맹지 해소(109-2,3,7)
			109-2대	106.4			
			109-3대	96.8			
			109-7대	30.1			
			107-1대	114.4	-	-	-
			107-2대	193.1	-	-	-
			107-3대	225.1	-	-	-
			107-5대	126.6	-	-	-
			107-7대	196.2	-	-	-
			107-9대	34.7	-	-	-
			107-10대	147.5	-	-	-
			107-12대	68.4	-	-	-
			107-13대	57.2	-	-	-
			107-14도	2.6	-	-	-
			107-15도	0.9	-	-	-
			108-1대	329.9	-	-	-
			108-2대	140.5	-	-	-
			108-3대	189.4	-	-	-
			109-4대	318.3	-	-	-
			109-8대	5.3	-	-	-
			110대	467.0	-	-	-
			111-1대	88.3	-	-	-
한22	1,322.4	한강로2가	81-1대	157.7	-	-	-
			81-2대	223.5	-	-	-
			81-3대	176.6	-	-	-
			81-5대	102.8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2	1,322.4	한강로2가	81-6대	100.8	-	-	-
			82-1대	384.1	-	-	-
			82-2대	176.9	-	-	-
한23	3,071.0	한강로2가	116-1대	44.0	202.1	권장	맹지 해소(116-1,2,3)
			116-2대	51.6			
			116-3대	48.3			
			116-4대	58.2			
			117-3대	56.2	99.2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미만 필지 해소(117-4)
			117-4대	43.0			
			112-1대	175.5	-	-	-
			112-2대	617.5	-	-	-
			112-3대	254.8	-	-	-
			113-1대	145.1	-	-	-
			113-2대	177.3	-	-	-
			114-2대	144.5	-	-	-
			114-3대	117.4	-	-	-
			114-5도	17.5	-	-	-
			114-7대	45.6	-	-	-
			115-1대	247.9	-	-	-
			115-2대	86.0	-	-	-
			116-5대	138.5	-	-	-
			117-1대	102.5	-	-	-
			117-2대	119.0	-	-	-
			117-5도	13.2	-	-	-
			119대	367.4	-	-	-
한24	1,811.5	한강로2가	77-1대	494.8	-	-	-
			77-2대	328.3	-	-	-
			78-1대	352.4	-	-	-
			79-1대	163.0	-	-	-
			79-2대	142.8	-	-	-
			80-2대	330.2	-	-	-
한25	2,145.7	한강로2가	123-1대	157.4	367.9	권장	맹지 해소(132,133)
			133대	167.9			
			132대	42.6			
			126대	17.5	190.1	권장	세장형필지 해소(126)
			127-1대	172.6			
			127-3대	36.4	68.8	권장	맹지 해소(139-2) 건축 가능 면적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5	2,145.7	한강로2가	139-2대	31.7	68.8	권장	35㎡미만 필지 해소(141)
			141대	0.7			
			131대	48.6	387.9	권장	맹지 해소 (131,134-1,135-1,3)
			134-1대	81.0			
			135-1대	69.8			
			135-3대	9.6			
			136-1대	178.9			
			137-1대	126.9	281.3	권장	맹지 해소(137-3,138)
			137-3대	73.7			
			138대	80.7			
			123-2대	78.0	-	-	-
			123-3대	100.2	-	-	-
			123-4대	92.6	-	-	-
			124-1대	64.8	-	-	-
			124-2대	64.8	-	-	-
			124-3대	198.0	-	-	-
			127-2대	51.6	-	-	-
			140대	199.7	-	-	-
한26	1,305.8	한강로2가	121-1대	113.4	-	-	-
			121-3대	128.9	-	-	-
			121-4대	132.6	-	-	-
			121-5대	105.8	-	-	-
			121-6대	241.0	-	-	-
			122-1대	1.0	-	-	-
			122-5대	428.7	-	-	-
			122-6대	56.2	-	-	-
			122-7대	98.2	-	-	-
한27	9,876.8	한강로2가	73-1대	298.5	324.6	권장	맹지 해소(73-9) 건축 가능 면적 35㎡미만 (75-2,5,7)
			73-9대	12.6			
			75-2도	5.6			
			75-5대	3.6			
			75-7도	4.3			
			73-4대	82.0	126.0	권장	맹지 해소(73-11)
			73-11대	44.0			
			73-6대	122.3	229.4	권장	맹지 해소(73-8)
			73-8대	107.1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7	9,876.8		66-1대	377.2	486.0	권장	맹지 해소(6-34)
		용산동3가	6-34대	108.8			
			6-26대	46.3	109.5	권장	건축 가능 면적 35㎡미만 필지 해소(6-26) (구적면적 : 6-27)
			6-27대	63.2			
			6-33대	41.0	535.5	권장	맹지 해소(6-33)
		한강로2가	65대	494.5			
		용산동3가	6-3대	230.4	-	-	-
			6-5대	93.2	-	-	-
			6-6대	96.5	-	-	-
			6-7대	101.8	-	-	-
			6-8대	49.2	-	-	-
			6-21도	70.3	-	-	구적면적
			6-28대	114.4	-	-	-
			6-29대	80.0	-	-	-
			6-30대	99.6	-	-	-
			6-31대	85.6	-	-	-
			6-32대	55.2	-	-	-
			6-36대	75.7	-	-	-
		한강로2가	60대	63.6	767.9	권장	맹지 해소(61)
			61대	704.3			
			61-1대	5.1	104.3	권장	맹지 해소(61-1)
			62-1대	99.2			
			55종	3,335.1	-	-	-
			61-2대	275.1	-	-	-
			62-2대	99.2	-	-	-
			63대	247.9	-	-	-
			64대	623.5	-	-	-
			68대	108.1	-	-	-
			69대	28.6	-	-	-
			70대	227.8	-	-	-
			71대	502.3	-	-	-
			73-3대	194.1	-	-	-
			73-5대	12.9	-	-	-
			73-10도	5.0	-	-	-
			74-2대	157.0	-	-	-
			74-3대	149.1	-	-	-
			76-2대	76.0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28	2,128.9	한강로2가	142대	2,128.9	-	-	-
한29	5,643.9	용산동5가	2-2대	3,871.4	-	-	-
			2-6대	121.0	-	-	-
			2-28대	1,085.3	-	-	-
			2-29대	202.3	-	-	-
			2-30대	363.9	-	-	-
한30	2,602.5	한강로2가	2-42철	52.9	294.1	권장	중로1-4호선(장기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맹지 해소 (2-42,44, 4-5,8)
			2-43철	92.8			
			2-44대	134.5			
			4-5철	7.6			
			4-8대	6.3			
			2-45철	36.0	205	권장	중로1-4호선(장기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맹지 해소 (2-45, 2-399)
			2-217철	102.5			
			2-399철	66.5			
			2-46철	74.4	254.7	권장	중로1-4호선(장기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맹지 해소 (2-46, 2-184, 2-400) 필지 분할 가능선(2-293)
			2-184대	90.5			
			2-219철	19.9			
			2-293철	18.3			
			2-400철	51.6			
			2-47철	102.8	262.6	권장	중로1-4호선(장기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맹지 해소 (2-47, 2-401, 2-393) 필지 분할 가능선(2-293) 구적면적(2-393)
			2-293철	54.4			
			2-393철	20.8			
			2-401철	84.6			
			2-343철	33.3	397.2	권장	중로1-4호선(장기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맹지 해소 (2-40, 2-41, 3-2, 3-3, 3-4, 4-15, 4-16)
			2-40철	11.6			
			2-41철	30.7			
			3-1철	126.9			
			3-2철	4.0			
			3-3대	10.2			
			3-4철	3.0			
			4-1철	58.2			
			4-15철	32.7			
			4-16철	15.9			
		한강로1가	246-2대	51.8			
			247-2대	18.9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한30	2,602.5	한강로2가	2-221철	82.8	-	-	구적면적
			2-291철	6.2	-	-	-
			2-294철	103.0	-	-	-
			2-297철	107.8	-	-	-
			2-298철	106.2	-	-	-
			2-301철	113.4	-	-	-
			2-302철	88.0	-	-	-
			2-305철	88.3	-	-	-
			2-306철	90.1	-	-	-
			2-405철	21.0	-	-	-
			2-406철	20.2	-	-	-
			2-407철	20.1	-	-	-
한31	6,497	한강로2가	143-1대	66.1	-	-	-
			143-3대	119	-	-	-
			143-4대	45.3	-	-	-
			143-5대	52.9	-	-	-
			143-6도	8.6	-	-	-
			143-7대	13.2	-	-	-
			143-8대	13.2	-	-	-
			144-1대	70.4	-	-	-
			144-2대	262.85	-	-	-
			145-1대	73	-	-	-
			146-1대	119.7	-	-	-
			146-3대	39.7	-	-	-
			147대	527.6	-	-	-
			148-1대	105.8	-	-	-
			148-2대	49.6	-	-	-
			148-3대	145.5	-	-	-
			148-4대	62.8	-	-	-
			148-6대	86	-	-	-
			148-7대	66.1	-	-	-
			148-8대	69.4	-	-	-
			148-9대	101.5	-	-	-
			149대	163.7	-	-	-
			151대	246.99	-	-	-
			152-1대	182.16	-	-	-
			152-2대	149.39	-	-	-
			153-10대	43	-	-	-
			153-1대	10.2	-	-	-
			153-2대	29.8	-	-	-
			153-3대	26.4	-	-	-
			153-4대	23.1	-	-	-
			153-5대	40	-	-	-
			153-6도	49.6	-	-	-
			412도	605.81	-	-	구적면적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권장용도 : 변경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4	문배동 업무지구 및 문배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5	신계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6	한강로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8	전자상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 전자관련 소매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용적률 완화 세부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참조)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4	문배동 업무지구 및 문배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5	신계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신산업용도(ICT 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스타트업지원시설 등)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6	한강로 지구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저층 (3층이하)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서점, 표구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화가의 거리 지역특성 유지를 위한 용도)	한강대로, 화가의 거리
8	전자상가 주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 전자관련 소매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적용범위 변경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 (용적률 완화 세부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참조)

2) 불허용도 : 변경

▌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일반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폐율 계획(변경)

▌기정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도시계획조례」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변경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적용범위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문배4지구)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건립시 건폐율 체계는「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시행
※「도시계획조례」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2)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한강로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
	이면부	2종	170%	200%	250%	-
		3종	210%	250%	300%	-
		일반상업 (이면부/간선부)	400 / 600%	600 / 800%	1,000%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문배지구	백범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
	이면부	3종	210%	250%	300%	-
신계지구	원효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
	청파로변	준주거	300%	360%	400%	-
	이면부	2종	170%	200%	250%	-
		3종	210%	250%	300%	-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 (이면부/간선부)	400 / 600%	600 / 800%	1,000%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3종	210%	250%	300%	-

▌변경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한강로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이면부	2종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3종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일반상업 (이면부/간선부)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문배지구	백범로변	일반상업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이면부	3종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신계지구	원효로변	일반상업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청파로변	준주거	400%	44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이면부	2종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3종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전자상가 주변지구		일반상업 (이면부/간선부)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3종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문배4지구)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건립시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시행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한시적 용적률 완화(50%p 이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8.)에 따른 허용용적률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하는 시행령 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단, 본 내용은 서울시 관련 심의 및 고시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한다.)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기정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문배지구	간선도로변	• 100m 이하	-
한강로지구	한강로변	• 100m 이하(건축심의시 우수디자인 인정 시 120m 이하) • 일부 선형필지 및 주거지역 : 70, 80m 이하	-
	백범로변	• 70m 이하	-
	이면부(주거지역)	• 40m 이하	-
신계지구	원효로변	• 100m 이하	-
	이면부	• 40m 이하	-
전자상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 100m 이하	-
	주거지역	• 40, 80, 100m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높이계획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높이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조 적용(단, 옥상광고물 설치 불가)

▌변경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문배지구	간선도로변	• 100m 이하	-
	역세권활성화 사업	• 최고높이 135m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5 준용
한강로지구	한강로변	• 100m 이하(건축심의시 우수디자인 인정 시 120m이하) • 일부 선형필지 및 주거지역 : 70, 80m 이하	-
	백범로변	• 70m 이하	-
	이면부(주거지역)	• 40m 이하	-
신계지구	원효로변	• 100m 이하	-
	이면부	• 80m 이하	-
전자상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 100m 이하	-
	주거지역	• 40, 80, 100m 이하	

※ 특별계획구역 높이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획지선의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최고높이가 적용될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 제1,2종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는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제한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132m를 초과하는 건축물(옥탑높이 포함)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선(변경)

▌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변경

구분	적용위치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벽면한계선 (저층부)	백범로90다길변	3m	• 중로3-4 • 지상1층, 유효높이 6m이상

※「백범로변(대로1-1)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삼각지 고가차도와 연계를 위해 공중보행로 설치 가능
(단, 공중보행로 설치여부 및 설치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삼각지 고가차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벽면한계선 (저층부)	벽면한계선 3m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가로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벽면한계선 결정

2) 대지안의 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침상형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으로 접근 가능하며 24시간 개방구조 • 필로티 구조 시 유효높이 지상 6m 이상 확보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삼각맨션부지, 신용산역 북측 ②특별계획구역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보차혼용통로		신계지구14, 한강로지구4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기정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
	1층 바닥높이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 (경사지의 경우 보도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 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측면공지 차폐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
	조명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 · 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권장
		한강대로변/ 용산공원 연접부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권장
	1층 바닥높이	전구역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보도/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건축물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권장
		용산공원 연접부	• 원색, 고채도 색상 사용 지양, 자연색 또는 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채색, 투명재료 활용 권장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공원변으로 전선, 옥상설비 등 부속 시설의 직접적 외부 노출을 지양,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디자인, 식재 등으로 차폐 권장 • 단순 페인트 마감 지양, 재료 고유의 특징을 활용한 입면디자인 권장	권장
	측면공지 차폐	전구역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 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권장
	건축물 입면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청파로변)	• 건축물 장변에 대한 입면 폐쇄감을 줄이기 위해 청파로변 동서방향 보행축 입구의 개방감 있는 디자인 계획	의무
기타	옥외광고물	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권장
	조명	전구역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이상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재료/색채 권장사항 변경	• 용산공원 인접지역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권장 추가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계획내용 변경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환경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준수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

다.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강대로의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확보를 통해 남산 조망과 광역통경축 확보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한양도성~한강~여의도를 잇는 신도심으로서 매력있는경관 형성	전구역	• 매력있고 상징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상징성 부여	-
	한강변	• 한강중심의 열린경관 형성	-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경관자원과 지역자산을 배려하는 경관관리	경부선, 한강, 용산공원 연접부	• 경의선 숲길, 한강, 용산공원 연계 광역 보행녹지축 조성	-
	용산공원 연접부	• 용산공원, 남산의 조망확보를 위한 높이관리 및 통경축 확보	-
	경부선 연접부	•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경부선 녹지축변 경관관리	-
걸을수록 매력있고,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전구역	• 한강~용산공원~남산 연계 보행네트워크 조성	-
		• 보행자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 옛길, 지역자산을 고려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전구역	• 한강대로변, 한강변 건물의 야간조명 설치 유도 - 벽면을 비추는 상향식 야간조명 •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7,025.2	감)6,497	190,528.2	-
기정	⑯→⑰	신계주택재개발 특별계획구역	58,735	-	58,735	사업완료
기정	⑰→⑱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A	8,212.1	-	8,212.1	사업완료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B	13,368	-	13,368	사업완료
기정	⑱→⑲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8,671.1	-	8,671.1	사업완료
기정	⑲→⑳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20,860	-	20,860	계획수립중
기정	⑳→㉑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40,547	-	40,547	계획결정
해제	-	용산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	6,497	감)6,497	-	해제
기정	㊴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1	14,057	-	14,057	계획결정
기정	㊵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2	22,380	-	22,380	계획결정
기정	㊻	대학생연합 기숙사부지 특별계획구역	3,698	-	3,698	계획결정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표시 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해제	-	용산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감)6,497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구심체 부재 및 건축물 용도변경(주거용도 → 일반음식점) 증가 추세 • 옛 도시조직(가로망)의 보존 및 주민 대다수 해제 요청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해제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단계 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신계주택재개발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⑯→⑰	신계주택재개발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신계동 1-313 일대	58,735	-	58,735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현재 :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상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250%까지 가능)	-
높이	• 최고높이 25층(75m)이하	-
토지이용	• 주거(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공공시설 계획	• 공공용지 부담률 : 17.2% 이상 - 도로, 근린공원(15,000㎡), 철도 변 완충녹지 설치·조성 후 공용화 조치 제공	-
기타	• 순교성지는 존치 • 신계주택재개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5호(2004.7.15.) 결정사항 준용	-

2)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A, B(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⑯→⑰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A	용산구 문배동 24-21 일대	8,212.1	-	8,212.1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B	용산구 문배동 24-6 일대	13,368	-	13,368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지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노선상업), 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일반주거지역 일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방화지구		-
가구 및 획지	• 5,000 ~ 13,000㎡ 이상 권장		-
용적률	A, B BLOCK	• 기준 용적률 : 250% 이하 • 허용 용적률 : 350% 이하 • 상한 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0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
높이	A, B BLOCK	• 최고높이 100m 이하	-
토지이용	A, B BLOCK	• 복합용도, 공원 등	-
건축선	A, B BLOCK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1 ~ 2m	-
공공시설계획	• 공공용지 부담률 : 20.1% 이상 - 도로, 보행자전용도로(6m), 소공원 등 설치·조성 후 공용화 조치 제공		-
기타	•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84호(2003.6.30.) 결정사항 준용		-

3)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⑱→⑲	용산초교 주변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산구 한강로2가 2-305일대	8,671.1	-	8,671.1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지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 경관지구, 방화지구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68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적용	-
높이		• 최고높이 120m이하	-
용도	지정	•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하1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설치	-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운동시설 •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	-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 장례식장 • 창고시설 • 교정시설 • 공장	-
건축선		• 백범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6m	-
보차혼용통로		• 대상지 북측 건축한계선(6m)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차혼용통로 조성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율 - 공공시설(도로) 18.7% 이상 : 대상지 내 중로 1-4호선 일부개설(B : 6m) - 장기전세주택 무상양여 지분 15.5%이상 ※ 장기전세주택 지분은 세부개발계획 건축계획(안)에 의해 산출된 수치로서 향후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백범로 변경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선(백범로)에서 2m이상 확폭 여유분 확보 • 단지내 진입도로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보(최소 6m 이상) • 용산초교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시행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2010.7.14.)을 득해 사업추진 중으로 자문된 사항에 따라 사업시행	-

4)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⑲→⑳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1가 231-22 일대	20,860	-	20,860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계획 수립중

▌ 계획지침(변경)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 rowspan="2">비고</th></tr>
<tr><th colspan="2">기 정</th><th>변 경</th></tr>
<tr><td>용도지역 ·지구</td><td colspan="2">• 현재 : 일반상업지역 및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방화지구</td><td>좌동</td><td>-</td></tr>
<tr><td>건폐율</td><td colspan="2">• 60% 이하</td><td>좌동</td><td>-</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 rowspan="2">획지 ①
(16,920㎡)</td><td>일반상업지역</td><td>준주거지역</td><td rowspan="2">좌동</td><td rowspan="3">-</td></tr>
<tr><td>기준 : 600% 이하
허용 : 800% 이하
상한 : 1,000% 이하</td><td>기준 : 260% 이하
허용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td></tr>
<tr><td colspan="3">※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가중평균 하였으며, 기반시설 변경시 용적률은 재산정하여야 함</td></tr>
<tr><td>획지 ②
(한전부지
:3,940㎡)</td><td colspan="2">기준 : 250% 이하
허용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td><td>일반상업지역
기준 : 600% 이하
허용 : 800% 이하
상한 : 1,000% 이하</td><td>준주거지역
기준 : 250% 이하
허용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td></tr>
<tr><td>높이</td><td colspan="2">• 최고높이 100m이하
※ 우수디자인 인정 시 최고높이 120m 이하로 완화</td><td colspan="2">•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td><td>-</td></tr>
</table>

용도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장례식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공장	좌동	-
	권장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좌동 • 한강대로변(저층부) - 서점, 표구점, 전시장	
건축선		• 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5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2, 3m	좌동	-
공개공지		• 삼각지역 인근 침상형 공개공지 위치지정(지하철과 연계 검토) • 대상지 남측 한강로변 개방형 공개공지 위치지정(소공원 형태로 조성) • 간선가로변 및 공원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세부개발계획시 보행통로(동 · 서축으로 최소폭 3m 이상) 및 통경축 확보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대상지 북측 삼각지역 인근 침상형 공개공지 위치지정(지하철과 연계검토) • 대상지 남측 획지① 과 ② 사이 삼각지역 인근 침상형 공개공지 위치지정(지하철과 연계검토) • 간선가로변 및 공원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한강대로와 이면부 주택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	• 한강대로와 이면부 주택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율 : 획지① - 10%이상, 획지② - 15%이상 • 현황 7~8m인 도로를 12m로 확폭하며 공원 또는 광장의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확정하나 대상지 북측지역에 권장	좌동	-
기타		• 세부개발계획 시 획지①과 획지②(한전부지)는 정형화가 필요한바 대토 등을 통하여 정형화 할 것 • 주거비율은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기준이하로 제한 (상항용적률은 주거·비주거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역세권 장기전세 및 다른 도시계획에 의한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름) • 세부개발계획시 높이계획은 남산경관, 용산공원 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이내에서 조정 가능 • SHIFT등 주택사업 추진시에도 기반시설계획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이행하며, 높이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높이계획을 따름	• 세부개발계획 시 획지①과 획지②(한전부지)는 정형화를 검토하되, 획지1(남측부지)과 획지2(한전부지) 대토불가 시 별도대안 검토가능 • 주거비율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또는 관련계획에 따른 기준 • 세부개발계획시 높이계획은 남산경관, 용산공원 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이내에서 조정 가능 • SHIFT등 주택사업 추진시에도 기반시설계획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이행하며, 높이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높이계획을 따름	-

5) 한강로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⑳→㉑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1가 158 일대	40,547	-	40,547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지구	• 일반상업지역 및 제2,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전쟁기념관 전면부(보훈청이전 예정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방화지구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일반상업 지역	• 기준 용적률 : 600% 이하 • 허용 용적률 : 800% 이하 • 상한 용적률 : 1,000% 이하 ※ 주거복합 건립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따름			-
	준주거 지역	이태원로 남측부지	• 기준 용적률 : 200% 이하 • 허용 용적률 : 330% 이하 •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주거 비율은 상한용적률의 250% 이하		
		보훈청이전 예정부지	• 기준 용적률 : 250% 이하 • 허용 용적률 : 350% 이하 •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기정		변경	-
	이태원로 남측부지	• 최고높이 100m 이하 ※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120m 이하로 완화 적용		•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보훈청이전 예정부지	• 6층 이하			
건축물 용도	이태원로 남측부지	불허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 창고시설 • 교정시설 • 공장		-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보훈청이전 예정부지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선	• 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 2, 3m • 전면공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문 등의 관리) 준용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공개공지	• 보훈청 이전예정부지 내 공개공지 조성시 전쟁기념관 전면공원과 연계 • 삼각지역 인근으로 공개공지 위치지정 • 간선가로변 및 공원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율 : 전체부지의 15.0% 이상(5,920㎡ 이상) - 대상지 북측 중로1-2호선 개설 (B : 20m) - 현황도로 : 11m ⇒ 15m, 10m ⇒ 12m로 확폭 - 전쟁기념관 전면 공원조성 (전쟁기념관 및 호국공원과 연계되도록 조성) - 이태원로 남측부지에 파출소(1층, 200㎡) 설치 • 보훈청 이전 예정부지 : 2,300㎡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	• 이태원로로 분리된 지역을 감안하여 이태원로 남측지역과 이태원로 북측지역(종전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 • 이태원로 남측지역과 북측지역의 토지등 소유자 수에 비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며, 각 지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	-
기타	• 보훈청 이전부지 및 이태원로 남측부지는 국가상징거리의 경관 상 주요지점이므로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현상설계 등의 건축계획 관리 대상임 • 세부개발 계획시 높이계획은 남산경관, 용산공원 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신설 보훈청사는 조합에서 신축하여 보훈청에 기부채납 (보훈청과 사전협의하여 보훈청사 신축) • 이태원로 남측부지로 이전되는 파출소는 관할 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설치 • 전쟁기념관 전면부와 통합개발 무산시에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완화,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해제 • 대상지 내의 BOO는 존치	-

(이 하 여 백)

6)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1,2(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㊴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1	용산구 한강로2가 2-5 일대	14,057	-	14,057	서울시고시 제2015-201호 (2015.7.9.)	계획 결정
	㊵	신용산역 북측 특별계획구역 2	용산구 한강로2가 2-194 일대	22,380	-	22,380	서울시고시 제2015-201호 (2015.7.9.)	계획 결정

▌계획지침(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정비계획 내용을 따름

(이 하 여 백)

7) 대학생연합 기숙사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⑯	대학생연합 기숙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3,698	-	3,698	서울시고시 제2022-511호 (2022.12.22.)	계획 결정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방수설비) 공간적 범위 결정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용적률 : 200% 이하 • 허용 용적률 : 20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허용 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이하 ※ α : 공공시설을 제공(기부채납)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높이	• 최고높이 55m 이하		-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놀이형 시설	-
	불허	• 지정용도 외 불허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소로2-6호 선변 : 2m	-
	벽면한계선	• 욱천 고가도로변 : 5m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용도지역 변경(1단계) 상향 기준 : 10%이상		-

6.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공통사항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기준용적률×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시장의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 생태도심	입체녹지조성	기준용적률×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상 인정 한도 이상 설치시
	공공보행통로설치	기준용적률×0.03	• 공공보행통로에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적용 불가

※ 계획기준 준수 시 적용 가능한 다음의 항목은 해당 인증기관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지열 등 신재생 세부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을 결정해야하는 다음의 항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서면동의를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결정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인센티브에 에너지 설치, 저영향개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입체녹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 적용 가능)
- UAM시설,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특색있는 건축설계,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역사문화 특성 보전,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절차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가능 (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공시설등 제공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 '권역별생활서비스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 적용) ②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임대주택 건립 시	• 관련법률 및 조례,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용적률계획 일괄재정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13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	-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출입구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 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 완화량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시	• 적용대상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 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되,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공개공지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
친환경항목 적용시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다만,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table>
<tr><th>구 분</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친환경항목
적용 시</td><td>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
<tr><th>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h>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
<table>
<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
<tr><td>완화
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td><td>
<table>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d></tr>
<tr><th>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h>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d><td>
<table>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td></tr>
</table>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td><td>-</td></tr>
<tr><td>특별건축구역
도입시</td><td>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 건축물에 대해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을 적용
</td><td>-</td></tr>
<tr><td>지능형건축물
인증 시</td><td>
• 적용대상 : 「건축법」 제65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인증 기준이 고시된 건축물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지능형건축물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관 :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인증등급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 colspan="2">심사기준</td><td>90%
이상 득점</td><td>85% 이상
90% 미만</td><td>80% 이상
85% 미만</td><td>75% 이상
80% 미만</td><td>70% 이상
75% 미만</td></tr>
<tr><td colspan="2">각 분야별
과락점수</td><td>85% 미만</td><td>80% 미만</td><td>75% 미만</td><td>70% 미만</td><td>65% 미만</td></tr>
<tr><td rowspan="3">심사총평</td><td>비주거</td><td colspan="5">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6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주거</td><td colspan="5">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복합건축물</td><td colspan="5">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td></tr>
</table>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table>
<tr><th>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건축기준
완화 비율</td><td>15%</td><td>12%</td><td>9%</td><td>6%</td><td>0%</td></tr>
</table>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td><td>-</td></tr>
</table>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등 설치·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규정은 허용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을 더하여 상한용적률로 산정
※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적정성 등 검토
※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세부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및 서울시 관련지침의 내용을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1) 차량동선(변경)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전구역(도면참조)	• 간선도로 및 모퉁이변에 지정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필지[차량진출입 불허구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행동선(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 옛 도시조직(옛 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피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
보차혼용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이 하 여 백)

2.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기준

1.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4조를 준용함.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4.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5.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8.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9.「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5-1-2.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총량 및 공공기여 세부내역의 변경
10.「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4-1-2.에 따라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총량 범위 내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11.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이 하 여 백)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 여 백)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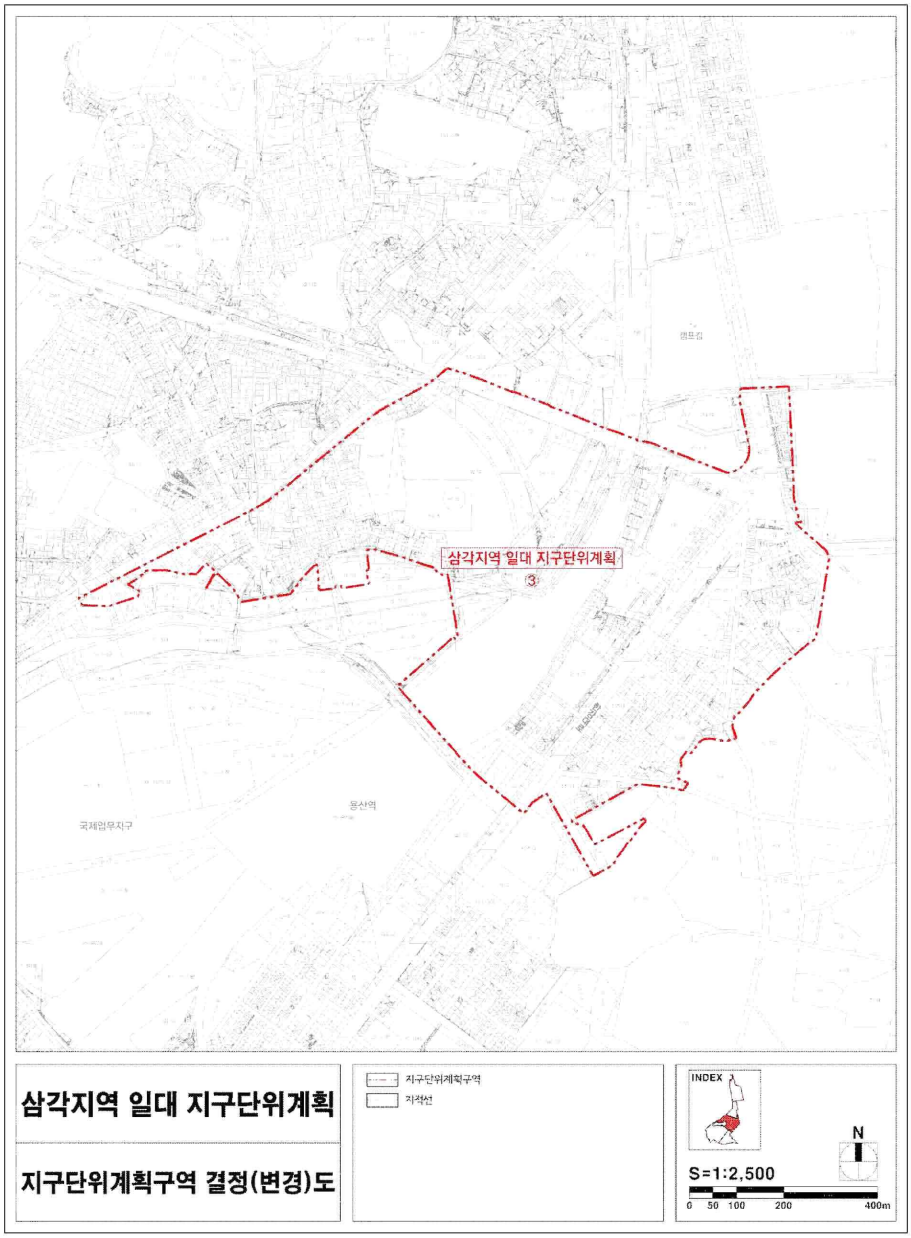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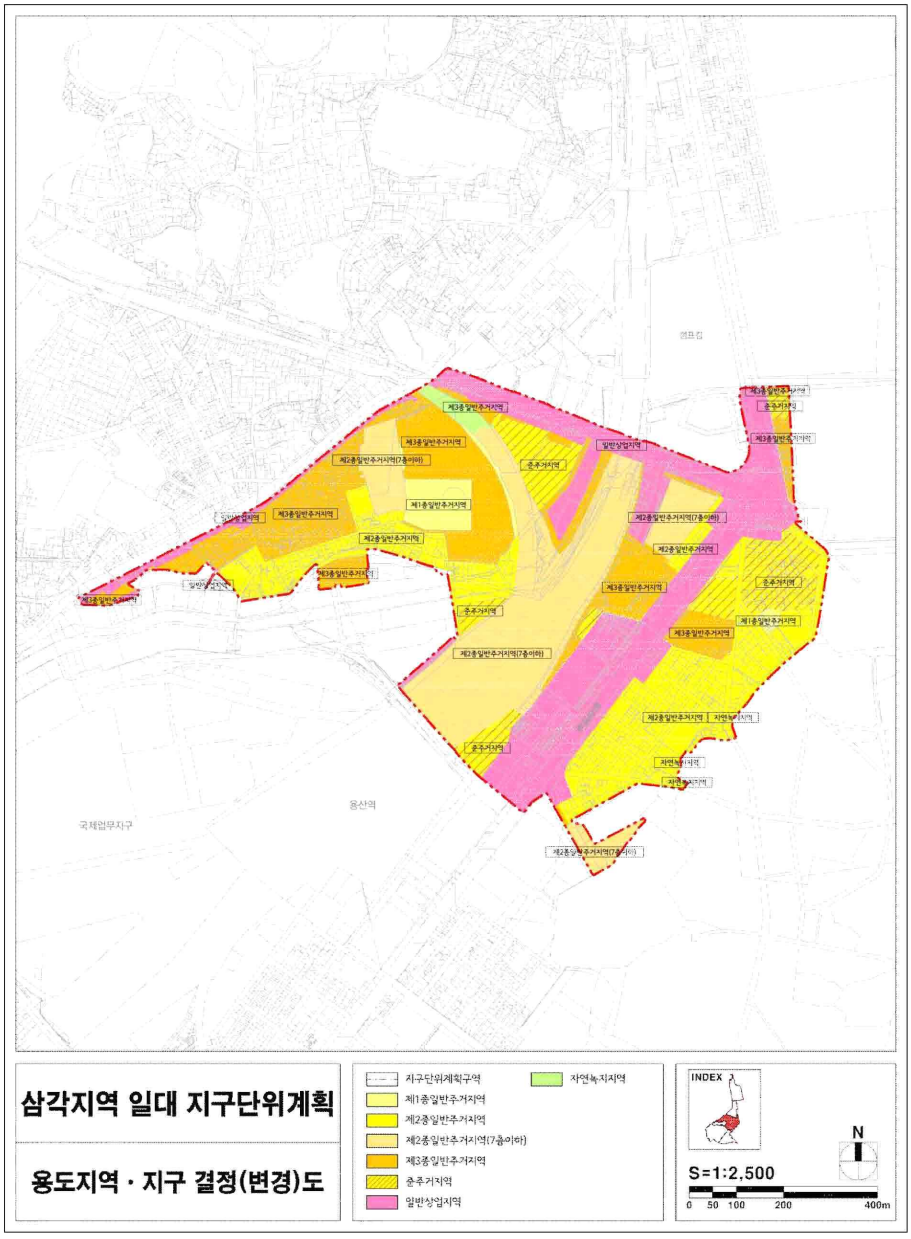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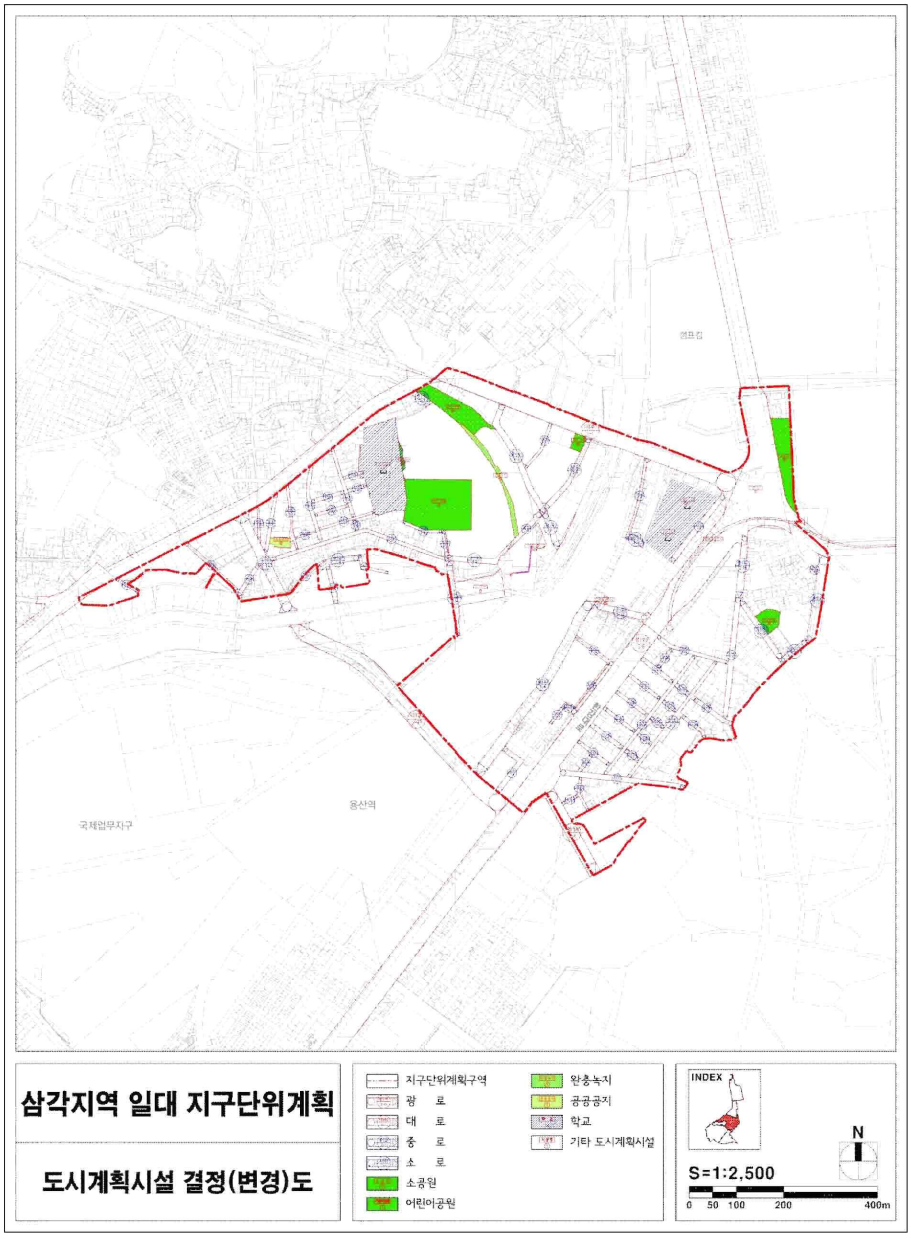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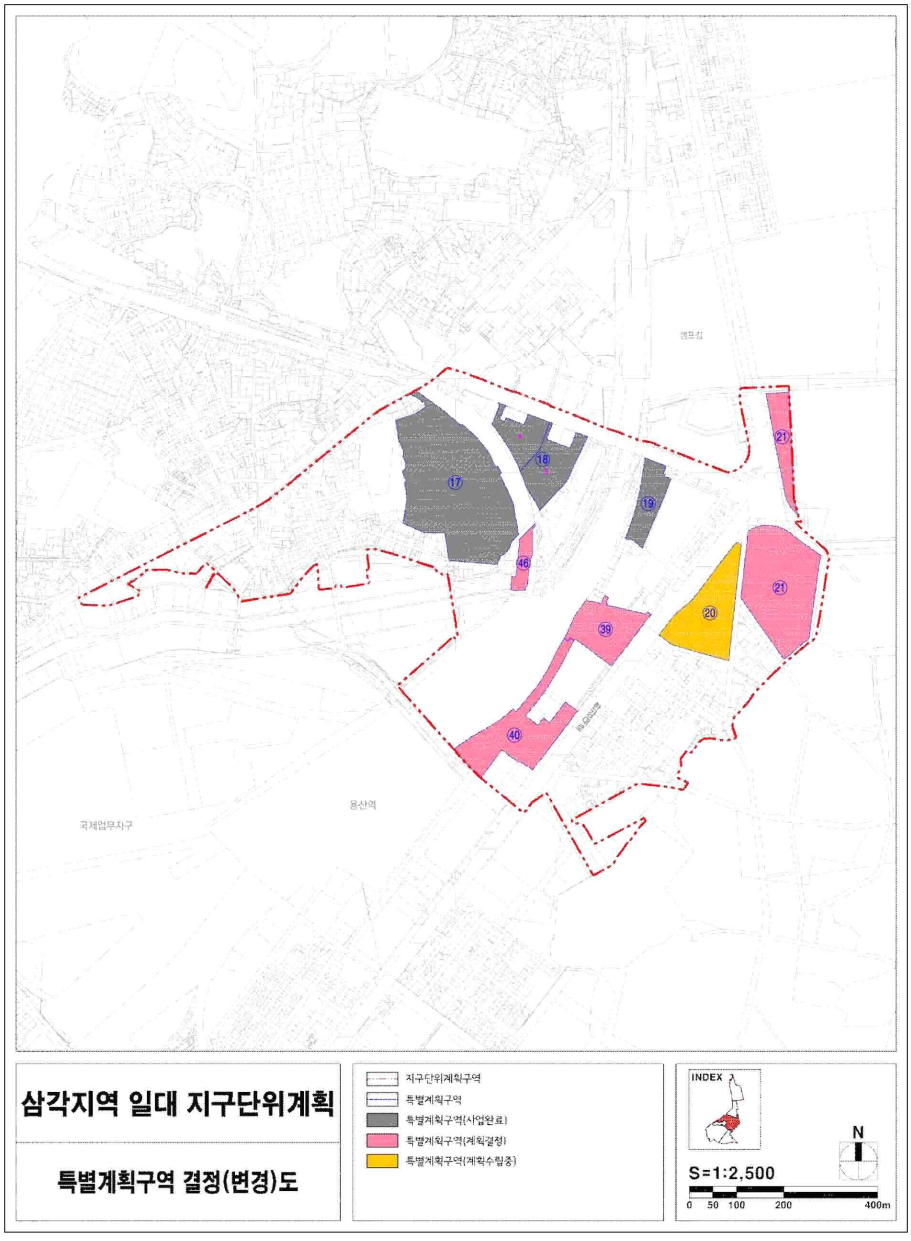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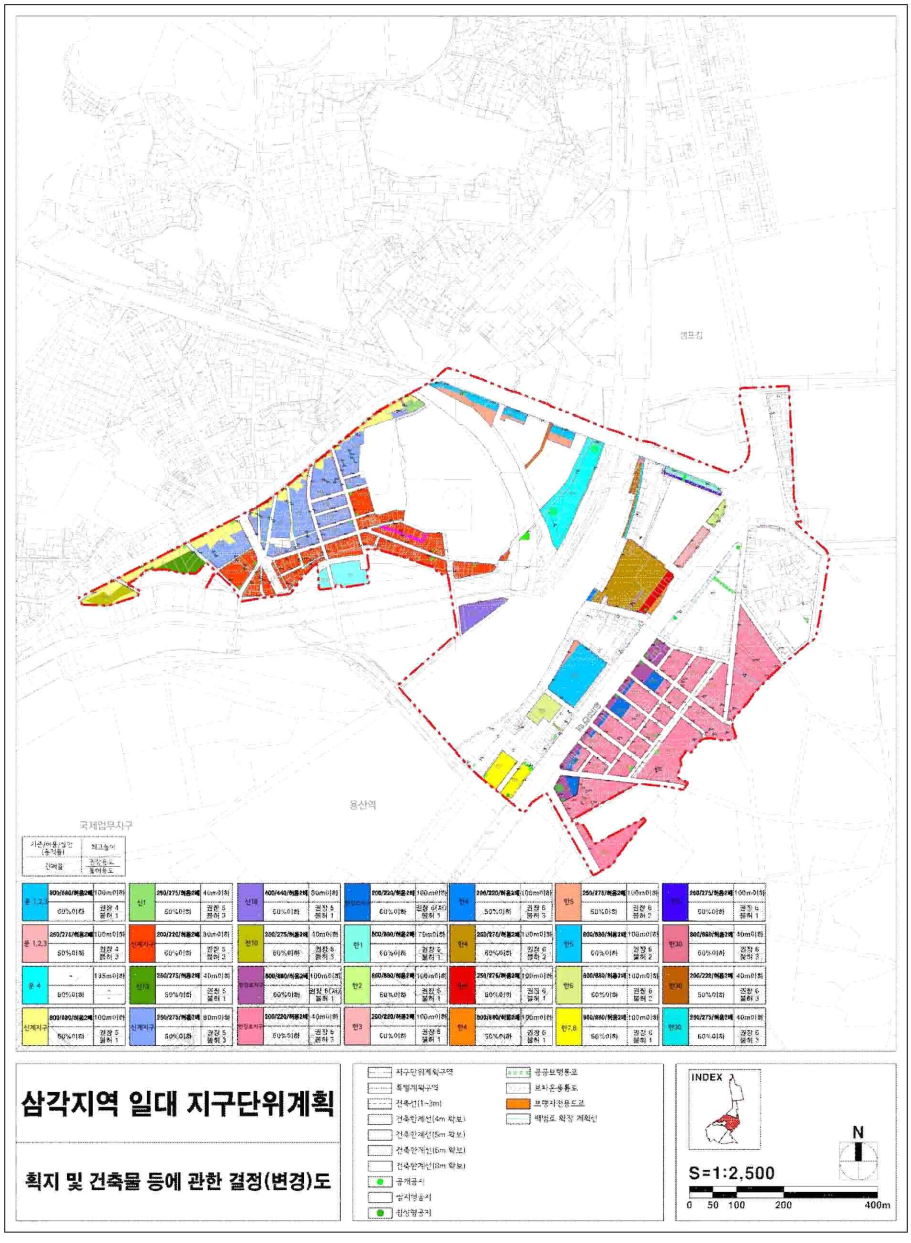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5호

도시관리계획(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3.1.)에서 국가상징거점으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용산일대에 대해 미래신도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립하고 재정비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59,349.1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변경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710,541.62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 백범로 일대	358,536.69		-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백범로 일대 ~ 새창로 일대	725,899.93		-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새창로 일대 ~ 한강로 일대	1,024,943.99		-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119,703.10		-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대로 ~ 용산동 5가 일대	424,022.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11,118.9㎡) •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9,378.9㎡)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나진 19·20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6,335.2㎡)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구역내 편입 (증 60,395.79㎡)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의 한강 연결성 강화 고려 강변북로 및 하천 일부 구역 편입 (증 17,069.72㎡) • 과도한 면적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합리성, 실현성 증진과 유연하며,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 분할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59,349.1	감) 2,234,405.11	1,024,943.99	100.00	-
주거지역	소 계	1,934,426.96	감) 1,453,769.24	480,657.72	46.90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673.00	감) 16,235.52	14,437.48	1.41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474.05	감) 407,150.44	86,323.61	8.4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687.80	감) 467,196.85	40,490.95	3.95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4,755.01	감) 441,750.88	283,004.13	27.61	-
	준주거지역	177,837.10	감) 121,435.55	56,401.55	5.50	-
상업지역	소계	1,324,507.94	감) 785,008.63	539,499.31	52.64	-
	일반상업지역	1,222,376.94	감) 785,008.63	437,368.31	42.67	-
	중심상업지역	102,131.00	-	102,131.00	9.96	-
자연녹지지역		414.20	증) 4,372.76	4,786.96	0.47	-

▌용도지역 결정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16,235.52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07,150.4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감) 467,196.85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441,750.88	
	준주거지역	감) 121,435.55	
일반상업지역		감) 785,008.63	
자연녹지지역		증) 4,372.76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0	35~60	주간선도로	974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3가 16-18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기정	대로	1	2	20 ~35.5	보조간선도로	1,279 (743)	한강교 북단	한강로3가 29-2	일반도로	내고 제23호 (1952.3.25.)	-
기정	대로	1	66	35~76	주간선도로	27,850	마포구 상암동시계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일반도로	건고 제12호 ('91.1.14.)	-
기정	대로	2	3	30~33	집산도로	418	한강로3가 (대1-2)	한강로2가 (대2-73)	일반도로	서고 제25호 (2006.1.19.)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기정	대로	2	73	30~36	주간선도로	605	한강로2가 (광로3-9)	한강로3가 (대로2-42)	일반도로	건고 제561호 (1985.12.23.)	-
기정	대로	3	A	20~25	집산도로	440	이촌동 395	용산동6가 69-11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	1	28~34	집산도로	440	한강로3가 40-1006	이촌동1-1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대로	3	3	25~28	집산도로	327	한강로3가 40-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대로	3	4	25~30	집산도로	649	한강로3가 40-1028	한강로3가 40-1026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도로	143	한강로3가 40-957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중로	1	2	20~23	집산도로	340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중로	2	1	16.5	집산도로	208	한강로3가 40-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중로	3	1	7.5 ~ 13.5	국지도로	484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40-697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76	한강로2가 (광로3-9)	한강로2가 (대2-3)	일반도로	서고 제25호 (2006.1.19)	-
기정	중로	1	6	20	집산도로	76	한강로2가 (광로3-9)	한강로2가 (대2-3)	일반도로	서고 제25호 (2006.1.19)	-
기정	중로	2	15	17	집산도로	179	한강로3가 40-133	한강로3가 40-642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132	한강로1가 (광3-9)	한강로1가 199-5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6	17	집산도로	206	한강로3가 40-9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189	한강로3가 40-149	한강로3가 40-500	일반도로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308	한강로3가 40-113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313	13	집산도로	70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8	일반도로	서고 제177호 (1987.3.19.)	용산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정	중로	2	314	15	집산도로	328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3-1	일반도로	서고 제177호 (1987.3.19.)	용산쪽자 상기변
기정	중로	3	65	12	집산도로	27	한강로3가 40-339	한강로3가 40-21	일반도로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A	10	특수도로	95	이촌동 198-2	이촌동 389-1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소로	2	1	9.5	국지도로	96	한강로3가 40-1059	한강로3가 40-999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소로	1	15	10~12	국지도로	513	이촌동 209-3	이촌동 (소2-26)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86	문배동 40-5	문배동 7-31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226	이촌동 212-3	이촌동171-1 (소1-15)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41	이촌동 (중1-160)	이촌동 (소2-21)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39	이촌동 (소2-21)	이촌동 208-8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46	이촌동 203-52	이촌동 203-69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16	이촌동 199-50	이촌동 (소1-15)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170	이촌동 (중1-160)	이촌동 198-2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85	이촌동 209-8	이촌동 209-25	일반도로	서고 제423호 (2005.12.29.)	-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33	한강로3가 40-517	한강로3가 40-323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 (보행자우선도로)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250	한강로3가 40-9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0	8	특수도로	10	한강로3가 40-9	한강로3가 40-9	일반도로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보행자전용 도로)
기정	소로	3	58	4	국지도로	48	이촌동 (중1-160)	이촌동 (소1-1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9	4	국지도로	70	이촌동 206-25	이촌동 206-2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0	4	국지도로	79	이촌동 (소2-24)	이촌동 (소1-1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1	4	국지도로	111	이촌동 203-52	이촌동 203-6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4	7.2	특수도로	145.1 (31)	한강대로 40-999	한강로3가 40-969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 도로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2)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000	-	3,000	-	-
기정	④	주차장	한강로3가 40-1일대	3,000	-	3,000	서고 제639호 (2025.11.20.)	• 노외주차장 • 공원 중복결정 - 문화공원 : 3,000㎡

3)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한강로3가 40-969번지	면적(㎡)	3,120.0	-	3,120.0	국고 제831호 (2019.12.27.)	공간적 범위결정으로 기존 자동차 정류장 유지
					높이(층)	지하2층	-	지하2층		
기정	②	자동차 정류장	환승센터	한강로3가 40-1033일대	면적(㎡)	7,922	-	7,922	서고 제639호 (2025.11.20.)	-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광장 : 변경없음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26,633 (37,580)	-	126,633 (37,580)	-	-
기정	③	광장	교통광장	원효로4가 113-29일대 (원효대교 북단광장)	72,550 (34,372)	-	72,550 (34,372)	건고 제313호 (1978.10.20.)	-
기정	④	광장	교통광장	한강로3가 40-900일대 (한강대교 북단광장)	54,083 (3,208)	-	54,083 (3,208)	건고 제173호 (1971.4.1.)	-

2) 녹지 : 변경없음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630	-	6,630	-	-
기정	①	녹지	연결녹지	한강로3가 40-1일대	2,028	-	2,028.0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②	녹지	연결녹지	한강로3가 40-1일대	1,265.0	-	1.2650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③	녹지	연결녹지	한강로3가 40-1029일대	3,337.0	-	3,337.0	서고 제639호 (2025.11.20.)	-

3) 공원 : 변경없음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90,614.0	-	90,614.0	-	-
기정	⑬	공원	근린공원	한강로2가 363-1일대	5,969.0	-	5,969.0	서고 제25호 (2006.1.19.)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기정	⑭	공원	문화공원	한강로3가 40-134 일대	3,991.0	-	3,991.0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기정	⑮	공원	문화공원	한강로3가 40-1007 일대	43,388.0	-	43,388.0	서고 제639호 (2025.11.20.)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⑯	공원	문화공원	한강로3가 40-1029 일대	20,420.0	-	20,420.0	서고 제639호 (2025.11.20.)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⑰	공원	문화공원	한강로3가 40-1007 일대	16,366.0	-	16,366.0	서고 제639호 (2025.11.20.)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기정	⑱	공원	어린이공원	이촌동 206-1대	480.0	-	480.0	서고 제52호 (1992.2.29.)	새싹공원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7,697.0	-	17,697.0	-	-
기정	③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992일대	200	-	200	서고 제142호 (2014.4.17.)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기정	④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1일대	11,900	-	11,900	용고 제27호 (2001.6.5.)	-
기정	⑤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115일대	4,597	-	4,597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기정	⑥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262일대	1,000	-	1,000	서고 제100호 (2018.4.5.)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공동구 : 변경없음

▌ 공동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공동구	한강로3가 40-957	한강로3가 40-957	광로2-10, 대로3-1, 대로3-2, 대로3-3, 대로3-4, 중로1-1, 중로1-2	1.607	11,250	서고 제639호 (2025.11.20.)	-

(이 하 여 백)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9,790	-	9,790	-	-
기정	④	공공청사	-	한강로3가 40-1008일대	7,500	-	7,500	서고 제481호 (2024.4.4.)	경찰청 별관
기정	⑤	공공청사	-	한강로3가 40-651일대	1,200.0	-	1,200.0	서고 제100호 (2018.4.5.)	공공청사
기정	⑥	공공청사	-	이촌동 206-2	1,089.9	-	1,089.9	서고 제423호 (2005.12.29.)	이촌제2동 주민자치센터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④	50%이하	250%이하	6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⑤	60%이하	200%이하	40m 이하	-
⑥	50%이하	250%이하	6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 하 여 백)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친환경 계획 :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에 인센티브 항목 적용

<table>
<tr><th colspan="2">인센티브 항목</th><th>세부항목</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탄소 중립</td><td>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td><td>•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td><td>기준용적률 × 0.05</td><td rowspan="3">허용 용적률</td></tr>
<tr><td>저영향개발</td><td>•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td><td>기준용적률 × 0.05</td></tr>
<tr><td>디자인 혁신</td><td>유니버셜 디자인 도입</td><t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td><td>기준용적률 × 0.03 ~ 0.05</td></tr>
<tr><td colspan="2">친환경 건축물</td><td>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table><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② 녹색건축 인증
<table><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table>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table>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td><td>상한 용적률</td></tr>
</table>

나. 방재안전계획 : 신설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지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방재지구,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의 7가지 계획 중 1가지에 해당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지도 (침수관련)	한강로3가 신용산 지하차도 일대 (도면참조)	• 침수예상구역에 대해서는 저영향개발 빗물분담량 확보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하여 침수방지 저감대책 마련	-

4.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 신설

- 지역(역사)자산 조사는 문화재, 근대 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등 8가지로 구분됨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및 기타 지역자산(매장문화재)에 해당되며,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2013)의 관리지침을 따름
  - 현재에는 원형의 모습·형태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자료상 또는 "터"의 형태로 전해져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근대 문화유산	새남터순교성지 (이촌동 199-1 일대)	• 역사적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 건축물 외관 보전 및 활용 검토	-
도시조직/경관	철도관사부지 골목길 (한강로3가 40-2 일대)	•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조직인 옛 길, 옛 물길, 도시평면 등 • 장소, 옛 조직 등 흔적남기기 검토	-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 따라 적용위치 확인
※ 지표조사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간선부 이면부	• 3,000㎡ 이하	적용범위 변경
서부이촌동 일대	• 최대개발규모 : 2,000㎡ 이하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대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

※ 기존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 서부이촌동지구 내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시기 도래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따름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단일 필지의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 기 공동개발 된 필지
- 획지 및 모든 공동개발 필지면적 합계가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나.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한강대로, 원효로)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대지분할기준, 현황 대지규모 등을 통해 적정 개발규모 유도 • 획지 내 필지는 개별건축 불가능 -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변경	• 소유자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과도한 지정 지양 • 획지계획 전면해제 → 공동개발 또는 자율적 개발 - 계획 실현성 제고	-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기준
공동개발(권장)	도면참조	• 공동개발(권장) 최소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참조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 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1. 부정형 필지가 형성되는 경우 2.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 등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개발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필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 대지 형태의 정형화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지 분할을 권장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 - 필지 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 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제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기정

▌전자상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5	382.0	한강로3가	40-991잡	182.0	-	-	-
			40-992대	200.0	-	-	-
전7	10,479.0	한강로3가	16-48대	1,192.4	-	-	-
			16-49대	1,744.5	-	-	-
			16-58대	1,192.1	-	-	-
			16-60대	906.7	-	-	-
			16-81대	991.8	-	-	-
			16-85대	1,632.8	-	-	-
			16-88대	1,308.4	-	-	-
			16-91대	1,094.4	-	-	-
			16-94대	415.9	-	-	-
전9	15,032.8 (1,419.6)	원효로3가	51-55대	427.6	-	-	-
			51-37대	992.0	-	-	-

※ 면적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해당 가구면적임

▌정비창 전면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창1	7,676.3	한강로3가	91대	7,676.3	-	-	-

▌이촌동 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이촌1	8,801.2	이촌동	212-5대	172.6	405.0	지정	권장	-
			212-43대	95.9				-
			212-6대	136.5		-		-
			212-26대	82.6	109.6	지정		-
			212-46대	27.0				-
			212-37대	95.2	109.4	지정		-
			212-38대	14.2				-
			212-13대	267.7	518.6	지정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이촌1	8,801.2	이촌동	212-22대	139.5	518.6	지정	-
			212-23대	111.4			-
			212-15대	139.8	240.2	지정	-
			212-21대	100.4			-
			212-17대	136.9	210.0	권장	-
			212-18대	73.1			-
			212-1대	1,755.2	-	-	-
			212-2대	134.5	-	-	-
			212-3대	358.7	-	-	-
			212-4대	485.6	-	-	-
			212-7대	135.5	-	-	-
			212-8대	135.5	-	-	-
			212-9대	135.5	-	-	-
			212-10대	135.5	-	-	-
			212-11대	135.2	-	-	-
			212-12도	311.7	-	-	-
			212-16대	167.4	-	-	-
			212-19대	278.3	-	-	-
			212-24대	242.3	-	-	-
			212-25대	169.6	-	-	-
			212-27도	435.7	-	-	-
			212-28대	527.8	-	-	-
			212-35대	687.9	-	-	-
			212-36대	114.2	-	-	-
			212-39대	166.0	-	-	-
			212-40대	198.3	-	-	-
			212-41대	485.6	-	-	-
			212-45대	12.4	-	-	-
이촌2	3,530.6	이촌동	210-2대	169.6	339.2	권장	-
			210-20대	169.6			-
			210-4대	166.6	332.2	권장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이촌2	3,530.6	이촌동	210-5대	165.6	332.2	권장	-
			210-9대	126.2	134.2	지정	-
			210-22도	8.0			-
			210-1대	658.6	-	-	-
			210-6대	239.7	-	-	-
			210-8도	60.5	-	-	-
			210-10대	134.2	-	-	-
			210-11대	661.8	-	-	-
			210-15대	530.9	-	-	-
			210-17대	124.6	-	-	-
			210-18대	17.5	-	-	-
이촌3	1,222.7	이촌동	208-1종	297.2	683.2	지정	-
			208-7대	381.0			-
			208-8대	5.0			-
			208-2대	354.2	539.5	지정	-
			208-9대	185.3			-
이촌4	778.5	이촌동	205-3대	99.8	778.5	지정	-
			205-5대	22.9			-
			205-6대	652.2			-
			205-7대	3.6			-
이촌5	4,556.7	이촌동	199-1종	3,599.0	-	-	-
			199-2종	923.0	957.7	지정	-
			199-16대	34.7			-
이촌6	1,088.9	이촌동	206-2대	1,088.9	-	-	-
이촌7	826.4	이촌동	203-69대	826.4	-	-	-
존치	27,062.2	이촌동	395대	12,490.5	-	-	-
			396잡	848.0	-	-	-
			397잡	855.0	-	-	-
			398잡	1,663.4	-	-	-
			422대	6,772.3	-	-	-
			434대	4,433.0	-	-	-

2) 변경

▌전자상가 주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5	382.0	한강로3가	40-991잡	182.0	-	-	-
			40-992대	200.0	-	-	-
전7	10,479.0	한강로3가	16-48대	1,192.4	1,192.4	-	-
			16-49대	1,744.5	9,286.6	-	-
			16-58대	1,192.1		-	-
			16-60대	906.7		-	-
			16-81대	991.8		-	-
			16-85대	1,632.8		-	-
			16-88대	1,308.4		-	-
			16-91대	1,094.4		-	-
			16-94대	415.9		-	-
전9	15,032.8 (1,419.6)	원효로3가	51-55대	427.6	-	-	-
			51-37대	992.0	-	-	-

※ 면적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해당 가구면적임

▌정비창 전면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창1	7,676.3	한강로3가	91대	7,676.3	-	-	-

▌이촌동 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이촌1	8,801.2	이촌동	212-5대	172.6	405.0	권장	-
			212-43대	95.9			-
			212-6대	136.5			-
			212-26대	82.6	109.6	권장	-
			212-46대	27.0			-
			212-37대	95.2	109.4	권장	-
			212-38대	14.2			-
			212-13대	267.7	518.6	권장	-
			212-22대	139.5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이촌1	8,801.2	이촌동	212-23대	111.4	518.6	권장	-
			212-15대	139.8	240.2	권장	-
			212-21대	100.4	240.2	권장	-
이촌1	8,801.2	이촌동	212-17대	136.9	210	권장	-
			212-18대	73.1			-
			212-1대	1,755.2	-	-	-
			212-2대	134.5	-	-	-
			212-3대	358.7	-	-	-
			212-4대	485.6	-	-	-
			212-7대	135.5	-	-	-
			212-8대	135.5	-	-	-
			212-9대	135.5	-	-	-
			212-10대	135.5	-	-	-
			212-11대	135.2	-	-	-
			212-12도	311.7	-	-	-
			212-16대	167.4	-	-	-
			212-19대	278.3	-	-	-
			212-24대	242.3	-	-	-
			212-25대	169.6	-	-	-
			212-27도	435.7	-	-	-
			212-28대	527.8	-	-	-
			212-35대	687.9	-	-	-
			212-36대	114.2	-	-	-
			212-39대	166.0	-	-	-
			212-40대	198.3	-	-	-
			212-41대	485.6	-	-	-
			212-45대	12.4	-	-	-
이촌2	3,233.4	이촌동	210-2대	169.6	339.2	권장	-
			210-20대	169.6			-
			210-4대	166.6	332.2	권장	-
			210-5대	165.6			-
			210-9대	126.2	134.2	권장	-
			210-22도	8.0			-
			210-1대	658.6	-	-	-
			210-6대	239.7	-	-	-
			210-8도	60.5	-	-	-
			210-10대	134.2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이촌2	3,233.4	이촌동	210-11대	661.8	-	-	-
			210-15대	530.9	-	-	-
			210-17대	124.6	-	-	-
			210-18대	17.5	-	-	-
이촌3	1,222.7	이촌동	208-1종	297.2	1,016.2	권장	-
			208-7대	381.0			-
			208-8대	5.0			-
			208-2대	354.2	539.5	권장	-
			208-9대	185.3			-
이촌4	778.5	이촌동	205-3대	99.8	778.5	권장	-
			205-5대	22.9			-
			205-6대	652.2			-
			205-7대	3.6			-
이촌5	4,556.7	이촌동	199-1종	3,599.0	-	-	-
			199-2종	923.0	957.7	권장	-
			199-16대	34.7			-
이촌6	1,088.9	이촌동	206-2대	1,088.9	-	-	-
이촌7	826.4	이촌동	203-69대	826.4	-	-	-
존치	27,062.2	이촌동	395대	12,490.5	-	-	-
			396잡	848.0	-	-	-
			397잡	855.0	-	-	-
			398잡	1,663.4	-	-	-
			434대	4,433.0	-	-	-
			422대	6,772.3	-	-	-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권장용도 : 변경없음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7	정비창 전면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8	전자상가 주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 전자관련 소매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9	서부이촌동 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이촌로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이면부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용적률 완화 세부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참조)

※ 서부이촌동지구 내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시기 도래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따름

2) 불허용도 : 변경

▌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일반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도시계획조례」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이 하 여 백)

2)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지역 (이면부/간선부)	400 / 600%	600 / 800%	1,000%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0%	250%	300%	-
정비창 전면지구	우림필유 부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0%	200%	250%	-

※ 서부이촌동지구 내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시기 도래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따름

▌변경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자상가 주변지구		일반상업지역 (이면부/간선부)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정비창 전면지구	우림필유 부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서부이촌동지구 내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시기 도래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따름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한시적 용적률 완화(50%p 이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8.)에 따른 허용용적률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하는 시행령 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단, 본 내용은 서울시 관련 심의 및 고시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한다.)

(이 하 여 백)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전자상가 주변지구	주거지역	• 40, 80, 100m 이하	-
정비창 전면지구	우림필유 APT부지	• 8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높이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서부이촌동지구 내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시기 도래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따름
※ 획지선의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최고높이가 적용될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0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 제1,2종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는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제한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132m를 초과하는 건축물(옥탑높이 포함)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이 하 여 백)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선(변경)

▌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벽면한계선 (고층부)	특별계획구역	8 ~ 10m 벽면한계선	-

▌변경

구분	적용위치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벽면한계선 (고층부)	특별계획구역	6 ~ 10m 벽면한계선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벽면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6m	• 이촌로변 6m 확보

2) 대지안의 공지 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등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침상형	숙대입구역, 삼각지역, 신용산역 주변지역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으로 접근 가능하며 24시간 개방구조 • 필로티 구조 시 유효높이 지상 6m 이상 확보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후암동,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① 등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보차혼용통로		후암동, 신계지구, 아세아아파트지구,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② 등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 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정비창전면①,③,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이촌시범·미도연립,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용산역사지구, 정비창 전면①,③,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중공공 보행통로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① ~ ⑩	•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국제업무지구와 연결되는 구간은 연결브릿지로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보차혼용통로		정비창 전면 ①,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중공공 보행통로	공중공공보행통로 신설	• 용산전자상가 ~ 국제업무지구 ~ 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중공공보행통로 신설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기정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
	1층 바닥높이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 (경사지의 경우 보도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 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측면공지 차폐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
	조명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권장
		한강대로변/ 용산공원 연접부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권장
	1층 바닥높이	전구역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보도/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건축물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권장
		용산공원 연접부	• 원색, 고채도 색상 사용 지양, 자연색 또는 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채색, 투명재료 활용 권장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공원변으로 전선, 옥상설비 등 부속 시설의 직접적 외부 노출을 지양,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디자인, 식재 등으로 차폐 권장 • 단순 페인트 마감 지양, 재료 고유의 특징을 활용한 입면디자인 권장	권장
	측면공지 차폐	전구역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 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권장
기타	옥외광고물	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권장
	조명	전구역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이상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재료/색채 권장사항 변경	• 용산공원 인접지역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권장 추가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계획내용 변경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환경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준수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

다.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강대로의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확보를 통해 남산 조망과 광역통경축 확보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한양도성~한강~여의도를 잇는 신도심으로서 매력있는경관 형성	전구역	• 매력있고 상징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상징성 부여	-
	한강변	• 한강중심의 열린경관 형성	-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경관자원과 지역자산을 배려하는 경관관리	경부선, 한강, 용산공원 연접부	• 경의선 숲길, 한강, 용산공원 연계 광역 보행녹지축 조성	-
	용산공원 연접부	• 용산공원, 남산의 조망확보를 위한 높이관리 및 통경축 확보	-
	경부선 연접부	•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경부선 녹지축변 경관관리	-
걸을수록 매력있고,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전구역	• 한강~용산공원~남산 연계 보행네트워크 조성	-
		• 보행자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 옛길, 지역자산을 고려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전구역	• 한강대로변, 한강변 건물의 야간조명 설치 유도 - 벽면을 비추는 상향식 야간조명 •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12,102.97	-	812,102.97	-
기정	㉑→㉒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118,138.5	-	118,138.5	계획수립중
기정	㉒→㉓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1-1	4,755.1	-	4,755.1	사업완료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1-2	14,577.87	-	14,577.87	계획결정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2	18,956.8	-	18,956.8	사업완료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3	24,788	-	24,788	사업완료
기정	㉘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1	71,901	-	71,901	계획결정
기정	㉙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3	5,805	-	5,805	계획결정
기정	㉚	빗물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	25,640	-	25,640	미시행
기정	㊱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56,099.0	-	456,099.0	계획결정
기정	㊳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14,797.7	-	14,797.7	사업완료
기정	㊶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	8,205	-	8,205	미시행
기정	㊷	이촌시범 · 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	11,414	-	11,414	미시행
기정	㊸	이촌1 특별계획구역	23,062	-	23,062	계획수립중
기정	㊹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	13,963	-	13,963	계획결정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표시 조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㉑→㉒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일대	118,138.5	-	118,138.5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계획 수립중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조례에 따름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250% 이하 • 허용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150m 이하	-
용도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규모 완화 - 바닥면적 제한 적용 제외 : 판매시설, 업무시설	-
토지이용		• 복합역사 - 기존 역시설 및 고속철도 역무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0m	-
공공보행통로		• 동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폭 10m)를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
공공시설계획		• 별도검토	-
공공기여사항		• 복합역사개발(증축 연면적)의 10% 이상	-
기타		• 용산역 동서간(한강로변 ∽ 청파로) 차량이 통과하는 연결통로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 주변 건물위에서 내려다 보여지는 역사 지붕(옥상)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	-

2)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1-1, 1-2, 2, 3(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㉒→㉓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1-1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일대	4,755.1	-	4,755.1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07.10.)	사업 완료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1-2	용산구 한강로3가 40-712 일대	14,577.87	-	14,577.87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07.10.)	계획 결정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2	용산구 한강로2가 391 일대	18,956.8	-	18,956.8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07.10.)	사업 완료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3	용산구 한강로2가 342 일대	24,788	-	24,788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07.10.)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지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구 및 획지	• 대형 10,000㎡ 이상 : 3구역 • 중형 5,000 ~ 10,000㎡ : 1-2구역, 2구역 • 소형 5,000㎡ 미만 : 1-1구역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700% 이하 • 허용 용적률 : 80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150m 이하	-
토지이용	• 업무 및 업무지원, 숙박, 판매, 국방 · 군사시설, 공원 등	-
공공보행 통로	• 동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폭 10m)를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 구역 분할된 1구역은 제외	-
공공시설 계획	• 공공용지 부담률 : 정비계획 결정사항 준용 - 정비기반시설 조성 후 제공	-
기타	•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 권장 • 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정비계획 결정사항 준용	-

3)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1,3(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㉘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1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1,901	-	71,901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02.)	계획 결정
	㉙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3	용산구 한강로3가 40-19 일대	5,805	-	5,805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02.)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지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면부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방화지구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1구역	획지 1, 2	준주거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획지 3	준주거, 일반상업	370% 이하	600% 이하	810% 이하	
			획지 4, 5	준주거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3구역			540% 이하	740% 이하	960% 이하	
		※ 주거복합 건축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5조 제3항 별표에 따름 ※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가중평균하였으며, 기반시설 변경시 용적률은 재산정하여야 함					
높이		기정			변경		-
		• ①,③구역 최고높이 100m이하 ※ 우수디자인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높이 120m 이하로 완화 적용(①,③구역 적용)			• ①,③구역 기준높이 120m+α(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용도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권장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 · 근생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거복합					-
건축선		• 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3m(소단위정비),10m • 중앙선 철도변 : 10m • 공원변,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 ~ 5m					-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정비계획에 따라 공원과 연계 및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보차혼용통로	• 1구역 : 경의 중앙선변 한강대로7길과 순환 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 6m 개설	
공공시설부지 제공율	• 1구역 : 25% 이상 • 3구역 : 10% 이상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상 공공시설부지 제공율은 용산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산정방식에 따른다. 다만, 정비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에 따른 순부담율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용산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시설부지 제공율 이상으로 한다.	-
기타	•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지역은 지상층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와 오피스텔 용도를 합한 용적률을 60% 이하로 제한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시 지상층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도 용적률은 40% 이하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지역에서의 주거용도 용적률은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기준이하 (단 상한용적률은 주거 · 비주거 비율에 따라 분배) • 통합개발시 지하공간 연계개발 할 것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철도테크. 공원 및 주변건축물, 한강로, 철도, 이촌동길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수립	-

(이 하 여 백)

4) 빗물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㉚	빗물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881 일대	25,640	-	25,640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미시행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지구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200% 이하 • 허용 용적률 : 330% 이하 •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100m이하 ※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높이 120m이하로 완화 적용	-
용도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선		• 이촌동길변 : 건축한계선 3m(강변북로 지하화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과 연결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간선가로변으로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률 : 20.0% 이상 • 현황 이촌동길 20m를 43m로 확폭(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고려하여 이촌동길 확폭, 단, 부지만 기부채납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도로조성)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 이촌동길 확폭부분은 변경 가능) ※ 강변북로 개선, 이촌동길 확폭 등이 시급하여 공공에서 우선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별도의 공공기여방안을 수립 할 것 ※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동길 확폭)이 우선 시행될 경우는 사업주체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②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할 경우 순부담율로 볼 수 있다. ※ 다만,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의 보상을 받은 자 중 사업구역에 토지가 없는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로 볼 수 없다 • 대상지 내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과 연결도로 20m 기부채납	-
기타		• 세부개발 계획시 대상지 북측 아파트(우림필유) 진입도로 확보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철도테크, 공원 및 주변건축물, 한강로, 철도, 이촌동길 등을 고려할 것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철도변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대지내 공공조경을 조성할 것	-

5)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㊱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56,099.0	-	456,099.0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계획 결정

▌계획지침(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이 하 여 백)

6)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㊳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일대	14,797.7	-	14,797.7	서울시고시 제2014-142호 (2014.4.17.)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기본 : 580% 이하 • 허용 : 800% • 상한 : 960% 이하 단, 상한용적률은 지상부 연면적 중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높이		• 150m 이하(획지)		-
용도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장, 장례식장, 교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지정	• 관광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 지상부 90% 이상		-
건축선		• 15m 도로변 : 3m • 8m 도로변 : 2m		-
건축물 형태		• 각 동의 입면형태는 서로 다르게 계획하고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절 • 고층부(높이 8층 초과) 동간 거리 최소 30m 이상 이격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서측 :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공공공지(200㎡)와 연계하여 조성 • 동측 : 용산역 연결통로,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 조성 방법 등은 서울시 건축조례 준수		-
	공공보행 통로	• 대지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2개소 • 용산역 ~ 대상지 및 대상지 ~ 나진상가 연결통로는 현재의 연결성 확보 및 상시개방 - 사업 시행시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이행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름		-
기 타		자동차정류장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건축물의 범위 기준에 따름	-

7)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㊶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211-4 일대	8,205	-	8,205	서울시고시 제2016-13호 (2016.1.14.)	미시행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 / - / 300% 이하 ※ 특정관리 대상시설로서 도시계획 55조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제3종) 법정용적률을 상한(정비계획)용적률로 설정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높이		• 최고높이 100m(30층) 이하 - 남산 7부능선 이상 조망구간은 45m(13층) 이하 - 15층 입면 차폐면적 이하	-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비주거 :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서·북측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남측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기반시설확보		• 순부담 : 10% 이상 ※ 시설의 종류는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계획	-
교통처리계획		• 계획지침도 참조	-
기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과 연계하여 전면공지 확보	-
	경관	• 한강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 국제업무지구와 조화된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 남산으로의 열린 경관형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 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 남산 7부능선 이상 조망구간 : 원효대교 남단에서 남산 7부능선 (표고 189m)이상 조망이 가능한 구간
※ 입면차폐면적 : 건축배치가능 부지 내(건축선으로 인한 이격제외) 한강을 면한 건축물 입면의 면적
※ 정비계획 수립 시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 원효대교남단) 및 입면 차폐면적 산정결과 제시

8)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㊷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209-1 일대	11,414	-	11,414	서울시고시 제2016-13호 (2016.1.14.)	미시행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획지1)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획지1	• 190% / 210% / 300% 이하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획지2	• 200% / 200% / 법정 2배이하	
높이		획지1	• 최고높이 120m(35층) 이하	-
		획지2	• 최고높이 40m 이하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비주거 :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획지2	• 근린생활시설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북측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고층부 벽면한계선	• 5층이상 : 이촌로변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기반시설확보		• 순부담 : 13% 이상 ※ 시설의 종류는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계획		-
교통처리계획		• 계획지침도 참조		-
기타	공개공지	• 지상부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이촌로2가길 모퉁이에 공개공지 확보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과 연계하여 전면공지 확보		-
	비주거(상가)	• 비주거(상가)는 이촌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		-
	경관	• 한강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 국제업무지구와 조화된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

※ 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9) 이촌1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㊸	이촌1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203-5 일대	23,062	-	23,062	서울시고시 제2016-13호 (2016.1.14.)	계획 수립중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획지1)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획지1	• 190% / 210% / 300% 이하 ※ 법정 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획지2	• 200% / 200% / 법정 2배이하	
높이		획지1	• 최고높이 120m(35층)이하	-
		획지2	• 최고높이 40m 이하	
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비주거 :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획지2	• 복합커뮤니티센터 - 기존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 및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복합화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고층부 벽면한계선	• 5층이상 : 이촌로변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기반시설확보		• 순부담 : 13% 이상 ※ 시설의 종류는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계획		-
교통처리계획		• 계획지침도 참조		-
기타	공개공지	• 지상부 전면공지 및 이촌2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전면부에 공개공지 확보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과 연계하여 전면공지 확보		-
	비주거(상가)	• 비주거(상가)는 이촌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		-
	경관	• 한강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 국제업무지구와 조화된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

※ 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10)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㊹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23-1, 410-1051 일대	13,963	-	13,9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1호 (2019.12.27.)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800% 이하	-
용도	지정	• 공공청사	-
	권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 전자관련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창고시설, 장례식장,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공장(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 제조 조립업, 지식산업센터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건축선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
공개공지		• 용산역 인근 공개공지 위치 지정 • 대상지 북측 새창로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 지정위치 지침도에 따름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새창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6.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공통사항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기준용적률×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시장의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 생태도심	입체녹지조성	기준용적률×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상 인정 한도 이상 설치시
	공공보행통로설치	기준용적률×0.03	• 공공보행통로에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적용 불가

※ 계획기준 준수 시 적용 가능한 다음의 항목은 해당 인증기관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지열 등 신재생 세부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을 결정해야하는 다음의 항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서면동의를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결정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인센티브에 에너지 설치, 저영향개발,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입체녹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 적용 가능)
- UAM시설,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특색있는 건축설계,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역사문화 특성 보전,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절차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가능 (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공시설등 제공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 '권역별생활서비스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 적용) ②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임대주택 건립 시	• 관련법률 및 조례,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용적률계획 일괄재정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13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	-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출입구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 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 완화량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시	• 적용대상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 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되,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공개공지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
친환경항목 적용시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다만,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table>
<tr><th>구 분</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친환경항목
적용 시</td><td>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
<tr><th>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h>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
<table>
<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
<tr><td>완화
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td><td>
<table>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d></tr>
<tr><th>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h>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d><td>
<table>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td></tr>
</table>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td><td>-</td></tr>
<tr><td>특별건축구역
도입시</td><td>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 건축물에 대해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을 적용
</td><td>-</td></tr>
<tr><td>지능형건축물
인증 시</td><td>
• 적용대상 : 「건축법」 제65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인증 기준이 고시된 건축물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지능형건축물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관 :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인증등급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 colspan="2">심사기준</td><td>90%
이상 득점</td><td>85% 이상
90% 미만</td><td>80% 이상
85% 미만</td><td>75% 이상
80% 미만</td><td>70% 이상
75% 미만</td></tr>
<tr><td colspan="2">각 분야별
과락점수</td><td>85% 미만</td><td>80% 미만</td><td>75% 미만</td><td>70% 미만</td><td>65% 미만</td></tr>
<tr><td rowspan="3">심사총평</td><td>비주거</td><td colspan="5">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6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주거</td><td colspan="5">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복합건축물</td><td colspan="5">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td></tr>
</table>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table>
<tr><th>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건축기준
완화 비율</td><td>15%</td><td>12%</td><td>9%</td><td>6%</td><td>0%</td></tr>
</table>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td><td>-</td></tr>
</table>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등 설치·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규정은 허용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을 더하여 상한용적률로 산정
※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적정성 등 검토
※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세부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및 서울시 관련지침의 내용을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1) 차량동선(변경)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전구역(도면참조)	• 간선도로 및 모퉁이변에 지정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필지[차량진출입 불허구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행동선(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 옛 도시조직(옛 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피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
보차혼용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이 하 여 백)

2.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기준

1.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4조를 준용함.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7.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8.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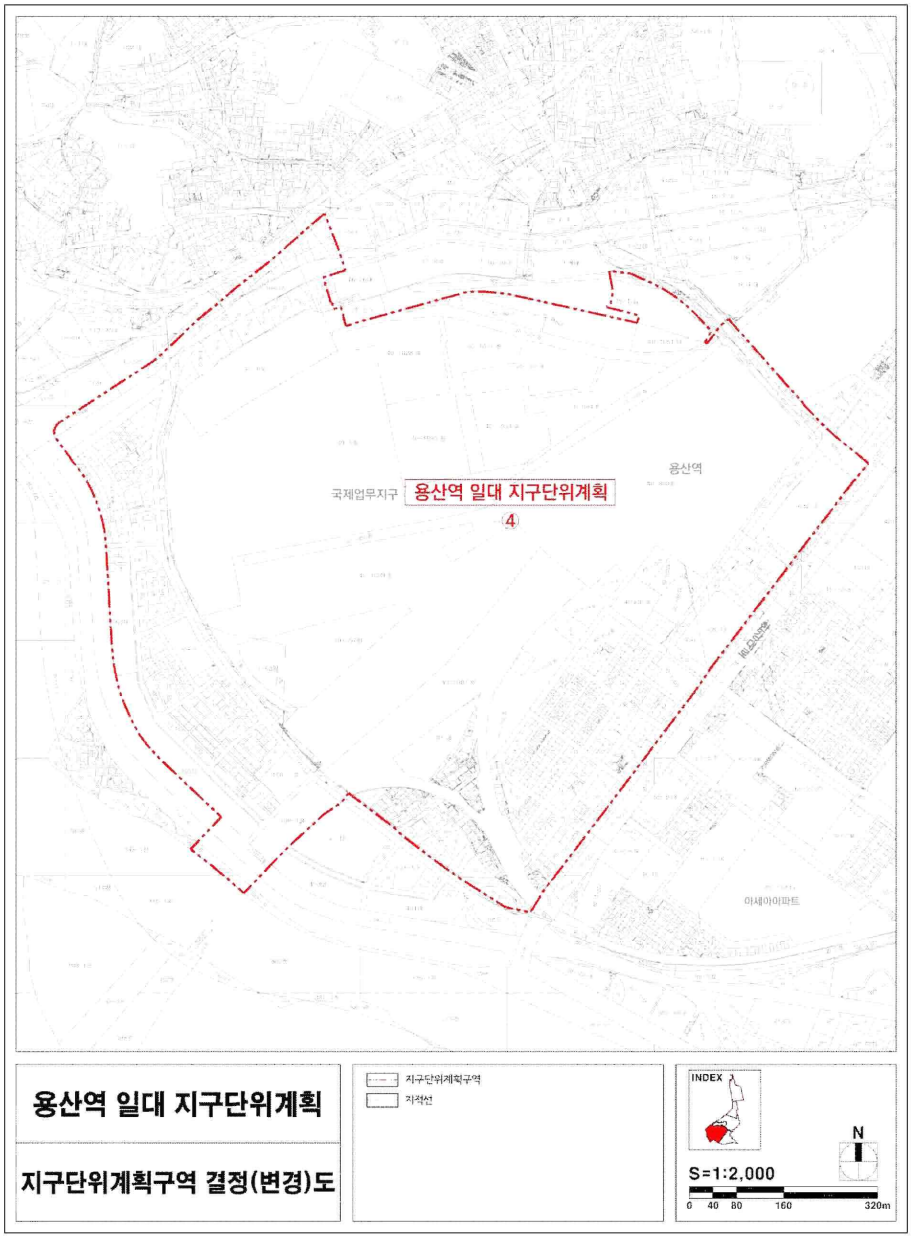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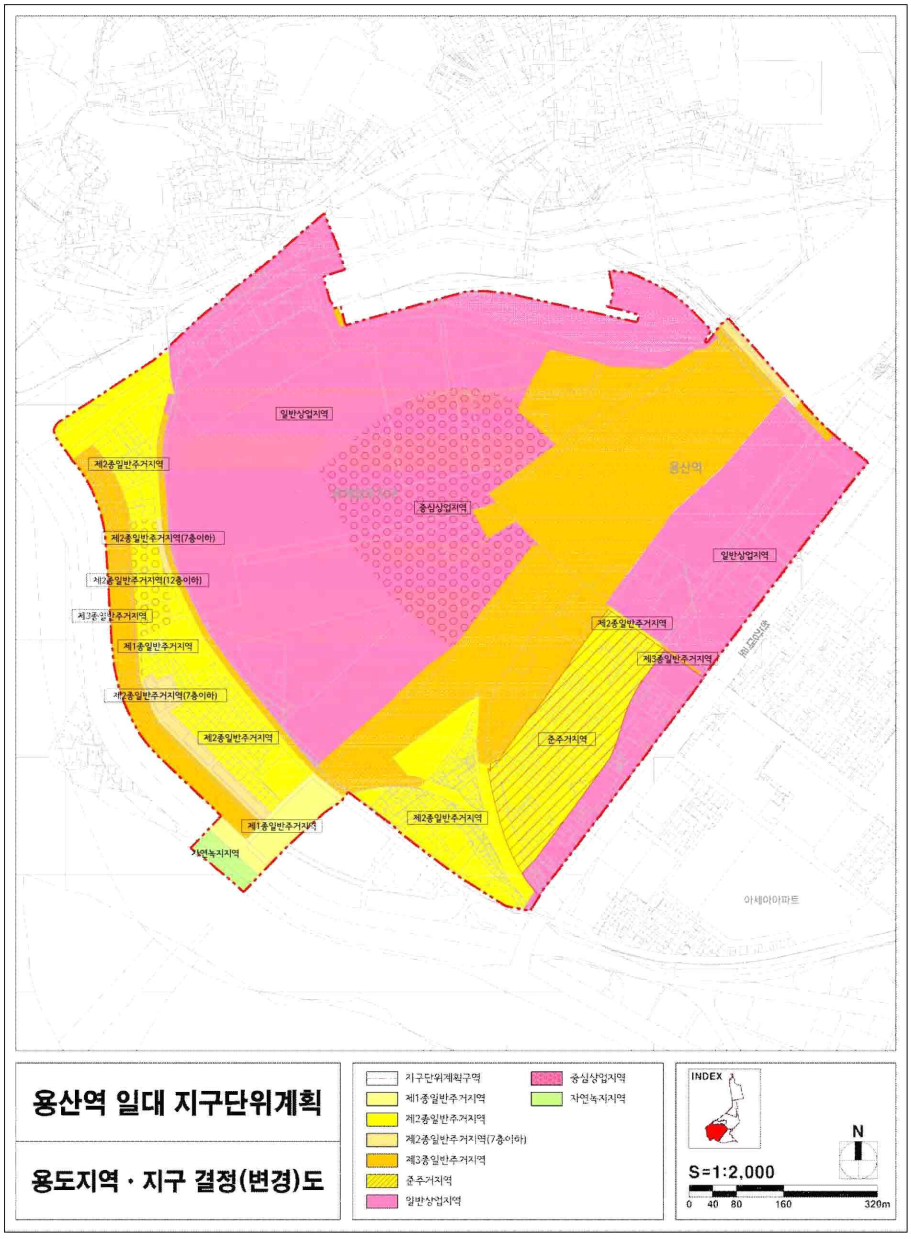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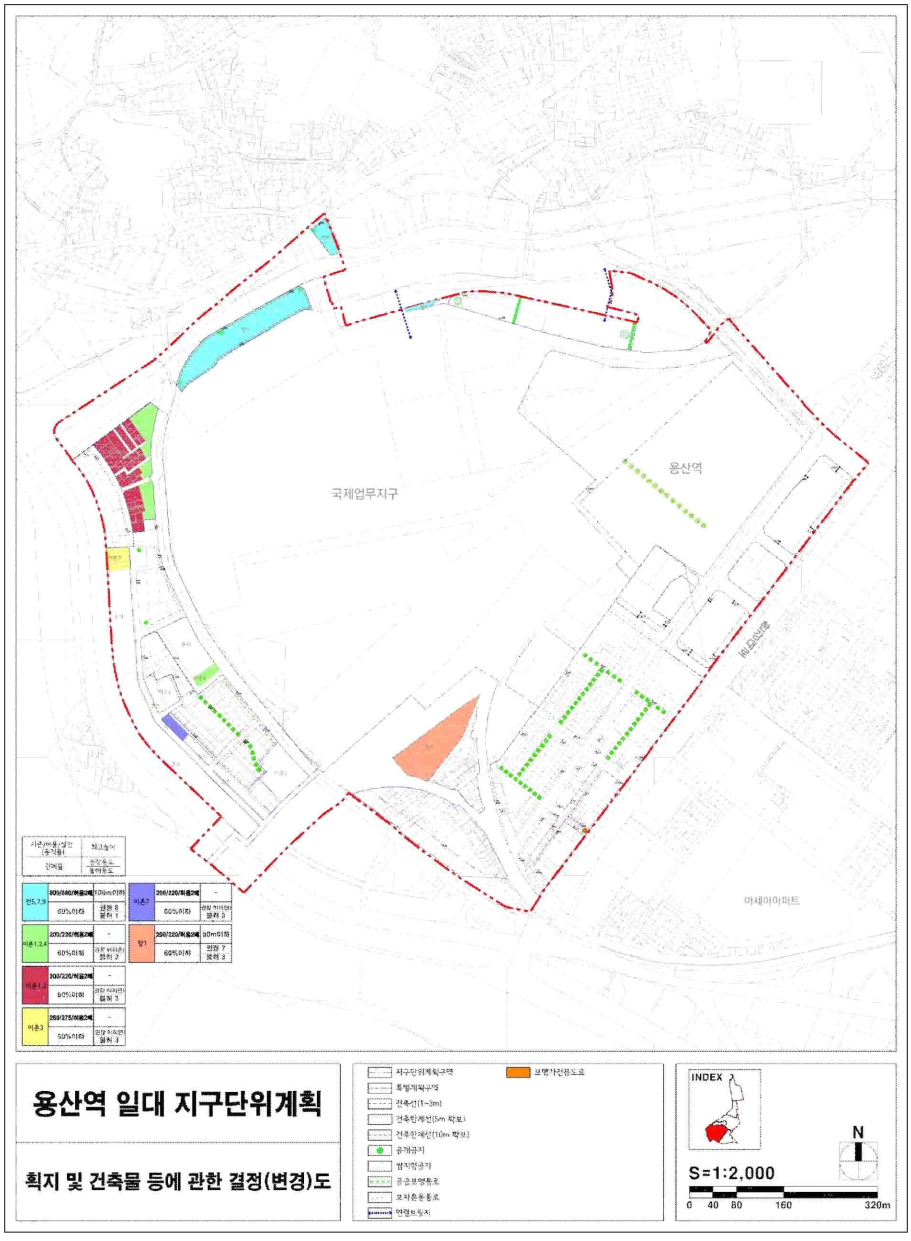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3.1.)에서 국가상징거점으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용산일대에 대해 미래신도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립하고 재정비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59,349.1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변경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710,541.62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 백범로 일대	358,536.69		-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백범로 일대 ~ 새창로 일대	725,899.93		-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새창로 일대 ~ 한강로 일대	1,024,943.99		-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119,703.10		-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대로 ~ 용산동 5가 일대	424,022.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11,118.9㎡) •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9,378.9㎡)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나진 19·20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6,335.2㎡)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구역내 편입 (증 60,395.79㎡)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의 한강 연결성 강화 고려 강변북로 및 하천 일부 구역 편입 (증 17,069.72㎡) • 과도한 면적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합리성, 실현성 증진과 유연하며,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 분할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59,349.1	감) 3,139,646.00	119,703.10	100.0	-
주거지역	소 계	1,934,426.96	감) 1,934,231.08	195.88	0.16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673.00	감) 30,673.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474.05	감) 493,474.0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687.80	감) 507,687.8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4,755.01	감) 724,559.13	195.88	0.16	-
	준주거지역	177,837.10	감) 177,837.10	-	-	-
상업지역	소계	1,324,507.94	감) 1,205,000.72	119,507.22	99.84	-
	일반상업지역	1,222,376.94	감) 1,102,869.72	119,507.22	99.84	-
	중심상업지역	102,131.00	감) 102,131.00	-	-	-
자연녹지지역		414.20	감) 414.20	-	-	-

▌용도지역 결정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30,673.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93,474.0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감) 507,687.80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724,559.13	
	준주거지역	감) 177,837.10	
일반상업지역		감) 1,102,869.72	
중심상업지역		감) 102,131.00	
자연녹지지역		감) 414.20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42	30	보조간선도로	815	한강로2가 (중로3-7)	한강로3가 (대2-5)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
기정	대로	2	73	30~36	주간선도로	605	한강로2가 (광로3-9)	한강로3가 (대로2-42)	일반도로	건고 제561호 (1985.12.23.)	-
기정	대로	3	3	25~28	집산도로	327	한강로3가 40-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서고 제 639호 (2025.11.20.)	-
기정	중로	1	14	20~40	보조간선도로	2800 (230)	용산시장 (입구)	마포구 대흥동	일반도로	총고 제722호 (1936.12.26.)	-
기정	중로	2	313	13	집산도로	70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8	일반도로	서고 제177호 (1987.3.19.)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정	중로	2	314	15	집산도로	328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3-1	일반도로	서고 제177호 (1987.3.19.)	용산 전자상가변
기정	중로	3	7	9~12	집산도로	155	한강로2가 (대3-1)	신계동 6-25	일반도로	서고 제229호 (2001.7.10.)	-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95	신계동 47	신계동 33-3	일반도로	서고 제638호 (1987.9.16.)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82	한강로3가 (대2-42)	한강로3가 (중3-8)	일반도로	서고 제638호 (1987.9.16.)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60	한강로3가 (대2-42)	한강로3가 (대2-73)	일반도로	건고 제332호 (1985.7.31.)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40	신계동 42-12	신계동 (대2-4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7	4	국지도로	100	신계동 (중1-14)	신계동 33-3	일반도로	서고 제881호 (1987.12.14.)	-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153	원효로2가 92-8	신계동 40-1	일반도로	서고 제881호 (1987.12.14.)	-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260	한강로3가 16-31	신계동 42-4	일반도로	서고 제881호 (1987.12.14.)	-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53	원효로3가 53-5	원효로3가 51-32	일반도로	서고 제881호 (1987.12.14.)	-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85	한강로2가 12-12	한강로2가 47	일반도로	서고 제610호 (2025.11.6.)	용산 전자상가 특별계획 구역8

※ 도로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나. 공간시설 : 신설

1) 공공공지 : 신설

▌공공공지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130.0	-	5,130.0	-	-
신설	⑦	공공공지	한강로3가 23-1일대	5,130.0	-	5,130.0	서고 제414호 (2025.7.24.)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⑤

▌공공공지 결정(신설)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⑦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5,130.0㎡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2·13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유통업무설비(변경)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80,193.8	감) 178.0	80,015.8	건고 제332호 (1985.7.31.)	-

▌유통업무설비 결정 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통업무 설비	•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에 따른 일부 도시계획시설선 조정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일 부지 일부 포함되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선 조정(감 178.0㎡)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 변경없음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45,064.0	-	45,064.0	-	-
기정	②	유수지	원효로3가 50-1일대	7,130.0	-	7,130.0	건고 제579호 (1971.9.30.)	-
기정	③	유수지	한강로3가 19-2일대	30,635.0	-	30,635.0	건고 제579호 (1971.9.30.)	공공공지 중복결정 (5,130㎡)
기정	④	유수지	청파로20길 34일대	7,299.0	-	7,299.0	건고 제579호 (1971.9.30.)	-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친환경 계획 :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에 인센티브 항목 적용

<table>
<tr><th colspan="2">인센티브 항목</th><th>세부항목</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탄소 중립</td><td>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td><td>•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td><td>기준용적률 × 0.05</td><td rowspan="3">허용 용적률</td></tr>
<tr><td>저영향개발</td><td>•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td><td>기준용적률 × 0.05</td></tr>
<tr><td>디자인 혁신</td><td>유니버셜 디자인 도입</td><t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td><td>기준용적률 × 0.03 ~ 0.05</td></tr>
<tr><td colspan="2">친환경 건축물</td><td>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table><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② 녹색건축 인증
<table><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table>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table>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td><td>상한 용적률</td></tr>
</table>

나. 방재안전계획 : 신설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지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방재지구,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의 7가지 계획 중 1가지에 해당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지도 (침수관련)	원효로1가 43-8, 121-48 일대 및 원효로변 일대 한강로2가 한강대로변 일대 한강로3가 신용산 지하차도 일대 (도면참조)	• 침수예상구역에 대해서는 저영향개발 빗물분담량 확보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하여 침수방지 저감대책 마련	-

4.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 신설

• 지역(역사)자산 조사는 문화재, 근대 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등 8가지로 구분됨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및 기타 지역자산(매장문화재)에 해당되며,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2013)의 관리지침을 따름

- 현재에는 원형의 모습·형태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자료상 또는 "터"의 형태로 전해져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 따라 적용위치 확인

※ 지표조사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이 하 여 백)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간선부 이면부	• 3,000㎡ 이하	적용범위 변경

※ 기존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단일 필지의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 기 공동개발 된 필지
- 획지 및 모든 공동개발 필지면적 합계가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나.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한강대로, 원효로)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대지분할기준, 현황 대지규모 등을 통해 적정 개발규모 유도 • 획지 내 필지는 개별건축 불가능 -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변경	• 소유자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과도한 지정 지양 • 획지계획 전면해제 → 공동개발 또는 자율적 개발 - 계획 실현성 제고	-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기준
공동개발(권장)	도면참조	• 공동개발(권장) 최소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참조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 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1. 부정형 필지가 형성되는 경우 2.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 등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개발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필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 대지 형태의 정형화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지 분할을 권장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 - 필지 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 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제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기정

▌전자상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1	4,787 (1,209.9)	한강로2가	14-18대	1,209.9	-	-	-
전2	20,568	한강로2가	15-19대	2,465.7	-	-	-
			15-46대	977.5	-	-	-
			15-36유	150.9	-	-	-
			15-47대	484.6	-	-	-
			15-51대	333.9	-	-	-
			16-5대	206.6	-	-	-
			16-8대	8,684.0	-	-	-
			16-14대	12.0	-	-	-
			16-15대	5.8	-	-	-
			16-16대	7.5	-	-	-
			17-3유	1.6	-	-	-
			17-7유	25.6	-	-	-
			17-8유	17.1	-	-	-
			15-14제	332.2	-	-	-
			15-48유	58.2	-	-	-
			15-49유	31.7	-	-	-
			15-50유	22.1	-	-	-
			16-1유	6,728.9	-	-	-
			16-10유	22.1	-	-	-
전3	2,433.4 (1,493.5)	한강로3가	1천	363.8	-	-	-
			1-8천	531.1	-	-	-
			2-1천	160.1	-	-	-
		신계동	28-33천	438.5	-	-	-
전4	5,049.2	한강로3가	14-1천	101.2	-	-	-
			22-1유	858.6	-	-	-
			23-1유	4,089.4	-	-	-
전6	23,649	한강로3가	16-9대	9,044.3	-	-	-
			16-26대	4,134.0	-	-	-
			16-27대	27.6	-	-	-
			16-46대	2,907.4	-	-	-
			16-112대	139.2	-	-	-
			16-115천	93.2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6	23,649	한강로3가	22-5도	0.3	-	-	-
			24-4유	231.4	-	-	-
			19-2유	1,246.3	-	-	-
			19-4제	238.0	-	-	-
			22-1유	2,028.3	-	-	-
			22-3도	15.3	-	-	-
			22-7제	26.4	-	-	-
			23-1유	1,826.0	-	-	-
			23-3제	82.6	-	-	-
			25-1제	56.5	-	-	-
			25-2유	1,552.2	-	-	-
전8	8,950.6	한강로3가	16-20대	34.4	-	-	-
			16-28대	166.6	-	-	-
			16-29대	238.0	-	-	-
			16-30대	381.2	-	-	-
			16-114대	1.8	-	-	-
		원효로3가	51-15대	992.7	-	-	-
			51-29대	1,416.9	-	-	-
			51-30대	1,580.4	-	-	-
			51-46대	52.1	-	-	-
			51-49도	2.0	-	-	-
		신계동	42-5제	1.6	-	-	-
			43-8대	1,136.8	-	-	-
			43-18대	1,604.5	-	-	-
			43-19대	495.2	-	-	-
			43-20대	212.0	-	-	-
			43-21대	165.3	-	-	-
			43-22대	469.1	-	-	-
전9	15,032.8 (13,705.2)	한강로3가	16-31대	114.0	-	-	-
			16-32대	91.6	-	-	-
			16-33대	21.5	-	-	-
			16-35대	0.7	-	-	-
			16-114대	19.0	-	-	-
		원효로3가	51-23대	568.6	-	-	-
			51-28대	2,989.0	-	-	-
			51-31대	876.8	-	-	-
			51-32대	956.4	-	-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9	15,032.8 (13,705.2)	원효로3가	51-33대	953.7	-	-	-
			51-34대	549.5	-	-	-
			51-35대	226.4	-	-	-
			51-43대	82.2	-	-	-
			51-48대	26.2	-	-	-
			51-52대	99.9	-	-	-
			51-54대	216.8	-	-	-
			50-1유	796.7	-	-	-
			50-2제	102.5	-	-	-
			50-3유	49.6	-	-	-
			51-4유	3,105.0	-	-	-
			51-5유	284.4	-	-	-
			51-6유	109.9	-	-	-
			51-46대	40.0	-	-	-
			51-47대	16.1	-	-	-
			51-50대	2.6	-	-	-
			51-53대	75.6	-	-	-
			52-9구	395.4	-	-	-
			52-10전	24.5	-	-	-
			52-11구	51.0	-	-	-
		신계동	42-1구	276.3	-	-	-
			42-2제	9.9	-	-	-
			42-3구	53.9	-	-	-
			42-4유	377.7	-	-	-
			42-13구	76.3	-	-	-
			43-1유	65.5	-	-	-

※ 면적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해당 가구면적임

(이 하 여 백)

2) 변경

▌전자상가 주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1	4,787.0 (1,209.9)	한강로2가	14-18대	1,209.9	4787.0	-	유통업무설비
전2	20,366.1	한강로2가	15-19대	2,465.7	3,443.2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⑨ 유통업무설비
			15-46대	977.5			
			15-36유	150.9	9,929.6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⑪ 유통업무설비
			15-47대	484.6			
			15-51대	333.9			
			16-5대	206.6			
			16-8대	8,684.0			
			16-14대	12.0			
			16-15대	5.8			
			16-16대	7.5			
			17-3유	1.6			
			17-7유	25.6			
			17-8유	17.1			
			15-14제	332.2	-	-	유통업무설비
			15-48유	58.2	-	-	유통업무설비
			15-49유	31.7	-	-	유통업무설비
			15-50유	22.1	-	-	유통업무설비
			16-1유	6,728.9	-	-	유통업무설비
			16-10유	22.1	-	-	유통업무설비
전3	2,433.4 (1,493.5)	한강로3가	1천	363.8	-	-	-
			1-8천	531.1	-	-	-
			2-1천	160.1	-	-	-
		신계동	28-33천	438.5	-	-	-
전4	10,875.2	한강로3가	14-1천	101.2	-	-	-
			22-1유	858.6	-	-	-
			23-1유	4,089.4	-	-	-
전6	23,509.8	한강로3가	16-9대	9,044.3	17,414.3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① 유통업무설비
			16-26대	4,134.0			
			16-27대	27.6			
			16-46대	2,907.4			
			16-112대	139.2			
			16-115천	93.2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6	23,509.8	한강로3가	22-5도	0.3	17,414.3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① 유통업무설비
			24-4유	231.4			
			19-2유	1,246.3	-	-	유통업무설비
			19-4제	238.0	-	-	유통업무설비
			22-1유	2,028.3	-	-	-
			22-3도	15.3	-	-	유통업무설비
			22-7제	26.4	-	-	유통업무설비
			23-1유	1,826.0	-	-	유통업무설비
			23-3제	82.6	-	-	유통업무설비
			25-1제	56.5	-	-	유통업무설비
			25-2유	1,552.2	-	-	유통업무설비
전9	15,032.8 (13,705.2)	한강로3가	16-31대	114.0	7,797.3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유통업무설비
			16-32대	91.6			
			16-33대	21.5			
			16-35대	0.7			
			16-114대	19.0			
			51-23대	568.6			
			51-28대	2,989.0			
			51-31대	876.8			
			51-32대	956.4			
			51-33대	953.7			
			51-34대	549.5			
			51-35대	226.4			
			51-43대	82.2			
		원효로3가	51-48대	26.2			
			51-52대	99.9			
			51-54대	216.8			
			50-1유	796.7	-	-	유통업무설비
			50-2제	102.5	-	-	유통업무설비
			50-3유	49.6	-	-	유통업무설비
			51-4유	3,105.0	-	-	유통업무설비
			51-5유	284.4	-	-	유통업무설비
			51-6유	109.9	-	-	유통업무설비
			51-46대	40.0	-	-	유통업무설비
			51-47대	16.1	-	-	유통업무설비
			51-50대	2.6	-	-	유통업무설비
			51-53대	75.6	-	-	유통업무설비
			52-9구	395.4	-	-	유통업무설비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전9	15,032.8 (13,705.2)	원효로3가	52-10전	24.5	-	-	유통업무설비
			52-11구	51.0	-	-	유통업무설비
		신계동	42-1구	276.3	-	-	유통업무설비
			42-2제	9.9	-	-	유통업무설비
			42-3구	53.9	-	-	유통업무설비
			42-4유	377.7	-	-	유통업무설비
			42-13구	76.3	-	-	유통업무설비
			43-1유	65.5	-	-	유통업무설비

※ 면적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해당 가구면적임

(이 하 여 백)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권장용도 : 변경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8	전자상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 전자관련 소매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용적률 완화 세부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참조)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8	전자상가 주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 전자관련 소매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적용범위 변경

2) 불허용도 : 변경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적용범위 변경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폐율 계획(변경)

▌기정

구분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도시계획조례」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변경

구분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적용범위 변경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도시계획조례」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2)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 (이면부/간선부)	400 / 600%	600 / 800%	1,000%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변경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자상가 주변지구	일반상업지역 (이면부/간선부)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 적용범위변경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한시적 용적률 완화(50%p 이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8.)에 따른 허용용적률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하는 시행령 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단, 본 내용은 서울시 관련 심의 및 고시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한다.)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기정

구분		높이계획	비고
전자상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 100m 이하	-
	주거지역	• 40, 80, 100m 이하	-
	그외지역	• 100m 이하	공공지원시설용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높이계획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높이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조 적용(단, 옥상광고물 설치 불가)

▌변경

구분		높이계획	비고
전자상가 주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 100m 이하	적용범위 변경
	주거지역	• 40, 80, 100m 이하	
	그외지역	• 100m 이하	

※ 특별계획구역 높이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획지선의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최고높이가 적용될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0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 제1,2종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는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제한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132m를 초과하는 건축물(옥탑높이 포함)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이 하 여 백)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선(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2) 대지안의 공지 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등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시 인센티브 적용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 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용산전자상가지구 ① ~ ⑪ 특별계획구역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①,⑧,⑩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필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공중공공 보행통로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① ~ ⑩	•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국제업무지구와 연결되는 구간은 연결브릿지로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신설	•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
공중공공 보행통로	공중공공보행통로 신설	• 용산전자상가 ~ 국제업무지구 ~ 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중공공보행통로 신설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기정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
	1층 바닥높이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 (경사지의 경우 보도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 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측면공지 차폐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
	조명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권장
		한강대로변/ 용산공원 연접부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권장
	1층 바닥높이	전구역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보도/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건축물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권장
		용산공원 연접부	• 원색, 고채도 색상 사용 지양, 자연색 또는 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채색, 투명재료 활용 권장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공원 변으로 전선, 옥상설비 등 부속 시설의 직접적 외부 노출을 지양,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디자인, 식재 등으로 차폐 권장 • 단순 페인트 마감 지양, 재료 고유의 특징을 활용한 입면디자인 권장	권장
	측면공지 차폐	전구역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 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권장
기타	옥외광고물	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권장
	조명	전구역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이상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재료/색채 권장사항 변경	• 용산공원 인접지역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권장 추가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계획내용 변경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환경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준수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

다.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강대로의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확보를 통해 남산 조망과 광역통경축 확보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한양도성~한강~여의도를 잇는 신도심으로서 매력있는경관 형성	전구역	• 매력있고 상징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상징성 부여	-
	한강변	• 한강중심의 열린경관 형성	-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경관자원과 지역자산을 배려하는 경관관리	경부선, 한강, 용산공원 연접부	• 경의선 숲길, 한강, 용산공원 연계 광역 보행녹지축 조성	-
	용산공원 연접부	• 용산공원, 남산의 조망확보를 위한 높이관리 및 통경축 확보	-
	경부선 연접부	•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경부선 녹지축변 경관관리	-
걸을수록 매력있고,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전구역	• 한강~용산공원~남산 연계 보행네트워크 조성	-
		• 보행자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 옛길, 지역자산을 고려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전구역	• 한강대로변, 한강변 건물의 야간조명 설치 유도 - 벽면을 비추는 상향식 야간조명 •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134.6	증) 59,662.6	80,797.2	-
기정	㊼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4	3,085.9	-	3,085.9	계획결정
기정	㊽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6	3,160.9	-	3,160.9	계획결정
기정	㊾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7	1,992.9	-	1,992.9	계획결정
기정	㊿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8	12,894.9	-	12,894.9	계획결정
신설	(51)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1	-	증) 17,414.3	17,414.3	계획수립중
신설	(5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2	-	증) 7,797.3	7,797.3	계획수립중
신설	(53)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3	-	증) 8,950.6	8,950.6	미시행
신설	(54)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5		증) 5,792.4	5,792.4	계획결정
신설	(55)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9	-	증) 3,443.2	3,443.2	미시행
신설	(56)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10		증) 6,335.2	6,335.2	계획결정
신설	(57)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11	-	증) 9,929.6	9,929.6	미시행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표시 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변경사유
신설	(51)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1	17,414.3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에 따른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방향 및 기능적·공간적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고자 함.
	(5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2	7,797.3	
	(53)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3	8,950.6	
	(54)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5	5,792.4	
	(55)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9	3,443.2	
	(56)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10	6,335.2	
	(57)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11	9,929.6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용산전자상가지구4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㊼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4	한강로3가 1-3 일원	3,085.9	-	3,085.9	서울시고시 제2025-657호 (2025.11.27.)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한강로3가 1-3 일원	-
면적		• 3,085.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085.9㎡	-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보행통로면적 제외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허용 : 610% 이하, 상한 :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 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및 이면부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개별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연결브릿지		새창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청파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신산업융도」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기여부지 ② 공공지원시설		-
기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허가 전 신산업융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2) 용산전자상가지구6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㊽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6	한강로3가 1-1 일원	3,160.9	-	3,160.9	서울시고시 제2025-658호 (2025.11.27.)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한강로3가 1-1 일원	-
면적		• 3,160.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160.9㎡	-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 보행 통로면적 제외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허용 : 610% 이하, 상한 :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및 이면부 3m	-
배치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및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새창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4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신산업용도」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기여부지 ② 공공지원시설	-
기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3) 용산전자상가지구7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⑲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7	한강로3가 3-23 일원	1,992.9	-	1,992.9	서고 제 2025-609호 (2025.11.6.)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한강로3가 3-23 일원	-
구역면적		• 1,992.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가구 및 획지		• 1,992.9㎡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 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 보행 통로면적 제외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610% 이하 • 상한 :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완화비율	-
	높이	• 120m + α 이하 ※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변, 이면부 3m	-
대지내 공지	건축물 형태		• 새창로변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유도 • 저층부 높이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개방감 확보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고려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대지 내 통로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
	연결 브릿지		새창로(30m), 청파로(8m) 2개소 • 특별계획구역 5,9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4.0%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도로 ② 주차장	-
기타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건축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4) 용산전자상가지구8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㊽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8	한강로2가 15-2 일원	12,894.9	-	12,894.9	서고 제 2025-610호 (2025.11.6.)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한강로2가 15-2 일원		-
구역면적		• 12,894.9㎡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가구 및 획지		획지1	• 10,140.5㎡	-
		획지2	• 2,216.3㎡	-
용도	불허	획지1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획지1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획지2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등 도입 가능	-
	권장	획지1	•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물 밀도	건폐율	획지1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 보행 통로면적 제외
		획지2	• 90%이하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로 인한 건폐율 완화	-
건축물	용적률	획지1	• 기준 : 249.65% 이하	-

밀도			• 허용 : 606.87% 이하 • 상한 : 795.65%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용적률 적용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795.65%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795.65% 초과 가능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완화비율	
		획지2	• 669.36%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
	높이	획지1	• 100m + α 이하 ※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획지2	• 45m이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49길 : 3m • 이면부(북측) : 1.5m • 이면부(획지2) : 1m	-
	벽면한계선	획지2	• 소(국) 3-64번 : 3m(필로티계획으로 높이 9m 이상(3개층) 확보)	-
대지내 공지	건축물 형태		• 저층부는 주요 보행축(청파로)의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체보행연계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형태도입 • 고층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개방감 및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탑상형의 건축 형태를 계획함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
	이면부 단차구간		• 스텝형 조경 등 입체조경을 도입하여 옹벽을 최소화하여 조성함	-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대지 내 통로	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주차장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5m) 시종점 지정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
	연결 브릿지	새창로(30m), 청파로(8m) 2개소	• 특별계획구역 6, 10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24.5%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9.5%)은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영주차장 ② 도로 ③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업무시설)		-
기타		• 녹화공간 20%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 내 인근 부지와 통합개발 가능 • 인근 부지(한강로2가 14-18)와 연접한 공개공지는 단차 없이 통합조성 검토 • 인근 부지(한강로2가 14-18)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차량 회차공간 확보 • 건축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이 하 여 백)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5) 용산전자상가지구1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㊶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1	용산구 한강로2가 424 일대	-	증)17,414.3	17,414.3	-	계획 수립중

■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 800% 이하 • 허용 : 880% 이하 • 상한 : 법적 2배 이하(추가 공공기여,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
높이		• 12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식품,잡화,의류,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0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벽면한계선	• 청파로변 3m(1층부 , 필로티 계획 시 높이 6m 이상 확보)	-
	건축한계선	• 이면부 3m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청파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청파로변 공개공지 위치 권장	-
	공공보행통로	• 청파로-유수지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시·종점 지정	-
	공중공공	• 청파로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권장)	시행

	보행통로	※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수지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검토 가능 ※ 공중공공보행통로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연결 브릿지	국제업무지구 1개소	• 유수지 상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시·종점 지정	시행 지침에 따름
		청파로변 2개소	• 특별계획구역 2,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시·종점 지정(권장)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시·종점 지정 (권장)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2장 기준 적용)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4%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②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③ 공공임대주택(소형임대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④ 생활SOC, 빗물관리시설(저류시설) 등 설치 도입		-
기 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 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인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

(이 하 여 백)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6) 용산전자상가지구2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㊷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2	원효로3가 51-31 일원	-	증) 7,797.3	7,797.3	-	계획 수립중

■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 800% 이하 • 허용 : 880% 이하 • 상한 : 법적 2배 이하(추가 공공기여,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잡화,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벽면한계선	• 청파로변 3m(1층부 , 필로티 계획 시 높이 6m 이상 확보)		-
	건축한계선	• 이면부 3m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청파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권장)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시행 지침에 따름
	연결브릿지	청파로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1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설치 (권장)	시행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설치 (권장)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2장 기준 적용)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지침에 따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4%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신산업용도」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②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③ 공공임대주택(소형임대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④ 생활SOC, 빗물관리시설(저류시설) 등 설치 도입		-
기 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 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인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

(이 하 여 백)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7) 용산전자상가지구3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㊸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3	한강로3가 16-20 일원	-	증) 8,950.6	8,950.6	-	미시행

■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 800% 이하 • 허용 : 880% 이하 • 상한 : 법적 2배 이하(추가 공공기여,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 별표1 기준 적용)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권장용도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잡화,의류,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벽면한계선	• 청파로변 3m(1층부 , 필로티 계획 시 높이 6m 이상 확보)	-
	건축한계선	• 이면부 3m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권장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권장)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시행 지침에 따름
	연결브릿지	청파로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1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설치 (권장)	시행 지침에 따름
		이면부 2개소	• 특별계획구역 2,4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설치 (권장)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2장 기준 적용)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4%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②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③ 공공임대주택(소형임대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④ 생활SOC,빗물관리시설(저류시설) 등 설치 도입		-
기 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 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인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

(이 하 여 백)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8) 용산전자상가지구5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㉞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5	한강로3가 2-8 일원	5,792.4	-	5,792.4	서고 제 2025-414호 (2025.7.24.)	계획 결정

■ 계획지침(신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2-8번지 일원	-
면적		• 5,792.4㎡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 보행통로 면적제외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경우 800% 초과 가능	-
높이		• 12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및 이면부 :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 높이는 9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 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 청파로변, 새창로변 조성 ※ 유수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수지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검토 가능 ※ 공중공공보행통로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주변지역 1개소	• 유수지 상부 드래곤시티호텔과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시·종점 계획	
		청파로, 새창로 2개소	• 특별계획구역 4, 7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1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공공기여율 : 24.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9.5%)은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 보강 ②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
기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 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 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인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9) 용산전자상가지구9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㊺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9	한강로2가 15-19 일원	-	증) 3,443.2	3,443.2	-	미시행

■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610% 이하 • 상한 : 800% 이하 ※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경우 800% 초과 가능	-
높이		• 12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 별표1 기준 적용)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잡화,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벽면 한계선	• 청파로변 3m(1층부, 필로티 계획 시 높이 6m 이상 확보)	-
	건축 한계선	• 이면부 3m	-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공중공공보행통로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권장)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시행 지침에 따름
	연결 브릿지	청파로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설치 (권장)	시행 지침에 따름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7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설치 (권장)	
		대지 내 1개소	• 특별계획구역 10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설치 (권장)	
		※ 공중공공보행 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2장 기준 적용)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7.5%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신산업용도」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보강 ②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③ 공공임대주택(소형임대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④ 생활SOC, 빗물관리시설(저류시설), 도로(중로 3-A 청파로변 6m확폭) 등 설치 도입		-
기 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10) 용산전자상가지구10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㊾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0	한강로2가 15-13 일원	-	증) 6,335.2	6,335.2	-	계획 결정

■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한강로2가15-13 일원	-
면적		• 6,335.2㎡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6,335.2㎡	-
건폐율		• 60% 이하 ※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완화(최대 70% 까지 완화) ※ 공중공공보행통로(연결브릿지)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 보행 통로면적 제외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허용 : 610% 이하, 상한 :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적용 인센티브는 2025년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결과 및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7.8%p까지 상향 가능	-
높이		• 12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도시·건축디자인혁신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완화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및 이면부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공공보행통로		• 청파로-유수지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시·종점 지정	-
	연결브릿지	청파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9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24.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9.5%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

기타		• 주거비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세부계획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적용에 따른 계획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확보를 위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 미래도시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 디자인 제안 - 저층부 개방 및 선형공원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공간 계획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및 재료 사용으로 상징적 경관 조성 -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공간구조 구현	-
	공공성 확보	• 다양한 녹지공간 계획을 통한 활성화 • 공유공간 조성 • 지역기여시설 도입	-

(이 하 여 백)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11) 용산전자상가지구11 특별계획구역(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㊼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	한강로2가 16-8 일원	-	증) 9,929.6	9,929.6	-	미시행

■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610% 이하 • 상한 : 800% 이하 ※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경우 800% 초과 가능	-
높이		• 12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 별표1 기준 적용)	-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의 30%이상 ※ 별표1 참고
	권장	•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유수지, 이면부 3m	-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 새창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24.5%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신산업용도」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유수지 상부 녹지화 및 시설 보강 ②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③ 공공임대주택(소형임대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④ 생활SOC, 빗물관리시설(저류시설) 등 설치 도입	-
기 타	• 주거비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유수지 상부 활용 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공원조성 가능범위 검토 필요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이 하 여 백)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 11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및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 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6.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역특성, 계획여건에 따라서 크게 공통사항, 중점 인센티브, 계획유도 인센티브 등 으로 구분함
-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중점 인센티브는 획지 별 가급적 1~2개의 항목이 해당하도록 계획함
  - 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점 인센티브를 계획하지 않을 수 있음
-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주거지역의 경우 인센티브 계획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전체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적용가능

- 인센티브 항목은 구역현황, 입지여건, 용도지역, 접도 조건 등에 따라 차별화하고,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차등하여 계획 할 수 있음

(이 하 여 백)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공통사항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기준용적률×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시장의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 생태도심	입체녹지조성	기준용적률×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상 인정 한도 이상 설치시
	공공보행통로설치	기준용적률×0.03	• 공공보행통로에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적용 불가

※ 계획기준 준수 시 적용 가능한 다음의 항목은 해당 인증기관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지열 등 신재생 세부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을 결정해야하는 다음의 항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서면동의를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결정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인센티브에 에너지 설치, 저영향개발,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입체녹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 적용 가능)
- UAM시설,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특색있는 건축설계,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역사문화 특성 보전,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절차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가능 (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① ~ ③ (용도지역 변경 없는 지역)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구분	유형		
스마트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기준용적률× 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 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공공시설 연계경관사업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 생태도심	입체녹지조성	기준용적률×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시
	공공보행통로설치	기준용적률×0.03	• 공공보행통로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시

※ 입체보행통로등 의무 이행 항목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계획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항목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이 하 여 백)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④ ~ ⑪ (용도지역 변경지역)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계수
중점	신산업용도 도입		기준용적률(600%) ×(신산업용도 30% 초과면적/연면적) × 2.4	• 지식기반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스마트 물류시설 등 신산업용도 30%(전체 연면적 기준) 초과 도입시 ※ 도입시설 산정시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최대120%
	입체 보행데크	공중공공 보행통로	• 대지 내 공중 공공보행통로(입체보행데크) 조성시		정량10%p
		연결 브릿지	• 인접 타 특별계획구역과의 공중 공공보행통로(입체보행데크)조성 시 ※ 설치되는 보행데크(브릿지형)개수당인센티브 부여		정량20%p
	녹지 초과 확보	개방형	기준용적률× (추가녹지면적 / 대지면적)×1.0	• 녹화공간 의무기준 20% 초과 설치시 - 20% 설치시 : 인센티브 40%p 정량부여 - 20% 초과 설치시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최대 80%p ※ 20% 초과 설치시 정량 인센티브 20%와 초과면적으로 산정한 인센티브량을 합산하여 최대 80% 이하 부여 ※ 개방형녹지 조성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된 면적의 경우 공개공지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불가	최대 100%p
		입체	기준용적률× (추가녹지면적 / 대지면적)×1.0	• 입체녹지면적 설치시, 최대 20%p (저층부 상부, 옥상, 녹화 포함)	
	방재안전		기준용적률x 0.04	• 빗물이용시설설치 시 - 빗물저류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최대20%p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주택 도입 시		정량40%p
계획 유도	공익시설 도입		• 건축물 내 공익시설 : 소규모기업의 활동공간(개방형 라운지 등) 특정층(최상층) 개방 :최상층에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등) 조성시 : 기준용적률×(도입시설연면적/대지면적)×0.4		최대40%p
	저층부개방공간 확보		• 저층부녹지와 연계되는 저층부(최소1층) 특정 시간대 완전 개방 시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6시간 이상)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1층 바닥면적) × 0.6		
	공공보행통로		•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도입 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4.0		최대40%p
	권장용도 도입		기준용적률×(도입시설연면적/대지면적)× 0.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및 운동시설 ※ 도입시설 산정 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최대40%p
	가로활성화용도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및 1층 외벽길이의 ½이상 설치		정량40%p
	지상전주 및 전선지중화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전주 및 전선(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정량40%p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항목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며, 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결정

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공시설등 제공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 '권역별생활서비스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 적용) ②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임대주택 건립 시	• 관련법률 및 조례,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용적률계획 일괄재정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13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	-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출입구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 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 완화량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시	• 적용대상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 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되,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공개공지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
친환경항목 적용시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다만,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table>
<tr><th>구 분</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친환경항목
적용 시</td><td>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
<tr><th>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h>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
<table>
<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
<tr><td>완화
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td><td>
<table>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d></tr>
<tr><th>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h>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d><td>
<table>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td></tr>
</table>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td><td>-</td></tr>
<tr><td>특별건축구역
도입시</td><td>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 건축물에 대해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을 적용
</td><td>-</td></tr>
<tr><td>지능형건축물
인증 시</td><td>
• 적용대상 : 「건축법」 제65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인증 기준이 고시된 건축물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지능형건축물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관 :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인증등급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 colspan="2">심사기준</td><td>90%
이상 득점</td><td>85% 이상
90% 미만</td><td>80% 이상
85% 미만</td><td>75% 이상
80% 미만</td><td>70% 이상
75% 미만</td></tr>
<tr><td colspan="2">각 분야별
과락점수</td><td>85% 미만</td><td>80% 미만</td><td>75% 미만</td><td>70% 미만</td><td>65% 미만</td></tr>
<tr><td rowspan="3">심사총평</td><td>비주거</td><td colspan="5">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6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주거</td><td colspan="5">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복합건축물</td><td colspan="5">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td></tr>
</table>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table>
<tr><th>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건축기준
완화 비율</td><td>15%</td><td>12%</td><td>9%</td><td>6%</td><td>0%</td></tr>
</table>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td><td>-</td></tr>
</table>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등 설치·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규정은 허용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을 더하여 상한용적률로 산정
※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적정성 등 검토
※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세부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및 서울시 관련지침의 내용을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1) 차량동선(변경)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전구역(도면참조)	• 간선도로 및 모퉁이변에 지정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필지[차량진출입 불허구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행동선(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 옛 도시조직(옛 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피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
보차혼용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이 하 여 백)

2.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기준

1.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2조를 준용함.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4.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5.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8.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9. 전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 총량의 10% 이내 변경, 사업별 금액의 30% 내 변경 등
10.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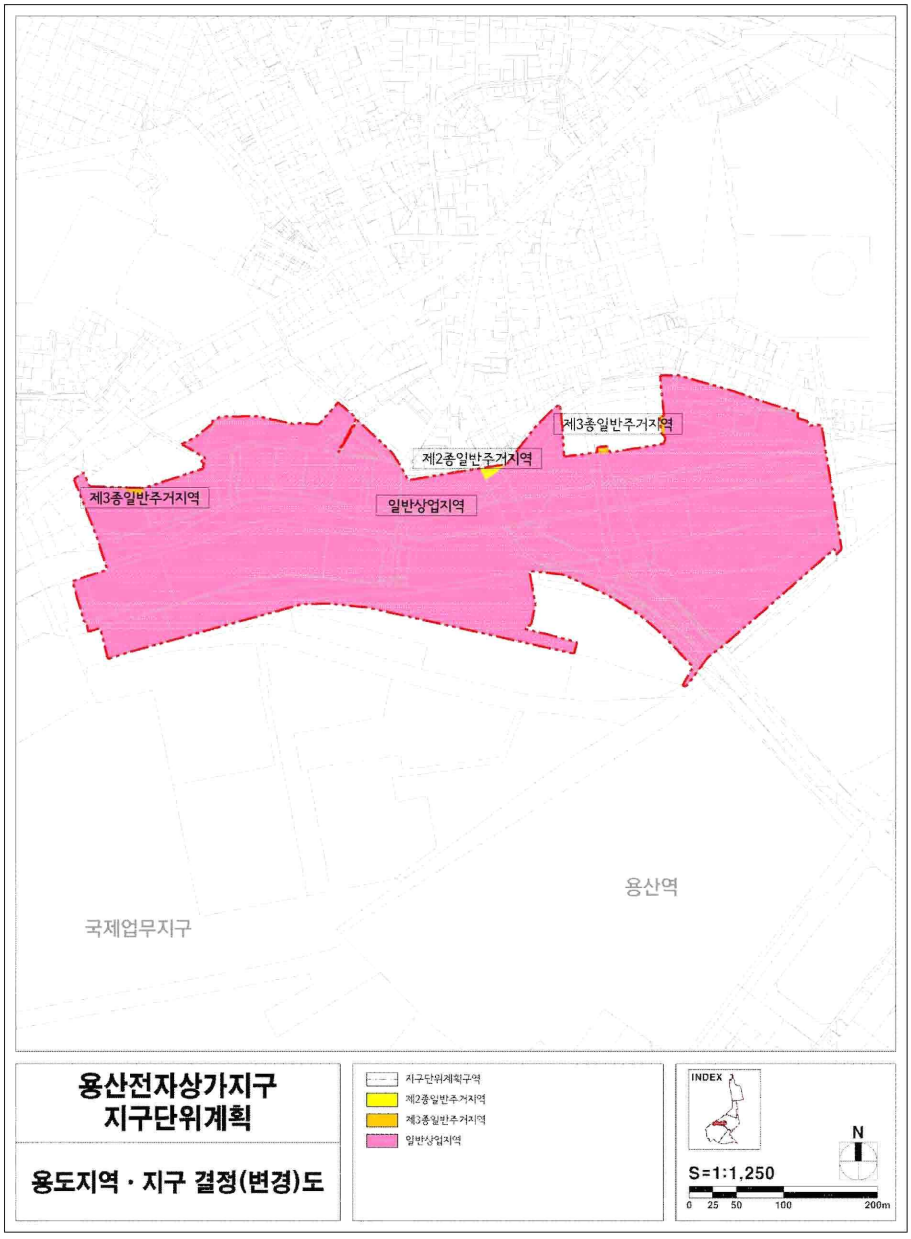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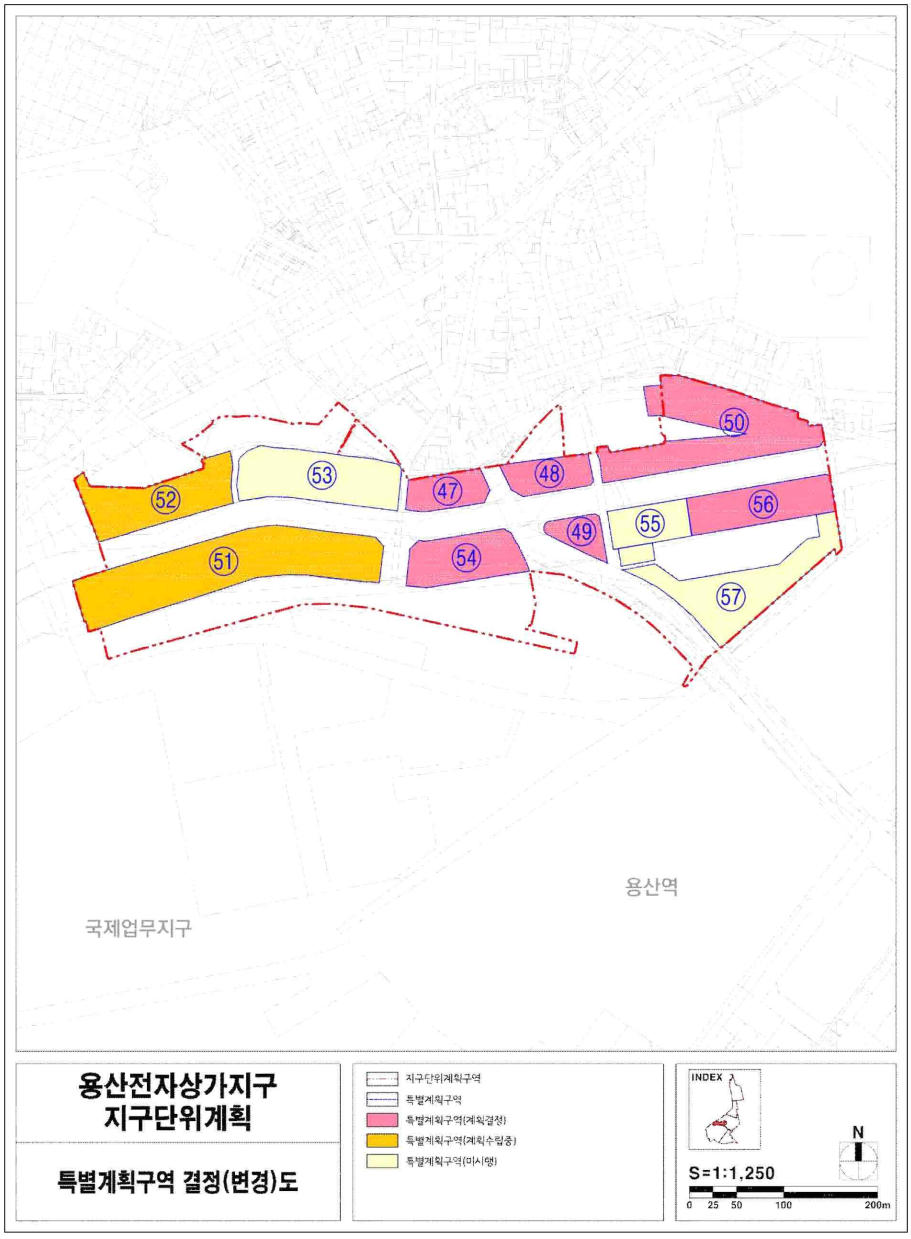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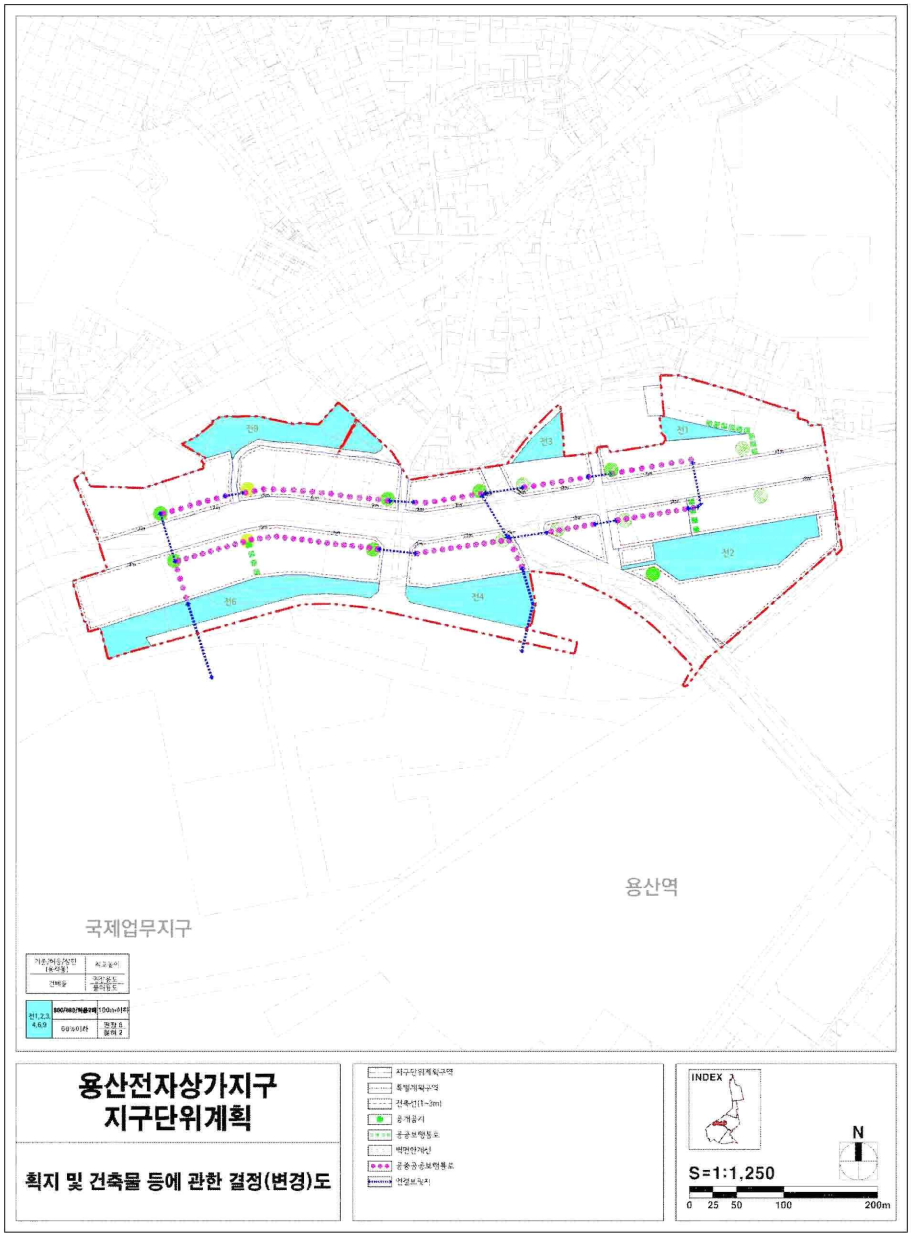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7호

도시관리계획(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3.1.)에서 국가상징거점으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용산일대에 대해 미래신도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립하고 재정비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259,349.1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변경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710,541.62	서고 제1995-53호 (1995.3.10.)	-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두텁바위로 일대 ~ 백범로 일대	358,536.69		-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백범로 일대 ~ 새창로 일대	725,899.93		-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새창로 일대 ~ 한강로 일대	1,024,943.99		-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119,703.10		-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대로 ~ 용산동 5가 일대	424,022.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2·13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11,118.9㎡) •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9,378.9㎡)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나진 19·20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에 따른 구역 편입 (증 6,335.2㎡) • 캠프킴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구역내 편입 (증 60,395.79㎡) •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의 한강 연결성 강화 고려 강변북로 및 하천 일부 구역 편입 (증 17,069.72㎡) • 과도한 면적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합리성, 실현성 증진과 유연하며,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 분할
2	남영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삼각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4	용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	용산전자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	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 계		3,259,349.1	감) 2,835,326.81	424,022.29	100.0	-
주거지역	소 계	1,934,426.96	감) 1,652,474.00	281,952.96	66.50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673.00	감) 27,468.74	3,204.26	0.76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474.05	감) 377,694.52	115,779.53	27.3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7,687.80	감) 478,245.94	29,441.86	6.94	-
	제3종일반주거지역	724,755.01	감) 649,881.55	74,873.46	17.66	-
	준주거지역	177,837.10	감) 119,183.25	58,653.85	13.83	-
상업지역	소계	1,324,507.94	감) 1,183,489.25	141,018.69	33.26	-
	일반상업지역	1,222,376.94	감) 1,081,358.25	141,018.69	33.26	-
	중심상업지역	102,131.00	감) 102,131.00	-	-	-
자연녹지지역		414.20	증) 636.39	1,050.59	0.25	-

▌용도지역 결정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27,468.74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377,694.5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감) 478,245.94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649,881.55	
	준주거지역	감) 119,183.25	
일반상업지역		감) 1,081,358.25	
중심상업지역		감) 102,131.00	
자연녹지지역		증) 636.39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9	40~46	주간선도로	4,000 (3,870)	서울역광장	한강제1 인도교북단	일반도로	총고 제757호 (1939.9.18.)	철도 중복결정 (면적: 83㎡)
기정	대로	2	57	30~70	주간선도로	2450 (660)	한강로3가 (광로3-9)	서빙고 초등학교	일반도로	건고 제64호 (1978.3.29.)	서빙고로
기정	대로	3	4	25~30	집산도로	649	한강로3가 40-1028	한강로3가 40-1026	일반도로	서고 제639호 (2025.11.20.)	-
기정	중로	1	9	20	집산도로	245	한강로3가 63-99	용산동5가 2-49	일반도로	서고 제140호 (2003.6.5)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1	10	20	집산도로	110	서빙고로 남단	미군부대 경계선	일반도로	서고 제103호 (2003.5.10.)	-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31	용산동5가 2-4	용산동5가 1-13	일반도로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45	용산동5가 2-43	한강로2가 187-7	일반도로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14	12	집산도로	150 (139)	한강로3가 65-54	한강로3가 65-42	일반도로	서고 제188호 (2006.5.18.)	-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92	한강로3가 (중3-14)	한강로3가 (중3-9)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462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3가 65-329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중로	3	10	12~13	국지도로	113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3가 (소3-57)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중로	3	11	12	집산도로	109	한강로3가 65-42	한강로3가 65-26	일반도로	서고 제188호 (2006.5.18.)	-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71	한강로1가 167-2	한강로1가 216-13	일반도로	서고 제299호 (2011.10.13.)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15	11~12	국지도로	123	한강로3가 (중3-10)	한강로3가 65-9	일반도로	서고 제438호 (2010.12.2.)	-
기정	소로	1	5	8.2	특수도로	18.34	한강로2가 191-4	한강로2가 191-4	지하도로 (지하보행통로)	용고 제99호 (2012.1.5.)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6	8	특수도로	25.3	한강로3가 187-19	한강로2가 187-7	지하도로 (지하보행통로)	서고 제122호 (2012.5.1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116	한강로2가 225-1	한강로3가 63-132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12	10	집산도로	157	한강로3가 63-1	한강로3가 63-132	일반도로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2	한강로2가 221-1	한강로3가 63-46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14	10	집산도로	201	한강로3가 63-1	한강로3가 63-46	일반도로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2	나1	7.5~9.5	국지도로	84	한강로3가 (광로3-9)	대로2-57	일반도로	서고 제488호 (2021.9.9.)	용산철도 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소로	3	나1	6	국지도로	60	한강로3가 65-154	한강로3가 65-477	일반도로	서고 제488호 (2021.9.9.)	용산철도 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 도로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녹지 : 변경없음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691.6	-	5,691.6	-	-
소계				-	2,684.0	-	2,684.0	-	-
기정	②	녹지	경관녹지	용산동5가 1-44일대	1,008.2	-	1,008.2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4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65-38일대	1,675.8	-	1,675.8	서고 제188호 (2006.5.18.)	-
소계				-	3,007.6	-	3,007.6	-	-
기정	④	녹지	연결녹지	한강로2가 220-4일대	3,007.6	-	3,007.6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5

2)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38,458.8	-	38,458.8	-	-
기정	⑲	공원	가로공원	한강로2가 159-5 일대	2,410.0	-	2,410.0	서고 제122호 (2012.5.1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⑳	공원	어린이공원	용산동5가 2-4	2,998.5	-	2,998.5	건고 제187호 (1962.12.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㉑	공원	문화공원	한강로3가 426-3일대	17,577.4	-	17,577.4	서고 제142호 (2006.4.20.)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정	㉒	공원	근린공원	한강로3가 63-388일대	2,225.0	-	2,225.0	서고 제140호 (2003.6.5)	세계일보사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㉓	공원	근린공원	용산동5가 19일대	11,705.3	-	11,705.3	서고 제103호 (2003.5.10.)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 정비구역
기정	㉔	공원	가로공원	한강로3가 65-325	1,076.3	-	1,076.3	서고 제229호 (2015.8.6.)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정	㉕	공원	소공원	한강로3가 65-228 일대	466.3	-	466.3	서고 제340호 (2011.11.17.)	LG유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0,986.9	-	20,986.9	-	-
기정	④	학교	초등학교	한강로3가 65-5일대	3,600.0	-	3,600.0	교위 고5호 (1987.2.17.)	한강초교
기정	⑤	학교	고등학교	한강로3가 65-209일대	17,386.9	-	17,386.9	교위 고5호 (1987.2.17.)	용산공고교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고
④ (한강초교)	40%이하	170%이하	5층이하	기존 건물 용적률 (160.42%)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⑤ (용산공고교)	35%이하	150%이하	5층이하	기존 5층이상 건축물 7층이하로 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 공공청사 : 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192.9	-	2,192.9	-	-
기정	⑦	공공청사	-	용산동5가 2-4일대	1,691.7	-	1,691.7	서고 제122호 (2012.5.10.)	주민 자치센터
기정	⑧	공공청사	-	용산동5가 1-28일대	501.2	-	501.2	서고 제373호 (2013.11.7.)	공원관리소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⑦	50%이하	250%이하	40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⑧	38%이하	70%이하	6.5m 이하	-

3) 문화시설 : 변경없음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박물관	한강로3가 65-154일대	2,275.52	-	2,275.52	서고 제488호 (2021.9.2.)	용산철도병원
기정	②	문화시설	도서관	한강로2가 427-3 일원	2,916	-	2,916	서고 제429호 (2024.9.5.)	문화공원, 도로 하부에 중복결정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친환경 계획 : 신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에 인센티브 항목 적용

<table>
<tr><th colspan="2">인센티브 항목</th><th>세부항목</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탄소 중립</td><td>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td><td>•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td><td>기준용적률 × 0.05</td><td rowspan="3">허용 용적률</td></tr>
<tr><td>저영향개발</td><td>•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td><td>기준용적률 × 0.05</td></tr>
<tr><td>디자인 혁신</td><td>유니버셜 디자인 도입</td><t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td><td>기준용적률 × 0.03 ~ 0.05</td></tr>
<tr><td colspan="2">친환경 건축물</td><td>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table><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table>② 녹색건축 인증
<table><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table>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table>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table>-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td><td>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td><td>상한 용적률</td></tr>
</table>

나. 방재안전계획 : 신설

-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지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방재지구,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의 7가지 계획 중 해당없음

4.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 신설

- 지역(역사)자산 조사는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등 8가지로 구분됨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및 기타 지역자산(매장문화재)에 해당되며,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2013)의 관리지침을 따름
  - 현재에는 원형의 모습·형태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자료상 또는 "터"의 형태로 전해져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위치	적용기준	
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서울 구 용산철도병원 본관 (한강로3가 65-154 일대)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 • 보전방법 및 범위 등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국가등록 문화재 제428호
건축자산	와서지 (한강로3가 65 일대)	• 근·현대 건축물 중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등 고려하여 건축물 외관 보전 검토 • 멸실에 따른 표석 설치 시 「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기타지역자산	은행나무 (한강로2가 55-1 일대)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름	지정번호 : 서3-17~19
	은행나무 (용산동5가 24 일대)		지정번호 : 서3-5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 따라 적용위치 확인
※ 지표조사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간선부 이면부	• 3,000㎡ 이하	적용범위 변경

※ 기존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단일 필지의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 기 공동개발 된 필지
- 획지 및 모든 공동개발 필지면적 합계가 최대개발규모 초과 시

나.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한강대로, 원효로)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대지분할기준, 현황 대지규모 등을 통해 적정 개발규모 유도 • 획지 내 필지는 개별건축 불가능 -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변경	• 소유자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과도한 지정 지양 • 획지계획 전면해제 → 공동개발 또는 자율적 개발 - 계획 실현성 제고	-

다.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획기준
공동개발(권장)	도면참조	• 공동개발(권장) 최소화
자율적 공동개발	도면참조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공동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도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 되도록 계획 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함(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 1. 부정형 필지가 형성되는 경우 2.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 등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개발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필지분할 가능선	도면참조	• 대지 형태의 정형화 및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지 분할을 권장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 - 필지 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 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제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기정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정1	1,165.5	한강로3가	44-1대	5.7	224.7	지정	-
			44-6대	55.1			-
			44-7대	163.9			-
			45-2대	23.2	132.9	지정	-
			45-3대	37.9			-
			45-4대	46.3			-
			45-8대	22.1			-
			45-9대	3.4			-
			49-1대	99.2	211.9	지정	-
			49-2대	106.1			-
			49-6대	6.6			-
			48-2대	72.7	143.1	지정	-
			48-4대	26.4			-
			49-3대	44.0			-
			49-4대	47.3	94.6	지정	-
			49-5대	47.3			-
			43-1도	35.3	-	-	-
			45-1도	1.1	-	-	-
			45-5대	13.2	-	-	-
			45-7도	102.7	-	-	-
			48-1대	164.0	-	-	-
			48-5도	42.0	-	-	-
정2	662.7	한강로3가	52대	107.8	207.6	지정	-
			53대	89.2			-
			54대	10.6			-
			55대	7.6	156.0	지정	-
			56대	72.7			-
			57대	69.4			-
			58대	6.3			-
			59대	6.3	185.4	지정	-
			60대	69.4			-
			61-1대	102.4			-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정2	662.7	한강로3가	62대	7.3	121.0	지정	-
			62대	4.6			-
			61-2대	72.7			-
			65-6대	36.4			-
정3	1,263.8	한강로3가	65-155주	231.4	664.5	획지	-
			65-231주	433.1			-
			65-156대	307.4	-	-	-
			65-157대	113.4	-	-	-
			65-158대	178.5	-	-	-
정4	1,839.3	한강로3가	65-346대	65.4	238.3	지정	-
			65-347철	69.8			-
			65-348대	103.1			-
			65-349대	74.0	170.5	지정	-
			65-350대	48.9			-
			65-351대	47.6			-
			65-352대	106.4	302.7	지정	-
			65-353대	39.0			-
			65-354대	57.5			-
			65-355대	99.8			-
			65-7대	847.2	-	-	-
			65-154철	71.0	-	-	-
			65-326대	114.7	-	-	-
			65-432대	94.9	-	-	-
정5	10,868.6	한강로3가	65-24대	161.0	-	-	-
			65-118대	66.1	-	-	-
			65-128대	68.4	-	-	-
			65-230대	5,111.5	-	-	-
			65-560대	366.8	-	-	-
			65-580대	465.8	-	-	-
			89대	4,629.0	-	-	-

2) 변경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아1	1,165.5	한강로 3가	44-1대	5.7	224.7	권장	맹지(44-6) 및 대지면적 35㎡미만 필지 해소(44-1)
			44-6대	55.1			
			44-7대	163.9			
			45-1도	1.1	147.2	권장	맹지(45-1,5,8,9) 및 대지면적 35㎡ 미만 필지 해소(45-2)
			45-2대	23.2			
			45-3대	37.9			
			45-4대	46.3			
			45-5대	13.2			
			45-8대	22.1			
			45-9대	3.4			
			43-1도	35.3	138.0	권장	맹지 해소(45-7) (구적면적 : 43-1)
			45-7도	102.7			
			48-1대	164.0	206.0	권장	맹지 해소(48-1)
			48-5도	42.0			
			48-4대	26.4	70.4	권장	대지면적35㎡미만 필지 해소(48-4)
			49-3대	44.0			
			49-1대	99.2	211.9	권장	맹지(49-1) 및 폭 5m미만 세장형 필지 해소(49-6)
			49-2대	106.1			
			49-6대	6.6			
			48-2대	72.7	-	-	-
			49-4대	47.3	-	-	-
			49-5대	47.3	-	-	-
아2	662.7	한강로 3가	52대	107.8	207.6	권장	맹지 해소(53,54)
			53대	89.2			
			54대	10.6	156.0	권장	맹지(55,56,57) 및 폭5m미만 세장형필지 해소(58)
			55대	7.6			
			56대	72.7			
			57대	69.4			
			58대	6.3			
			59대	6.3	185.4	권장	맹지(60,61-1,62) 및 폭5m미만 세장형필지
			60대	69.4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고
		동	지번	필지	소계		
아2	662.7	한강로 3가	61-1대	102.4			해소(59) (필지분할가능선 : 62)
			62대	7.3			
			62대	4.6	113.7	권장	맹지(61-2,62) 및 폭5m미만 세장형 필지 해소(65-6) (필지 분할 가능선:62)
			61-2대	72.7			
			65-6대	36.4			
아3	1,263.8	한강로 3가	65-155주	231.4	664.5	권장	획지계획 해제 후 공동개발 지정전환(획지→지정)
			65-231주	433.1			
			65-156대	307.4	-	-	-
			65-157대	113.4	-	-	-
			65-158대	178.5	-	-	-
아4	1,839.3	한강로 3가	65-346대	65.4	238.3	권장	맹지(65-346,347,348)이나 『주차장법』시행령 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로 공동 개발 지정 유지
			65-347철	69.8			
			65-348대	103.1			
			65-349대	74.0	170.5	권장	맹지(65-349,350,351)이나 『주차장법』시행령 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로 공동 개발 지정 유지
			65-350대	48.9			
			65-351대	47.6			
			65-352대	106.4	206.2	권장	맹지 해소(65-352)
			65-355대	99.8			
			65-353대	39.0	96.5	권장	맹지 해소(65-353)
			65-354대	57.5			
			65-7대	847.2	-	-	-
			65-154철	71.0	-	-	구적면적
			65-326대	114.7	-	-	-
			65-432대	94.9	-	-	-
아5	10,868.6	한강로 3가	65-24대	161.0	-	-	-
			65-118대	66.1	-	-	-
			65-128대	68.4	-	-	-
			65-230대	5,111.5	-	-	-
			65-560대	366.8	-	-	-
			65-580대	465.8	-	-	-
			89대	4,629.0	-	-	-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권장용도 : 변경없음

도면표시	적용구역	권장용도	비고
7	아세아 아파트 주변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용적률 완화 세부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참조)

(이 하 여 백)

2) 불허용도 : 변경

▌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고
1	간선도로변 및 일반상업지역 (노선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일반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 장례식장	-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성기구취급소,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도시계획조례」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이 하 여 백)

2)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	600%	800%	1,000%	-
	이면부	2종	170%	200%	250%	-
		3종	210%	250%	300%	-

▌변경

구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한강로변	일반상업지역	800%	88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20%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75%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한시적 용적률 완화(50%p 이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적용
• 용적률 체계개편('24.8.)에 따른 허용용적률체계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하는 시행령 용적률 범위안에서 적용 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적용 불가(단, 본 내용은 서울시 관련 심의 및 고시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한다.)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높이계획	비고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한강로변	• 100m 이하(건축심의시 우수디자인 인정 시 120m이하)	-
	이면부(주거지역)	• 40, 8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높이 계획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획지선의 변경 또는 공동개발 변경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최고높이가 적용될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0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 제1,2종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는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제한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132m를 초과하는 건축물(옥탑높이 포함)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선(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및 간선교차로	1m ~ 10m	• 단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그 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및 대규모 필지등 건축한계선 일부 확폭
	간선가로변	3m	
	이면부	1m ~ 3m	

2) 대지안의 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조성지침	
공개공지	선형 및 쌈지형	한강로변 및 주요교차로 주변지역, 세계일보사부지, 정비창전면①,③, LG유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 설치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로 조성 •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대지는 해당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정점 주변에 배치 •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보차혼용통로		아세아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전면공지		전지역 인도부속형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부속형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기존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조성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기정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
	1층 바닥높이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 (경사지의 경우 보도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 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측면공지 차폐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
	조명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권장
		한강대로변/ 용산공원 연접부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권장
	1층 바닥높이	전구역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보도/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전구역	• 연접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 건물의 층고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키도록 제한 • 단, 부득이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권장
건축물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 외벽의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도모	권장
		용산공원 연접부	• 원색, 고채도 색상 사용 지양, 자연색 또는 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채색, 투명재료 활용 권장 • 용산공원 인접지역은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사용 권장 - 공원 변으로 전선, 옥상설비 등 부속 시설의 직접적 외부 노출을 지양,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디자인, 식재 등으로 차폐 권장 • 단순 페인트 마감 지양, 재료 고유의 특징을 활용한 입면디자인 권장	권장
	측면공지 차폐	전구역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 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 • 공지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권장
기타	옥외광고물	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서울시고시 2017-490호)' 준수	권장
	조명	전구역	• 가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이상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준용

※ 상기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재료/색채 권장사항 변경	• 용산공원 인접지역 공원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 권장 추가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계획내용 변경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환경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준수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

다.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강대로의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확보를 통해 남산 조망과 광역통경축 확보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한양도성~한강~여의도를 잇는 신도심으로서 매력있는경관 형성	전구역	• 매력있고 상징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 한강대로, 원효로 중심가로 상징성 부여	-
	한강변	• 한강중심의 열린경관 형성	-
용산공원, 남산, 한강 등 경관자원과 지역자산을 배려하는 경관관리	경부선, 한강, 용산공원 연접부	• 경의선 숲길, 한강, 용산공원 연계 광역 보행녹지축 조성	-
	용산공원 연접부	• 용산공원, 남산의 조망확보를 위한 높이관리 및 통경축 확보	-
	경부선 연접부	•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경부선 녹지축변 경관관리	-
걸을수록 매력있고, 걷고 싶은 보행자 중심의 가로조성	전구역	• 한강~용산공원~남산 연계 보행네트워크 조성	-
		• 보행자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 옛길, 지역자산을 고려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전구역	• 한강대로변, 한강변 건물의 야간조명 설치 유도 - 벽면을 비추는 상향식 야간조명 •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14,311.3	-	314,311.3	-
기정	㉔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1	26,783.9	-	26,783.9	사업완료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2	11,694.6	-	11,694.6	존치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3	12,314.8	-	12,314.8	사업완료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4	52,894.6	-	52,894.6	사업완료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5	6,106.4	-	6,106.4	사업완료
기정	㉕	세계일보사부지 특별계획구역	30,443	-	30,443	사업완료
기정	㉖	구민회관이적지 특별계획구역	4,963.7	-	4,963.7	미시행
기정	㉗	용산공원 남측 특별계획구역	50,266.0	-	50,266.0	사업완료
기정	㉛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6,203.3	-	6,203.3	사업완료
기정	㉜	정류장부지 동측 특별계획구역	5,631	-	5,631	계획수립중
기정	㉝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21,126	-	21,126	계획수립중
기정	㉞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51,936.1	-	51,936.1	계획결정
기정	㉟	한강로3가 65-100일대 특별계획구역	17,932.6	-	17,932.6	계획결정
기정	㊲	LG유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4,753.7	-	4,753.7	사업완료
기정	㊺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11,261.7	-	11,261.7	계획결정

※ 구역면적은 사업시행 단계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표시 조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1, 2, 3, 4, 5(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1	용산구 한강로2가 424일대	26,783.9	-	26,783.9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2	용산구 한강로2가 191일대	11,694.6	-	11,694.6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존치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3	용산구 한강로2가 189일대	12,314.8	-	12,314.8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4	용산구 한강로3가 63-70일대	52,894.6	-	52,894.6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5	용산구 한강로2가 210-1일대	6,106.4	-	6,106.4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용도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300 ~ 700% 이하 • 허용 용적률 : 600 ~ 80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150m 이하	-
용도	불허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권장	• 주거시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복합된 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전자, 전기관련상가 • 관광숙박시설	-
건축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10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공원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
공공시설부지 제공율		• 공공용지 부담률 : 22.6% 이상 • 도로 및 용산역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폭 65m 이상의 공원 설치·조성후 공용화 조치 제공 • 동서녹지축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	-
기타		• 도시환경정비 구역내 기존 대규모 토지(예 : 세계일보사, 국제빌딩 등)는 사업 시행시 기존시설 인근에 집단적으로 조성토록하고 분할 등에 따른 불합리한 개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3호(2007.7.26.) 및 용산구고시 제2010-4호(2010.3.12.) 결정사항 준용	-

2) 세계일보사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㉕	세계일보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3-1일대	30,443	-	30,443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가구 및 획지	• 6,300㎡~14,800㎡ 권장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250% 이하 • 허용 용적률 : 35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150m 이하	-
토지이용	• 복합용도, 공원 등	-
건축선	•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공원 및 녹지변 : 건축한계선 15m	-
공공시설 계획	• 공공용지 부담률 : 20.0%이상 - 도로 및 폭 20m 공원 설치 · 조성후 공용화조치 제공, 공원양측 15m 공원형태의 공개공지 설치 · 조성	-
기타	• 세계일보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40호(2003.6.5.) 결정사항 준용	-

3) 구민회관이적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㉖	구민회관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일대	4,936.7	-	4,936.7	서울시고시 제2008-14호 (2008.1.17.)	미시행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현재 : 준주거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이하 • 허용용적률 : 330%이하 • 상한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의 규정에 의함 ※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시설 건립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용	-
높 이		• 최고높이 100m이하	-
용도	불허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
	권장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 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선		• 서빙고로변 : 건축한계선 10m • 서빙고로변 공공공지 시작점부터 공공공지 끝부분에서 7m 이격된 지점까지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적용	-
공공시설 계획		• 순부담율 20%이상 • 세계일보사 특별계획구역의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과 연계하여 특별계획구역 서측편으로 폭13m로 공공공지 조성	-
기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함 •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연면적 500㎡이상의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 등 공공기여가 인정 되는 용도 도입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비율을 15%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가능 • 기부채납되는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 등은 권장용도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을 경우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2007.9.1.)"에 따라 생태면적 기준 적용 • 구민회관 이적지 특별계획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4호(2008.1.17.) 결정사항 준용	-

4) 용산공원 남측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㉗	용산공원 남측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용산동5가 19-5 일대	50,266	-	50,266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가구 및 획지	• 4,000㎡ ~ 23,000㎡ 권장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250% 이하 • 허용 용적률 : 350% 이하	-
높 이	• 최고높이 80 ~ 150m 이하	-
토지이용	• 복합용도, 공원 등	-
건축선	•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 5 ~ 10m • 공원 및 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
공공시설 계획	• 공공용지 부담률 : 20.3% 이상 - 도로, 용산역 ~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폭50m이상의 공원 설치·조성 후 공용화 조치	-
기타	• 용산공원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시고시 제2003-103호(2003.5.10.) 준용	-

5)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기정	면 적 (㎡) 변경	면 적 (㎡)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㉛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 일대	6,203.3	-	6,203.3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사업 완료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도로 개설 부분) ※ 서고 제2006-182(2006.5.18.)호에 따라 이면부(1,645.9㎡)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됨 • 방화지구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 용적률 : 600% 이하 • 허용 용적률 : 800% 이하 • 상한 용적률 : 800% 이하 ※ 단, 2006년 6월 1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공공시설(1,442.2㎡) 보다 추가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800% 이상 가능 (단, 1,000% 이하로 하고 증가량은 800×1.3×가중치×a로 할 것)		-
	제3종 ⇒ 일반상업지역	• 기준 용적률 : 250% 이하 • 허용 용적률 : 610% 이하 • 상한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기정	변경	-
		• 최고높이 100m 이하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높이 120m 이하로 완화 적용)	•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용도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장례식장		-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선	• 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5m •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 조례 준용 • 간선도로변 및 공원변에 조성하며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률 : 20.0% 이상 - 대상지 남측 도로 확폭(B = 12m → 12~13m) - 동측 특별계획구역 연접도로 확폭(B = 7~11m → 11~12m) - 대상지 남측 공원조성(B = 20m 이상)	-
기타	•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은 지상층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와 오피스텔 용도를 합한 용적률 60% 이하로 제한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시 지상층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도 용적률은 40% 이하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0.6.) 2부 1-4-5의 3에 ⑤의 나항목에 따라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은 우선 가중평균한 후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을 산정함	-

(이 하 여 백)

6) 정류장부지 동측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㉜	정류장부지 동측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179 일대	5,631	-	5,631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계획 수립중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기 정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 준주거지역	-
건폐율		• 60% 이하	좌동	-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190% 이하 • 허용 용적률 : 200% 이하 • 상한 용적률 : 250% 이하 ※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용	• 기준 용적률 : 200% 이하 • 허용 용적률 : 330% 이하 •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12층이하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높이완화 가능	• 최고높이 90m 이하	-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장례식장	-
	권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선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좌동	-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공개공지 조성시 공원변에 조성하여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의 공원과 연계되고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좌동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율 : 10.0% 이상 - 대상지 남측 현황도로 확폭(B=11m→13m) -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연접 현황도로 확폭(B=8m→12m) - 대상지 남측 공원조성(B=10m이상)	• 순부담율 : 20% 이상 - 대상지 남측 현황도로 확폭(B=11m→13m) -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연접 현황도로 확폭(B=8m→12m) - 대상지 남측 공원조성(B=10m이상) • 기부채납 미충족분 발생시 지역에 필요한 건축물로 설치·제공	-

7)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기정	면 적 (㎡) 변경	면 적 (㎡)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㉝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500 일대	21,126	-	21,126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	계획 수립중

▌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 정		변 경			
용도지역	• 제2, 3종일반주거지역		• 개별계획 수립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4) • 통합계획 수립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1), 준주거지역 (획지 2)			-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	• 기준 : 190% 이하 • 허용 : 200% 이하 • 상한 : 250% 이하	개별계획 수립시	제3종 일반주거 (획지1,2,3)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275% 이하 • 상한 : 법정 2배이하	-
				제2종 일반주거 (획지 4)	• 기준 : 200% 이하 • 허용 : 220% 이하 • 상한 : 법정 2배이하	
	제3종일반주거	• 기준 : 210% 이하 • 허용 : 230% 이하 • 상한 : 250% 이하	통합계획 수립시	제2종 일반주거 (획지 1)	• 기준 : 200% 이하 • 허용 : 220% 이하 • 상한 : 법정 2배이하	
				준주거 지역 (획지 2)	• 기준 : 200% 이하 • 허용 : 330% 이하 • 상한 : 400% 이하	
높이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최고층수 12층이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높이완화 가능)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고높이 80m이하		개별계획 수립시	• (획지1,2,3)최고높이 80m 이하 • 세무서부지(획지4) 12층 이하		-
			통합계획 수립시	• (획지 2)최고높이 100m 이하 • (획지 1)세무서부지 12층 이하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부대시설, 복리시설		좌동			-
건축선	• 북측도로변 : 도로반대편 대지경계선에서 18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서빙고로변 : 건축한계선 5m • 그 외 지역 : 건축한계선 3m			-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간선가로변에 조성하되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좌동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율 : 10.0% 이상 - 대상지 서측 현황도로 확폭(B=4m⇒12m) - 이촌동길 확폭계획 반영(이촌동길 확폭계획 변경시 도로선형변경 가능)	• 개별계획 수립시 : 좌동 • 통합계획 수립시 : 순부담율 15% 이상 • 기부채납 미충족분 발생시 지역에 필요한 건축물로 설치·제공	-
기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촌동길 확폭계획 반영할 것 • SHIFT 등 주택사업 추진시에도 기반시설계획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이행하며, 높이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높이계획을 따름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역 동측 국지도로 신설(6m) ※ 용산세무소 이전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가능 • 좌동	-

※ 용산세무서 이전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 조정 가능

(이 하 여 백)

8)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㉞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 일대	51,936.1	-	51,936.1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07.10.)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가구 및 획지	• 46,510.8㎡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이하 • 허용용적률 : 250%이하 • 상한용적률 : 382%이하	-
높이	• 최고층수 36층이하	-
토지이용	•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및 공공시설	-
건축선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남북간 보차혼용통로를 중심으로 폭 20m의 통경축 확보	-
대지 내 통로	• 보차혼용통로 폭 12m 개설	-
공공시설 계획	• 순 부담률 : 34%이상 - 공공시설 (도로, 공공청사 등)	-

9) 한강로3가 65-100일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㉟	한강로3가 65-100일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 일대	17,932.6	-	17,932.6	서울시고시 제2006-23 (2006.5.25)	계획 결정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서고제2006-188(2006.5.18.)호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	-
건폐율		• 20%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최고높이 80m이하(25층이하)	-
용도	불허	• 공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선		• 도로 및 철도변 : 건축한계선 3m	-
공공시설 계획		• 순부담율 : 15%이상	-
기타		• 65-100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8호(2006.5.18) 결정사항 준용 ※ 개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가능	개별법 적용

10) LG유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㊲	LG유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229 일대	4,753.7	-	4,753.7	서울시고시 제2011-340호 (2011.11.17.)	사업 완료

▌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허용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 1,000%이하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기정	변경	-
			• 최고높이 100m 이하	• 기준높이 120m+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 검토 가능)	
용도	불허	전층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호원 • 근생 · 판매시설 · 기타시설중 성기구취급,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1층 전면부	• 자동차전시장, 은행		
	권장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에서 다음 용도 -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 축 선			• 간선도로(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5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공원 인접변으로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칙적으로 간선도로(한강로)변으로 차량출입 불허		-
공공시설부지 제공율			• 용도지역 상향 면적의 15% 이상		-
기타	주민편익시설 (도서관)		•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도서관(IT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개방		-

11)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㊺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일대	11,261.7	-	11,261.7	최초 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8호 (2021.9.2.)	계획 결정

▌ 계획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대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도로는 제외)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폐지, 문화시설(입체적 결정) 신설						-
건폐율	• 60%이하 (등록문화재 보전시 70%까지 완화)						-
용적률	• 기준 : 200% 이하, 허용 : 280% 이하 • 상한 : 400% 이하(사전협상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제공시 일괄적 부여)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서고 제2019-313호, 2019.9.19.)						준주거
높이	• 최고높이 100m이하 (우수 : 12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기준 별도 제시						-
용도	지정	위치지정 (공개공지변 1~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정용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	• 간이음식점 • 카페 • 유사이동 소매점(팝업스토어)	• 예술·기념품 소매점 • 섬유·의복 등 소매점	박물관 연계·지원용도 / 지정용도 면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서점 (지정용도 전체면적의 50% 이상)	서점(문화복합공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제조업소, 공연장	• 사진·촬영 등 영상처리점 • 창작·예술 등 관련 서비스점 • 기타 인쇄물 출판업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지정용도 전체면적의 20%이상)	-		
	불허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권장		•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신설 도로(6m)변 : 건축한계선 5m • 그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등록문화재 보존을 위해 용산철도병원 건축한계선 적용 배제)				-
	고층배치구간 금지구간		• 한강과 용산공원을 잇는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고층배치금지구간 지정 (폭 23m 내외)				-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공통	• 문화시설과 연계한 공적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가로와 연계될 수 있는 휴게시설 배치,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 높이는 6m 이상 확보	-
		개별	• 문화시설 이면부에 건축물 저층부,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는 540㎡ 이상 규모로 계획 (예. 가로 35m × 세로 15m 내외)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보행녹지축 조성을 위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폭 11m, 높이 6m) 조성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분리 설치(간선부(서빙고로변) 차량 진출, 이면부 차량 진입) • 서빙고로변 등록문화재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연장 • 보행·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시야 확보를 위해 서빙고로변 차량 진출구간 평탄부 조성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공공용지 부담률(순부담률) : 24.1%(기준 대지면적 10,771.8㎡), 약 666억원 ※ 도시계획변경(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내외로 함 - 도로 : 대상지 동측 6m 도로 확보 (기부채납) - 사접협상에 따른 문화시설(등록문화재 리모델링), 건축물 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수장고, 어린이집, 풋살장(체육시설))	-
기타			• 근현대건축물(등록문화재)의 보전 및 활용방안 구상 •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등록문화재와 연계하여 옥외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계획 마련	-

(이 하 여 백)

6.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공통사항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치	기준용적률×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개발	기준용적률×0.05	• 저영향개발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건축설계	기준용적률×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시장의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 생태도심	입체녹지조성	기준용적률×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상 인정 한도 이상 설치시
	공공보행통로설치	기준용적률×0.03	• 공공보행통로에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른 의무사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

※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적용 불가

※ 계획기준 준수 시 적용 가능한 다음의 항목은 해당 인증기관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지열 등 신재생 세부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을 결정해야하는 다음의 항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서면동의를 통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 결정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인센티브에 에너지 설치, 저영향개발,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입체녹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설치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 적용 가능)
- UAM시설,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육성, 특색있는 건축설계,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역사문화 특성 보전,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변경 절차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가능 (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공공시설등 제공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α현금·건축물) - 인센티브 계수 적용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건축물 계수 완화(1.2적용) :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권역생활서비스시설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공공시설등 제공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포함) · 복합건축물인 경우 '권역별생활서비스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 계수 적용) ②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공공의 정책사업, 방재안전 시설 확보 등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 / 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구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임대주택 건립 시	• 관련법률 및 조례, 「공동주택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용적률계획 일괄재정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13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	-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출입구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 · 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 완화량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을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 '공공시설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시	• 적용대상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 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되,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 - 산정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공개공지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
친환경항목 적용시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다만,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table>
<tr><th>구 분</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친환경항목
적용 시</td><td>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
<tr><th>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h>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
<table>
<tr><td>구분</td><td>ZEB1
에너지효율 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
<tr><td>완화
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td><td>
<table>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d></tr>
<tr><th>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h>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d><td>
<table>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td></tr>
</table>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td><td>-</td></tr>
<tr><td>특별건축구역
도입시</td><td>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 건축물에 대해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을 적용
</td><td>-</td></tr>
<tr><td>지능형건축물
인증 시</td><td>
• 적용대상 : 「건축법」 제65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인증 기준이 고시된 건축물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지능형건축물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관 :
-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인증등급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 colspan="2">심사기준</td><td>90%
이상 득점</td><td>85% 이상
90% 미만</td><td>80% 이상
85% 미만</td><td>75% 이상
80% 미만</td><td>70% 이상
75% 미만</td></tr>
<tr><td colspan="2">각 분야별
과락점수</td><td>85% 미만</td><td>80% 미만</td><td>75% 미만</td><td>70% 미만</td><td>65% 미만</td></tr>
<tr><td rowspan="3">심사총평</td><td>비주거</td><td colspan="5">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6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주거</td><td colspan="5">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각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분야별 10점)</td></tr>
<tr><td>복합건축물</td><td colspan="5">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td></tr>
</table>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table>
<tr><th>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
<tr><td>건축기준
완화 비율</td><td>15%</td><td>12%</td><td>9%</td><td>6%</td><td>0%</td></tr>
</table>
• 완화범위 :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td><td>-</td></tr>
</table>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등 설치·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규정은 허용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을 더하여 상한용적률로 산정
※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상한용적률 항목을 중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적정성 등 검토
※ 상한용적률인센티브 세부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및 서울시 관련지침의 내용을 따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1) 차량동선(변경)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전구역(도면참조)	• 간선도로 및 모퉁이변에 지정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별필지[차량진출입 불허구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행동선(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긴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우회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 옛 도시조직(옛 길)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 24시간 개방 구조로 단차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피로티 구조 설치시 유효높이 6m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캐노피 설치 권장	-
보차혼용통로	전구역 (도면참조)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유도	-

(이 하 여 백)

2.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기존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기준

1.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3조를 준용함.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7.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8.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산정기준과 계획기준을 변경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단, 서울시장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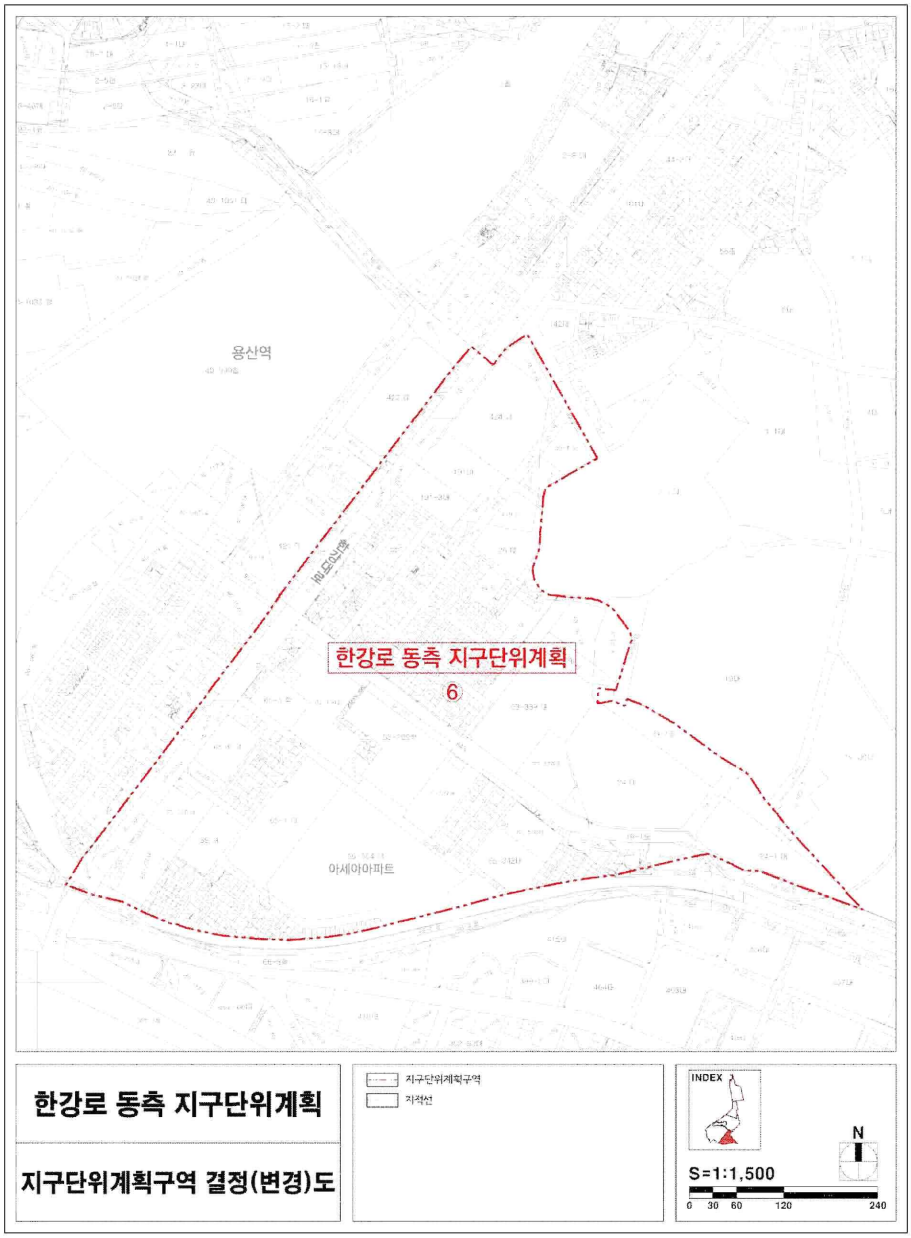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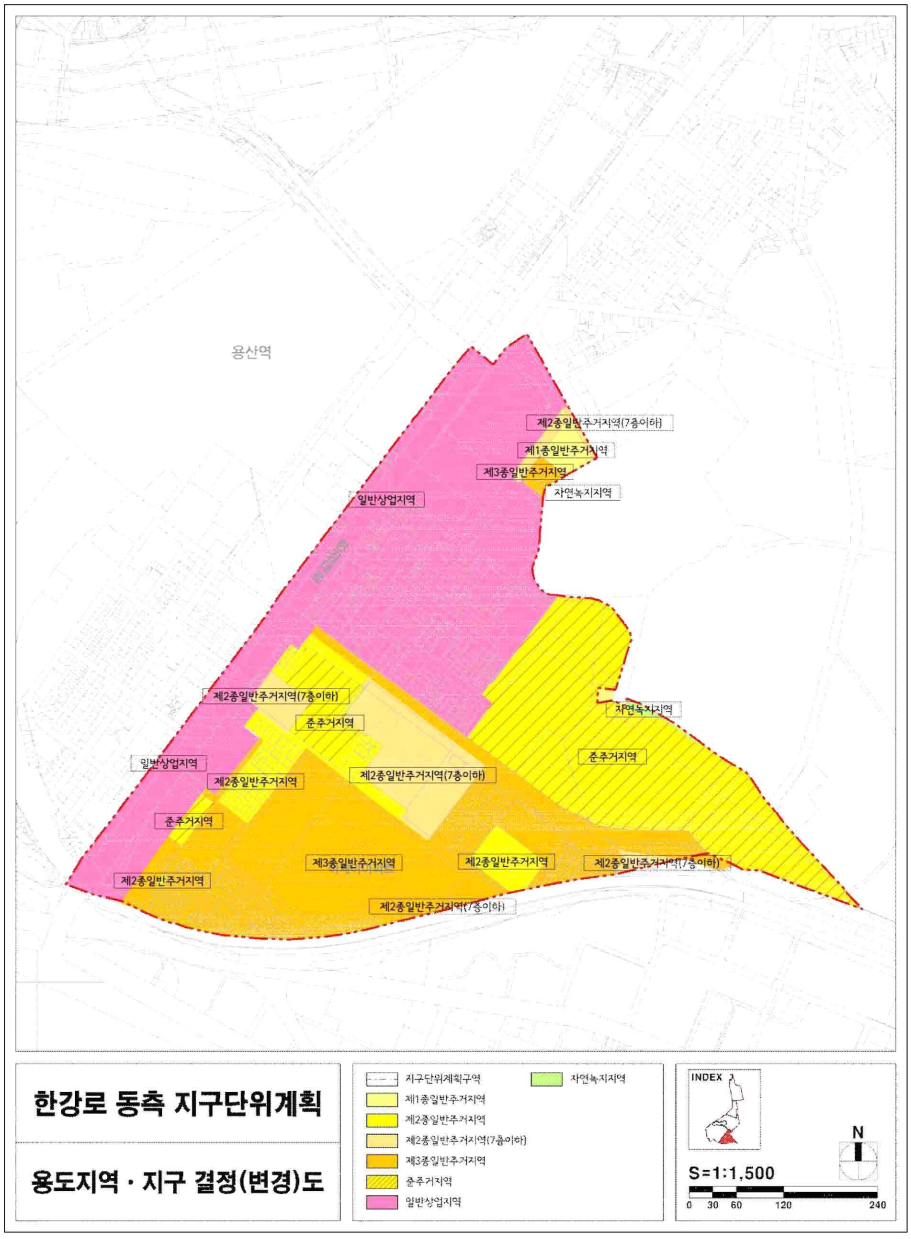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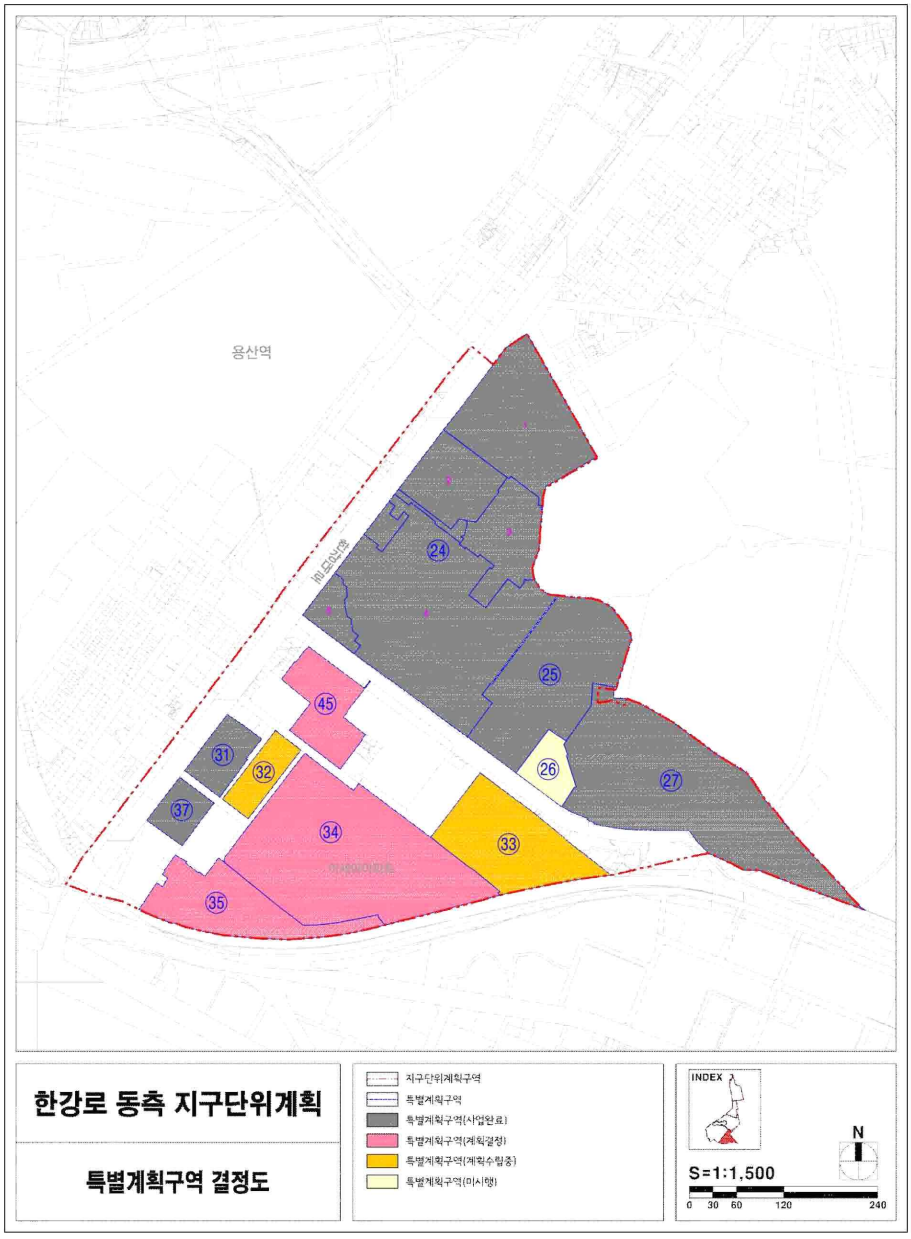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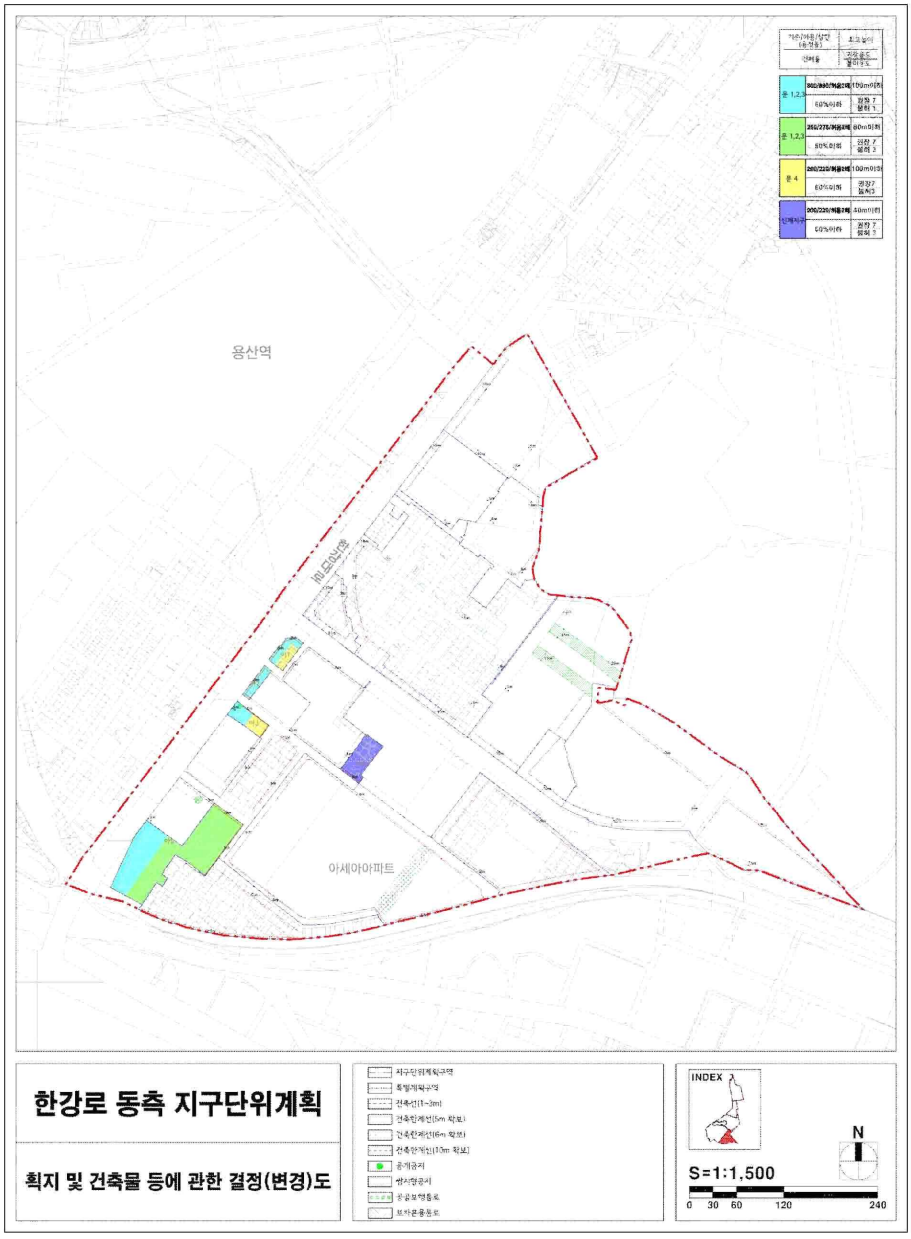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8호

남현동 538-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제50조 및「남현동 538-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30조(협약 중도해지의 사유) 제1항 등에 따라 민자주차장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사 업 명 : 남현동 538-2호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위 치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일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일
관악구 남현동 538-2호 일대	케이디부동산 디벨로퍼닷컴(주) (대표이사 : 임채영)	2000. 3. 30.	2026. 4. 14.

2.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 대상사업의 처분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한 사업시행자의 검증을 위해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요구사항 이행을 기피하고 제출된 자료마저 불충분하여 재무능력 검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당사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이라는 민간투자법 본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익적 피해가 막중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24일에 청문을 실시하고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함을 고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2133-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9호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8.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330호(2026.02.12.)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	증) 13,497	13,497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증) 13,497	13,49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3,358	3,358	24.9	
	도 로	-	증) 2,654	2,654	19.7	
	소공원	-	증) 704	704	5.2	
획 지	소 계	-	증) 10,139	10,139	75.1	
	획지 1	-	증) 10,139	10,139	75.1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497	-	13,497	100.0	
주거지역	소계	12,707	증) 790	13,49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577	감) 7,219	3,358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2,130	감) 2,130	-	-	
	준주거지역	-	증) 10,139	10,139	75.1	
상업지역	소계	790	감) 790	-	-	
	일반상업지역	790	감) 790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준주거지역	7,532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건립을 위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979	
		일반상업지역		628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1	
		일반상업지역		162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5.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4.8%
(= 332,117,242천원 - 252,718,532천원) ÷ 83,679,862천원

항 목				금 액(천원)
총수입	분양주택	소유자		70,705,232
		일반		221,641,905
	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33세대	5,317,231
		장기전세주택	124세대	17,697,892
	보류지			935,294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16,271,555

항 목	금 액(천원)
합계	332,117,242
총 지출	252,718,532
종전자산 총액	83,679,862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해당금액은 약식감정평가 금액임(평가 업체명 :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종전자산 =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평가사례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공시지가, 개별요인비교 및 그밖의 요인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토지건물추정액(천원)	집합건물추정액(천원)	국공유지추정액(천원)	현금청산추정액(천원)	종전자산 추정액(천원)
69,035,556	20,013,000	15,379,297	20,747,991	83,679,862

※ 최종 종전자산 추정액은 토지·건물 추정액 및 집합건물 추정액 합산액에서 국공유지 추정액, 현금청산액을 제외한 가액임.
※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될 예정임.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16형	491,618	개별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94.8%)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24형	729,019		
30형	855,019		
34형	935,294		
근린생활시설(2층 전체)	2,387,385		

※ 추정분담금은 2026년 01월 기준으로 추정한 가액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에 따른 비례율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천원)				
			-10%	-5%	0%	5%	10%
변동률		84형단가 (천원/3.3㎡)	7,200	7,600	8,000	8,400	8,800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천원)	10%	36,850	147.9%	138.8%	129.6%	120.5%	111.3%
	5%	35,175	129.9%	120.8%	111.6%	102.5%	93.3%
	0%	33,500	113.1%	104.0%	94.8%	85.7%	76.5%
	-5%	31,825	95.3%	86.1%	77.0%	67.8%	58.6%
	-10%	30,150	77.6%	68.5%	59.3%	50.2%	41.0%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2)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1)	폭원 (m)								
기정	소로	-	17	6	-	272	신길동 89-70	신길동 114-1	일반 도로	-	건고768호 (64.1.24)	
변경	소로	-	17	8~10	국지 도로	303 (88)	신길동 89-70	신길동 111-15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	12~13	국지 도로	136	신길동 97-79	신길동 95-153	일반 도로	-	-	

1) ( )는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2) ( )는 사업지구 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7	소로 -17	• 폭원변경, 노선번호 및 시종점 조정 - 폭원 : 6m → 8m~10m - 연장 : 272m → 303m	• 기정 도로 내 신길동96-24일원 재개발 정비구역내 전체구간 폭원을 확장하고(6m→8~10m), 서울시 고시제2006-299호에 따른 도로결정(변경)을 반영하여 시종점 및 도로연장 조정
-	중로 3-(1)	• 노선신설 - 폭원 : 12m~13m - 연장 : 136m	• 정비사업구역 진출입의 원활화 및 보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도로 폭원 확장 및 신설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신길동 95-269	-	증) 704	704	-	

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704㎡	• 지역주민의 휴게장소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 1,661.42	1,661.42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획지1 내	-	증) 1,615.49	1,615.49	
	경로당		-	증) 213.08	213.08	198㎡ 이상
	어린이집		-	증) 222.61	222.61	198㎡ 이상
	작은도서관		-	증) 108.66	108.66	108㎡ 이상
	주민운동시설		-	증) 303.50	303.50	-
	어린이놀이터		-	증) 767.64	767.64	-
관리사무소		획지1 내	-	증) 45.93	45.93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8.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3,497	획지1	10,139	신길동 96-24번지 일대	60	-	-	-	60	

나. 건축시설 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3,497	획지1	10,139	신길동 96-2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460% 이하	128m 이하 (40층 이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9">■ 주택공급계획 : 453세대
■ 건립규모 및 비율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전용면적)</th><th rowspan="2">계</th><th rowspan="2">분양주택</th><th colspan="3">임대주택</th><th rowspan="2">비율
(%)</th></tr>
<tr><th>소계</th><th>재개발
임대</th><th>장기전세</th></tr>
<tr><td colspan="2">합 계</td><td>453</td><td>296</td><td>157</td><td>33</td><td>124</td><td>100.0</td></tr>
<tr><td rowspan="4">공동
주택</td><td>40㎡이하</td><td>66</td><td>47</td><td>19</td><td>19</td><td>-</td><td>14.6</td></tr>
<tr><td>40㎡~60㎡이하</td><td>107</td><td>15</td><td>92</td><td>14</td><td>78</td><td>23.6</td></tr>
<tr><td>60㎡~85㎡이하</td><td>280</td><td>234</td><td>46</td><td>-</td><td>46</td><td>61.8</td></tr>
<tr><td>85㎡초과</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 건축한계선
- 주변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 영등포로, 영등포로76길, 도신로64길(대상지 서측) : 건축한계선 3m
• 도신로64길(대상지 남측), 영등포로80길 : 건축한계선 5m
- 기타 건축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전면공지</td><td colspan="9">■ 영등포로, 영등포로80길, 도신로64길에 접하는 대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td></tr>
</table>

■ 용적률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8">산 정 내 용</th></tr>
<tr><td colspan="2">토지이용 계획</td><td>구역면적</td><td>획지면적</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td><td>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 시설 국·공유지</td><td>공공주택 (장기전세) 대지지분</td><td>건축물 기부채납</td><td>현금 기부채납</td></tr>
<tr><td colspan="2"></td><td>13,497㎡</td><td>10,139㎡</td><td>3,358㎡</td><td>1,888㎡</td><td>527㎡</td><td>2,646.06㎡</td><td>-</td><td>-</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8">• 순부담면적 : 943㎡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3,358㎡ - 1,888㎡ - 527㎡ = 943㎡</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기준 용적률</td><td colspan="8">• 215.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9,511㎡ X 190% + 628㎡ X 600%) ÷ 10,139㎡ = 215.40%
<table><tr><th>구분</th><th>면적(㎡)</th><th>용적률(%)</th><th>적용기준</th></tr><tr><td>상업지역</td><td>628</td><td>600</td><td>•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기준용적률 적용</td></tr><tr><td>주거지역</td><td>9,511</td><td>190</td><td>•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기준용적률 적용</td></tr></table></td></tr>
<tr><td>상한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8">• 234.80% 이하
= 기준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215.40% X (1 + 1.3 X 0.7448 X 0.0930)
= 234.80%
가중치 = 공공시설 기준용적률 ÷ 사업부지 기준용적률
= 160.44% ÷ 215.40% = 0.7448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후 대지면적
= 943㎡ ÷ 10,139㎡ = 0.0930</td></tr>
<tr><td>법적 상한 용적률</td><td colspan="8">• 460.00% 이하(준주거지역 500% 이하)
<table><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tr><td>장기전세 주택 공급</td><td>※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의 1/2 이상
= (460.00% - 234.80%) x 1/2 이상
= 112.60% (연면적 11,416.51㎡) 이상 〈 계획 112.66% (연면적 11,422.20㎡)</td></tr></table>
<table><tr><th>구분</th><th colspan="3">적용 기준</th><th>계획내용</th></tr><tr><td rowspan="4">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 colspan="2">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td><td>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장수명주택으로 계획</td><td>• 장수명주택 계획</td></tr><tr><td rowspan="3">② 친환경 건축물 (2개 부문이상 구분 단계 상향 적용)</td><td>㉠ 환경성능</td><td>녹색건축 인증</td><td>• ㉮등급기준으로 상향적용</td></tr><tr><td>㉡ 에너지성능</td><td>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td><td>• ㉮등급기준으로 상향적용</td></tr><tr><td>㉢ 에너지관리</td><td>에너지모니터링 및 데이터분석</td><td>• ㉯등급기준 적용</td></tr></table></td></tr>
</table>

구 분		산 정 내 용			
			㉣ 신재생에너지	신 · 재생에너지 의무설치	• ㉮등급기준 적용
		③ 역사문화보전		-	• 해당사항 없음
		④ 커뮤니티 지원시설		-	• 미설치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확보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217세대 [453세대 - 236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 33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 세대수(453세대 - 236세대)의 15% 이상 : 217세대 X 15% ≒ 32.55세대 이상 ※ 33세대 계획 ≥ 32.55세대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주택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33	15.2	100
	40㎡이하	39.76	55.24	19	8.8	57.6
	50㎡~60㎡이하	59.90	81.91	14	6.4	42.6

2) 공공주택(장기전세)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계획기준	•공공주택(장기전세)공급기준 = 완화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X 1/2이상 확보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234.80%
법적상한용적률	• 460.00% (준주거지역 500%이하)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6">계 획 내 용</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장기전세)
공급기준</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6">• 225.20%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460.00% - 234.80%</td></tr>
<tr><td>완화용적률 1/2</td><td colspan="6">• 112.60%</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6">• 10,139㎡ X 112.6% = 11,416.51㎡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7">공공주택
(장기전세)
확보계획</td><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주택규모(㎡)</td><td rowspan="2">세대수</td><td rowspan="2">연면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colspan="3">합계</td><td>124</td><td>11,422.20</td><td>112.66%</td></tr>
<tr><td>39형</td><td>39.76</td><td>55.24</td><td>-</td><td>-</td><td></td></tr>
<tr><td>59형</td><td>59.90</td><td>81.91</td><td>78</td><td>6,388.98</td><td></td></tr>
<tr><td>74형</td><td>74.86</td><td>101.55</td><td>20</td><td>2,031.00</td><td></td></tr>
<tr><td>84형</td><td>84.93</td><td>115.47</td><td>26</td><td>3,002.22</td><td></td></tr>
</table>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주변 인접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유도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조경면적 확보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검토하여 포함 •수해 - 사업지구 내 조경면적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으로 토양침투 및 우수유출량 감소 •화재 - 구역 내 화재발생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교통재해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상동선체계 구축 - 진출입도로부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토록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현 황	증 감	계 획
신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조합	201	증) 252	453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남측 약 250m 거리에 영신초등학교 입지	•교통처리 - 정비구역 주변 교육시설의 통학로에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 인식	
	•보행동선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동선 구축 - 등하교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펜스, 횡단보도,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및 정비를 하여 보행권 확보,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예방	
	•건설공사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CPTED(Crm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설계 기법 적용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인식토록 하는 단지 조성
분명한 시야선 확보	•건축물 설계시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도로변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
적합한 조명의 사용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의 개선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통행자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시킴
영역성 강화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시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도신로64길 및 영등포로80길 등 보도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유지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킴으로써 범죄예방 도모
범죄예방 프로그램화	•능동적 범죄예방체계 및 개방형 공간구조 형성, 통합형 관리시스템 구축 •가로 및 공개공지, 구역별로 적합한 시설설치로 효율적인 방범체계구축

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획지1	10,139	신길동 96-24번지 일대	10,139	

14. 환경성 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경관	생태 면적률	생태면적률 29.57%	○	•적용 생태면적률 30.26%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계획
	녹지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Ⅰ, 외부연결성 Ⅲ	•단지내 조경녹지 최대한 확보 •소공원 1개소 조성
	지형 변동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탄지이며, 토양포장도 큼	•녹지계획 수립. 지형변화 최소화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등급	•녹지공간 확보(단지내 조경녹지 및 소공원)로 도시생태기능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최근 10년간 일조시간 2,404.2hr •주변지역 주거지역 및 학교 분포	•계획 시행시 일조권 수인한도 미확보 지역 발생 없음 •일조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축계획 수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현재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불투수 포장지역	•계획지구내 오픈스페이스, 녹지 조성 •보행통로 배치로 바람길 및 통경축 확보, 투수 포장면적 최대한 계획
	경관	Skyline보전	○	•주변으로 다수의 고층건물 위치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
		조망권 확보	○	•조망점 선정에 따른 경관예측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입면차폐도 35m 이하	X	•건축물 신축에 따른 차폐예상	•건물배치 등 입면차폐도 최소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추가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영등포구 측정망 결과 PM-2.5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대기환경 기준 만족 •공사/운영 시 대기오염 영향	•공사시 비산방진망, 세륜세차 시설, 살수 등 저감방안 수립 •운영시 청정연료, 에너지절약 등 저감 방안 수립
	물순환 (수질)	생태면적률 29.57%	○	•적용 생태면적률 30.26%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계획
	폐기물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지장물 적정 처리 •영등포구 폐기물 관련 조례 및 처리계획에 의한 폐기물 처리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주변에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위치,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영향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사용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신길역세권 (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	증) 13,497	13,49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497	-	13,497	100.0	
주거지역	소계	12,707	증) 790	13,49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577	감) 7,219	3,358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2,130	감) 2,130	-	-	
	준주거지역	-	증) 10,139	10,139	75.1	
상업지역	소계	790	감) 790	-	-	
	일반상업지역	790	감) 790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2)(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1)	폭원(m)								
기정	소로	-	17	6	-	272	신길동 89-70	신길동 114-1	일반도로	-	건고768호 (64.1.24)	
변경	소로	-	17	8~10	국지도로	303 (88)	신길동 89-70	신길동 111-15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	12~13	국지도로	136	신길동 97-79	신길동 95-153	일반도로	-	-	

1) ( )는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2) ( )는 사업지구 내 구간임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신길동 95-269	-	증) 704	704	-	

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획지1	10,139	신길동 96-24번지 일원	10,139	

나.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215.40%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234.8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460% 이하
		높 이		■ 128.0m (40층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주변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 영등포로, 영등포로76길, 도신로64길(대상지 서측) : 건축한계선 3m - 도신로64길(대상지 남측), 영등포로80길 : 건축한계선 5m • 기타 건축법 및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영등포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
		영등포로80길	
		도신로 64길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은 차량출입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진출입 관련사항 준수	결정도 참조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경관	생태 면적률	생태면적률 29.57%	○	•적용 생태면적률 30.26%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계획
	녹지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Ⅰ, 외부연결성 Ⅲ	•단지내 조경녹지 최대한 확보 •소공원 1개소 조성
	지형 변동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평탄지이며, 토양포장도 큼	•녹지계획 수립. 지형변화 최소화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등급	•녹지공간 확보(단지내 조경녹지 및 소공원)로 도시생태기능 강화
생활환경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최근 10년간 일조시간 2,404.2hr •주변지역 주거지역 및 학교 분포	•계획 시행시 일조권 수인한도 미확보 지역 발생 없음 •일조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축계획 수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현재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불투수 포장지역	•계획지구내 오픈스페이스, 녹지 조성 •보행통로 배치로 바람길 및 통경축 확보, 투수 포장면적 최대한 계획
	경관	Skyline보전	○	•주변으로 다수의 고층건물 위치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
		조망권 확보	○	•조망점 선정에 따른 경관예측	•경관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입면차폐도 35m 이하	X	•건축물 신축에 따른 차폐예상	•건물배치 등 입면차폐도 최소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추가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영등포구 측정망 결과 PM-2.5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대기환경 기준 만족 •공사/운영 시 대기오염 영향	•공사시 비산방진망, 세륜세차 시설, 살수 등 저감방안 수립 •운영시 청정연료, 에너지절약 등 저감 방안 수립
	물순환 (수질)	생태면적률 29.57%	○	•적용 생태면적률 30.26%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계획
	폐기물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지장물 적정 처리 •영등포구 폐기물 관련 조례 및 처리계획에 의한 폐기물 처리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주변에 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위치,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영향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사용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확보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217세대 [453세대 - 236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 33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 세대수(453세대 - 236세대)의 15% 이상 : 217세대 × 15% ≒ 32.55세대 이상 ※ 33세대 계획 ≥ 32.55세대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주택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33	15.2	100
40㎡이하	39.76	55.24	19	8.8	57.6
50㎡~60㎡이하	59.90	81.91	14	6.4	42.6

나) 공공주택(장기전세)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6">계 획 내 용</th></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6">•공공주택(장기전세)공급기준
= 완화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1/2이상 확보</td></tr>
<tr><td colspan="2">상한(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6">• 234.80%</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6">• 460.00% (준주거지역 500%이하)</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장기전세)
공급기준</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6">• 225.20%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460.00% - 234.80%</td></tr>
<tr><td>완화용적률 1/2</td><td colspan="6">• 112.60%</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6">• 10,139㎡ × 112.6% = 11,416.51㎡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6">공공주택
(장기전세)
확보계획</td><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주택규모(㎡)</td><td rowspan="2">세대수</td><td rowspan="2">연면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colspan="3">합계</td><td>124</td><td>11,422.20</td><td>112.66%</td></tr>
<tr><td>39형</td><td>39.76</td><td>55.24</td><td>-</td><td>-</td><td></td></tr>
<tr><td>59형</td><td>59.90</td><td>81.91</td><td>78</td><td>6,388.98</td><td></td></tr>
<tr><td>74형</td><td>74.86</td><td>101.55</td><td>20</td><td>2,031.00</td><td></td></tr>
<tr><td>84형</td><td>84.93</td><td>115.47</td><td>26</td><td>3,002.22</td><td></td></tr>
</table>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9), 영등포구 주거사업과(☎02-2670-351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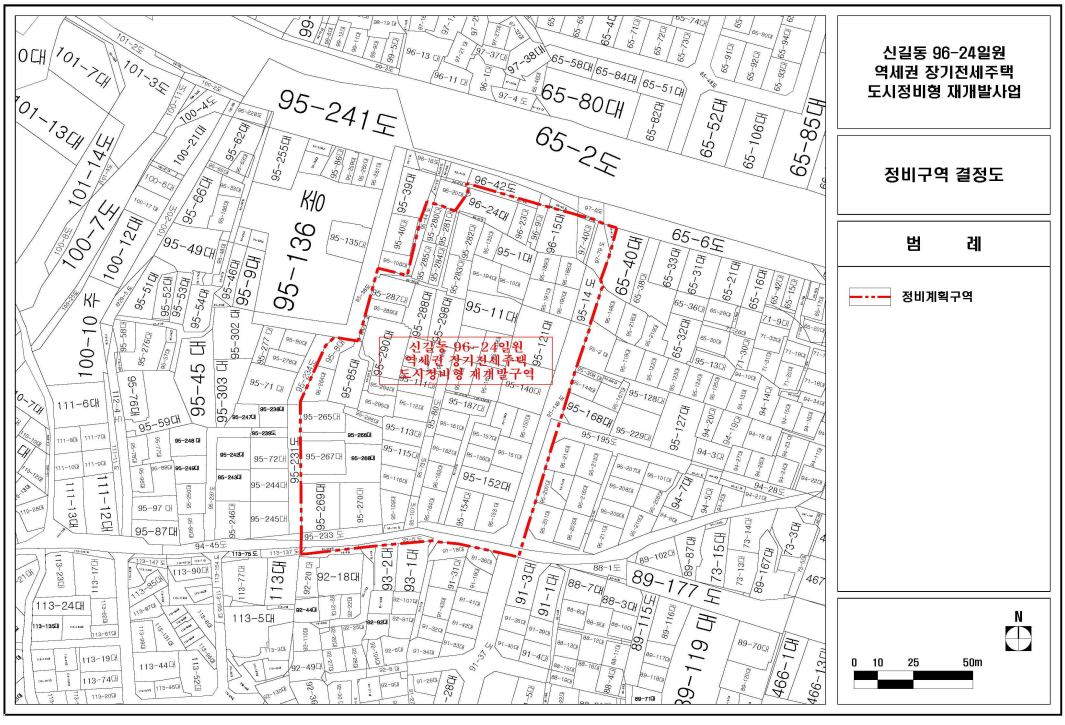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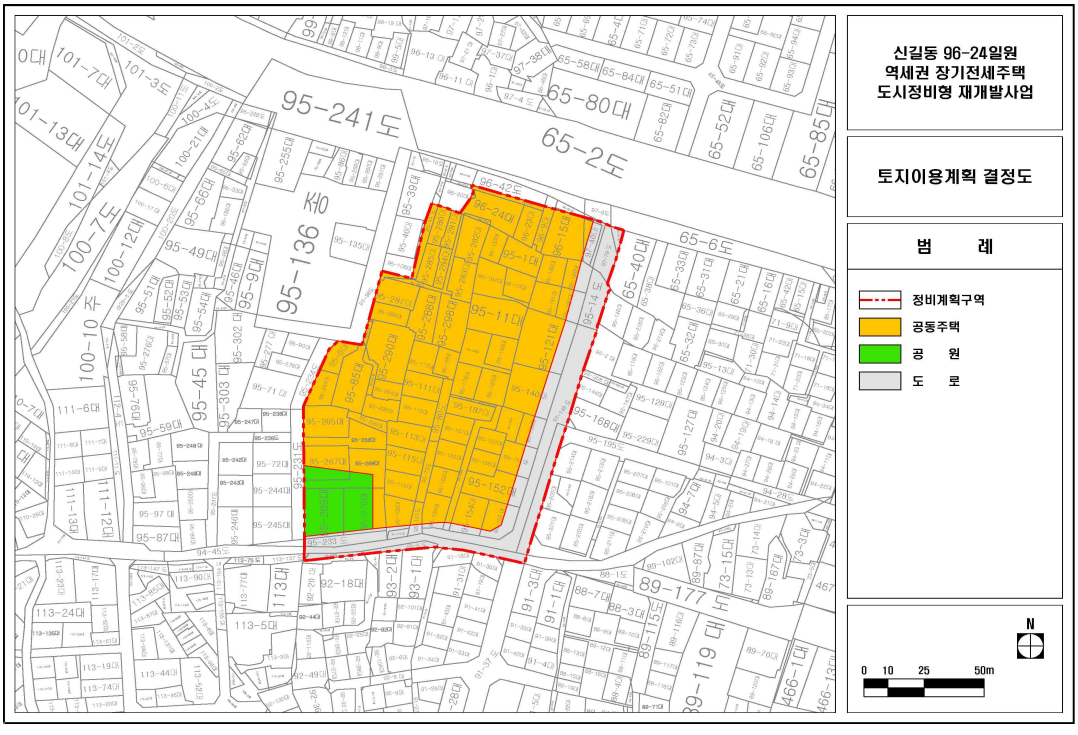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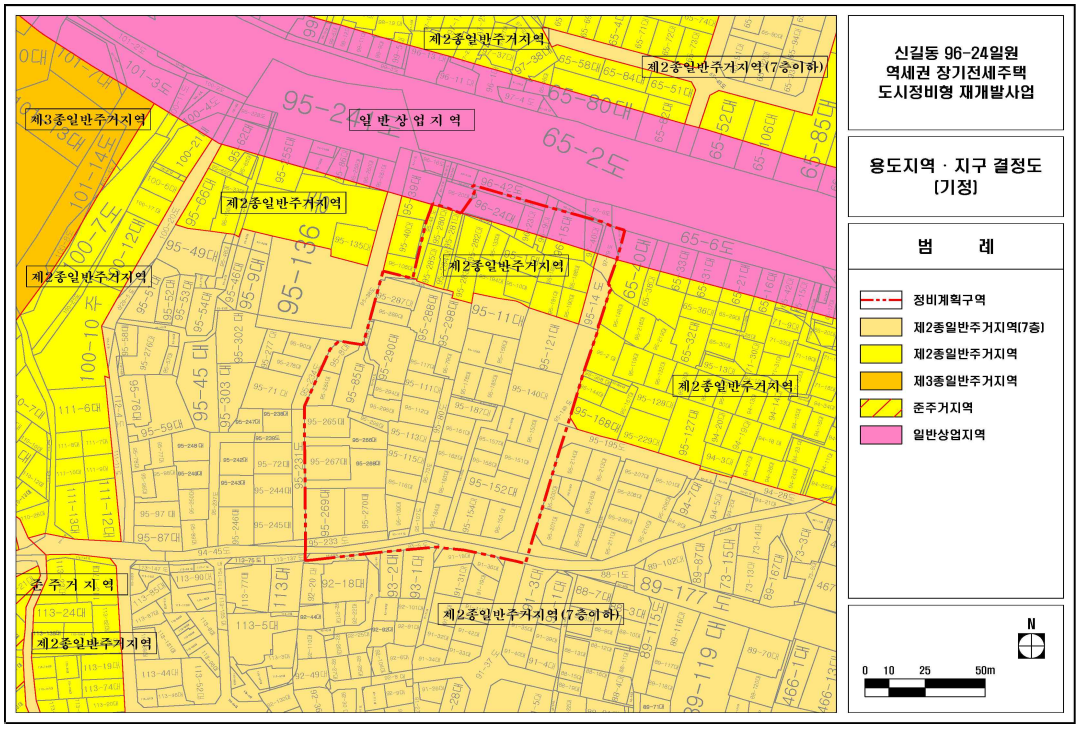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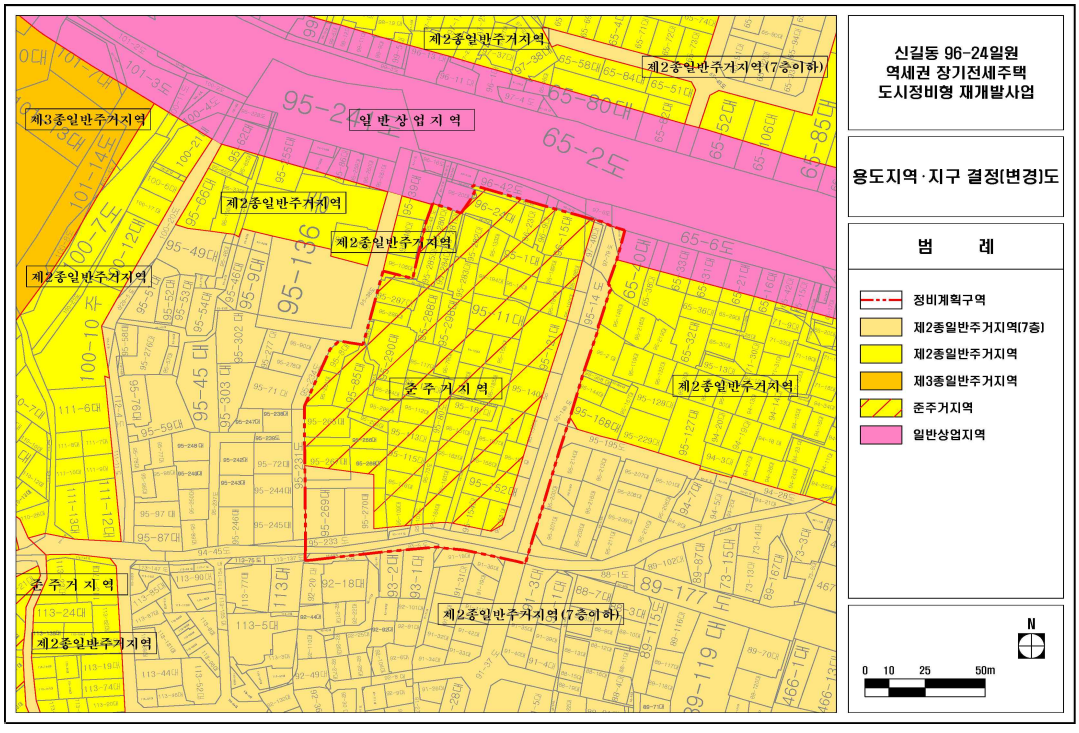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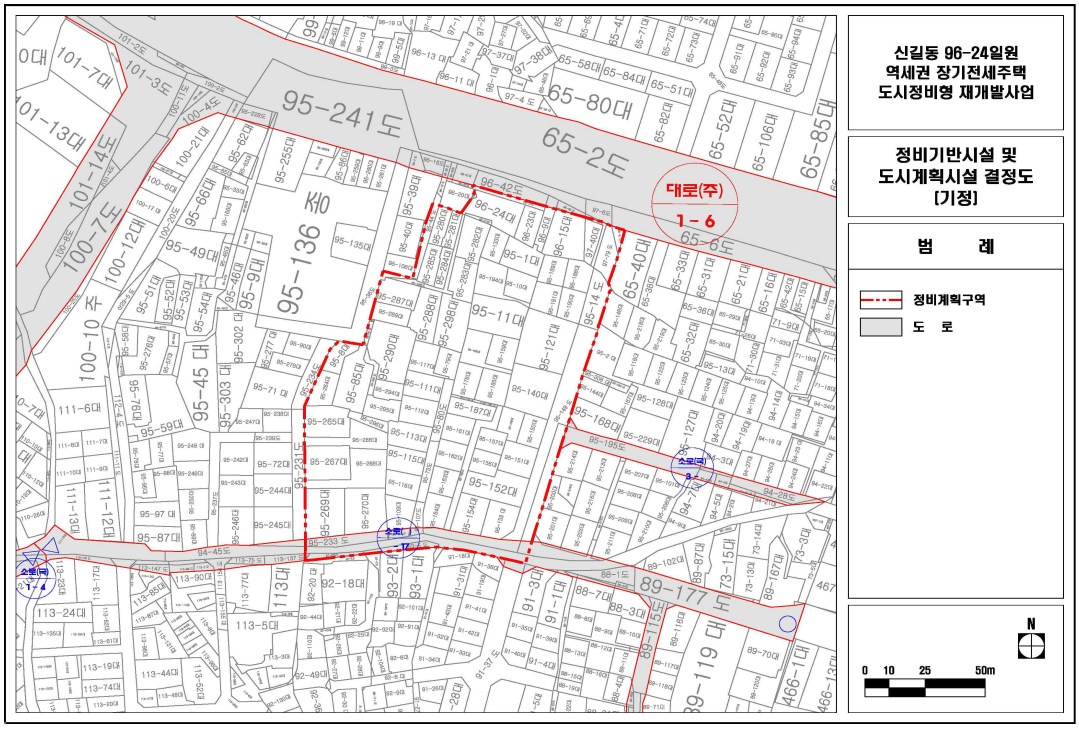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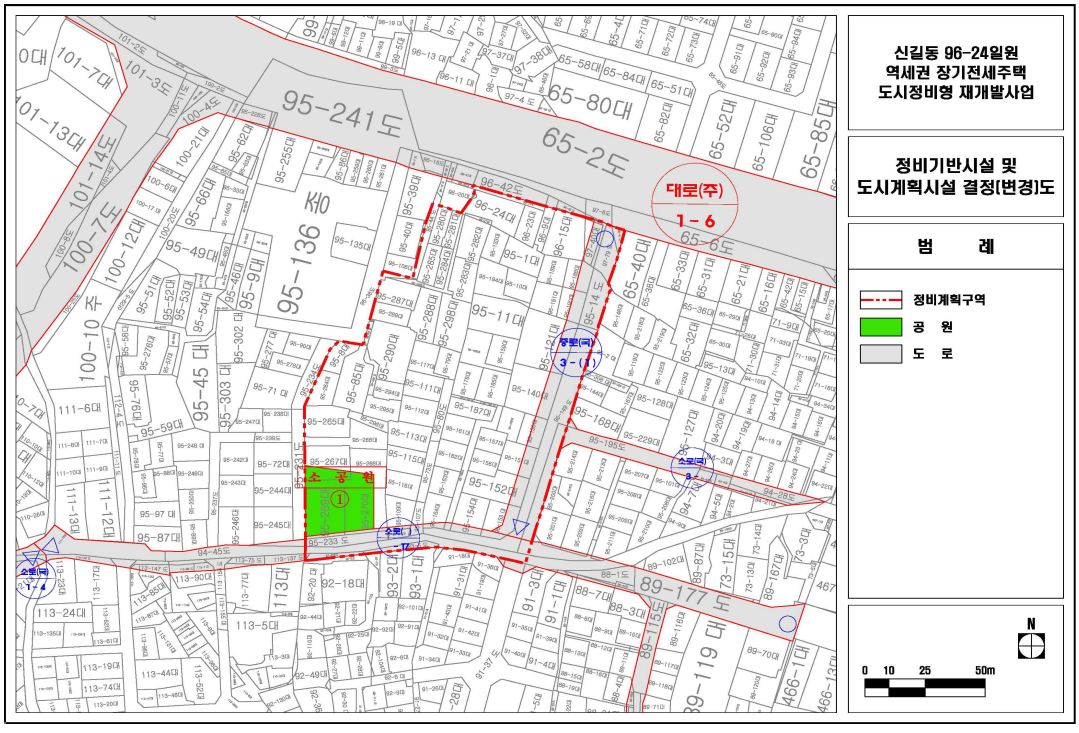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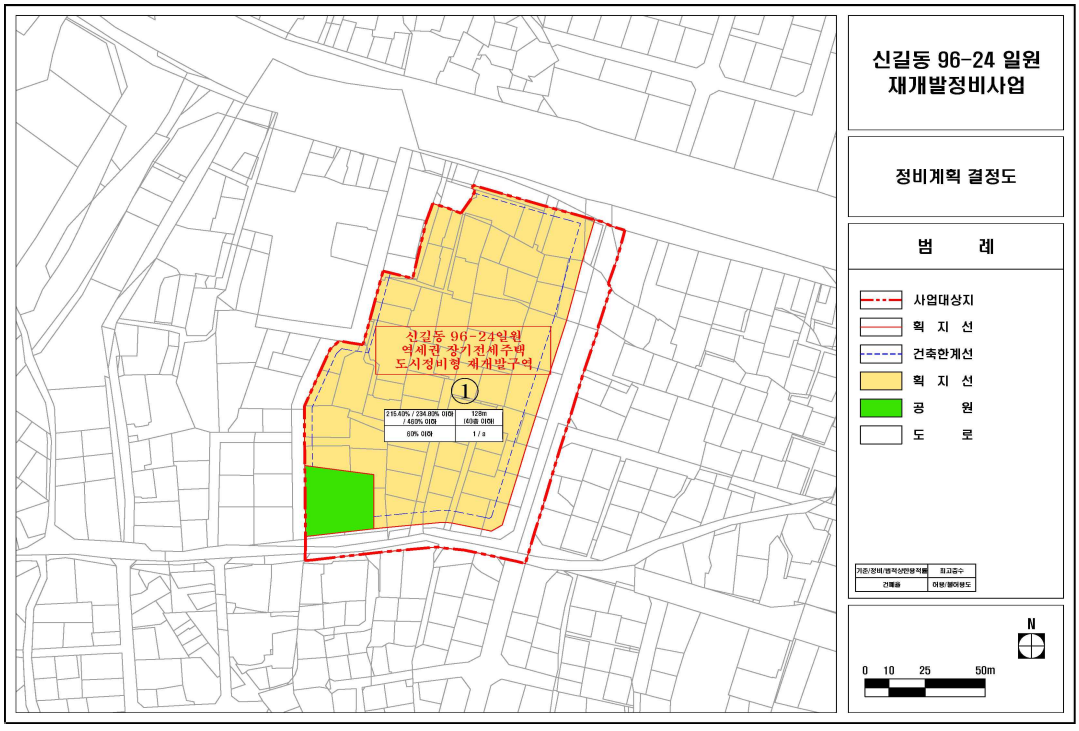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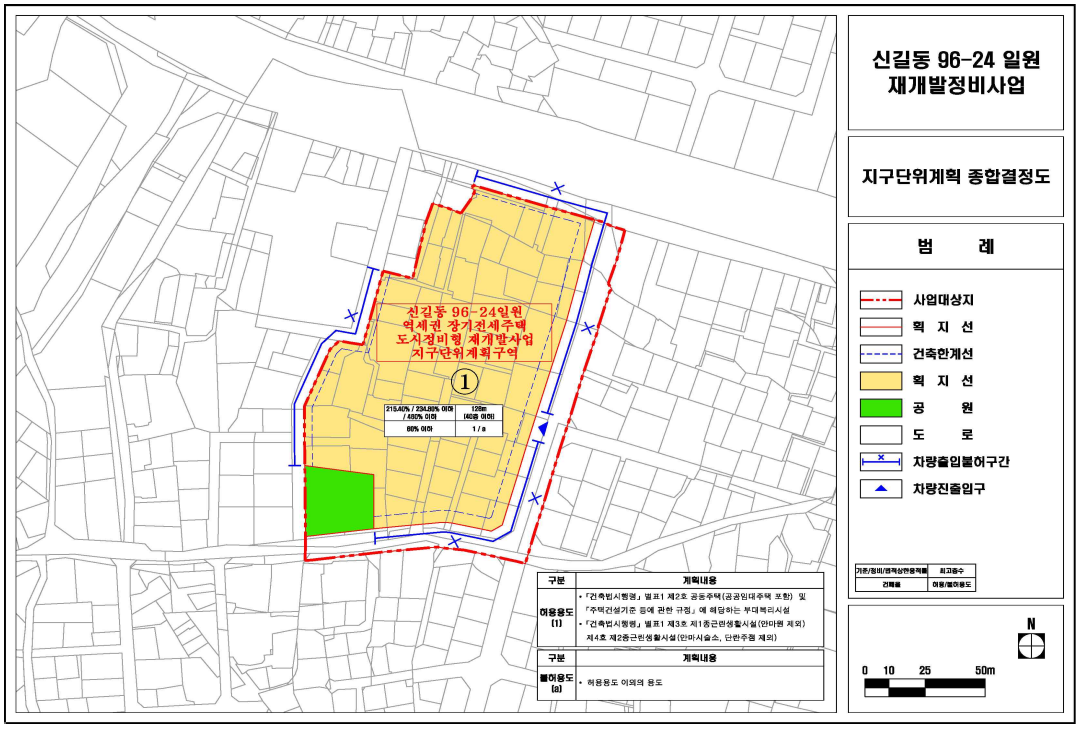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4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 등록변경 · 등록말소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제4조의2 제2항 관련하여, 2026년도 1분기(2026. 1. 1. ~ 2026. 3. 3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 등록변경 ·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일자	구분	단체명	주관부서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2026.04.02	신규	기후를 생각하는 사람들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김정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82-1 (북아현동) 3층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교육활동 등
2026.03.31	신규	사단법인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상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9길 23 (신림동) 제1010호	정기연주회 및 각 종 단체 초청 연주회 등
2026.03.25	신규	미래생각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최유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 (경운동) 10층	서울시 및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등
2026.03.03	신규	사업인연합회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성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29 (구로동) 206호	서울시 소상공인의 권익 옹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등
2026.03.03	신규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남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시흥동) 1002호	장애인 자립생활이념 교육 및 자립생활 정책 관련 사업 등
2026.02.19	신규	법무부법무보호위원서울지부 협의회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이숭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신월동)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복지사업 등
2026.02.10	신규	세종대왕국민위원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이윤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23-1 (인사동) 5층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과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교육하는 사업- '세종대왕', '한글' 의 과학, 예술,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홍보 및 전시하는 사업 등
2026.01.28	신규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선종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6길 14 (계동) 3층	글로벌 관광객 유치 정책 연구 및 제안, 포럼, 세미나 개최 등

일자	구분	단체명	주관부서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2026.01.28	신규	종로구관광협의회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전상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87 (팔판동) 도올빌딩 3층	한국관광1번지(광화문·경복궁 일대) 권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등
2026.03.31	변경	열린치과봉사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송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합동) 402호	치과의료봉사에 관한 사업 등
2026.03.31	변경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이태호,김미숙,김종기,박세희,양경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연건동) 임호빌딩 4, 6층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 등
2026.03.25	변경	환경보호운동연합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김인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3가길 18 (미아동) 용진빌딩 3층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과 녹지사업운동 등
2026.03.24	변경	여성장학클럽 홀씨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고일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49 (서초동) 101호	경제적 사각지대의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학비 및 교복지원
2026.03.19	변경	은평향토사학회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박상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7길 8 (대조동, 예가크레시아) 207호	향토 사료의 수집, 정리, 연구 발표회의 개최 등
2026.03.18	변경	평화이음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김종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6길 83 (미아동) 3층	남북바로알기 콘텐츠 지원 및 청년·학생 통일캠프 지원 사업 등
2026.03.18	변경	초록상상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박차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0길 25 (중화동) 2층	리더 발굴 및 역량 강화 등
2026.03.17	변경	동물권단체하이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조영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24 (전농동) 3층 A114	국내외 동물관련 법제도, 정책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2026.03.16	변경	함께이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김동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문래동3가) 3층 E08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2026.03.13	변경	그림여행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7길 20-3 (이문동) 지하1층	소외계층 하와이 훌라춤 공연 후원 등
2026.03.12	변경	도봉환경교육센터 자연해설단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오복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 (방학동) 도봉환경교실	환경교육활동 등
2026.03.12	변경	떠오르는 e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김영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81 (신정동) 4층	에너지산업 전반의 공신력 제고와 지속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공동대응사업 등
2026.03.10	변경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송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5 (대치동) 6층	해외 사회복지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등
2026.03.09	변경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이성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가길 14-8 (상계동) J빌딩 2층,3층	지역사회 자립생활환경 조사 및 권익옹호 사업 등
2026.02.26	변경	서울특별시척수장애인협회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김의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동) 하이브랜드 패션관 6층 6138호, 6139호	척수장애인의 권익옹호사업 등

일자	구분	단체명	주관부서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2026.02.25	변경	사단법인 한국아이티전문가협회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권태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서교동) 342-19	정보기술에 관한 기술발전 및 정보교환 등
2026.02.11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전문가회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최재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내곡동, 농업기술센터청사) 농업기술센터청사	도시농업 기술보급 및 교육지도 등
2026.02.11	변경	(사)해외입양인연대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유재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806호	해외입양동포의 친생부모찾기 와 문화체험 등
2026.02.09	변경	시민의눈	행정국 자치행정과	박세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46 (필동2가) 유창빌딩 4층	공직선거기간 투개표 참관인 및 투표함 지킴이 활동 등
2026.02.09	변경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김민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5길 85 (서초동) 지층	문화예술분야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음악,미술 관련 교육사업 등
2026.02.04	변경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강미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 (양평동2가) 407호	사회적 소수자 법률지원(비영리) 등
2026.01.28	변경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행정국 시민협력과	이병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5 (창천동) 2층 2688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수립방법 연구 등
2026.01.13	변경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협회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장흥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9길 79 (화곡동, 다다빌리지) 101호	장애인 인권 전문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여 인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사례 등을 발굴하여 사례집 발간, 배포 및 장애인 등의 인권피해구제 방안 모색 등
2026.01.13	변경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행정국 시민협력과	이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22 (서교동) 4층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위한 모든 방안 강구실천사업, 전세계 모든 양심세력과 역대 일본역사왜곡바로 잡기 등
2026.01.13	변경	서울국학운동시민연합	행정국 시민협력과	김산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80 (녹번동) 5층	민족정신 함양 및 밝은사회 구현
2026.01.08	변경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김은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동) 1805호	학술조사 연구등
2026.01.07	변경	어린이리더십강사협회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유희, 차지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동, 길음삼부컨버니언아파트) 102동 지층 53호	어린이리더십 자체 프로그램 개설 등
2026.01.06	변경	사단법인 타임뱅크코리아	행정국 시민협력과	손서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19 (홍은동) 1층 타임뱅크코리아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2026.04.06	말소	동대문구길고양이보호협회 길고양이 사랑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임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4-1 (회기동) 3층	동물복지 네트워크 사업, 동물복지 연구 사업 등
2026.03.17	말소	한국기독교법률협회 서울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오정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6길 23-8, 향림빌딩 4층 2호 (영등포동3가)	양성평등에 준한 인권보호사업 등

일자	구분	단체명	주관부서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2026.03.17	말소	소통과 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최경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10 (남산동1가), 5-2	외국인인권보호에관한사업 등
2026.03.17	말소	국제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황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5길 8 , 302호(개포동, 동흥빌딩)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
2026.01.30	말소	한국청소년 운동본부 서울시지부	행정국 시민협력과	정익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도원빌딩 5층 (도화동)	청소년 성가치관 운동 전개 , 청소년 예방, 선도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2026.01.26	말소	서울청소협회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유인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17 (논현동), 1층	깨끗한 골목길, 공원 및 하천 등 청소활동 등
2026.01.09	말소	사단법인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김금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55 , 402호(신길동,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영세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대상 무료도시락 전달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5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전○찬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2길 *0, **3호(화곡동)	일시 : 2025-11-18 14:58 장소 : 서울시 개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진○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안길 *8, **1호(선부동)	일시 : 2025-11-21 23:05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진○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안길 *8, **1호(선부동)	일시 : 2025-11-26 01:00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6.5.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66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제3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1조 및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151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71누5592	(주) 에*엘에스	경기도 화성시	2026-02-26 08:38	금천09_석수역(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67)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100,000원
2	80누7939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02 12:57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3	80누7939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13 16:34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4	80누7939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19 14:50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5	80누7939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0 15:32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33)	〃	〃
6	80누7939	㈜강*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4 09:59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7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03 14:13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8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04 17:28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9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10 17:27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37-3)	〃	〃
10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12 11:13	관악01_난곡터널(문성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26-4)	〃	〃
11	01너7564	(주*기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19 16:58	강동01_강일IC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65-3)	〃	〃
12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3 16:27	강동01_강일IC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65-3)	〃	〃
13	01너7564	㈜*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5 17:27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37-3)	〃	〃
14	90머6207	㈜니*아웃도어	경기도 광주시	2026-02-26 11:08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5	81더7038	㈜덕*석산	경상북도 울진군	2026-02-06 13:02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6	81무6785	㈜둥*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2-13 16:03	강동01_강일IC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65-3)	〃	〃
17	81무6785	㈜둥*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2-24 08:03	강동05_상일IC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2)	〃	〃
18	07오7036	㈜아*모드디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3 08:15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9	77다7160	㈜엘*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2026-02-11 10:54	강남02_한남IC부근(압구정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8-8)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20	80너8155	㈜엠*에이치	경기도 동두천시	2026-02-27 11:09	영등포02_영등포로(오목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5-2)	〃	〃
21	전남91바3003	㈜오*운수	전라남도 담양군	2026-02-25 12:24	관악03_서울대입구역(관악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7-24)	〃	〃
22	01보6885	㈜이*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24 12:58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 71-19)	〃	〃
23	64조6996	㈜청*테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04 10:35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5)	〃	〃
24	64조6996	㈜청*테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12 17:18	송파01_송파대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41-8)	〃	〃
25	64조6996	㈜청*테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19 13:42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5)	〃	〃
26	80너8701	㈜토*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19 09:02	마포03_성산로(연희IC)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98-1)	〃	〃
27	80너8701	㈜토*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23 07:46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95)	〃	〃
28	80너8701	㈜토*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25 17:32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29	80너8701	㈜토*싸인날으는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26 16:57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30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02 12:40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31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04 13:07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32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06 13:36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33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09 14:03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34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11 11:57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35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13 15:25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36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19 13:19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37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20 13:43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38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23 12:38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39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25 12:47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30)	〃	〃
40	89다7051	㈜*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27 14:22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41	91도8123	㈜효*로지스틱	경기도 안산시	2026-02-12 14:32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42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6-02-12 17:46	도봉01_도봉로시계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81)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43	10주2973	가* 디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2026-02-20 10:43	강북01_우이제3교(덕릉로) (서울시 강북구 번동 454-81)	〃	〃
44	94소5468	강*태	충청남도 당진시	2026-02-23 13:11	강서03_범말로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610-2)	〃	〃
45	84다8548	고*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13 07:45	강동01_강일IC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65-3)	〃	〃
46	84다8548	고*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20 19:25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95)	〃	〃
47	48버7741	권*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20 19:37	서초03_사당IC주도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690-1)	〃	〃
48	48가9459	김*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05 11:59	성북02_길음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2-18)	〃	〃
49	92보9959	김*욱	경상북도 문경시	2026-02-12 06:22	은평07_증산로(DMC)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51)	〃	〃
50	21머5290	김*희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2-13 07:18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33)	〃	〃
51	88더0221	김*기	충청남도 당진시	2026-02-11 11:50	서초05_양재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4)	〃	〃
52	39거1929	김*희	경기도 화성시	2026-02-24 07:01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67)	〃	〃
53	80보3159	김*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23 15:27	동작03_여의교(여의대방로)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6(여의대방로 254-2))	〃	〃
54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6-02-03 09:52	강서01_인천국제공항고속 (서울시 금낭화로26가길 120-2)	〃	〃
55	92러4552	김*	경기도 고양시	2026-02-04 06:03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56	18마3266	김*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13 06:52	강서03_벌말로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610-2)	〃	〃
57	86다5163	박*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02 08:50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 34-10)	〃	〃
58	86다5163	박*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2-27 08:22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 34-10)	〃	〃
59	85구7256	박*훈	경기도 안산시	2026-02-20 06:07	금천05_금천교(범안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3-6)	〃	〃
60	94나8770	박*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6 08:36	강남10_대곡교후방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0-6)	〃	〃
61	94나8770	박*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7 18:17	강남09_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26-1)	〃	〃
62	14오9217	박*철	경기도 양주시	2026-02-09 19:53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89-22)	〃	〃
63	14오9217	박*철	경기도 양주시	2026-02-10 18:37	관악02_남부순환로(낙성대 (서울시 남부순환로 1932)	〃	〃
64	14오9217	박*철	경기도 양주시	2026-02-23 17:37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65	88어7816	박*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13 14:03	강북01_우이제3교(덕릉로) (서울시 강북구 번동 454-81)	〃	〃
66	80무1463	박*용	경기도 화성시	2026-02-12 14:53	금천02_서부간선도로(안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7-52)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67	03거9408	박*정	경기도 광명시	2026-02-11 12:00	마포04_양화대교북단(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68	80소1284	박*천외1김*희(단순공동)	경기도 용인시	2026-02-20 12:21	동작02_상도터널(양녕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250)	〃	〃
69	91다5765	세*해상(주)	인천광역시 중구	2026-02-23 17:02	강서03_벌말로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610-2)	〃	〃
70	20더8668	신*씨엔씨 주식회사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20 15:58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71	서울98바9691	오*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06 08:10	강남08_수서IC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4)	〃	〃
72	서울98바9691	오*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09 12:11	강남07_삼성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9-22)	〃	〃
73	서울98바9691	오*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0 07:26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5)	〃	〃
74	서울98바9691	오*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9 07:58	강남08_수서IC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4)	〃	〃
75	서울98바9691	오*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3 12:48	강남10_대곡교후방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0-6)	〃	〃
76	서울98바9691	오*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5 08:00	강남08_수서IC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4)	〃	〃
77	경기88배6084	오*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7 17:52	강동01_강일IC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65-3)	〃	〃
78	84더2011	윤*섭	경기도 평택시	2026-02-04 15:5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79	84더2011	윤*섭	경기도 평택시	2026-02-05 11:32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80	85가3797	윤*연	경상북도 경주시	2026-02-11 10:20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81	85가3797	윤*연	경상북도 경주시	2026-02-24 19:22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82	20저7901	윤*원	충청남도 당진시	2026-02-19 16:24	금천02_서부간선도로(안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7-52)	〃	〃
83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6-02-02 17:09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84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6-02-03 07:25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8)	〃	〃
85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6-02-05 15:14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86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6-02-06 17:10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87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6-02-09 14:50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88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6-02-24 15:2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89	62가4063	윤*상	충청남도 보령시	2026-02-26 14:52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90	04머8390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02 14:24	금천01_가마산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1)	〃	〃
91	04머8390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03 16:41	금천01_가마산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1)	〃	〃
92	04머8390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19 17:18	금천01_가마산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1)	〃	〃
93	04머8390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24 16:28	금천01_가마산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1)	〃	〃
94	04머8390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25 18:15	금천01_가마산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1)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95	04머8390	이*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26 16:03	금천01_가마산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1)	〃	〃
96	11러5119	이*섭	경기도 용인시	2026-02-06 07:33	마포04_양화대교북단 (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97	11러5119	이*섭	경기도 용인시	2026-02-19 07:47	마포04_양화대교북단 (양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25)	〃	〃
98	74너6546	이*우	경기도 포천시	2026-02-06 17:03	강남09_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26-1)	〃	〃
99	74너6546	이*우	경기도 포천시	2026-02-10 17:12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00	74너6546	이*우	경기도 포천시	2026-02-19 18:33	중랑01_북부간선도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01-2)	〃	〃
101	74너6546	이*우	경기도 포천시	2026-02-20 14:50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02	74너6546	이*우	경기도 포천시	2026-02-23 15:44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56-7)	〃	〃
103	80서7783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09 07:51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104	80서7783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11 15:55	강남09_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26-1)	〃	〃
105	04조9859	임*호	경기도 의왕시	2026-02-26 18:02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67)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06	32무4572	장*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09 06:44	동작01_노량진역(노량진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12-5)	〃	〃
107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05 08:43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14-1)	〃	〃
108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12 09:55	용산03_강변북로(일산)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35)	〃	〃
109	88어3409	전*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2-02 18:32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110	38오7801	정*자외1(안*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2-10 10:31	서초02_지방도309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51-156)	〃	〃
111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02-19 12:27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2)	〃	〃
112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02-20 08:00	영등포04_시흥대로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03)	〃	〃
113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02-23 06:24	금천06_시흥사거리(금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2)	〃	〃
114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02-25 06:47	금천08_한내로(기아대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2-27)	〃	〃
115	89다3652	정*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02-27 15:09	금천09_석수역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67)	〃	〃
116	39저8152	정*훈외1인(박*윤)	경상북도 칠곡군	2026-02-19 17:19	강동01_강일IC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65-3)	〃	〃
117	39저8152	정*훈외1인(박*윤)	경상북도 칠곡군	2026-02-25 10:12	강북01_우이제3교(덕릉로) (서울시 강북구 번동 454-81)	〃	〃
118	39저8152	정*훈외1인(박*윤)	경상북도 칠곡군	2026-02-27 12:46	동대문01_회기역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9)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19	91부5456	정*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3 10:36	강동07_서하남IC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37-3)	〃	〃
120	92가3056	정*엔터프라이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10 10:18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89-22)	〃	〃
121	41거2688	조*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04 07:23	중랑04_사가정역(사가정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72-44)	〃	〃
122	서울32러3120	주-*성아이엔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05 12:00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95)	〃	〃
123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05 10:29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124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12 10:49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125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6 10:20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05)	〃	〃
126	91머3049	주식회사 다*건설	경기도 김포시	2026-02-03 06:04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16)	〃	〃
127	91머3049	주식회사 다*건설	경기도 김포시	2026-02-05 06:05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16)	〃	〃
128	91머3049	주식회사 다*건설	경기도 김포시	2026-02-09 18:32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95)	〃	〃
129	86소6493	주식회사 바*인테리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06 06:27	은평02_통일로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 71-19)	〃	〃
130	86소6493	주식회사 바*인테리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12 07:41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131	86소6493	주식회사 바*인테리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13 06:1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32	86소6493	주식회사 바*인테리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20 06:35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133	86소6493	주식회사 바*인테리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2-27 06:21	마포01_강변북로(서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226)	〃	〃
134	70고8186	주식회사 자*스마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11 16:48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8)	〃	〃
135	70고8186	주식회사 자*스마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0 14:43	양천01_화곡로입구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16)	〃	〃
136	70고8186	주식회사 자*스마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7 11:08	구로01_작동터널 (서울시 구로구 궁동 5-8)	〃	〃
137	01주7286	주식회사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06 11:57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38	01주7286	주식회사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12 10:09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4-15)	〃	〃
139	97거1197	주식회사 *피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5 15:40	강서04_오쇠삼거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산 88-7)	〃	〃
140	02고7183	주식회사 프*바이오틱스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2026-02-02 15:23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89-22)	〃	〃
141	02고7183	주식회사 프*바이오틱스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2026-02-04 14:42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89-22)	〃	〃
142	05조2100	최*섭	충청북도 단양군	2026-02-09 11:30	은평03_서오릉로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273)	〃	〃
143	05조2100	최*섭	충청북도 단양군	2026-02-23 11:15	마포03_성산로(연희IC)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98-1)	〃	〃
144	01도5988	한*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04 15:34	금천03_시흥대로(시흥IC)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45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03 08:59	양천03_경인고속도로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16길 17-20)	〃	〃
146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04 09:08	용산01_서빙고로(한남역)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 62-1)	〃	〃
147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09 09:04	용산02_강변북로(구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95)	〃	〃
148	95두9824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10 11:01	성동01_뚝섬로(용비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5)	〃	〃
149	경기85나8496	한*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02 16:28	구로07_항동지구(서해안로)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산 34-10)	〃	〃
150	경기85나8496	한*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2-24 14:23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0 육교 옆)	〃	〃
151	서울85러7210	홍*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2 15:39	강남10_대곡교후방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0-6)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업무용 휴대폰 (010-9615-3241)으로 문자 전송

6.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02-2133-3652, 3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유자	성 명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법인소유차량)		생년월일 (개인소유차량)	
	주 소		휴대폰 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부과번호	외 건
	고지받은 일 자	외 건	과 태 료 금 액	원
	위반내용	계절관리제운행제한	위반일시	외 건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사진촬영하여 010-9615-3241로 문자 전송

※ 우편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대기정책과(우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7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주식회사 클라이벡스	제6110000-20-2026-00005	2026.03.3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 1413호
2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제6110000-20-2026-00006	2026.03.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독산빌딩 3~8층
3	주식회사 카본스타	제6110000-20-2026-00007	2026.04.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1, 130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71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
주식회사 이상건축사사무소	실측설계업 (02-01-0012)	민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82길 3-4, 1109호	2026.04.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04) 또는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9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8.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4058626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1, B동 B01호	수도요금	2024년 7월 등 9납기	9회	659,100원	해당 내역은 2026. 4. 1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1, B동 B01호	김*숙	600212-2****** (폐문부재 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1, B동 B01호		659,100원	2026. 5. 11.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98560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73, 104동 1601호	수도요금	2024년 11월 등 8납기	8회	386,260원	해당 내역은 2026. 4. 1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73, 104동 1601호	장*철	740317-1****** (폐문부재 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73, 104동 1601호		386,260원	2026. 5. 11. (예정)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상열(☎ 02-3146-4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95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04.23. ~ 2026.05.07.
2.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별첨
4.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토목총괄과(☏02-6438-2114)로 문의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반환기일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19-08-16	밤고개로 확장공사(SH공사) NO.157.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8-10	2,558,170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19-11-15	밤고개로 확장공사(SH공사) NO.157. 장기계속3차 -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1-31	678,471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19-11-15	밤고개로 확장공사(SH공사) NO.157.(아스팔트콘크리트대금) -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1-31	1,125,139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19-11-28	밤고개로 확장공사(SH공사) NO.157.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대금.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1-31	910,107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19-12-09	밤고개로확장공사 NO.157. (3차)레미콘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1-31	626,316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1-08	밤고개로확장공사 NO.157.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2-28	404,133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1-08	밤고개로확장공사 NO.157.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2-28	1,180,838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1-21	밤고개로 확장공사(3차) No.157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5-31	564,037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1-31	밤고개로 확장공사(2구간) No.157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284,864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2-06	밤고개로 확장공사 디자인 휀스 구매대금 지급(금속제울타리) 해지이자 No.157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143,216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2-10	밤고개로 확장공사(노구간) 석재블럭 구매 해지이자 No.157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80,338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2-13	밤고개로 확장공사 관급자재(중앙분리대) 구매 대금 지급 해지이자 No.157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58,972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4-29	밤고개로 확장전기공사(2차) 준공금(3회) NO.157 - 별단해지 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682,082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5-14	밤고개로 확장공사 맨홀정비공사 노무비(4월) NO.157 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202,001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5-26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토목공사 제3차 시행 (매일종합건설㈜) NO.449 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52,907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5-28	밤고개로 확장공사 맨홀정비공사 준공금 지급 NO.157 별단예금 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181,969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6-05	밤고개로 확장공사 4차 준공금 지급 NO.157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80,988
보관금 (기타보관금이자)	2020-06-18	밤고개로 확장공사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3차 준공금 지급 NO.157 별단해지이자	토목부	확인불가	2020-07-31	115,75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0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근거 : 「민법」 제38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설립허가조건 위반
4. 대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
5. 처분(취소) 일자 : 2026. 1. 8.(목)
6. 공고 및 게시장소: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
7. 기타 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문화예술과 (담당 : 이승민, ☎02-2133-256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2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송달대상자: 김*득 등 24명(붙임 참조)
○ 송 달 지: 붙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내역”과 같음
○ 공 고 기 간: 2026. 4. 23. ~ 5. 7.
○ 서류의 명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 예고통지서
○ 서류의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귀하 (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무과 세외수입 담당(02-2133-3444)
붙 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연번	납세자명	발송주소	반송사유
1	두○조은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길** ***-*호	폐문부재
2	주식회사 명○소방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호	폐문부재
3	○○회사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수취인불명
4	김○득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동 ****호	이사불명
5	프라○개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주소불명
6	주식회사엘림○엠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층	폐문부재
7	곽○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폐문부재
8	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호	폐문부재
9	주식회사엘○이씨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신고복로****	수취인불명
10	김○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 ***호	수취인불명
11	김○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	수취인불명
12	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길** ***호	폐문부재
13	이○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동 ***호	수취인불명
14	최○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나길 **-** ***호	폐문부재
15	주식회사동○건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비동 ***호	폐문부재
16	서○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나길 **-** ***동 ***호	폐문부재
17	정○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길 *-*	수취인불명
18	김○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군봉7길**-* ***호	수취인불명
19	박○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다길** *층 ***호	수취인불명
20	최○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	수취인불명
21	김○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창벌*길* ***호	폐문부재
22	김○식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141 ***동 ****호	폐문부재
23	(사)시니어○이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길 **-**	수취인불명
24	한국진로○○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수취인불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23호

202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승인일자: 2026. 4. 13.
2. 관리계획 주요내용
   - 대규모시설의 설치계획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면적(㎡, 괄호안은 누계)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육군사관학교	국방부장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1 일원	26,406.82 (1,271,789.22)	4,121.46 (224,653.47)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02 - 2133 - 2015)
   노원구 푸른도시과(02-2116-0561)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3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주식회사 피앤피글로벌	서울 제924호	박민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01, 10층 (잠실동)	소재지 ('26.02.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3-10, 2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01, 10층 (잠실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38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박*욱 등 343명
4.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13.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4. 23. ~ 2026. 5. 13.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서울32아43**	박*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20 10:0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여의도동)	50,000
2	275수72**	피*지*발*식*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25 1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3	006마94**	(*)*보*엔*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7 08: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4	006마94**	(*)*보*엔*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6 09: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5	735머10**	주*회*서*1*9*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4 17: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60,000
6	153하58**	주*회*뉴*의*칙	경기도 고양시	2026-03-18 07:5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	179허90**	주*회*화*	경기도 여주시	2026-03-17 09: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	230호84**	센*파*코*아*식*사	경기도 화성시	2026-03-19 09:45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9	49호94**	(*)*미*	경기도 화성시	2026-03-21 12:0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10	19로12**	(*)*우*합*설	경기도 고양시	2026-03-26 20: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	214라57**	(*)*강*크	경기도 과천시	2026-03-21 09:3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10:27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3	56더67**	주*회*뎀*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20 14:2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	128가74**	일*드*설*식*사	충청남도 당진시	2026-03-27 20: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5	275로91**	(*)*대*레*	충청북도 음성군	2026-03-28 16: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6	80가21**	(*)*일*테*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26 20:0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	68오71**	주*회*케*씨*로*스*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7 09: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	52라74**	주*회*운*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5 09:40	매봉역교차로~ 양재전화국교차로	50,000
19	69더95**	주*회*앤*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5 18: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0	93루46**	주*회*에*디*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5 16: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	80가21**	(*)*일*테*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27 0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2	177주68**	주*회*유*스*로*스*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2 1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2	50,000
23	177하57**	아*린*식*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8 07:42	고촌IC~개화교	50,000
2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8 11:28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5	49마79**	(*)*이*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4 09:4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6	352가49**	동*소*이*지*식*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7 22: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821고77**	주*회*예*디*인	경기도 성남시	2026-03-24 12:53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28	370너52**	(*)*프*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4 15: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9	09러15**	(*)*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6 17:2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0	01라78**	나*티*씨*식*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5 17:09	뱅뱅사거리~우성아파트앞사거리	50,000
31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3 17: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	64마81**	티*프*주*회*(*F*I*C*)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6 0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	14더05**	김*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1-27 08:54	서초ic~반포ic	50,000
34	63버42**	주*회*스*코*레*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5 14:50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50,000
35	804너90**	주*회*드*메*커	경기도 광주시	2026-03-25 12: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6	808너15**	주*회*다*글*스*크	경기도 광주시	2026-03-23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	147너53**	주*회*에*씨*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15 07: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2	50,000
38	서울33바60**	주*회*청*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7 17: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9	서울33바60**	주*회*청*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4 19:0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0	서울33바60**	주*회*청*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7 17:3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1	서울33바60**	주*회*청*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7 17:4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2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7 17: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	160저21**	김*한	경기도 광주시	2026-03-21 08: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50,000
44	87고88**	주*회*인*어*크	경기도 김포시	2026-03-26 12: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5	842도28**	주*회*해*종*건*	경기도 김포시	2026-03-25 15:44	가락몰앞	50,000
46	46더44**	(*)*화*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6 08: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7	239소98**	주*회*콜*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6 18: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8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3 17: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9	227버28**	(*)*웰*마*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20 18: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0	230구37**	(*)*종*크	경기도 평택시	2026-03-27 18: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1	225호27**	(*)*이*이*엠*	경기도 평택시	2026-03-05 07:54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2	225호27**	(*)*이*이*엠*	경기도 평택시	2026-03-06 07:55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3	244어79**	C*R*E*L*A*H*R*M*C*A*L	경기도 평택시	2026-03-23 11: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4	01무87**	블*펄*라*빗*퀵*유*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3-21 0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	50,000
55	36다79**	P*T*E*S*N*D*I*N*I*A*	경기도 평택시	2026-03-29 07: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6	서울86자20**	목*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5 12:4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57	91주07**	주*회*에*에*	경기도 용인시	2026-03-25 08:52	복정역~장지역	50,000
58	185두15**	스*트*코*아*주*	경기도 하남시	2026-03-20 17:01	성내교	50,000
59	67주81**	(*)*이*엠	경기도 시흥시	2026-03-27 15:3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0	76더06**	주*회*현*중*건*	경기도 시흥시	2026-03-27 10: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60,000
61	105주34**	권*삼	경기도 용인시	2026-03-27 13:03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62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9 17:3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3	178보12**	엠*사*드*프*비*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8 20: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4	817마94**	(*)*이*케*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3 08: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5	50서16**	(*)*통	경기도 안산시	2026-03-23 17: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6	20나05**	주*회*빵*오*	경기도 양주시	2026-03-23 18: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7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9 14: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8	경기78사61**	주*회*경*관*	경기도 연천군	2026-03-27 07:58	강동역~길동사거리	60,000
69	서울31아82**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4 14:2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70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9 14:3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1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9 17: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2	63더37**	주*회*영*포*유*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6 17: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16:44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74	177호58**	주*회*디*인*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9 08:07	매봉역교차로~양재전화국교차로	50,000
75	37러23**	(*)*미*스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26 11: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6	191하33**	마*골*농*합*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03-20 11:3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77	160호17**	시*레*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8 08:1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78	231도81**	(*)*이*스*바*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2 09:4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9	144구48**	주*회*니*텍*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7 17:03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0	120구95**	주*회*에*에*데*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08:36	고속터미널역~반포역	50,000
81	14주85**	(*)*화*행*이*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17:09	남산1호터널~퇴계로2가교차로	50,000
8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8 11:26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8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10:28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84	362누82**	주*회*진*코*레*션	경기도 안산시	2026-03-25 17: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5	181허99**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23 20: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6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9 17:3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7	31조75**	주*회*에*이*퍼*	경기도 화성시	2026-03-24 20:4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88	223호39**	(*A*C*에*치*이*스*	경기도 화성시	2026-03-20 10: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9	181호70**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27 07:19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50,000
90	178루83**	주*회*지*테*	광주광역시 서구	2026-03-09 08:1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91	56조61**	주*회*비*삼*	경기도 용인시	2026-03-24 18: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2	78구37**	주*회*이*에*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4 07:09	길음교교차로~성신여대입구역	60,000
93	252주70**	주*회*넥*	경상남도 거제시	2026-03-24 10: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4	181호13**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25 07:48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50,000
95	181허99**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23 20:4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6	20라94**	주*회*안*알*미*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24 15:3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7	59조93**	이*기	경기도 용인시	2026-03-25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8	41다04**	송*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4 17:0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99	340나77**	이*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4 20: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0	서울32아25**	이*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8 18:31	응암역~역말사거리	50,000
101	826주67**	김*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26 17:2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02	21가67**	김*훈	경기도 용인시	2026-03-26 20: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3	52두70**	박*애	경기도 오산시	2026-03-23 07:34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04	246나30**	L*M*N*H*O	경기도 수원시	2026-03-25 20: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5	27러58**	박*훈	경기도 용인시	2026-03-26 09: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6	153하57**	김*미	경기도 수원시	2026-02-11 11:5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7	188라86**	김*수	경기도 수원시	2026-03-21 15:3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50,000
108	006거95**	최*숙	경기도 수원시	2026-03-18 07:4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5길 3-20	60,000
109	006거95**	최*숙	경기도 수원시	2026-03-26 09:3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60,000
110	03라10**	박*서	충청북도 청주시	2026-03-25 15: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1	187호16**	최*령	충청북도 청주시	2026-02-19 23: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2	215수66**	김*은	충청북도 청주시	2026-03-25 09: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3	388오84**	홍*표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24 19:0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4	171모73**	김*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6 16: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65	50,000
115	151더73**	박*영	경기도 시흥시	2026-03-27 10: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16	151더73**	박*영	경기도 시흥시	2026-03-27 10: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7	151더73**	박*영	경기도 시흥시	2026-03-27 10:2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8	175허60**	이*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3 17:3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19	399두53**	N*N*E*Y*N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3 15: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0	800주79**	박*혁	경기도 용인시	2026-03-25 14:3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1	221주52**	S*N*P*N*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5 18: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2	01로77**	윤*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4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3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4 14: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4	39저51**	이*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4 17:1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5	196다91**	B*G*C*H*S*N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6 19: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26	14버09**	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5 17:4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7	156하39**	박*문	경기도 시흥시	2026-02-27 12:3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8	11거46**	배*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7 21:23	종로2가교차로~ 종각역	50,000
129	서울31자74**	박*동	경기도 성남시	2026-03-24 07:40	숙명여고앞	50,000
130	172하14**	이*복	경기도 성남시	2026-02-27 09: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31	92모58**	김*웅	경기도 성남시	2026-03-24 0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2	71우83**	김*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03-25 10:12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33	197하13**	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02-18 23: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4	73고70**	장*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6-03-25 12: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135	180두95**	이*영	경기도 성남시	2026-03-24 20:5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36	101호22**	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16 13: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7	101호22**	박*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20 12: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8	01오63**	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8 07:43	숙명여고앞	50,000
139	06무60**	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19:2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40	03버86**	조*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6 18:3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41	27머34**	안*	경기도 성남시	2026-03-24 09: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2	77두66**	장*익	경기도 성남시	2026-03-20 09:02	복정역~장지교교차로	60,000
143	서울31사65**	이*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4 10:0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4	58가98**	이*술	경기도 양주시	2026-03-27 11: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5	195하98**	김*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6 17:25	석촌역~송파사거리	50,000
146	35조28**	이*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5 07: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7	34거83**	허*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4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8	47마90**	김*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26 19: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49	852오54**	유*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6 11:3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50	65머42**	김*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5 08:15	광나루역~아차산역	50,000
151	113우22**	우*하	경기도 성남시	2026-03-27 08: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2	56모01**	구*현	경기도 양주시	2026-03-26 09: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3	28도68**	지*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4 15: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54	90머07**	이*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3 15:3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55	서울36바20**	김*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6 07:47	삼성교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56	106두54**	김*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3 07:36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57	11너06**	최*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0 17:56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158	34라38**	김*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3 07:34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59	32구28**	이*화	경기도 성남시	2026-03-27 19:3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0	32무31**	이*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24 19:0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1	222하29**	심*희	경기도 이천시	2026-03-16 17:2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62	65주83**	D*R*E*K*N	경기도 이천시	2026-03-24 10: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3	803도82**	우*하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4 10:1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4	34무72**	G*Y*B*E*D*E*A*I*J*N*K*A*J*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8 09:1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65	34무72**	G*Y*B*E*D*E*A*I*J*N*K*A*J*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8 09:1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66	34무72**	G*Y*B*E*D*E*A*I*J*N*K*A*J*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8 09:1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7	경기고양다77**	김*윤	경기도 고양시	2026-02-06 12:08	박석고개교차로~은평성모병원사거리	40,000
168	226호21**	정*원	경기도 파주시	2026-03-17 14: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69	06저01**	정*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24 08:43	몽촌토성역~성내교	50,000
170	324노59**	전*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25 13:4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71	183더24**	최*철	경기도 고양시	2026-03-27 20:0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72	서울38아83**	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3 15: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3	서울31자74**	송*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5 08:45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174	82모98**	정*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5 16: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75	82모98**	정*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7 12:4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76	서울32바40**	윤*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4 09: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77	142호22**	류*철	경기도 고양시	2026-03-17 16: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8	337도63**	M*N*X*A*G*U	경기도 평택시	2026-03-25 16: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9	42라16**	강*순	경기도 평택시	2026-03-25 08:04	대치역~도곡역	50,000
180	90서44**	A*D*L*A*V*S*I*D*N*U*A*U*O*I*H	경기도 평택시	2026-03-24 08:16	봉천고개~봉천로사거리	50,000
181	59마29**	P*E*D*E*U*	경기도 평택시	2026-03-26 11: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82	250조83**	이*숙	경기도 고양시	2026-03-23 1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3	112다34**	이*연	경기도 고양시	2026-03-24 10: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84	142호22**	류*철	경기도 고양시	2026-03-17 16: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85	819소74**	이*용	경기도 파주시	2026-03-24 17: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6	09우20**	오*인	경기도 고양시	2026-03-24 0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7	17머13**	황*식	경기도 고양시	2026-03-23 18:3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88	123수17**	조*주	경기도 고양시	2026-03-24 18: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9	86고19**	김*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26 0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90	321누63**	황*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29 22:2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191	344소97**	강*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26 17:3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92	390두29**	하*섭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19 18:10	복정역	50,000
193	208누99**	전*숙	경기도 시흥시	2026-03-25 08:4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94	361수80**	유*	경기도 안산시	2026-03-25 12:4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95	221호14**	민*홍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6-03-16 17:4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96	53라90**	황*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6 08:1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97	서울31자39**	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5 07:47	강남소방서앞	50,000
198	350로42**	정*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3 08:35	성내교	50,000
199	64어06**	배*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4 20: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0	33어74**	홍*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7 20: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1	51더86**	김*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6-03-26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2	111보21**	서*경	경기도 안산시	2026-03-28 10:4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03	24가34**	T*K*T*S*N*V*I*Z*B*B*R	경기도 안산시	2026-03-25 0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4	24가34**	T*K*T*S*N*V*I*Z*B*B*R	경기도 안산시	2026-03-23 07: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5	03가44**	송*우	경기도 안산시	2026-03-27 22:55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06	246로43**	J*N*I*O*G	경기도 안산시	2026-03-24 18: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7	105하25**	송*식	경기도 안산시	2026-02-26 18:0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08	208누99**	전*숙	경기도 시흥시	2026-03-25 08: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9	서울32바40**	윤*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4 09:4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10	109호47**	허*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6 09: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1	95어95**	여*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5 07:47	강남소방서앞	50,000
212	08더06**	S*T*O*D*E*J*M*L*D*I*A*D*M*J*D*G*I	경기도 안성시	2026-03-24 07:45	삼성교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3	27더51**	이*섭	경기도 안성시	2026-03-29 07: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4	98수39**	강*성	경기도 안성시	2026-03-28 12:35	서초동 반포IC 상행	60,000
215	109호47**	허*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6 09: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6	51구28**	지*화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6 17: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17	72우19**	소*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3 18:0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26	60,000
218	822나29**	김*옥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6 18:5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19	220호77**	장*숙	경기도 여주시	2026-03-18 11:5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20	24수20**	최*정	경기도 양주시	2026-03-20 17:2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21	134호25**	A*M*N*H*O	경기도 시흥시	2026-03-20 10: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2	37허83**	전*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19 09: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50,000
223	43조68**	박*승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6 09: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24	01마75**	이*나	경기도 김포시	2026-03-19 17:3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25	188호23**	임*현	서울특별시 중구	2026-02-14 21: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6	16부78**	전*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3-23 16: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7	61라32**	이*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24 20: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8	297구46**	공*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20 20: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50,000
229	서울81배48**	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3 09:38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230	114로27**	장*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6 1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31	20머61**	Y*A*R*N*Z*	경기도 김포시	2026-03-26 18: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32	16라93**	이*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4 08:56	월계1교교차로~하계5,6단지교차로	50,000
233	경북88자79**	장*운	경상북도 영천시	2026-03-25 10: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34	221오46**	강*은	경상남도 진주시	2026-03-27 10:2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35	395두62**	K*E*A*T*M*R	경기도 화성시	2026-03-24 10:4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6	144도75**	J*N*H*	경기도 군포시	2026-03-25 10: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7	144도75**	J*N*H*	경기도 군포시	2026-03-28 10: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8	144도75**	J*N*H*	경기도 군포시	2026-03-26 09:3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9	112누35**	Z*A*G*A*H*N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03-23 12:1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0	서울32아25**	이*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4 11: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1	58도43**	김*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3 16:2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42	서울31사25**	박*열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5 20: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3	75더72**	차*덕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8 16:56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44	서울31사64**	위*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5 20:4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5	29소01**	진*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4 20:3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46	서울80자38**	이*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3 20:1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47	102노19**	박*애	경기도 김포시	2026-03-18 16:3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48	388오37**	이*웅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27 15: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49	198거98**	T*A*V*N*A*H	대전광역시 동구	2026-03-24 10:55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250	286가32**	염*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6-03-24 17:48	영등포로터리~ 영등포시장교차로	50,000
251	15수59**	정*철	대구광역시 북구	2026-03-23 09:2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52	143보84**	김*희	대구광역시 남구	2026-03-23 11:5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53	서울32사72**	김*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3 11:33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254	63나48**	장*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26 12:4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55	139고97**	이*순	경기도 광주시	2026-03-26 11:4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56	경기81자86**	조*연	경기도 광주시	2026-03-23 09:18	종합운동장역~종합운동장 교차로	50,000
257	225라13**	박*주	경기도 광명시	2026-03-24 14:2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58	876더55**	J*N*H*F*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4 08: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59	97어68**	이*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8 09:19	하계역교차로~하계5,6단지교차로	50,000
260	서울31바36**	박*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5 08: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61	서울31자60**	정*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26 06:01	한강대교남단교차로~노량진배수진교차로	50,000
262	15나81**	임*월	경기도 하남시	2026-03-27 20: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3	24루58**	김*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26 17: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64	서울91자77**	신*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27 09:10	개화사거리~ 김포공항교차로	50,000
265	212부85**	주*식	경기도 하남시	2026-03-25 09:2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66	서울32자12**	장*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1 14:34	잠실새내역~잠실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7	25머02**	박*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25 20:07	서울 은평구 연서로 223 (갈현동)	50,000
268	75나64**	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5 14:41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상계동)	60,000
269	14머93**	박*근	충청남도 당진시	2026-03-26 09:04	문래동사거리~영등포역교차로	50,000
270	144도75**	J*N*H*	경기도 군포시	2026-03-26 09:3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71	19어34**	M*N*E*U*L*D*E*L*N*I*E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26 2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2	28무35**	T*E*D*U*E*O*G*N*A*A*	경기도 구리시	2026-03-23 11: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3	경기88배39**	박*규	경기도 구리시	2026-03-27 17:06	잠실동 서울YMCA 송파지회	50,000
274	서울31아51**	정*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19 1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8 (여의도동)	50,000
275	서울32자53**	정*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25 16: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6	서울32사59**	송*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23 09: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7	106조51**	김*혁	경기도 하남시	2026-01-23 08:28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278	87머01**	최*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6 09:06	월계1교교차로~하계5,6단지교차로	50,000
279	서울32아23**	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3 08:4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80	875보80**	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3 09:3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81	87거24**	오*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25 07:47	강남소방서앞	50,000
282	813거42**	원*식	경기도 화성시	2026-03-27 10: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3	006다89**	이*진	경기도 하남시	2026-03-19 07:45	강남소방서앞	60,000
284	서울32아34**	박*규	경기도 하남시	2026-03-28 02: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5	30너29**	김*일	경기도 부천시	2026-03-27 19:14	화곡로입구교차로~강서양천교육지원청입구교차로	50,000
286	361소56**	이*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5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7	231어95**	H*N*U*W*A*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7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8	224호62**	정*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12 09:0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289	16나52**	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7 17:3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90	169하14**	박*후	경기도 부천시	2026-03-13 08: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91	188수32**	L*Q*A*G	경기도 부천시	2026-03-24 17:27	남태령고개~남태령역	50,000
292	12수94**	강*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5 19: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93	133거98**	박*혜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7 13: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4	133거98**	박*혜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7 13: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95	인천30바42**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25 09:4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96	183부92**	고*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27 09:1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97	353마73**	모*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24 1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98	36조81**	나*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24 09:0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99	64더88**	이*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29 14:09	서울해군호텔앞~서울지방병무청역	50,000
300	713하21**	김*휴	전라남도 순천시	2026-03-14 14:3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60,000
301	105도39**	권*숙	경기도 성남시	2026-03-24 08:12	도곡역~매봉터널교차로	50,000
302	145허55**	심*관	경기도 성남시	2026-03-17 20:5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03	263머90**	허*현	경기도 성남시	2026-03-27 14: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4	248저64**	송*호	경기도 성남시	2026-03-28 19: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05	104어23**	김*종	전라남도 여수시	2026-03-26 17:1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06	66라54**	김*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6 09:0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07	197호16**	김*란	전라남도 나주시	2026-03-19 07: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08	14수60**	박*영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23 20:0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09	서울31자35**	김*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27 14: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0	315조18**	Q*A*W*N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23 17: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11	220하85**	오*규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7 10:5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12	15서47**	이*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24 08: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3	서울마포파27**	이*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21 12:45	모래내우체국앞교차로	40,000
314	222수80**	최*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5 18:5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15	75더72**	차*덕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9 16:5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16	69버73**	최*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1 18:37	중랑교~서울시체육회교차로	50,000
317	서울31사72**	강*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5 14:23	미아사거리	50,000
318	329노34**	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5 19:2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19	28조01**	김*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7 18:32	미아역~삼양입구사거리	50,000
320	서울32사69**	김*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3 09:2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1	75더72**	차*덕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7 17:23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22	75더72**	차*덕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6 17:4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23	서울31사81**	이*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5 09: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4	700호28**	김*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17 18:1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60,000
325	40거61**	김*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6-03-29 15: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26	33구11**	S*K*R*A*A*	대전광역시 중구	2026-03-26 18: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27	112누35**	Z*A*G*A*H*N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03-23 12:0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28	서울32자63**	최*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3 09:0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29	61주95**	김*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26 11: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30	387가24**	이*름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7 13: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31	36호50**	조*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17 20: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2	17버07**	윤*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25 16:4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33	179허84**	J*N*S*O*E*N*E*E*C*L*E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19 17:2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34	191허22**	박*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8 09: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35	101하71**	박*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6 20: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36	서울성북나87**	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27 18:00	종로5가역~동대문역	40,000
337	845너31**	손*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5 10: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8	인천32바11**	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23 18:5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39	86저51**	허*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25 08: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40	229하76**	최*나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12 17:3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1	146하98**	L*L*N*H*I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03 14:17	개봉동 139-4	50,000
342	190허44**	배*모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2026-01-18 09:48	서초IC~반포IC	50,000
343	92누47**	류*운	세종특별자치시	2026-03-23 08:15	대치역~도곡역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40호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다음의 서류를 2026년 4월 3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신*축 등 총 1,908명
○ 주소 또는 영업소: 붙임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 서류의 명칭: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통지서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문서 수령일로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내용을 공개하고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02-2133-3458)

붙임 :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	㈜신*축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길 2*, 2**동 6**호 (중계동, 양지대림)	법인지방소득세	6	63,382,530	기타
2	(*)*키*람*키*츠*드*설*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 0*호 (마곡동, 센테니아)	법인지방소득세	34	33,094,850	주소불명
3	제*에*산*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길 5*, 4층 (양재동, 경원빌딩)	법인지방소득세	8	15,353,220	수취인불명
4	고*허*스*이* *식*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길 4*-3, 1호 (서초동)	재산세	11	33,669,760	해산간주
5	주*회* *드*랫*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 비1**호 (논현동, 리스트 강남(List Gangnam))	법인지방소득세	10	20,446,580	수취인불명
6	고*지*개* *식*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 3**-2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8차)	취득세	1	1,074,914,480	수취인불명
7	광*건*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길 1*, 1**호 (일원동, 궁전하우스)	법인지방소득세	2	40,222,720	수취인불명
8	이*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 1**동 1***호 (봉천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지방소득세	1	15,673,030	기타
9	김*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7길 4* (안암동4가)	지방소득세	2	22,704,140	기타
10	김*석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번길 2* (의정부동)	취득세	12	32,272,790	주소불명
11	강*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길 1* (자양동)	지방소득세	3	22,305,050	주소불명
12	박*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길 5* 2**호 (효자동, 성주빌라)	지방소득세	1	142,135,610	기타
13	성*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 1**동 7**호 (도림동, 쌍용플래티넘시티1단지)	지방소득세	4	207,102,230	기타
14	홍*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 1***동 3**호 (원흥동, 삼송마을엘에이치1*단지)	지방소득세	6	15,533,530	폐문부재
15	김*금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 1*동 8**호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지방소득세	13	19,958,470	기타
16	김*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2**번길 1** 사동 2층 1**호 (가채리)	지방소득세	21	21,753,920	기타
17	장*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가길 6* 1**호 (천호동)	지방소득세	69	30,520,780	기타
18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길 5* (노량진동)	법인지방소득세	16	107,230,040	기타
19	김*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 (성수동1가)	지방소득세	3	40,104,500	수취인불명
20	유*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종합운동장로 1** 1**동 9**호 (신양복리, 홍익아파트)	지방소득세	2	39,342,070	기타
21	이*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 2**동 1***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지방소득세	11	111,837,22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22	이*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길 1*-5 B0*호 (봉천동)	취득세	71	35,482,700	기타
23	김*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2길 4* (수입리)	지방소득세	4	30,887,730	기타
24	이*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길 3*-3 4**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8	81,008,860	기타
25	지*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5*번길 1* (우암동)	지방소득세	11	31,351,110	기타
26	백*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길 1* (불광동)	지방소득세	7	16,265,460	수취인불명
27	정*성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길 1* (신당동)	지방소득세	4	279,131,150	기타
28	허*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1* (길음동)	취득세	544	14,581,760	수취인불명
29	김*명	경기도 광주시 봉골길 8* 1**동 5**호 (문형동, 오포우림퓨전빌아파트)	지방소득세	3	45,607,150	폐문부재
30	이*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3* (신평리)	지방소득세	4	56,507,400	폐문부재
31	한*욱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2**번길 1*-1 2**호 (하대동)	지방소득세	7	26,990,650	폐문부재
32	김*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길 3* 3**호 (역삼동)	취득세	8	34,764,050	기타
33	오*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9길 6 (인화동1가)	취득세	55	52,624,020	폐문부재
34	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 (신정동)	지방소득세	2	18,028,380	기타
35	이*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길 2*-4* 지하층 0*호 (화곡동)	지방소득세	1	21,582,190	기타
36	신*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길 1* (신길동)	취득세	17	23,234,940	주소불명
37	김*진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4*번길 1** (대연동)	취득세	15	33,830,340	주소불명
38	이*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길 3* (원효로1가)	지방소득세	2	34,312,310	폐문부재
39	강*모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7*번길 5 (월산동)	취득세	17	26,497,470	폐문부재
40	(*)*빛*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길 2*, 1**호 (등촌동)	지방소득세	3	25,101,190	수취인불명
41	(*)*브*지*터*인*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1*, (논현동)	취득세	1	14,128,820	수취인불명
42	(*)*시*인*스*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 5**호 (논현동, 대광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4	90,487,83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43	광*산*개* *식*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6*, 1**호 (목동)	재산세	23	13,229,870	수취인불명
44	(*)*대*플*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 1동 4호 (역삼동, 성지하이츠1)	법인지방소득세	9	90,525,910	수취인불명
45	김*형*축*무* *식*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길 3* 1***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Ⅲ)	법인지방소득세	6	14,714,690	부도폐업
46	세*파*너*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 1**호 (역삼동, 역삼디오슈페리움)	법인지방소득세	2	13,765,040	수취인불명
47	구*새*2*지*역*택*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3*-1* 4층 (구로동, 한국산업용재회관)	취득세	1	147,437,560	수취인불명
48	거*역*지*주*조*추*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 5층 (거여동, 정림빌딩)	취득세	41	292,524,020	수취인불명
49	농*회*법* *식*사*일*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길 3*, 1**호 (동교동, 금양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6	21,760,810	부도폐업
50	(*)*에*테*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번길 1*, 창원전자상가 3**호,3**호 (팔용동)	법인지방소득세	2	310,496,730	수취인불명
51	박*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길 2** 1층 1호 (화곡동)	주민세	5	93,040,830	수취인불명
52	전*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1**번길 3* 1***동 7**호 (고양동, 푸른마을)	취득세	3	28,615,740	폐문부재
53	한*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 1**동 B1호 (상계동, 벽산아파트)	지방소득세	2	33,787,530	기타
54	한*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길 2* (일원동)	지방소득세	7	133,856,740	주소불명
55	심*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길 6*-1* (신당동)	지방소득세	6	56,789,300	기타
56	윤*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 9**호 (봉천동, 대영오피스텔)	지방소득세	9	54,723,240	기타
57	배*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길 6 (신길동)	지방소득세	8	40,635,550	기타
58	김*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7 (불광동)	취득세	4	39,381,690	폐문부재
59	최*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 1***호 (장항동)	지방소득세	22	70,265,380	기타
60	강*갑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가길 1* (가산동)	취득세	17	39,072,780	주소불명
61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번길 4* 1**호 (행신동)	지방소득세	10	282,091,120	수취인불명
62	조*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전답길 2* (고산리)	취득세	1	93,692,140	기타
63	최*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1* (일산동)	지방소득세	5	52,116,980	주소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64	김*욱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6*번길 9 (신장동)	지방소득세	1	28,400,650	기타
65	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 1**동 3**호 (금호동4가, 브라운스톤금호)	지방소득세	1	32,343,750	기타
66	김*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9**번길 7-1* U동 4층 2호 (고등동)	지방소득세	5	46,348,250	수취인불명
67	강*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 (중곡동)	지방소득세	7	25,145,960	수취인불명
68	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길 2* 3**호 (삼전동)	지방소득세	9	42,199,160	기타
69	윤*일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 1동 5**호 (대신동, 동서타운)	지방소득세	11	23,424,920	기타
70	김*우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영통로5*번길 2* 1**동 2**호 (반월동, 반달마을 두산위브아파트)	취득세	1	28,058,460	기타
71	손*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길 8*-5 (중곡동)	지방소득세	1	42,444,520	기타
72	김*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1**번길 3* 1***동 7**호 (고양동, 푸른마을)	취득세	1	28,058,460	폐문부재
73	박*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 (산곡동)	지방소득세	8	73,173,130	수취인불명
74	박*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번길 3* B0*호 (안양동)	지방소득세	9	23,798,570	폐문부재
75	정*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2* 1**동 1***호 (도봉동, 서원아파트)	지방소득세	5	22,701,150	기타
76	한*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번길 1*-2 1**호 (작전동)	법인지방소득세	4	71,303,580	기타
77	방*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4 (신길동)	지방소득세	7	47,228,870	기타
78	김*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 2**동 8**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담배소비세	1,194	5,813,285,900	기타
79	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 1**동 3**호 (삼성동, 석탑아파트)	취득세	1	49,605,150	기타
80	장*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길 4* 5**호 (역삼동, 로얄팰리스 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3	16,083,450	기타
81	김*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나길 2*-1* (중곡동)	지방소득세	3	57,144,640	기타
82	박*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 1**동 2**호 (창현리, 이안남양주)	지방소득세	2	69,484,130	기타
83	최*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 1**동 1***호 (성남동, 현대아파트)	취득세	1	14,225,610	기타
84	장*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1**번길 8* 스위트엠 아크라시티2차 B동 4**호 (구래동)	지방소득세	1	35,018,69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85	강*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1* 6**호 (방학동, 북한산현대렉시온오피스텔)	지방소득세	9	62,466,590	수취인불명
86	윤*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6* 1**동 1***호 (수색동, 대림한숲타운아파트)	지방소득세	24	13,353,190	폐문부재
87	권*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번길 2* 5**호 (수내동, 한솔인피니티)	지방소득세	1	55,289,540	기타
88	박*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번길 8 7**호 (심곡동, 제이비팰리스)	취득세	10	34,886,760	기타
89	뉴*성*시*발*식*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 4**-1호 (논현동, 조은프라자)	법인지방소득세	50	28,693,220	수취인불명
90	다*파*너*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8-4, 4층(역삼동, 늘봄빌딩)	법인지방소득세	7	29,857,070	수취인불명
91	(*)*수*방*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1*, 1호 (청량리동, 현대코아동관)	법인지방소득세	4	39,572,560	수취인불명
92	대*주*건*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 1***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처텔)	법인지방소득세	6	45,722,930	수취인불명
93	케*넥*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1*층(여의도동, 율촌빌딩)	법인지방소득세	5	16,508,770	수취인불명
94	도*케*산*개* *식*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 3**호 (중계동, 새롬스타빌)	법인지방소득세	5	22,112,290	수취인불명
95	디*이*핀*크*브*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길 1*, (역삼동)	지방소득세	8	20,423,480	수취인불명
96	한*도*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2*, 1**호 (문호리)	취득세	14	40,495,390	기타
97	이*산*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7길 1* 오피스동 3**호 (문정동, 힐스테이트에코송파)	법인지방소득세	1	201,509,140	기타
98	라*청*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길 1*, (청담동)	법인지방소득세	10	22,771,210	수취인불명
99	(*)*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2**, KB1***호 (향동동, 디엠씨플렉스데시앙)	법인지방소득세	4	18,952,590	폐문부재
100	(*)*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길 1*, 6**호 (청담동, 현대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2	40,558,510	이사불명
101	(*)*온*앤*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 2**호 (청파동3가)	법인지방소득세	2	83,237,710	폐문부재
102	신*플*스*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가길 5*, 3**호 (성내동)	법인지방소득세	6	19,912,120	이사불명
103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 7**호 (방배동, 동지빌딩)	취득세	5	106,439,050	기타
104	엄*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9길 3 6**호 (역촌동, 거장 노블레스)	지방소득세	12	23,688,490	폐문부재
105	백*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1*번길 2* (복천동)	지방소득세	3	16,917,88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06	장*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1* 2층 (논현동)	지방소득세	13	14,284,050	수취인불명
107	함*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2*길 6 3층 (신림동)	지방소득세	5	15,405,970	수취인불명
108	W*N* *Y*N*H*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1* 3층 (역삼동)	지방소득세	1	78,101,170	수취인불명
109	한*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5길 9* 3***동 4**호 (신동, 동탄2 LH 3*단지)	지방소득세	3	17,593,090	기타
110	박*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길 5*-8 지1층 B0*호 (상월곡동)	지방소득세	5	44,333,540	기타
111	조*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가길 3-2 (대림동)	지방소득세	1	43,181,880	기타
112	윤*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다길 4*-4* 4**호 (화곡동)	지방소득세	29	31,456,990	기타
113	이*운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2* (화곡동)	지방소득세	1	36,868,910	주소불명
114	윤*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7*길 3* (신림동)	취득세	16	34,771,030	기타
115	이*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길 7-1* 1**호 (구로동)	지방소득세	3	15,366,170	기타
116	이*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길 1** 2*동 1***호 (신천동, 장미아파트)	지방소득세	24	18,246,600	수취인불명
117	인*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번안길 2* 4**호 (원당동)	지방소득세	2	22,183,090	기타
118	이*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2길 2* (방학동)	지방소득세	12	97,024,580	수취인불명
119	심*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나길 6* 3**호 (개봉동)	지방소득세	1	38,155,990	기타
120	Q*A* *U*Z*U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9*-7*	지방소득세	2	94,469,980	주소불명
121	신*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 (당산동3가)	지방소득세	2	113,207,930	주소불명
122	오*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가길 1* 3**호 (송정동)	법인지방소득세	1	148,492,770	기타
123	오*경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2* 3**동 4**호 (감이동, 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지방소득세	2	27,960,200	기타
124	심*섭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1로 9* 1**동 2**호 (오룡리, 힐스테이트오룡 1단지)	취득세	8	126,609,840	폐문부재
125	이*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1**번길 5*-2 1**호 (사창동)	지방소득세	9	22,189,090	기타
126	이*익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길 1* (청파동1가)	지방소득세	25	44,670,44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27	서*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1* 2**호 (도봉동, 명성리치빌)	지방소득세	8	31,128,040	수취인불명
128	유*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3* 3**동 3**호 (대림동, 현대3차아파트)	지방소득세	4	24,755,920	기타
129	신*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길 2*-1* 2**호 (녹번동, 동우리체)	법인지방소득세	2	25,324,430	폐문부재
130	심*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 C동 C-1***호 (문정동, 엠스테이트)	취득세	5	126,462,290	기타
131	박*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앙로 5* 1**동 1***호 (오천리, 리젠시빌란트 1차)	지방소득세	3	15,744,130	폐문부재
132	정*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번길 8-6 1**동 1**호 (운중동, 판교인터불고라비다)	지방소득세	1	23,482,410	기타
133	이*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4길 1* 5**호 (두정동, 세종타운)	취득세	17	48,160,690	기타
134	이*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가길 1* 3**호 (송정동)	법인지방소득세	1	28,583,120	기타
135	이*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로 4* 5동 8*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지방소득세	6	24,846,830	기타
136	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 4**동 2***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지방소득세	3	21,674,170	수취인불명
137	추*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길 2* (신림동)	취득세	11	29,077,460	주소불명
138	정*경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8*번길 3* 3**동 1***호 (봉선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지방소득세	34	27,337,190	폐문부재
139	강*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 (창동)	지방소득세	18	18,796,520	수취인불명
140	강*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4*번길 5-1 1**호 (개신동)	지방소득세	1	22,282,200	기타
141	김*균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로 5* 4동 2**호 (진안동)	취득세	240	72,636,950	기타
142	김*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7* 1**동 1***호 (어음리, e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어)	취득세	9	23,141,630	기타
143	서*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길 1*-7 3**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19	22,075,500	수취인불명
144	임*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 1**동 4***호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	지방소득세	1	36,783,950	기타
145	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2길 5* 9동 (광령2리)	지방소득세	3	17,748,520	이사불명
146	주*미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무곡길 1**-5 (무곡리)	지방소득세	2	16,778,560	기타
147	서*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길 3*-1* 2**호 (역촌동)	지방소득세	9	32,207,36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48	L* *O*G*U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1*길 9, 4**호	지방소득세	1	66,879,430	기타
149	이*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2*길 2*-1* 5**호 (연희동)	지방소득세	15	42,248,080	기타
150	박*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구평1길 2*-2* (한교리)	취득세	15	28,270,270	수취인불명
151	차*훈	경상북도 문경시 상신로 4* 2**호 (점촌동, 애드인)	법인지방소득세	1	13,428,920	기타
152	최*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4**-6* 3**동 1**호 (영등동, 부영아파트)	취득세	13	34,831,760	폐문부재
153	파*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 엘-8***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법인지방소득세	76	21,015,200	기타
154	링*잇*주*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길 2*, 9**호 (여의도동, 포레스텔빌딩)	지방소득세	12	132,170,540	해산간주
155	트*스*크*(*)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 공존동 3**호 (오류동, 블루텍)	취득세	1	16,964,380	기타
156	메*백*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길 3*, 5층(도곡동)	법인지방소득세	9	37,249,280	수취인불명
157	베*리*퍼*이* *식*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 2**호 (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법인지방소득세	28	46,665,690	수취인불명
158	서*디*피*주*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길 9*, 2**동 2***호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25	13,738,600	이사불명
159	성*그*주*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길 7, 3층(방배동, 우승빌딩)	지방소득세	18	12,548,120	수취인불명
160	세*앤*트*스*주*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길 3, (성수동2가, 세종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	94,734,450	부도폐업
161	(*)*엔*이*홀*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 비동 1***호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	지방소득세	10	98,752,840	수취인불명
162	알*이*종*건* *식*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1**, 2**호 (중화동, ABC square)	법인지방소득세	8	24,322,870	수취인불명
163	에*닷*퍼*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8-4, (역삼동, 늘봄빌딩)	법인지방소득세	6	33,369,310	수취인불명
164	(*)*우*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 2층 (응암동, 아너스카운티)	취득세	2	875,886,170	폐문부재
165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길 9-3, 3**호 (삼성동, 씨라인빌)	법인지방소득세	12	15,553,990	수취인불명
166	에*치*지*이*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길 3*, 3층 (청담동)	지방소득세	1	15,982,580	부도폐업
167	엔*러* *식*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길 1*, 3층(당산동3가)	법인지방소득세	2	17,761,550	해산간주
168	(*)*랜*즈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2* 명지빌딩 4층	주민세	11	31,918,21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69	(*)*성*택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 3층(유동)	취득세	1	160,552,360	폐문부재
170	엘*에*엠*핑*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길 3*, (청담동)	지방소득세	5	76,946,070	이사불명
171	안*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6**번길 8 1**동 1**호 (관음리, 양지샤인빌)	지방소득세	3	52,732,320	폐문부재
172	한*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길 2* 2**동 8**호 (자곡동, LH수서2단지)	지방소득세	1	95,523,410	기타
173	이*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길 4 1**동 2**호 (수유동, 극동아파트)	취득세	1	15,301,320	기타
174	이*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길 3-1* 1**호 (석촌동)	지방소득세	10	11,284,230	기타
175	정*자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길 2* (과역리)	지방소득세	1	13,471,430	폐문부재
176	임*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가길 2* (신림동)	지방소득세	16	15,524,060	기타
177	조*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7-7 (창동, 쏘망빌라)	지방소득세	3	39,867,310	주소불명
178	김*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번길 4*-1* 2**호 (소사본동, 동일빌라)	취득세	24	29,129,080	기타
179	조*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 3**호 (상대원동, 아트빌라)	지방소득세	1	21,559,750	기타
180	이*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 (충정로3가)	지방소득세	1	12,047,360	기타
181	이*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번길 3*-3 4동 3**호 (묵현리)	취득세	35	118,887,310	기타
182	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1 (화곡동)	지방소득세	3	41,112,970	이사불명
183	장*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번길 6* 3**호 (신평동)	취득세	50	28,518,870	기타
184	남*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나길 4* (미아동)	지방소득세	3	18,798,780	기타
185	류*광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4*번길 2*-8 2**호 (신정동, 이안힐스테이)	취득세	9	21,866,060	기타
186	정*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길 9 2**호 (암사동, 동용캐슬)	지방소득세	1	16,769,470	기타
187	김*경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1길 3* (우정동)	취득세	13	18,624,330	기타
188	최*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 (범일동)	취득세	13	34,147,390	수취인불명
189	김*미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석교로1**번길 6-2 2**호 (석교리)	취득세	20	30,550,01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90	김*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길 7* 2**동 2**호 (상도동, 상도에스에이치빌)	지방소득세	1	61,419,120	기타
191	이*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7안길 1* (합정동)	지방소득세	5	18,062,210	기타
192	황*섭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5*번길 2*-5 3**호 (정왕동)	취득세	16	20,720,220	수취인불명
193	이*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가길 5* 7층 7**호 (익선동, 현대뜨레비앙)	지방소득세	1	31,193,770	기타
194	정*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7*길 1* 3**호 (동빙고동)	지방소득세	1	23,077,020	수취인불명
195	신*애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3* 1**호 (수산리)	취득세	26	37,593,620	기타
196	최*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길 7* 3**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4	39,205,750	수취인불명
197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서로3길 1* (고척동)	지방소득세	4	34,024,620	주소불명
198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라길 2* (흑석동)	지방소득세	1	43,218,640	주소불명
199	양*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 2**동 9**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지방소득세	1	21,956,220	기타
200	강*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6* (면목동)	지방소득세	3	66,818,740	기타
201	조*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길 2*-5 6**호 (면목동)	지방소득세	5	45,431,910	기타
202	김*복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8* A동 3**호 (개봉동, 태산하우징)	취득세	21	39,285,620	수취인불명
203	김*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1 (행당동)	지방소득세	7	109,612,350	주소불명
204	김*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 1**동 9**호 (아현동, 마포센트럴 아이파크)	지방소득세	1	13,266,920	기타
205	위*드*(*U*C*E*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사마루길 5*-1* (노형동)	법인지방소득세	2	382,137,190	기타
206	유*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4길 2* 1**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3	25,496,110	수취인불명
207	박*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6*길 6* 2**호 (면목동, 해마루)	지방소득세	7	33,082,340	수취인불명
208	한*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길 3* B0*호 (신림동)	취득세	21	26,602,400	수취인불명
209	김*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길 3-3 (신당동)	지방소득세	7	16,795,240	기타
210	박*욱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 1**동 1***호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아파트)	지방소득세	1	12,274,58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211	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 9동 1**호 (쌍문동, 한양아파트)	지방소득세	1	20,978,670	기타
212	이*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8*번길 5-1* 3**호 (반송동)	취득세	12	31,954,670	기타
213	허*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7*번길 2* (쌍촌동)	취득세	14	26,814,370	주소불명
214	박*엽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번길 1* 2**호 (정왕동)	취득세	5	58,426,810	기타
215	김*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번길 3 (상동)	취득세	10	22,888,580	기타
216	신*산*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 7**호 (가양동, 마스터밸류 에이스 지식산업센터)	법인지방소득세	4	800,674,200	기타
217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6*-4	법인지방소득세	7	33,132,350	기타
218	엘*에*홀*스*주*회* *L*A*H*L*I*G**N*.*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길 2*-7, 5**호 (대치동, 우형빌딩)	법인지방소득세	6	22,497,160	수취인불명
219	엠*퍼*트*주*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 2**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2차)	법인지방소득세	4	253,543,530	해산간주
220	대*동*역*택*합*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로 4* 비3*호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취득세	6	48,664,780	기타
221	엠*이*지*리* *식*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9길 8, 3**호 (신림동)	법인지방소득세	7	121,687,250	기타
222	사*런*인*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 에이동 9***호 (영덕동, 힉스유타워)	법인지방소득세	3	800,697,840	주소불명
223	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 1**동 1***호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법인지방소득세	5	555,475,920	수취인불명
224	박*숙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7**번길 6* 2**호 (산본동)	취득세	21	43,536,230	폐문부재
225	윤*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1** 1***호 (망원동, 망원동대상3차아파트)	지방소득세	23	35,526,920	기타
226	이*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8** 1**동 7**호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지방소득세	37	74,410,830	폐문부재
227	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3*길 1* (봉천동)	지방소득세	1	22,168,430	수취인불명
228	이*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 1**동 8**호 (공릉동, 동신아파트)	지방소득세	1	65,467,720	기타
229	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길 3 1층 (일도이동)	지방소득세	5	23,571,050	기타
230	정*묵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1** 5층 5**호 (봉천동, 샤인빌)	지방소득세	18	79,865,360	이사불명
231	김*균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6* E동 5**호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지방소득세	11	27,262,21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232	도*우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1길 6-1* 4**호 (형곡동, 뷰티크)	취득세	29	39,561,800	기타
233	정*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길 1 (방배동)	지방소득세	92	41,984,840	기타
234	김*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 1**동 2***호 (선동, 리버스위트칸타빌)	취득세	11	1,912,952,600	기타
235	노*상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8* (능평동)	취득세	26	36,768,490	폐문부재
236	김*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길 2* 1**동 2**호 (신길동, 신길바른리움)	지방소득세	7	171,273,280	기타
237	이*표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번길 3 1**호 (의정부동)	법인지방소득세	2	34,661,400	기타
238	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길 1* 1**동 4**호 (일원동, 수서1단지 에스에이치빌)	법인지방소득세	5	21,646,300	기타
239	김*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8길 3* (방이동)	지방소득세	3	56,053,810	주소불명
240	이*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요죽안1길 3*-1* 4**호 (오식도동)	취득세	12	32,933,320	수취인불명
241	이*평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7 1**동 1***호 (우산리, 보성우산주공아파트)	취득세	7	23,652,550	기타
242	이*송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번길 9* 2동 4**호 (고강동, 진영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2	13,956,740	기타
243	김*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3길 1*-1 (금당리)	지방소득세	10	89,198,350	기타
244	황*하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9*번길 8* 2동 3**호 (신곡동, 승승 스위트빌)	지방소득세	2	26,866,380	기타
245	엠*프*코*아*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 4층,5층(도곡동, 동신빌딩)	법인지방소득세	5	40,257,390	수취인불명
246	예*개* *식*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4*, 내3*호 (청당동, 엠피스천안센터)	재산세	5	25,475,110	부도폐업
247	(*)*스*지*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길 2*-1, 2층(청담동)	법인지방소득세	8	14,356,890	이사불명
248	와*셀*주*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 2**-1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2차)	지방소득세	8	438,226,750	해산간주
249	불*2*지*주*조*추*위*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 (불광동)	취득세	3	109,631,980	이사불명
250	우*제*소*주*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1, 2층(서교동, 레이즈빌딩)	지방소득세	21	12,944,180	이사불명
251	이*에* *식*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2***번길 4* (내리)	취득세	17	325,006,560	부도폐업
252	홍*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2**번길 1* 1**동 2***호 (운양동,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지방소득세	1	14,479,13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253	라*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 1***동 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1	17,194,740	기타
254	성*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 2**호 (논현동, 예림빌라)	지방소득세	1	17,831,010	기타
255	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길 1* (동자동)	지방소득세	6	101,786,290	폐문부재
256	마*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6길 7 (중곡동)	지방소득세	6	38,220,020	기타
257	유*연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4**번길 6* B0*호 (거모동, 다림주택3차)	지방소득세	2	42,286,510	기타
258	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길 1*-9 (불광동)	지방소득세	8	32,408,440	수취인불명
259	김*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길 6*-8 지층 1**호 (우이동, 에덴의집)	지방소득세	9	25,799,930	기타
260	김*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가여로 2**-1* (안금리)	지방소득세	1	22,842,950	기타
261	이*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길 4* 3**호 (중화동)	지방소득세	3	36,923,190	기타
262	정*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길 4* B0*호 (청담동, 청산빌라)	지방소득세	2	16,722,650	기타
263	제*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2* 1**동 4**호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취득세	9	73,708,370	기타
264	조*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 4동 1*층 1***호 (오금동, 상아아파트)	지방소득세	34	31,580,000	기타
265	이*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길 5-2* 2**호 (방이동)	지방소득세	1	15,944,340	기타
266	신*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5* 6**호 (봉천동)	지방소득세	20	20,000,940	기타
267	정*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초시길 3**-4 (송림리)	취득세	50	20,551,310	폐문부재
268	정*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 1***호 (방이동,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지방소득세	2	16,348,550	기타
269	정*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4*길 6* 1**동 1***호 (봉천동, 관악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33	49,240,940	수취인불명
270	김*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5번길 4* 1**동 1***호 (화서동, 성원상떼빌아파트)	취득세	34	18,708,430	기타
271	이*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1**번길 1** 2*동 지층2 (고강동, 효성빌라)	지방소득세	17	15,641,270	기타
272	박*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길 8-1* 2**호 (잠실동)	지방소득세	1	68,984,350	기타
273	위*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1*번길 3* (하단동)	취득세	20	26,122,48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274	신*욱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길 3*-7 B1**호 (봉천동)	취득세	2	69,326,710	기타
275	성*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 1**동 1***호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지방소득세	2	109,674,780	폐문부재
276	곽*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길 1*-1* 1**동 2**호 (신월동, 영신트라움)	취득세	102	27,827,860	기타
277	박*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가길 1* (장안동)	지방소득세	40	19,914,410	기타
278	박*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소미길 1*-2* 7동 B0*호 (봉안리, 세종프로방스)	취득세	39	35,360,240	이사불명
279	고*명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5 4**호 (오남리)	지방소득세	21	15,481,580	기타
280	김*광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장계3길 2*-2* (장계리)	취득세	28	20,576,570	수취인불명
281	이*승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2* (복지리)	지방소득세	14	21,123,370	수취인불명
282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 7**호 (서초동)	지방소득세	7	16,115,580	기타
283	오*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바길 4 (창동)	지방소득세	11	24,566,890	기타
284	라*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길 2 (문정동)	지방소득세	6	10,914,121,090	주소불명
285	윤*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 (신정동)	지방소득세	1	18,467,810	수취인불명
286	박*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길 8 1**동 6**호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3	22,474,180	기타
287	김*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1*길 2*-1* 6**호 (성내동)	지방소득세	1	14,817,180	수취인불명
288	박*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길 1* 4**호 (서초동)	취득세	17	39,495,650	기타
289	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번길 1* 1**동 1***호 (옥련동, 서해아파트)	취득세	1	18,542,420	폐문부재
290	조*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번길 2* 8동 6**호 (주안동, 광명아파트)	취득세	5	24,725,950	기타
291	(*)*션*릿*홀*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길 4*, 1***호 (성수동2가,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법인지방소득세	5	17,759,420	수취인불명
292	(*)*진*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 3**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차)	법인지방소득세	31	37,968,780	기타
293	(*)*은*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 1동 (달전리)	취득세	42	21,644,590	수취인불명
294	제*트*우* *식*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7*-2, 6**호 (용두동, 제스트 하우스)	재산세	83	18,164,48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295	반*이*씨*설*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3, 4**호 (공릉동, 진주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5	16,367,650	기타
296	(*)*스*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 2**호 (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9	164,974,190	기타
297	제*전*통*주*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8*, 2층 (중화동)	법인지방소득세	3	44,850,900	부도폐업
298	명*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2길 2*-2, (방배동)	법인지방소득세	4	31,224,120	이사불명
299	주*회* *나*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길 3*, 3**호 (서초동, 강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8	157,455,430	수취인불명
300	주*회* *디*홀*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 (논현동)	지방소득세	7	15,190,450	이사불명
301	광*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번길 1*, 1**동 3**호 (문덕리, 국민드림빌6차)	취득세	22	46,738,420	수취인불명
302	진*달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	지방소득세	1	11,523,650	주소불명
303	김*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2**번길 1* (회현리)	지방소득세	27	25,846,440	기타
304	김*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가길 2*-2 (한강로1가)	지방소득세	2	25,792,140	폐문부재
305	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 (도림동)	지방소득세	3	41,333,180	기타
306	김*자	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 4* 5**동 4**호 (각산동, 대구혁신에듀포레)	취득세	1	57,173,040	폐문부재
307	정*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번길 2* 3**동 1***호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취득세	18	24,161,450	기타
308	안*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4*번길 3-1 (태평동)	주민세	3	32,540,730	기타
309	김*숙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3*가길 8 (미아동)	지방소득세	57	33,725,490	기타
310	한*형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본로2*번길 1*-3 (야음동)	취득세	21	25,012,090	기타
311	유*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길 9 (독산동)	지방소득세	57	198,725,150	이사불명
312	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가길 5-1* (필운동)	지방소득세	6	51,716,960	수취인불명
313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길 3*-1* (제기동)	지방소득세	10	23,358,640	수취인불명
314	장*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8나길 3* 1**호 (상봉동)	지방소득세	13	31,599,920	이사불명
315	최*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1**번길 2* 2층1 (고강동, 동호빌라)	지방소득세	29	29,209,84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316	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2 2**동 3**호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지방소득세	3	21,028,460	기타
317	마*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길 4*-7 3층 (길동)	지방소득세	2	58,859,670	수취인부재
318	서*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6* (창천동)	지방소득세	1	36,900,000	주소불명
319	김*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4*번길 3* 2**호 (안양동, 휴타운숲)	취득세	2	83,566,020	폐문부재
320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 1**동 1**호 (창전동, 창전쌍용스윗닷홈)	취득세	9	597,882,420	기타
321	김*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 3층 3**호 (상계동)	지방소득세	4	32,974,310	기타
322	김*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 (흥인동)	법인지방소득세	1	91,864,380	기타
323	강*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길 1* (영등포동6가)	취득세	12	34,485,360	주소불명
324	박*철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번길 2* 1**동 1**호 (강산동, 부영아파트)	취득세	17	38,855,780	기타
325	안*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 4층 4**호 (역곡동)	취득세	8	29,620,840	수취인불명
326	최*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7*번길 2*-1* 나동 3층 3**호 (관청리, 트윈빌)	취득세	11	20,470,770	기타
327	김*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2길 1** 3층 3**호 (한남동, 유림빌라)	지방소득세	1	21,675,860	폐문부재
328	우*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가길 1*, 1**동 2**호 (염창동, 시원트레빌)	법인지방소득세	3	11,607,040	기타
329	주*회* *우*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길 2*, 2층(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6	50,094,100	이사불명
330	주*회* *이*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 1*층 브이5**(서초동, 강남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	268,420,920	부도폐업
331	천*욱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길 5* 1**동 1***호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지방소득세	1	36,845,700	기타
332	장*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길 1*-1* (구의동)	지방소득세	2	13,624,910	기타
333	박*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번길 2*-6 B동 1**호 (은행동, 동일빌라)	주민세	40	16,058,970	기타
334	이*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9-1 (신설동)	지방소득세	5	58,374,800	기타
335	박*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 (봉천동) 지하(주점)	지방소득세	5	36,682,460	기타
336	박*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6* (본오동)	지방소득세	4	32,400,310	주소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337	조*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번길 2* 2**호 (안양동)	취득세	17	54,079,800	폐문부재
338	오*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2*길 3 3**호 (신림동)	재산세	8	23,752,420	수취인불명
339	송*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1 A동 1**호 (주안동, 오담빌라)	취득세	16	26,388,630	수취인불명
340	강*심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5* (신림동)	지방소득세	5	101,156,240	기타
341	김*봉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길 9 5층 (목동)	지방소득세	1	32,226,220	기타
342	최*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길 2* 8동 2**호 (망우동, 염광아파트)	지방소득세	102	77,842,020	이사불명
343	안*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 에이1***호 (신정동, 이스타빌)	지방소득세	12	17,012,190	이사불명
344	이*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 1**동 7**호 (방학동, 이에스에이아파트)	지방소득세	5	853,978,470	기타
345	최*경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1* 1**동 2**호 (야당동)	취득세	1	15,355,070	기타
346	송*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 1**동 1***호 (신림동, 신림푸르지오아파트)	지방소득세	9	13,780,830	기타
347	김*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길 1** 1**동 7**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취득세	5	28,244,150	기타
348	김*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길 5 (용두동)	지방소득세	1	15,426,390	수취인불명
349	김*현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번길 3* 가동 3층 3**호 (삼성동, 건양빌라)	취득세	49	38,805,247	기타
350	권*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 1**동 1***호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3	29,367,100	기타
351	이*수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번길 2* 1**동 2***호 (청라동, 청라엑슬루타워)	지방소득세	37	196,539,000	기타
352	김*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길 1*-1* (응암동)	지방소득세	1	12,313,820	폐문부재
353	배*호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 1동 8**호 (노원동1가, 삼일펠리체)	지방소득세	19	45,613,520	기타
354	송*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 1**동 1***호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지방소득세	1	27,634,780	기타
355	윤*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4**번길 4* (금남리)	지방소득세	13	31,634,560	수취인부재
356	김*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5*가길 1* (미아동)	지방소득세	6	15,981,500	기타
357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2*길 1*-6 (제기동)	지방소득세	10	16,659,16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358	전*익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길 2* (서교동)	지방소득세	14	46,560,040	주소불명
359	김*표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8*번길 1*-2 3**호 (용운동)	취득세	42	41,684,930	수취인불명
360	이*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4**-2* (성수동2가)	지방소득세	6	20,890,820	기타
361	손*우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2* 7층 (대야동)	지방소득세	1	13,867,160	기타
362	이*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안길 3*-6 3**호 (우면동)	지방소득세	2	17,215,320	기타
363	이*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5*-8 (연남동)	지방소득세	23	25,531,190	수취인불명
364	김*래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3* 3**호 (유천동, 성호빌라)	지방소득세	7	21,241,690	수취인불명
365	황*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길 1** 1**동 5**호 (사당동, 이수역리가아파트)	지방소득세	11	49,794,140	기타
366	최*규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3-6 (두모동)	취득세	5	24,635,300	주소불명
367	주*회* **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 제8**호(논현동, 세양에이팩스타워)	법인지방소득세	40	203,491,830	부도폐업
368	(*)*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길 4*, 1**동 2**-3*호 (문래동4가, 리버뷰 신안인스빌)	법인지방소득세	14	336,855,690	수취인불명
369	박*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2* (신대방동)	지방소득세	1	25,842,430	기타
370	조*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길 3*-3 (한강로3가)	지방소득세	1	210,353,330	폐문부재
371	김*환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번길 1* (자양동)	법인지방소득세	2	178,186,300	주소불명
372	H*N*I*E*E*S*I* **E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방소득세	1	52,836,160	주소불명
373	김*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2*길 9 (수유동)	지방소득세	1	76,892,190	기타
374	양*승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 1**동 7**호 (돈암동, 돈암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14	23,526,360	기타
375	배*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길 4* (번동)	지방소득세	3	65,681,760	기타
376	정*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번길 9* B0*호 (행신동)	지방소득세	40	47,590,380	폐문부재
377	이*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길 7-2 (자양동)	지방소득세	1	15,215,650	주소불명
378	양*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 (암사동)	지방소득세	1	14,305,36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379	W*N* *E*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 5**호 (반포동)	지방소득세	1	568,352,740	기타
380	박*식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번길 8 (신곡동)	지방소득세	49	15,929,750	기타
381	정*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길 3* (신림동)	지방소득세	8	107,070,510	기타
382	김*희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가재길 5*-1* (상가리)	주민세	11	17,203,500	기타
383	윤*수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6* 3**호 (중동)	지방소득세	6	49,699,710	폐문부재
384	김*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가길 1*-5* 3**호 (불광동, 미산빌9)	지방소득세	1	32,217,830	수취인불명
385	배*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9 1**동 1***호 (가양동, 강서 한강 월드메르디앙)	지방소득세	1	12,957,580	수취인불명
386	박*숙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역로9*번길 1* 1**동 8**호 (가좌동, 포레나 신진주 아파트)	지방소득세	7	107,435,820	폐문부재
387	김*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번길 3*-1* (우만동)	지방소득세	7	32,903,500	기타
388	이*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가길 2*-1 (거여동)	지방소득세	3	203,814,650	기타
389	조*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길 4* 1**호 (독산동, 유선네오빌)	지방소득세	1	28,396,030	기타
390	천*웅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6*-8 B동 2**호 (증산동, 나비드빌)	지방소득세	5	48,930,040	폐문부재
391	한*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길 6-1 (영등포동5가)	지방소득세	3	64,457,660	주소불명
392	김*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길 1* 2동 1**호 (신림동, 미성아파트)	지방소득세	3	68,121,880	기타
393	김*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길 1*-3* 지1층 B1**호 (불광동, 삼성그랑빌)	지방소득세	2	136,059,330	폐문부재
394	나*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3* 2**동 6**호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지방소득세	2	19,179,870	기타
395	바*미*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9길 4, 4층 (방배동, 장자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8	16,834,370	주소불명
396	(*) *엔*스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길 2*, 6층 (신당동, 퀸즈스퀘어패션몰)	법인지방소득세	5	21,620,400	수취인불명
397	주*회* *신*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길 1*, 5층(서초동, 우면빌딩)	지방소득세	13	19,444,720	기타
398	(*)*베*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 6**호 (역삼동, 성지하이츠2차)	법인지방소득세	1	16,986,440	수취인불명
399	주*하*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 1**호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2	26,769,12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400	주*회* *인*버*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 1*호 (아동동, 장안초원상가)	취득세	2	1,093,102,900	부도폐업
401	주*회* *드*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 2**호 (역삼동, 성곡빌딩)	지방소득세	10	94,953,910	수취인불명
402	주*회* *사*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길 5, 2**호 (신림동)	법인지방소득세	22	25,018,800	부도폐업
403	주*회* *장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4*, 5**-6호 (덕소리, 마이다스빌딩)	재산세	86	22,589,410	기타
404	(*)*청*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 3층(구로동)	법인지방소득세	4	46,327,100	기타
405	주*회* *비*씨*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3**호 (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법인지방소득세	2	385,588,260	수취인불명
406	주*회* *대*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 1***호 (역삼동, 동경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35,774,030	부도폐업
407	옥*동*역*택*합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4* 상가동 2**호 (옥수동, 옥수하이츠아파트)	재산세	12	34,485,620	수취인불명
408	성*상*지*주*조*	서울 성북구 돈암동 6**-2	취득세	46	17,629,630	주소불명
409	디*엘*합*설*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길 7*, 4**호 (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취득세	19	288,161,170	기타
410	홍*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 (불광동)	지방소득세	1	34,176,220	폐문부재
411	함*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 1**동 2***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지방소득세	11	51,927,950	기타
412	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 B동 3***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방소득세	11	43,947,122,420	기타
413	오*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2길 8-5 (문정리)	지방소득세	1	207,384,460	이사불명
414	권*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길 4* (이태원동)	지방소득세	30	196,148,990	폐문부재
415	박*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길 2* 1**동 7**호 (독산동)	지방소득세	1	13,913,490	기타
416	정*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번길 1*-1* 3층 (신흥동)	취득세	14	52,469,520	기타
417	서*열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길 4* (면목동)	지방소득세	4	20,055,570	기타
418	안*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길 5 1**동 1**호 (월계동, 월계1단지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3	16,847,040	기타
419	김*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 1***호 (신정동, 양지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1	39,073,740	기타
420	임*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길 4* (신월동)	지방소득세	2	14,590,38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421	조*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3* 2**호 (쌍문동, 이화맨션)	취득세	5	52,437,570	기타
422	장*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림로 4*-2 3**호 (동림리)	지방소득세	6	26,729,850	기타
423	김*형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 (신월동)	지방소득세	1	21,429,270	주소불명
424	정*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3*가길 2* (휘경동)	지방소득세	15	19,706,210	기타
425	김*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 1***호 (둔산동, 태산시그마빌)	법인지방소득세	12	223,550,650	기타
426	김*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3* 1**동 2***호 (운양동, 모담마을 KCC 스위첸 2차)	취득세	1	26,556,370	폐문부재
427	이*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번길 2* (왕길동)	취득세	47	36,567,260	기타
428	김*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3*번길 2*-9 B0*호 (상대원동)	취득세	25	36,923,150	기타
429	전*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길 7*-6 지층 8호 (봉천동)	지방소득세	21	17,191,700	이사불명
430	이*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 가동 3**호 (신봉동)	지방소득세	3	24,832,520	기타
431	남*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길 4* 4**호 (역삼동, 골든힐)	지방소득세	1	16,263,660	기타
432	정*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길 1*-2* 1동 3**호 (오류동, 형지 하이빌)	지방소득세	1	22,298,080	기타
433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길 2* 3**호 (화곡동, 오유지음)	지방소득세	221	12,923,210	기타
434	정*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 3**동 1***호 (도내동, 도래울센트럴더힐)	지방소득세	1	19,802,700	폐문부재
435	김*웅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5* (신동)	지방소득세	12	16,195,690	기타
436	김*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5*번길 3* 3층 (주안동)	지방소득세	12	22,580,350	기타
437	김*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 3,4층 (노량진동, 고려교육타워-어바니엘한강)	지방소득세	136	45,613,430	수취인불명
438	강*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1** 4**호 (궁동, 궁동하이츠빌라)	지방소득세	5	36,513,500	기타
439	정*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7길 5*-1* (신영동)	취득세	61	22,179,010	기타
440	김*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 9동 7**호 (전농동, 전농1차우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	43,188,840	기타
441	박*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4* 3**호 (방학동, 현대캐슬)	지방소득세	4	36,601,17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442	김*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번길 3* 2**호 (신평동)	지방소득세	3	88,485,360	기타
443	홍*형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4*길 1** 3**호 (두류동)	취득세	9	23,851,470	폐문부재
444	김*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2* (공덕동)	취득세	7	36,387,700	주소불명
445	윤*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번길 4* 1층 1**호 (수택동)	지방소득세	2	15,290,120	기타
446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라길 5* 다동 2층 3**호 (정릉동)	법인지방소득세	21	612,137,610	기타
447	전*순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3** 1**동 1**호 (동패동, 운정신도시 IPARK)	지방소득세	2	13,080,400	기타
448	박*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길 5* (성내동)	지방소득세	14	211,619,370	이사불명
449	김*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길 3* 1**호 (미아동, 현대아트빌라)	지방소득세	2	14,281,440	기타
450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1 〈2/4〉 주공아파트 9동 2**호	지방소득세	1	42,810,410	주소불명
451	조*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 (영등포동1가)	지방소득세	1	23,585,040	주소불명
452	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가길 5* 1**동 2**호 (오금동, 리멤버빌)	지방소득세	12	26,503,740	기타
453	박*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 (장안동)	지방소득세	1	14,612,400	수취인불명
454	김*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길 6-2 (풍납동)	주민세	38	11,535,240	기타
455	박*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2*길 1*-1 (청량리동)	지방소득세	1	23,732,020	기타
456	조*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길 2* 3**호 (역삼동)	취득세	4	2,333,044,430	기타
457	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 1**동 7**호 (성내동, 둔촌역청구아파트)	지방소득세	12	42,265,990	기타
458	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4*안길 1* (홍제동)	지방소득세	2	50,865,330	기타
459	W*N*G*N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 대륭테크노타운6차 1*층 1***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6차)	법인지방소득세	1	291,448,550	수취인불명
460	이*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 A동 1***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지방소득세	2	266,729,570	기타
461	조*웅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부조고개길 6*-1* (남산리)	지방소득세	1	506,324,510	기타
462	곽*희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길 1*-5 3**호 (청안리)	취득세	11	36,280,680	주소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463	최*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3*길 1* 4**호 (신정동)	지방소득세	3	32,249,950	수취인부재
464	오*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9길 1* 1**동 8**호 (독산동, 주원블레어캐슬)	취득세	1	19,047,860	기타
465	김*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라길 7 B0*호 (마천동)	지방소득세	8	26,539,400	기타
466	김*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2*길 1* (신길동)	지방소득세	3	38,109,790	주소불명
467	홍*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2길 2*-4 1**호 (와동)	지방소득세	15	19,113,120	폐문부재
468	유*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4*-6 (창동)	법인지방소득세	1	2,168,431,100	기타
469	박*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나길 1* (자양동)	지방소득세	3	19,378,710	기타
470	임*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길 1* (구의동)	지방소득세	1	74,634,730	기타
471	채*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4 3**호 (성황동)	법인지방소득세	4	457,978,140	기타
472	이*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길 1** 1**동 9**호 (사당동, 래미안 로이파크)	지방소득세	3	261,512,190	기타
473	배*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길 2* (한강로2가)	지방소득세	2	748,750,880	수취인불명
474	주*회* *축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길 2*, 4**호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1차)	법인지방소득세	3	25,724,490	파산폐지
475	주*회* *린*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8*-2, 3**호 (종로2가, 삼양빌딩)	지방소득세	15	79,126,580	수취인불명
476	주*회* *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 3**호 (대치동, 동구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13,357,550	부도폐업
477	주*회* *블*스*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1*, 제오5**에이호 (대치동, 선릉역 풍림아이원레몬)	지방소득세	22	13,424,580	부도폐업
478	지*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 2층(방배동)	취득세	5	233,115,960	이사불명
479	주*회* *보*딩*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6*번길 3*, 1***호 (광안동, 대우아이빌)	재산세	10	24,605,590	부도폐업
480	주*회* *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번길 1**, (전호리)	법인지방소득세	11	16,140,220	해산간주
481	이*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 1***호 (도화동, 성지아파트)	지방소득세	1	64,087,780	기타
482	황*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8*-1 7**호 (신림동)	취득세	38	42,470,730	이사불명
483	채*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9*번길 3*-1 (가능동)	취득세	16	33,002,09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484	최*룡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6길 3*-1 (목동)	지방소득세	2	12,954,990	기타
485	김*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길 9 5**호 (화곡동, 나현빌라)	취득세	6	24,352,960	기타
486	김*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가길 9-4 1**호 (불광동)	지방소득세	2	15,209,120	수취인불명
487	김*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길 1* 1**동 2**호 (일원동, 수서아파트)	지방소득세	1	43,908,400	기타
488	임*용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1길 2* (신흑동)	지방소득세	29	66,751,080	이사불명
489	선*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길 5* 경진빌딩동 4**호 (등촌동)	지방소득세	10	16,923,760	수취인불명
490	유*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길 2* 9**동 7**호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지방소득세	1	12,501,490	기타
491	김*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길 7* 1층 2**호 (봉천동)	지방소득세	1	12,568,800	기타
492	이*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다길 5*-1* B1**호 (상계동, 신양빌라)	지방소득세	5	15,359,700	기타
493	서*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8* (단구동)	취득세	84	19,561,900	수취인불명
494	노*천	경기도 의왕시 통미마을길 2* 1동 4**호 (왕곡동)	취득세	4	41,648,600	폐문부재
495	민*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 9**호 (야당동)	법인지방소득세	1	17,062,580	수취거절
496	장*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9* 1**동 1***호 (퇴계원리, 일신건영아파트)	취득세	7	25,865,180	폐문부재
497	강*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길 2* (독산동)	지방소득세	3	11,905,540	주소불명
498	이*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길 3* (역삼동)	지방소득세	3	475,178,210	주소불명
499	양*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길 1* 1**호 (가락동)	지방소득세	2	13,833,850	수취인불명
500	안*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 1**-8 3**호 (덕이동, 에스클래스)	지방소득세	14	21,642,280	수취인불명
501	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1* 2**호 (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4	20,201,800	수취인불명
502	성*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 6*-3 1**동 1***호 (휘경동, 휘경해모로프레스티지)	지방소득세	9	33,133,150	기타
503	김*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길 1*-2* 5**호 (등촌동, 에덴빌리지)	지방소득세	10	20,168,030	주소불명
504	고*민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 1**동 1***호 (매산동, 대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	55,139,71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505	김*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길 4*-1 (구의동)	지방소득세	5	37,276,820	기타
506	이*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 2**동 1***호 (마곡동, 마곡엠밸리2단지)	지방소득세	8	15,799,250	기타
507	김*연	경기도 광주시 세피내길 1**-4 (고산동)	지방소득세	13	27,927,790	수취인불명
508	김*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길 1* (이태원동)	지방소득세	17	43,127,930	폐문부재
509	정*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3길 2* 2층 (역촌동)	지방소득세	5	12,108,930	폐문부재
510	형*욱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 4* 4**동 6**호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지방소득세	6	23,378,460	기타
511	윤*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길 3*-6 1**호 (수유동)	지방소득세	5	22,039,740	기타
512	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1*-1* B0*호 (개포동)	지방소득세	3	12,003,130	기타
513	김*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 4*-5 (공세리)	취득세	30	17,201,650	기타
514	권*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1* 1**동 2**호 (삼성동, 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3	288,305,750	기타
515	이*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번길 9 2**호 (주안동, 동은빌라)	취득세	10	39,541,890	기타
516	주*회* *담*앤*플*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2*, 3**동 3**호 (원곡동, 트리플렉스)	취득세	18	339,341,040	부도폐업
517	주*회* *모*파*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길 2* 1***호 (여의도동)	주민세	2	26,979,230	수취인불명
518	에*아*티*딩*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 3**-1*호 (송정동, 금용빌딩)	법인지방소득세	8	99,419,890	이사불명
519	주*회* *온*설*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번길 9-1**, (남동)	취득세	1	424,712,400	기타
520	(*)*세*도*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 3**호 (군자동, 비전빌딩)	법인지방소득세	8	18,999,580	수취인불명
521	주*회* *올*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 3**호 (송파동)	법인지방소득세	26	40,890,090	수취인불명
522	(*)*엔*테*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 1***호 (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	23,254,310	기타
523	(*)*스*엠*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8-3 4**호 (군자동, 조은빌딩)	지방소득세	12	36,372,690	이사불명
524	유*회* *이*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2*, 5**호 (마곡동, 이너매스마곡Ⅰ)	법인지방소득세	1	183,416,080	수취인불명
525	주*회* *원*이*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4**, 1동 1***호 (오산동, 풍산리치안)	재산세	44	46,583,57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526	강*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길 4* 1층 1**호 (청량리동)	취득세	20	26,078,140	기타
527	이*숙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망능길 7-2 (중원리)	지방소득세	5	22,982,300	기타
528	박*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진골1길 1*-1* (일산동)	지방소득세	12	35,410,600	기타
529	김*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5* 2동 지하 1층 2호 (신월동)	지방소득세	1	17,571,100	기타
530	박*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길 3*-7 지하1층 (북가좌동)	지방소득세	15	23,216,060	기타
531	정*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길 1*-3 (사당동)	지방소득세	2	33,890,150	기타
532	배*봉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2*번길 5 1**호 (덕풍동)	지방소득세	1	21,457,670	기타
533	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 3**동 2**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3단지)	취득세	7	54,167,600	기타
534	정*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번길 1* 1**동 3**호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취득세	6	53,630,350	이사불명
535	정*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 오-2***호 (도화동,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지방소득세	4	48,051,360	기타
536	김*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1* 3**호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아파트)	지방소득세	95	56,376,850	기타
537	김*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9번길 3* (매산로2가)	지방소득세	5	22,418,770	기타
538	이*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 2**동 1***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지방소득세	5	98,569,440	수취인불명
539	김*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번길 1* 1**동 2***호 (식사동, 위시티 일산 휴먼빌 주상복합)	지방소득세	7	22,906,430	기타
540	안*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번길 1* C4**호 (도룡동, 도룡하우스디)	지방소득세	3	16,441,500	기타
541	장*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1** 3**호 (능동)	법인지방소득세	1	12,879,540	기타
542	김*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길 2* (화양동)	취득세	5	33,330,630	기타
543	김*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길 5* 6**호 (화곡동, NS타운)	지방소득세	5	46,213,760	기타
544	강*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 5**동 1***호 (여의도동, 여의도 자이)	지방소득세	1	89,969,370	이사불명
545	박*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북동1길 3 3**호 (장수리, 해오름오피스텔)	지방소득세	9	16,028,400	기타
546	이*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3*번길 1** 나동 2**호 (송죽동, 복지연립)	법인지방소득세	1	29,429,20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547	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2* 2**호 (역삼동, 역삼밸류)	취득세	32	60,630,350	이사불명
548	한*훈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방아다리길 1* 1**호 (읍내리, 정명아파트)	취득세	125	38,546,800	기타
549	정*훈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봉성로 1** (봉성리)	법인지방소득세	1	183,416,080	폐문부재
550	정*탁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2* 1***호 (중산동, 대암파크랜드)	취득세	11	41,887,340	폐문부재
551	(*)*민*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아랫용상2길 1*-1*, (이동교리)	법인지방소득세	2	17,994,600	기타
552	(*)*국*암*화*산*합*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길 5*, 8**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법인지방소득세	7	268,280,940	수취인불명
553	주*회* *은*라*지*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5, 1**동 2**호 (언남동, 스파팰리스리가)	재산세	50	15,602,680	해산간주
554	주*회* *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길 1* 5***호 (용강동, 인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0	101,211,530	부도폐업
555	서*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5 (신수동)	지방소득세	5	38,993,970	기타
556	이*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번길 1** 1**동 1***호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지방소득세	1	16,675,020	폐문부재
557	박*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길 2*-1 (신림동)	지방소득세	3	61,065,220	주소불명
558	J*N*M*N*S*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4*길 7-1 (대림동)	지방소득세	1	28,257,400	주소불명
559	김*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길 8-1* 5**호 (석촌동)	지방소득세	1	113,042,040	기타
560	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2길 1* (홍제동)	지방소득세	2	21,254,800	기타
561	이*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길 2*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2	447,433,110	기타
562	여*운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길 1* (독산동)	법인지방소득세	3	34,045,480	기타
563	이*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6* 2**호 (석남동, 스카이팰리스)	취득세	33	15,382,440	수취인불명
564	정*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나길 1* (공항동)	지방소득세	9	340,785,400	기타
565	이*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3길 2* (대장동)	지방소득세	9	15,970,340	기타
566	한*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길 1* 2층 (불광동)	지방소득세	2	14,270,210	폐문부재
567	이*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길 4* 1**호 (천호동)	지방소득세	2	29,663,15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568	김*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1*길 3* 6**호 (화곡동)	지방소득세	5	18,711,880	기타
569	손*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 2**호 (잠실동)	지방소득세	32	100,953,060	기타
570	정*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 6*-9 (독산동)	법인지방소득세	9	2,710,950,470	이사불명
571	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길 8 (상봉동)	지방소득세	1	75,924,650	기타
572	주*회* *석*즈*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길 2*, 8**-2*호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1차)	법인지방소득세	7	38,025,470	부도폐업
573	주*회* *성*스*티	서울특별 광진구 자양로2*길 8*-8 (구의동)	법인지방소득세	3	19,676,260	기타
574	권*장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태산로 1* (마곡리)	지방소득세	12	195,235,820	주소불명
575	김*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1* 2**호 (목동, 서진빌라)	지방소득세	10	246,361,670	기타
576	이*조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번길 9 8**호 (남부민동, 충무쇼핑맨션)	지방소득세	8	68,895,250	기타
577	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길 7*-8 (역삼동)	지방소득세	2	191,822,490	기타
578	최*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길 6* 7**호 (동선동1가)	지방소득세	4	33,807,330	기타
579	구*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길 4*-1 (구의동)	지방소득세	8	37,430,490	기타
580	배*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번길 4* 나동 2층 2호 (영화동, 동양연립)	지방소득세	1	409,019,860	기타
581	김*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4**호 (삼성동)	법인지방소득세	1	479,917,900	기타
582	김*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길 1* 3**호 (서초동)	지방소득세	3	26,733,490	기타
583	이*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길 1** 1**동 9**호 (사당동, 래미안 로이파크)	지방소득세	6	778,319,250	기타
584	정*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5*길 4* (상봉동)	지방소득세	1	20,542,370	기타
585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 3***동 2**호 (다산동,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지방소득세	5	31,941,060	기타
586	서*규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5길 6* 1**동 2***호 (옥정동, 양주옥정 린파밀리에)	지방소득세	7	61,795,150	수취인불명
587	윤*우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9*-4* (방축리)	지방소득세	3	30,061,970	기타
588	주*회* *영*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길 2*-3, 3**호 (청파동1가)	법인지방소득세	1	457,939,530	부도폐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589	주*회* *윤*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길 1*, 7**호 (역삼동, 닷컴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2	25,351,310	수취인불명
590	주*회* *호*앤*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호 (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지방소득세	11	24,095,390	부도폐업
591	박*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길 6 3**호 (화곡동, 으뜸캐슬)	취득세	3	35,367,840	기타
592	박*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길 1* (상도동)	지방소득세	12	41,563,350	기타
593	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3-1* 3**호 (석촌동)	지방소득세	2	25,159,960	기타
594	김*묵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5* 1**동 4**호 (우면동, 대림아파트)	지방소득세	2	227,415,110	수취인불명
595	이*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1*길 2*-2 5**호 (신월동, 천우진영빌)	지방소득세	4	15,991,450	기타
596	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 5**동 1***호 (자곡동, 강남자곡힐스테이트)	지방소득세	1	29,994,190	기타
597	최*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1* (북아현동)	지방소득세	15	153,373,880	기타
598	김*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나길 5*-1* 나동 2**호 (홍은동, 태성연립)	지방소득세	2	23,780,990	기타
599	선*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길 6-7 (양평동1가)	지방소득세	9	19,543,350	기타
600	조*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번길 8* 2**호 (간석동)	취득세	21	41,201,530	기타
601	배*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6* (화곡동)	지방소득세	24	21,879,490	기타
602	신*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 2**동 2층 2**호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지방소득세	62	67,742,690	기타
603	김*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길 6 3**호 (화곡동, 으뜸캐슬)	취득세	3	35,367,840	기타
604	S*I*D*S*P*U*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 B동 3***호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	지방소득세	1	30,141,160	폐문부재
605	송*옥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번길 6* 1**동 2***호 (의정부동,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지방소득세	2	30,186,140	기타
606	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8* (망원동)	지방소득세	1	31,716,120	기타
607	나*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번길 2*-7 3**호 (영화동)	취득세	19	20,030,960	기타
608	김*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길 6 3**호 (화곡동, 으뜸캐슬)	취득세	3	35,367,840	기타
609	박*윤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번안길 2* 2**호 (감일동)	지방소득세	21	58,671,74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610	박*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1* 2**동 1***호 (월계동, 월계2단지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5	19,611,770	기타
611	오*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가길 3* 4**호 (중계동, 씨앤미)	취득세	2	33,545,740	기타
612	최*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 (양평동4가)	지방소득세	2	28,571,100	주소불명
613	유*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 5층 (원당동)	취득세	13	21,596,400	수취인불명
614	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길 2* 1**동 8**호 (신사동, 로데오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2	21,723,590	수취인불명
615	박*범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 1**동 2***호 (십정동,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지방소득세	1	39,406,950	기타
616	김*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만천4길 4* 3**호 (교동, 근로자아파트)	지방소득세	3	56,194,640	기타
617	강*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 1**동 7**호 (주안동, 포레나미추홀)	지방소득세	6	67,644,540	기타
618	송*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 1**동 1**호 (장현리, 대명아파트)	취득세	1	41,775,830	기타
619	윤*형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1* (윤외리)	취득세	5	16,151,330	폐문부재
620	강*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길 2*-1* 1**호 (독산동, 문정아트빌B동)	지방소득세	8	28,173,520	기타
621	주*회* *그*브*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 비동 2***호(송도동, 송도센트로드)	법인지방소득세	11	48,311,800	폐문부재
622	주*회* *디*이*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3**번길 2*, 5**호 (하길리, 키움프라자)	재산세	61	10,894,440	수취인불명
623	(*)*콘*터*인*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6-9 5**호 (역삼동, 석암빌딩)	법인지방소득세	4	18,001,880	수취인불명
624	주*회* *디*이*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 3**-1*호 (별내동)	취득세	9	1,290,032,204	부도폐업
625	주*회* *리*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1, 2층 2**호(당산동4가)	지방소득세	4	33,698,020	부도폐업
626	주*회* *블*이*씨*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길 1*, 4**호(등촌동, 아벨테크노)	취득세	22	326,826,840	기타
627	(*)*이*이*설*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길 1*, 4**호 (당산동4가, 당산 SK V1 center)	지방소득세	42	779,049,200	기타
628	임*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1* 5**호 (시흥동, 별하우스)	지방소득세	88	33,163,430	기타
629	채*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1 (충무로3가)	지방소득세	13	44,541,620	주소불명
630	이*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 1**동 8**호 (홍은동, 북한산더샵아파트)	주민세	3	32,603,33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631	박*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가길 1* (문래동3가)	지방소득세	4	28,251,170	주소불명
632	김*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 1***호 (화곡동)	취득세	183	60,993,620	기타
633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마길 2*-7 3**호 (등촌동, 정우아파트)	지방소득세	1	14,727,740	기타
634	김*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 5**호 (가락동)	지방소득세	5	31,983,090	수취인불명
635	설*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4*길 1*-6 3**호 (반포동, 화천빌리지)	취득세	6	170,166,280	기타
636	조*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길 5* (홍제동)	지방소득세	5	70,725,260	기타
637	조*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번길 2* (신정동)	취득세	22	49,207,980	기타
638	정*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3길 4*-1* (중화동)	지방소득세	2	66,371,540	기타
639	조*자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1* (가수원동)	취득세	13	26,555,070	기타
640	박*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번길 3 (세류동)	취득세	24	34,898,170	주소불명
641	윤*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2* 1**동 3**호 (상도동, 건영아파트)	지방소득세	5	16,571,430	기타
642	서*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길 3*-1* (제기동)	지방소득세	1	20,717,360	기타
643	배*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 1***호 (삼성동, 청담역 푸르지오시티)	지방소득세	11	2,216,620,450	수취인불명
644	이*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길 1* (대림동)	지방소득세	31	21,091,070	기타
645	손*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6*-5 에이동 3**호 (공항동, 케이앤와이빌리지)	지방소득세	1	45,973,230	기타
646	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1가길 1*-2 B동 1**호 (광장동, 광장빌라)	취득세	1	64,444,400	기타
647	김*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길 2* 1**동 6**호 (신사동, 로데오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4	186,696,880	수취인불명
648	정*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 3**동 1***호 (잠실동, 트리지움)	지방소득세	1	64,318,170	기타
649	신*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7*번안길 1* C동 5**호 (내각리)	취득세	8	17,931,690	기타
650	김*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다길 3* C동 4층 5**호 (목동, 형지그레이스(C동))	지방소득세	36	22,127,030	기타
651	양*권	경상북도 경산시 정림로 1** 2**호 (임당동)	취득세	26	37,844,43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652	이*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길 2* (반포동)	지방소득세	12	20,805,290	기타
653	김*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 3*동 1***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방소득세	1	98,385,110	기타
654	이*영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1** 1**동 2***호 (감이동, 하남감일 제일풍경채)	지방소득세	4	22,362,070	기타
655	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길 3*-8 4**호 (논현동, 쉐누)	지방소득세	5	51,492,370	기타
656	김*철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번길 3* 1**동 2***호 (덕정동, 은동마을)	지방소득세	2	23,008,930	기타
657	이*석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2*-3 (관곡리)	취득세	22	19,666,770	기타
658	최*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 1**동 1***호 (우두리, 돌산1차청솔아파트)	취득세	13	24,053,570	기타
659	W*L*O* *H*L*P*T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 호텔오크우드프리미어 2***호 (삼성동, 호텔오크우드프리미어)	지방소득세	1	35,685,870	수취인불명
660	양*	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2*번길 4* 3**동 2***호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3BL)	취득세	20	44,932,880	기타
661	유*형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3*길 2* 비0*호 (화곡동)	지방소득세	10	26,764,120	기타
662	심*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4길 1* 1**호 (이천리, 삼보아파트)	지방소득세	1	18,285,610	기타
663	백*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5*-7 4**호 (효자동2가)	취득세	19	48,968,040	폐문부재
664	김*정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6*-7 (덕천동)	지방소득세	5	25,918,750	주소불명
665	주*회* *블*아*에*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 8**동 3**호 (송도동, 푸르지오월드마크)	재산세	47	33,600,490	폐문부재
666	주*회* *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길 2*, 4층(역삼동, 더블유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2	21,064,640	수취인불명
667	서*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길 4* (구로동)	지방소득세	8	14,953,980	기타
668	이*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3다길 9-3 1동 4**호 (중화동, 성우스타팰리스)	지방소득세	1	17,334,650	기타
669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길 6 (화곡동)	지방소득세	15	129,794,260	수취인불명
670	C*I*J*A*L*N*	서울 은평구 은평로1*길 7-7, 3**호 (응암동)	지방소득세	2	26,207,780	이사불명
671	송*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 1***호 (공덕동, 마포공덕파크팰리스II)	지방소득세	2	70,399,260	기타
672	강*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3* (제기동)	지방소득세	4	35,078,43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673	김*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번길 2* 2**호 (신촌동)	지방소득세	6	383,056,160	주소불명
674	S*I* *A*O* *O*G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2* 4층 (신사동)	지방소득세	2	90,144,170	수취인불명
675	김*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 (월평리)	지방소득세	3	38,585,170	이사불명
676	강*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지하 1**호 (매산로3가, 금영빌)	지방소득세	3	13,815,630	수취인불명
677	김*	경기도 동두천시 동우로 3* 1**동 2***호 (송내동, 중흥S클래스헤라시티)	지방소득세	7	122,121,950	기타
678	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진목로4*번길 1* 1**동 4**호 (노곡리)	취득세	80	47,638,790	폐문부재
679	이*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 2**동 1***호 (잠원동, 메이플자이2단지)	지방소득세	1	13,945,440	기타
680	남*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7* (미아동)	지방소득세	3	419,140,470	기타
681	유*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가길 5 (체부동)	지방소득세	2	15,152,630	주소불명
682	엄*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길 1**-6 (고척동)	지방소득세	12	23,738,950	기타
683	(*) *이*엔*자*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2*, 3층(신사동)	재산세	2	64,260,370	기타
684	(*)*리*베*트*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 3층 (염창동, 도레미빌딩)	지방소득세	1	36,408,850	이사불명
685	주*회* *좋*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2*, 2층(홍은동, 대광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5	13,580,280	수취인불명
686	(*)*국*자*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 (대방동, 산맥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2	56,080,080	수취인불명
687	주*회* *지*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 3**호 (한남동)	법인지방소득세	19	25,433,720	부도폐업
688	(*)*대*홀*스*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길 1*, 1**-2*호 (서초동, 강남효성해링턴타워)	법인지방소득세	7	308,501,830	수취인불명
689	주*회* *카*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9, 6층(양재동)	지방소득세	11	556,232,270	부도폐업
690	(*)*늘*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번길 4*, 4**호 (합정동)	취득세	4	34,975,770	수취인불명
691	주*회* *티*스*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3**-2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법인지방소득세	3	445,147,660	수취인불명
692	주*회* *풍*프*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 3**호 (신설동, 드림빌리지 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11	32,625,620	이사불명
693	하*에*엔*니*링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3, 1***호 (수유동, 평익타워)	법인지방소득세	5	13,994,010	이사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694	주*회* *이*홀*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 4층(청담동, JS빌딩)	법인지방소득세	4	326,672,960	해산간주
695	아*와*테*(*R*W*N* *E*H*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번길 2* 1**동 5**호 (조원동, 수원한일타운아파트) 노승중 귀하	지방소득세	5	3,169,666,720	기타
696	박*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 (역삼동)	지방소득세	6	66,370,040	기타
697	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2길 2*-2* 2**호 (성산동, 이레성산)	지방소득세	1	16,118,190	기타
698	안*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2* 2**호 (역삼동)	취득세	17	29,051,150	수취인불명
699	유*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1*번길 1* (안양동)	취득세	29	59,627,280	주소불명
700	하*승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길 1* (봉천동)	지방소득세	5	106,394,130	기타
701	김*덕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 1**동 2**호 (천호동, 천호역 마에스트로)	지방소득세	1	27,811,410	기타
702	정*옥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2*번길 3*-4 (교문동)	취득세	5	30,016,220	폐문부재
703	박*종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4*가길 2*-5 1층 (송정동)	취득세	32	44,893,110	수취인불명
704	김*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9가길 5-3 (사당동)	지방소득세	12	25,361,620	기타
705	조*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6*-2* 5**호 (화곡동, 금강파크빌)	취득세	11	23,736,980	수취인불명
706	권*수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영로1**번길 5* (가양리)	취득세	14	38,498,190	기타
707	손*덕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가길 1* (중화동)	지방소득세	2	46,029,360	수취인불명
708	김*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 아크로비스타 C-2***(서초동)	지방소득세	6	2,452,691,460	수취인불명
709	최*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5*번길 6 (고등동)	지방소득세	18	63,564,550	기타
710	변*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 1**동 1***호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지방소득세	6	314,090,750	수취인불명
711	황*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길 1* 4**호 (방학동, 수윤아트빌)	지방소득세	2	17,896,290	기타
712	김*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1길 1* (옥수동)	지방소득세	1	43,233,220	기타
713	배*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길 2* 1**호 (상도동)	지방소득세	4	22,416,850	기타
714	김*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 1**동 1***호 (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지방소득세	5	44,023,16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715	김*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다길 3* 지층0* (동자동, 서광빌리지)	지방소득세	1	30,725,740	폐문부재
716	김*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9* 7**호 (화곡동,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지방소득세	1	10,238,850	기타
717	정*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번길 6-3 에이동 4**호 (가정동, 한국빌라)	취득세	2	44,234,510	기타
718	박*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가길 2* (화곡동)	지방소득세	47	24,397,190	수취인불명
719	장*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 3**호 (금곡동)	지방소득세	9	145,190,820	수취인불명
720	임*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9길 2*-6 (봉천동)	지방소득세	12	36,959,230	기타
721	송*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 1***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6	36,956,910	기타
722	김*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병로1**번길 6-2 2**호 (인덕동)	취득세	20	34,430,750	기타
723	김*철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1**번길 2* 1**호 (회덕동, 명성그린빌라)	취득세	1	30,381,690	폐문부재
724	이*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 1**동 2***호 (신현동, 루원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지방소득세	3	15,711,310	기타
725	백*종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8*번길 3*-2* (경안동)	취득세	21	27,507,260	폐문부재
726	최*원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6* 2***동 1***호 (장현동, 시흥 장현 LH 2*단지)	지방소득세	1	21,348,100	기타
727	송*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번길 1** 2**호 (마산동)	지방소득세	6	101,334,660	폐문부재
728	김*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3* (홍제동)	지방소득세	10	13,850,140	기타
729	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길 1* (화곡동)	지방소득세	1	25,774,210	수취인불명
730	박*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1 (의정부동)	지방소득세	27	17,037,130	기타
731	이*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 2***동 1***호 (장지동, 위례2*단지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	37,263,160	기타
732	주*회* *아*우*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2**, 1**호 (목동)	재산세	31	24,455,300	수취인불명
733	주*회* *우*택*설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3*길 2*, (북가좌동, 1층)	법인지방소득세	1	22,309,640	기타
734	에*라*메*컬*룹*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 3***호 (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법인지방소득세	5	12,678,580	수취인불명
735	주*회* *일*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가길 1*, 1****호 (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법인지방소득세	3	380,213,090	부도폐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736	주*회* *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 2**호 (장안동)	법인지방소득세	4	16,301,920	수취인불명
737	주*회* *꺼*하*징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가길 1*, 2층 (역촌동)	법인지방소득세	35	34,189,490	수취인불명
738	주*회* *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길 6(방이동)	법인지방소득세	3	38,896,170	해산간주
739	주*회* *림*로*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 1***호 (마곡동, 발산W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1	15,566,640	부도폐업
740	한*광*지*주*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길 8-7 (광장동)	취득세	9	239,305,820	수취인불명
741	주*회* *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호 (중림동, 유원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293,328,220	수취인불명
742	변*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7길 2*-1 3**호 (이문동)	지방소득세	5	181,572,370	기타
743	오*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길 3*-1* 3동 1***호 (신사동, 미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	45,369,100	폐문부재
744	소*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길 6* 지층 B0*호 (봉천동, 유엔아이파크빌)	지방소득세	27	25,628,580	기타
745	이*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5* 1**동 9층 9**호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지방소득세	37	72,851,630	기타
746	염*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안산길2번길 2* 2층 (오빈리)	취득세	2	54,914,910	기타
747	신*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길 2*-1* (구의동)	지방소득세	5	64,983,480	기타
748	박*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길 4*-1 (휘경동)	지방소득세	9	38,038,070	기타
749	정*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2 4**호 (구산동, 이정하이츠빌라)	취득세	38	32,005,530	폐문부재
750	박*권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1* 2**동 3**호 (녹양동, 휴먼시아 아파트)	지방소득세	1	121,587,640	기타
751	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1*번길 1* B동 3**호 (장기동, 서경프라임)	지방소득세	41	37,682,000	기타
752	전*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3*번길 1* (남수동)	법인지방소득세	17	180,724,760	기타
753	강*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2*번길 6-9 4**호 (장재리, 미쉘빌)	지방소득세	4	29,372,170	기타
754	김*복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길 1**-1* 4**호 (신정동, 정은SKY빌아파트)	지방소득세	21	136,748,380	기타
755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길 1* 1**동 6**호 (역삼동, 역삼래미안)	법인지방소득세	6	38,901,950	수취인불명
756	김*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2안길 4 (본오동)	법인지방소득세	14	27,559,910	주소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757	최*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번길 5-3 (서현동)	지방소득세	1	198,774,170	기타
758	임*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길 1*-8 (함덕리)	법인지방소득세	2	34,266,070	기타
759	정*익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길 3* 1**동5**호 (우면동, 네이처힐)	지방소득세	2	35,668,820	수취인불명
760	양*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1-1* 2**호 (대조동, 원우빌)	취득세	32	26,154,850	수취인불명
761	전*섭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길 3* (대봉동)	법인지방소득세	5	18,083,870	기타
762	주*회* *자*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길 4*, 5호 (두산동, 한솔타미우스)	법인지방소득세	17	18,662,560	해산간주
763	주*회* *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 1***호 (논현동, 거평타운)	법인지방소득세	3	35,752,670	수취인불명
764	주*회* *인*이*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3*, 1**호 (우산동, 힐링파크)	법인지방소득세	8	178,964,600	부도폐업
765	주*회* *드*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 5**호 (사당동)	법인지방소득세	48	24,108,510	부도폐업
766	주*회* *브*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3*, 3층(조양동)	취득세	7	36,839,780	이사불명
767	주*회* *드*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길 5* 엘에스호 (서초동, 우영빌딩)	지방소득세	26	16,782,280	해산간주
768	주*회* *멘*택*합*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3***호 (가산동, 케이씨씨 웰츠밸리)	법인지방소득세	12	15,790,490	수취인불명
769	주*회* *멘*이*셜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 2층 2**호(성내동, 루멘파이낸스빌딩)	법인지방소득세	9	44,651,330	이사불명
770	주*회*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 2*동 2**호 (한강로2가, 선인상가)	주민세	214	13,481,230	부도폐업
771	주*회* *트*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 이스타빌 1*층에이 1***호 (양재동)	법인지방소득세	4	38,057,960	수취인불명
772	주*회* *본*터*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길 1*, (도곡동, 영신빌딩)	법인지방소득세	4	160,589,670	해산간주
773	오*역*역*택*합*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9* 5**호	취득세	34	95,881,400	수취인불명
774	주*회* *빙*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 5**호 (신곡리, 엔타운)	재산세	87	11,911,520	부도폐업
775	유*회* *더*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전자로 1*, 1**-1호 (석우동, 프리언스 오피스텔)	취득세	19	191,026,650	기타
776	주*회* *얼*마*팅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번길 4*, 6층 6호 (중촌동, 중도상가)	지방소득세	17	13,897,980	기타
777	이*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6* (녹번동)	지방소득세	2	149,454,93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778	현*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 1**동 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4	97,675,950	수취인불명
779	N*M*J*N* *K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9* 에이동 2**호 (서초동, 경성연립)	지방소득세	1	17,296,090	기타
780	장*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3** 에이동 1층 1**호 (화지리, 화인빌라)	취득세	3	28,592,180	폐문부재
781	백*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길 4*-3 (예장동)	지방소득세	8	29,296,760	기타
782	조*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 (장안동)	지방소득세	1	59,951,660	주소불명
783	양*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가길 2* (화곡동)	지방소득세	1	35,202,170	주소불명
784	이*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길 1* (개봉동, 영화아파트)	취득세	9	38,876,720	주소불명
785	오*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6*길 8-2 (상도동)	지방소득세	41	39,105,400	기타
786	신*주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8*번길 1* 2**호 (신정동)	취득세	20	19,603,950	기타
787	전*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다길 1*-9 1**호 (오류동)	지방소득세	8	89,046,270	기타
788	서*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4**-6* 3**동 1***호 (영등동, 부영아파트)	지방소득세	10	58,729,810	폐문부재
789	양*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길 6*-1* (면목동)	취득세	13	36,007,920	기타
790	오*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길 1* 4층 씨4호 (서초동, 티에스프리우스아파트)	지방소득세	2	162,117,250	기타
791	정*자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3* 7**동 1*층 1***호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지방소득세	8	15,360,580	폐문부재
792	정*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길 3*-8 (불광동)	취득세	11	29,999,180	수취인불명
793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2*길 2*-4 (전농동)	지방소득세	15	24,512,190	기타
794	박*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5*길 3-1 (신월동)	지방소득세	2	25,794,120	기타
795	정*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 (독산동)	법인지방소득세	6	198,503,750	주소불명
796	정*애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3* 1**동 3**호 (덕풍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취득세	1	19,194,140	기타
797	이*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길 1* B동 3**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6	18,354,200	수취인불명
798	박*복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4* 2**호 (연수동)	취득세	12	45,799,78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799	전*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길 1** 1**동 1***호 (이문동, 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4	41,681,440	기타
800	정*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 (고양동)	취득세	1	19,194,140	수취인불명
801	정*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1**번길 3* D동 4**호 (역곡동, 예원아파트)	지방소득세	11	14,083,480	기타
802	이*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길 6-1* (방학동)	지방소득세	1	35,593,580	기타
803	유*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 5**동 8**호 (공덕동, 래미안 공덕5차아파트)	지방소득세	7	16,098,290	이사불명
804	안*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 나동 2**호 (가정동, 청솔빌라)	지방소득세	4	18,019,040	기타
805	안*민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번길 1** 1***호 (의정부동, 시민아파트)	지방소득세	1	21,427,290	기타
806	문*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2*가길 2* 2**호 (마천동, 목화맨션)	법인지방소득세	1	35,143,270	기타
807	류*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 (가능동)	지방소득세	12	28,939,280	기타
808	P*S*C*A*E*S*N*A*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길 1* 1**동 2***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지방소득세	1	21,985,970	수취인불명
809	권*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길 2* 7**동 3**호 (하계동, 청솔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6	53,400,630	기타
810	명*정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7* 1**동 7**호 (가정동, 루원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지방소득세	1	36,401,250	기타
811	주*회* *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길 6*, 2층(율현동, 엔투셀빌딩)	재산세	4	41,753,390	수취인불명
812	(*)*엘*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 9**호 (성수동1가, SK테크노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9	40,642,170	수취인불명
813	주*회* *가*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길 5*, 2**-1*호 (방이동, 현대주상복합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3	18,139,620	부도폐업
814	주*회* *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 8**호 (역삼동, 남전빌딩)	지방소득세	33	25,887,940	수취인불명
815	주*회* *크*파*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2*, 4층 엘에스0*호(역삼동, 벤처빌딩)	법인지방소득세	6	90,103,210	수취인불명
816	주*회* *스*디*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길 4*, 1**호 (서초동, ENDEAVOR TOWER)	법인지방소득세	9	12,852,630	수취인불명
817	나*엔*프*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4**, 1동 6**호 (금곡동, 풍산리치안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1	201,947,030	기타
818	최*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길 4* 8**호 (대치동, 대치동대우아이빌멤버스)	지방소득세	1	12,535,960	기타
819	심*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 다동 (성북동)	재산세	7	39,219,92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820	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4* 7**동 6**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지방소득세	9	53,405,510	폐문부재
821	김*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8*길 1*-5 (망우동)	지방소득세	7	17,250,880	기타
822	고*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1*길 1* B0*호 (신월동)	지방소득세	3	18,853,720	기타
823	구*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5**번길 2*-1 (장선리)	지방소득세	29	22,114,910	폐문부재
824	김*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7길 3*-1 B0*호 (신월동)	지방소득세	1	24,096,900	기타
825	윤*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길 2*-2* 2**호 (방배동, 로얄빌리지)	지방소득세	1	64,671,650	수취거절
826	박*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C-8**호 (문정동, 송파한화오벨리스크)	지방소득세	2	40,679,520	기타
827	서*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9*-2 (매향동)	취득세	57	31,169,300	기타
828	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길 2*-8 4**호 (송파동, 디에이치)	지방소득세	4	26,866,660	기타
829	김*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3*번길 1*-1* 2**호 (구월동)	취득세	16	21,865,800	기타
830	이*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 1**동 6**호 (대치동, 롯데캐슬리베)	지방소득세	1	329,189,960	수취인불명
831	P*R* *W*Y*U*G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길 3* 3층 (자양동)	지방소득세	1	32,076,140	기타
832	박*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나길 1* (시흥동)	지방소득세	64	18,055,250	기타
833	남*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3길 9 (강림리)	취득세	20	24,436,340	기타
834	이*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라길 3* 1**동 1***호 (마포동, 마포쌍용황금아파트)	지방소득세	1	14,474,030	기타
835	서*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8길 1* 1**호 (남가좌동)	지방소득세	1	15,630,350	기타
836	나*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4* 2**동 1***호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지방소득세	9	18,877,490	기타
837	박*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가길 1*-8 4**호 (도봉동, 천우빌라)	지방소득세	6	17,235,610	이사불명
838	진*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길 1*-4 (한강로2가)	지방소득세	30	87,102,140	폐문부재
839	손*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2**번길 7-1* (태평동)	지방소득세	13	53,111,430	기타
840	김*엽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8길 1* (정릉동)	지방소득세	3	13,492,340	주소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841	이*재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3* (합정동)	취득세	14	31,157,240	주소불명
842	김*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 1**동 7**호 (연수동, 유천아파트)	취득세	5	15,264,830	폐문부재
843	허*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길 4* 3**호 (암사동, 작은도시노마드)	지방소득세	1	28,051,750	기타
844	정*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2*다길 2* (용두동)	지방소득세	8	17,192,290	기타
845	심*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 (성북동)	지방소득세	2	45,710,740	수취인불명
846	김*곤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7번길 6-1 (부원동)	지방소득세	2	13,639,880	폐문부재
847	이*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1* 6**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1	28,759,920	기타
848	최*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 5**호 (마전동)	법인지방소득세	4	21,187,120	기타
849	안*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7 1동 3**호 (온수동, 성원빌라)	지방소득세	1	12,293,250	기타
850	신*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6*번길 2*-1 (초읍동)	취득세	14	41,531,630	기타
851	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길 2* 3**동 2**호 (신월동, 이스트힐)	지방소득세	2	12,936,830	기타
852	김*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길 1* 2**호 (상도동, 수정아파트)	지방소득세	3	22,971,960	기타
853	이*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7 5**호 (오금동, 랜드파크빌)	지방소득세	19	14,016,740	기타
854	장*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길 5* B동 1**호 (방배동, 방배아크빌)	지방소득세	1	49,168,550	기타
855	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7 2**호 (도림동)	지방소득세	1	24,330,910	기타
856	이*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 1**동 1***호 (가락동, 헬리오시티)	지방소득세	4	16,609,670	이사불명
857	정*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6* 1***동 7**호 (운중동, 산운마을1*단지 판교 포레라움아파트)	지방소득세	1	16,413,960	수취인불명
858	김*현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번길 2* (초이동)	지방소득세	12	28,666,760	기타
859	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길 1* 1**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1	13,474,180	수취인불명
860	이*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1*번길 5* 2**호 (장대동, 우정빌)	지방소득세	5	14,006,580	기타
861	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길 1* 1**동 1***호 (청담동, 청담자이아파트)	지방소득세	15	33,620,69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새액(원)	공시송달사유
862	서*리*파*너*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르호봇교대센터 1비-1**호(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법인지방소득세	15	58,224,270	수취인불명
863	주*회* *네*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 3**, (고암동)	재산세	185	33,636,920	수취인불명
864	에*제*앤*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 (응암동)	취득세	10	150,764,270	이사불명
865	지*시* *한*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길 1*, 2층(역삼동)	지방소득세	5	71,760,770	기타
866	주*회* *우*축*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길 2* , 1층(신정동)	법인지방소득세	8	19,058,850	수취인불명
867	세*연*주*재*촉*비*업*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길 4*, 5**호 (등촌동, 청림오피스텔)	취득세	1	773,290,890	이사불명
868	(*)*라*트*통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 1**호 (상계동, 한라마트)	법인지방소득세	10	13,925,280	수취인불명
869	김*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길 7*-6 (면목동)	지방소득세	3	23,345,890	기타
870	송*기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9** 2**동 1**호 (내동, 서우아파트)	취득세	12	29,659,300	기타
871	김*용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 1동 1*층 1***호 (달동)	지방소득세	1	14,346,850	기타
872	이*봉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9* 2**동 3**호 (우면동, 서초힐스)	지방소득세	5	26,924,930	기타
873	정*자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2로2*번길 5* 1**동 7**호 (옥암동, 모아엘가)	지방소득세	2	43,234,550	기타
874	정*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2*길 2*-5 1층 2호 (불광동)	지방소득세	1	30,237,270	폐문부재
875	정*윤	경기도 파주시 번뛰기길 5* 2동 3**호 (야당동)	취득세	15	24,139,060	기타
876	강*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번길 2* (금광동)	취득세	14	40,938,430	기타
877	전*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5가길 1* (종암동)	취득세	13	33,943,220	기타
878	김*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7-8 1**호 (신월동)	지방소득세	52	18,587,020	기타
879	김*옥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6*번길 8-1 (신정동)	취득세	17	35,584,560	기타
880	김*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길 1* 8**호 (영등포동5가, 더봄)	취득세	2	13,795,740	수취인불명
881	김*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길 6* 1***호 (천호동, 두산위브센티움)	지방소득세	6	23,970,420	기타
882	장*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2* 1**동 1**호 (번암리, 주공아파트)	취득세	49	34,674,65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883	변*식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6*번길 4* 3**호 (탄방동, 천지빌라)	취득세	18	43,133,250	기타
884	김*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2*번길 3-1 (양지동)	취득세	15	36,499,340	기타
885	최*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7길 1*-1 2**호 (풍납동)	지방소득세	6	21,111,360	기타
886	유*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7*길 5 (신길동)	지방소득세	3	125,256,280	주소불명
887	신*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 1**동 1***호 (돈암동, 브라운스톤 돈암아파트)	지방소득세	1	45,263,450	기타
888	장*희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1*-6 2**호 (정왕동)	취득세	40	26,279,220	기타
889	조*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6 (쌍문동)	지방소득세	5	39,211,900	기타
890	오*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가길 1*-7 5**호 (구로동)	취득세	10	21,402,080	기타
891	유*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3**-1 (도창리)	지방소득세	1	36,310,460	폐문부재
892	정*영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 1**동 1*층 1***호 (용전리, 충주시티자이)	지방소득세	1	16,410,630	폐문부재
893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6*번길 4*-3 2**호 (만수동)	지방소득세	2	28,147,320	기타
894	오*륜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번길 2* 9**호 (의정부동, 수아하우스)	취득세	13	46,045,740	기타
895	인*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4 (양재동)	지방소득세	3	20,284,020	기타
896	김*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길 1**-1** (세동리)	지방소득세	3	113,086,720	이사불명
897	김*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 1**동 1***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지방소득세	2	191,937,380	기타
898	이*롱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길 2*-4* 2층 2**호 (갈현동, N-갤러리아빌)	지방소득세	7	17,426,260	폐문부재
899	노*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번길 1* 1**동 1***호 (경서동, 북청라하우스토리)	취득세	68	31,738,130	기타
900	정*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 1***호 (서초동, 서초동대우디오빌프라임)	지방소득세	2	73,421,550	수취인불명
901	신*호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번길 3*-1 (가능동)	지방소득세	2	15,807,200	기타
902	김*희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2*번길 6 2층 (대야동)	지방소득세	4	17,401,360	기타
903	윤*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2* 2**동 3**호 (도봉동, 도봉투웨니퍼스트)	지방소득세	5	65,611,90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904	(*)*곰*디*솔*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 1***-0*호 (마곡동, 7**타워)	지방소득세	3	175,260,550	수취인불명
905	(*)*일*파*너*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3*길 1*, (오류동)	법인지방소득세	7	30,597,950	기타
906	유*회* **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 1***호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5차)	법인지방소득세	1	176,929,660	수취인불명
907	오*드*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 1**호 (가양동, 오성드림)	취득세	1	347,482,000	기타
908	아*콘*운*이*(*C*N*F*u*d*t*o*)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6	12,883,545,590	수취인불명
909	허*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가길 4*-1 (구로동)	지방소득세	2	262,412,560	기타
910	김*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길 1*-5 B0*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11	62,450,860	기타
911	강*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길 6* 비0*호 (화곡동)	지방소득세	2	33,846,150	기타
912	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1*길 4* 4**호 (관철동)	지방소득세	8	22,793,820	기타
913	주*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길 3*-1* (장위동)	지방소득세	8	173,387,700	기타
914	노*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길 1*-6 (사당동)	지방소득세	2	213,474,120	기타
915	박*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6*길 2*-5 (수유동)	취득세	53	29,770,260	기타
916	서*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4*-1* (녹번동, 지층)	법인지방소득세	5	73,717,320	폐문부재
917	박*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1*나길 2* 3**호 (사근동)	지방소득세	2	39,484,590	이사불명
918	성*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휘경동)	지방소득세	1	28,484,390	수취인불명
919	노*욱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 1*층 1***호 (흥인동, 흥화브라운)	지방소득세	5	51,091,710	기타
920	정*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가길 4*-8 (개봉동)	지방소득세	2	23,802,070	기타
921	박*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길 2* (청량리동)	지방소득세	3	614,866,780	기타
922	선*형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3*길 6-7 (미아동)	지방소득세	9	58,134,840	기타
923	신*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2*길 1** (전농동)	지방소득세	2	15,891,810	기타
924	고*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길 1*-4 (면목동)	지방소득세	1	32,360,51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925	박*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6*-1 (옥인동)	지방소득세	12	179,497,990	수취인불명
926	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길 6* B1**호 (반포동)	지방소득세	5	16,249,350	이사불명
927	이*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8-2 (신월동)	지방소득세	1	45,652,610	주소불명
928	김*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번길 9 (심곡동)	법인지방소득세	8	135,847,410	기타
929	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길 6 2**호 (신월동)	지방소득세	1	22,159,210	기타
930	정*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중앙로2**번길 2* 4**호 (중산동)	지방소득세	1	19,224,200	폐문부재
931	문*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길 1* (신길동)	지방소득세	5	36,642,890	기타
932	Z*A*G*Z*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길 4 1**호 (대림동)	지방소득세	12	126,725,800	기타
933	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길 2* 4**호 (노고산동, 에피소드 신촌 3**)	지방소득세	40	46,588,680	수취인불명
934	김*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가길 8 (연희동)	지방소득세	6	13,340,230	기타
935	김*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 1**동 2***호 (신림동, 신림푸르지오아파트)	취득세	7	17,371,430	기타
936	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 (대림동)	지방소득세	12	34,292,120	수취인불명
937	손*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9* 7**호 (당산동, 리버뷰)	지방소득세	12	12,111,720	수취인불명
938	판*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 1***호 (남창동)	지방소득세	23	25,051,040	수취인불명
939	(*)*성*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7*, 1동 1***호 (서초동, LG서초에클라트)	법인지방소득세	17	15,061,910	기타
940	(*)*포*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길 1*, 경성하이츠빌 비0*호 (군자동)	재산세	52	10,802,360	이사불명
941	(*)*방*엔*니*링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 1***호 (가산동, 코오롱테크노밸리)	법인지방소득세	55	11,832,570	수취인불명
942	제*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2*, 1***호 (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2차)	법인지방소득세	15	12,725,160	기타
943	대*통*훼*리*트*대*굳*굳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길 6*, A1*호 (서초동, 국제빌딩)	지방소득세	12	13,011,040	수취인불명
944	(*)*디*프*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 1*층(충무로2가, 신일빌딩)	지방소득세	11	20,148,770	이사불명
945	인*스*아*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 (논현동, 강남빌딩)	재산세	4	55,843,89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946	주*회*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1*, 3**호 (논현동, 정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6	47,907,490	해산간주
947	(*)*상*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 3**호 (삼성동, 학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14,890,050	기타
948	(*)*스*프*인*내*널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7**, 3**호 (신내동)	등록면허세	4	47,895,580	기타
949	(*)*이*스*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 제9**호 (삼성동, 원일빌딩)	재산세	76	25,849,200	기타
950	제*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7*길 4*, 4**호 (번동)	법인지방소득세	42	13,262,090	수취인불명
951	주*회* *디*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 1층 다1**호(망월동,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법인지방소득세	1	29,351,800	기타
952	주*회* *어*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 오피스브이 8**호(고잔동, 중앙노블레스)	재산세	8	12,144,880	수취인불명
953	주*회* *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16	133,816,150	부도폐업
954	(*)*안*업*발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4*, 2층 (신월동)	재산세	122	27,132,550	이사불명
955	주*회* *비*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 에스 3**(신촌동, 미군부대내)	법인지방소득세	6	17,929,460	수취인불명
956	(*)*링*1*8*한*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 5**호 (군자동, 한창빌딩)	법인지방소득세	7	14,691,270	수취인불명
957	주*회* *에*디*(*S* *O* *I*)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 6층 6**-에이1*호(가락동, 백암빌딩)	지방소득세	20	35,648,900	기타
958	환*스*하*징*리*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6*, 4층 2*호 (방배동, 용진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1	10,253,000	수취인불명
959	주*회* *에*테*닉*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7**호 (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법인지방소득세	9	792,624,230	부도폐업
960	주*회* *엘*이*스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 (봉래동1가, 우남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75,738,890	해산간주
961	(*)*익*설*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9, 1동 3**호 (신곡리, 라르오피스텔)	재산세	100	83,880,820	폐문부재
962	주*회* *오*이*수*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 2층 2**호(논현동, 마일스디오빌)	법인지방소득세	4	162,438,770	수취인불명
963	주*회* *즈*글*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다길 3*-2*, B0*호 (목동)	법인지방소득세	8	15,910,310	부도폐업
964	주*회* *플*닛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6, 브이7*호 (삼성동, 제이에스타워)	지방소득세	13	68,382,620	부도폐업
965	(*)*노*셋*니*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길 6-1*, 2**호 (갈현동)	재산세	59	11,314,670	이사불명
966	주*회* *애*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 지동 1***호 (숭인동, 롯데캐슬 천지인)	법인지방소득세	2	34,266,07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967	주*회* *피*엔*테*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 4층(문정동)	법인지방소득세	11	49,593,130	이사불명
968	주*회* *피*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 6-1 (증산동)	법인지방소득세	1	20,231,170	폐문부재
969	고*의*전*허*종*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길 5, 6**호 (성수동2가, 제일전자공장)	법인지방소득세	17	12,970,430	이사불명
970	주*회* *성*잔*영*(*천*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 (고잔동)	재산세	54	14,153,450	주소불명
971	주*회* *원*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길 5*-3, 4층 2호(서초동, 산도스에스 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	15,679,260	기타
972	(*)*성*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길 1*-6, 에이동 1**호 (구산동, 파크원)	취득세	33	24,935,460	폐문부재
973	주*회* *원*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길 7, 2층(삼성동)	법인지방소득세	3	23,749,000	부도폐업
974	주*회* *호*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 에이동 나9-1호 (용답동)	취득세	38	38,336,660	기타
975	(*)*산*이*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 1**호 (가산동, 에이스가산타워)	재산세	73	45,720,180	수취인불명
976	어*빌*지*촌*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 3층(역삼동, 세일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1	17,102,650	이사불명
977	(*)*앤*에*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2*, 3**호 (두정동, 석정빌딩)	재산세	19	17,690,260	기타
978	성*파*너*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4*번길 4*-2*, (고읍동)	재산세	48	45,222,140	기타
979	주*회* *안*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6, A동 2**호 (대조동, 모아아파트(A동))	재산세	38	17,944,980	해산간주
980	주*회*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길 1**, 에이1*호 (반포동, 대솔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402,614,210	부도폐업
981	암*한*지*주*조* *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 3층 (능동)	법인지방소득세	127	26,483,090	수취인불명
982	주*회* *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 태암빌딩 4**호(역삼동)	법인지방소득세	4	16,714,790	해산간주
983	주*회* *고	경기도 광주시 신현로 4*, 3층(신현동)	재산세	23	40,951,900	수취인불명
984	주*회* *아*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길 1*, 1**-2*호 (서초동, 강남효성해링턴타워)	법인지방소득세	4	71,303,580	해산간주
985	주*회* *마*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길 1*, 3**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법인지방소득세	3	23,099,390	부도폐업
986	주*회* *타*엔*테*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 5**호(문정동, 르피에드문정)	지방소득세	30	16,813,500	부도폐업
987	주*회* *탁*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길 1*, 5**호(역삼동, 수양빌딩)	지방소득세	11	46,182,310	부도폐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988	(*)*리*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 A동 4**-5호 (평창동, 글로리아타운)	지방소득세	19	13,115,270	기타
989	주*회* *페*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8*-5, 에프-0*호 (연희동, 평화빌딩)	법인지방소득세	6	20,952,640	기타
990	(*)*아*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4*번길 1*, 2층 (읍내리, 프리안아파트)	재산세	39	14,296,740	기타
991	주*회* *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 5**호 (대치동)	법인지방소득세	12	43,944,450	수취인불명
992	주*회* *더*이*랫*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 1**동 1***호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법인지방소득세	4	555,185,760	수취인불명
993	㈜*흥*디*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 오피스에비뉴 비0*호 (고잔동)	재산세	352	234,012,260	수취인불명
994	(*)*스*개*제*1*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9*번길 6-1, (학하동)	재산세	6	218,114,910	기타
995	(*)*하*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 3층 1*호 (역북동)	재산세	4	51,640,320	기타
996	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 (신정동)	재산세	61	28,356,450	기타
997	(*)*이*이*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6, 3층 (방배동, 부림빌딩)	지방소득세	2	11,637,970	수취인불명
998	주*회*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 (등촌동, 그레이스힐)	법인지방소득세	2	447,910,780	부도폐업
999	지*이*설*주*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 2층 (송정동)	재산세	13	15,866,930	폐문부재
1000	부*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7*번길 2, 2**호 (영덕동, 가은프라자)	재산세	16	11,239,860	수취인불명
1001	주*회*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길 3*, (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2	447,433,110	부도폐업
1002	주*회* *성*엔*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길 5*, 6층 6***호(역삼동, 일환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22,698,820	수취인불명
1003	(*)*비*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번길 1*-1, 4****호 (구갈동, 인텔존)	재산세	2	13,804,690	수취인불명
1004	엠*럭*파*너* *한*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3*, 3층 (영덕동)	재산세	6	20,281,030	수취인불명
1005	주*회* *앤*파*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8, 2**호 (반곡동)	재산세	26	133,649,010	기타
1006	(*)*이*슈*인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공단로 2**, 3**호 (구문천리)	재산세	34	22,652,140	기타
1007	주*회* *플*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길 4*, 5**호 (염리동, 하나프라자)	법인지방소득세	5	2,168,620,780	부도폐업
1008	주*회* *엔*정*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 8**호 (역삼동, 현죽빌딩)	법인지방소득세	5	27,123,55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009	주*회* *람*업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하가등길 7*, (하가등리)	재산세	30	16,710,620	수취인불명
1010	주*회* *르*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길 3*, 비0*호 (논현동, 양지직매상가)	취득세	14	69,886,320	기타
1011	주*회* *이*애*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1*, 4층(신사동, 예광빌딩)	법인지방소득세	5	13,437,770	해산간주
1012	(*)*코*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5*번길 3*, 제 D동 2**호 (고잔동)	재산세	9	30,488,730	수취인불명
1013	명*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 2층 (하대원동)	등록면허세	33	17,398,730	기타
1014	(*)*른*택*합*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 5**호 (성내동, 루멘파이낸스빌딩)	재산세	17	32,071,620	이사불명
1015	유*회* *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 3**호 (월계동, 첨단 센츄럴빌딩)	재산세	457	281,437,680	수취인불명
1016	주*회* *크*디*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 중심상가1동 2**-3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지방소득세	9	14,336,700	기타
1017	주*회* *성*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길 5*, 지하1층 (마장동)	법인지방소득세	4	17,242,970	부도폐업
1018	주*회* *브*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 제에이동 1***호 (대치동, 샹제리제센터)	지방소득세	40	13,639,640	수취인불명
1019	씨*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3*번길 6, 4**호 (소사본동, G.에브리)	법인지방소득세	19	14,909,170	수취인불명
1020	주*회* *유*퍼*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 3층(양재동)	법인지방소득세	8	117,698,690	청산종결
1021	(*)*온*더*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 2**동 2**호 (거여동)	법인지방소득세	8	14,621,560	수취인불명
1022	주*회* *스*토*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번길 2*, (호평동, 예담빌딩)	취득세	5	79,773,640	기타
1023	주*회* *지*택*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길 4*, 5**C-6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취득세	9	94,197,400	수취인불명
1024	(*)*즐*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8**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차)	법인지방소득세	13	15,506,770	이사불명
1025	윤*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1 2층 (수곡동)	지방소득세	91	21,598,090	수취인불명
1026	김*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번길 7* 9**호 (오정동, 효행복마을아파트)	지방소득세	4	10,443,440	기타
1027	박*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흥말길 1**-4 (내곡동)	재산세	2	66,425,740	기타
1028	홍*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길 2* (방화동)	주민세	49	16,230,370	기타
1029	최*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 2**동 6**호 (연제동, 한국아델리움)	재산세	9	15,588,77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030	윤*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5* 1**동 3**호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재산세	15	28,138,210	이사불명
1031	강*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8*-3* B동 5**호 (일영리, 네츄럴시티)	취득세	70	12,878,180	폐문부재
1032	정*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길 5* (신당동)	재산세	18	47,053,620	기타
1033	황*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가길 1* 1**호 (방학동, 두산그린빌라)	재산세	10	14,206,660	기타
1034	조*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 3*동 1***호 (월계동, 아파트)	지방소득세	12	14,320,200	기타
1035	박*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9*-9 3**동 7**호 (모현동1가, 3차현대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39	28,540,540	폐문부재
1036	최*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번길 2*-1* 6**호 (다산동, 다산 중앙하이츠 파크)	지방소득세	13	13,181,950	기타
1037	변*욱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길 1* 2**호 (명륜2가, 오원빌라)	지방소득세	8	16,898,300	기타
1038	이*자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4* 2**동 9**호 (풍무동, 양도마을)	재산세	3	16,440,520	폐문부재
1039	서*선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법구지2길 1* (율곡리)	재산세	192	54,702,630	기타
1040	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 (석촌동)	재산세	14	17,805,840	기타
1041	안*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길 4* 지0*호 (구의동)	지방소득세	2	11,458,390	기타
1042	김*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5길 3*-3 (오지리)	지방소득세	33	14,499,400	폐문부재
1043	한*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길 1*-1 (당산동3가)	지방소득세	8	15,838,790	주소불명
1044	윤*완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4* (월계동)	취득세	9	38,581,120	기타
1045	전*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6*-5 1**호 (화곡동, 삼원빌라)	법인지방소득세	61	21,143,450	기타
1046	송*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2*-3 (진북동)	자동차세	81	13,797,410	폐문부재
1047	김*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 1**동 1**호 (홍은동, 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250	14,297,710	기타
1048	김*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2**번길 2*-1* 4**호 (도당동, 채안하우스)	지방소득세	31	15,625,830	기타
1049	임*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가길 3* 지층1** (시흥동)	지방소득세	14	14,257,700	기타
1050	조*자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1*번길 9*-1* (감정동)	재산세	6	18,709,25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051	나*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7* 6**호 (홍은동, 브엘세바빌딩)	재산세	48	17,300,540	기타
1052	김*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8* 1**호 (필동3가)	지방소득세	12	17,274,030	기타
1053	박*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2* 7**호 (도촌동)	지방소득세	52	26,597,970	기타
1054	이*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길 1* (개봉동)	지방소득세	32	21,285,110	주소불명
1055	한*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번길 2* 8**호 (주안동)	등록면허세	11	15,465,450	기타
1056	배*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 B동 1**호 (광희동2가)	지방소득세	46	15,793,590	수취인불명
1057	박*평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 1**동 1***호 (오류동, 예성 라온팰리스)	지방소득세	40	11,632,660	기타
1058	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길 2* 5**동 1***호 (번동, 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18	17,668,260	기타
1059	황*규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우무골길 1* (덕천리)	지방소득세	51	23,126,310	기타
1060	이*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길 2*-1 4**호 (석관동)	지방소득세	22	15,655,560	기타
1061	최*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번길 4* (부평동)	지방소득세	63	17,811,400	주소불명
1062	박*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가길 4* 3층 3**호 (용산동2가)	재산세	9	33,496,540	폐문부재
1063	정*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길 1* (문정동)	지방소득세	43	13,186,860	주소불명
1064	이*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길 3-1* 1**호 (신림동)	재산세	23	22,195,290	수취인불명
1065	이*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용주로3*번길 6* 1**호 (송산동)	지방소득세	44	14,575,490	기타
1066	최*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6*번길 5*-2* 1동 1**호 (학익동, 두한빌라)	재산세	5	40,176,290	기타
1067	이*진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2* 2**동 1***호 (소사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법인지방소득세	15	16,418,210	기타
1068	손*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길 2*-1* 3**호 (석촌동)	지방소득세	25	14,296,240	수취인불명
1069	양*진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번길 4*-1 1**호 (가능동)	지방소득세	8	15,607,660	기타
1070	옥*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8*-1 B동 2**호 (부평동, 반석아인스힐)	취득세	90	13,641,590	수취인불명
1071	안*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길 2*-7 1**호 (구로동)	지방소득세	20	20,194,46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072	이*섭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 B동 1**호 (선단동)	지방소득세	53	12,319,740	기타
1073	이*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2*다길 1* (전농동)	지방소득세	29	21,149,740	기타
1074	신*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5* 1동 5**호 (도봉동, 유원도봉아파트)	지방소득세	56	14,381,570	수취인불명
1075	강*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 2***호 (봉천동, 프라비다엠)	지방소득세	49	17,185,240	기타
1076	이*희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3* 2**호 (태화동, 태화강 서린아파트)	취득세	10	18,256,770	기타
1077	이*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길 3*-5 3**호 (서계동)	지방소득세	48	15,587,940	폐문부재
1078	허*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1* 1**동 1***호 (동백동, 동원마을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지방소득세	21	12,957,160	수취인불명
1079	노*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길 3*-1* (신림동)	지방소득세	10	11,519,780	기타
1080	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3*길 1*-3 (만촌동)	취득세	68	61,533,260	기타
1081	고*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길 1* (서초동)	재산세	25	28,376,170	이사불명
1082	김*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길 3* B0*호 (방학동)	지방소득세	28	17,256,790	기타
1083	이*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길 4* 2**호 (구로동)	재산세	2	15,199,850	기타
1084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길 5-9 (역촌동)	지방소득세	17	38,585,010	폐문부재
1085	최*학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기막길2*번길 1* 1동 1**호 (신복리)	지방소득세	31	31,465,270	폐문부재
1086	이*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길 4*-2 1**호 (장안동)	지방소득세	13	18,496,100	기타
1087	이*석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1	취득세	36	14,101,910	폐문부재
1088	유*철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5*번길 4* 1**동 9**호 (감정동, 쌍용아파트)	자동차세	34	13,815,990	폐문부재
1089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길 6 1**동 9**호 (논현동, 동부센트레빌)	재산세	14	11,881,550	수취인불명
1090	조*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번길 3*-5 2**호 (우만동)	지방소득세	34	15,161,960	기타
1091	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3*길 4* (쌍문동)	지방소득세	12	12,980,120	기타
1092	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길 2* (군자동)	재산세	6	15,145,97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093	김*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2*길 4-3 (용두동)	지방소득세	13	13,893,290	기타
1094	박*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길 1*-3 (독산동)	지방소득세	12	13,331,820	기타
1095	양*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길 6* 1동 5**호 (구로동, 미주프라자)	주민세	107	12,296,890	기타
1096	서*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7*-1* 2**동 1**호 (대쌍령리, 럭키아트힐)	재산세	11	34,966,510	폐문부재
1097	김*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3* 2**호 (도봉동)	지방소득세	24	17,251,220	기타
1098	김*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 (남영동)	지방소득세	20	16,819,270	주소불명
1099	김*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8* 1**동 1***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지방소득세	8	15,595,150	이사불명
1100	이*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7길 7 (창신동)	지방소득세	5	14,354,680	주소불명
1101	박*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3길 1* 1**동 1***호 (신림동, 신림동부센트레빌)	지방소득세	57	12,239,070	기타
1102	이*협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6* (방학동)	지방소득세	25	20,969,430	기타
1103	김*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길 1*-8 (면목동)	지방소득세	6	12,671,720	수취인불명
1104	여*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1* (상판리)	취득세	57	19,965,320	이사불명
1105	이*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4** 4**호 (강일동, 강일리슈빌에스)	지방소득세	12	18,192,400	기타
1106	김*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다길 4*-2* 4**호 (종암동, 천우네오젠)	지방소득세	12	18,510,280	기타
1107	조*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7**번길 3* 1**동 1**호 (고매동, 메종블루아)	재산세	11	15,464,550	기타
1108	이*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번길 2* 2**동 1***호 (만수동, 영풍아파트)	지방소득세	13	18,679,540	기타
1109	김*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6길 1*-1* 1**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7	12,245,660	기타
1110	차*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5길 2* 1**동 4**호 (월계동,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7	13,529,950	기타
1111	김*용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4길 4* 2**동 1***호 (중림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지방소득세	4	19,249,550	기타
1112	양*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8길 3* 5**동 1***호 (갈현동, 과천 르센토 데시앙)	재산세	4	22,297,840	수취인부재
1113	서*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가길 1*-1 4층 (신사동)	법인지방소득세	27	15,467,10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114	김*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 1***호 (청량리동, 포레스타)	재산세	148	48,515,780	기타
1115	이*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7길 1* 6**호 (화곡동, 이도팰리스)	지방소득세	97	12,068,620	기타
1116	이*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바길 5 지하 1층 0*호 (화곡동, 화종아트빌라)	취득세	116	18,115,980	기타
1117	오*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 1***호 (영등포동3가, 점프밀라노오피스텔)	지방소득세	14	15,695,770	기타
1118	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길 2* 2**동 2***호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지방소득세	30	13,860,370	기타
1119	박*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길 2*-4* 1층 (장위동)	지방소득세	41	13,977,940	기타
1120	이*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 4**호 (용두동, 에이플러스빌)	지방소득세	4	16,657,300	기타
1121	이*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가길 1 (장안동)	지방소득세	18	13,978,590	주소불명
1122	조*훈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길 4* 9**호 (묵정동, 충무아파트)	지방소득세	15	26,896,010	이사불명
1123	김*구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당촌길 5-2* (봉천리)	자동차세	84	10,729,830	기타
1124	강*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 이스트윙동 3***호 (삼성동, 아이파크삼성동)	재산세	10	19,549,530	기타
1125	정*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2*길 9-3 3**호 (천호동)	지방소득세	31	17,398,140	수취인불명
1126	조*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6길 8*-1* (노량진동)	지방소득세	22	12,081,130	수취인불명
1127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8* 1***호 (화곡동, 스페이스)	지방소득세	141	19,927,510	기타
1128	정*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1* 3**호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아파트)	재산세	69	45,673,910	기타
1129	김*광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1*길 5* (중화동)	지방소득세	5	14,250,520	이사불명
1130	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번길 1* 1**동 2**호 (양덕동, 포항양덕하우스토리)	지방소득세	17	13,809,160	기타
1131	김*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 1**동 3**호 (도곡동, 롯데캐슬모닝아파트)	지방소득세	7	13,396,680	기타
1132	박*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3* 1**동 5**호 (신부동)	재산세	8	14,037,700	기타
1133	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 1**동 1***호 (백석동, 브라운스톤일산)	재산세	152	12,132,160	기타
1134	박*열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3** 1**동 1**호 (연희동, 중앙아파트)	지방소득세	43	14,265,04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135	정*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4길 1** 5**호 (도화동, Terra stay)	재산세	84	32,552,320	기타
1136	박*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2**번길 3* (동원동)	재산세	14	17,401,360	수취인불명
1137	박*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 5**호 (천호동, 대동피렌체리버)	지방소득세	40	15,319,040	기타
1138	임*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 (구의동)	지방소득세	4	12,868,370	주소불명
1139	김*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길 4*-6 5**호 (영등포동2가, 오스본오피스텔)	지방소득세	7	25,668,920	기타
1140	김*	서울 강동구 고덕동 4**-1	재산세	31	38,591,050	기타
1141	홍*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3*-1* 3**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7	11,912,910	수취인불명
1142	김*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길 5* (독산동)	지방소득세	10	19,636,320	이사불명
1143	한*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길 7*-7 (중화동)	지방소득세	23	20,606,330	이사불명
1144	양*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길 3*-2* 나동 2**호 (개봉동)	재산세	129	14,956,750	기타
1145	김*욱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2**번길 9-9 (가능동)	지방소득세	8	15,891,120	기타
1146	구*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로 8*-6 2**호 (진안동)	재산세	11	20,028,050	기타
1147	박*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1* 2**호 (신림동, 우석빌라)	지방소득세	6	17,990,280	기타
1148	최*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 3**호 (목동, 서경목동클래스)	취득세	208	17,135,100	기타
1149	심*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길 2* 2**호 (역삼동, 써니빌)	지방소득세	13	12,306,880	기타
1150	최*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길 1*-1 가동 B1**호 (신사동, 미진빌라)	지방소득세	20	14,818,160	기타
1151	김*숙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3번길 1**-5* (대곡리)	지방소득세	9	16,016,330	수취인불명
1152	김*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길 2*-5 2**호 (신정동, 더하우스인)	재산세	46	11,972,390	기타
1153	윤*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9* (화곡동)	지방소득세	19	12,894,620	주소불명
1154	김*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4*번길 1* 1**호 (탄현동)	취득세	9	14,856,890	수취인불명
1155	황*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길 9-3 3층 (논현동)	취득세	119	21,248,480	이사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156	양*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가길 1* A동 4**호 (화곡동, 그랜드빌)	지방소득세	7	16,069,300	수취인불명
1157	강*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3** 1**동 1***호 (고덕동, 고덕풍경채어바니티)	재산세	22	14,923,750	기타
1158	한*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로2*번길 2* (세화리)	법인지방소득세	22	13,513,930	수취인불명
1159	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길 6 6층 (역삼동)	재산세	75	54,026,320	수취인불명
1160	구*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 2**동 1***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지방소득세	4	13,960,560	기타
1161	석*호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5*-7 A동 5**호 (사우동)	지방소득세	17	14,936,120	폐문부재
1162	채*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길 9* 2층 (천호동)	재산세	19	34,345,530	기타
1163	정*정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번길 2* 1**호 (호원동, 푸른마을아파트)	재산세	19	12,069,880	이사불명
1164	홍*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1* 1**동 1***호 (잠원동, 동아아파트)	재산세	20	16,683,120	기타
1165	임*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번길 6* (동산동)	지방소득세	12	23,613,070	수취인불명
1166	이*근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6* 1**동 4***호 (중동, e편한세상 광양)	취득세	14	21,191,660	폐문부재
1167	김*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길 2* 5**호 (신림동, 금화빌)	재산세	18	16,423,580	수취인불명
1168	김*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1* (독산동)	지방소득세	37	15,113,670	기타
1169	서*호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 4**동 1***호 (소하동, 휴먼시아)	지방소득세	16	30,455,680	기타
1170	권*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길 8-1 2동 6**호 (방화동, 스카이빌)	취득세	35	12,400,790	기타
1171	김*성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2** 1**동 B1호 (가정동, 은영빌라)	지방소득세	45	14,684,110	수취인불명
1172	배*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6*번길 8* 4*동 3**호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5	14,550,700	기타
1173	곽*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8길 1* 2**호 (가납리)	지방소득세	22	18,735,990	수취인불명
1174	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길 7*-1 1**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9	13,656,380	수취인불명
1175	허*일*조*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7* 3**호 (이문동)	재산세	66	10,665,820	기타
1176	백*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1* 4**호 (불광동, 주영빌트)	지방소득세	17	15,099,16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177	김*형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 (상봉동)	지방소득세	15	14,016,840	기타
1178	박*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4* (중곡동)	지방소득세	24	15,195,140	기타
1179	최*욱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2* 9**동 1***호 (공릉동, 청솔아파트)	지방소득세	32	25,320,790	기타
1180	박*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5* 2**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6	12,423,070	수취인불명
1181	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길 1* 2동 2**호 (신림동, 미성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23	11,453,240	수취인불명
1182	안*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3*-6 (이태원동)	지방소득세	9	15,203,210	폐문부재
1183	문*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가길 1*-6 (수유동)	지방소득세	20	13,822,240	기타
1184	이*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길 8 B동 1***호 (응암동, 디우 아르떼빌)	지방소득세	22	13,700,560	폐문부재
1185	윤*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6 (미아동)	지방소득세	15	16,569,570	기타
1186	임*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번길 4* 1**동 1***호 (가좌동, 범양아파트)	재산세	19	11,971,260	기타
1187	이*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길 1* B0*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13	16,448,860	수취인불명
1188	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3-2* 지층 B0*호 (녹번동)	지방소득세	5	18,839,490	폐문부재
1189	신*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5*번길 7-2* 2층 (용현동)	취득세	16	14,370,400	기타
1190	박*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7길 2*-7 (구로동)	지방소득세	70	15,322,900	이사불명
1191	장*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1*길 9*-4 (면목동)	지방소득세	6	17,817,510	기타
1192	조*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 1**동 4**호 (보성리, 한신더휴)	지방소득세	6	15,610,840	기타
1193	윤*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번길 9 2**호 (청라동)	지방소득세	40	14,736,230	기타
1194	김*홍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길 5* 3**호 (방화동, 다안빌라트)	재산세	75	14,892,560	기타
1195	최*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 4**호 (가락동)	지방소득세	50	13,249,060	수취인불명
1196	서*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 3층 (갑곶리)	지방소득세	15	12,862,270	기타
1197	이*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길 5 4**호 (군자동)	지방소득세	6	29,029,26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198	박*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1*길 2*-1* 1**호 (신월동, 양지빌라)	지방소득세	33	15,973,250	기타
1199	이*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3* (삼정리)	취득세	425	63,046,830	수취인불명
1200	박*석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밤재길 3*-3* (문수리)	재산세	92	13,001,680	수취인불명
1201	전*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1* (서동)	지방소득세	5	11,792,080	폐문부재
1202	박*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 1*동 1***호 (월계동, 아파트)	지방소득세	33	16,177,610	기타
1203	탁*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4*길 4 3**호 (반포동)	지방소득세	7	13,106,290	기타
1204	최*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번길 9* 1***동 3**호 (송도동, 더샵 엑스포)	법인지방소득세	45	25,370,640	폐문부재
1205	정*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길 8-3 나동 1**호 (신월동, 효성빌라)	지방소득세	19	18,369,730	기타
1206	진*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 (안양동)	지방소득세	5	19,055,850	폐문부재
1207	김*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5길 8* 1층 1**호 (하월곡동)	재산세	43	16,633,070	수취인불명
1208	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6* 1**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39	17,313,690	기타
1209	서*미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6*번길 7* 5**동 1***호 (풍무동, 김포 풍무 꿈에그린 더 포레듀 5단지)	재산세	74	12,284,210	폐문부재
1210	배*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길 4* B동 1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42	17,265,200	수취인불명
1211	성*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길 1*-5 (신림동)	재산세	43	12,745,190	기타
1212	김*송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2* (대방동)	지방소득세	26	15,413,160	기타
1213	이*연	대구광역시 중구 이천로 2** (대봉동)	재산세	4	52,912,650	이사불명
1214	한*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길 6* 1**동 4**호 (중화동, 중화동 힐스페이스)	지방소득세	44	12,995,040	기타
1215	오*아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로 5*-1* 1**동 1***호 (원당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지방소득세	7	16,214,760	폐문부재
1216	박*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4*길 4 B동 4**호 (봉천동, 신봉마을)	지방소득세	6	14,033,380	기타
1217	강*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다길 6-1 3**호 (역촌동)	지방소득세	8	28,081,730	폐문부재
1218	편*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1*번길 1* 1***호 (송정동, 현대디에코3차)	재산세	18	35,893,67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219	이*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나길 1*-6 1층 4 (남가좌동)	지방소득세	7	16,977,770	기타
1220	이*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바길 1* (사당동)	지방소득세	17	14,768,740	기타
1221	김*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 4**동 1***호 (백현동, 백현마을)	취득세	95	13,963,160	기타
1222	방*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번길 4* (숭의동)	법인지방소득세	8	18,222,590	기타
1223	강*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길 3* 2**호 (신림동)	재산세	122	15,909,240	이사불명
1224	김*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1*길 8 에이동 6**호 (화곡동, 오케이파크빌)	취득세	15	13,560,860	기타
1225	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터산1*길 9 (성산동, 테라-tera)	지방소득세	28	11,264,180	기타
1226	최*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 2***호 (목동, 현대4*타워)	재산세	17	11,694,310	기타
1227	이*영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 라동 B0*호 (가좌동, 평산빌라)	법인지방소득세	13	19,846,360	수취인불명
1228	조*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답십리로7*길 2*-1* (면목동)	재산세	93	11,350,180	기타
1229	김*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 8**호 (화양동)	재산세	7	16,227,950	기타
1230	장*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길 3*-3* 6**호 (화곡동)	재산세	15	11,755,330	수취인불명
1231	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1**번길 2* 2동 2**호 (민락동, 서운빌라)	지방소득세	16	21,476,940	기타
1232	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7 5**동 2***호 (식사동, 위시티일산블루밍5단지)	취득세	78	172,977,820	기타
1233	남*호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로 6 1**호 (방어동)	법인지방소득세	33	14,773,640	기타
1234	한*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6*길 2* 1**호 (대치동)	지방소득세	17	14,129,260	기타
1235	최*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가길 4* 6**호 (신림동, 아카데미하우스)	지방소득세	15	14,286,160	수취인불명
1236	김*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길 3* 3**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5	14,099,640	기타
1237	최*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7*-1* 1**동 3***호 (유천동, 강릉유천유승한내들더퍼스트)	지방소득세	5	24,945,490	폐문부재
1238	이*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 1층 (수유동, 청산주택)	지방소득세	20	26,968,150	기타
1239	백*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B동 3***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I)	취득세	29	166,160,54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240	양*훈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 1**동 2**호 (만석동,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지방소득세	9	12,725,990	기타
1241	김*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1*길 3* 3**동 1**호 (신길동, 우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7	13,901,950	기타
1242	강*홍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가길 2*-9 6층 6**호 (목동, 목동해강)	법인지방소득세	138	19,369,020	기타
1243	김*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3*번길 2*-1 3**호 (심곡동)	지방소득세	4	16,993,540	기타
1244	이*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길 5*-5 (화양동)	지방소득세	32	14,766,390	기타
1245	조*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3*번길 7* 7**동 2**호 (양곡리, 김포한강 신원 아침도시 고다니마을)	재산세	162	16,025,540	폐문부재
1246	유*진	인천광역시 서구 허암길 2* A동 4**호 (검암동, 에코빌리지)	재산세	204	15,706,050	기타
1247	김*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1*가길 5 1**호 (신길동)	지방소득세	11	14,596,770	기타
1248	김*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3* 2층 2**호 (용담리)	지방소득세	2	17,593,570	기타
1249	문*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 (수유동)	지방소득세	3	21,830,710	기타
1250	허*무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시장거리길 4*-3 2**호 (파주리)	재산세	178	11,216,440	기타
1251	송*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1*-2 2**호 (창동, DH-C타워)	지방소득세	5	18,763,060	기타
1252	송*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마길 2* (신대방동)	지방소득세	12	19,381,350	기타
1253	전*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 5동 3**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방소득세	17	11,487,580	기타
1254	박*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 5**호 (아현동, 효성인텔리안)	재산세	8	15,841,970	기타
1255	주*회* *스*이*씨*씨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 1***호 (성수동1가, 서울숲 L-Tower)	지방소득세	8	29,538,110	부도폐업
1256	주*회* *스*이*엠*(*H*M* *o*,*t*.*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3길 7-3, 3**호 (능동)	법인지방소득세	42	14,235,710	기타
1257	(*)*하*징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번안길 4* 1**호 (청라동)	법인지방소득세	5	22,885,360	수취인불명
1258	주*회* *이*테*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길 2*, 1***호 (구로동, 삼성IT밸리)	지방소득세	20	17,287,770	부도폐업
1259	주*회* *이*디*지*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 6층 티6*(삼성동, 삼성동 미켈란1**)	법인지방소득세	3	5,532,635,830	부도폐업
1260	주*회* *이*앤*이*이*씨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번안길 7, 5**호 (당하동, 엠디타운)	재산세	64	12,187,76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261	주*회* *이*엘*베*트*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길 1*, (서초동, 중추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18,496,450	주소불명
1262	주*회* *이*컴*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 B2**-P호 (등촌동, 그레이스힐)	법인지방소득세	6	22,236,530	기타
1263	강*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 1*동 5**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지방소득세	1	55,149,680	수취인불명
1264	윤*자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5* B동 3**호 (용현동, 세인트펠리스)	지방소득세	4	29,230,080	기타
1265	신*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9* (성북동)	취득세	4	315,112,910	기타
1266	조*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길 1* 6**호 (삼성동, 신도브래뉴)	지방소득세	2	49,245,130	기타
1267	이*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길 3-9 3**호 (잠실동)	지방소득세	1	32,252,420	기타
1268	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 (청진동)	지방소득세	5	72,266,070	기타
1269	신*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길 1** 다동 지하1층 2호 (양재동, 남성타운)	지방소득세	3	43,296,970	폐문부재
1270	허*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1**-7 지층 0*호 (화곡동)	지방소득세	9	33,570,650	기타
1271	이*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8*-1** (선유동)	취득세	36	37,634,670	폐문부재
1272	김*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7번길 5 (십정동)	취득세	7	89,759,850	기타
1273	서*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천로1길 2* 2**동 8**호 (동산동, 세경2차아파트)	지방소득세	6	31,855,600	폐문부재
1274	김*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9* (성북동)	취득세	2	314,984,200	기타
1275	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길 1*-1* 2**호 (신길동, 신길동빌라)	지방소득세	2	838,684,000	수취인부재
1276	김*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9* (성북동)	취득세	2	314,984,200	기타
1277	권*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 1*동 1***호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지방소득세	1	34,683,090	기타
1278	송*선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2* 2**동 1**호 (민락동, 송산팰리스)	취득세	1	53,990,240	기타
1279	박*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길 1* 1**동 7**호 (청담동, 청담래미안로이뷰)	지방소득세	46	650,891,310	기타
1280	이*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2*-1 3**호 (송우리)	취득세	30	42,093,680	수취인불명
1281	이*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길 1** (장안동)	지방소득세	20	29,406,93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282	신*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 8**호 (자곡동, 강남 푸르지오시티 1차)	지방소득세	16	13,299,600	수취인불명
1283	문*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길 4* 4**호 (면목동, 하진리버빌)	지방소득세	13	39,386,760	기타
1284	이*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15	138,769,630	수취인불명
1285	정*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번안길 3 2**호 (불로동, 로즈빌)	법인지방소득세	6	63,382,530	기타
1286	박*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길 2* (면목동)	법인지방소득세	1	45,308,920	수취인불명
1287	김*훈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재길 3**-2* (고성리)	법인지방소득세	1	104,419,400	폐문부재
1288	심*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가길 5* (등촌동)	법인지방소득세	34	33,094,850	기타
1289	오*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 2**동 7**호 (공세동, 탑실마을 대주피오레2단지)	법인지방소득세	2	17,761,550	기타
1290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4** 2**동 4**호 (신길동, 래미안 프레비뉴)	법인지방소득세	9	181,164,280	기타
1291	차*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5길 2* 1**동 4**호 (월계동,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2	32,694,510	기타
1292	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 1**동 1***호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법인지방소득세	4	555,185,760	수취인불명
1293	박*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1*길 7*-4 3**호 (한남동, 한미빌라)	법인지방소득세	10	22,771,210	폐문부재
1294	김*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 1**동 1**호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테라스)	법인지방소득세	2	35,774,030	기타
1295	전*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 1**동 1***호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지방소득세	3	25,101,190	기타
1296	오*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 1**동 2***호 (봉천동, 두산아파트)	지방소득세	4	46,134,170	기타
1297	홍*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 4**동 1***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4	90,487,830	기타
1298	이*선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5로 1* 1**동 5**호 (역동, 광주역자연앤자이)	법인지방소득세	9	224,752,630	폐문부재
1299	한*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번길 1*-2 1**호 (작전동)	법인지방소득세	4	71,303,580	기타
1300	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 2층 2**호 (삼성동)	지방소득세	13	68,382,620	기타
1301	이*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1길 6 (목동)	법인지방소득세	7	121,687,250	기타
1302	임*미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번길 2* 4**호 (용전동)	지방소득세	5	76,946,07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새액(원)	공시송달사유
1303	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 1**동 2***호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2	13,765,040	기타
1304	남*태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3* 1**동 1**호 (옥정동,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테라스 1단지)	법인지방소득세	6	50,094,100	기타
1305	손*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번길 2*-4 (복정동)	지방소득세	6	19,652,110	기타
1306	서*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길 1* 1**호 (역삼동, 조이너스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4	38,057,960	수취인불명
1307	이*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길 1**-1* (양재동)	지방소득세	19	52,285,340	수취인불명
1308	신*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길 2*-1* 2**호 (녹번동, 동우리체)	법인지방소득세	1	22,309,640	폐문부재
1309	김*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길 1* (이태원동)	지방소득세	15	41,656,380	폐문부재
1310	유*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길 4-1* B0*호 (송파동)	취득세	14	40,495,390	기타
1311	김*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1**번길 3* 7**동 1***호 (청학리, 청학주공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3	23,099,390	기타
1312	서*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길 3*-1* 2**호 (역촌동)	법인지방소득세	4	18,952,590	폐문부재
1313	방*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길 9 1**동 3**호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법인지방소득세	22	25,018,800	기타
1314	이*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4 (창동)	지방소득세	5	11,511,990	기타
1315	강*현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4번길 3* 2**호 (군문동, 인터빌)	법인지방소득세	2	480,992,530	수취인불명
1316	송*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2*길 1* 2**호 (석촌동)	법인지방소득세	12	40,558,510	기타
1317	박*황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2로 8* 1**동 3**호 (영천동, 동탄2신도시 4차 동원로얄듀크포레)	법인지방소득세	2	83,237,710	기타
1318	신*섭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 2**동 8**호 (풍무동, 유현마을)	법인지방소득세	3	77,863,630	폐문부재
1319	신*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9 3**호 (연희동)	법인지방소득세	6	19,912,120	기타
1320	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6나길 1*-1* 3**호 (돈암동, 쁘띠메종)	취득세	1	106,699,620	기타
1321	백*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2*번길 1* 5**호 (작전동)	법인지방소득세	76	21,015,200	기타
1322	김*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길 3*-1* (역촌동)	법인지방소득세	35	34,189,490	폐문부재
1323	*승*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1**호 (동소문동6가)	법인지방소득세	4	29,945,62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324	김*선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4**번길 2**-6* (운양동)	법인지방소득세	9	37,249,280	폐문부재
1325	박*무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 1** (양벌동)	법인지방소득세	11	32,625,620	폐문부재
1326	노*용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 2**동 2**호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지방소득세	5	71,336,260	폐문부재
1327	사*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9* 6**동 5**호 (보라동, 한보라 THE HILL)	법인지방소득세	12	12,916,380	기타
1328	오*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8길 4*-1* (창동)	법인지방소득세	13	52,178,980	기타
1329	정*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 3***동 1**호 (중동, 성산마을서해그랑블)	법인지방소득세	12	15,553,990	기타
1330	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5* 2**호 (서초동, 은하연립)	취득세	8	300,409,420	기타
1331	유*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5길 2*-2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8	545,245,060	기타
1332	김*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 7**호 (구갈동, 팰리스뷰)	법인지방소득세	4	800,674,200	수취인불명
1333	최*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8 (마장동)	법인지방소득세	4	17,242,970	기타
1334	이*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 6*-4	법인지방소득세	7	33,132,350	기타
1335	김*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 2**동 8**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지방소득세	1	16,301,640	기타
1336	권*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1** 1**동 6**호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지방소득세	2	86,206,260	폐문부재
1337	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길 1* 1**동 4**호 (일원동, 수서1단지 에스에이치빌)	법인지방소득세	5	21,646,300	기타
1338	강*복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3** 3**호 (운양동, 더파크뷰테라스)	지방소득세	8	20,423,480	폐문부재
1339	문*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길 3*-1* 1***호 (삼전동, 에이메스더리버송파)	법인지방소득세	7	32,731,760	기타
1340	라*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 4**동 1***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4단지)	취득세	18	339,341,040	기타
1341	김*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 7**호 (구갈동, 팰리스뷰)	법인지방소득세	3	800,697,840	수취인불명
1342	김*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 (불광동)	취득세	3	50,650,920	폐문부재
1343	김*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 4**호 (당산동5가, 당산디오빌)	법인지방소득세	2	25,691,240	기타
1344	권*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2* 1**동 6**호 (금호동3가, 금호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	437,812,10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345	신*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7*길 2* 1**동 2**호 (면목동,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법인지방소득세	12	13,903,790	기타
1346	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길 1* 1**동 1***호 (청담동, 청담자이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3	29,080,330	기타
1347	이*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길 1** 1**동 1***호 (등촌동, 대림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4	22,321,790	기타
1348	이*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2길 5* 가동 3**호 (삼전동, 쌍용빌라)	법인지방소득세	8	14,356,890	이사불명
1349	이*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길 1* 7**호 (삼성동, 신도브래뉴)	법인지방소득세	1	34,272,640	수취인불명
1350	이*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번길 1* 1**동 7**호 (호원동, 한주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	15,432,590	기타
1351	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9길 2* 3층 3**호 (방배동)	법인지방소득세	1	237,304,460	기타
1352	김*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가길 1*-1* 2**호 (화곡동, 화인빌라)	법인지방소득세	7	23,959,060	수취인불명
1353	오*태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번길 2* A동 3**호 (당하동)	취득세	8	44,624,610	수취인불명
1354	이*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길 1 (동선동4가)	법인지방소득세	5	17,759,420	기타
1355	이*송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탐선길 7 1**호 (선촌리, 탐선빌라트)	취득세	42	21,644,590	폐문부재
1356	장*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번길 5* 1**호 (관양동)	법인지방소득세	6	25,545,430	폐문부재
1357	김*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5* (가락동)	법인지방소득세	1	21,368,340	주소불명
1358	김*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 6**동 7**호 (하계동, 장미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3	60,873,530	기타
1359	신*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길 3* 4**호 (일원동)	법인지방소득세	2	40,222,720	기타
1360	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 2* 9**호 (성수동2가)	취득세	7	36,839,780	기타
1361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길 1**-6 2층 2**호 (사당동, 삼성아파트)	취득세	3	102,518,530	기타
1362	신*훈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번길 1**-1* 1**호 (변동, 우성빌라)	취득세	22	46,738,420	기타
1363	신*구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 4층 (교문동)	지방소득세	7	161,768,760	폐문부재
1364	이*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 3**동 2**호 (효자동1가, 비사벌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3	11,607,040	폐문부재
1365	김*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8길 2* 4층 4**호 (대방동, 정원뷰)	법인지방소득세	9	44,651,33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366	정*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번길 2* 1**동 6**호 (내동, 월드메르디앙웨스턴애비뉴)	법인지방소득세	6	14,714,690	기타
1367	한*규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9* 1***동 9**호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클래스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40	203,491,830	기타
1368	이*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1*길 4* 6**호 (천호동)	법인지방소득세	33	15,416,630	기타
1369	김*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8길 2* 4층 4**호 (대방동, 정원뷰)	법인지방소득세	6	31,666,590	기타
1370	이*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길 6*-7 B동 1**호 (서초동, 삼성홈스테이)	취득세	17	325,006,560	기타
1371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4**번길 1*-1 (이동)	법인지방소득세	4	16,714,790	기타
1372	신*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2* (역삼동)	지방소득세	11	46,182,310	주소불명
1373	김*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양길 2* (장양리)	법인지방소득세	1	113,558,590	폐문부재
1374	양*춘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 2**동 1***호 (이화동, 이화신동아파밀리에)	법인지방소득세	12	244,036,560	기타
1375	박*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2*길 7-7 1**호 (수유동)	법인지방소득세	1	75,738,890	기타
1376	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길 2* 1***호 (방배동, 방배한신트리플)	법인지방소득세	4	17,003,390	기타
1377	신*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2**번길 4* (넙성리)	취득세	2	1,093,102,900	수취인불명
1378	손*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6길 1* 3**호 (성정동, 연합타운)	법인지방소득세	1	402,401,730	수취인불명
1379	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1* 1***호 (성산동, 삼라마이다스)	취득세	11	2,420,063,380	기타
1380	신*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1나길 1*-4 2층 2**호 (봉천동)	법인지방소득세	18	16,834,370	수취인불명
1381	문*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 4**호 (부평동, 신일유스테이션)	지방소득세	13	19,444,720	수취인불명
1382	박*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 1**동 1***호 (동백동, 용인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지방소득세	13	31,579,670	기타
1383	김*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4**번길 1* 1**호 (중산동)	법인지방소득세	2	26,769,120	기타
1384	김*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 B동 7**호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법인지방소득세	5	40,257,390	폐문부재
1385	김*립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다길 6 1**호 (성내동, 장미연립)	법인지방소득세	19	45,735,240	기타
1386	고*표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길 2* 2**호 (후암동)	법인지방소득세	2	11,841,06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387	김*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 1***호 (신정동, 양지오피스텔)	취득세	9	94,197,400	기타
1388	김*래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길 2* 3층 (오금동)	법인지방소득세	4	46,327,100	주소불명
1389	정*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8*번길 4* 3층 3**호 (수택동, 다우빌)	지방소득세	4	42,148,770	수취인불명
1390	민*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번길 1* 1**동 8**호 (부곡리, 송추역 북한산 경남아너스빌)	취득세	19	288,161,170	기타
1391	남*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번길 5 B동 1***호 (작전동, BK디센트)	법인지방소득세	3	268,420,920	기타
1392	이*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2*번길 2*-4 (상대원동)	법인지방소득세	3	38,896,170	기타
1393	최*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1*-1* 5**호 (공항동, 마곡베스트빌)	법인지방소득세	1	328,603,690	기타
1394	최*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 1*동 2**호 (교항리, 해안연립)	법인지방소득세	3	380,213,090	폐문부재
1395	채*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4 3**호 (성황동)	법인지방소득세	1	457,939,530	기타
1396	마*극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1* 1**동 1***호 (배곧동, 시흥배곧중흥에스-클래스)	법인지방소득세	9	792,624,230	기타
1397	이*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길 5* (화양동)	법인지방소득세	3	49,485,860	기타
1398	이*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길 5* (상동)	법인지방소득세	11	48,311,800	이사불명
1399	김*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4*길 1* 2**호 (두류동)	법인지방소득세	26	24,590,480	폐문부재
1400	장*희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 1** (방촌동)	지방소득세	4	33,698,020	폐문부재
1401	김*경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4**번길 2*-1* (소하동)	법인지방소득세	12	21,064,640	기타
1402	민*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 9**호 (야당동)	법인지방소득세	1	17,062,580	수취거절
1403	이*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1* 1**동 6**호 (장현리, 진접하우스토리)	법인지방소득세	2	21,643,250	기타
1404	조*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 1***호 (청담동)	법인지방소득세	8	99,419,890	기타
1405	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길 1*-9 (불광동)	법인지방소득세	8	18,999,580	수취인불명
1406	박*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2*번길 2*-1* 1**동 1***호 (구갈동, 한양아파트)	지방소득세	12	36,372,690	기타
1407	장*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시장길 7* A동 5**호 (동외동, 한전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7	38,554,06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408	정*훈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봉성로 1** (봉성리)	법인지방소득세	1	183,416,080	폐문부재
1409	손*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 (북가좌동)	법인지방소득세	1	12,996,100	주소불명
1410	최*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3* 1**동 1***호 (부평동, e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	법인지방소득세	4	24,666,580	기타
1411	이*조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동3길 5*-5* 가동 (능암리)	법인지방소득세	7	268,280,940	이사불명
1412	고*석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1* (읍하리)	법인지방소득세	7	151,656,510	수취인불명
1413	박*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2*길 1*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1	402,614,210	기타
1414	이*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길 2*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2	447,433,110	기타
1415	김*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1길 1* 2층 (대흥동)	법인지방소득세	1	479,790,140	기타
1416	이*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9*번길 1* 1**동 1***호 (김량장동)	법인지방소득세	8	23,843,430	기타
1417	김*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6**-2* (매음리)	법인지방소득세	9	79,662,530	수취인불명
1418	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 5**동 8**호 (가락동, 헬리오시티)	법인지방소득세	3	637,126,290	기타
1419	김*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4**호 (삼성동)	법인지방소득세	1	479,917,900	기타
1420	이*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길 4*-4 (중화동)	지방소득세	3	200,751,190	기타
1421	명*병	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1* 5**동 1***호 (소하동, 광명역세권메트로포레)	법인지방소득세	2	27,613,400	기타
1422	이*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길 1* 5**호 (성수동2가)	법인지방소득세	9	13,783,190	수취인불명
1423	박*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번길 7 1**동 9**호 (마북동, 구성자이3차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0	251,311,790	기타
1424	최*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 (부평동)	법인지방소득세	9	77,660,800	기타
1425	양*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가길 4*-4* 4**호 (홍은동)	취득세	5	79,773,640	기타
1426	홍*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 1***호 (논현동, 기린힐스)	재산세	4	274,442,790	기타
1427	이*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2길 5*-3* (고잔리)	법인지방소득세	13	18,139,620	기타
1428	김*오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4*번길 4-6 2**호 (가정동)	법인지방소득세	1	35,693,64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429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길 5* (노량진동)	취득세	11	61,126,380	기타
1430	심*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 4**호 (가양동, 오성드림)	취득세	37	1,418,341,640	기타
1431	김*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 1**동 1***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재산세	18	77,052,910	기타
1432	배*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 1***동 1**호 (중산동, 중산마을)	지방소득세	15	79,126,580	기타
1433	금*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 2**동 8**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법인지방소득세	1	454,212,540	기타
1434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길 2* 3**호 (화곡동, 오유지음)	지방소득세	42	779,049,200	기타
1435	이*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 2**동 2***호 (선유리, 파주문산역2차동문디이스트)	법인지방소득세	2	33,427,370	기타
1436	이*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 1***호 (중동, 코스모폴리탄)	법인지방소득세	6	47,907,490	수취인불명
1437	명*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3* 2**동 8**호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오피스텔)	지방소득세	1	181,326,710	기타
1438	나*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 3**동 1***호 (고잔동, 안산고잔3차푸르지오)	법인지방소득세	1	33,343,260	폐문부재
1439	이*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길 5-7 (대조동)	법인지방소득세	9	60,177,110	수취인불명
1440	조*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길 2* (구로동)	법인지방소득세	4	162,438,770	기타
1441	고*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1*길 1* B0*호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2	447,910,780	기타
1442	이*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 8-1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3	418,281,950	기타
1443	이*우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7번길 7-2* 2층 (교문동)	법인지방소득세	2	29,384,940	폐문부재
1444	장*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길 8 3**호 (석촌동, 금성빌라)	취득세	135	143,340,250	이사불명
1445	한*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5* 7**동 2***호 (옥길동, 옥길센트리뷰)	지방소득세	7	22,161,650	기타
1446	최*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7*-1* 1**동 3***호 (유천동, 강릉유천유승한내들더퍼스트)	법인지방소득세	12	56,080,080	폐문부재
1447	이*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5길 5* B2**호 (흑석동, 에버그린 I)	취득세	58	380,196,840	기타
1448	이*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5**-6 (월문리)	법인지방소득세	7	308,501,830	기타
1449	김*관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5길 5* 3**동 2*층 2***호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	법인지방소득세	6	31,492,90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450	전*온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9길 6 3**호 (석촌동)	취득세	1	30,634,960	기타
1451	이*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길 3* (중곡동)	취득세	4	34,975,770	기타
1452	왕*우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7* 1**동 1***호 (장기동, 청송마을)	법인지방소득세	5	12,657,610	폐문부재
1453	이*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2* 1**호 (역삼동)	법인지방소득세	5	27,123,550	기타
1454	정*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번길 3* 1***동 1***호 (평내동, 평내마을상록데시앙)	법인지방소득세	5	13,994,010	기타
1455	노*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번길 2* 1**동 5**호 (조원동, 수원한일타운아파트)	지방소득세	5	3,169,666,720	기타
1456	오*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9길 1* 1**동 8**호 (독산동, 주원블레어캐슬)	취득세	1	79,756,880	기타
1457	김*정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늪언덕길 2-1 A동 A2**호 (용담리)	법인지방소득세	5	12,678,580	수취인불명
1458	이*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 7**동 1***호 (가좌동, 가좌마을)	법인지방소득세	9	41,027,450	기타
1459	장*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1**-1 1**동 2**호 (해안동, 화이트디어 해안1)	법인지방소득세	2	240,118,740	기타
1460	송*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2* 4**호 (부평리)	법인지방소득세	28	44,579,440	기타
1461	이*민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 9**동 2***호 (당하동, 예미지 더 시그너스)	법인지방소득세	9	35,636,190	기타
1462	임*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길 1*-8 (함덕리)	법인지방소득세	2	34,266,070	기타
1463	양*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1**동 1***호 (상봉동, 한일써너스빌)	지방소득세	3	15,917,970	기타
1464	홍*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4*번길 1*-1* (판교동)	법인지방소득세	8	21,430,420	기타
1465	박*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3*길 1*-3 (오류동)	취득세	9	239,305,820	기타
1466	오*숙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 1***동 3***호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	법인지방소득세	22	48,548,900	기타
1467	정*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 (봉천동)	법인지방소득세	1	13,151,250	기타
1468	김*근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2길 4 3**호 (당하동)	법인지방소득세	5	18,598,630	기타
1469	김*백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남대로 1*** (장지동)	법인지방소득세	2	23,196,180	기타
1470	남*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길 8*-8 (구의동)	법인지방소득세	3	19,676,26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471	홍*용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 6**동 1**호 (오남리, 진주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5	29,371,580	기타
1472	배*웅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학평길 6*-3 (삼신리)	법인지방소득세	5	45,621,530	폐문부재
1473	이*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2*길 6* 4층 4**호 (한남동, 퀸스타운1)	취득세	1	73,638,670	폐문부재
1474	호*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8* 1**동 5**호 (동천동, 더샵 동천이스트포레)	법인지방소득세	3	38,035,640	기타
1475	박*낭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2* 3***동 2***호 (망월동, 미사 레스티아 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	29,351,800	기타
1476	오*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9* 2**동 1***호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법인지방소득세	6	50,387,030	기타
1477	임*수*L*M*W*N*S*O*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1**, 1**동 1***호(부산동, 오산운암1단지주공아파트)	취득세	19	191,026,650	이사불명
1478	안*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양간로 8-9 9**호 (신정리, 산정하이빌)	법인지방소득세	8	157,455,430	수취인불명
1479	배*영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장대3길 2* (다문리)	법인지방소득세	5	13,437,770	기타
1480	임*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번길 1*-8 3**호 (보정동)	법인지방소득세	3	44,850,900	기타
1481	조*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길 1* B동 1***호 (신도림동, 크라운빌2)	지방소득세	4	31,390,690	수취인불명
1482	이*혁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번안길 7* 6***동 2***호 (다산동, 다산 푸르지오)	법인지방소득세	3	550,156,480	기타
1483	한*용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 1***호 (금정동, 한림휴먼타워)	법인지방소득세	4	32,182,720	폐문부재
1484	이*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길 5*-1* (신림동)	법인지방소득세	3	12,701,180	기타
1485	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4* (역삼동)	법인지방소득세	2	35,055,070	주소불명
1486	김*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2* 2**호 (창신동)	법인지방소득세	1	31,983,210	기타
1487	권*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3* 2**호 (도봉동)	법인지방소득세	4	162,275,040	기타
1488	김*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1**번길 2*-2 (용천리)	법인지방소득세	2	22,732,010	폐문부재
1489	홍*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 B동 1***호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법인지방소득세	1	14,341,870	기타
1490	최*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 5**호 (마전동)	법인지방소득세	2	19,444,280	기타
1491	양*남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남로 2** 2**동 1***호 (옥길리, 부영사랑으로2차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2	23,288,030	이사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492	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3* 1***호 (서초동, 현대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11	47,191,950	수취인불명
1493	정*채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송림로 1**-1* (송림리)	법인지방소득세	8	16,103,480	기타
1494	정*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번길 1*-1* 4**호 (탑동, 신성주택)	취득세	10	150,764,270	수취인불명
1495	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길 7*-4 2**호 (역삼동)	법인지방소득세	2	32,966,780	수취인불명
1496	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3길 9 1층 (부암동)	취득세	1	2,306,378,670	수취인불명
1497	장*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번길 9-1** (남동)	취득세	1	424,712,400	기타
1498	권*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3*가길 5 3**호 (도림동, 미르빌)	법인지방소득세	10	13,925,280	수취인불명
1499	천*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길 2*-9 (석촌동)	취득세	9	1,290,032,204	주소불명
1500	최*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 1**동 1**호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주민세	47	105,073,870	기타
1501	주*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길 8* 2**호 (서초동, 서초아크빌)	법인지방소득세	2	16,215,470	기타
1502	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 (학익동)	법인지방소득세	1	19,890,090	수취인불명
1503	이*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계로 1*-3* (박곡리)	법인지방소득세	10	34,427,190	주소불명
1504	김*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2**번길 1*-2* 3**호 (해월리)	법인지방소득세	35	1,244,703,450	수취인불명
1505	손*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번길 1-2 (매산로1가)	법인지방소득세	1	176,929,660	수취인불명
1506	김*호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4*번길 2* 1**호 (궐동, 대명주택)	법인지방소득세	5	410,419,350	기타
1507	황*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2길 1* (봉천동)	법인지방소득세	5	996,677,230	기타
1508	심*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 4**호 (가양동, 오성드림)	취득세	1	347,482,000	기타
1509	김*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번길 9 (심곡동)	법인지방소득세	12	166,974,580	기타
1510	손*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7 4**호 (잠실동)	지방소득세	23	25,051,040	기타
1511	정*옥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 6**동 1***호 (여서동, 부영아파트)	재산세	16	11,917,400	문부재
1512	지*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길 2* (금호동2가)	법인지방소득세	17	15,061,910	수취인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513	최*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5*-1 (강촌리)	재산세	52	10,802,360	기타
1514	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곡로 1* 1**동 2***호 (산곡동, 부평두산위브더파크)	법인지방소득세	55	11,832,570	기타
1515	김*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7*번길 5* 가동 4**호 (고강동, 부촌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8	18,097,170	기타
1516	안*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7*-1* 3**동 1***호 (풍동, 성원아파트)	등록세	36	14,794,000	기타
1517	도*안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강9길 1* 1*층 1***호 (인평리, 로얄아파트)	재산세	2	15,137,940	기타
1518	전*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길 8*-2 (화곡동)	법인지방소득세	15	12,725,160	기타
1519	남*준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6* 1**동 1***호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시티)	지방소득세	12	13,011,040	기타
1520	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 2*동 1**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지방소득세	11	20,148,770	기타
1521	오*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6*길 8-2 (상도동)	법인지방소득세	6	15,239,410	기타
1522	김*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길 8* 1**동 4**호 (방배동, 방배아트e-편한세상)	재산세	62	102,946,050	기타
1523	조*순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1**번가길 6 2**호 (상신리)	법인지방소득세	41	11,841,490	기타
1524	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번길 6* 1**동 5**호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	자동차세	64	10,332,260	폐문부재
1525	이*구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샛터말길 6* (가유리)	법인지방소득세	42	13,262,090	기타
1526	김*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길 2*-2* 4**호 (삼전동)	법인지방소득세	12	12,420,610	기타
1527	박*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8 A동 5**호 (서창동, 광백드림빌)	자동차세	33	13,464,290	기타
1528	정*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길 3*-4 (자양동)	법인지방소득세	7	14,777,420	기타
1529	현*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길 4*-4 2**호 (대치동)	법인지방소득세	15	11,100,140	기타
1530	박*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 8**동 1***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산세	100	11,366,080	기타
1531	유*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길 3* 1**동 5**호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8	12,153,910	이사불명
1532	천*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7* 2**동 2***호 (신공덕동,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법인지방소득세	13	21,016,170	기타
1533	최*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길 2* 1**동 4**호 (공세리, 대진아파트)	지방소득세	6	14,163,760	폐문부재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534	김*균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번안길 7 5**호 (당하동, 엠디타운)	재산세	64	12,187,760	기타
1535	김*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길 4* (이태원동)	법인지방소득세	31	12,017,430	폐문부재
1536	이*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9* 2층 2**호 (신월동)	지방소득세	10	20,939,080	기타
1537	김*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6*번길 8* 1동 2**호 (문봉동)	법인지방소득세	11	16,140,220	기타
1538	한*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3*번길 6*-1 4**호 (상동, 상동안트레)	지방소득세	29	21,448,750	수취인불명
1539	강*종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길 6-1 (신사동)	지방소득세	17	13,897,980	수취인불명
1540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길 5*-2* 5**호 (화곡동, 삼익헤스티아)	재산세	100	83,880,820	기타
1541	박*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2*-1* (장위동)	재산세	41	21,342,990	기타
1542	안*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 1**동 3***호 (목동, 목동파라곤)	지방소득세	24	66,552,600	기타
1543	허*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8 4**호 (공릉동, 북부포커스빌)	재산세	12	17,452,140	기타
1544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6* 1**동 1***호 (호평동, 호평파라곤)	지방소득세	18	12,548,120	기타
1545	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길 7 5**호 (양재동, 양재하이빌)	취득세	61	13,888,970	기타
1546	박*재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2*번길 1* B동 4**호 (신장동)	법인지방소득세	6	17,929,460	기타
1547	박*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길 5* 1동 9**호 (구산동, 경향파크APT)	재산세	59	11,314,670	수취인불명
1548	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 1**동 6**호 (상도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지방소득세	31	13,114,770	기타
1549	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길 3* 9**호 (역삼동, 역삼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지방소득세	17	12,678,580	기타
1550	김*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7**-1* 가동 3**호 (천리, 우월시티빌라)	재산세	3	61,699,710	기타
1551	이*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 9*동 1***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7	15,190,450	기타
1552	홍*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 1**동 2**호 (방이동, 엘림하우스)	지방소득세	8	29,538,110	기타
1553	정*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길 6* 7**호 (화양동, 테라팰리스 건대 1차)	법인지방소득세	17	12,970,430	수취인불명
1554	송*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1 2**호 (입석리)	지방소득세	22	27,862,25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555	백*봉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다길 5* (상계동)	법인지방소득세	9	12,852,630	기타
1556	홍*령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1**번길 7*-6 씨동 1층 3호 (원종동, 한남주택)	취득세	24	20,816,450	기타
1557	이*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 (행신동)	법인지방소득세	15	13,580,280	주소불명
1558	임*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 8**호 (대화동, 신동아노블타워)	취득세	33	24,935,460	기타
1559	김*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8길 2* 4층 4**호 (대방동, 정원뷰)	법인지방소득세	12	15,790,490	기타
1560	김*수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6*길 1* 1**동 1***호 (남산동,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법인지방소득세	17	18,662,560	기타
1561	정*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길 1*, 1**동 1**호(응암동, 백련산에스케이뷰아이파크)	재산세	12	19,040,960	폐문부재
1562	이*연	대구광역시 중구 이천로 2** (대봉동)	지방소득세	14	12,597,520	이사불명
1563	최*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9*-1* 3**호 (마석우리, 백호빌)	법인지방소득세	18	17,582,240	기타
1564	박*규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5*번길 2* 3층 (서정동)	법인지방소득세	15	13,896,400	기타
1565	박*영	경기도 양주시 경동대학로 3* (고암동)	주민세	214	13,481,230	기타
1566	전*온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9길 6 3**호 (석촌동)	재산세	3	61,192,950	기타
1567	정*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1* 3**호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아파트)	재산세	48	45,222,140	기타
1568	최*훈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6* 1***호 (산본동, 인베스텔)	법인지방소득세	11	14,806,140	폐문부재
1569	이*석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번안길 1*-5 A동 3**호 (마전동)	재산세	71	42,428,460	기타
1570	이*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1길 1*-9 (숭인동)	재산세	30	16,710,620	기타
1571	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3* 1**동 1**호 (세곡동, 강남효성해링턴코트)	재산세	4	41,753,390	기타
1572	김*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5*-1* 2**호 (화곡동, 센트럴파크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50	28,693,220	기타
1573	이*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번길 2* (신흥동)	법인지방소득세	16	15,080,550	이사불명
1574	김*현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 1***동 1***호 (당하동, 인천검단신도시AA4BL유승한내들)	재산세	3	26,387,090	기타
1575	박*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2*-1* (장위동)	재산세	47	33,600,49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576	김*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 1**동 3**호 (도곡동, 롯데캐슬모닝아파트)	취득세	50	21,214,640	기타
1577	김*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천길 1** 4**호 (북가좌동)	재산세	2	15,449,920	기타
1578	박*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7* 1**동 6**호 (하왕십리동, 극동미라주)	재산세	49	25,130,570	기타
1579	장*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길 3*-3* 6**호 (화곡동)	등록면허세	7	12,237,530	수취인불명
1580	L*E*D*V*D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본길 7, 1***동 1***호(동천동,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1단지)	지방소득세	14	14,571,120	수취인불명
1581	염*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길 8* 4**호 (화곡동, 서울빌리지)	지방소득세	19	13,115,270	수취인불명
1582	김*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1** 1***호 (화곡동)	재산세	39	14,296,740	기타
1583	김*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길 3* 1***호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2단지)	재산세	6	218,114,910	기타
1584	이*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 6**호 (신정동, 노블오피스텔)	재산세	61	28,356,450	기타
1585	김*훈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왕로 3* 6**호 (석남동, 더스타뷰)	지방소득세	2	11,637,970	기타
1586	박*호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5* 7**동 1***호 (목동동, 운정화성파크드림)	재산세	31	24,455,300	기타
1587	강*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길 3-5 라동 1**호 (화곡동, 우성빌라)	법인지방소득세	8	15,910,310	기타
1588	최*경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재뜰길 4*-7 (삽교리)	재산세	16	11,239,860	폐문부재
1589	최*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7-7 (인후동2가)	재산세	50	15,602,680	폐문부재
1590	조*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길 1* 1**동 1***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재산세	6	20,281,030	기타
1591	이*영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2** 1**동 1***호 (남양리, 대광파인밸리)	재산세	20	14,253,980	기타
1592	조*명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 6* 1***동 8**호 (상신리, 언덕마을사랑으로부영1*단지아파트)	재산세	34	22,652,140	기타
1593	이*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9**번길 1*-1** 3**호 (산이리, 더혜윰플러스)	재산세	22	17,218,480	폐문부재
1594	고*상	경기도 광주시 태재로 2*-1* 1**동 4**호 (신현동, e편한세상태재 1단지)	재산세	23	40,951,900	폐문부재
1595	유*훈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1** 가동 (호암동)	취득세	31	20,342,530	문부재
1596	채*진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1*번길 4*-9 가동 B0*호 (광명동, 라이프맨션)	지방소득세	10	12,177,87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597	이*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길 1*-1* B1**호 (석촌동)	지방소득세	40	13,639,640	기타
1598	김*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8길 2* 4층 4**호 (대방동, 정원뷰)	재산세	17	32,071,620	기타
1599	이*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번길 3*-1* 3**동 3**호 (장덕동, 성덕마을 대방노블랜드3차 아파트)	재산세	2	270,158,350	폐문부재
1600	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라길 5*-7 2**호 (자양동)	재산세	457	281,437,680	기타
1601	최*길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1* 1***동 2**호 (조남동, 시흥목감엘에이치1*단지)	자동차세	100	10,503,350	기타
1602	김*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1* 3**호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아파트)	재산세	2	96,243,250	기타
1603	김*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 1**동 1***호 (신림동, 임광관악파크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9	14,909,170	기타
1604	이*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 4동 1***호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재산세	86	22,589,410	기타
1605	방*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5 1**동 1***호 (언남동, 스파팰리스 리가)	재산세	6	19,125,770	폐문부재
1606	조*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 1***호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방소득세	33	25,887,940	기타
1607	이*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1* 1**동 1***호 (가산동, G밸리 노블루체 스위트)	법인지방소득세	13	15,506,770	기타
1608	우*기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3길 4*-9 3층 3**호 (전수리)	법인지방소득세	2	40,241,100	폐문부재
1609	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1*번길 1*-1* 지하 1호 (십정동)	법인지방소득세	5	22,885,360	기타
1610	K*M*C*N*I*E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길 4*-2* 4**호 (신사동, 오로라빌)	법인지방소득세	8	21,911,660	기타
1611	비*제*홀*스*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1, 9**호 (을지로2가, 보승빌딩)	법인지방소득세	7	345,213,710	해산간주
1612	더*이*갤*리*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 9층 (신림동)	법인지방소득세	1	104,419,400	해산간주
1613	주*회* *치*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 2**-2호 (방배동)	법인지방소득세	11	42,674,740	수취인불명
1614	주*회* *코*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곧로 1*-1, 5**호 (십정동, 삼정빌딩)	법인지방소득세	4	12,281,980	해산간주
1615	주*회* *에*케*앤*이*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길 1*, 4***호 (역삼동, 초원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166,152,520	수취인불명
1616	주*회* *티*엘*M*B* *ㅇ*,*ㅏ*.*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8, 3**호(신사동)	법인지방소득세	3	33,860,090	이사불명
1617	주*회* *플*에*앤*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 와이-9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법인지방소득세	101	17,471,030	주소불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618	이*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5 (개봉동)	지방소득세	3	68,352,910	국외이주자
1619	(*)*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 1***호 (청담동, 현대리버스)	취득세	2	112,006,130	부도폐업
1620	주*회* *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 (응암동)	재산세	12	19,040,960	부도폐업
1621	주*회* *지*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 0*호 (가양동)	취득세	37	1,418,341,640	기타
1622	주*회* *투*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5*, 제비1*호 (영천동, 퍼스트코리아)	취득세	3	102,518,530	수취인불명
1623	(*)*모*파*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길 3*-1, 2층 (상암동, 윤한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17,075,420	부도폐업
1624	(*)*울*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6, 4층 (공릉동)	법인지방소득세	5	13,086,610	부도폐업
1625	김*기		취득세	1	49,605,150	말소자
1626	텔*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 대륭테크노타운8차8**호 (가산동)	주민세	2	31,811,600	부도폐업
1627	(*) *원*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 동관동 4**호 (수서동, 한신사이룩스)	지방소득세	6	19,652,110	해산간주
1628	(*)*영*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 1층3호 (마장동)	법인지방소득세	4	35,469,050	해산간주
1629	(*)*티*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길 1*, 2층(한남동)	지방소득세	15	41,656,380	해산간주
1630	주*회* *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1* 4층 2*호 (신정동)	법인지방소득세	8	545,245,060	수취인불명
1631	주*회* *일*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 A동 4**호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	21,368,340	부도폐업
1632	(*)*도*스*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 5층 아크로오피스 씨2*호(영등포동8가, 드림프라자)	법인지방소득세	2	480,992,530	부도폐업
1633	심*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 2**동5**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취득세	1	125,282,700	국외이주자
1634	(*) *라*이*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 2*, 아라아트센터 5층 (견지동)	법인지방소득세	1	42,287,500	해산간주
1635	(*)*멜*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 9**호 (역삼동)	법인지방소득세	12	12,916,380	해산간주
1636	전*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3* (진관동)	지방소득세	1	77,567,000	말소자
1637	이*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1*-2* 2**호 (도봉동)	지방소득세	9	72,361,400	말소자
1638	박*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길 2* (이촌동)	지방소득세	3	68,642,520	말소자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639	김*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4* 3층 4**호 (역삼동, 골든빌2)	취득세	17	24,677,660	말소자
1640	주*회* *렌*엔*테*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6, 4**-3호 (삼성동, 제이에스타워)	법인지방소득세	9	181,164,280	수취인불명
1641	주*회* *성*합*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가길 5, 2층(공릉동)	지방소득세	3	200,751,190	해산간주
1642	(*)*정*합*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 1동 티1-4*호 (장항동, 웨스턴돔1)	취득세	3	50,650,920	부도폐업
1643	최*강		지방소득세	1	45,562,600	현지이민자
1644	장*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7**번길 1* 2층 (주안동)	취득세	13	37,965,510	말소자
1645	혜*디*씨*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 아남인베스텔 지층 9호 (창천동)	법인지방소득세	2	25,691,240	부도폐업
1646	(*)*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 2**호 (논현동, 세일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2	13,903,790	해산간주
1647	주*회* *아*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2**번길 1*-1*, D동1층 (도당동)	법인지방소득세	18	18,097,170	해산간주
1648	주*회* *티*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 지하1**-1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지방소득세	7	22,161,650	해산간주
1649	주*회* *리*스*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길 9, 5***호 (방이동, 석정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402,401,730	부도폐업
1650	주*회* *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길 1*-3, 3층 (잠원동)	취득세	1	73,638,670	기타
1651	주*회* *이*이*글*벌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길 4(신당동, 아이원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31,983,210	수취인불명
1652	주*회* *이*제*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길 2-1, 3호 (대조동, 대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104,335,950	폐문부재
1653	정*두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 (말산리)	지방소득세	6	15,118,380	말소자
1654	이*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번길 3* (평촌동)	지방소득세	11	13,480,330	말소자
1655	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2*길 2* (용답동)	지방소득세	5	24,536,260	말소자
1656	손*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3* (답십리동)	지방소득세	7	20,889,640	말소자
1657	주*회* *이*트*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 상가1*호 (대흥동, 이대역푸르지오시티)	취득세	1	79,756,880	기타
1658	주*회* *이*제*컴*니*(*M* *O*P*N*)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길 2*, 티4-2호 (도곡동)	법인지방소득세	9	60,177,110	부도폐업
1659	(*)*신*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 1***호,1***호(가락동, 제일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8	23,034,990	해산간주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660	(*)*진*스*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 제4별관 3층(원효로1가)	지방소득세	7	161,768,760	부도폐업
1661	주*회* *돈*산*우*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 5**호 (사우동, 부흥빌딩)	취득세	8	44,624,610	부도폐업
1662	주*회* *리*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길 3*, 1**동 5**호 (청담동, 청담공원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18	12,153,910	부도폐업
1663	주*회* *너*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 에이동 2***호 (송도동)	재산세	41	21,342,990	폐문부재
1664	더*제*이*베*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길 4* 6**씨-1*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법인지방소득세	92	22,419,350	해산간주
1665	주*회* *플*스*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7 (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3	27,256,730	부도폐업
1666	주*회* *드*임*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 1*층 (논현동, 라임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3	29,080,330	부도폐업
1667	(*)*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 5층(역삼동, 고운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1	21,826,360	부도폐업
1668	주*회* *즈*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8, 3**호(마도지구유통업무및지원시설)	법인지방소득세	4	32,182,720	부도폐업
1669	주*회* *림*설*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 2**호 (대치동)	법인지방소득세	1	33,343,260	부도폐업
1670	주*회* *엠*하*징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 비동 1***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법인지방소득세	5	18,598,630	기타
1671	이*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길 1* (영등포동)	지방소득세	6	22,584,690	말소자
1672	황*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길 3*-9 (도곡동)	지방소득세	5	32,759,890	말소자
1673	손*광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길 4 1**호 (갈현동, 호안빌)	취득세	13	108,671,190	말소자
1674	손*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2* 2**호 (논현동)	지방소득세	9	29,060,890	말소자
1675	이*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7* (제기동)	지방소득세	10	79,658,980	말소자
1676	윤*성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번길 5* (하동)	지방소득세	11	25,260,070	말소자
1677	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길 3*-8 4**호 (신림동)	지방소득세	2	17,526,380	말소자
1678	(*)*동*역*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길 1*, (장안동)	법인지방소득세	3	40,869,450	부도폐업
1679	승*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 갑을그레이트밸리 5층 비동 5**호 (가산동)	법인지방소득세	12	244,036,560	해산간주
1680	주*회* *음*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 5**호 (쌍문동, 백경타운)	법인지방소득세	3	45,460,960	부도폐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새액(원)	공시송달사유
1681	주*회* *지*랜*퍼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 테크노동 8***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지방소득세	3	42,063,830	부도폐업
1682	서*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길 5*, 4층(방배동)	법인지방소득세	4	17,003,390	파산폐지
1683	주*회* *플*디*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 3***.3호 (삼성동,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타단지)	법인지방소득세	1	29,531,040	수취인불명
1684	주*회* *피*컴*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 1*층(역삼동, 한중앙타워)	법인지방소득세	4	24,666,580	기타
1685	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2길 7* (길음동)	취득세	1	24,592,180	국외이주자
1686	이*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1* 1**동 1***호 (고척동, 동아·한신아파트)	지방소득세	2	19,036,340	국외이주자
1687	우*년		취득세	1	24,592,180	국외이주자
1688	우*년		취득세	1	24,592,180	국외이주자
1689	에*에*피*산*용*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길 3, (청담동)	법인지방소득세	12	120,239,270	청산종결
1690	멜*인*내*널*베*먼*리*티*	중국 홍콩 센트럴 데 보유 로드 1* 월드와이드하우스 2*층	지방소득세	5	26,062,708,450	현지이민자
1691	백*화		지방소득세	4	45,572,070	현지이민자
1692	주*회* *원*합*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길 2* 3**호 (서초동, 신성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2	112,793,370	기타
1693	주*회* *승*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 3**호 (상계동, 하이베라스)	법인지방소득세	5	29,371,580	수취인불명
1694	(*)*탑*아*렛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길 2*, 5***호 (대치동, 대동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328,603,690	해산간주
1695	주*회*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 5**호 (구의동, 목림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8	17,582,240	부도폐업
1696	주*회* *이*스*파*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길 1*, 비1층 1**-1**호(서초동)	법인지방소득세	15	11,100,140	해산간주
1697	주*회* *이*커*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9* 2층 2**호 내 브이2**호 (용두동, 동대문 베네스트)	법인지방소득세	6	22,665,640	이사불명
1698	유*회* *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길 4*, 6**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법인지방소득세	1	193,965,870	부도폐업
1699	주*회* *주*리*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북길 1**, (도두이동)	자동차세	100	10,503,350	수취인불명
1700	주*회* *이*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단로3길 8, 2**호 (서운동)	법인지방소득세	5	12,657,610	기타
1701	(*)*피*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 4**호 (장안동, 장안삼성쉐르빌)	법인지방소득세	3	49,485,860	해산간주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702	신*복		지방소득세	2	71,650,960	국외이주자
1703	퀸*스*어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길 2*, 6층(신당동, 광희패션몰)	지방소득세	7	13,001,560	부도폐업
1704	주*회* *앙*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 9**호 (상현동, 미주프라자)	재산세	3	61,699,710	수취인불명
1705	주*회* *발*Z*b*l*C*.*L*d*)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길 3*, 옥탑 (중곡동)	취득세	4	27,128,890	기타
1706	주*회* *비*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번길 1*-1, 4**-2*호 (구갈동, 인텔존)	재산세	21	42,865,700	수취인불명
1707	강*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 6**호 (천호동, 금호아파트)	지방소득세	14	51,270,640	말소자
1708	윤*홍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 (구천동)	취득세	16	31,897,300	말소자
1709	동*쁘*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 1***호 (봉천동, 예성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2	21,643,250	해산간주
1710	주*회* *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 B동 비2**호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지방소득세	1	16,301,640	이사불명
1711	(*)*디*인*렌*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길 1*, 비동 4**호 (대치동, 샹제리제센터)	법인지방소득세	15	58,682,710	해산간주
1712	(*)*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 1***호 (대치동, 디아이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	12,996,100	해산간주
1713	B*N*C*A*D*A		지방소득세	1	29,066,030	말소자
1714	정*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5*-1* (지석리)	취득세	26	35,033,640	말소자
1715	김*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길 3*-9 (도곡동)	지방소득세	40	111,721,190	말소자
1716	이*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 4층 (역삼동)	지방소득세	27	16,108,540	말소자
1717	안*선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7* (야당동)	지방소득세	6	22,614,490	말소자
1718	주*회* *앨*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1**-1*, 1**호 (방교동, 센터프라자)	재산세	20	14,253,980	수취인불명
1719	(*)*이*이*스*터*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1*길 1*, 1**호 (거여동)	법인지방소득세	7	151,656,510	부도폐업
1720	주*회* *엔*파*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길 2* (잠원동, 대능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	550,156,480	부도폐업
1721	주*회* *엘*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길 4*, 2**호 (구로동, 그린빌)	취득세	58	380,196,840	기타
1722	주*회* *와*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 2층 2**호(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4	202,116,87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723	김*성		지방소득세	1	12,570,350	국외이주자
1724	김*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2* 나동 5**호 (상도동, 칠성빌라)	지방소득세	5	166,069,570	말소자
1725	강*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1* (혜화동)	지방소득세	2	41,035,680	말소자
1726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길 1* (공덕동)	지방소득세	16	22,797,030	말소자
1727	김*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길 1* 3층 (방이동)	지방소득세	29	229,867,150	말소자
1728	조*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 (역삼동)	지방소득세	4	192,839,890	말소자
1729	해*그*정*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길 1*, (당산동3가)	법인지방소득세	8	23,843,430	파산폐지
1730	랜*마*플*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명화빌딩 4층 (서초동)	지방소득세	23	169,900,080	부도폐업
1731	스*들*지*틱*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 7**동 8**호 (마곡동, 마곡엠벨리7단지)	법인지방소득세	9	79,662,530	파산폐지
1732	(*)*아*인*내*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 5**호 (마장동, 동방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	637,126,290	부도폐업
1733	(*)*리*바*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1*, 4**호 (구의동, 강변역지너스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	479,917,900	부도폐업
1734	주*회* *도*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 지동 2**호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법인지방소득세	18	13,235,010	기타
1735	주*회* *슬*양*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흥성로 2***-1*, (원봉리)	재산세	6	36,503,270	기타
1736	주*회* *양*거*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4층(종로3가, 종로3가귀금속백화점)	법인지방소득세	1	33,143,760	부도폐업
1737	함*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 (신사동)	지방소득세	1	16,824,350	말소자
1738	최*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3**번길 7* 1**호 (마송리)	지방소득세	2	435,840,200	말소자
1739	한*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 4** (대동리)	취득세	2	20,014,080	말소자
1740	주*회*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길 1**, 9**-4*호 (내발산동, 신원메디칼프라자)	법인지방소득세	5	996,677,230	부도폐업
1741	주*회* *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9*, 1**호 (양재동, 우성아파트 단지내 상가)	지방소득세	19	52,285,340	기타
1742	주*회* *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 4층(성내동, 루멘파이낸스빌딩)	법인지방소득세	6	31,666,590	이사불명
1743	유*희		지방소득세	1	26,762,410	국외이주자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744	김*필		취득세	3	35,367,840	현지이민자
1745	오*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길 3 (서초동)	지방소득세	42	18,451,250	말소자
1746	이*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길 6 (문정동, 장지동주민센터)	지방소득세	7	37,476,040	말소자
1747	니*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 (역삼동)	주민세	6	1,185,046,960	파산폐지
1748	주*회* *아*로*티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8*, 5**호 (북변동, 사우테마프라자)	등록면허세	7	12,237,530	수취인불명
1749	(*)*오*통*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길 7*, 2**호 (마장동, 그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35,693,640	해산간주
1750	주*회* *이*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 쌍림빌딩 6**호 (쌍림동)	법인지방소득세	2	40,241,100	해산간주
1751	주*회* *노*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길 3*, 3*호 (성수동2가)	법인지방소득세	2	35,055,070	이사불명
1752	(*)*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길 2*, 5**호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1차)	법인지방소득세	5	24,653,620	파산폐지
1753	영*조*법* *모*농*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6*, B동 1***호 (한남동, 한남동 리첸시아)	법인지방소득세	2	33,427,370	부도폐업
1754	주*회* *이*파*너*컨*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길 1*, 3**호 (역삼동, JS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110,277,470	수취인불명
1755	주*회* *이*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 1***호 (서초동, 부띠크 모나코)	법인지방소득세	2	18,049,800	수취인불명
1756	이*석		취득세	2	153,732,770	국외이주자
1757	이*수		취득세	1	153,118,580	국외이주자
1758	아*리*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 을지회관 6층 (을지로6가)	법인지방소득세	4	77,419,920	부도폐업
1759	한*세*컴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길 1*, 바동 4***호(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법인지방소득세	1	15,019,370	해산간주
1760	(*)*원*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길 9, 3**호 (방이동, 한성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	14,526,770	해산간주
1761	금*컴*니*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길 3*, 3**호, (장안동, 공감대 6차)	지방소득세	15	886,948,940	부도폐업
1762	주*회* *백*(*u*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길 3, 2층 (대치동)	법인지방소득세	19	45,735,240	수취인불명
1763	주*회* *라*드*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 6층(수진동, 나눔빌딩)	지방소득세	12	15,046,630	이사불명
1764	주*회* *레*홀*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 5***호 (역삼동)	법인지방소득세	2	240,118,740	부도폐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765	(*)*룡*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2호 (가산동, IT캐슬2차)	법인지방소득세	7	32,097,140	부도폐업
1766	주*회* *비*니*컨*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6-9, 4**호 (역삼동, 석암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	38,462,850	수취인불명
1767	허*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길 7* (성내동)	지방소득세	4	25,209,030	말소자
1768	홍*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길 5 (오금동)	지방소득세	7	101,947,680	말소자
1769	주*회* *성*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길 9*, (구로동, 에스티엑스 더블유 타워)	법인지방소득세	22	48,548,900	주소불명
1770	이*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5 (개봉동)	지방소득세	1	68,149,460	국외이주자
1771	박*준		지방소득세	2	44,799,780	국외이주자
1772	(*)*톰*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 (청파동2가)	법인지방소득세	33	39,500,050	부도폐업
1773	주*회* *송*설*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2*, 2**호 (부평리)	법인지방소득세	28	44,579,440	부도폐업
1774	주*회* *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3*, 4**호 (논현동, 논현웰스톤)	법인지방소득세	6	25,545,430	기타
1775	주*회* *브*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 1***호 (역삼동, 아남타워빌딩)	법인지방소득세	6	20,960,390	수취인불명
1776	주*회* *에*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 1***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법인지방소득세	4	75,508,200	수취인불명
1777	(*)*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 (방학동)	지방소득세	3	15,917,970	부도폐업
1778	주*회* *에*시*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 4**호 (역삼동, 에스케이허브)	법인지방소득세	9	234,516,260	수취인불명
1779	신*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 (문정동)	지방소득세	5	21,750,360	말소자
1780	주*회* *니*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3-6, 2층 (문정동)	법인지방소득세	1	13,151,250	부도폐업
1781	주*회* *도*베*트*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 (삼성동, BAMBU TOWER)	법인지방소득세	2	22,732,010	수취인불명
1782	주*회* *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길 6, (신사동)	주민세	47	105,073,870	파산폐지
1783	주*회* *어*홀*스*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 4**호 (서초동, 서초쌍용플래티넘)	법인지방소득세	1	30,604,600	부도폐업
1784	(*)*아*코*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 1***호(역삼동, 역삼아르누보시티)	법인지방소득세	3	12,701,180	부도폐업
1785	(*)*에*디*토*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길 6 1**호 (망우동, 아름빌딩)	법인지방소득세	4	162,275,040	부도폐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786	주*회* *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 3**-1**호 (암사동, 정산)	법인지방소득세	3	418,281,950	수취인불명
1787	주*회* *로*스*재*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 1***호 (가산동, SJ테크노빌)	법인지방소득세	6	50,387,030	수취인불명
1788	디*인* *한*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 1**호 (반포동, 신논현타워)	법인지방소득세	2	19,444,280	부도폐업
1789	(*)*원*퍼*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 1층(논현동, 보성럭스타운)	법인지방소득세	8	70,195,550	부도폐업
1790	(*)*지*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 8**호 (대치동, 디아이타워)	법인지방소득세	1	22,831,830	해산간주
1791	홍*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번길 3-3 2**호 (청라동)	지방소득세	12	12,630,290	말소자
1792	박*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1*-1 (부전동)	취득세	22	34,002,950	말소자
1793	(*) *울*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길 8-1*, 4**호 (삼전동)	법인지방소득세	2	23,288,030	해산간주
1794	주*회* *하*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9 2**호 (방배동, 보우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3	52,178,980	수취인불명
1795	주*한*비*니*협*아*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 지층 1**-비3호	법인지방소득세	9	42,075,220	부도폐업
1796	주*회* *준*룹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8*-1(금곡동)	법인지방소득세	7	23,959,060	수취인불명
1797	김*석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 1**동 3**호 (쌍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지방소득세	3	60,362,600	말소자
1798	주*회* *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 (신림동)	취득세	11	61,126,380	부도폐업
1799	(*)*하*트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5*번길 4-3*, 상가동 1**-1호 (금곡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법인지방소득세	3	226,749,770	부도폐업
1800	(*)*단*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길 1*, 6**호 (신사동, 성환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16,215,470	부도폐업
1801	주*회* *남*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9*, 8**호 (한남동)	법인지방소득세	5	45,621,530	폐문부재
1802	(*)*구*업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2**번길 3*-2*, (신봉리)	법인지방소득세	1	19,890,090	해산간주
1803	(*)*루*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 1**호 (서초동, 중앙로얄오피스텔)	법인지방소득세	10	34,427,190	부도폐업
1804	주*회* *샘*지*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1, (을지로5가)	법인지방소득세	4	29,945,620	수취인불명
1805	주*회* *솔*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길 6*, 비1호 (중곡동)	법인지방소득세	7	26,737,580	기타
1806	모*터*룹*리* *한*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 9층 (여의도동)	법인지방소득세	7	145,034,660	파산폐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807	주*회* *신*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 1**-2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지방소득세	4	42,148,770	수취인불명
1808	(*)*우*이*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 4**호 (서교동)	법인지방소득세	12	166,974,580	부도폐업
1809	양*숙		지방소득세	1	48,661,000	현지이민자
1810	주*회* *아*컴*니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 4층(신당동)	법인지방소득세	26	24,590,480	수취인불명
1811	신*정*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길 4, D동 3**호 (구로동, 공구상가 일번지)	등록세	36	14,794,000	해산간주
1812	주*회* *양*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 6-1, (신월동)	법인지방소득세	10	25,240,860	해산간주
1813	아*컨*리*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 6**호 (장안동, 황주빌딩)	주민세	46	13,552,890	해산간주
1814	유*이*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 삼부빌딩1*층 (역삼동)	자동차세	63	12,564,860	해산간주
1815	(*)*창*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4*, 중앙빌딩 3**호 (성내동)	법인지방소득세	6	15,239,410	부도폐업
1816	이*아*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 2**호 (서초동, 벽은빌딩)	법인지방소득세	41	11,841,490	해산간주
1817	(*) *H*모*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길 2*, A동 1**호,3**호 (율현동)	법인지방소득세	22	16,287,000	해산간주
1818	약*게*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길 1*, 9**호 (여의도동, 유니온타워)	법인지방소득세	44	20,545,130	해산간주
1819	(*)*디*쿄*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 4**호 (구로동, 대림오피스밸리)	자동차세	64	10,332,260	해산간주
1820	(*)*더*나*컨*팅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재산세	14	28,040,540	부도폐업
1821	연*이*씨*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길 2*-2*, 4**호 (삼전동)	법인지방소득세	12	12,420,610	부도폐업
1822	(*)*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 (숭인동)	재산세	26	17,006,240	해산간주
1823	주*회* *울*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번길 4*-3, 5**호 (원미동, 유엔빌리지)	취득세	56	21,076,880	기타
1824	(*)*이*펙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5*, 4층 (잠원동, 라성빌딩)	자동차세	33	13,464,290	해산간주
1825	주*회* *냄*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길 8* (삼성동)	법인지방소득세	2	23,196,180	주소불명
1826	주*회* *성*더*트*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2*-2*, 6**호 (금촌동, 보람프라자)	법인지방소득세	3	91,535,420	부도폐업
1827	(*) *스*리*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 1**호 (한남동, 한남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3	21,016,170	부도폐업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828	(*)*든*로*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 7**-3호 (관양동, 평촌동양트레벨파크)	법인지방소득세	14	14,466,210	해산간주
1829	호*네*웍*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 2***호 (서초동, 부띠크 모나코)	재산세	22	19,263,700	부도폐업
1830	(*)*과*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번길 2*, 3**동 2**호 (상하동, 수원동마을쌍용3단지)	지방소득세	10	20,939,080	해산간주
1831	제*온*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 8동 3**호 (잠원동)	법인지방소득세	6	14,262,620	해산간주
1832	주*회* *오*디*씨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길 8*, 2층 2**호(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법인지방소득세	1	17,062,580	해산간주
1833	나*투*페*스*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 5**호 (구로동, 스타펠리스)	법인지방소득세	40	13,215,120	해산간주
1834	(*)*씨*씨*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호 (가산동, IT캐슬2차)	지방소득세	29	21,448,750	부도폐업
1835	주*회* *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2*, 9호 (경안동)	재산세	22	17,218,480	부도폐업
1836	엠*이*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 7층(역삼동, 힐헤븐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2	20,823,710	부도폐업
1837	이*이*자*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4**-2*, 1**동 3**호 (등원리, 부호드림빌)	취득세	61	13,888,970	부도폐업
1838	주*회* *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번길 1*, 4**호 (청라동, 청라 큐브시그니처 1차 오피스텔)	재산세	3	26,387,090	수취인불명
1839	(*)*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 (부전동, 코트디부아르영사관)	법인지방소득세	7	21,808,510	부도폐업
1840	주*회* *호*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 3층(무학동)	지방소득세	8	57,566,920	부도폐업
1841	주*회*)*이*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길 1*, 4***호 (역삼동, 초원빌딩)	법인지방소득세	2	25,643,150	해산간주
1842	주*회*디*미*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 (등촌동, 경향교회선교관)	법인지방소득세	14	38,043,700	수취인불명
1843	주*회*쓰*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 4**-p3호 (가양동, 토피아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479,790,140	부도폐업
1844	주*회*엠*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번길 2*, 3**-2*호 (신곡리, 세종프라자)	재산세	2	15,449,920	부도폐업
1845	주*회*옳*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번길 1*-1*, (구월동)	취득세	20	48,040,060	기타
1846	주*회*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번길 2*, 2**호 (중동)	취득세	50	21,214,640	기타
1847	(*)*이*엘*터*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골길 4, (내곡동)	지방소득세	14	12,597,520	부도폐업
1848	중*리*스* *식*사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 2동 엠 1***호 (별내동, 별내역 파라곤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재산세	6	19,125,770	기타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849	(*)*엘*플*스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길 3, 5층 (신당동, 약수JK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5	13,896,400	해산간주
1850	케*아*비*너*인*라*딩*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 5***호 (역삼동, 함양재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0	251,311,790	부도폐업
1851	케*티*스*트*스*주*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길 1*, 비1층 1**-2**호 (서초동)	법인지방소득세	4	22,321,790	수취인불명
1852	(*)*수*제*컴*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 1*층 3호 (역삼동, 동일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3	16,183,500	부도폐업
1853	쿠*코*벨*먼*코*아*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 4층 (대치동, 해성1빌딩)	법인지방소득세	1	62,650,970	파산폐지
1854	법*법*(*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길 6*, (서초동, 영서빌딩)	법인지방소득세	31	15,953,300	해산간주
1855	태*무* *식*사*T*e*e*n* *n*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길 4*, (이태원동)	법인지방소득세	31	12,017,430	폐문부재
1856	티*아*프*즈*식*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길 3*, 1층 우측점포(봉천동)	법인지방소득세	10	17,163,780	부도폐업
1857	파*노*주*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1호 (가산동,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법인지방소득세	10	862,258,530	수취인불명
1858	한*블*체*연*개*협* *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9, 5층 7**호(대치동, 선릉역대우아이 빌)	법인지방소득세	1	49,134,650	부도폐업
1859	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번길 5, 4***호 (영통동)	재산세	47	12,432,160	부도폐업
1860	(*)*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 (잠실동)	취득세	31	20,342,530	해산간주
1861	한*음*발*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1*, 비동 2**호 (삼성동, 엘지선릉에클라트)	법인지방소득세	9	77,660,800	수취인불명
1862	한*산*개* *식*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길 4, 2층 (북아현동)	법인지방소득세	8	24,529,640	수취인불명
1863	한*기*중* *식*사	인천광역시 서구 길무로 2**, (오류동)	취득세	24	20,816,450	부도폐업
1864	한*연		재산세	27	19,665,730	현지이민자
1865	유*열		지방소득세	4	18,161,660	현지이민자
1866	박*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5* (도곡동)	재산세	10	45,449,300	말소자
1867	이*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1길 4*-7 (서리)	지방소득세	107	12,239,660	말소자
1868	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 5층 (개포동)	취득세	8	29,074,970	말소자
1869	이*석		재산세	24	15,604,550	현지이민자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870	김*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4* (창동)	지방소득세	31	14,155,720	말소자
1871	방*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8*길 6* (천호동)	취득세	195	46,468,630	말소자
1872	김*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 (수유동)	지방소득세	101	12,672,730	말소자
1873	이*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3** (월문리)	지방소득세	33	18,980,530	말소자
1874	김*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길 2*-1* 4**호 (갈현동, 한일그린빌)	지방소득세	42	13,703,890	말소자
1875	장*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가길 4* 지층비0* (화곡동)	재산세	6	21,626,570	말소자
1876	이*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5*길 3*-2* 다동 1층 1**호 (수유동, 동익연립)	지방소득세	36	12,627,870	말소자
1877	박*식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 1**동 7**호 (덕풍동, 하남 더샵 센트럴뷰)	법인지방소득세	3	13,007,160	말소자
1878	김*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2*길 2* 4**호 (미아동)	재산세	6	13,230,300	말소자
1879	오*협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 6**호 (중리동, 반석오피스텔)	자동차세	51	10,782,010	말소자
1880	권*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6 (후암동)	지방소득세	23	13,115,290	말소자
1881	이*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길 2* B동 2***호 (한강로2가,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	지방소득세	14	19,044,630	말소자
1882	이*중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길 3*-2* (회현동1가)	지방소득세	18	17,675,120	말소자
1883	김*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 (면목동)	지방소득세	30	18,662,790	말소자
1884	(*)*이*플*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 2**호(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법인지방소득세	4	53,980,280	해산간주
1885	훈*주*회*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8(월산동)	취득세	436	62,608,350	폐문부재
1886	(*)*토*앤*(*O*T* *&* *O*, *t*)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1***호 (문정동, 파트너스1)	법인지방소득세	1	31,500,060	해산간주
1887	온*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길 2* (영등포동4가)	법인지방소득세	4	16,301,920	사망말소
1888	김*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1** 7**호 (광안동, 경동리인)	재산세	10	24,605,590	거주불명
1889	강*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 반포1동 주민센터 (반포동)	법인지방소득세	2	34,944,830	해외체류자
1890	김*호		법인지방소득세	16	12,883,545,590	국외이주자

연번	성명	전체주소	대표세목	체납건수	체납세액(원)	공시송달사유
1891	박*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4길 3* 2***동 1***호 (옥정동, 더파크포레태영엔에이치에프)	법인지방소득세	2	104,335,950	사망말소
1892	강*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번길 4*-3 5**호 (원미동, 유엔빌리지)	취득세	56	21,076,880	거주불명
1893	김*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6* (부평동)	법인지방소득세	9	90,525,910	거주불명
1894	김*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번길 3* 3**호 (안양동)	법인지방소득세	2	18,496,450	거주불명
1895	김*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8길 5 1**동 7**호 (금호동3가, 금호1차푸르지오아파트)	지방소득세	10	98,752,840	거주불명
1896	정*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1 A동 1**호 (주안동, 오담빌라)	법인지방소득세	5	16,367,650	거주불명
1897	김*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7 (남평리)	법인지방소득세	5	2,168,620,780	거주불명
1898	이*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 (논현동)	법인지방소득세	16	133,816,150	거주불명
1899	정*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 (대림동)	법인지방소득세	40	13,215,120	거주불명
1900	박*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원로 4* (사직동)	지방소득세	23	169,900,080	거주불명
1901	전*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3*번길 1* (남수동)	법인지방소득세	8	178,964,600	거주불명
1902	진*화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황도구륙왕진전화촌 3**호	법인지방소득세	7	32,097,140	국외이주자
1903	Z*N* *I*N*E*G	복건성 보전시 여성구 신도진 구구촌 정횡산 서패6*호	법인지방소득세	7	38,025,470	국외이주자
1904	양*석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 1***동 4**호 (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취득세	2	875,886,170	사망말소
1905	이*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 A동 2***호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법인지방소득세	12	120,239,270	재외국민거주자
1906	민*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 (구로동)	법인지방소득세	3	25,724,490	거주불명
1907	존*		법인지방소득세	1	62,650,970	국외이주자
1908	스*판*이*제*스		법인지방소득세	7	145,034,660	국외이주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47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의거,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7.(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02-3146-262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및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각 1부. 끝.

현금종류	보관일자 (입금일자)	보관사유 (적요)	관리부서 (납입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 (원)
임시급수보증금	2017-11-13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이O훈	2017-11-09	1,216,260
임시급수보증금	2018-07-31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태O업	2018-06-05	3,629,880
임시급수보증금	2018-06-27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무O탁(쥐태O설)	2018-06-14	14,879,700
임시급수보증금	2011-01-13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정O현(현O설)	2013-01-01	7,062,900
임시급수보증금	2013-12-31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현O설(주)	2013-12-12	7,062,900
임시급수보증금	2014-04-14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포O설	2014-03-19	7,146,600
임시급수보증금	2014-04-14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에O설	2014-03-31	7,146,600
임시급수보증금	2014-04-14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주)에O설	2014-04-11	7,146,600
임시급수보증금	2014-08-19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효O	2014-08-14	970,320
임시급수보증금	2014-12-08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대O주식회사	2014-11-25	2,647,350
임시급수보증금	2015-04-15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주)포O건축사사무소	2015-04-09	3,284,490
임시급수보증금	2012-04-03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성O모	2015-12-29	878,040
임시급수보증금	2018-03-13	임시급수보증금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양O근	2018-03-05	3,629,7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52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98호(2000.07.2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7호(2015.07.16.)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01호(2002.05.2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97호(2025.11.6.)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월드컵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3. 면　　적 : 2,284,085㎡
4.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 노을공원 : 조형물 1기 신설, 조형물 진입도로(80㎡) 및 광장(340㎡) 신설, 조경시설 420㎡ 감소
   -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 변경사항 없음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02-2133-9203)
8.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부.
2.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도 1부.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가. 총괄표(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2,284,085	775,939.59	67	7,845.31	11,560.00	4,531	2,284,085	775,939.59	67	7,845.31	11,560.00	4,532	지 1기
기반시설	소계	289,557.6	289,557.6					289,977.6	289,977.6					지 420
	도로	227,411.4	227,411.4					227,491.4	227,491.4					지 80
	광장	62,146.2	62,146.2					62,486.2	62,486.2					지 340
조경시설		235,619.10	235,619.10				394	235,199.10	235,119.10				395	지 1기
휴양시설		70,090.6	70,090.6				1,410	70,090.6	70,090.6				1,410	
유희시설		5,826	5,826				159	5,826	5,826				159	
운동시설		75,886	75,886				20	75,886	75,886				2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20,868	20,868	2	2,098	3,794	37	20,868	20,868	2	2,098	3,794	37	
편익시설	69,406.03	69,406.03	27	2,301.15	2,381.86	120	69,406.03	69,406.03	27	2,301.15	2,381.86	120	
관리시설	6,186.26	6,186.26	38	3,446.16	5,384.14	2,391	6,186.26	6,186.26	38	3,446.16	5,384.14	2,391	
녹지및기타	1,510,645.41	2,500					1,510,645.41	2,500					
시설률 (법정 40%)	(775,939.59㎡/2,284,085㎡)x100=33.97%						(775,939.59㎡/2,284,085㎡)x100=33.97%						변경없음
건폐율 (법정 10%)	(7,845,31㎡/2,284,085㎡)x100=0.34%						(7,845,31㎡/2,284,085㎡)x100=0.34%						변경없음

○ 노을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8)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3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4	지 1기
기반시설	소계	67,205	67,205					67,625	67,625					지 420
	도로	66,079	66,079					66,159	66,159					지 80
	광장	1,126	1,126					1,466	1,466					지 340
조경시설		138,376.1	138,376.1				90	137,956.1	137,956.1				91	지 1기
휴양시설		22,700	22,700				79	22,700	22,700				79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8)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7						7	
운동시설		56,475	56,475					56,475	56,475					
교양시설		32	32	1	32	32	3	32	32	1	32	32	3	
편익시설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관리시설		820.90	820.90	12	781.4	781.4	143	820.90	820.90	12	781.4	781.4	143	
녹지 및 기타	소계	624,670.96						624,670.96						
	녹지	624,670.96						624,670.96						

○ 하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72번지 일대)-변경없음

○ 난지천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8번지 일대)-변경없음

○ 평화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5번지 일대)-변경없음

○ 시설조서(노을공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3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4	지 1기
기반시설	소계			67,205	67,205								67,625	67,625						지 420
	도로		전지역	66,079	66,079							전지역	66,159	66,159						지 80
	광장	가		1,126	1,126						가		1,466	1,466						지 340
		가-1	상암478-1	237	237						가-1	상암478-1	237	237						
		가-2	상암478-1	678	678						가-2	상암478-1	678	678						
		가-3	상암481-36	211	211						가-3	상암481-36	211	2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4	상암478-1	340	340	4					
조경시설	소 계			138,376.1	138,376.1					90			137,956.1	137,956.1					91	증 1기
	초지공원	나	상암478-1	111,114.1	111,114.1						나	상암478-1	111,114.1	111,114.1						
	잔디밭	다	상암478-1	7,567	7,567						다	상암478-1	7,147	7,147						감 420
	돌망태	라	상암478-1	520	520						라	상암478-1	520	520						
	자연물놀이터	마	상암478-1	7,630	7,630						마	상암478-1	7,630	7,630						
	도시농부정원	바	상암478-1	6,500	6,500						바	상암478-1	6,500	6,500						
	자생화단	사	상암478-1	5,045	5,045						사	상암478-1	5,045	5,045						
	파고라	①	전지역							(7)	①	전지역							(7)	
		1-1	전지역							8	1-1	전지역							8	
	막구조파고	②	전지역							(11)	②	전지역							(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																				
초정		③	전지역							(47)	③	전지역							(47)	
목재데크		④	전지역							1	④	전지역							1	
조형물		⑤	전지역							16	⑤	전지역							17	증1기
휴양시설	소계			22,700	22,700					79			22,700	22,700					79	
	노을캠핑장	아		22,700	22,700						아		22,700	22,700						
		아-1	상암478-1	7,300	7,300						아-1	상암478-1	7,300	7,300						
		아-2	상암478-1	8,800	8,800						아-2	상암478-1	8,800	8,800						
		아-3	상암478-1	6,600	6,600						아-3	상암478-1	6,600	6,600						
	등의자	⑥	전지역							25	⑥	전지역							25	
		6-1	전지역							54	6-1	전지역							5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놀이시설	소계			56,475	56,475					7			56,475	56,475					7	
놀이시설	무당벌레 아지트	⑦	상암481-6							1	⑦	상암481-6							1	
놀이시설	통나무그물 놀이대	⑧	상암481-6							1	⑧	상암481-6							1	
놀이시설	우드볼 하우스	⑨	상암481-6							1	⑨	상암481-6							1	
놀이시설	통나무 건너기	⑩	상암481-6							1	⑩	상암481-6							1	
놀이시설	통나무복합 놀이대	⑲	상암481-6							1	⑲	상암481-6							1	
놀이시설	통나무 오르기	⑳	상암481-6							1	⑳	상암481-6							1	
놀이시설	인디언 놀이집	㉑	상암481-6							1	㉑	상암481-6							1	
놀이시설	소계			56,475	56,475								56,475	56,475						
놀이시설	파크골프장	자	상암478-1	30,500	30,500						자	상암478-1	30,500	30,500						
		자-1	상암478-1	12,350	12,350						자-1	상암478-1	12,350	12,35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자-2	상암478-1	13,625	13,625						자-2	상암478-1	13,625	13,625						
양교시설	소 계			32	32		1	32	32	3			32	32		1	32	32	3	
	누에생태체험관	1	상암478-1	32	32	목재	1	32	32		1	상암478-1	32	32	목재	1	32	32		
	책방	⑱	상암478-1							3	⑱	상암478-1							3	
편의시설	소 계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전망대	차		645	645						차		645	645						
		차-1	상암478-1	(164)	(164)						차-1	상암478-1	(164)	(164)						
		차-2	상암478-1	(138)	(138)						차-2	상암478-1	(138)	(138)						
		차-3	상암478-1	(153)	(153)						차-3	상암478-1	(153)	(153)						
		차-4	상암478-1	(190)	(190)						차-4	상암478-1	(190)	(190)						
	화장실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매점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패널	1	157.43	238.14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패널	1	157.43	238.14		
	음수대	⑪	전지역							9	⑪	전지역							9	
	목재계단	⑫	전지역							2	⑫	전지역							2	
관	소 계			820.9	820.9		12	781.40	781.40	143			820.9	820.9		12	781.40	781.40	14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파크골프장 관리소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클럽하우스	4-1	전지역	130.9	130.9		1	118.40	118.40		4-1	전지역	130.9	130.9		1	118.40	118.40		
안내소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창고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1	전지역	30	30	경량 패널	1	30	30		6-1	전지역	30	30	경량 패널	1	30	30		
	6-2	전지역	90	90	경량 패널	1	90	90		6-2	전지역	90	90	경량 패널	1	90	90		
	6-3	전지역	108	108	경량 패널	1	108	108		6-3	전지역	108	108	경량 패널	1	108	108		
	6-4	전지역	97	97	경량 패널	1	97	97		6-4	전지역	97	97	경량 패널	1	97	97		

리 시 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펌프실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기계실 및 물탱크실	7-1	전지역	60	60		1	60	60		7-1	전지역	60	60		1	60	60		
	목책	⑬	전지역							1식	⑬	전지역							1식	
	휴지통	⑭	전지역							10	⑭	전지역							10	
	공원등	⑮	전지역							115	⑮	전지역							115	
	안내판	⑯	전지역							5	⑯	전지역							5	
	cctv	⑰	전지역							13	⑰	전지역							13	
녹지 및 기타	소 계			624,670.96									624,670.96							
	녹 지		전지역	624,670.96								전지역	624,670.96							

○ 시설조서(하늘공원) : 변경없음

○ 시설조서(난지천공원) : 변경없음

○ 시설조서(평화의공원) : 변경없음

○ 도로조서(노을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합 계				11,138	66,159				
당초	소 로	소 계			7,717	56,855				
당초		1	1	11	1,830	20,1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7	643	4,501	내부도	소로 1-1	경기도경계	
당초			2	7	829	5,803	내부도	경기도경계	공원동측경계	
당초			3	7	1,419	9,933	내부도	공원동측경계	소로 1-1	
당초			4	5.5	1,834	10,087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당초			5	5.5	1,162	6,391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변경	산책로	소 계			3.421	9,304				
당초			1	3	1,358	4,074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1	황토포장
당초			3	3	252	75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황토포장
당초			4	2	48	9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황토포장
당초			7	2	120	24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8	2	21	42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0	황토포장
당초			9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1	황토포장
당초			10	2	92	18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11	2	147	294	산책로	운동장	운동장	황토포장
당초			12	2	306	612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3	황토포장
당초			13	3	211	633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2	황토포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	3	572	1,71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황토포장
당초			5	2	29	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6	2	41	8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14	3	43	129	산책로	산책로2	방공진지	황토포장
신설			15	3	27	80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4	컬러 아스콘

○ 도로조서(하늘공원) : 변경없음

○ 도로조서(난지천공원) : 변경없음

○ 도로조서(평화의공원) : 변경없음

월드컵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5,000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5,000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월드컵공원

SCALE=1/2,00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목 (기)	비 고
합	계		911,859	287,188.04	333	
기반시설	소 계		67,205	67,205		
	도 로	㉮ ㉯	66,079	66,079		
	광 장	가-1	237	237		
		가-2	678	678		
		가-3	211	211		
조경시설	소 계		138,376.1	138,376.1	90	
	초 지 공 원	나	111,114.1	111,114.1		
	잔 디 밭	다	7,567	7,567		
	물 양 대	라	520	520		
	자연물놀이터	마	7,630	7,630		
	도시농부정원	바	6,500	6,500		
	자생화단	사	5,045	5,045		
	파 고 라	①			7	
		1-1			8	
	억구조파고라	②			11	
	초 정	③			47	
	목 재 데 크	④			1	
	조 형 물	⑤			16	
휴양시설	소 계		22,700	22,700	79	
	노을캠핑장	아-1	7,300	7,300		
		아-2	8,800	8,800		
		아-3	6,600	6,600		
	등 의 자	⑥			25	
		6-1			54	
유희시설	소 계				4	
	무당벌레이지트	⑦			1	
	통나무그물놀이대	⑧			1	
	무드볼하우스	⑨			1	
	통나무미니기	⑧			1	
	통나무복합놀이대	⊖			1	
	통나무오르기	⊖			1	
	인디언놀이집	⊖			1	
운동시설	소 계		56,975	56,975		
	피크클리장	자	31,500	31,500		
		자-1	12,850	12,850		
		자-2	13,625	13,625		
교양시설	소 계		32	32	3	
	누에생태체험장	1565 단	32	32		
	학 장	⊖			3	
편익시설	소 계		1,579.04	1,579.04	31	
	화 장 실	화-1	164	164		
		화-2	139	139		
		화-3	153	153		
		화-4	139	139		
	정 자	2-1	84.31	84.31		
		2-2	84.31	84.31		
		2-3	84.31	84.31		
		2-4	84.31	84.31		
		2-5	16.8	16.8		
		2-6	40	40		
		2-7	110.29	110.29		
	매 점	③	429.72	429.72	6	
	음 수 대	⑩			2	
	목재계단	⑪			2	
관리시설	소 계		820.9	820.9		1화장실
	안전관리초소	4	59	59		
	관리사무소	4-1	138.9	138.9		
	안 내 소	5-1	73	73		
		5-2	63	63		
		5-3	34	34		
		5-4	34	34		
	게 시 판	6-1	30	30		
		6-2	30	30		
		6-3	100	100		
		6-4	97	97		
	주 차 장	7	62	62		
	주차장(장애인용)	7-1	60	60		
	옹 벽	⑫			14	
	축 지 형	⑬			10	
	경 계 석	⑭			115	
	안 내 판	⑮			5	
	안전펜스	⑯			13	
녹지및기타	소 계		624,670.96		-	
	녹 지		624,670.96			

노을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월드컵공원

SCALE=1/2,000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관 목(기)	비 고
합	계		311,859	287,188.04	304	증) 1기
기반시설	소 계		67,625	67,625		
	도 로	㉮ ㉯	66,159	66,159		
	광 장	가-1	237	237		
		가-2	678	678		
		가-3	211	211		
		가-4	340	340		
조경시설	소 계		137,956.1	137,956.1	91	증) 1기
	초 지 광 원	나	111,114.1	111,114.1		
	잔 디 밭	다	7,147	7,147		
	돌 담 대	라	520	520		
	자연물놀이터	마	7,630	7,630		
	도시농부공원	바	6,500	6,500		
	자생화단	사	5,045	5,045		
	파 고 라	①			7	
		1-1			8	
	막구조파고라	②			14	
	초 정	③			47	
	목 재 데 크	④			1	
	조 형 물	⑤			17	증) 1기
휴양시설	소 계		22,700	22,700	79	
	노을광장	아-1	7,300	7,300		
		아-2	8,800	8,800		
		아-3	6,600	6,600		
	등 의 자	⑥			25	
		6-1			21	
유희시설	소 계				1	
	무당벌레아치트	⑦			1	
	통나무그물놀이대	⑧			1	
	우드볼하우스	⑨			1	
	통나무건너기	⑩			1	
	통나무복합놀이대	⑪			1	
	통나무오르기	⑫			1	
	민디언놀이장	⑬			1	
운동시설	소 계		30,375	30,375		
	파크골프장	자	30,500	30,500		
		자-1	12,350	12,350		
		자-2	18,625	13,625		
교양시설	소 계		1565 단	32	32	
	누에생태체험장	⑭		32	32	
	학 습	⑮				
편익시설	소 계		1,579.04	1,579.04	11	
	진 입 광 장	차-1	164	164		
		차-2	138	138		
		차-3	132	132		
		차-4	190	190		
	주 차 장	2-1	84.31	84.31		
		2-2	84.31	84.31		
		2-3	84.31	84.31		
		2-4	84.31	84.31		
		2-5	16.8	16.8		
		2-6	40	40		
		2-7	110.28	110.28		
	매 점	3	429.72	429.72	9	
	화 수 대	⑯			9	
	휴지제단	⑰			8	원래인지
관리시설	소 계		828.9	828.9	143	
	자원봉사센터	4	59	59	10	
	관리사무소	4-1	138.9	138.9	115	
	야 외 소	5-1	73	73		
		5-2	63	63		
		5-3	34	34		
		5-4	34	34		
	창 고	6-1	30	30		
		6-2	90	90		
		6-3	108	108		
		6-4	97	97		
	화 장 실	7	82	82		
	관 리 실	8-1	60	60		
	옥 탑	⑱			18	
	공 중 전 화	⑲			10	
	공 원 등	⑳			115	
	안 내 판	㉑			5	
	cctv	㉒			13	
녹지및기타	소 계		(624,670.96			
	녹 지		(624,670.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5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375(2026. 2. 5.)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2026. 4. 1.)를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재열람장소 : 서울시청 미래공간담당관 관계도서 비치 및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 가능
3. 재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가1	42~51	간선 도로	155	한강대교 노들섬하단	한강대교 노들섬상단	일반 도로	한강 대교	2010.2.18. (서고 제48호)	- 문화시설 중복결정 (7,153㎡)
변경	광로	3	가1	46~62	주간선 도로	155	한강대교 노들섬하단 (이촌동 377-2)	한강대교 노들섬상단 (이촌동 302-215)	일반 도로	한강 대교		- 선형 일부 조정 - 문화시설 중복결정 (8,421㎡)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류	광로 3류	· 선형 일부 조정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일부 선형 조정 등

나.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02-2133-7626)
-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s://urban.seoul.go.kr)

다. 관련도서 : 홈페이지 게시자료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1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 이유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6개월 이내 규칙 제정 이행
   나.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기준 마련
   다. 조례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에 명시

2. 주요 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적용해야 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안 제2조, 별표)
      1) 조례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죄예방디자인 기준 마련
      2) “대지 경계, 단지 내 공간, 건물 내·외부”로 구분하여 설계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규정
   나.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1)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10인 이내), 자격 조건 및 임명(위촉) 방법 규정
      2) 위원 임기(2년, 1회 연임)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3) 회의 개최 요건, 의결 방법, 사전 통보 의무 등 운영협의회 운영 절차 규정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서울특별시교육청 5층 미래학교추진단 (우 04335)

○ 이메일: kby0813@sen.go.kr (※ 문의: 전화 02-6033-6464)

4. 제정규칙안: 붙임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의 적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교장이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학교복합시설 업무와 관련된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공무원
2.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지역 주민
4.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5. 학교복합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학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제2조 관련)

대지 경계

가. 담장 외부와 인접하여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나. 학교복합시설 주변 담장은 투시형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간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펜스 등의 경계 시설물을 설치한다.

라. 별동으로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별개의 출입 동선을 설정하여 외부인이 학교시설로 접근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한다.

2. 단지 내 공간

가. 조경수목은 보안설비(CCTV 카메라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식재하며, 수목을 통하여 건물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다.

나. 조경수목과 학교복합시설 사이의 거리를 적절히 이격하여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주차공간의 조명은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주차장의 기둥과 벽면은 시야 확보 및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건물 내·외부

가. 학교복합시설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

나. 복도 및 계단실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후미진 계단이나 복도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다.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 공간은 일반교실과 구분되도록 배치한다.

라.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간의 연결통로는 내·외부 간 시야가 확보되도록 밝고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하여 통행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6년 월 일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 제2026-6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11호(2002.6.15.)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80호(2022.4.21.) 및 제2023-55호(2023.5.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508호(2026. 4. 2.)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 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자. 기타사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시 행 지 : 동대문구 이문동 220-20외 6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사업
 - 명 칭: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다. 사업의 용도 및 규모
 - 용 도: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6,660.0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주 소: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은 동대문구 귀속
아. 고시방법: 시보 · 구보,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사항
 - 발주부서: 총괄) 동대문구 건축과(☎2127-4576)
 - 사업부서: 공공청사) 동대문구 자치행정과(☎2127-4230)
 : 주차장) 동대문구 주차행정과(☎2127-4903)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용도	소 유 자
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20	대지	1,349	1,349	주차장, 공공청사	동대문구
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17-6	도로	6,709	448.5	주차장, 도로	서울특별시
3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361	도로	6	6	주차장, 도로	서울특별시
4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363	전	12	12	주차장, 공공청사	동대문구
5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26	도로	1,395	272.53	주차장, 도로	서울특별시
6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401	전	27	27	주차장, 도로	동대문구
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400	대지	292	171.5	주차장, 도로	동대문구
계			9,790	2,286.53		

◈ 마포구고시 제2026-65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1. 우리 구 신정동 2-1필지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아파트형 100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축지원과(☎02-3153-9423)에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열람가능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LH매입임대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2-1
라. 대지면적 : 1,406.20㎡
마. 규　　모 : 지하1층 / 지상 13층, 연면적 5,101.70㎡
마.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형 100세대)
바. 사업시행기간 : 2026. 4. ~ 2027. 10.
사. 사업계획승인일 : 2025. 4. 16.
아.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자. 관련도면 :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건축지원과 비치 도면과 같음(문의: ☎02-3153-9423)

◈ 양천구고시 제2026-4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33호(2006.4.20.)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실효일
			기정	변경	변경 후		
폐 지	주차장	신정동 319-21,22	1,513.2	감) 1,513.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33호 (2006. 4. 20.)	2026. 4. 21.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실효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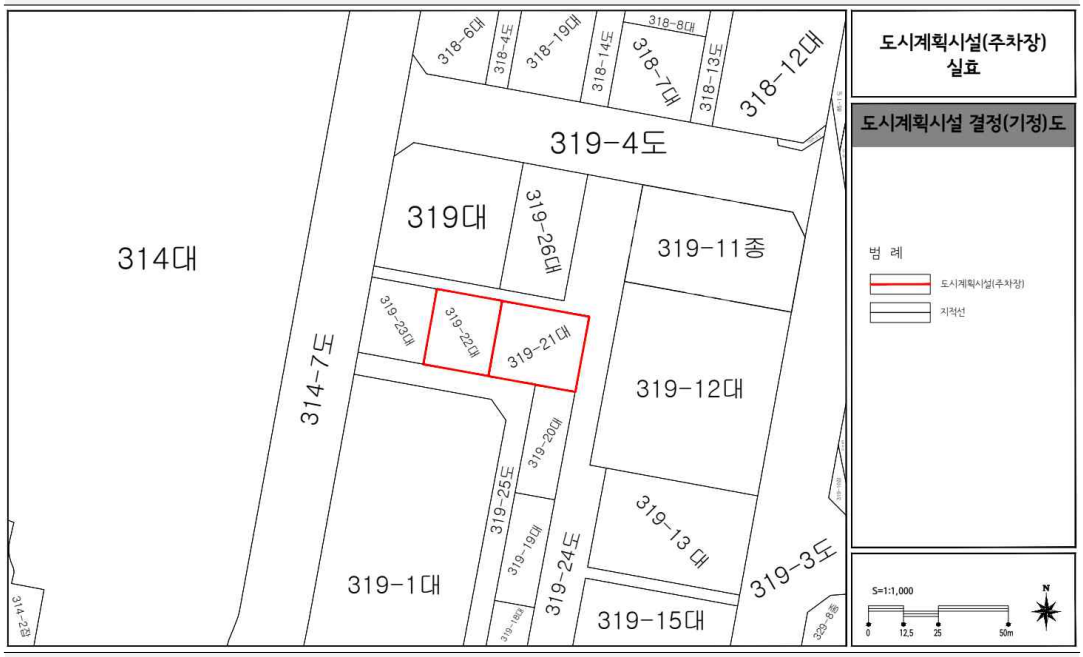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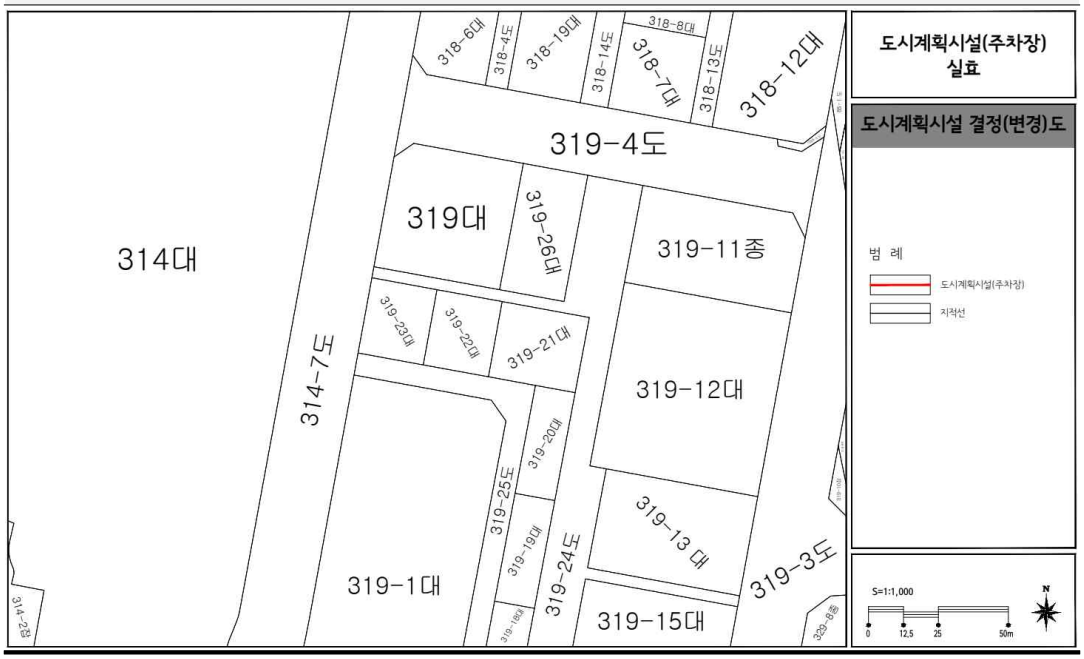

◈ 강서구고시 제2026-5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38호(2022. 3. 31.)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되고, 강서구 공고 제2025-795호(2025. 4. 23.)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강서구 고시 제2025-50호(2025. 5. 29.)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6-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다. 면적 및 규모
  ○ 면　적: 연면적: 9,089.65㎡ (대지면적: 4,081.3㎡)
  ○ 규　모: 지상 1층~지하 5층(주차면수: 총 170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석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마.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물 준공 후 무상 기부채납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차관리과(☎2600-4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시행자: 우리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석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강서구 가양동	144-1	대	17.0	17.0	기획재정부	-				
2	강서구 가양동	146-1	임	99.0	99.0	기획재정부	-				
3	강서구 가양동	146-5	대	2,824.0	2,649.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4	강서구 가양동	146-27	대	175.0	175.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5	강서구 가양동	146-31	대	602.0	526.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6	강서구 가양동	146-65	공	491.0	491.0	서울특별시	-				
7	강서구 가양동	146-66	공	1.0	1.0	서울특별시	-				
8	강서구 가양동	148-7	임	119.0	119.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 택지예정좌표측량 결과가 등기 상 반영되지 않아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과 대지면적이 상이함.

◈ 서초구고시 제2026-104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반포 보도육교	반포동 753	서초구청 도로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른 반포 보도육교 철거 완료되어 해체	정기적인 안전점검실시	

◈ 송파구고시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호(2013.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5-67호(2015.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최종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송파구고시 제2024-32호(2024.4.25.), 송파구고시 제2024-87호(2024.10.24.), 송파구고시 제2025-63호(2025.6.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송 파 구 청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 송파구 마천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06	30	주간선 도로	266	하남시 학암동 244-6	송파구 마천동 63-3	일반 도로	천마근린 공원	'13.2.21	-총 2,295m중 서울시 구간 266m에 한하여 인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2015.07.30 ~ 2026.04.30.
○ 변 경: 2015.07.30. ~ 2026.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열람장소에 비치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 협약 등에 따라 대상 필지는 준공후 시설물 관리청(서울시 송파구, 하남시)에 무상 귀속

아.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송파구고시 제2026-5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1994. 4. 7.)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1(1996. 3. 7.), 제1998-133호(1998. 4. 20.), 제2024-38호(2024. 5. 16.)로 결정(변경)된 송파구 방이동 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8호선 몽촌토성역 도시계획시설(철도)의 환기구 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8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명칭: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환기구 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현재 위치에서 2.3m 이설, 면적:5,774㎡ → 5,817㎡(증 4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8, 3층 1호(방이동, 제일빌딩)
   ○ 성명: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반성용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준공 후 서울교통공사로 귀속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인가일 ~ 2025. 11. 30.
   ○ 변 경: 인가일 ~ 2026. 5. 30.
   ○ 변경사유: 잔여 공정 마무리 및 준공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 형태
					기정	변경	변경후		
1	방이동	44-11	대	275.9	63	-	63	서울시	단독
2	방이동	44-12	대	288.6	58	-	58		
3	방이동	44-13	대	203.8	152	-	152		
4	방이동	44-15	대	14.0	4	-	4		
5	방이동	88-17	도	39,408.6	463	-	463		
6	방이동	94-3	도	14,565.3	1,675	-	1,675		
7	신천동	19	도	9,001.5	2,036	-	2,036		
8	신천동	20-8	도	909.5	420	증)11	431		
9	신천동	26	도	28,673.9	903	증)32	935		
계				93,341.1	5,774	증)43	5,817	-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6-594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16호(2004.04.20.)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5호(2021.06.03.)로 결정 변경(재정비) 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부암동 내 대지의 분할 및 교환을 진행함에 따라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종 로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부암동 369-11번지와, 부암동 369-13번지 대지의 분할 및 교환에 따른 열람공고 등 관련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 사항

[1]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변경

※ 결정도 붙임 참조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3)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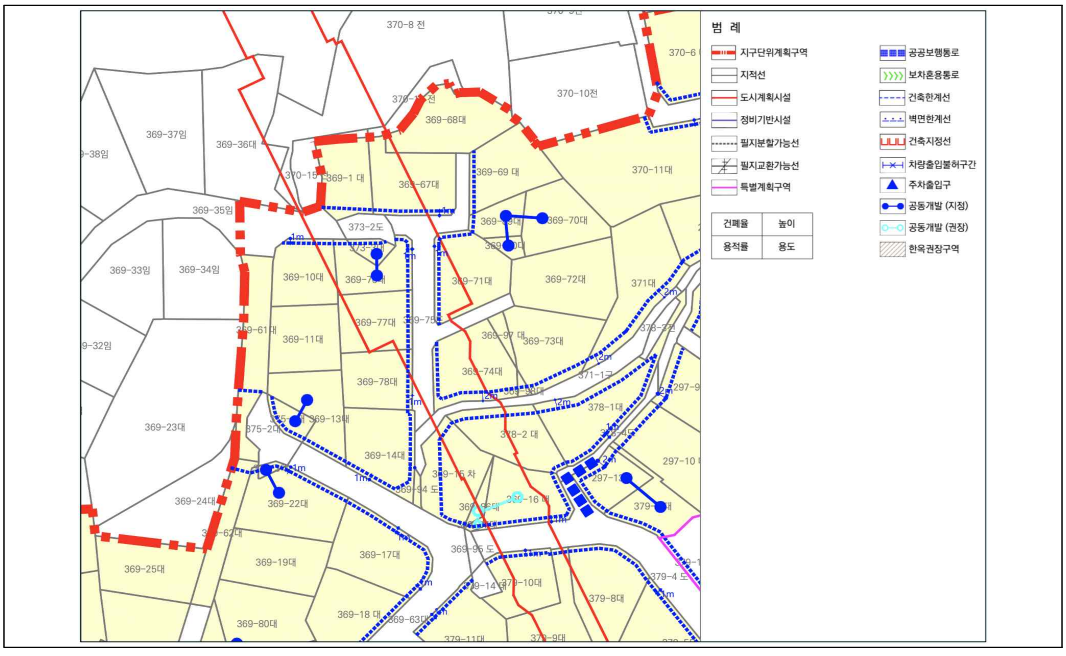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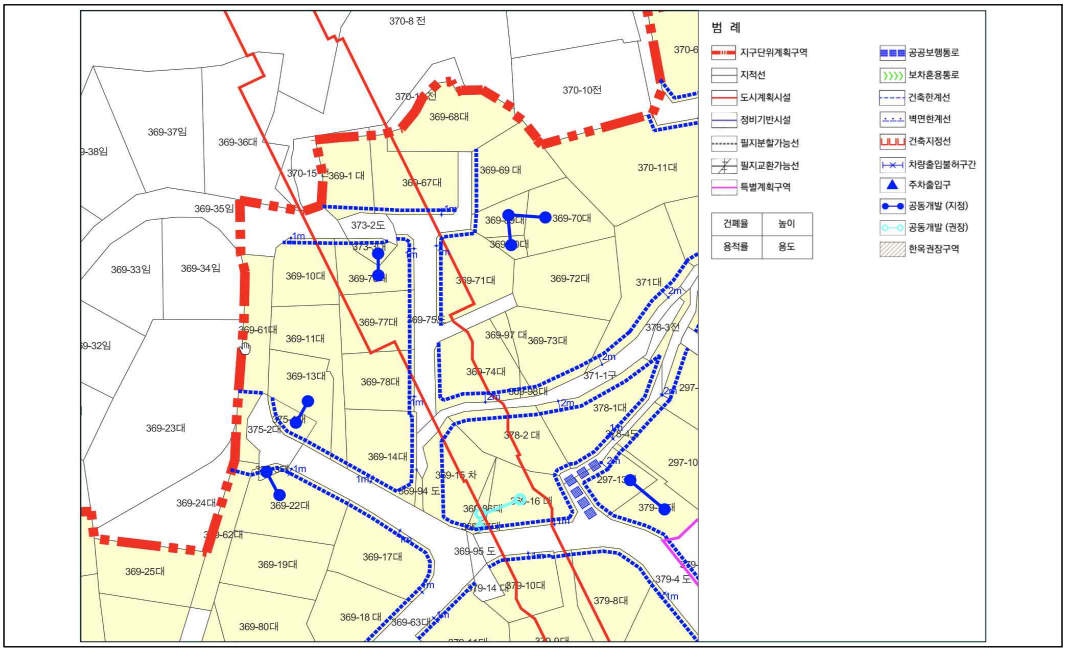

부암동 결정도 캐드도면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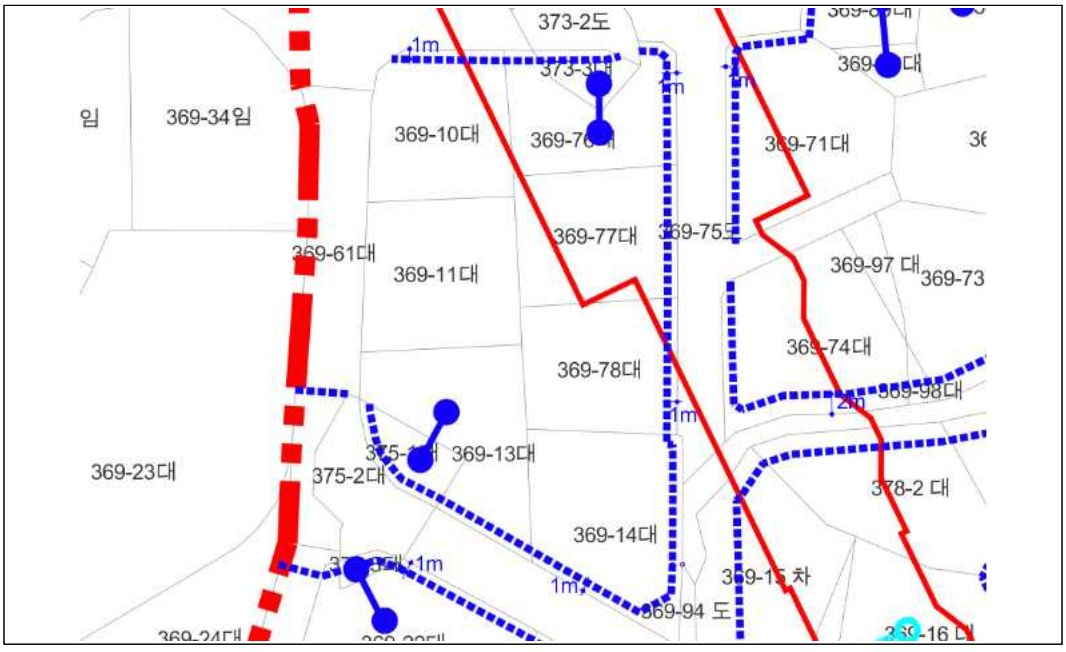

부암동 결정도 캐드도면 :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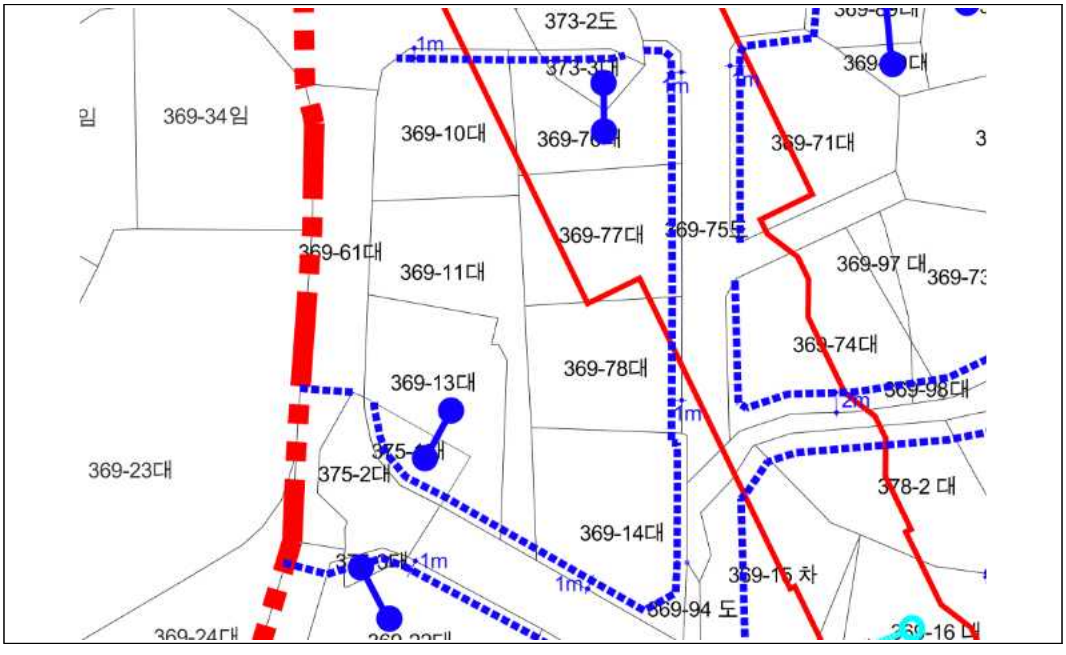

◈ 중구공고 제2026-4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명동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2009.5.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중구고시 제2015-72호(2015.8.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중구고시 제14호(2024.2.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517호(2025.9.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명동문화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동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 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90-10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명동문화공원 조성사업
  3) 사업내용: 토지보상 후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2,11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 주식회사 대표 김창휘
  2)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15-4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31. 4.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사.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4층 공원녹지과(☎02-3396-5852)
아. 열람기간: 2026. 4. 23. ~ 5. 6.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층수(지하/지상)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1	저동1가 90-7	대	25.1	25.1	"	"	엄**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길**, ***동 ***호	점포/연와조 도단즙	1/(0/4)	91.97	엄**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길**, ***동 ***호	근저당권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저동1가 103-7	대	38.3	38.3	"	"	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길**, ***동***호						압류	** 세무서장		
															근저당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길 *-*	
	3	저동1가 103-8	대	23.8	23.8	"	"	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길**, ***동***호	영업/목조와즙	1/(1/2)	69.42	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길**, ***동***호	압류	서울시 중구		
															압류	서울시 중구		
													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길 *-*(저동1가)	압류	도봉 세무서		
															근저당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길 *-*(저동1가)						근저당권	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길 *-*(저동1가)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4	저동1가 79-9	대	3.6	3.6	"	"	기획재정부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층수(지하/지상)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업	5	저동1가 90-11	대	15.9	15.9	대지	중심상업지역	기획재정부													
	6	저동1가 91-3	대	11.1	11.1	대지	중심상업지역	기획재정부													
	7	저동1가 103-4	대	4.6	4.6	대지	중심상업지역	기획재정부													
	8	저동1가 39-3	도로	1,541.6	116.6	대지	중심상업지역	서울특별시													
	9	저동1가 43-5	대	42.9	42.9	대지	중심상업지역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점포,사무실/철근콘크리트	1/(0/4)	79.33	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길*, ***호						
											점포,사무실/철근콘크리트	1/(0/4)	124.29	박**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길**, *동***호)						
	10	저동1가 79-5	대	48.6	48.6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근생/목조와즙	1/(1/2)	79.14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1	저동1가 79-8	대	3.7	3.7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2	저동1가 91-2	대	141.8	141.8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3	저동1가 101-2	대	0.3	0.3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주택/목조와즙	1/(1/2)	119.01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01-2,102,102-1저상건물
	14	저동1가 102	대	48.6	48.6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층수(지하/지상)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	저동1가 102-1	대	7.9	7.9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6	저동1가 103-1	대	30.7	30.7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영업/연와조	1/(0/2)	56.2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7	저동1가 103-3	대	32.1	32.1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근생/목조아연깁	1/(0/3)	89.25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8	저동1가 103-6	대	39.0	39.0	대지	중심상업지역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근생/목조와슬	1/(0/2)	50.77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19	저동1가 90-2	대	79.0	79.0	"	"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사무실/연와조도도깁	1/(0/3)	141.49	케이*******(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 *층							
	20	저동1가 103-12	도로	317.4	31.2	"	"	서울특별시 중구													
	21	저동1가 89-1	도	2.3	2.3	공원	중심상업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22	저동1가 110	공	8.7	8.7	"	"	서울특별시 중구													
	23	저동1가 111	공	32.6	32.6	"	"	서울특별시 중구													
	24	저동1가 112	공	248.0	248.0	"	"	서울특별시 중구													
	25	저동1가 113	공	75.3	75.3	"	"	서울특별시 중구													
	26	저동1가 119	공	50.1	50.1	"	"	서울특별시 중구													

구분	번호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층수(지하/지상)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7	저동1가 120	답	500.6	500.6	"	"	서울특별시 중구													
	28	저동1가 121	답	540.7	540.7	"	"	서울특별시 중구													

□ 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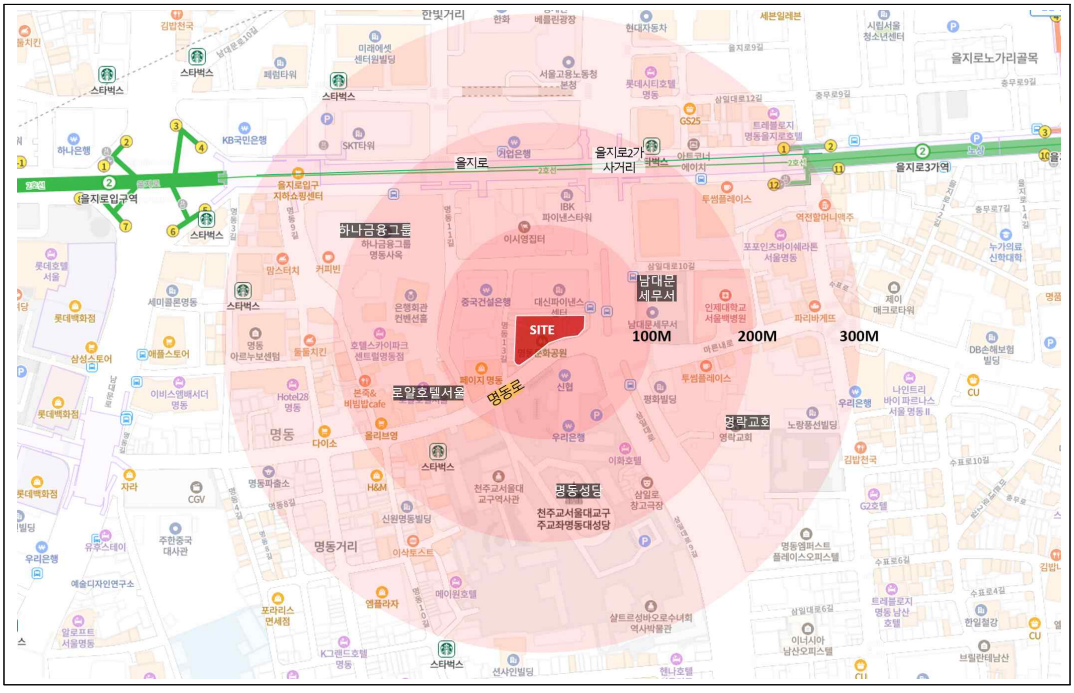
SITE
100M
200M
300M
남대문 세무서
명동성당
명동거리
명동역
을지로
을지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하나금융그룹
롯데호텔 서울
신세계 백화점
명동 예술극장
명동 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 성동구공고 제2026-6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1976-319호(1976.11.26.)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4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5503)
다.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성수시장	대규모 점포	성동구 성수동2가 289-4	2,349.4	감) 2,349.4	-	'76.11.26. (서울시고시 제319호)	지적승인고시 도면 기준 지번 및 면적 정정

○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성수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면적 : 2,349.4㎡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유지 필요성 저하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시설 폐지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의견제출 방법: 팩스(02-2286-5928) 및 이메일(rlgus1027@sd.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 이메일) 또는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바.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 도시계획과(☎ 02-2286-5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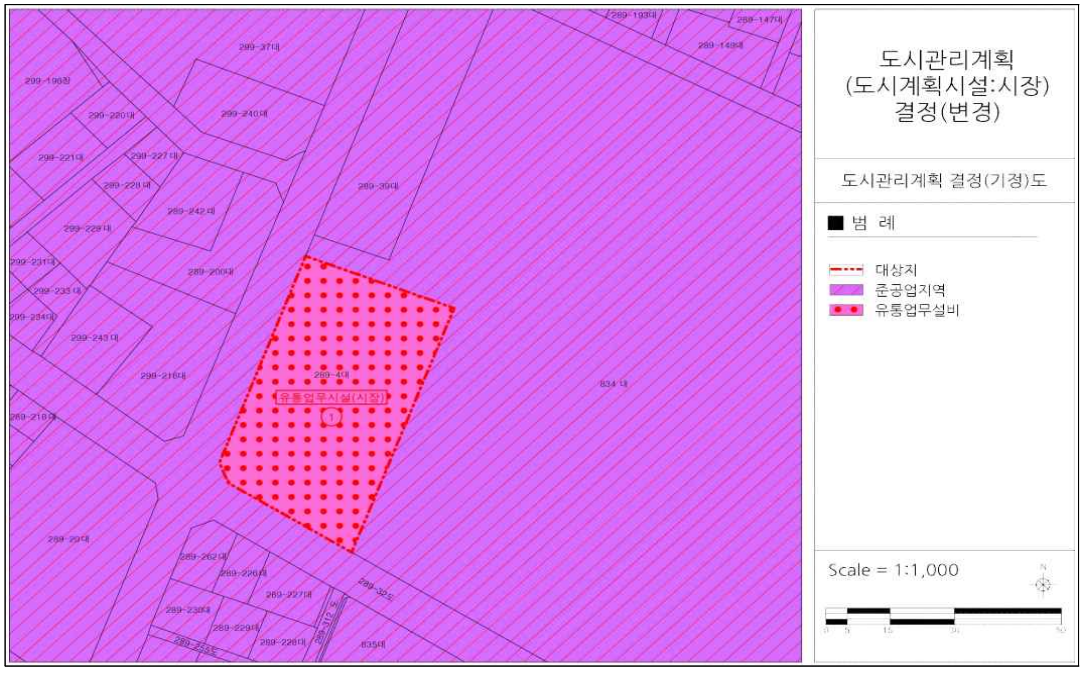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변경)도 >

◈ 광진구공고 제2026-574호

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6.04.23.(목) ~ 2026.05.07.(목)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6층)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워커힐아파트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원	120,076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게재 된 도서 참조)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의견제출 : 열람장소 서면 제출
바. 기타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계획내용은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공고 제2026-640호

도시계획시설(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20호(2026.04.23.)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중 랑 구 청 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80-6번지 일원
나. 공원면적 : 556,451.3㎡
다. 변경내용 : 봉화산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을 위한 무장애숲길 현황 반영 및 추가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저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 서류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신내동 780-6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556,451.30	69,246.0	10	5,307.44	7,708.80	95	556,451.3	77,588.6	10	5,307.44	7,708.80	95	증8,342.6㎡
기반시설	소 계	48,362	42,975					56,704.6	51,317.6					증8,342.6㎡
	도 로	37,594	32,207 (5,387)					45,936.6	40,549.6 (5,387)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10,768	10,768					10,768	10,768					
조경시설		4,368	4,368				6	4,368	4,368				6	
휴양시설		5,103	5,103	2	1,003.00	3,296.41		5,103	5,103	2	1,003.00	3,296.41		
유희시설		2,099	2,099				7	2,099	2,099				7	
운동시설		7,804	7,804	2	3,615.00	3,615.00		7,804	7,804	2	3,615.00	3,615.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교 양 시 설	4,989	4,611	4	658.64	766.59	66	4,989	4,611	4	658.64	766.59	66	
편 익 시 설	2,248	2,248					2,248	2,248					
관 리 시 설	38	38					38	38					
도시농업시설	1,619.0						1,619.0						
그밖의시설	736.0		2	30.8	30.8	16	736.0		2	30.8	30.8	16	
녹지 및 기타	479,085.3						470,742.7						감8,342.6㎡
시 설 률 (법정40%)	(69,246 / 556,451.30) × 100 = 12.44%						(77,588.6 / 556,451.3) × 100 = 13.94%						
건 폐 율 (법정10%)	(5,307.44 / 556,451.30) × 100 = 0.954%						(5,307.44 / 556,451.30) × 100 = 0.954%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556,451.3	69,246.0		10동	5,307.44	7,708.80	95			556,451.3	77,588.6		10동	5,307.44	7,708.80	95	증8,342.6㎡
기반시설	소계			48,362.0	42,975.0								56,704.6	51,317.6						증8,342.6㎡
	도로			37,594	32,207 (5,387)								45,936.6	40,549.6 (5,387)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소계			10,768	10,768								10,768	10,768						
	진입광장	가	12개소	3,642	3,642						가	12개소	3,642	3,642						
		가-1	묵동 23-4공	(299)	(299)						가-1	묵동 23-4공	(299)	(299)						
		가-2	신내동 산123-6구	(234)	(234)						가-2	신내동 산123-6구	(234)	(234)						
		가-3	신내동 655-2공	(147)	(147)						가-3	신내동 655-2공	(147)	(147)						
		가-4	신내동 771-1공	(799)	(799)						가-4	신내동 771-1공	(799)	(799)						
		가-5	신내동 780공	(83)	(83)						가-5	신내동 780공	(83)	(8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기반시설	가-6	신내동 780공	(514)	(514)						가-6	신내동 780공	(514)	(514)						
	가-7	중화동 산1임	(288)	(288)						가-7	중화동 산1임	(288)	(288)						
	가-8	중화동 산7-1임	(632)	(632)						가-8	중화동 산7-1임	(632)	(632)						
	가-9	신내동 655-2공	(204)	(204)						가-9	신내동 655-2공	(204)	(204)						
	가-10	신내동 655-2공	(96)	(96)						가-10	신내동 655-2공	(96)	(96)						
	가-11	신내동 779-3임	(269)	(269)						가-11	신내동 779-3임	(269)	(269)						
	가-12	신내동 779-8전	(77)	(77)						가-12	신내동 779-8전	(77)	(77)						
중심광장	다	7개소	7,126	7,126						다	7개소	7,126	7,126						
	다-1	신내동 655-2공	(596)	(596)						다-1	신내동 655-2공	(596)	(59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다-2	신내동 777공	(618)	(618)						다-2	신내동 777공	(618)	(618)						
	다-4	신내동 산138-6임	(235)	(235)			2			다-4	신내동 산138-6임	(235)	(235)			2			
	다-5	신내동 652공	(813)	(813)			1			다-5	신내동 652공	(813)	(813)			1			
	다-7	신내동 653공	(1,330)	(1,330)			1			다-7	신내동 653공	(1,330)	(1,330)			1			
	다-8	신내동 652공	(2,944)	(2,944)						다-8	신내동 652공	(2,944)	(2,944)						
	다-9	신내동 779-6과	(590)	(590)						다-9	신내동 779-6과	(590)	(590)						
소계			4,368	4,368					5			4,368	4,368					5	
조경시설 파고라	①	5개소			목재				5	①	5개소			목재				5	
	①-1	묵동 23-4공			〃				1	①-1	묵동 23-4공			〃				1	
	①-2	묵동 산46-27임			〃				1	①-2	묵동 산46-27임			〃				1	
	①-3	묵동 산46-19공			〃				1	①-3	묵동 산46-19공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①-5	신내동 751-3공			〃				1	①-5	신내동 751-3공			〃				1	
	①-6	신내동 751-3공			〃				1	①-6	신내동 751-3공			〃				1	
계류	라	2개소	706	706	자연석					라	2개소	706	706	자연석					
	라-1	신내동 산124공	(443)	(443)	자연석					라-1	신내동 산124공	(443)	(443)	자연석					
	라-2	신내동 779-1구	(263)	(263)	자연석					라-2	신내동 779-1구	(263)	(263)	자연석					
다목적 잔디 광장	마	신내동 산124공	2,306	2,306						마	신내동 산124공	2,306	2,306						
연못	바	신내동 산136-11공	517	517						바	신내동 산136-11공	517	517						
석교	샤	신내동 779-5과	14	14						샤	신내동 779-5과	14	14						
화계	자	중화동 19-19공	35	35						자	중화동 19-19공	35	35						
목교	타	6개소	54	54						타	6개소	54	5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타-1	신내동 779-1구	(10)	(10)						타-1	신내동 779-1구	(10)	(10)						
	타-3	신내동 779-1구	(16)	(16)						타-3	신내동 779-1구	(16)	(16)						
	타-4	신내동 산136-11공	(5)	(5)						타-4	신내동 산136-11공	(5)	(5)						
	타-5	신내동 산124공	(12)	(12)						타-5	신내동 산124공	(12)	(12)						
	타-6	신내동 산123-6구	(5)	(5)						타-6	신내동 산123-6구	(5)	(5)						
	타-7	신내동 산123-6구	(6)	(6)						타-7	신내동 산123-6구	(6)	(6)						
바닥분수	어	신내동 652공	81	81						어	신내동 652공	81	81						
테마정원	냐		655	655						냐		655	655						
	냐-1	신내동 779-5과	(42)	(42)						냐-1	신내동 779-5과	(42)	(4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나-2	신내동 779-5과	(174)	(174)						나-2	신내동 779-5과	(174)	(174)						
		나-3	신내동 779-4과	(191)	(191)						나-3	신내동 779-4과	(191)	(191)						
		나-4	신내동 779-6과	(70)	(70)						나-4	신내동 779-6과	(70)	(70)						
		나-5	신내동 779-6과	(178)	(178)						나-5	신내동 779-6과	(178)	(178)						
휴양시설	소계			5,103	5,103		2동	1,003	3,296.41				5,103	5,103		2동	1,003	3,296.41		
	휴게소	사	21개소	2,968	2,968						사	21개소	2,968	2,968						
		사-1	신내동 산124공	(43)	(43)						사-1	신내동 산124공	(43)	(43)						
		사-2	신내동 779-4과	82	82						사-2	신내동 779-4과	82	82						
		사-7	신내동 산124공	(145)	(145)						사-7	신내동 산124공	(145)	(145)						
		사-8	신내동 산124공	(108)	(108)						사-8	신내동 산124공	(108)	(108)						
		사-9	신내동 602-1공	(564)	(564)						사-9	신내동 602-1공	(564)	(564)						
		사-17	신내동 산136-11공	(47)	(47)						사-17	신내동 산136-11공	(47)	(47)						
		사-20	신내동 780공	(57)	(57)						사-20	신내동 780공	(57)	(5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23	신내동 777공	(124)	(124)						사-23	신내동 777공	(124)	(124)						
	사-25	중화동 19-19공	(71)	(71)						사-25	중화동 19-19공	(71)	(71)						
	사-26	신내동 산136-11공	(45)	(45)						사-26	신내동 산136-11공	(45)	(45)						
	사-27	중화동 274-71대	(153)	(153)						사-27	중화동 274-71대	(153)	(153)						
	사-28	묵동 산41-1공	(36)	(36)						사-28	묵동 산41-1공	(36)	(36)						
	사-29	묵동 122-12공	(155)	(155)						사-29	묵동 122-12공	(155)	(155)						
	사-30	묵동 122-12공	(12)	(12)						사-30	묵동 122-12공	(12)	(12)						
	사-31	묵동 122-12공	(39)	(39)						사-31	묵동 122-12공	(39)	(39)						
	사-32	신내동 산127-2공	(94)	(94)						사-32	신내동 산127-2공	(94)	(94)						
	사-33	상봉동 산4-1공	(430)	(430)						사-33	상봉동 산4-1공	(430)	(430)						
	사-34	신내동 산123-6구	(41)	(41)						사-34	신내동 산123-6구	(41)	(41)						
	사-35	신내동 산123-6구	(33)	(33)						사-35	신내동 산123-6구	(33)	(33)						
	사-36	신내동 751-3공	(57)	(57)						사-36	신내동 751-3공	(57)	(5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사-37	묵동 산41-1공	(632)	(632)						사-37	묵동 산41-1공	(632)	(632)						
노인복지회관	1	2개소	2,135	2,135	철근콘크리트	2동	1,003	3,296.41		1	2개소	2,135	2,135	철근콘크리트	2동	1,003	3,296.41		
노인복지회관	1-1	신내동 771-1전	(1,285)	(1,285)	철근콘크리트	(1동)	(749)	(2,574)		1-1	신내동 771-1전	(1,285)	(1,285)	철근콘크리트	(1동)	(749)	(2,574)		
노인복지회관	1-2	상봉동 산31-6	(850)	(850)	철근콘크리트	(1동)	(254)	(722.41)		1-2	상봉동 산31-6	(850)	(850)	철근콘크리트	(1동)	(254)	(722.41)		
소계			2,099	2,099					7			2,099	2,099					7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	8개소	2,099	2,099					7	아	8개소	2,099	2,099					7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1	신내동 산124공	(189)	(189)					1	아-1	신내동 산124공	(189)	(189)					1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2	신내동 780공	(258)	(258)					1	아-2	신내동 780공	(258)	(258)					1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3	중화동 19-19공	(632)	(632)					1	아-3	중화동 19-19공	(632)	(632)					1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4	신내동 751-3공	(540)	(540)					1	아-4	신내동 751-3공	(540)	(540)					1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5	묵동 산41-1공	(111)	(111)					1	아-5	묵동 산41-1공	(111)	(111)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건축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아-6	묵동 122-12공	(132)	(132)					1	아-6	묵동 122-12공	(132)	(132)					1	
		아-7	묵동 122-12공	(31)	(31)					1	아-7	묵동 122-12공	(31)	(31)					1	
		아-8	신내동 653공	(206)	(206)						아-8	신내동 653공	(206)	(206)						
운동시설	소계			7,804	7,804		2동	3,615	3,615				7,804	7,804		2동	3,615	3,615		
다목적 체육관		자	2개소	3,615	3,615	철근콘크리트	2동	3,615	3,615		자	2개소	3,615	3,615	철근콘크리트	2동	3,615	3,615		
		자-1	신내동 산144-2임	(1,815)	(1,815)	〃	(1동)	(1,815)	(1,815)		자-1	신내동 산144-2임	(1,815)	(1,815)	〃	(1동)	(1,815)	(1,815)		
		자-2	묵동 산41-7임	(1,800)	(1,800)	〃	(1동)	(1,800)	(1,800)		자-2	묵동 산41-7임	(1,800)	(1,800)	〃	(1동)	(1,800)	(1,800)		
농구장		차	2개소	919	919						차	2개소	919	919						
		차-1	신내동 751-3공	(581)	(581)						차-1	신내동 751-3공	(581)	(581)						
		차-2	신내동 653공	(338)	(338)						차-2	신내동 653공	(338)	(33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다목적 운동장		카	신내동 780공	450	450						카	신내동 780공	450	450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카	9개소	2,011	2,011						카	9개소	2,011	2,011						
		카-3	묵동 산46-27임	(656)	(656)						카-3	묵동 산46-27임	(656)	(656)						
		카-4	신내동 산138-5임	(198)	(198)						카-4	신내동 산138-5임	(198)	(198)						
		카-5	신내동 602-1공	(155)	(155)						카-5	신내동 602-1공	(155)	(155)						
		카-7	중화동 19-19공	(75)	(75)						카-7	중화동 19-19공	(75)	(75)						
		카-8	신내동 산136-11공	(80)	(80)						카-8	신내동 산136-11공	(80)	(80)						
		카-9	신내동 산136-11공	(48)	(48)						카-9	신내동 산136-11공	(48)	(48)						
		카-10	묵동 산46-27임	(381)	(381)						카-10	묵동 산46-27임	(381)	(381)						
		카-11	묵동 20-6공	(91)	(91)						카-11	묵동 20-6공	(91)	(91)						
		카-12	신내동 산139공	(327)	(327)						카-12	신내동 산139공	(327)	(32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게이트볼장	버	신내동 751-3공	346	346						버	신내동 751-3공	346	346						
	족구장	서	신내동 751-3공	463	463						서	신내동 751-3공	463	463						
교양시설	소계			4,989	4,611		4동	658.64	766.59	66			4,989	4,611		4동	658.64	766.59	66	
	봉수대지(문화재)	파	묵동 산46-19공	2,306	2,306						파	묵동 산46-19공	2,306	2,306						
	자연학습장	하	신내동 751-3공	116	116						하	신내동 751-3공	116	116						
	야외무대	가	신내동 602-1공	235	235						가	신내동 602-1공	235	235						
	숲문화관	마	신내동 777공	477	477	철근콘크리트	1동	95.41	151.94		마	신내동 777공	477	477	철근콘크리트	1동	95.41	151.94		
	가마체험장	파	신내동 777공	175	175						파	신내동 777공	175	175						
	옹기체험장	하	신내동 777공	136	136	철근콘크리트	1동	35.47	35.47		하	신내동 777공	136	136	철근콘크리트	1동	35.47	35.47		
	유아숲체험원	너	묵동 3-4공	596	218					66	너	묵동 3-4공	596	218					66	
	체험마당	하-2	신내동 779-6과	300	300						하-2	신내동 779-6과	300	300						
	숲문화관-2	마-2	신내동 779-6과	458	458	철근콘크리트	1동	347.76	299.18		마-2	신내동 779-6과	458	458	철근콘크리트	1동	347.76	299.18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가마체험장-2	파-2	신내동 779-6과	190	190	철근콘크리트	1동	140	140		파-2	신내동 779-6과	190	190	철근콘크리트	1동	140	140		
편익시설	소계			2,248	2,248								2,248	2,248						
	약수터	다	2개소	159	159						다	2개소	159	159						
		다-2	묵동 산46-22공	(140)	(140)						다-2	묵동 산46-22공	(140)	(140)						
		다-5	중화동 산12-2임	(19)	(19)						다-5	중화동 산12-2임	(19)	(19)						
	주차장	라	4개소	1,942	1,942						라	4개소	1,942	1,942						
		라-1	상봉동 12-2공	(766)	(766)						라-1	상봉동 12-2공	(766)	(766)						
		라-2	신내동 771-1공	(396)	(396)						라-2	신내동 771-1공	(396)	(396)						
		라-3	신내동 652공	713	713						라-3	신내동 652공	713	713						
		라-4	신내동 779전	67	67						라-4	신내동 779전	67	67						
	전망대	거	신내동 777공	104	104						거	신내동 777공	104	10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화장실		머	3개소	43	43						머	3개소	43	43						
		머-1	묵동 23-4공	(18)	(18)						머-1	묵동 23-4공	(18)	(18)						
		머-2	묵동 122-12공	(11)	(11)						머-2	묵동 122-12공	(11)	(11)						
		머-3	신내동 655-2공	(14)	(14)						머-3	신내동 655-2공	(14)	(14)						
관리시설	소계			38	38								38	38						
	관리사무소	2	상봉동 12-2공	38	38						2	상봉동 12-2공	38	38						
도시농업시설	소계			1,619									1,619							
	도시농업시설	러	2개소	1,619							러	2개소	1,619							
		러-1	신내동 779-5과	328							러-1	신내동 779-5과	328							
		러-2	신내동 779-4과	453							러-2	신내동 779-4과	453							
		러-3	신내동 779-4과	838							러-3		838							
그밖의 시설	소계			736			2동	30.8	30.8	16			736			2동	30.8	30.8	16	
	변전건물	저	신내동 751-3공	736			2동	30.8	30.8	16	저	신내동 751-3공	736			2동	30.8	30.8	1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479,085.3									470,742.7							감8,342.6㎡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5,719	32,207 (5,387)				
변경					20,191	40,549.6 (5,387)				증8,342.6㎡
당초	중 로	소계			288	(5,013)				
당초		2	1	20	125	(2,500)	도시계획도로	묵동, 산37-1임	묵동, 산41-2임	
당초		2	2	15	163	(2,513)		신내동 652-1도	중심광장 가-8	
당초	소 로	소계			105	399 (374)				
당초		3	1	7	48	(374)	도시계획도로	상봉동, 산31-6임	중화동, 산12임	도자구역 부분편입
당초		3	3	7	57	399		공릉로2길	묵동 122-1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을에 미포함.								
당초	산책로	소계			15,662	31,808				
변경					20,134	40,150.6				증8,342.6㎡
당초			1	2.0	161	322	연결로	산책로157	도시계획도로	
당초			2	1.5	70	104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57	도자구역 부분편입
당초			3	1.5	68	102	산책로	산책로79	산책로15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	1.5	284	425	산책로	산책로157	산책로9	
당초			6	1.5	55	83	산책로	산46-22임	산책로7	
당초			7	1.5	88	132	연결로	소로3-3	산책로157	
당초	산책로		9	1.5	317	475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57	
당초			10	1.5	471	706	산책로	산책로130	산책로22	
당초			20	1.5	84	126	산책로	동일로148길	도자구역	
당초			21	1.5	9	13	연결로	산책로10	도자구역	
당초			22	3	206	618	산책로	봉수대지 파	산책로10	
당초			24	1.5	230	345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25	
당초			25	1.5	465	697	산책로	중화1동 274-63	산책로151	
당초			26	1.5	70	105	산책로	산책로25	중화동 42	
당초			27	1.5	187	281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157	
당초			30	1.5	124	185	산책로	산책로126	도자구역	
당초			31	5	142	711	산책로	상봉동, 481-2공	공원내녹지	
당초			33	1.5	43	65	산책로	산책로123	산책로34	
당초			34	1.5	48	74	산책로	야외무대, 가1	산책로40	
당초			35	1.5	246	370	산책로	휴게소 사-33	산책로47	
당초			36	2	309	618	연결로	진입광장 가-2	진입광장 가-10	
당초			37	2	5	11	연결로	목교 타-6	산책로36	
당초			38	2	271	541	연결로	산책로36	중심광장 다-4	
당초			39	1.5	125	187	연결로	산책로40	산책로41	
당초			40	1.5	50	75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1	다목적 잔디광장, 마	
당초			41	1.5	71	109	연결로	산책로34	휴게소, 사-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2	1.5	31	47	연결로	산책로43	산책로36	
당초			43	1.5	54	86	연결로	산책로41	산책로39	
당초			44	1.5	19	30	연결로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5	1.5	18	29	연결로	산책로39	산책로36	
당초			46	3.5	382	1,335	연결로	중심광장 다-4	산책로114	
당초			47	3	529	1,520	연결로	중심광장 다-4	체력단련장 카-3	
당초			48	1.5	312	467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22	
당초			50	2	136	273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52	
당초			52	2	262	523	연결로	산책로48	도자구역	
당초			54	2	305	609	연결로	중심광장 다-4	산책로71	
당초			68	1.8	95	172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너	산책로158	
당초			69	2	165	329	연결로	묵동 산41-1공	산책로1	
당초			70	2	13	25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22	
당초			71	2	232	464	연결로	신내동, 655-2공	신내동, 655-2공	
당초			72	3.5	164	460	연결로	중심광장 다-8	진입광장 가-6	
당초			73	3	66	198	연결로	중로 2-2	산책로84	
당초	산책로		74	2	32	65	연결로	진입광장 가-5	산책로73	
당초			75	4	70	280	연결로	중심광장 다-7	도자구역 산책로75	
당초			79	2	166	332	진입로	묵동 산43-1	야외무대 갸-1	
당초			81	2	80	179	연결로	중심광장 다-2	도자구역 산책로 81	
당초			82	2	100	200	연결로	산책로83	산책로83	
당초			83	2	165	329	연결로	전망대 거	산책로81	
당초			84	3	55	164	연결로	옹기체험장 햐	산책로73	
당초			85	1.5	66	99	연결로	목공체험장 더	산책로8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86	1.5	80	120	연결로	휴게소 사-23	산책로84	
당초			91	2.5	71	178	연결로	산책로73	산책로93	
당초			92	2	47	94	연결로	산책로73	산책로91	
당초			93	2	7	14	연결로	산책로97	다목적운동장 카	
당초			94	1.2	7	8	연결로	산책로73	산책로95	
당초			95	1.2	80	96	연결로	신내공원	목교, 타-3	
당초			97	3	38	112	연결로	진입광장 가-6	산책로72	
당초			99	2	252	505	산책로	중화동 19-6	산책로126	
당초			100	1.8	21	37	연결로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1	1.8	26	48	연결로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2	2	101	204	산책로	산책로99	산책로99	
당초			103	4.3	5	22	연결로	산책로99	어린이놀이터,아-3	
당초			104	1.4	7	10	연결로	산책로102	산책로105	
당초			105	2	138	279	산책로	중화동 19-6	산책로99	
당초			106	2	5	11	연결로	산책로102	산책로105	
당초			107	2	5	9	연결로	산책로105	439-1공	
당초			108	1.8	30	54	연결로	산책로99	산책로105	
당초			109	1.8	25	45	연결로	산책로105	산책로105	
당초			110	2	6	13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3	휴게소, 사-25	
당초	산책로		111	2.3	7	15	연결로	산책로112	신내동 655-2	
당초			112	2	32	65	연결로	체력단련장 카-8	체력단련장 카-9	
당초			113	2	72	143	연결로	신내동 655-2	체력단련장 카-8	
당초			114	1.8	76	137	연결로	산책로113	신내동 655-2	
당초			115	1.8	2	4	연결로	산책로114	휴게소 사-1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16	2	13	27	연결로	산책로113	산책로114	
당초			117	4	24	67	연결로	중로 2-2	중심광장 다-5	
당초			118	2	263	527	연결로	진입광장 가-9	진입광장 가-9	
당초			119	1.5	56	84	연결로	산책로118	산책로118	
당초			120	1.5	31	47	연결로	산책로118	산책로118	
당초			121	2	64	127	연결로	산책로122	산책로118	
당초			122	1.5	81	121	연결로	산책로44	산책로157	
당초			123	2	23	46	연결로	휴게소 사-7	야외무대 가-1	
당초			124	1.5	216	324	연결로	산책로31	도자구역	
당초			125	1.5	52	78	연결로	산책로31	산책로124	
당초			126	2	83	165	진입로	도자구역	봉화산로33길	
당초			127	3.5	44	154	연결로	동일로144길	동일로144길	
당초			128	1.5	99	149	연결로	산책로127	도자구역	
당초			129	1	70	70	연결로	산책로20	산책로10	
당초			130	1.5	121	182	연결로	산책로13	동일로152길	
당초			131	1.5	65	97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6	산책로10	
당초			132	1.5	31	46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아-6	산책로130	
당초			133	1.5	12	18	연결로	동일로154길	산책로130	
당초			134	1.5	44	66	연결로	휴게소 사-29	산책로131	
당초			135	2	8	21	연결로	화장실 머-4	산책로136	
당초			136	1.5	34	52	연결로	휴게소 사-29	산책로10	
당초	산책로		137	1	26	26	연결로	산책로10	산책로10	
당초			138	2	11	20	연결로	동일로154길	산책로130	
당초			139	1	7	7	연결로	산책로129	산책로13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40	1.5	114	170	진입로	중로 2-1	휴게소 사-28	
당초			141	1.5	5	8	연결로	산책로140	산책로158	
당초			142	1.5	4	7	연결로	산책로140	산책로158	
당초			143	1.5	3	4	연결로	산책로140	산책로158	
당초			144	1.8	72	130	연결로	산책로 178	산책로1	
당초			145	1.5	57	85	연결로	산책로157	도자구역	
당초			146	1.5	13	20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산책로160	
당초			147	1.5	11	16	연결로	휴게소 사-23	산책로82	
당초			148	1.5	51	77	연결로	산책로84	산책로161	
당초			149	1.5	7	10	연결로	산책로46	도자구역 산책로149	
당초			150	2	27	55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52	
당초			151	3	105	316	연결로	진입광장 가-7	산책로48	
당초			152	1.2	14	17	연결로	봉수대지 파	체력단련장 카-12	
당초			153	1.8	20	36	연결로	산책로151	산책로162	
당초			154	1.2	13	15	연결로	산책로155	휴게소 사-35	
당초			155	2	12	24	연결로	화장실 라-1	산책로36	
당초			156	2	6	12	연결로	목교 타-6	휴게소 사-33	
당초			157	1.5	1,681	2,522	둘레길	산책로35	산책로35	
당초			158	1.5	129	193	연결로	산책로 178	산책로157	
당초			159	2	109	218	연결로	묵동 산41-1공	산책로79	
당초			160	1.5	81	121	진입로	산책로 178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61	1.4	30	42	연결로	중심광장 다-2	산책로84	
당초	산책로		162	1.5	35	52	연결로	산책로48	산책로151	
당초			163	1.5	11	16	연결로	목공체험장 더	산책로 86	
당초			165	2.5	63	143	연결로	산책로 117	산책로 181	
당초			166	2~3	113	350	연결로	산책로 167	산책로 169	
당초			167	4	28	123	연결로	산책로 165	산책로 165	
당초			168	3.5	20	77	연결로	중심광장 다-5	산책로 167	
당초			169	2~6	46	196	연결로	중심광장 다-5	산책로 117	
당초			171	2.5	23	60	연결로	산책로 166	신내동 655-1도	
당초			172	3~8	14	89	연결로	농구장 차-2	산책로 173	
당초			173	3	117	390	연결로	중심광장 다-7	농구장 차-2	
당초			174	4	44	188	연결로	광장 다-8	산책로 81	
당초			175	3~4	68	293	연결로	산책로 174	중심광장 다-2	
당초			176	3~8	9	58	연결로	중심광장 다-5	산책로 166	
당초			177	4	33	133	연결로	중심광장 다-7	농구장 차-2	
당초			178	1.8	595	1,070	연결로	유아숲체험원 너	중심광장 다-7	
당초			179	2	161	321	연결로	산책로 114	산책로 46	
당초			180	2.5	29	98	연결로	산책로 166	산책로 18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81	4	68	282	연결로	중로 2-2	산책로 182	
당초			182	4	127	543	연결로	테마정원 나-5	신내동 655-1도	
당초			183	3	9	32	연결로	산책로 166	산책로 182	
당초			184	1.5	184	314	연결로	산책로 189	산책로 182	
당초	산책로		185	2	77	160	연결로	산책로 184	산책로 182	
당초			186	0.8~1.5	15	15	연결로	산책로 184	산책로 185	
당초			187	2	47	108	연결로	산책로 185	테마정원 나-5	
당초			188	2	12	25	연결로	산책로 185	산책로 184	
당초			189	2	84	189	연결로	산책로 184	관리시설 4	
당초			190	2	39	86	연결로	관리시설 4	산책로 182	
당초			191	6~20	32	280	진입로	중심광장 다-8	산책로 191	
당초			192	1.8	45	89	진입로	산책로 189	산책로 72	
당초			193	1.8	69	133	연결로	산책로 178	저 반려견놀이터	
당초			194	1.5	29	44	연결로	다-7 중심광장	산책로 178	
신설			195	1.8	71.8	136.6	연결로	산책로 178	산책로 157	증136.6㎡
신설			196	1.8	42.3	85.4	연결로	산책로 157	산책로 144	증85.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197	1.8	53.9	97.2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57	증97.2㎡
신설			198	1.8	459.6	893.2	연결로	산책로 157	산책로 4	증893.2㎡
신설			199	1.8	190.9	372.1	연결로	산책로 4	산책로 9	증372.1㎡
신설			200	1.8	62.2	118	연결로	산책로 9	산책로 9	증118㎡
신설			201	1.8	34.4	68.4	연결로	산책로 9	산책로 9	증68.4㎡
신설			202	1.8	303	603	연결로	산책로 9	산책로 9	증603㎡
신설			203	1.8	97.5	188.7	연결로	산책로 9	산책로 22	증188.7㎡
신설	산책로		204	1.8	45.4	85.4	연결로	산책로 22	산책로 22	증85.4㎡
신설			205	1.8	212	409.3	연결로	산책로 22	광장 파	증409.3㎡
신설			206	1.8	96.8	176.4	연결로	산책로 153	산책로 162	증176.4㎡
신설			207	1.8	38.7	72.7	연결로	산책로 162	산책로 48	증72.7㎡
신설			208	1.8	196.9	407.3	연결로	산책로 48	산책로 48	증407.3㎡
신설			209	1.8	253	463.3	연결로	산책로 48	산책로 48	증463.3㎡
신설			210	1.8	127.8	246.1	연결로	산책로 48	산책로 47	증246.1㎡
신설			211	1.8	199.7	385.2	연결로	산책로 47	산책로 36	증385.2㎡
신설			212	1.8	230.5	434.4	연결로	산책로 36	산책로 156	증434.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213	1.8	24	41.8	연결로	산책로 157	산책로 35	증41.8㎡
신설			214	1.8	234.6	441.4	연결로	산책로 35	산책로 156	증441.4㎡
신설			215	1.8	23.8	49.1	연결로	중화동 19-6	중심광장 가-8	증49.1㎡
신설			216	1.8	17.5	31.6	연결로	중심광장 가-8	중심광장 가-8	증31.6㎡
신설			217	1.8	18.1	32.9	연결로	중심광장 가-8	산책로 27	증32.9㎡
신설			218	1.8	34	61.4	연결로	산책로 27	산책로 27	증61.4㎡
신설			219	1.8	31.9	57.8	연결로	산책로 27	산책로 27	증57.8㎡
신설			220	1.8	375.9	737.7	연결로	산책로 27	산책로 157	증737.7㎡
신설			221	1.8	127.8	246.3	연결로	산책로 25	산책로 157	증246.3㎡
신설	산책로		222	1.8	400.6	767.1	연결로	산책로 25	산책로 25	증767.1㎡
신설			223	1.8	71.9	139.5	연결로	산책로 25	산책로 25	증139.5㎡
신설			224	1.8	75.1	144	연결로	산책로 25	산책로 24	증144㎡
신설			225	1.8	165.9	320.4	연결로	산책로 24	산책로 24	증320.4㎡
신설			226	1.8	672.4	1,342.9	연결로	산책로 24	산책로 205	증1,342.9㎡

◈ 성북구공고 제2026-735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성 북 구 청 장

<table>
<tr><th colspan="2" rowspan="2">반출금지 구역</th><th rowspan="2">면적
(ha)</th><th colspan="3">피해상황</th><th rowspan="2">행위제한 사항</th><th rowspan="2">위반 시 벌칙</th></tr>
<tr><th>장소</th><th>면적
(ha)</th><th>감염목 수
(본)</th></tr>
<tr><td colspan="2">계</td><td>2,700</td><td>-</td><td>-</td><td>1본</td><td rowspan="17">1.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2.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3.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4.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td><td rowspan="17">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
<tr><td rowspan="10">성북구</td><td>정릉4동</td><td>44</td><td>산1-1</td><td>-</td><td>1본</td></tr>
<tr><td>정릉1동</td><td>117</td><td colspan="3" rowspan="16">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2km 이내</td></tr>
<tr><td>정릉2동</td><td>371</td></tr>
<tr><td>정릉3동</td><td>313</td></tr>
<tr><td>길음1동</td><td>79</td></tr>
<tr><td>길음2동</td><td>58</td></tr>
<tr><td rowspan="6">강북구</td><td>삼각산동</td><td>62</td></tr>
<tr><td>송천동</td><td>90</td></tr>
<tr><td>삼양동</td><td>91</td></tr>
<tr><td>수유1동</td><td>167</td></tr>
<tr><td>인수동</td><td>328</td></tr>
<tr><td>미아동</td><td>93</td></tr>
<tr><td>종로구</td><td>평창동</td><td>887</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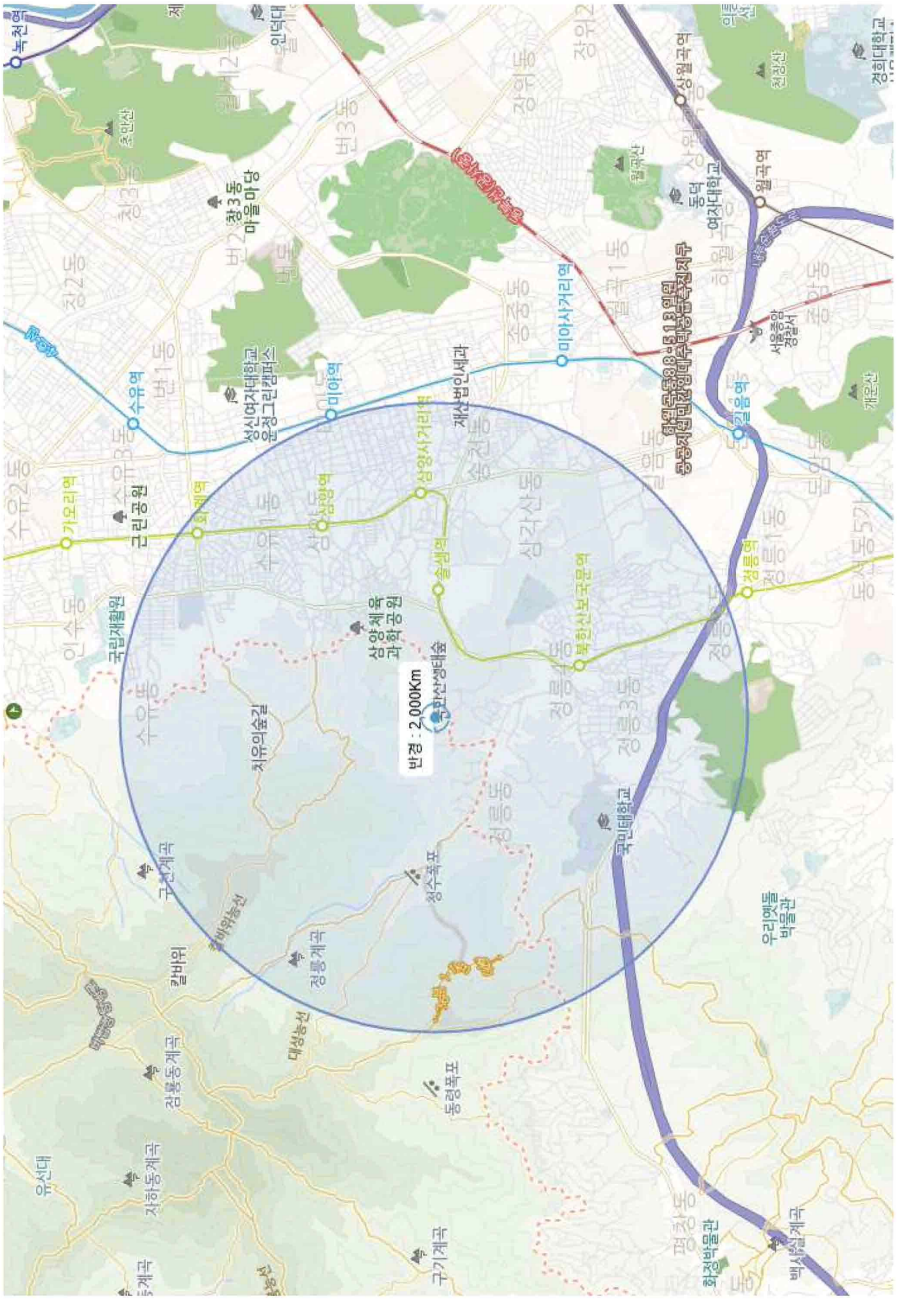
반경 : 2.000Km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삼양사거리역
솔샘역
삼양체육공원
북한산생태숲
북한산보국문역
정릉역
월곡역
상월곡역
국민대학교
서울종합정보센터
재산법인세과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근린공원
국립재활원
치유의숲길
칼바위
정릉계곡
정수폭포
동령폭포
대성동계곡
자하동계곡
구기계곡
우리옛돌박물관
화정박물관
백사실계곡

◈ 강북구공고 제2026-69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8-1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4)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 센터	강북구 수유동 568-100번지 일대	-	증)737	737	-	

○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공청사	○ 공공청사(주민센터) 신설 - 면적: 737㎡	○ 기존 시설 노후화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주민센터부지 내 주민센터 신축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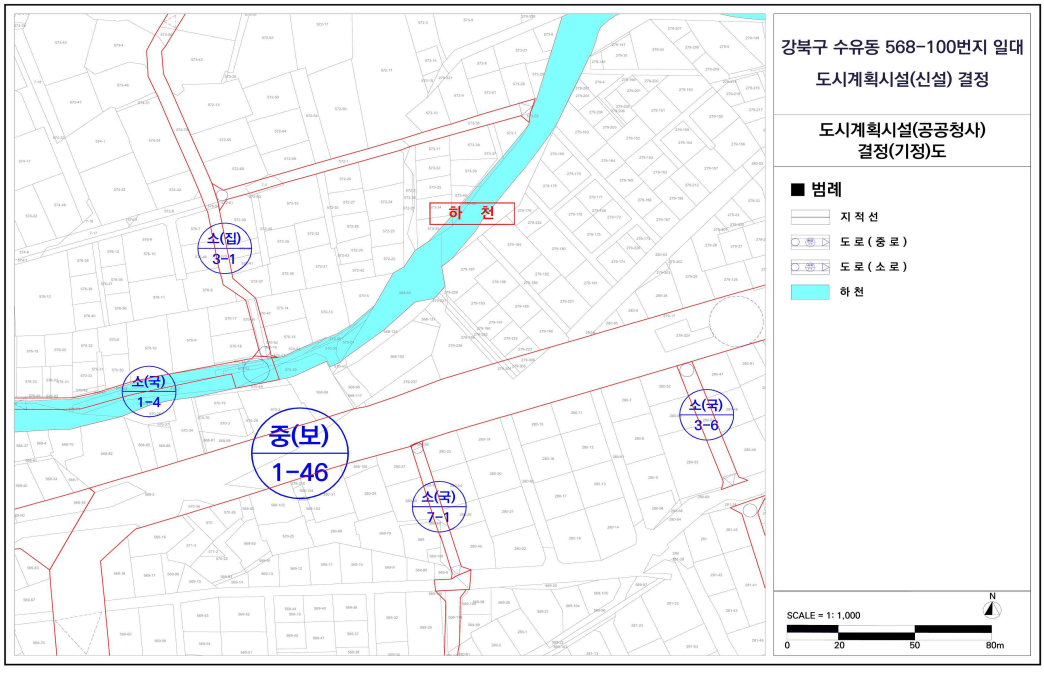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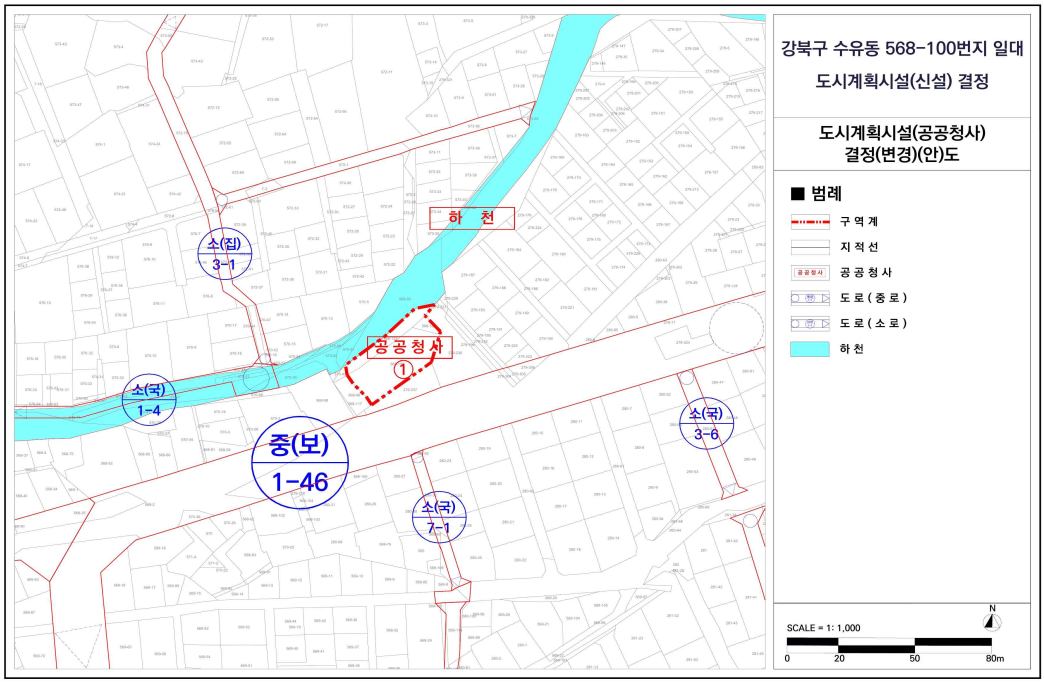

◈ 노원구공고 제2026-7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상계동 31-1 ~ 상계동 13-1 수락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6. 4. 23. ~ 2026. 5. 7.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 도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530	상계동 31-1 (중로2-121)	상계동 13-1	일반도로	-	-	※철도(A=327㎡) 및 대로(491㎡) 중복

- 도로 결정(신설)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	· 노선 신설 - L = 530m - B = 8m	· 수락산 방문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열람장소) 또는 온라인 의견제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주민의견제출) → 주민의견서작성
바. 기타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공고 제2026-890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10 외 2필지
나. 계약면적 : 5,888㎡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관악구보 게재
사.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2)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악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254	임야	2,339
	산 1-268		229
	산 1-10		3,320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 (무상사용인 경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6년 5월 일부터 2029년 5월 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지방세법」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관악구청장) (인)

◈ 서초구공고 제2026-893호

서리풀근린공원(반포미도1차재건축정비사업)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25-6000호(2025.11.6.)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160-24 일대
   나. 공원면적: 465,938.3㎡
2.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목　적: 반포미도1차재건축정비사업 구역 편입에 따른 기부채납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기능함양을 위한 조성사항을 반영하여 그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 별첨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조성계획도(변경) 각 1부.　끝.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산160-24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65,938.30	88,888.62	9	14,854.72	88,451.55	6	465,938.30	88,945.42	9	14,854.72	88,451.55	6	증 56.80㎡
기반시설	소 계	50,501.81	17,221.81 (16,640)				1	50,558.61	17,278.61 (16,640)				1	증 56.80㎡
	도 로	41,534.27	24,894.27					41,591.07	24,951.07					증 56.80㎡
	광 장	8.967.54	8,967.54					8.967.54	8,967.54					
조경시설		24,168.16	24,168.16				5	24,168.16	24,168.16				5	
유희시설														
휴양시설		4,213.48	4,213.48					4,213.48	4,213.48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19,439.00	19,439.00	6	14,602.54	88,199.37		19,439.00	19,439.00	6	14,602.54	88,199.37		
운동시설	763.00	763.00					763.00	763.00					
편익시설	5,854.00	5,854.00	2	44.10	44.10		5,854.00	5,854.00	2	44.10	44.10		
관리시설	589.17	589.17	1	208.08	208.08		589.17	589.17	1	208.08	208.08		
녹지 및 기타	360,409.68	-					360,352.88	-					감 56.80㎡
시설율 (법정 40%)	88,888.62㎡ / 465,938.3㎡ x 100 = 19.07%(법정40%이하)						88,945.42㎡ / 465,938.3㎡ x 100 = 19.08%(법정40%이하)						
건폐율 (법정 10%)	14,854.72㎡ / 465,938.3㎡ x 100 = 3.18%(법정10%이하)						14,854.72㎡ / 465,938.3㎡ x 100 = 3.18%(법정10%이하)						

2.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65,938.30	88,888.62	-	9	14,854.72		6.00			465,938.30	88,945.42		9	14,854.72		6.00	주) 56.80㎡
기반시설	소 계			50,501.81	33,861.81					1.00			50,558.61	33,918.61					1.00	주) 56.80㎡
	도 로			41,534.27	24,894.27					-			41,591.07	24,951.07					-	주) 56.80㎡
	보도교량	①		-	-					1.00			-	-					1.00	
	광 장	자		8,967.54	8,967.54								8,967.54	8,967.54						
		자-1		3,786.00	3,786.00								3,786.00	3,786.00						
		자-2		5,110.00	5,110.00								5,110.00	5,110.00						
		자-3		71.54	71.54								71.54	71.54						
조경시설	소 계			24,168.16	24,168.16					5.00			24,168.16	24,168.16					5.00	
	잔디밭	차		13,603.00	13,603.00								13,603.00	13,603.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실수원	카		2,938.00	2,938.00								2,938.00	2,938.00						
	화단	하		7,448.70	7,448.70								7,448.70	7,448.70						
		하-1		4,253.00	4,253.00								4,253.00	4,253.00						
		하-2		3,124.00	3,124.00								3,124.00	3,124.00						
		하-3		15.61	15.61								15.61	15.61						
		하-4		56.09	56.09								56.09	56.09						
	화계	가		84.19	84.19								84.19	84.19						
	경관옹벽	나		34.52	34.52								34.52	34.52						
		나-1		0.72	0.72								0.72	0.72						
		나-2		14.06	14.06								14.06	14.06						
		나-3		5.12	5.12								5.12	5.12						
		나-4		2.65	2.65								2.65	2.65						
		나-5		11.97	11.97								11.97	11.9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개비온옹벽	마		59.75	59.75					5.00			59.75	59.75					5.00	
		마-1		15.16	15.16					1.00			15.16	15.16					1.00	
		마-2		8.31	8.31					1.00			8.31	8.31					1.00	
		마-3		9.76	9.76					1.00			9.76	9.76					1.00	
		마-4		5.75	5.75					1.00			5.75	5.75					1.00	
		마-5		20.77	20.77					1.00			20.77	20.77					1.00	
휴양시설	소계			4,213.48	4,213.48								4,213.48	4,213.48						
	휴게소	아		4,213.48	4,213.48								4,213.48	4,213.48						
		아-2		284.26	284.26								284.26	284.26						
		아-3		1,419.00	1,419.00								1,419.00	1,419.00						
		아-4		246.00	246.00								246.00	246.00						
		아-5		411.00	411.00								411.00	411.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6		156.00	156.00								156.00	156.00						
	아-7		224.00	224.00								224.00	224.00						
	아-8		223.00	223.00								223.00	223.00						
	아-9		61.00	61.00								61.00	61.00						
	아-10		270.00	270.00								270.00	270.00						
	아-11		84.00	84.00								84.00	84.00						
	아-12		155.00	155.00								155.00	155.00						
	아-13		91.00	91.00								91.00	91.00						
	아-14		55.24	55.24								55.24	55.24						
	아-15		38.81	38.81								38.81	38.81						
	아-16		96.87	96.87								96.87	96.87						
	아-17		46.74	46.74								46.74	46.7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아-18		15.70	15.70								15.70	15.70						
		아-19		30.47	30.47								30.47	30.47						
		아-20		21.23	21.23								21.23	21.23						
		아-21		27.63	27.63								27.63	27.63						
		아-22		195.33	195.33								195.33	195.33						
		아-23		61.20	61.20								61.20	61.20						
양교시설	소계			19,439.00	19,439.00			14,602.54	88,199.37				19,439.00	19,439.00			14,602.54	88,199.37		
	도서관	2		17,939.00	17,939.00			13,102.54	83,249.37				17,939.00	17,939.00			13,102.54	83,249.37		
		2-1		12,970.00	12,970.00			12,212.72	80,919.05				12,970.00	12,970.00			12,212.72	80,919.05		
		2-2		4,969.00	4,969.00			889.82	2,330.32				4,969.00	4,969.00			889.82	2,330.32		
	문화회관	3		1,500.00	1,500.00			1,500.00	4,950.00				1,500.00	1,500.00			1,500.00	4,950.00		
봉은시설	소계			763.00	763.00								763.00	763.00						
	베드민턴장	바		763.00	763.00								763.00	763.00						
		바-1		426.00	426.00								426.00	426.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2		337.00	337.00								337.00	337.00						
편익시설	소 계			5,854.00	5,854.00			44.10	44.10				5,854.00	5,854.00			44.10	44.10		
	화장실	파		72.00	72.00			44.10	44.10				72.00	72.00			44.10	44.10		
		파-1		47.00	47.00			21.00	21.00				47.00	47.00			21.00	21.00		
		파-2		25.00	25.00			23.10	23.10				25.00	25.00			23.10	23.10		
	주차장	타		5,782.00	5,782.00								5,782.00	5,782.00						
관리시설	소 계			589.17	589.17			208.08	208.08				589.17	589.17			208.08	208.08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208.08	208.08				589.17	589.17			208.08	208.08		
녹지 및 기타	소 계			360,409.68	0								360,352.88	0						감 56.80㎡
	녹지 및 기타			360,409.68	0								360,352.88	0						감 56.8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5,524.61 641.00	24,894.27 16,640.00				
변경	합 계				95,552.68 641.00	24,951.07 16,640.00				
당초	광로	소 계			297.00	12,574.00				
당초			1	40	157.00	6,506.00	도시계획도	서초동 산 160-67	서초동 산17-28	
당초			2	40	140.00	6.068.00	도시계획도	반포동 513-6	서초동 산183-3	
당초	중로	소 계			152.00	2,825.00				
당초		3	2	12	152.00	2,825.00	도시계획도	반포동 576	서초동 산172-12	
당초	소로	소 계			422.00 192.00	3,758.00 1,241.00				
당초		3	3	8	192.00	1,241.00	도시계획도	서초동 산160-67	서초동 산17-28	
당초		3	4	7	422.00	3,758.00	도시계획도	반포동 513-6	서초동 산183-3	
당초	산책로	소 계			9,102.61	21,136.27				
변경		소 계			9,130.68	21,193.07				
당초			1	2	149.00	299.00	산책로	반포동 산34-12	반포동 산28	
당초			3	2	84.00	167.00	산책로	반포동 산28	반포동 산40-12	
당초			4	2	42.00	84.00	산책로	반포동 산34-12	반포동 산34-12	
당초			5	2	189.42	417.15		산책로55	서초동 산183-12	
당초			6	2	53.00	107.00	산책로	반포동 산34-12	반포동 산34-12	
당초			7	2	102.00	204.00	산책로	산28-5	산28	
변경			7	2	130.07	260.8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8	2	188.09	361.70	산책로	휴게소 (아-6)	산책로 5	
당초			9	2	217.00	434.00	산책로	반포동 산28	서초동 산185-1	
당초			10	2	97.00	194.00	산책로	광로 2	산책로 11	
당초			11	2	562.00	1,124.00	산책로	잔디광장 (차)	잔디광장 (차)	
당초			12	2	76.00	151.00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1	
당초			13	2	109.00	218.0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7	
당초			14	2	220.00	440.00	산책로	중로 3-2	산책로 20	
당초			18	1.8	1,439.96	2,823.20	산책로	산책로 58	쉼터 (아-3)	
당초			20	2	134.00	304.00	산책로	쉼터 (아-5)	쉼터 (아-9)	
당초			21	2	61.00	117.00	산책로	서초동 산 156-58	산책로 41	
당초			25	2	161.00	322.00	산책로	산책로 20	방배동 산17-46	
당초			27	2	117.00	234.00	산책로	방배동 산 17-45	산책로 20	
당초			28	2	155.00	310.00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11	
당초			29	2	57.00	112.00	산책로	산책로 72	산책로 28	
당초			30	2	169.00	337.00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64	
당초			31	2	87.00	174.00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72	
당초			33	2	88.00	175.00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33	도자구역 산책로 33	
당초			34	2	36.00	68.00	산책로	광로 1	도자구역 산책로 34	
당초			37	2	208.00	416.00	산책로	중로 3-2	산책로 11	
당초			39	2	137.00	274.00	산책로	서초동 산160-27	방배동 887-1	
당초			41	1.5	242.00	358.00	산책로	산책로 39	휴게소 (아-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3	2	103.00	206.00	산책로	방배동 산23-35	산책로	
당초			44	2	203.00	406.00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41	
당초			47	2	71.00	142.00	산책로	산책로 21	쉼터 (아-4)	
당초			49	2	154.49	318.08		방배동 167-31	산책로 41	
당초			50	4	53.25	236.09		연결교량 (①)	산책로 11	
당초			51	2	57.00	113.00	산책로	반포동 60-1	반포동 60-1	
당초			52	2	170.00	339.00	산책로	산책로 51	반포동 60-6	
당초			53	2	52.00	105.00	산책로	반포동 34-12	반포동 34-12	
당초			54	2	100.00	200.00	산책로	서초동 산185-1	서초동 산 185-1	
당초			55	1.5	92.76	164.70	산책로	반포동 산40-12	산책로 5	
당초			56	2~8	22.00	103.00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11	
당초			57	2	4.00	8.00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11	
당초			58	4	91.00	366.00	산책로	반포동 산85-2	반포동 산85-2	
당초			59	2	66.00	133.00	산책로	중로 3-2	산책로 14	
당초			60	2	113.00	226.00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14	
당초			61	3	56.00	167.00	산책로	쉼터 (아-3)	쉼터 (아-2)	
당초			62	2	247.37	474.44	산책로	산책로 73	산책로 18	
당초			63	2~4.5	173.00	600.00	산책로	쉼터 (아-3)	광로 1	
당초			64	3	357.00	1,241.00	산책로	광로 1	방배동 산 17-38	
당초			65	2	61.00	123.00	산책로	산책로 64	도서관 (2-2)	
당초			66	2	8.00	179.00	산책로	반포동 산59	소로 3-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7	7	107.00	809.00	산책로	주차장 (타)	산책로 68	
당초			68	4~7	51.00	285.00	산책로	반포동 631-3	도서관 (2)	
당초			69	2	118.00	722.00	산책로	주차장 (타)	주차장 (타)	
당초			70	5.5	87.00	534.00	산책로	도서관 (2)	도서관 (2)	
당초			71	2	61.00	121.00	산책로	옥외휴양시설 (나-9)	산책로 31	
당초			72	2	184.00	375.00	산책로	옥외휴양시설 (나-9)	산책로 28	
당초			73	2	951.00	1,901.00	산책로	방배동 167-31	광장 (자-3)	
당초			74	2.4	4.56	22.76	산책로	방배동 167-31	서초동 산160-68	
당초			75	3	15.49	53.62	산책로	방배동 167-30	산책로 77	
당초			76	2.3	3.72	8.43	산책로	방배동 167-30	산책로 75	
당초			77	2.2	12.95	27.95	산책로	산책로 75	산책로 49	
당초			78	1.6	34.00	88.46	산책로	산책로 49	방배동 167-33	
당초			79	2	1.60	3.22	산책로	방배동 167-33	산책로 78	
당초			80	4.8	14.07	74.42	산책로	연결교량 (①)	산책로 55	
당초			81	1.5	21.88	35.05	산책로	산책로 80	산책로 55	

조성계획도[변경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5,000(A1)

0 125 250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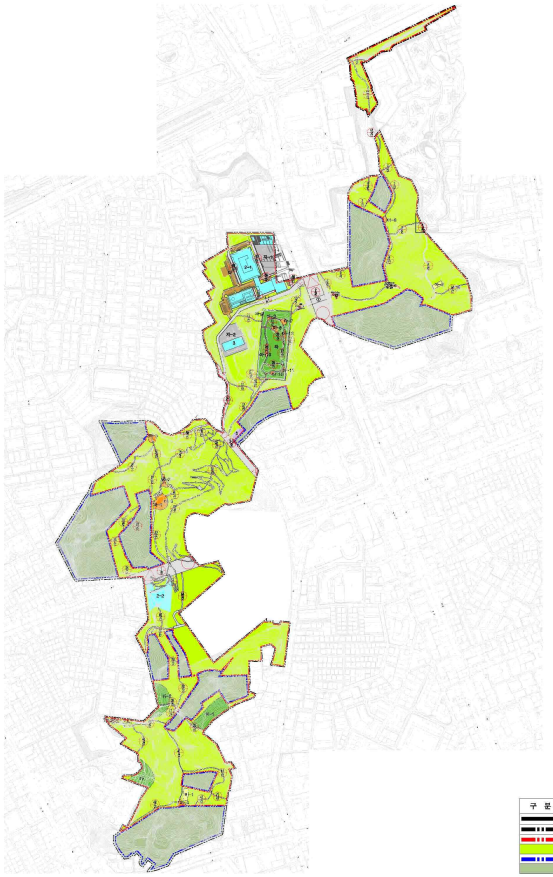

■ 조성계획 총괄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465,538.3	88,888.62	-	9	14,854.72	88,451.55	6	
기반사설	소계		50,501.81	33,861.81	-	-	-	-	1	
	도로	공	41,534.27	24,894.27 (16,640)	-	-	-	-	-	16640은 사업에 포함
	보도교량	①	-	-	-	-	-	-	1	
	광장	자	8,967.54	8,967.54	-	-	-	-	-	
		자-1	3,786	3,786	-	-	-	-	-	
		자-2	5,110	5,110	-	-	-	-	-	
		자-3	71.54	71.54	-	-	-	-	-	
조경사설	소계		24,168.16	24,168.16	-	-	-	-	5	
	잔디밭	차	13,603	13,603	-	-	-	-	-	
	음실수원	카	2,938	2,938	-	-	-	-	-	
	화단	하	7,448.7	7,448.7	-	-	-	-	-	
		하-1	4,253	4,253	-	-	-	-	-	
		하-2	3,124	3,124	-	-	-	-	-	
		하-3	15.61	15.61	-	-	-	-	-	
		하-4	56.09	56.09	-	-	-	-	-	
	화계	가	84.19	84.19	-	-	-	-	-	
	정문문벽	나	34.52	34.52	-	-	-	-	-	
		나-1	0.72	0.72	-	-	-	-	-	
		나-2	14.06	14.06	-	-	-	-	-	
		나-3	5.12	5.12	-	-	-	-	-	
		나-4	2.65	2.65	-	-	-	-	-	
		나-5	11.97	11.97	-	-	-	-	-	
	개비온옹벽	마	58.75	58.75	-	-	-	-	5	
		마-1	15.16	15.16	-	-	-	-	1	
		마-2	8.31	8.31	-	-	-	-	1	
		마-3	9.76	9.76	-	-	-	-	1	
		마-4	5.75	5.75	-	-	-	-	1	
		마-5	20.77	20.77	-	-	-	-	1	

■ 조성계획 총괄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휴양사설	소계		4,213.48	4,213.48	-	-	-	-	-	
	유게소	아	4,228.22	4,228.22	-	-	-	-	-	
		아-2	284.26	284.26	-	-	-	-	-	
		아-3	1419	1,419	-	-	-	-	-	
		아-4	246	246	-	-	-	-	-	
		아-5	411	411	-	-	-	-	-	
		아-6	156	156	-	-	-	-	-	
		아-7	224	224	-	-	-	-	-	
		아-8	223	223	-	-	-	-	-	
		아-9	61	61	-	-	-	-	-	
		아-10	270	270	-	-	-	-	-	
		아-11	84	84	-	-	-	-	-	
		아-12	155	155	-	-	-	-	-	
		아-13	91	91	-	-	-	-	-	
		아-14	55.24	55.24	-	-	-	-	-	
		아-15	38.81	38.81	-	-	-	-	-	
		아-16	96.87	96.87	-	-	-	-	-	
		아-17	46.74	46.74	-	-	-	-	-	
		아-18	15.70	15.70	-	-	-	-	-	
		아-19	30.47	30.47	-	-	-	-	-	
		아-20	21.23	21.23	-	-	-	-	-	
		아-21	27.63	27.63	-	-	-	-	-	
		아-22	195.33	195.33	-	-	-	-	-	
		아-23	61.20	61.20	-	-	-	-	-	
교양사설	소계		19,439	19,439	-	6	14,602.54	88,199.37	-	
	도서관	2	17,939	17,939	-	5	13,102.54	83,249.37	-	
		2-1	12,970	12,970	-	4	12,212.72	80,919.05	-	
		2-2	4,969	4,969	-	1	889.82	2,330.32	-	
	문화회관	3	1,500	1,500	-	1	1,500	4,950	-	
운동사설	소계		763	763	-	-	-	-	-	
	배드민턴장	바	763	763	-	-	-	-	-	
		바-1	426	426	-	-	-	-	-	
		바-2	337	337						
관리사설	소계		5,854	5,854	-	2	44.1	44.1	-	
	화장실	파	72	72	-	2	44.1	44.1	-	
		파-1	47	47	-	1	21	21	-	
		파-2	25	25	-	1	23.1	23.1	-	
	주차장	타	5,782	5,782	-	-	-	-	-	
관리사설	소계		589.17	589.17	-	1	208.08	208.08	-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	1	208.08	208.08	-	
녹지 및 기타	소계		360,409.68	-	-	-	-	-	-	
	녹지		360,409.68	-	-	-	-	-	-	

구 분	구 분 명
	편입공원경계
	기존공원경계
	사설공원경계
	사설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계획도[변경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5,000(A1)

0 125 250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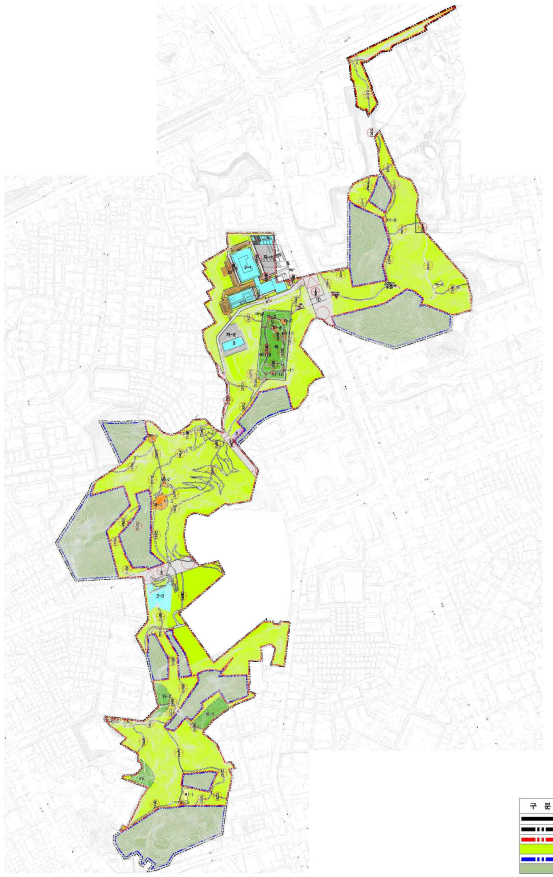

■ 조성계획 총괄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465,538.3	88,945.42	-	9	14,854.72	88,451.55	6	
기반사업	소계		50,558.61	33,918.61	-	-	-	-	1	
	도로	중	41,591.07	24,951.07 (16,640)	-	-	-	-	-	16640은 사업에서 제외
	보도교량	①	-	-	-	-	-	-	1	
	광장	자	8,967.54	8,967.54	-	-	-	-	-	
		자-1	3,786	3,786	-	-	-	-	-	
		자-2	5,110	5,110	-	-	-	-	-	
		자-3	71.54	71.54	-	-	-	-	-	
조경사업	소계		24,168.16	24,168.16	-	-	-	-	5	
	잔디밭	차	13,603	13,603	-	-	-	-	-	
	음실수원	카	2,938	2,938	-	-	-	-	-	
	화단	하	7,448.7	7,448.7	-	-	-	-	-	
		하-1	4,253	4,253	-	-	-	-	-	
		하-2	3,124	3,124	-	-	-	-	-	
		하-3	15.61	15.61	-	-	-	-	-	
		하-4	56.09	56.09	-	-	-	-	-	
	화계	가	84.19	84.19	-	-	-	-	-	
	정문문복	나	34.52	34.52	-	-	-	-	-	
		나-1	0.72	0.72	-	-	-	-	-	
		나-2	14.06	14.06	-	-	-	-	-	
		나-3	5.12	5.12	-	-	-	-	-	
		나-4	2.65	2.65	-	-	-	-	-	
		나-5	11.97	11.97	-	-	-	-	-	
	개비온옹벽	바	58.75	58.75	-	-	-	-	5	
		마-1	15.16	15.16	-	-	-	-	1	
		마-2	8.31	8.31	-	-	-	-	1	
		마-3	9.76	9.76	-	-	-	-	1	
		마-4	5.75	5.75	-	-	-	-	1	
		마-5	20.77	20.77	-	-	-	-	1	

■ 조성계획 총괄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사업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광장사업	소계		4,213.48	4,213.48	-	-	-	-	-	
	음계소	아	4,228.22	4,228.22	-	-	-	-	-	
		아-2	284.26	284.26	-	-	-	-	-	
		아-3	1419	1,419	-	-	-	-	-	
		아-4	246	246	-	-	-	-	-	
		아-5	411	411	-	-	-	-	-	
		아-6	156	156	-	-	-	-	-	
		아-7	224	224	-	-	-	-	-	
		아-8	223	223	-	-	-	-	-	
		아-9	61	61	-	-	-	-	-	
		아-10	270	270	-	-	-	-	-	
		아-11	84	84	-	-	-	-	-	
		아-12	155	155	-	-	-	-	-	
		아-13	91	91	-	-	-	-	-	
		아-14	55.24	55.24	-	-	-	-	-	
		아-15	38.81	38.81	-	-	-	-	-	
		아-16	96.87	96.87	-	-	-	-	-	
		아-17	46.74	46.74	-	-	-	-	-	
		아-18	15.70	15.70	-	-	-	-	-	
		아-19	30.47	30.47	-	-	-	-	-	
		아-20	21.23	21.23	-	-	-	-	-	
		아-21	27.63	27.63	-	-	-	-	-	
		아-22	195.33	195.33	-	-	-	-	-	
		아-23	61.20	61.20	-	-	-	-	-	
교양사업	소계		19,439	19,439	-	6	14,602.54	88,199.37	-	
	도서관	2	17,939	17,939	-	5	13,102.54	83,249.37	-	
		2-1	12,970	12,970	-	4	12,212.72	80,919.05	-	
		2-2	4,969	4,969	-	1	889.82	2,330.32	-	
	문화회관	3	1,500	1,500	-	1	1,500	4,950	-	
운동사업	소계		763	763	-	-	-	-	-	
	배드민턴장	바	763	763	-	-	-	-	-	
		바-1	426	426	-	-	-	-	-	
		바-2	337	337						
관리사업	소계		5,854	5,854	-	2	44.1	44.1	-	
	화장실	파	72	72	-	2	44.1	44.1	-	
		파-1	47	47	-	1	21	21	-	
		파-2	25	25	-	1	23.1	23.1	-	
	주차장	타	5,782	5,782	-	-	-	-	-	
관리사업	소계		589.17	589.17	-	1	208.08	208.08	-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	1	208.08	208.08	-	
녹지 및 기타	소계		360,352.88	-	-	-	-	-	-	
	녹지		360,352.88	-	-	-	-	-	-	

구 분	구 분 명
	편입공원경계
	기존공원경계
	사업공원경계
	시설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계획도[변경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1,500(A1)

0 30 90 1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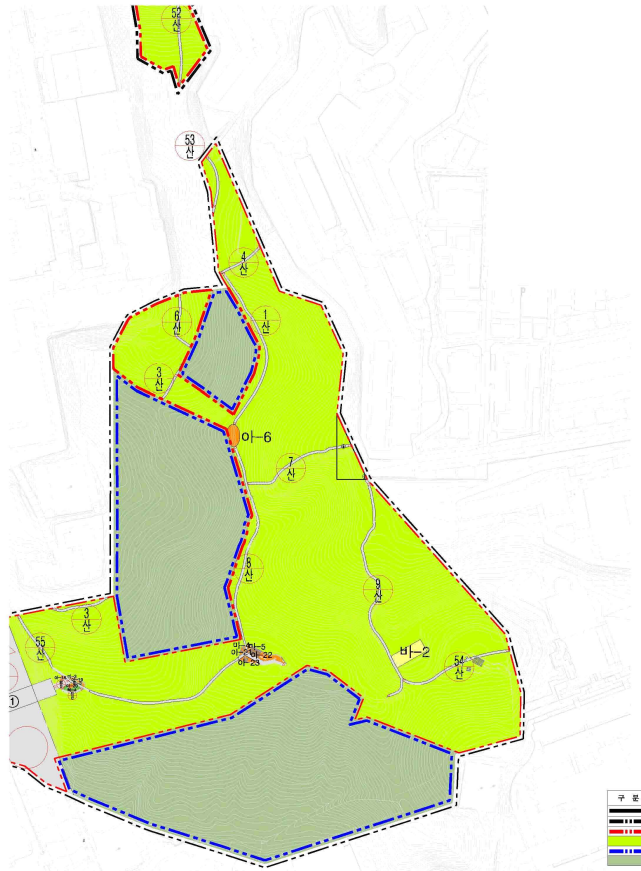

■ 조성계획 총괄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65,538.3	88,888.62	-	9	14,854.72	88,451.55	6	
기반	소계		50,501.81	33,861.81	-	-	-	-	1	
사설	도로	공	41,534.27	24,894.27 (16,640)	-	-	-	-	-	16,640은 사업대상 아님
	보도교량	①	-	-	-	-	-	-	1	
	광장	자	8,967.54	8,967.54	-	-	-	-	-	
		자-1	3,786	3,786	-	-	-	-	-	
		자-2	5,110	5,110	-	-	-	-	-	
		자-3	71.54	71.54	-	-	-	-	-	
조경	소계		24,168.16	24,168.16	-	-	-	-	5	
사설	잔디밭	차	13,603	13,603	-	-	-	-	-	
	음실수원	카	2,938	2,938	-	-	-	-	-	
	화단	하	7,448.7	7,448.7	-	-	-	-	-	
		하-1	4,253	4,253	-	-	-	-	-	
		하-2	3,124	3,124	-	-	-	-	-	
		하-3	15.61	15.61	-	-	-	-	-	
		하-4	56.09	56.09	-	-	-	-	-	
	화계	가	84.19	84.19	-	-	-	-	-	
	정문문벽	나	34.52	34.52	-	-	-	-	-	
		나-1	0.72	0.72	-	-	-	-	-	
		나-2	14.06	14.06	-	-	-	-	-	
		나-3	5.12	5.12	-	-	-	-	-	
		나-4	2.65	2.65	-	-	-	-	-	
		나-5	11.97	11.97	-	-	-	-	-	
	개비온옹벽	바	59.75	59.75	-	-	-	-	5	
		바-1	15.16	15.16	-	-	-	-	1	
		바-2	8.31	8.31	-	-	-	-	1	
		바-3	9.76	9.76	-	-	-	-	1	
		바-4	5.75	5.75	-	-	-	-	1	
		바-5	20.77	20.77	-	-	-	-	1	

■ 조성계획 총괄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광장	소계		4,213.48	4,213.48	-	-	-	-	-	
사설	유계소	아	4,228.22	4,228.22	-	-	-	-	-	
		아-2	284.26	284.26	-	-	-	-	-	
		아-3	1419	1,419	-	-	-	-	-	
		아-4	246	246	-	-	-	-	-	
		아-5	411	411	-	-	-	-	-	
		아-6	156	156	-	-	-	-	-	
		아-7	224	224	-	-	-	-	-	
		아-8	223	223	-	-	-	-	-	
		아-9	61	61	-	-	-	-	-	
		아-10	270	270	-	-	-	-	-	
		아-11	84	84	-	-	-	-	-	
		아-12	155	155	-	-	-	-	-	
		아-13	91	91	-	-	-	-	-	
		아-14	55.24	55.24	-	-	-	-	-	
		아-15	38.81	38.81	-	-	-	-	-	
		아-16	96.87	96.87	-	-	-	-	-	
		아-17	46.74	46.74	-	-	-	-	-	
		아-18	15.70	15.70	-	-	-	-	-	
		아-19	30.47	30.47	-	-	-	-	-	
		아-20	21.23	21.23	-	-	-	-	-	
		아-21	27.63	27.63	-	-	-	-	-	
		아-22	195.33	195.33	-	-	-	-	-	
		아-23	61.20	61.20	-	-	-	-	-	
교양	소계		19,439	19,439	-	6	14,602.54	88,199.37	-	
사설	도서관	2	17,939	17,939	-	5	13,102.54	83,249.37	-	
		2-1	12,970	12,970	-	4	12,212.72	80,919.05	-	
		2-2	4,969	4,969	-	1	889.82	2,330.32	-	
	문화회관	3	1,500	1,500	-	1	1,500	4,950	-	
운동	소계		763	763	-	-	-	-	-	
사설	배드민턴장	바	763	763	-	-	-	-	-	
		바-1	426	426	-	-	-	-	-	
		바-2	337	337						
관리	소계		5,854	5,854	-	2	44.1	44.1	-	
사설	화장실	화	72	72	-	2	44.1	44.1	-	
		화-1	47	47	-	1	21	21	-	
		화-2	25	25	-	1	23.1	23.1	-	
	주차장	타	5,782	5,782	-	-	-	-	-	
관리	소계		588.17	588.17	-	1	208.08	208.08	-	
사설	관리사무소	5	588.17	588.17	-	1	208.08	208.08	-	
녹지 및	소계		360,409.68	-	-	-	-	-	-	
기타	녹지		360,409.68	-	-	-	-	-	-	

구 분	구 분 명
	변입공원경계
	기존공원경계
	사설공원경계
	사설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계획도[변경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1,500(A1)

0 30 90 1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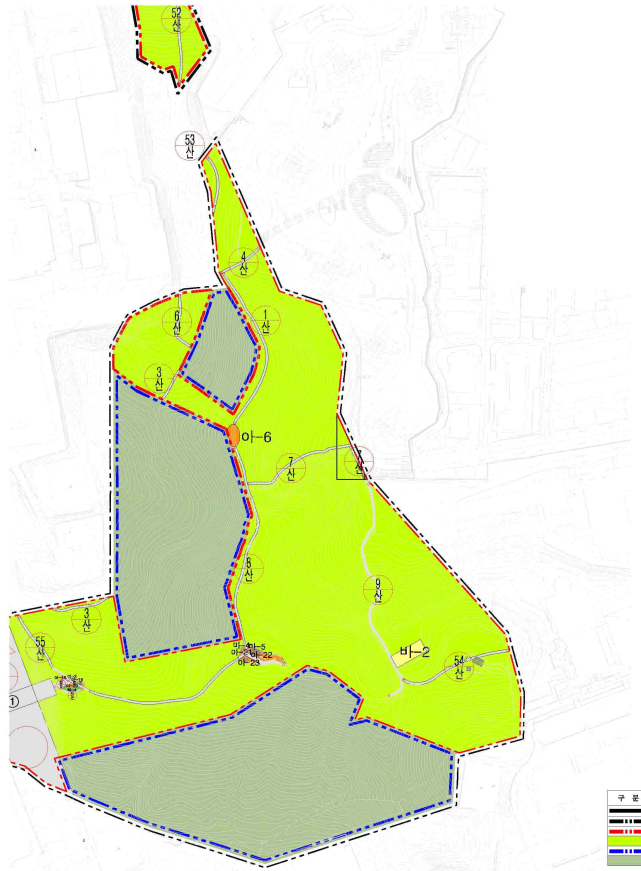

■ 조성계획 총괄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65,538.3	88,945.42	-	9	14,854.72	88,451.55	6	
기반	소계		50,558.61	33,918.61	-	-	-	-	1	
사설	도로	용	41,591.07	24,951.07 (16,640)	-	-	-	-	-	16,640은 사업부지 외임
	보도교량	①	-	-	-	-	-	-	1	
	광장	자	8,967.54	8,967.54	-	-	-	-	-	
		자-1	3,786	3,786	-	-	-	-	-	
		자-2	5,110	5,110	-	-	-	-	-	
		자-3	71.54	71.54	-	-	-	-	-	
조경	소계		24,198.16	24,198.16	-	-	-	-	5	
사설	잔디밭	차	13,603	13,603	-	-	-	-	-	
	음실수원	카	2,938	2,938	-	-	-	-	-	
	화단	하	7,448.7	7,448.7	-	-	-	-	-	
		하-1	4,253	4,253	-	-	-	-	-	
		하-2	3,124	3,124	-	-	-	-	-	
		하-3	15.61	15.61	-	-	-	-	-	
		하-4	56.09	56.09	-	-	-	-	-	
	화계	가	84.19	84.19	-	-	-	-	-	
	정문문벽	나	34.52	34.52	-	-	-	-	-	
		나-1	0.72	0.72	-	-	-	-	-	
		나-2	14.06	14.06	-	-	-	-	-	
		나-3	5.12	5.12	-	-	-	-	-	
		나-4	2.65	2.65	-	-	-	-	-	
		나-5	11.97	11.97	-	-	-	-	-	
	개비온옹벽	바	59.75	59.75	-	-	-	-	5	
		마-1	15.16	15.16	-	-	-	-	1	
		마-2	8.31	8.31	-	-	-	-	1	
		마-3	9.76	9.76	-	-	-	-	1	
		마-4	5.75	5.75	-	-	-	-	1	
		마-5	20.77	20.77	-	-	-	-	1	

■ 조성계획 총괄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광장	소계		4,213.48	4,213.48	-	-	-	-	-	
사설	휴게소	아	4,228.22	4,228.22	-	-	-	-	-	
		아-2	284.26	284.26	-	-	-	-	-	
		아-3	1419	1,419	-	-	-	-	-	
		아-4	246	246	-	-	-	-	-	
		아-5	411	411	-	-	-	-	-	
		아-6	156	156	-	-	-	-	-	
		아-7	224	224	-	-	-	-	-	
		아-8	223	223	-	-	-	-	-	
		아-9	61	61	-	-	-	-	-	
		아-10	270	270	-	-	-	-	-	
		아-11	84	84	-	-	-	-	-	
		아-12	155	155	-	-	-	-	-	
		아-13	91	91	-	-	-	-	-	
		아-14	55.24	55.24	-	-	-	-	-	
		아-15	38.81	38.81	-	-	-	-	-	
		아-16	96.87	96.87	-	-	-	-	-	
		아-17	46.74	46.74	-	-	-	-	-	
		아-18	15.70	15.70	-	-	-	-	-	
		아-19	30.47	30.47	-	-	-	-	-	
		아-20	21.23	21.23	-	-	-	-	-	
		아-21	27.63	27.63	-	-	-	-	-	
		아-22	195.33	195.33	-	-	-	-	-	
		아-23	61.20	61.20	-	-	-	-	-	
교양	소계		19,439	19,439	-	6	14,602.54	88,199.37	-	
사설	도서관	2	17,939	17,939	-	5	13,102.54	83,249.37	-	
		2-1	12,970	12,970	-	4	12,212.72	80,919.05	-	
		2-2	4,969	4,969	-	1	889.82	2,330.32	-	
	문화회관	3	1,500	1,500	-	1	1,500	4,950	-	
운동	소계		763	763	-	-	-	-	-	
사설	배드민턴장	바	763	763	-	-	-	-	-	
		바-1	426	426	-	-	-	-	-	
		바-2	337	337						
관리	소계		5,854	5,854	-	2	44.1	44.1	-	
사설	화장실	화	72	72	-	2	44.1	44.1	-	
		화-1	47	47	-	1	21	21	-	
		화-2	25	25	-	1	23.1	23.1	-	
	주차장	타	5,782	5,782	-	-	-	-	-	
관리	소계		589.17	589.17	-	1	208.08	208.08	-	
사설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	1	208.08	208.08	-	
녹지 및	소계		360,352.88	-	-	-	-	-	-	
기타	녹지		360,352.88	-	-	-	-	-	-	

구 분	구 분 명
	편입공원경계
	기존공원경계
	사설공원경계
	사설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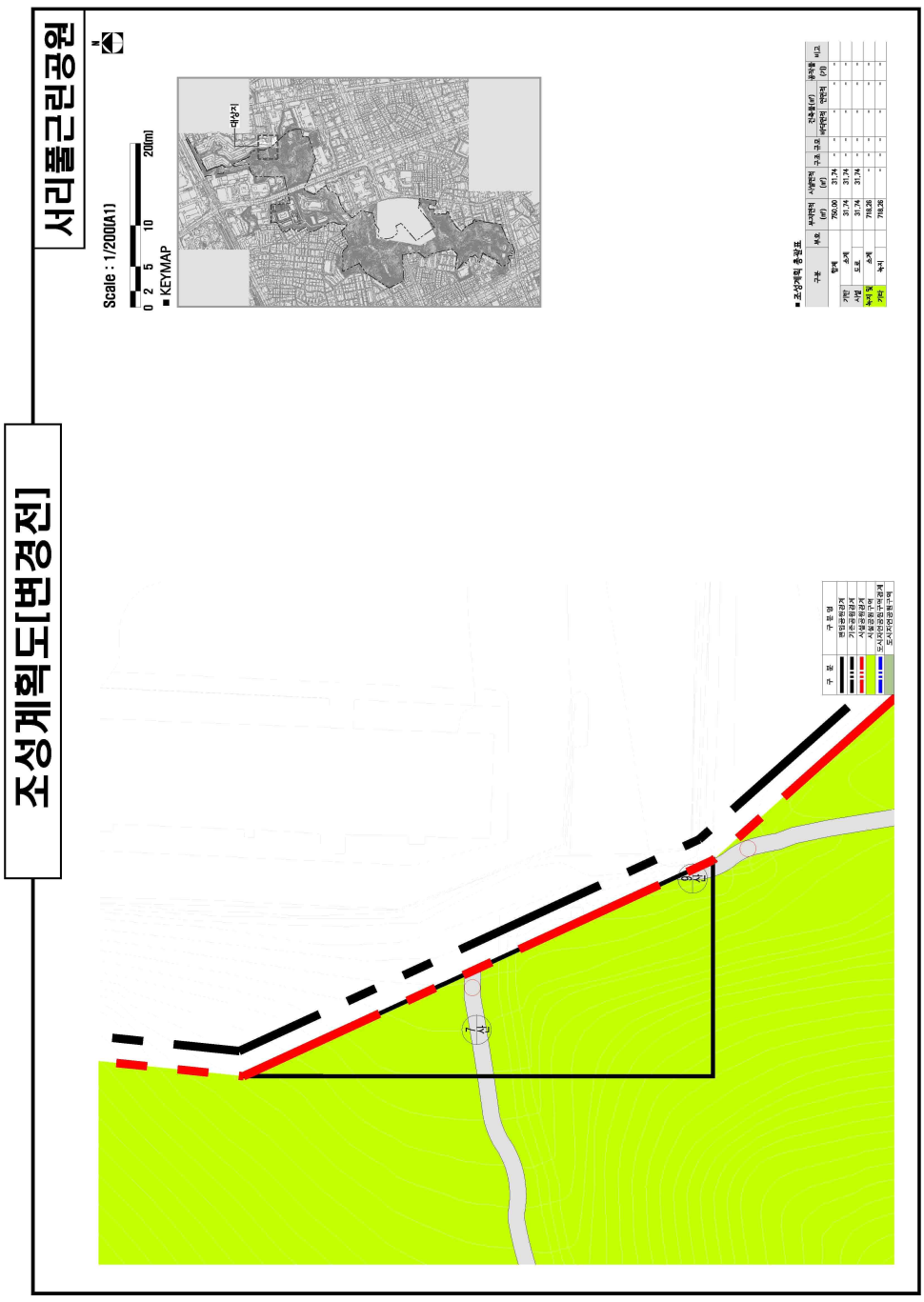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2000(A1)
0 2 5 10 20(m)
KEYMAP
대상지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합계
소계
도로
소계
녹지
녹지 및 기타
시설
소계
시설용지
조성계획 변경 경계
조성계획 변경 경계
조성계획 변경 경계

조성계획도[변경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2000A1)

0 2 5 10 20m

■ KEYMAP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호	녹화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조	건축물 높이	층수	비고
합계			750.00	88.54	-	-	-	
기반 시설	소계		88.54	88.54	-	-	-	
	도로		88.54	88.54	-	-	-	
녹지 및 공원	소계		661.46	-	-	-	-	
	녹지		661.46					

◈ 서초구공고 제2026-894호

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고시 제2024-214호(2024.04.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4 일대
   나. 공원면적: 4,479.00㎡
2. 조성계획 결정
   가. 목　적: 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지역 주민의 녹색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자 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조성내역
      - 기반시설 : 광장 및 도로 (468.74㎡)
      - 조경시설 : 화계 (109.32㎡)
      - 휴양시설 : 휴게쉼터 (167.87㎡)
      - 운동시설 : 운동공간 (122.71㎡)
      - 녹지및기타 : 녹지 (3,610.36㎡)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및 조성계획도 1부.
끝.

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총괄표 (위치 : 서초구 반포동 60-4번지 일원)

구 분		최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479.00	868.64				24	
기반시설	소 계	468.74	468.74					
	도 로	415.17	415.17					신설
	광 장	53.57	53.57					신설
조경시설		109.32	109.32				2	신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167.87	167.87				14	신설

구분	최초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운동시설	122.71	122.71				6	신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2	신설
녹지 및 기타	3,610.36						신설
시설율 (법정 20%)	868.64㎡ / 4,479.00㎡ x 100 = 19.39%						
건폐율 (법정제한없음)	없음						

2.시설조서

구 분		최초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479.00	868.64					24	
기반시설	소 계			468.74	468.74						
	도 로		반포동 60-4번지 일원	415.17	415.17						신설
	광장	가	1개소	53.57	53.57						신설
		가-1	반포동 60-4번지 일원	53.57	53.57						신설
조경시설	소 계			109.32	109.32					2	
	화계A	①	반포동 60-4번지 일원	53.36	53.36					1	신설
	화계B	②	반포동 60-4번지 일원	55.96	55.96					1	신설

구 분		최초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167.87	167.87					14	
	쉼터	나	3개소	162.42	162.42						신설
	쉼터-1	나-1	반포동 60-4번지 일원	47.25	47.25						신설
	쉼터-2	나-2	반포동 60-4번지 일원	64.76	64.76						신설
	쉼터-3	나-3	반포동 60-4번지 일원	50.41	50.41						신설
	원형 파고라	③	나-1,다-1,나-3							3	신설
	원형벤치	④	가-1, 다-1							2	신설
	등의자	⑤	나-1,다-1,나-3							6	신설
	앉음벽	⑥	나-2, 나-3	5.45						3	신설

구 분		최초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122.71	122.71					6	
	운동공간	다	2개소	122.71	122.71						신설
	운동공간-1	다-1	반포동 60-4번지 일원	85.97	85.97						신설
	운동공간-2	다-2	반포동 60-4번지 일원	36.74	36.74						신설
	운동시설A	⑦	다							2	신설
	운동시설B	⑧	다							2	신설
	운동시설C	⑨	다							2	신설
관리시설	소계									2	
	공원 안내판	⑩	진입로 인근 녹지, 가-1인근 녹지							2	신설

구분		최초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소계			3,610.36							
	녹지		반포동 60-4번지 일원	3,610.36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03.93	415.17				
신설	소로	소 계			203.93	415.17				
		3	1	2.0	191.28	383.51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1	
		3	2	2.5	12.65	31.66	산책로	소로3-1	소로3-1	

위 치 도

반포미도1차 소공원

대상지 위치 : 서초구 반포동 60-4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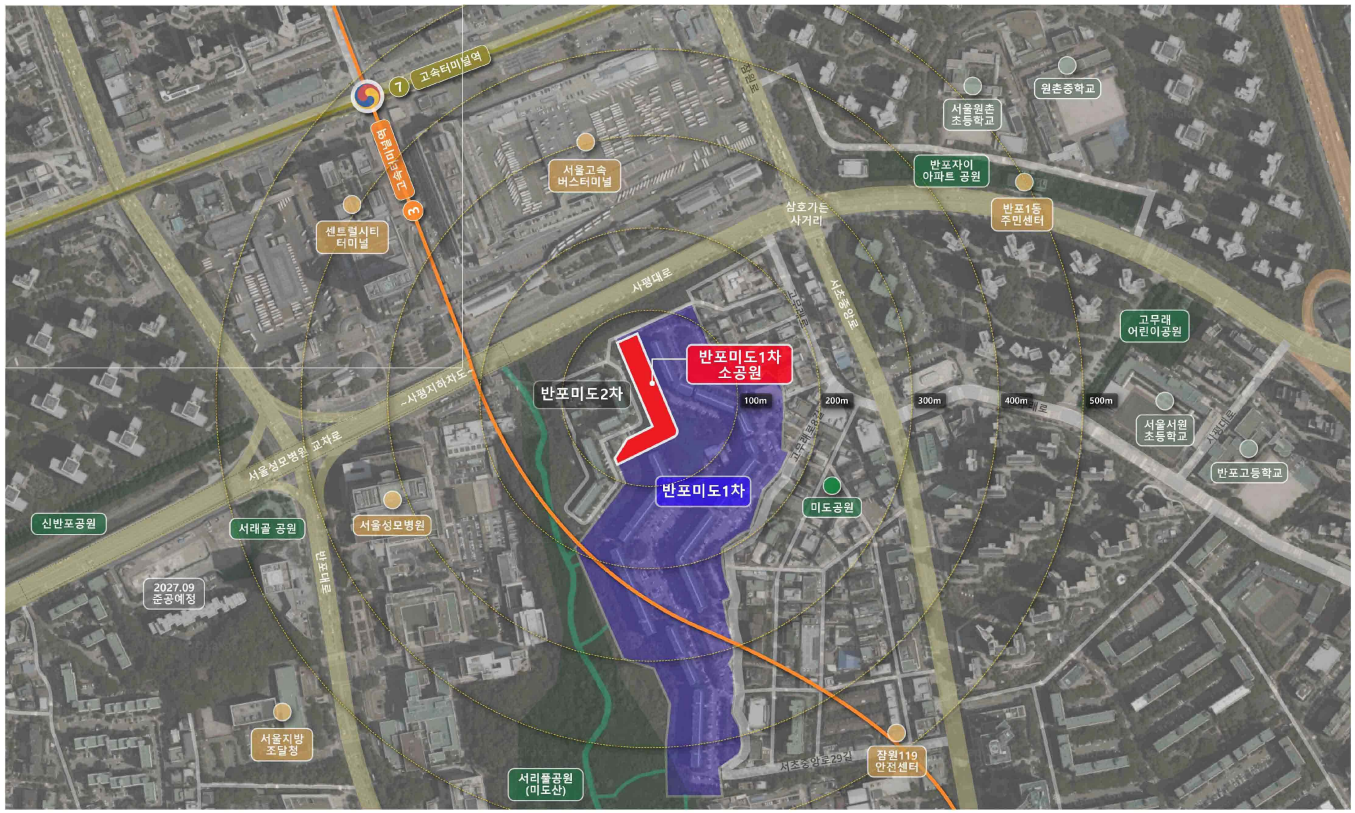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반포미도1차 소공원

▣ 조성계획표

구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주차율 (기)	비고
총계			4,479	4,479	24	100.00%
시설합계			868.64	868.64		19.39%
도로 및 광장		소계	468.74	468.74		10.46%
		도로	415.17	415.17		
	가	광장 계	53.57	53.57		
	가-1	광장-1	53.57	53.57		
조경시설		소계	109.32	109.32	2	2.44%
	①	화계 A	53.36	53.36	1	
	②	화계 B	55.96	55.96	1	
휴양시설		소계	167.87	167.87	14	3.75%
	나-1	쉼터-1	47.25	47.25		
	나-2	쉼터-2	64.76	64.76		
	나-3	쉼터-3	50.41	50.41		
	③	직행피크라	-	-	3	
	④	직행벤치	-	-	2	
	⑤	등의자	-	-	6	
	⑥	입간판	5.45	5.45	3	
운동시설		소계	122.71	122.71	6	2.74%
	다-1	운동공간-1	85.97	85.97		
	다-2	운동공간-2	36.74	36.74		
	⑦	운동시설 A	-	-	2	무장애
	⑧	운동시설 B	-	-	2	무장애
	⑨	운동시설 C	-	-	2	무장애
편의시설		소계	-	-	2	
	⑩	공원안내판	-	-	2	
녹지		소계	3,610.36			80.61%
		녹지	3,610.36			

◈ 강남구공고 제2026-1081호

독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83호(1986.5.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1번지 독골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 독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1번지(면적: 10,022.9㎡)

2) 변경계획 개요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독골 근린공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1번지	10,022.9	10,022.9	-	3,575.28	4,007.15	증 431.87

3) 주요(변경) 내용: 기존 舊치안센터를 교양시설로 용도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 조서(안) 및 도면(안) : 따로붙임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독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도곡동 461번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022.90	10,022.90				50	10,022.90	10,022.90	2	89.36	162.91	117	(구) 치안센터, 공원관리실
기반시설	소 계	2,845.95	2,845.95					2,848.19	2,848.19					증 2.24㎡
	도 로	1,868.03	1,868.03					1,957.64	1,957.64					증 89.61㎡
	광 장	977.92	977.92					890.55	890.55					감 87.37㎡
조경시설		-	-					97.38	97.38				4	증 97.38㎡
유희시설		444.37	444.37				5	427.54	427.54				4	감 16.83㎡
휴양시설		284.96	284.96				33	319.47	319.47				33	증 34.51㎡
교양시설		-	-					183.99	183.99	1	76.95	150.50	2	증 183.9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 동 시 설	-	-					112.95	112.95				13	증 112.95㎡
편 익 시 설	-	-					-	-				4	-
관 리 시 설	-	-				12	17.63	17.63	1	12.41	12.41	49	증 17.63㎡
그 밖의시설	-	-					-	-					-
녹지 및 기타	6,447.62	6,447.62					6,015.75	6,015.75				8	감 431.87㎡
시 설 율 (법정 40%)	(3,575.28/ 10,022.90) × 100 = 35.67%						(4007.15 / 10,022.90) × 100 = 39.98%						
건 폐 율 (법정 10%)	-						(89.36 / 10,022.90) × 100 = 0.89%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0,022.90	10,022.90			-	-	50			10,022.90	10,022.90			89.39	162.91	117	
기반시설	소 계			2,845.95	2,845.95					-			2,848.19	2,848.19					-	감 2.24㎡
	도 로	산	공원전체	1,868.03	1,868.03					-	산	공원전체	1,957.64	1,957.64					-	증 86.61㎡
	광 장	가	중앙	977.92	977.92					-	가	중앙	890.55	890.55					-	감 87.37㎡
조경시설	소 계	-	-	-	-					-		남측 부분	97.38	37.38					4	증 97.38㎡
	-	-	-	-	-					-	나	남측 부분	(97.38)	(97.38)					-	신설
	목재데크	-	-	-	-					-	나	남측 부분	(97.38)	(97.38)	목재				-	신설
	거울벽	-	-	-	-					-	①	공원 내	-	-	목재				(2)	신설
	목재가벽	-	-	-	-					-	②	남측부분	-	-	목재				(2)	신설
휴양시설	소 계			284.96	284.96					33			319.47	319.47					33	증 34.51㎡
		다		284.96	284.96					33	다		319.47	319.47					3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다-1	동측부분	(48.48)	(48.48)						다-1		(50.28)	(50.28)						
		다-2	남측부분	(90.33)	(90.33)						다-2		(167.09)	(167.09)						
		다-3	북측부분	(47.10)	(47.10)						다-3		(60.72)	(60.72)						
		다-4	서측부분	(40.68)	(40.68)						다-4		(41.38)	(41.38)						
		다-5	북측부분	(20.64)	(20.64)															
		다-6	북측부분	(37.73)	(37.73)															
	파고라	③	다-1,2,3	-	-					(3)	③	다-1,2			목재				(2)	
	조형 파고라	-	-	-	-					-	④	다-3			기타				(1)	신설
	등의자	⑤	다-4,5,6	-	-					(12)	⑤	공원 내			목재				(10)	
휴양시설	1인 등의자	-	-	-	-					-	⑥	나			목재				(10)	신설
	평의자	⑦	다-1,2,3	-	-					(18)	⑦	공원 내	-	-	목재				(3)	
	야외 테이블	-	-	-	-						⑧	다-2	-	-	목재				(3)	신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흔들의자	-	-	-	-						⑨	다-3	-	-	목재				(2)	신설
	앉음시설	-	-	-	-						⑩	다-2, 라	-	-	목재				(2)	신설
유희시설	소 계		남서측부분	444.37	444.37					5		남서측부분	427.54	427.54					4	감 16.83㎡
		라	남서측부분	444.37	444.37					5	라	남서측부분	427.54	427.54					4	
	조합 놀이대	⑪	남서측부분	-	-					(1)	⑪	남서측부분	-	-					(1)	
	시소	⑫	남서측부분	-	-					(1)	-	-	-	-					-	삭제
	그네	⑬	남서측부분	-	-					(1)	⑬	남서측부분	-	-					(1)	
	정글짐	⑭	남서측부분	-	-					(1)	-	-	-	-						삭제
	미그럼대	⑮	남서측부분	-	-					(1)	-	-	-	-						삭제
	흔들놀이	-	-	-	-					-	⑯	남서측부분	-	-					(2)	신설
운동시	소 계	-	-	-	-					-			112.95	112.95					13	증 112.9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	-	-	-					-	마	공원내	112.95	112.95					13	
		-	-	-	-					-	마-1	중앙부분	(26.94)	(26.94)						
		-	-	-	-					-	마-2	북서측부분	(86.01)	(86.01)						
	체력단련시설	-	-	-	-					-	⑰	마-1,2, 공원 내	-	-					(13)	신설
교양시설	소 계	-	-	-	-								183.99	183.99	철근 콘크리트	2	76.95	150.50	2	증 183.99㎡
		-	-	-	-						ㄱ	남측부분	(183.99)	(183.99)	철근 콘크리트	2	(76.95)	(150.50)		(구)치안센터
	시계탑	-	-	-	-						⑱	공원내	-	-					(1)	신설
	기념석	-	-	-	-						⑲	공원내	-	-					(1)	신설
편의시설	소 계	-	-	-	-					-									4	
	음수대	-	-	-	-					-	⑳	다-3	-	-					(1)	신설
	자전거 거치대	-	-	-	-					-	㉑	공원내	-	-					(3)	신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12			17.63	17.63		1	(12.41)	(12.41)	49	증 17.63㎡
	공원관리실										사	남측부분	17.63	17.63		1	(12.41)	(12.41)		신설
	공원등		-	-	-						㉒	공원내	-	-					(22)	신설
	볼라드등		-	-	-						㉓	공원내	-	-					(9)	신설
	표지판		-	-	-						㉔	공원내	-	-					(8)	신설
	목재용 울타리		-	-	-						㉕	공원내	-	-					(6)	신설
	CCTV		-	-	-						㉖	공원내	-	-					(4)	신설
	휴지통	㉛	다-1,2,3,4,5,6	-	-					(12)	-	-	-	-					-	삭제
녹지 및 기타	소 계			6,447.62	6,447.62					-			6,015.75	6,015.75					8	감 431.87㎡
	녹지			(6,447.62)	(6,447.62)								(6,015.75)	(6,015.7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볼라드		-	-	-					-	㉗	공원내							(3)	신설
자연석 (평석)		-	-	-					-	㉘	공원내							(4)	신설
간판석		-	-	-					-	㉙	공원내							(1)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88.54	1,868.03				
변경					508.37	1,957.64				
당초	산책로	소 계			388.54	1,868.03				
변경					508.37	1,957.64				
당초		–	1	6	94.18	605.69	산책로	가	가	
변경		–	1	8	91.65	699.36	산책로	가	가	
당초		–	2	4	166.18	683.04	산책로	가	가	
변경		–	2	4	167.34	661.42	산책로	가	가	
당초			3	5	47.07	235.44	산책로	산-2	가	
변경		–	3	4	33.37	137.96	산책로	산-2	산-4	
당초		–	4	4	32.43	209.74	산책로	산-3	산-2	
변경		–	4	4	46.52	192.95	산책로	가	산-2	
당초		–	5	3	36.86	134.12	산책로	산-1	가	
변경		–	5	–	–	–	–	–	–	삭제
신규		–	6	1	97.57	132.92	산책로	산-1	다-2	
신규		–	7	2	26.96	50.66	산책로	가	산-3	
신규		–	8	1	44.43	58.44	산책로	산-2	산-2	
신규		–	9	1	15.50	23.93	산책로	마-2	대상지외	

공원조성계획

변경전

독골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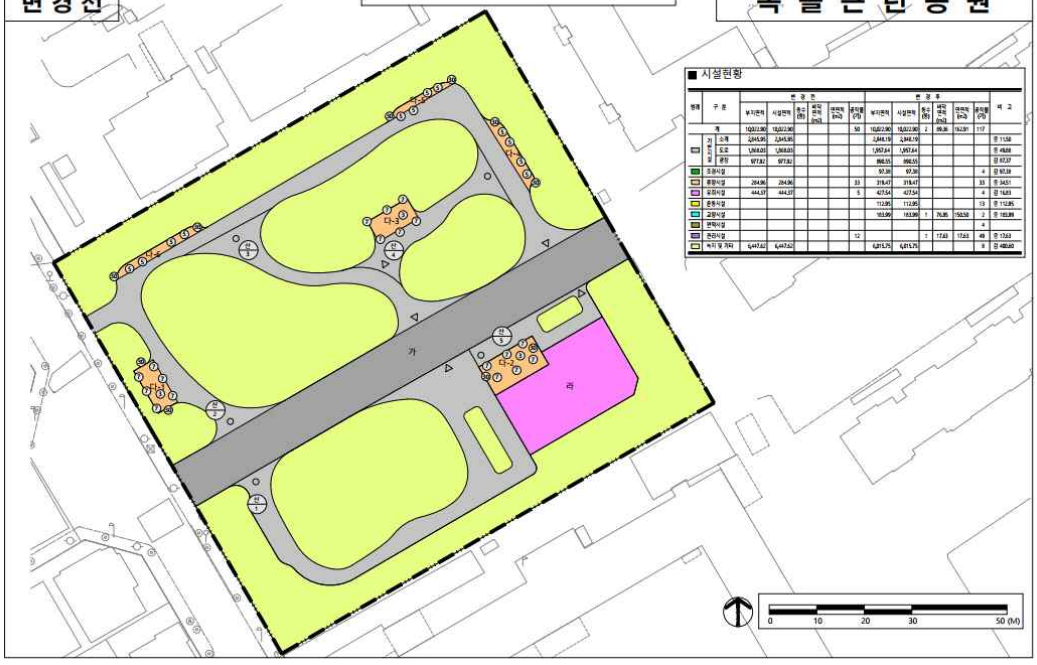

공원조성계획

변경후

독골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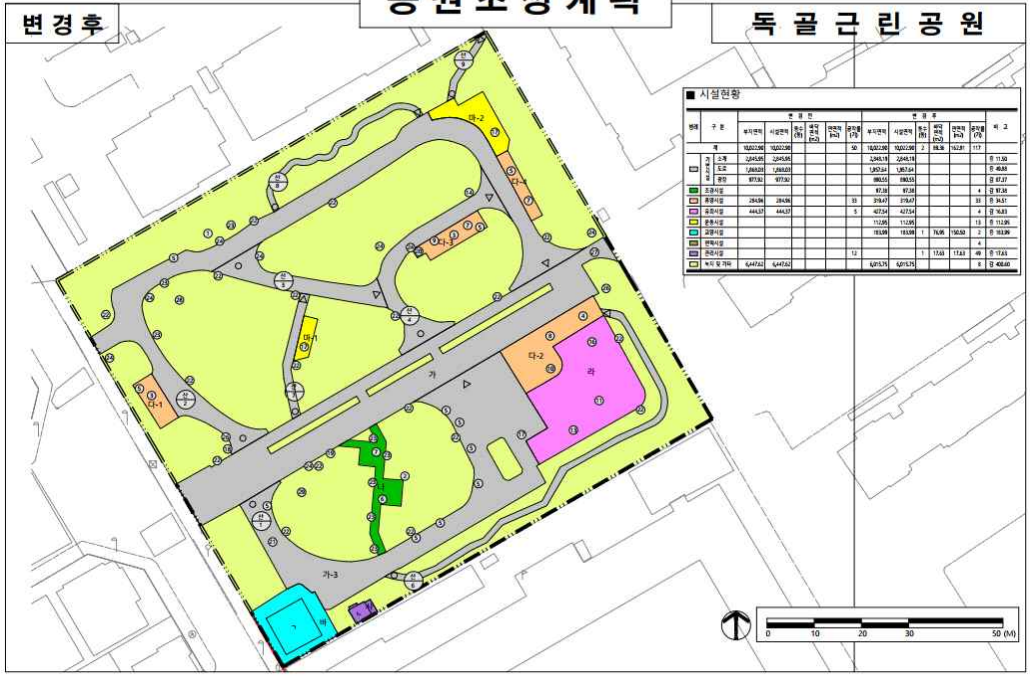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구조물 안전연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47	서울시계 내 한강 (마곡대교)	77.25㎡ (기선1척)	2026년 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2026.04.20. ~ 2026.04.30.	' 26. 4. 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선스톤쉬핑 (대표 신용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53	유선사업	장애인 진입로 52㎡	2026.4.16. ~ 2028.12.31.	2026. 4.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 (미래한강본부 인근)	(선박1척) 6.12㎡	한강 선착장 3D 정밀 수심 조사를 위한 점용	'26. 04. 22. ~ '26. 04. 28.	'26. 4. 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시계내 한강 (여의도 물빛광장 인근 수상)	(선박2척) 675.71㎡	서울스프링페스티벌 프로그램중 플로팅 그라운드 운영	'26. 04. 28. ~ '26. 05. 05.	'26. 4. 20.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17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04. 23. ~ 2026. 05. 06.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6. 05. 07. ~ 2026. 05. 20.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94	1	690810-* ******	조*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자동차	2026-02-10 16:30	50,000	2026-03-23	2026-05-20	10788350 95350	2026-04-03	폐문부재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1058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163	6114 3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 트레일러 임시주차장
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502	1	951125-* ******	최*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3-04 11:11	50,000	2026-03-23	2026-05-20	10788350 95355	2026-04-02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8364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천상의계단 상부 주변
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505	1	880504-* ******	JI**** **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3-16 10:57	50,000	2026-03-23	2026-05-20	10788350 95361	2026-03-26	주소불명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1742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 번길 30-21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마포대교 주변
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507	1	770430-* ******	TS*** ****O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3-12 18:20	50,000	2026-03-23	2026-05-20	10788350 95359	2026-03-27	수취인불명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39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8길 40-8	6114 3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 슬로프 부근
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515	1	011205-* ******	W*** *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3-16 16:40	50,000	2026-03-24	2026-05-20	10788350 97569	2026-04-03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28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길 47, 201호(정릉동)	6114 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뚝섬나들목앞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24	1	950611-* ******	Li**** ***** ***** ***A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3-22 14:11	50,000	2026-03-24	2026-05-20	1078835 097580	2026-04-03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5150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61번길 11-1, 201호(상남동)	6114 357	운영관리과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앞 주변
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25	1	940517-* ******	배*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3-22 14:10	50,000	2026-03-24	2026-05-20	1078835 097579	2026-04-03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2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03동 2511호(영등포동7가, 포레나 영등포)	6114 357	운영관리과	뚝섬한강공원 제2축구장 앞 주변
8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29	1	930114-* ******	김*원(10%) 『리** ***사(90%)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이룯차	2026-03-21 08:30	50,000	2026-03-24	2026-05-20	1078835 097575	2026-04-03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3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9길 13, 가동 204호(영등포동, 영일아파트)	6114 357	운영관리과	양화한강공원 내 축구장 입구
9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39	1	980115-* ******	김*규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룯차	2026-03-23 21:01	50,000	2026-03-25	2026-05-20	1078835 099746	2026-04-03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5351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4길 37	6114 357	운영관리과	광나루한강공원내 녹지청고 인근서 울강동타 9476이 룯차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0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42	1	751224-* ******	김*규	지정된장소외 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03-23 16:36	5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683	2026-04-06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37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18길 9	6114 357	우영 춘관 과	망원한강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부근
1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52	1	780405-* ******	이*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0 16:11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823	2026-04-07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50길 27	6114 357	우영 춘관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주먹밥)
1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55	1	720309-* ******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0 16:15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787	2026-04-06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527	서울특별시 양천로 443-32	6114 357	우영 춘관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1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6 -03	000585	1	780405-* ******	이*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1 16:09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824	2026-04-07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50길 27	6114 357	우영 춘관 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주먹밥)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4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591	1	720309-* ******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1 16:17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788	2026-04-06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52 7	서울특별시 영천로 443-3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15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616	1	601222-* ******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1 16:16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826	2026-04-01	수취 인불명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1083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안길 40-35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주변 (커피/핫도그)
16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628	1	601222-* ******	이*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2 16:13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827	2026-04-01	수취 인불명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1083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안길 40-35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제2주차장주변 (커피/핫도그)
17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643	1	780405-* ******	이*식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2 16:19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825	2026-04-07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40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50길 27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주먹밥)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반송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번호	공시송달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우편번호	납세자기본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8	10-28 8706	[사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위반과태료	2026-03	000648	1	720309-* ******	김*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22 16:22	70,000	2026-03-26	2026-05-20	1078835 102789	2026-04-06	기타	제2026-178호	1	2026-04-17	2026-04-23	2026-05-06	07527	서울특별시 양천로 443-32	6114 3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광장 주변(삼겹살)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2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기반시설과) ☎02-3780-0674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내한강 L=41.5km
 (동작대교 남단하류, 동작대교 남단상류, 잠실대교 남단, 한남대교 남단) 일원
 - 면 적 : 1,325,47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 르네상스 사업
 - 금회변경 : 3개소(동작대교 남단 상·하류, 한남대교 남단) 리모델링

5. 점용기간 : 2024.01.25. ~ 2029.01.24.

6. 공사기간 : 2026.04.10. ~ 2027.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26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서울지역본부) ☎02-2657-1172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개화동 일원 (175-7, 175-6, 174-67, 174-74, 174-13, 165-13, 165-18, 165-17, 175-8, 175-1, 165-24)
 - 면 적: 7,05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관 매설

5. 점용기간: (당초) 2021.01.01. ~ 2025.12.31.
 (변경) 2026.01.01. ~ 2030.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2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119특수구조단) ☎02-3706-1916
 -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진관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81-9, 484-3, 484-4, 485-29, 351-1번지
 - 면 적: 3,506.65㎡ (청사 연면적 : 532.6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 지붕 및 안전난간 설치 공사

5. 점용기간: 2024.12.13. ~ 2029.12.31.

6. 공사기간: 2026.04.13. ~ 2026.04.17.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